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75-01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21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11)

2012. 9.

- 목 차 -

1. 현종실록 기사자료집 1

1. 현종실록 기사자료집

현종실록 기사자료집

날짜	내용	원문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5월 5일 (을축) 2번째기사</p>	<p>예조 판서 윤강(尹絳), 참판 윤순지, 참의 윤집(尹鍊) 등이 주달하였다.</p> <p>“《오례의(五禮儀)》에 의하면, 빈전(賓殿)에는 아침 저녁으로만 상식(上食)이 있고 낮에는 상식도 다례(茶禮)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신년5) 등록(謄錄)에는 상식과 다례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병인년6) 등록에는 낮에 다례만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축년에도 병인년의 예를 따라 낮에 다례만 올렸으니, 지금도 기축년의 예대로 낮에는 다례만 올려야겠습니다.”</p>	<p>禮曹判書尹絳、參判尹順之、參議尹鍊等達：“《五禮儀》，於賓殿，只有朝夕上食，無晝上食及茶禮，而戊申謄錄，則竝有上食茶禮，丙寅謄錄，則只設晝茶禮。己丑亦從丙寅，只設晝茶禮。 ”</p>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6월 2일 (신묘) 6번째기사</p>	<p>그해 봄에 기근이 들어 상평청이 3월부터 죽을 쑤어 기민을 먹이다가 6월에 와서야 정지하였다.</p>	<p>是歲春饑，常平廳自三月設粥賑民，至六月乃罷。</p>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p>	<p>호서에 기민 먹일 때 대출한 상평청의 미조(米租) 2천 7백 80석을 견감하도록 하였다.</p>	<p>令蠲減湖西賑救時所貸常平廳米租二千七百八十石。</p>

<p>(順治) 16년) 6월 5일 (갑오) 9번째기사</p>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6월 12 일(신축) 6번째기사</p>	<p>부호군 조경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의 나이 70이 넘어 시골에 물러와 있드려 있는데, 대행 대왕께서 특명으로 월봉(月俸)을 제급하셔서 신은 감격하고 송구한 나머지 신이 무엇 때문에 일정한 관직도 없이 상이 내리시는 것을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뜻하지 않게 지부(地部)가 또 상의 하교에 의하여 쌀과 콩을 가져다가 신에게 주니, 신으로서는 놀라고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상께서 신이 지금 월봉을 먹고 있는지를 미처 살피지 않으시고 하신 일이 아니온지요. 앞드려 바라건대 즉시 유사에게 음식물의 지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빨리 내리소서.” 하였는데, 허락치 않았다.</p>	<p>副護軍趙綱上疏略曰： 臣年過懸車，退伏田間，大行大王特命題給月俸，臣誠感悚，不知何故，無職食上，至於如此也。不意今者，地部以上教，將米太致之臣所，臣驚惶罔措。或恐聖上未及察臣方食月俸也。伏願卽下有司，亟寢食物之命。 不許。</p>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6월 16 일(을사) 5번째기사</p>	<p>집의 이유태가 상소하여, 사직하고 돌아가 노모를 뵈겠다고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 “그대가 출사하기만을 나는 날로 바랐었는데, 지금 이 상소를 보니 마음이 너무 섭섭하다. 두 번 다시 사양 말고 조리한 후 나와서 직을 살피라.” 하고, 이어 쌀과 콩·소금·간장·미역 등등을 하사하였는데, 유태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지부(地部)가 그 사실을 알리자 다시 실어 보내라고 명하였다.</p>	<p>執義李惟泰上疏辭職，乞歸見老母，上答：“以爾之出仕，予日望之。今見此疏，不勝缺然，爾勿再辭，調理察職。”仍賜米太鹽醬甘藷等物，惟泰辭不受，地部以聞，命更輸送。</p>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6월 19 일(무신) 2번째기사</p>	<p>상이 인견 때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경이 지난날 제사에 소선(素膳)을 쓴 데 대하여 말했는데, 내 생각은 절반은 육선(肉膳)을 썼으면 좋겠다. 어떤가?”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경모전(敬慕殿) 제물을, 밖에서는 소선을 준비하고 안에서는 육선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안과 밖에서 준비하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이 신으로서는 미안하게 여겨집니다.” 하였고, 좌의정 심지원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틀림없이 깊은 뜻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사에 소선을 쓰는 것이 어느 조(朝) 때부터 비롯된 것이며 건백(建白)은 어느 사람이 한 것인가?” 하니, 지원이 아뢰기를, “세종조의 명재상 황희(黃喜)가 정청(廷請)을 하여 정한 제도로서, 국조(國祚)가 3백 년은 더 연장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각릉의 사시(四時) 제향 때도 모두 소선을 쓰는데 아마 무궁한 국가 장래를 위하여 혹시 국력이 지탱되지 못할까를 염려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 그 정해진 제도를 고친다고 하면 어떻게 3년 제사에만 육선을 쓸 것입니까? 반드시 각릉의 제사에도 다 써야 할 것이니 그 매우 난처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종묘에는 육선을 쓰는가?” 하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국가 제례에 있어 종묘에서만 육선을 쓰는데, 그것은 혈식(血食)의 뜻을 취한 것입니다.”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시열은 지금 안과 밖에서 제물을</p>	<p>上於引見時, 謂宋時烈曰: “卿於向日, 以祭用素膳爲言, 予意欲以肉膳參半, 如何?” 時烈曰: “敬慕殿祭物, 自外備素膳, 自內備肉膳, 臣固以內外異膳, 爲未安矣。” 左議政沈之源曰: “祖宗朝所講定, 必有深意, 一朝變革, 恐未穩當。” 上曰: “祭用素膳, 創於何朝, 而何人所建白耶?” 之源曰: “世宗朝名相黃喜, 廷請定制, 以爲國祚可延三百年云矣。 各陵四時祭, 皆用素膳, 蓋慮國家傳代無窮, 國力不支也。 今若改其定制, 豈獨用肉膳於三年之祭? 必將竝用於各陵之祭, 此甚難處也。” 上曰: “宗廟用肉膳乎?” 領相鄭太和曰: “國家祀典, 只於宗廟用肉, 蓋取血食之義也。” 宋浚吉曰: “時烈以卽今內外異膳爲未安, 欲爲之變通, 而臣意以返虞後, 仍用素膳爲未安, 三年內, 參用肉膳, 似無妨也。” 之源曰: “仁祖大王三年內, 亦不用肉膳, 豈先王誠孝, 有所未盡而然也?” 時烈曰: “旣謂之祭享, 具何可諉以物力之不逮, 而不用肉也?” 太和曰: “臣聞三年之內, 魂殿封進雉獐, 仍不革罷。 以此觀之, 其非</p>
---	---	---

	<p>달리 준비하는 것이 미안하다 하여 변통을 했으면 하지만, 신의 생각으로는 반우(返虞) 후에도 그대로 소선을 쓴다는 것은 미안한 일이니, 3년 내에는 육선을 곁들여 쓰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하니, 지원이 아뢰기를, “인조 대왕도 3년 내에 육선을 쓰지 않았는데, 그 어찌 선왕의 효성이 미진한 바가 있어 그런 것이겠습니까.”하였고, 시열은 아뢰기를, “이미 제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물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핑계로 육선을 쓰지 않을 것입니까.” 하였으며, 태화는 아뢰기를, “신이 들은 바로는 3년 내에 혼전(魂殿)에다 꿩과 노루 고기를 올리는 일을 그대로 두고 혁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본다면 순전히 소선만 쓰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상고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그후 예조가 아뢰기를, “기축년 등록에 의하면 우제·졸곡·삭망·연제·상제·담제 그리고 사시 대제, 납향(臘享) 이외에는 모두 소선을 쓴다고 되어 있어, 지난번에도 거기에 의하여 마련하여 재가를 받았었고, 《오례의(五禮儀)》의 도식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생 노루고기·생 꿩고기를 혼전에 올리는 일에 있어서는, 본 아문이 이미 주원(廚院)에다 공문을 발송하였으므로 그쪽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서 사목을 만들어 재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알겠다고 하였다.</p>	<p>純用素膳，可知也。” 上曰：“令該曹考啓可也。” 其後禮曹啓：“以己丑年膳錄中，虞、卒哭、朔、望、練、祥、禫等祭及四時大享、臘享祭外，皆用素膳，向亦依此磨鍊啓下，《五禮儀》圖式，亦與此同。至於生獐雉鮮，進排于魂殿事，既已自本曹移文廚院，待其報來，當成事目啓下耳。” 上曰：“唯唯。</p>
--	--	---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6월 28 일(정사) 2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졸곡 후 조식 상식(上食)에 육선(肉膳)을 쓸 것인지의 여부를 대신들과 논의 했더니, 영부사 이경석, 연양 부원군 이시백 등은 ‘《오례의》에 조식 상식은 소선(素膳)으로 하여 우제·졸곡·삭망·연제·상제·담제 또는 대향·납향 등의 제사 때와는 다르다고 되어 있고, 또 상(喪)·제(祭)는 선조가 하던 대로 따라야 한 다고 선현인 이황도 일찍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성조께서 이미 정해놓은 제 도이고 선왕들이 이미 행하던 일인데, 지금 와서 고친다면 매우 미안한 일 같 습니다.’ 하였고, 영의정 정태화는 ‘졸곡 후 조식 상식에 소선을 쓰는 것이 이 미 국조의 전래된 정식이므로, 지금 와서 다시 고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였으며, 좌의정 심지원도 ‘신의 어리석은 소견을 지난번 탐전에서 이미 다 아뢰었거니와 조종조에서 행해 오던 예를 지금 와서 경솔하게 논의하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하였습니다.”</p> <p>하니, 상이 그 논의대로 따르도록 명하였다.</p>	<p>禮曹啓：“以卒哭後朝夕上食用肉膳當 否，議大臣，則領府事李景奭、延陽府 院君李時白等以爲：‘《五禮儀》朝夕 素膳，與虞、卒哭、朔、望、練、祥、 禫及大亨、臘享等祭不同，喪祭從先祖 之說，先賢李滉亦嘗言之。聖祖之所 已定，先王之所已行，到今改之，似甚 未安。’領議政鄭太和以爲：‘卒哭後 朝夕上食用素膳，既爲國朝流來定式， 到今似難更改。’左議政沈之源以爲： ‘臣之愚見，頃已陳於榻前，祖宗朝定 行之禮，到今輕議未安。’”上命依 議。</p>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7월 21 일(경진) 1번째기사</p>	<p>이유태·윤선거 등에게 쌀·콩·소금·간장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는데, 모두 사양 하고 받지 않았다. 호조가 다시 보낼 것을 청했을 때는, 유태는 이미 하향을 했고 선거도 교하(交河)로 가버린 뒤였다. 상이, 유태는 올라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선거는 멀지 않은 곳에 가 있으니 다시 실어 보내라고 명하였다.</p>	<p>庚辰/賜李惟泰、尹宣學等米豆鹽醬等 物，皆辭不受。戶曹啓請更送，則惟 泰已下鄉，宣學亦往交河地矣。上命 且待惟泰上來，宣學去在不遠之地，更 令輸送。</p>
<p>현종 1권, 즉위년</p>	<p>장령 민여로(閔汝老)가 상소하여, 몸이 편찮을 때는 권도를 따라야 한다고 청</p>	<p>掌令閔汝老上疏，以玉候違豫，請姑從</p>

<p>(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8월 2일 (경인) 2번째기사</p>	<p>하면서 《예기(禮記)》의 ‘상 중에 있을 때의 예는 야위어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하지 않아야 하고 시각과 청각이 약해질 정도로 하지 않아야 하며, 병이 있으면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는다. 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으면 그도 불효인 것이다.’는 등의 말을 인용하여 경계하고 또 아뢰기를,</p> <p>“요즘 전하를 보건대 언관(言官)이 일을 논할 때 자존심을 내세워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빛을 보이시는데, 신은 이로부터 정직한 선비는 날로 물러가고 아첨하는 풍속이 생기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또 안악·신천의 궁가 전장 건만 하더라도, 조사관이나 감사 모두가 궁가의 뜻을 받들어 자기들의 앞길을 닦기에 급급했는데, 비국이 또 뒤따라 분명치 못한 사건을 가지고 충건 등에게 형을 내리도록 청하였습니다. 아, 그들의 전지를 빼앗고 또 죄까지 찍었으니, 그야말로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대관이 파직과 추고를 청한 것도 사실은 감하고 감하여 한 일인데, 전하께서 내리신 벌은 그보다도 더 가벼우니, 신은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안악 군수 강전, 신천 군수 조여수는 관작을 삭탈하여 궁가에 아첨한 죄를 징계하시고, 황해 감사 강유는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고, 비국의 담당 당사도 중한 쪽으로 추고하여, 뒤편을 막으소서.”</p> <p>하니, 상이 관대하게 비답하였다.</p>	<p>權制，引《禮記》居喪之禮，“毀瘠不形，視聽不衰，有病則飲酒食肉。不勝喪，乃比於不孝等語”，以爲戒，且曰：</p> <p>近觀殿下於言官論事之時，頗有訑訑之色，臣恐自此，正士日退，諂佞成風。又以安、信宮庄之事，查官監司，皆希旨宮家，以規前路，而備局又從而以難明之事，請刑忠建等。噫！既奪之田，而又致之罪，是誠何心？臺官罷推之請，實是未減，而殿下之施罰又輕，臣竊未知其故也。請安岳郡守姜典、信川郡守趙汝秀削奪官爵，以懲其諂媚宮家之罪，黃海監司姜瑜先罷後推，備局當該堂上，亦從重推考，以杜後弊可也。</p> <p>上優批答之。</p>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p>	<p>약방이 들어가 진찰하고 약을 논의할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세 번째 아뢰자 약만 논의하도록 허락하였다. 간원이, 약방이 들어가 진찰하겠다</p>	<p>丙申/藥房請入診議藥，上不許。三啓，只許議藥。諫院啓請，亟從藥房</p>

<p>(順治) 16년) 8월 8일 (병신) 1번째기사</p>	<p>는 청을 빨리 따르도록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양사(兩司)가 함께하여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고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 나아가 청하였으나, 상이 자전(慈殿)도 아직 마른 밥을 드시지 않는다는 핑계로 모두 따르지 않았다. 신하들이 다시 대왕 대비와 대비전에 아뢰어 마른 밥을 드실 것을 청하고, 또 상에게 권도를 따르도록 권하여 주라고 하였다.</p>	<p>入診之請，不從。 兩司合啓，請從權制，大臣率百官廷請，上諉以慈殿尙未進乾飯，皆不從。 廷臣復啓于大王大妃及大妃殿，請進乾飯，且勸上從權。</p>
<p>현종 1권, 즉위년 (1659 기해 / 청 순치 (順治) 16년) 8월 18 일(병오) 1번째기사</p>	<p>이때 내구마(內廐馬)에게 먹이는 풀을 외사복(外司僕)에서 바쳤는데, 윤창형(尹昌亨)·이후광(李后光)이 내승(內乘)이 되어 그 풀의 3분의 1을 덜어내어 쌀과 바꾸어 사사로이 썼으므로, 이 말이 파다하게 전파되었다. 이에 헌부가, 내사복시와 외사복시의 담당 관리와 마초(馬草)를 바친 사람을 조사하여 캐묻고 또 문서를 고찰하여 그들의 정상을 밝혀내고는, 이들을 잡아들여 국문한 다음 치죄할 것을 청하였다. 창형 등이 그 일은 이미 30년 전부터 흘러내려 온 그릇된 전례라고 대답하면서, 자기들이 그 그릇된 전례를 답습하고 즉시 고치지 않았던 죄를 승복하였다. 상이 전해 온 그릇된 전례를 그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우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방면할 것을 명하였다. 금부가 아뢰기를,</p> <p>“남은 마초를 쌀로 바꾸어 3개월 간 과외로 쓴 것이 56석이나 됩니다. 이렇게 지나친 짓을 하였으니, 장 육십 도 일년(杖六十徒一年)에 고신(告身)을 모조리 빼앗는 것으로 조율하였습니다.”</p> <p>하니, 상이 다시 속전만 내게 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여러 날 간하였으나 파직만 시켰다.</p>	<p>丙午/時內廐馬所食草，自外司僕進排，而尹昌亨、李后光爲內乘，以其草三分之一，除出作米爲私用，其說傳播。憲府詰問內外寺該掌吏及進馬草人，且攷文書，得其狀啓請拿問懲治。 昌亨等對以作米之事，出於三十年前流來謬規，而服其因循不卽變革之罪。 上以自前謬規，不可專責於此輩，命放之。 禁府啓：“以餘草作米，三朔科外之用，至於五十六石。 如是太濫，以杖六十、徒一年、盡奪告身奏當，上復命只贖。 該院爭之累日，只罷其職。</p>

<p>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월 13일(기사) 3번째기사</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우상 정유성이 아뢰기를,</p> <p>“금년의 흉년은 북로(北路)가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모두 서로(西路)를 향하여 떠돌이 길에 나섰는데, 수령들이, 다음에 그들을 다시 본 고장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면 해유(解由)에 지장을 줄 소지가 있음을 염려하여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어사를 보내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아직은 도사로 하여금 날날이 파악하여 착실히 돌보아주게 함으로써 후일 어사를 보냈을 때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자료가 되도록 하라.”</p> <p>하였다. 유성이 또 아뢰기를,</p> <p>“관동 지방도 기근이 북로와 같아 본도로부터 급함을 알리는 보고가 계속 오고 있으니, 그들을 위한 진구책을 당연히 불을 끄듯 써야 할 것이나, 관동은 토질이 척박하고 백성들도 가난하여 원래 축적된 곡식이라곤 없는데다, 영남의 곡식은 거리가 멀어 거기까지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충주에 전 목사 원두추(元斗樞)가 관청에다 쌀 2천 1백 섬을 쌓아둔 것이 있고, 모조(耗租)도 7천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쌀 1천 섬과 모조 3천 섬을 관동으로 옮겨 진구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유성이 또 아뢰기를,</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右相鄭維城曰：“今年凶歉，北路爲甚，民皆流向西路，而守令恐有他日未刷還拘解由之弊，不以實聞。別遣御史詢問何如？”</p> <p>上曰：“姑令都事，一一搜括，着實賑救，以爲後日遣御史覈實之地。”維城又曰：“關東阻飢，亦如北路，本道告急之報續至，賑救之策，當如救焚，而關東土瘠民貧，元無宿儲之穀，嶺南之穀，遠莫致之。竊聞忠州前牧使元斗樞，官廳儲米二千一百石，耗租亦有七千石云。米一千石，租三千石，移用於關東，賑救宜當。”上從之。維城又曰：“元斗樞之多儲穀物，蓋出於約己節用，而留作賑饑之資，似當有激勸之舉。”上答以：“言于該曹，別爲施賞。”斗樞之多儲，雖使出於約己，請移穀，而兼請論賞，殊涉汲汲，況未必出於節損者乎？大臣之行私，如此小官何責焉。</p>
---	--	--

	<p>“원두추가 많은 곡물을 쌓아두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씹음을 절약하고 기민을 구제하는 밀천으로 남겨둔 데에서 나왔으니, 의당 격려와 권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하니, 상이 해당 아문에 말하여 별도로 시상을 하라고 답하였다.</p> <p>두추가 저축을 많이 한 것이 비록 자기의 씹음을 절약하여 그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곡식 옮겨올 것을 청하면서 시상까지 겸하여 청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히 서두르는 느낌인데, 하물며 그것이 꼭 자기의 씹음을 절약하여 그런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음에 있어서라. 대신들이 그렇게 사사로운 곳에 마음을 쓰는데 소관들이야 무엇을 책하겠는가.</p>	
<p>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1월 18일(갑술) 2번째기사</p>	<p>강원 감사 박장원(朴長遠)이 치계하기를, “양양(襄陽) 등 5개 읍이 기근이 더욱 심하오니, 바라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하여 돌보고 살리게 하소서.”</p> <p>하여, 비국이, 영남 해변의 영해(寧海) 등 읍에 있는 원곡 2천여 섬을 고을들</p>	<p>江原監司朴長遠馳啓: “襄陽等五邑, 阻飢尤甚, 請令廟堂, 指揮救活。” 備局請以嶺南海邊寧海等邑, 元穀二千餘石。 縣次船運以賑之。</p>

	이 차례차례 배로 운반하여 진구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2월 16일(신축) 2번째기사	사시에 상이 흥정당에서 칩을 맞고 이어 대신 및 비국 당상들을 인견하여, 기근으로 용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식비(食費)를 재감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영의정 정태화가 금군(禁軍)에 궐원이 있는 것을 아직은 보충하지 말고 훈국(訓局) 군병도 그리할 것을 청하여, 그대로 따랐다.	巳時，上受鍼於興政堂，仍引見大臣及備局堂上，以年饑用不足，議減冗食，領議政鄭太和請禁軍之有闕者，姑勿充補，訓局軍兵亦然。從之。
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3월 18일(계유) 2번째기사	<p>상이 흥정당에 나아갔다. 도승지 김수항, 좌승지 오정위, 우승지 이은상이 공문서를 가지고 입시하여, 수항이 윤희(尹鑄) 상소문 건으로 아뢰었다. 상이 이르기를,</p> <p>“윤희가 관직이 있으면서 언제나 포의(布衣)라고 자칭하는데, 왜 그런가? 책자를 나누어준 것도 세세한 일인데, 왜 그렇게 누차 사양하는 것인가?”</p> <p>하니, 정위가 아뢰기를,</p> <p>“윤희가 지평(持平)을 배수하지 않고서 시종(侍從)의 은총을 받는 것이 마음에 불안스러운 일이라 하여 두 번씩이나 소를 올려 굳이 사양하는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명하여 비답을 쓰게 하기를,</p> <p>“하사하는 것이 직명(職名)이 있고 없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라.”</p> <p>하였다. 또 함경도 노인의 식물(食物)에 관한 계본(啓本)을 아뢰면서, 홍원(洪</p>	<p>上御興政堂。都承旨金壽恒、左承旨吳挺緯、右承旨李殷相持公事入侍，壽恒以尹鑄疏奏之。上曰：“鑄有官而每稱布衣何也？頒冊細事，亦何累辭？”挺緯曰：“鑄以不拜持平，而受侍從恩數，爲不安於心，至再疏控辭矣。”上命批之曰：“所賜何有於職名之有無？其安意領受。”又奏咸鏡道老人食物啓本，洪原縣只給四升米、二尾魚，上曰：“如此守令推考。”吉州有一百歲、九十九歲老人，仁川、永平亦有百歲老人，上曰：“此老人等衣資，令該曹題給。”至清道土人書院請額疏，上曰：“先朝於此等事，不輕許矣。”殷相曰：“此則前日宋浚吉請贈職者也。”上曰：“金駟孫何如人？”挺緯曰：“駟孫受業於金宗直，以文章名世，燕山時被禍矣。”上曰：“此則許之，後勿爲</p>

	<p>原) 고을에는 쌀 너 되와 어물 두 마리만을 준 곳이 있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그와 같은 수령은 추고하라.”</p> <p>하였고, 길주(吉州)에 1백 세와 99세의 노인이 있고, 인천(仁川) 영평(永平)에도 1백 세 난 노인이 있다고 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그 노인들은 옷감을 해조에서 제급하게 하라.”</p> <p>하였다. 청도(淸道) 선비들이 서원 청액소(淸額疏)를 올린 데 대하여는, 상이 이르기를,</p> <p>“선왕조에서도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는 가볍게 허락하지 않았느니라.”</p> <p>하니, 은상이 아뢰기를,</p> <p>“그는 전일 송준길이 증직을 청했던 그 자이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김일손(金駟孫)은 어떠한 인물인가?”</p> <p>하여, 정위가 아뢰기를,</p>	<p>例。” 挺緯又奏寧陵參奉所報土蓮停封事禮曹粘目， 上曰：“聞新產之物，以其難繼，而初不封進者有之，此誠未安。 夫薦新與供上有異，先薦新，而待其廣產供上，不亦可乎？” 僉曰然。 又奏平安監司定州罪人賊殺其長妹查啓， 上曰：“倫紀之變，至於此。” 挺緯曰：“弑其長妹，尤爲凶慘。” 上曰：“既賊同氣，何論伯仲乎？” 盡傷久之。</p>
--	---	--

	<p>“일손은 김종직(金宗直)에게 수업하여 문장(文章)으로 세상에 이름났고 연산군 때 화를 당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그에게는 허락하되 뒤에 그를 전례로 삼지는 말라.”</p> <p>하였다. 정위가 또 영릉 참봉(寧陵參奉)이 보고한, 토련(土蓮)을 봉진하지 말자는 건에 관한 예조의 점목(粘目)에 대하여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p> <p>“새로 생산된 물건을 뒤에 계속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당초 봉진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으나, 그것은 진실로 미안한 일이다. 대체로 천신(薦新)은 공상(供上)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우선 천신부터 하고 공상은 그 물품이 많이 생산된 뒤에 한다면 괜찮은 일이 아니겠는가.”</p> <p>하자, 모두가, 옳다고 하였다. 또 자기 만누이를 죽인 정주(定州) 죄인에 관한 평안 감사의 사계(查啓)에 대하여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p> <p>“윤기(倫紀)의 변이 그에 이르다니.”</p> <p>하니, 정위가 아뢰기를,</p> <p>“자기 만누이를 시해했으니 더욱 흉측한 일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	--	--

	<p>“동기간을 죽였는데 만이와 들썩을 따질 게 뭐가.”</p> <p>하고, 모두 오랫동안 슬퍼하였다.</p>	
<p>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3월 27일(임오) 1번째기사</p>	<p>일본 대마도 태수 평의진(平義眞)이 정관(正官) 평성통(平成通)을 동래(東萊)로 보내 표문과 함께 지방 특산물을 올리고 우리 신왕 전하의 즉위를 축하하였다.</p>	<p>壬午/日本對馬島太守平義眞遣其正官平成通于東萊, 奉表進方物, 賀我新王殿下卽位。</p>
<p>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1일(을유) 1번째기사</p>	<p>대사간 이경억, 사간 박지흠, 헌납 목내선, 정언 권격·이무가 아뢰기를,</p> <p>“금년 기근은 팔도가 일반인데 국가가 그 진구책을 요리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요즘 들으면 영남도 기근이 동북(東北) 두 곳 못지않아 가는 곳마다 풀과 나뭇잎을 먹고 가끔 사망자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세(收稅) 시기가 이미 다가왔는데 죽음을 구제하기에도 여유가 없는 백성들로서는 마련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들의 다급함을 조금이나마 늦추어주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국가가 만일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저장해 둔 것으로는 다만 강도(江都)의 쌀이 있을 뿐이므로, 일만분 절박하고 다급한 일이 아니면 그를 가져다 쓸 것을 함부로 논의해서</p>	<p>乙酉朔/大司諫李慶億、司諫郭之欽、獻納陸來善、正言權格·李整啓曰：“今年饑饉，八路同然，國家於料理賑救之策，可謂至矣。近聞嶺南之饑，不下於東北兩路，茹草擷葉，在處皆然，而往往至有死亡者。目今收稅之期已迫，而救死不贍之民，無力可辦，苟可以少紓其急者，靡極不用也。國家儲峙，所以爲緩急之恃者，只有江都之米，如非萬分切急，不可輕議取用，</p>

	<p>안 될 일이지만, 백성들 목숨이 다해가고 있으며 일에는 경중이 있는 것이고 보면 굶주린 백성들 입 속에 있는 것을 꺼내오기만 하고 어떻게 변통의 방법은 생각지 않을 것입니까. 백성들 시체가 뜰을 메우게 내버려두고 끝까지 돌보아줌이 없다면 그 어찌 경중 완급에 있어 순서가 뒤바뀐 일이 아니겠습니까.</p> <p>듣건대 강도에 저장되어 있는 쌀과 정조가 아직은 10만여 섬이 있다니, 지금 그것을 적당량 갈라내어 해당 아문의 경비에 쓰게 하고 가을이 되면 영남의 전세(田稅)를 받아들여 그 수를 충당하게 하면, 궁한 백성들이 눈앞의 다급함은 풀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옳은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빨리 서둘러 조치가 있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p>	<p>而民命近止，事有輕重，取之於饑民口吻之中，而不思推移變通之道，使斯民填於溝壑，而終莫之恤也，則豈不有乖於輕重緩急之序乎？聞江都米租，尚有十餘萬石，今若量宜除出，以爲該曹經費之用，而將嶺南田稅，待秋收捧，以償其數，以解窮民目前之急，事甚便當。請令廟堂，從速議處。”上從之。</p>
<p>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4월 13일(정유) 2번째기사</p>	<p>처음에 상이 병환 중에 있으면서 송시열에게 특별 소명을 내렸으나 병을 이유로 오지 않자, 상이 다시 액정 별감(掖庭別監)을 보내 병을 묻고 약물과 식물을 하사했다. 이때 와서 찬성 제수 명령이 또 내리자, 시열이 상소하여 사의를 표하기를,</p> <p>“신이 용승한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죄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고, 성상의 용서와 보살핌이 더하면 더할수록 험뜯는 물의는 자꾸 일고 있습니다.”</p>	<p>初上在違豫之日，特下召命於宋時烈，而稱病不至，上復遣掖庭別監，問其疾，賜藥物食物。至是贊成除命又下，時烈上疏辭以爲：“臣受恩愈隆，負罪愈深，聖上之假借愈甚，而物論之訾評愈起。”且曰：“臣埃罪而遷官，因退而獲進，揆諸事宜，無舛於此。”上答</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신이, 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벼슬이 올라가고, 물러갔음으로 하여 다시 나올 수 있게 되니, 사리로 따져보아도 그보다 더 어그러진 일이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답하기를,</p> <p>“상소 내용을 보면 다분히 떠도는 말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경이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까지 믿지 않는가? 내 성의가 상대에게 미쁨을 보이지 못하여 오래도록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이 없는 모양인데, 경을 생각하는 심회를 어찌 이루 다 말하랴.”</p> <p>하였다.</p>	<p>曰：“疏中語意，似是多信浮言，卿何不信予若是哉？誠意未孚，久無幡然之意，念卿之懷，可勝諭哉？”</p>
<p>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9일(계해) 4번째기사</p>	<p>상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호군 이유태, 공조 좌랑 이상을 인견하였는데, 좌부승지 남용익 및 사관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유태의 상소문을 내놓고 용익으로 하여금 읽게 하였는데, 읽다가 ‘뭇 신하들이 책임지고 일에 나서는 이가 적다.’ 한 구절에 이르러, 상이 무엇을 이룸이냐고 묻자, 유태가 아뢰기를,</p> <p>“선왕께서는 크게 무엇인가 하려는 뜻이 있었는데 신하들이 그 뜻을 받들어 맡아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p>	<p>上御興政堂，引見護軍李惟泰、工曹佐郎李翔、左副承旨南龍翼及史官等入侍。上出惟泰疏，使龍翼讀之。讀至群臣少有承當之語，上曰：“何謂也。”惟泰曰：“先王有大有爲之志，而臣下未有承當者，故終不成其志耳。”又讀至官職數遞之弊，惟泰曰：“此是今日</p>

	<p>하였고, 또 읽다가 ‘관직을 자주 가는 폐단이 있다.’ 한 구절에 이르러 유태가 아뢰기를,</p> <p>“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큰 폐단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대간들이 조금만 불안한 일이 있으면 곧 인피를 하고, 궤초를 하면 반드시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는다. 아침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저녁에는 또 와서 인피하고, 게다가 또 전례를 따라 체직을 청하는데, 무슨 병이 한 시각 내에 드는 병이 있을 것인가?”</p> <p>하였다. 또 읽다가 서리(書吏)의 폐단에 관한 대목에 이르러 유태가 아뢰기를,</p> <p>“우리 나라는 서리의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 관원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모르고 오로지 서리에게 온통 맡겨버리기 때문에, 서리들이 그것을 기화로 농간을 부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조식(曹植)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서리 때문에 망한다.’ 하였는데, 이이(李珣)도 그 말에 대하여, 좀 지나치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p> <p>하였다. 염분(鹽盆)·어전(漁箭) 조항에 이르러 유태가 아뢰기를,</p> <p>“각 아문과 여러 궁가의 염분·어전에 대하여, 그 세금을 국가가 받아들이면</p>	<p>之巨弊也。” 上曰：“臺諫有些不安之事，則輒爲引避，牌招則必稱病不進。朝既不進，夕又來避，而又因前例請遞之，豈必有病於一刻之內也。” 又讀至書吏之弊，惟泰曰：“我國書吏之弊甚多，官員不知職事，而專委於書吏，因緣用奸，無所不至。故儒臣曹植曰：‘我國以胥吏亡’，李珣以爲：‘此言雖過，而亦有理矣。’ 至鹽盆漁箭，惟泰曰：“各衙門諸宮家鹽盆漁箭，自國家捧之，則可補國用矣。先朝發遣御史，廉察此等事，而事未就緒，遽值國恤。今若更遣其時御史，詳細廉察，則似好矣。且軍兵等事，必須以先王之心爲心矣。” 至田政等事，惟泰曰：“京畿土薄，若減其田之等數，則似好矣。” 龍翼讀訖，上曰：“疏中所陳，無非可爲之事。當更議于廟堂，而處之焉。” 惟泰曰：“伏聞先王卽祚以後，絕不近酒。故殿下不知酒味，此語誠然乎哉？” 上曰：“然。先王，因朝臣或有崇飲者，每以斷酒非難，戒之。”</p>
--	---	---

	<p>국가 용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왕조에서 어사를 내보내 그러한 동등의 일을 탐문 규찰하도록 하였는데, 일이 단서가 잡히기도 전에 갑자기 국상을 당했던 것입니다. 지금 만약 그때 그 어사를 다시 보내 상세히 탐문 규찰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병(軍兵) 등의 문제는 모름지기 선왕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p> <p>하고, 전정(田政) 등의 문제에 이르러 유태가 아뢰기를,</p> <p>“경기도는 토지가 척박하니 전토의 등수(等數)를 감해주면 좋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용익이 다 읽고 나자, 상이 이르기를,</p> <p>“상소 내에 한 말들이 모두 시행할 만한 일들이니 다시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유태가 아뢰기를,</p> <p>“듣건대 선왕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전혀 술을 가까이 않으셨기 때문에 전하께서도 술맛을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사실이다. 선왕께서는 조정 신료 중에 혹시 마시기 좋아하는 자가 있으면 언제나 술 끊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경계하셨다.”</p>	
--	---	--

<p>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19일(계유) 1번째기사</p>	<p>비국이 아뢰기를, “바라건대 한성부로 하여금 각부(各部)에 신칙하여 성 안의 전염병 환자를 낚 낚이 찾아내어 동서 활인서로 보내 치료를 받게 하고, 약물은 의사(醫司)에서 공급하게 하며, 그 중의 식량이 떨어진 자에게는 상평청에서 제공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p>	<p>癸酉/備局啓, “請令漢城府, 申飭各部, 一一搜出城中染病人, 送于東西活人 署, 使之救療, 藥物則令醫司覓給, 其 糧絕者, 亦令常平廳題給, 俾不至死 亡。 上從之。</p>
<p>현종 2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5월 27일(신사) 1번째기사</p>	<p>이 해에는 각처 유민들로 성중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들이 많아 상평청이 3월 10일부터 5일 간격으로 건량(乾糧)을 주어 진구하여 왔었는데, 이때 와서 보 릿가을이 이미 닳았다 하여 드디어 진구를 정지하고 각자에게 15일간의 식량 을 주어 제고장으로 보냈다.</p>	<p>辛巳/是歲各處流民, 多行乞於城中, 常平廳自三月初十日, 間五日, 給乾糧 以賑之。 至是, 麥秋已至, 遂停賑, 各給十五日糧, 罷遣之。</p>

<p>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7월 13일(병인) 1번째기사</p>	<p>김수항(金壽恒)을 예문관 제학으로, 이후(李埴)를 집의로, 성후설(成後高)을 장령으로, 이동로(李東老)를 지평으로, 목겸선(睦兼善)을 사인으로, 안후열(安後說)을 수찬으로, 이정기(李廷夔)를 병조 참의로 각각 삼았다. 정기가 일찍이 간장(諫長)으로서 이동현을 잡아들여 국문하자는 아뢰에 참여하였다가 크게 시휘(時諱)에 저촉되어, 다시는 청선(淸選)에 뽑히지 못하였고 심지어 은대(銀臺) 물망에도 추천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기로서는 뜻을 얻지 못하여 침울한 빛이 말과 얼굴에 나타났다. 이조 판서 홍명하가 정기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웃으며 말하기를, “일경(一卿)이 피곤해 보이는군. 벼슬자리 하나 쥐야겠네.” 하었는데, 일경은 정기의 자(字)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끄트머리 후보자로 낙점(落點)을 받았던 것이다. 이때 일상을 두둔하는 자들은 쌀 실은 배 문제를 놓고, 사간원이 망녕스레 한 말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는데, 경기 감사 조형이 일상의 집에다 술자리를 차려두고 정기의 집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초청하여 함께 마시면서 화해하는 자리라 하고 술잔을 주고 받았다. 이때 정기가 술잔을 들어 일상에게 넘기자 일상이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르기를, “사대부(士大夫)도 정기 술을 마신다던가?” 하었는데, 정기는 다만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p>	<p>○丙寅/以金壽恒爲藝文館提學，李埴爲執義，成後高爲掌令，李東老爲持平，睦兼善爲舍人，安後說爲修撰，李廷夔爲兵曹參議。廷夔曾以諫長，參李東顯拿問之啓，重觸時諱，不得更調淸選，至於銀臺之望，且不注擬，廷夔鬱鬱不得意，形於辭色。吏曹判書洪命夏見廷夔憔悴，笑曰，一卿疲矣，可授一官。一卿，廷夔字也。至是，以未擬受點。時護一相者，多以米船之說，爲諫院妄論，京畿監司趙珩設酒於一相家，以廷夔家近，邀去同飲，謂之和論，酬酢之際，廷夔舉杯傳於一相，一相怒而起曰：‘士大夫飲廷夔酒耶。’廷夔但俛首而已。</p>
<p>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p>	<p>승지들에게 정원에 있는 공사(公事)를 가지고 입시하라고 명하니, 해당 방(房)이 각자 차례에 따라 아뢰었다. 우승지 남용익(南龍翼)이 아뢰기를,</p>	<p>命承旨持留院公事入侍，該房各以次奏進。右承旨南龍翼進曰：“臣曾前待罪</p>

<p>17년) 8월 5일(무자) 6번째기사</p>	<p>“신이 전에 경기 고을의 수령으로 있었으므로 사도시의 뽕쌀 방납이 민간에 큰 폐단이 된다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어공(御供)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배수(倍數)를 봉납(奉納)했는데 날마다 값이 뛰어서 많은 경우에는 10배에 이르기도 하고 적은 경우에도 6, 7 배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근이 극심해서 쌀이 황금처럼 귀한 때를 당하여 결단코 그릇된 관습을 되풀이하여 백성들의 곤궁함을 가중시킬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각 고을로 하여금 직접 쌀을 가지고 와서 본시와 수량을 대조, 납부토록 해서 방납의 폐단을 영구히 제거함으로써 기내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가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상세히 분부하여 영구한 규정으로 삼는 것이 옳다.”</p> <p>하였다. 윤집(尹鑣)이 아뢰기를,</p> <p>“하찮은 일이지만 민폐에 관계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신이 광주(廣州)에 있을 때 보니, 내농포(內農圃)의 하인들이 강외(江外) 지방을 떼지어 돌아다니면서 공상(供上)이라고 핑계대고 밭에 있는 채소를 함부로 탈취하며, 심지어는 추수 후에 저장해 둔 무우를 캐가기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뿐 아니라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보아도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담당 내관을 추고하고 농포의 하인들을 적발해 죄를 다스리소서.”</p> <p>하니, 따랐다.</p>	<p>畿邑，詳知司稟寺粳米防納，爲民間鉅弊。初爲御供事重，倍數以奉，而日漸騰踊，多或至十倍，少不下六七倍。當此饑饉孔慘，粒米如金之日，決不可因循謬習，以重民困。請令各邑，親自領來，與本寺照數交納，永除防納之弊，以爲畿民一分之惠。”上曰：“詳細分付，永爲恆式可也。”尹鑣曰：“事雖微細，係是民弊，敢達矣。臣居在廣州，目覩內農圃下人，成群橫行於江外，稱以供上，田間蔬菜，恣意奪取，至於秋後藏置之蕪菁，亦多掘去。不但閭里怨苦，揆以事體，亦甚未安。請當該內官推考，農圃下人，摘發治罪。”從之。</p>
---------------------------------	---	--

<p>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22일(을사) 3번째기사</p>	<p>충홍 감사(忠洪監司) 오정원(吳挺垣)이 치계하여 훈련 도감·충훈부·내수사 노비의 신공(身貢)과 어영청(御營廳) 보미(保米) 및 기타 각사 노비의 신공을 모두 쌀로 바꾸어 도내에 저장해 두어 명년 봄에 진휼하는 밀천으로 삼도록 하기를 청하고, 또 노직(老職)의 공명첩(空名帖)을 더 주어 양곡 모으는 길을 넓힐 것과 노비 추쇄하는 일을 멈추어 소요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청하니, 비국에서 거의 대부분 시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회계하였다.</p>	<p>忠洪監司吳挺垣馳啓，請訓局勳府及內司奴婢身貢、御營廳保米及其他各司奴婢身貢，竝令作米，留置道內，以爲來春賑資。且請加得老職帖文，以廣得粟之路。且停推奴之政，以除騷擾之弊。備局回啓，太半不見施。</p>
<p>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8월 23일(병오) 1번째기사</p>	<p>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소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금년의 흉작이 이처럼 극심하니 내년엔 진구할 방도를 미리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서(兩西) 지방에는 방출한 환곡 외에 창고에 보관된 곡식이 양호(兩湖) 지방보다는 제법 많으니 관례를 깨고 서울로 가져다가 선혜청에 주어 양호 지방의 금년도 상납 수량에 충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양호 지방에서 상납하지 않고 그대로 유치해 둔 쌀로 명년 봄에 진구하는 밀천을 삼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비국이 이어 관서 지방의 쌀과 좁쌀 2만 석과 걸곡식 1만 석, 해서 지방의 쌀과 좁쌀 2만 석과 걸곡식 5천 석을 배로 서울에 운반하기를 청하였다. 그래서 이듬해인 신축년에 도성 백성들이 이것을 힘입</p>	<p>○丙午/上御便殿，召見大臣及備局諸臣。領議政鄭太和曰：“今年凶歉，至於此極，來歲賑救，不可不預講。兩西分糶外留儲之穀，比兩湖頗優，請破常格，取來京中，給與宣惠廳，以充兩湖今年上納之數。仍令兩湖留置不上納之米，以爲明春賑救之資。”上從之。備局仍請船運關西大小米二萬石、皮穀一萬石、海西大小米二萬石、皮穀五千石，至京師。翌年辛丑，都民賴以得活，兩湖亦蒙其惠，餓死者無多。</p>

	<p>어 살아갈 수 있었고, 양호 역시 그 혜택을 입어 굶어 죽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p>	
<p>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9월 9일(신유) 2번째기사</p>	<p>예조가, 삼절일(三節日)에 올리는 방물(方物)·물선(物膳)을 임시로 감축한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금년부터는 복구해야 한다고 계품하자, 답하기를, “금년 흉년은 지난해보다 심하니, 두 자전(慈殿)의 방물 외에는 바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p>	<p>禮曹以三節日方物物膳權減之限已過，自今年當復舊稟啓，答曰：“今年凶歉，甚於往年，兩慈殿方物外，其令勿獻。”</p>
<p>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9월 15일(정묘) 3번째기사</p>	<p>영돈녕 이경석이 분부에 따라 소장을 올려 구황하는 계책을 조목조목 진달하고, 또 송도(松都) 옥사에 대해 장황하게 변명하였다. 구황을 논한 것은 주(周)나라 제도의 황정(荒政) 12조 및 《설원(說苑)》의 육정(六正)과 육사(六邪), 《한서(漢書)》의 자사 육조(刺史六條)를 고려조의 고사에 따라 경외의 대소 관아로 하여금 각각 1통씩을 베껴 여러 청사에 붙이게 하라는 내용이었으며, 또 앞으로 부세(賦稅)를 감면하여 거두어 들인다는 것을 민간에 미리 알려 이민적(李敏迪)의 말과 같이 하기를 청하고, 또 남한 산성과 강도(江都)에 비축한 양곡을 방출하여 적절하게 기민들을 진휼할 것을 청하였다. 그런데 그의 송도 사건에 대한 변론은 오로지 김영(金泳)을 편들고 임부양(林敷陽)을 힘껏 배척하여 마치 자기의 억울함을 송사하는 것 이상이었다. 또 말하기를 ‘여러 상인들 속에 앉아서 장사치들을 부식(扶植)시키면서도 혐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도리어 옥사에 뇌물을 받는 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의심받았다.’고 했는데, 대개 남노성의 상소 중에 ‘다른 사람을 시켜 신을 비방했다.’고 한 말을 가리킨 것이다. 상이 우악하게 답하고, 또 송도 옥사는 시비가 어떤지를 살펴서 조치할 것이니 경은 안심하라고 타일렀다.</p>	<p>領敦寧李景奭上應旨疏，條陳救荒之策，且盛(辨) [辯] 松都之獄，縷縷不已。其論求荒，則請以周制荒政十二及《說苑》六正六邪、《漢書》刺史條，依麗朝故事，令京外大小官司，各寫一通，付諸廳壁，且請以前頭減捧賦稅事，預先知委民間，如李敏迪之言，又請發南漢、江都所貯，量宜賑給飢民。而其論松都事，則專右金泳，力斥敷陽，不啻若自己之訟冤。且曰：“坐在衆商之淵，扶植賈豎之流，不以爲嫌，而反以獄貨，疑於人”云。蓋指南老星疏中：‘能令人謗臣之言也。’上優答，且諭以松都獄事，當觀是非之如何而處之，卿其安心。</p>

<p>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9월 19일(신미) 1번째기사</p>	<p>상이, 굶주린 백성들이 앞으로 부세(賦稅)를 줄여 진휼하는 조치가 있을 것임을 모르고 지레 흩어지는 폐단이 있을까 하여 불쌍하고 민망히 여기는 뜻을 갖추어 팔도 감사에게 하유하였다.</p> <p>“나는 덕이 없는 사람으로 외람되게 임금의 자리를 지키자니 중임을 감당할 수 없어 근심과 두려움에 항상 얇은 얼음을 밟듯, 깊은 물가에 다다른 듯하다. 하물며 하늘이 흠향하지 않아 이렇게 큰 재변을 내리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장차 구렁텅이에 떨어져 죽을 운명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 식량은 백성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것으로 식량이 없으면 백성이 존재할 수가 없고, 백성은 국가의 근본으로 근본이 동요하면 나라는 망하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내 마음이 타는 듯하여 잠도 편히 잘 수가 없고, 음식도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는다. 비록 병중이지만 한가하게 있을 수가 없어 자주 신료를 접견하고 널리 여러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 구휼하는 방책을 두루 강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실제적인 혜택을 입히지도 않았다.</p> <p>아, 굶주린 백성들은 장차 내가 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아 팽개쳐 버렸다고 하면서, 조정에서 밤낮없이 걱정하여 마치 자기 몸이 아픈듯 괴로워한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대개 해마다 흉년이 들어 국고가 텅비었는데, 가을 농사를 두루 살피지 못해 재상(災傷)과 결실을 자세히 알기가 어려워 지금 한창 방책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조치하는 일은 아직 거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는 연분(年分)의 등급을 살펴 재상과 결실의 상태를 자세히 안 뒤에 특별히</p>	<p>辛未/上以飢民不知前頭蠲賑之事，先有流散之弊，備將哀憫之意，下諭八道監司曰：“予以涼德，叨守丕基，惟不克負荷是懼，惴惴慄慄，常若履薄而臨深。況今天心不孚，降此大侵，哀我赤子，將未免溝壑之填。噫！食者民之天也，無食則無民，民者國之本也，本搖則國亡。言念及此，我心如焚，寢不安席，食不下咽。雖在疾病之中，亦不敢自暇，頻接臣僚，敷納群言，揀恤之方，靡策不講，而迄無一事之措爲、實惠之普被。噫！億萬仰哺之赤子，將謂予棄而不恤，置之相忘，必不知朝廷日夜憂勞， 惘關若已之意也。蓋連年饑饉，國儲蕩竭，秋省未遍，災實難詳，方有料理審處之事，未及舉行耳。年分覆審，詳知災實之多少，然後其尤甚被災之處，則稅貢等役抄軍軍布等事，所當蠲減，其餘凶歉之處，亦當隨其輕重，而量減賦役矣。至於救恤之政，則將有移粟變通之舉，而內而</p>

심하게 재상을 당한 곳은 세공(稅貢) 등의 부역과 초군(抄軍)과 군포(軍布) 등을 덜어 주겠고, 그 나머지 흉년이 든 곳에도 정도에 따라 부역을 줄여줄 것이다. 구휼하는 정사에 있어서는, 곡식을 운반하여 변통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며, 안으로는 각 관아와 밖으로는 각 영문(營門)에 비축한 곡식과 베도 그 실지 수량을 조사하여 가져다 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금 강구하는 정책들이다. 만약 멀리 있는 백성들이 조정에서 궁핍히 여기는 본의를 모르고 당장의 위급을 감당하지 못하여 유망(流亡)한다면, 아무리 선정을 베풀더라도 이미 흩어진 뒤에야 무슨 시행할 일이 있겠는가. 아, 농토에 정착하여 편안히 살며 옮겨 가기를 싫어하는 인정은 누구나 같은 것인데,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어찌 하고 싶은 일이겠는가. 이번의 재해는 팔도가 모두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 가더라도 살아갈 방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필시 요역을 치를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침탈을 면해 보고자 해서이다. 이것이 내가 조정의 뜻을 먼저 알리려는 본의이다. 감싸주고 어루만져 줄 이러한 책임은 실로 번신(藩臣)에게 있는 것이니 경들은 모름지기 이러한 사실을 도내에 두루 알려 심산 유곡에까지 모르는 곳이 없게 하라. 그리고 경들 또한 나의 지극한 뜻을 체념(體念)하여 여러 고을 수령들과 정성을 다하여 위문함으로써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갑자기 향토를 떠났다가 길에서 쓰러져 죽는 자가 잇달지 않도록 하라.”

各司，外而各營所儲穀布，亦將覈其實數，而取用矣。此皆今日之所講究者，而遐遠之民，若不知朝家矜恤之意，不堪目前之急，未免流亡之患，則雖有善政，將何施於既散之後哉？嗚呼！安土重遷，人情所同，去其鄉井，豈其所欲。今茲大侵，八路皆然，雖適他土，亦無生理，而猶且爲之者，必以徭役無自辦之勢，而欲免其侵徵也。此予之所以必欲先布朝廷之本意也。任此懷撫之責，實在藩宣之臣，卿須以此遍諭道內，使深山窮谷，無不聞知。卿亦體予至意，與列邑守令，竭誠慰撫，使吾民不至於遽離鄉土，顛連道路也。”

<p>현종 3권, 1년(1660 경자 / 청 순치(順治) 17년) 9월 27일(기묘) 3번째기사</p>	<p>상이 흥정당(興政堂)에서 뜰을 뜨려 하면서, 도제조 이하를 재촉하여 의관보다 먼저 입시케 하고 그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르기를,</p> <p>“백관들에게 녹봉을 줄 기일이 이미 박두했으나 병으로 인견하지 못하여 녹봉을 줄이는 일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p> <p>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p> <p>“신의 의견은 산료법(散料法)을 시행함으로써 재변에 대한 도리를 보이자는 것인데 우상은 매양 녹봉을 감하자고 말하고, 원임 대신 역시 진달한 차자 중에 언급했으니, 오직 성상께서 결단하시기에 달렸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이번 겨울 분기의 녹봉은 6품 이상까지는 1석을 감하고, 산료법을 시행하는 문제는 형세를 보아 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p>	<p>上受灸於興政堂，趣都提調以下，先醫官入侍，使進前謂曰：“百官頒祿，日期已迫，而病未引見，裁省之事，尙未停當矣。”太和對曰：“臣意則欲散料以示變常之道，而右相每以減祿爲言，原任大臣，亦及於陳筭中，惟在自上裁斷。”上曰：“今冬等祿俸，限六品以上減一石，散料事則觀勢爲之可也。”上又曰：“供上之物，宜先減省。司稟寺粳米中米、內酒房香醞米，各可減半。”太和曰：“粳米中木，厥數各二十石，容可量減，酒房米，則自前減之又減，今則一日所供只一瓶，以事體言之，豈可更減乎？”上曰：“當以節損爲主，不得不如是。兩色米則半減，香醞米則減三之一，可也。”太和曰：“賑恤裁省等事，不容少緩，而趙復陽差下句管堂上之後，嫌其自陳達，而自居其任，再疏祈免。蓋人心浮薄不無</p>

	<p>“공상(供上)하는 물품도 먼저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시의 갱미(粳米)80)와 중미(中米), 내주방(內酒房)의 향온미(香醞米)를 각각 반으로 감하는 것이 가하다.”</p>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갱미와 중미는 그 수량이 각각 20석이니 적절히 감할 여유가 있으나 주방미는 전에 줄이고 또 줄여서 지금 하루에 지공하는 것이 한 병뿐이니, 사체로 말하더라도 어찌 다시 감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절약을 주로 하자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갱미와 중미는 반으로 감하고, 향온미는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 옳다.”</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진흙하고 줄이는 등의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는데 조복양(趙復陽)은 구관당상으로 차임된 후에 자기가 진달하고 자신이 그 직임을 맡은 것을 혐의롭게 여겨 두 번이나 소를 올려 체면시켜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대개 인심이 각박하여 말이 없지 않으니 복양이 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소를 올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데가 있으니 절대로 체직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云云，復陽之辭是矣。至於再疏，殊涉過當，決不可許遞矣。”上曰：“牌招察任可也。”太和又曰：“右副承旨俞榮，亦宜遞付閑職，與復陽同察裁省句管之任。”上曰：“然則俞榮承旨遞差。”復陽以峻於黨論，爲儕輩所推許，而實無才幹，都昧吏事。榮則又出復陽下。太和非不知之，然且推薦如此。蓋不敢少違於時論也。古之蘇模稜，必不如是之甚。識者鄙之。上以松都罪人等元情公事，出示太和曰：“卿見此獄情乎？”太和曰：“臣未之見也。”上命都承旨吳挺一展讀訖，教曰：“夢錫之事，實多疑端矣。廟宇鎖匙，初何以覓之，及其終也，不置於房中，而置之樽所床上云，奸狀顯然矣。”太和曰：“渠雖稱冤，張大晚供辭中，亦言其事矣。”上曰：“諸人所招如此，雖欲掩伏得乎。”仍命嚴刑究問。提調等退出閣門外，內侍引醫官入。既受灸，醫官出來，遂次第罷黜。</p>
--	---	---

	<p>“패초하여 직임을 보게 함이 가하다.”</p> <p>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p> <p>“우부승지 유계 또한 체직시켜 한직에 두고 복양과 함께 절감하는 일을 담당하게 함이 마땅합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그렇다면 유계의 승지직을 체차하라.”</p> <p>하였다. 복양은 당론에 강경하여 동배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나 실은 재능이 없었고, 행정능력은 전혀 어두웠다. 유계는 또 복양보다도 못하였다. 태화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추천한 것은 감히 시론을 어기지 못해서였으니, 옛날의 소모릉(蘇摸稜)81)도 필시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식자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상이 송도(松都) 죄인들의 원정공사(元情公事)를 태화에게 내어 보이면서 이르기를,</p> <p>“경은 이 옥사의 실정을 보았는가?”</p>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신은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p>	
--	--	--

	<p>하자, 상이 도승지 오정일(吳挺一)에게 명하여 펴서 읽게 하였다. 읽기를 마치자 이르기를,</p> <p>“양몽석(梁夢錫)의 일은 실로 의심스러운 단서가 많다. 묘우(廟宇)의 자물쇠를 처음에 어떻게 발견했으며, 마지막에 가서는 방안에 놓아두지 않고 술독이 있는 상위에 놓았다고 했으니 간사한 정상이 현저하다.”</p>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그자가 비록 억울하다고 하나 장대만의 공초에서도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여러 사람들의 공초가 이와 같으니 숨기려 한들 되겠는가.”</p> <p>하고, 엄하게 형문하여 캐묻게 하였다. 제조 등이 함문 밖으로 나가자, 내시가 의관을 인도하여 들어왔다. 땀을 뜨고 난 뒤 의관이 나오자, 드디어 차례로 파하고 나갔다.</p>	
--	---	--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월 11일(신유) 1번째기사</p>	<p>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원임 이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늘 경들을 보자고 한 것은 천재와 시변이 요즈음 더욱 심하고 더구나 별의 재변이 너무 참혹하여 내가 매우 두려워서 재변을 사라지게 할 방법을 듣고자 해서이다.” 하니, 이경석이 아뢰기를, “겨울철에 우레와 지진으로 산이 무너지고 물길이 끊어지는 재변이 동시에 중첩해서 나타났으며, 더구나 이번에는 요성(妖星)이 또 나타났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다만 신은 정신이 매우 혼미하여 재앙을 없앨 방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정태화는 아뢰기를, “무오년(111) 에 객성(客星)이 자주 나타나더니 그때 참혹한 화가 있었는데, 지금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매우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전부터 별의 이변이 있을 경우에는 문신 중 천문에 밝은 자를 가려 서운관(書雲觀) 관원과 함께 천후(天候)를 살폈습니다. 지금은 문신 중에 그런 사람이 없고, 전 군수 이광보(李光輔)가 그러한 기술이 있다는 소문이 있고, 광흥 주부(廣興主簿) 송이영(宋以穎) 역시 천문학 겸교수(兼教授)이니 함께 천후를 관측하게 함이 어</p>	<p>辛酉/上御興政堂, 引見大臣原任以下。 上曰: “今日所以見卿等者, 正以天災時變, 近日益甚, 況此星變孔慘, 予心憂慄, 願得聞弭災之策耳。” 李景奭曰: “冬雷地震山崩流斷之變, 疊見於一時, 況今妖星又見, 殊可驚心。 第臣昏甚, 未知消弭之道, 如何則可也。” 鄭太和曰: “戊午年客星頻出, 其時有慘禍, 今又出見, 極可驚慮。 自前有星變, 則擇文臣中曉解天文者, 與書雲官員, 同爲看候。 今則文臣中無其人, 前郡守李光輔以此術見稱, 廣興主簿宋以穎亦天文學兼教授也, 使之同爲測候何如?” 景奭曰: “擇定文官, 所以檢其怠慢, 雖不得曉解甘石之術者, 擇數三名官, 輪直看候似好矣。 上許之。 鄭維城曰: “看候末事耳。 消弭之道, 似不在於此。” 俞棨曰: “弭災之道, 莫如修德。 修德固是應天之本, 而其中又有節目, 省刑罰, 薄賦歛, 躬節儉, 最爲緊務。” 如減膳等</p>

	<p>땡겠습니까?”</p> <p>하고, 경석이 아뢰기를,</p> <p>“문관을 가려 정하는 것은 근무 자세를 단속하기 위함이니, 감석(甘石)112)의 술에 밝지 못한 자들이라도 두세 명의 명관(名官)을 가려 돌아가며 수직하면서 천후를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자, 상이 허락하였다. 정유성(鄭維城)이 아뢰기를,</p> <p>“천후를 살피는 일은 말단일 뿐입니다.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방도는 이런 것에 있지 않은 듯합니다.”</p> <p>하고, 유계는 아뢰기를,</p> <p>“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방도로는 덕을 닦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덕을 닦는 일이야말로 하늘의 견책에 응하는 근본입니다. 그 가운데는 또 절목이 있으니,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이며, 몸소 근검절약하는 일이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등의 일들도 말단적인 것입니다.”</p> <p>하고, 이어서 먼저 선혜청의 미곡 수천 석을 빌려 시장에 내다 팔아 그것으로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고, 강물이 녹기를 기다려 지난 겨울에 결정한 의논에 따라 강도(江都)의 군량미를 운반해다 갖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유계가 당시 진흙 제조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다.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p>	<p>事，亦未矣。仍請先貸宣惠米穀數千石，出市發賣，以濟無告窮民，俟江冰既解，依前冬議定，運致江都餉米以償之。上許之。榮方兼賑恤提調，故有是請。洪命夏曰：“近來士夫家奢侈，甚於宮中，閭閻又甚於士夫家，珠翠錦衣，極其靡麗。至於婚喪所費，亦無限節，不有國法，放僻如此，何以爲國乎？”太和以災異請免，上曰：“以予不德，常自愧懼。召災致譴，豈可專責於卿等乎？君臣上下，所當各自勉勵，以責來效。”太和又請解衛衛大將之任曰：“所屬軍官，臣每謂當罷，而至今不罷。軍官若不罷，則臣之將任，願先遞。”又不許，仍更議軍官當罷與否。李景奭請問于武臣。李浣曰：“儒臣皆以爲雖有變亂，此輩必無可恃，當此凶歲，虛費國穀，不如罷去，臣不敢更論。”柳赫然曰：“朝士所帶下人，亦各有料，則此輩受料，何害之有。且此輩非專爲斗料，或冀官爵，或習武才，各有所望，而今難其繼廩，一時罷遣，則必有落莫之心。”上問食料幾何。太和曰：“以武才付料，所食不多，一廳一月，只五十人矣。”上曰：</p>
--	--	--

	<p>“근래 사대부 집안의 사치가 궁중보다 심하고, 여염이 또 사대부 집안보다 심하여 보석이나 비단옷의 치장이 극히 화려합니다. 혼인이나 상례에 드는 비용도 한정이 없어 국법에도 아랑곳 않고 이렇게 사치하니 어떻게 나라가 되겠습니까.”</p> <p>하였다. 태화가 재변을 이유로 사면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내가 덕이 없어 항상 스스로 두려워하며 부끄럽게 생각한다. 재변을 부르고 하늘의 견책을 당하는 것을 어찌 전적으로 경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겠는가. 군신 상하가 각기 스스로 힘써서 앞으로 성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p> <p>하였다. 태화가 또 호위 대장의 직임을 해면시켜 줄 것을 청하면서 아뢰기를,</p> <p>“소속 군관을 혁파해야 한다고 신이 매양 말했는데도 지금까지 혁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군관을 혁파하지 않는다면 신의 대장 직임이라도 먼저 체직시켜 주소서.”</p> <p>하였으나 또 허락하지 않고, 이어 군관의 혁파 여부를 다시 의논하게 하니, 이경석이 무신들에게 물어보기를 청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p> <p>“유신들은, 변란이 일어나더라도 이 무리들은 필시 믿을 것이 없으니 이러한 흉년에 국가의 양곡을 허비하는 것보다 혁파하는 것이 낫다고 하니, 신은 감히 다시 논하지 못하겠습니다.”</p>	<p>“此非今日猝罷之事， 勿罷。” 因召浣、赫然等進前謂曰：“卽今星變， 主於兵革， 卿等所當益加惕念矣。”</p>
--	--	---

	<p>하고, 유혁연은 아뢰기를,</p> <p>“조사(朝士)가 데리고 다니는 하인들도 각각 급료가 있으니 이들이 급료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또 이들은 오로지 얼마 안 되는 급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벼슬을 기대하거나 무예를 익히려고 하는 등 각기 소망이 있어서인데, 지금 급료를 잇대어 주기 어렵다고 일시에 혁파하여 돌려 보내면 반드시 낙심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급료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다. 태화가 아뢰기를,</p> <p>“무재(武才)로 부료(付料)되어 급료를 받는 자는 많지 않아 한 청(廳)당 한 달에 단지 50인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이것은 지금 갑자기 혁파할 일이 아니니 그대로 두라.”</p> <p>하고, 이어 이완과 유혁연 등을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이르기를,</p> <p>“요즈음 별들의 이변은 전쟁과 관계있는 것들이니 경들은 더욱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p> <p>하였다.</p>	
--	--	--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월 23일(계유) 1번째기사</p>	<p>상이 흥정당에서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중의 서민들은 지금 한창 식량의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국가가 미곡을 발매(發賣)하여 진흙하는 바탕으로 삼으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정사입니다. 다만 값이 헐하고 미곡이 많아서 다투는 자들이 많아 도리어 번잡하게 몰려드는 폐단이 있고, 시골 사람들은 국가에서 미곡을 발매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쌀을 싣고 도성에 들어오지 않아 백성들이 도리어 그 이익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못 의논이 모두들 ‘당분간 발매를 중지하고 다시 자세히 헤아려서 온당한 방안을 강구한 뒤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p>	<p>癸酉/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於興政堂。鄭太和曰：“京中庶民，方有艱食之患，國家發賣米穀，以爲賑活之資，此甚美政。第價輕而米多，爭者已衆，反有紛擾之弊，鄉人以國家方爲賣穀，不復載米而來，故民反失其利。群議皆言姑停發賣，更加詳量，得便宜之策，然後更設宜當云矣。”上曰：“已賣之米幾石耶？”太和曰：“每日出百石，今日當爲八百石矣。”戶曹判書許</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발매한 미곡이 몇 석이나 되는가?”</p>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매일 1백 석씩 방출하니 오늘로 8백 석이 됩니다.”</p> <p>하고, 호조 판서 허적은 아뢰기를, “서울의 시장에는 사사로이 매매하는 자가 전혀 없는데, 지금 정지한다면 편의에 따라 변통하는 즈음에 필시 5, 6일은 소요될 것이니 그 동안에 먹을 식량을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그렇다면 쌀 시장에서 발매할 쌀을 대출받아 사사로이 화매(和賣)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고, 병조 판서 홍명하가 아뢰기를, “호조로 하여금 이 일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한다면 반드시 잘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積曰：“京市絕無私賣者，今若停止，則從便變通之際，必費了五六日字，其間糊口之資，民何從而得之耶？”上曰然。太和曰：“然則分付米市，貸出發賣之米，私相和賣似好矣。”兵曹判書洪命夏曰：“若令戶曹專管此事，則必能善處矣。”右議政元斗杓曰：“戶判身且有病，心力已疲，豈可又責此事？今若分定宣惠備局郎廳五六員，使各掌一處看檢則好矣。”太和曰：“五部各分受五百石，別置五處，使之間五日輪回發賣如何？”吏曹判書鄭致和曰：“五日一次之法，亦不便。京中飢民，逐日賣買以爲命，何以耐過五日？不如每日五部各置一處，賣之爲便。”上命給御營米二百石於京市，講究復設間，使之私相買賣。趙復陽、兪榮，以洪命夏筭中，有乘時謀利之語，連上疏辭免，上命榮、復陽，勿以此介懷，協心議事。大司諫李慶億申前啓，請還收通津縣監李翻特罷之命，上答曰：“爾言至此，翻勿罷，只推可也。”持平鄭重徽連啓，軍器僉正以甲冑監造，至陞資太濫，請還收新命，上不許。</p>
--	--	---

	<p>하고, 우의정 원두표가 아뢰기를,</p> <p>“호조 판서는 병이 있어 심신이 피로한데 어찌 또 이 일을 책임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선혜청과 비국의 낭관 5, 6원에게 분정(分定)하여 각각 1개소씩 맡아서 단속하게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p> <p>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오부(五部)에 각각 5백 석씩 나누어 별도로 5개소를 설치하고 5일 간격으로 돌아가며 발매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p> <p>하고, 이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p> <p>“5일마다 한 차례씩 발매하는 법 역시 불편합니다. 경중의 기민들은 하루하루 매매하여 명맥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5일 동안을 견디겠습니까. 날마다 5부에서 한 장소씩 설치하여 발매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어영청미(御營廳米) 2백 석을 시중에 나누어 주어 복설(復設) 문제를 강구하는 동안 사사로 매매하게 하였다. 조복양(趙復陽)과 유계(兪槩)가 홍명하의 차자 중에 ‘틈을 타서 이익을 꾀했다.’는 말이 있다고 하여 잇달아 소를 올려 사면을 청하니, 상이 유계와 조복양에게 이것을 개의하지 말고 협심하여 국사를 의논하라 하였다. 대사간 이경억(李慶億)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어, 통진 현감(通津縣監) 이숙(李翮)을 특별히 파직시키라고 한 명을 다시 거둘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p>	
--	---	--

	<p>“그대의 말이 이러하니 이속은 파직시키지 말고 추고만 하는 것이 가하다.”</p> <p>하였다. 지평 정중휘(鄭重徽)가 연계(連啓)하여 군기 첨정이 갑옷 제조를 감독했다고 해서 자급을 올려 주기까지 한 것은 너무 지나치니 새로 내린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했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4월 11일(경인) 2번째기사</p>	<p>내의원이 전례에 따라 술을 봉진하여 약으로 드실 것을 청하니, 하교하였다.</p> <p>“이미 금주(禁酒)토록 하였으니, 아무리 약으로 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일마다 한 병(瓶)씩 감하도록 하라.”</p>	<p>內醫院請依例封進服藥酒，教曰：“既令禁酒，服藥之資，亦不當仍用前例。每三日減其一瓶。”</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4월 24일(계묘) 6번째기사</p>	<p>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p> <p>“아침에 이익현(李益賢) 등의 소장 내용을 보건대,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이 이미 갈 데까지 갔으므로 내 마음이 타는 듯하여 밥을 먹어도 편안치가 못하다. 해조로 하여금 참작해서 위급함을 구제해 주도록 하라.”</p>	<p>上下教政院曰：“朝觀李益賢等疏辭，則民生飢困，已致十分地頭，予心如灼，食息靡寧。其令該曹，參酌救急。”前日引對時，鄭太和以爲：“渠雖猥濫投疏，既入之後，惡其濫而不許，恐有歉於聖上由己之仁。宜斟酌</p>

	<p>하였다. 전일 인대(引對)할 때에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p> <p>“그들이 외람스럽게 소장을 올리긴 하였습시다만, 이미 받아들인 후이니, 그 외람된 행동을 미워하여 허락하지 않는다면, 성상께서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인(仁)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흠이 될 듯합니다. 짐작해서 선처함으로써 백성의 기대를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상이 이렇게 분부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때 남한 산성의 미곡 5천 석을 털어내어 경기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의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는데, 익현 등 소에 동참한 80여 인이 또 호조에 호소하며 돌아갈 때 소요되는 양식을 얻기를 원하자 해조가 1인당 미곡 1두(斗)씩 지급하였다.</p>	<p>善處，以慰民望也。”於是，上有是教。時除出南漢米五千石，使京畿監司，分給各邑飢民，而益賢等參疏者八十餘人，又呼訴於戶曹，願得回糧，故該曹人給一斗米。</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5월 20일(무진) 3번째기사</p>	<p>인천 부사(仁川府使) 민주면(閔周冕)이, 백성이 굶주려 죽음이 박두했다는 내용으로 상소하면서 청하기를,</p> <p>“상평청에 현재 있는 미곡을 내어 고을의 규모를 따진 뒤 차등을 두어 나눠 주게 하소서. 또 충훈부·사복시·훈련 도감·어영청의 둔곡(屯穀) 및 은포(銀布)를 가져다가 참(站)에서 인부와 말[馬]을 고립(雇立)하는 자본으로 대비케 하소서.”</p> <p>하니, 상이 그 소를 비국에 내렸다. 비국이 회계(回啓)하기를,</p> <p>“우선 경사(京師)의 미곡을 각읍에 나눠 대여해주고 가을철에 도로 갚게 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仁川府使閔周冕以民飢迫死，上疏請：</p> <p>出常平廳見在米，視邑大小，差等分給。又取忠勳府、司僕寺、訓練都監、御營廳屯穀及銀布，以備站上夫馬雇立之資。</p> <p>上下其疏備局，回啓：“請先以京師米穀，分貸各邑，待秋還償。”從之。</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5월 28일(병자) 5번째기사</p>	<p>상평청이 2월 21일부터 죽을 끓여 기민을 진휼하였는데 그곳에 나와 먹은 자가 3천여 인이었으며, 이밖에 사족(士族)의 부녀와 늙고 병든 사부(士夫) 및 경성(京城) 10리 안에 사는 양반 6백 인에게도 모두 건량(乾糧)을 지급하였고, 동·서 활인서에서 치료받던 전염병 환자 4백 70여 인에게도 사람 수효대로 양식을 지급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진휼하는 일을 정지하고 모두에게 10일 간의 양식을 주면서 해산해 보냈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의탁할 곳이 없는 자 2백 60인을 뽑아내어 1개월 기한으로 10일에 한번씩 양식을 주기로 하였다.</p>	<p>常平廳自二月二十一日，設粥賑饑，就食者三千餘人，而士族婦女及老病士夫及京城十里內兩班六百人，並給乾糧，東西活人署遘厲者四百七十餘人，亦給口糧。至是停賑，皆給十日糧散遣，抄出其中尤無依着者二百六十人，限一朔，間十日給糧。</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7월 4일(신해) 1번째기사</p>	<p>헌부가 아뢰기를, “조가(朝家)에서 포목을 내어 보리를 사들이는 목적은 대체로 진휼하기 위해서인데, 호서(湖西) 열읍(列邑)에서 감사의 분부라 하여 역시 보리를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빚고 있으니, 정지하도록 명하고 감사도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따랐다.</p>	<p>辛亥/憲府啓：“朝家之出布買牟，蓋爲賑恤，而湖西列邑，以監司分付，亦有買牟之舉，以致市價騰踊，請命停止，監司亦命推考。”從之。</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7월 29일(병자) 4번째기사</p>	<p>부제학 유계 등이 상차하였다. 그 대략에, “삼남(三南) 지방 수천리 논밭이 이미 벌경계 타들어가고 있는데 여타 제도(諸道)에서도 차례로 위급함을 고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근고(近古)에 없던 참혹한 한재(旱災)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가(朝家)의 거조를 보면 황급해하는 뜻이 없으니, 신들은 삼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p>	<p>○副提學俞槩等上筭略曰： 三南數千里，既爲赤地，而他餘諸道，次第告急，旱災之慘，近古所無。朝家舉措，未有遑遑之意，臣等竊懼焉。伏聞慶禮之時，宗室婦女，當入闕內，</p>

	<p>삼가 들건대, 경축하는 예식을 거행할 때 종실(宗室)의 부녀들이 들어오면 안에서 연회를 베풀 목적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꽃을 만드는 등 의품(儀品)을 준비하는 것이 사치스러운 정도로 풍성하다고 합니다. 아비가 마루에서 노여워하고 있는데 아들은 방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과 이 어찌 다르다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통렬히 더 유념하시어 내연(內宴)을 정지하도록 하소서.”</p> <p>하였는데, 차자를 들인 이튿날에 답하기를,</p> <p>“차자를 보고는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안에서 경축하는 의식이 있을 때 반드시 친척들을 초청하는 것은 예로부터의 관례이다. 그러나 연회를 베푸는 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인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런 일을 하겠는가. 이토록까지 근거없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니, 내가 제대로 신임을 받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실로 낮이 뜨거워지면서 자책할 뿐이다.”</p> <p>하였다. 외간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과다하게 퍼졌는데도 상의 하교가 이와 같았으므로 유계 등이 더 이상 감히 거론하지 못하였다.</p>	<p>自內將設宴，辦羞造花，儀品豐侈云。此何異父怒於堂，而子讌於室乎？伏願痛加克念，停止內宴。</p> <p>筓入翌日，答曰：“覽筓不覺驚懼。內間慶禮，必請親屬，古之例也。至於設宴，古亦無之，此何時而有此事乎？無根之說，至於此，無非予之不能見信而然也。予實慙赧自責而已。”時外間傳說紛紜，而上教如此，桀等不敢復言。</p>
<p>현종 2년, 윤 7월 2일 (기묘), 두 번째 기사</p>	<p>《효종대왕실록(孝宗大王實錄)》을 편찬한 총재관(摠裁官) 이하에게 고례(古例)에 따라 술을 내리고 사연(賜宴)할 것을 명하였다. 헌부와 정원이 아뢰기</p>	<p>○孝宗大王實錄摠裁官以下，命依古例宣醞賜宴。憲府及政院以爲，當此慘</p>

	<p>를,</p> <p>“이렇듯 참혹하게 가뭄이 든 때에 음악을 연주하며 연회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p> <p>하고, 총재관 이경석(李景奭)도 상차하여 사양하니, 연회를 베풀지 말도록 명하고 단지 중사(中使)를 보내 의정부 및 차일암(遮日巖)에 술을 내리게 하였다. 주홍이 어지간히 무르익을 때 이조 참판 김수항(金壽恒)과 교리 이민적(李敏迪)이 다투면서 예모가 서로 엉망이 되었는데, 수항이 민적에게 말하기를,</p> <p>“자네가 당상(堂上)에 오르기 위해 한 자급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벗어나려고 정조(政曹)에 꺾을 쓰다가 나에게 발각되었으니, 사부(士夫)의 마음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입에서 꺼내기만 하면 자네는 세상에서 행세하지 못할걸세.”</p> <p>하였다. 당시 민적이 가례청(嘉禮廳) 도청(都廳)으로서 한 자급을 다 채우지 못한 관계로 당상에 오르지 못했다. 수항은 민적이 이 때문에 한 자급을 채우려 꺾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말한 한 가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적의 가정 내의 일을 그가 포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적은 시배(時輩)의 중망을 받고 있는 몸이었는데, 수항이 술기운에 편승하여 면박을 주었으므로, 어미에게 문안을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그의 형 이민장(李敏章)의 임소(任所)인 영유현(永柔縣)에 가서는 몇 개월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p>	<p>旱，不可張樂設宴。總裁官李景奭亦上筭辭之，乃命勿設宴，只遣中使，宣醞於政府及遮日巖。酒半，吏曹參判金壽恒與校理李敏迪爭，禮貌相詬，壽恒謂敏迪曰：“君欲陞堂上，圖出一資於政曹，爲吾所覺，士夫爲心，固如是乎？又有一事，吾若出諸口，君不得立於世矣。”時敏迪爲嘉禮廳都廳，以一資未窮，不得陞堂上。壽恒意敏迪爲此圖出一資故云。然所謂一事，人謂持其家內事也。敏迪爲時輩所重，而壽恒乘醉面折之，敏迪托覲母，往永柔縣其兄敏章任所，不還者數月。</p>
<p>현종 2년, 윤 7월 3일</p>	<p>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우상 원두표(元斗</p>	<p>○庚辰/上御興政堂， 引見大臣及備局</p>

<p>(경진),</p>	<p>杓)가 궐안에서 술담그는 쌀을 줄이도록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금이라도 백성을 구제하는 길이 된다면 무엇을 애석해하겠는가.” 하였다. 홍명하(洪命夏)가, 애통해하는 교서를 내리면서 부디 유산(流散)하지 말라는 뜻으로 유시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완(李浣)이 훈국(訓局)의 군병 중에서 노쇠하고 잔약한 자들을 감하여 조금이라도 폐단을 덜 것을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는데, 6백 명을 감하였다.</p>	<p>諸臣。 右相元斗杓請減內醞酒米， 上曰， 若有一毫救民之道， 有何惜也。 洪命夏請下哀痛之教， 且諭以慎勿流散之意， 上從之。 李浣請減訓局軍兵中老殘者， 以省一分之弊， 上允之， 所減六百名。</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8월 17일(계해) 1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원자가 탄생했으니, 각도(各道)에서 진하(陳賀)하는 방물(方物)을 봉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자전 두 분 외에는 봉진하지 말도록 하여 굶주리는 백성에게 조금이나마 폐단을 덜어주도록 하라.”하였다.</p>	<p>癸亥/禮曹啓：“元子誕生， 各道當封進陳賀方物。” 答曰：“兩慈殿外， 勿令封進， 以除饑民一分之弊。”</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9월 3일(기묘) 1번째기사</p>	<p>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관항미(管餉米) 3만 석(石) 및 해서(海西)의 미곡 5천 석을 운송하여 경비에 보충할 것과, 군기시와 교서관의 공물(貢物)을 줄일 것과, 선공감의 긴요치 않은 공역(工役)을 혁파할 것을 명하였다. 이는 심지원과 유계 등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처음에 경상 감사 민희(閔熙)가 사조(辭朝)할 때에 영남의 기민(飢民)들이 미곡을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면포(綿布)로 대신 징수해 줄 것을 청했었는데, 호조판서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 “백성들이 수납(輸納)하기를 꺼리는 것은 조령(鳥嶺)을 넘어오는 그 비용이 몇 배나 더 들기 때문이니, 만약 멀리 수송하는 폐단만 없애 준다면 미곡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본색미(本色米)로 각 고</p>	<p>己卯/上御興政堂引見大臣、備局諸臣， 命運管餉米三萬石、海西米五千石， 以補經費， 減軍器寺校書館貢物， 罷繕工監不緊工役， 從沈之源、俞榮等言也。 初慶尙監司閔熙辭朝時， 以嶺底飢民， 難於出米， 請以綿布代徵， 戶曹判書鄭致和以爲：“民之憚於輸納， 以踰鳥嶺， 其費倍蓰故也， 若無遠輸之弊， 則捧米不至甚難。 請以本色米， 捧留各邑， 俾補賑救之用。” 從之。</p>

	<p>을에서 받아들여 보관시킨 뒤 진구하는 데 보충하도록 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9월 13일(기축) 1번째기사</p>	<p>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p> <p>“국가가 불행하여 해마다 잇따라 크게 흉년이 드니 백성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를 앓는다. 두 분 자전계 올리는 물선(物膳)을 줄이기는 했으나 삭선(朔膳)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영남의 물선을 내년 가을까지 우선 정지하도록 하고, 호남과 호서의 삭선도 참작해서 적당히 줄이도록 모두 해조에 명령하여 거행토록 하라.”</p>	<p>己丑/上下教政院曰：“國家不幸，連歲大無，每念民事，食不下咽。兩殿物膳雖減，朔膳猶存，嶺南物膳，限明秋姑停，湖南、湖西朔膳，參酌量減事，竝令該曹舉行。”</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0월 4일(경술) 2번째기사</p>	<p>탁지(度支)200) 가 경비가 고갈되었다는 이유로 백관의 녹봉을 감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오래도록 어려워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콩으로 지급하던 것을 전미(田米)201) 로 대처하도록 하고 이듬해 봄부터는 5품 이상을 대상으로 1석(石)씩 녹봉에서 감하도록 명하였다.</p>	<p>度支以經費匱竭，請減百官祿俸，上持難久之，至是，命以田米代菽，自明春減五品以上祿一石。</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0월 7일(계축) 1번째기사</p>	<p>함경도의 미곡 1만 석과 강원도의 미곡 1천 석 그리고 조곡(租穀) 3천 석을 옮겨 보내 영남의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하였다.</p>	<p>癸丑/移咸鏡道米一萬石、江原道米一千石、租三千石，賑嶺南飢民。</p>
<p>현종 4권, 2년(1661 신축 / 청 순치(順治) 18년) 12월 16일(신</p>	<p>상이 흥정당(興政堂)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p>	<p>辛酉/上御興政堂，引見大臣及備局諸臣。左相沈之源曰：“近來外方癘疫，處處熾盛，且見兩南狀啓，則饑饉孔</p>

유) 1번째기사

“근래 외방 곳곳에 전염병이 만연되어 있고, 또 양남(兩南)의 장계(狀啓)를 보면 너무도 참혹하게 기근이 들었다 하는데, 전연 구제할 방법이 없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금부에 공무를 집행하는 당상이 없는 관계로, 재상의 반열에 있는 신하가 오래도록 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직 처치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이 매우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홍명하(洪命夏)는 수인(囚人)으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인 만큼 이로 인해 체직시킨다면 사체상 미안하게 되겠습니다만, 김남중(金南重)과 박장원(朴長遠)은 일단 옥당의 차자로 논박을 받은 상태이니 속히 체직시키고 후임자를 내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신하는 모두 체직시키고, 오늘 중으로 후임자를 임명토록 하라.”

하였다. 지원이 또 아뢰기를,

“영남(嶺南) 지방에 흉년든 상황이 특히 혹심하니, 영동(嶺東) 지방에서 1만여 석의 곡식을 실어다 진휼한다 해도 두루 혜택을 입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영동 산화전(山火田)에서 조세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덧붙여 운송함으로써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지원이 또 아뢰기를,

慘，斷無救活之策，誠可悶慮矣。”又曰：“禁府無行公堂上，宰列之臣，滯獄日久，而未有處置，事甚未安。洪命夏則被斥於囚人，因此遞改，事體未安，而金南重、朴長遠則既被玉堂之劄論，宜速遞而出代也。”上曰：“兩臣竝遞，卽日出代可也。”之源又曰：“嶺南之凶荒特甚，雖以嶺東萬餘石穀，轉運以賑，勢難遍及。請更以嶺東山火田收稅之穀，添運救活。”上從之。之源又曰：“畿甸之民，亦多窮餓。今猶如此，況明春乎？竊聞宣惠廳飼馬之穀，多至八千餘石，除出數千石，以爲賑救飢民之地，而牛馬分養於西北道各邑，則似爲一助也。”上曰：“令太僕量定厥數舉行可也。”大司憲洪重普、大司諫李殷相竝請還收李敏求敍用之命，不允。重普請遞閔周冕，而出李墜，殷相請遞丁昌燾，而出李枝茂，竝從之。

	<p>“기전(畿甸)의 백성도 대부분이 굶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더구나 내년 봄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선혜청에서 말[馬]을 기르는 데 쓰는 곡식이 무려 8천여 석에 이른다고 하니, 수천 석을 덜어내어 기민(飢民)을 진구할 바탕을 삼게 하고, 우마(牛馬)는 서북도(西北道) 각 고을에 나눠주어 기르게 하소서.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태복시로 하여금 그 수를 헤아려 정한 뒤에 거행토록 하라.”</p> <p>하였다. 대사헌 홍중보(洪重普)와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이 모두 이민구(李敏求)를 서용하도록 한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홍중보가 민주면(閔周冕)을 체차시키고 이무(李塒)를 출사시킬 것을 청하고, 이은상이 정창도(丁昌燾)를 체차시키고 이지무(李枝茂)를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모두 따랐다.</p>	
<p>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p>	<p>강원 감사가 치계하기를,</p>	<p>江原監司馳啓：“杆城郡守權玲別備二千餘石之穀，用以賑饑。” 命加嘉善</p>

<p>1년) 1월 2일(병자) 3 번째기사</p>	<p>“간성 군수(杆城郡守) 권령(權玲)이 별도로 2천여 석의 곡식을 마련하여 기민(飢民)을 진구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p> <p>하니,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가자(加資)할 것을 명했는데, 연신(筵臣)이 너무 과하다고 논하자, 개정하였다.</p>	<p>階，筵臣論其過濫而改正。</p>
<p>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2일(병자) 4 번째기사</p>	<p>황해 감사가 본도에 기근이 든 상황을 치계하면서, 서울로 운송할 미곡 1만 1천석 중에 절반을 덜어 본도에 남겨둠으로써 진구할 자료로 삼게 하기를 청하니, 비국(備局)에 계하(啓下)하였다. 비국이 아뢰기를,</p> <p>“본도의 원곡(元穀)과 관향곡(管餉穀)을 합치면 모두 27만여 석이나 되니, 올해 환곡(還穀)을 다 되돌려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융통하여 충분히 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납할 미곡이 1만여 석밖에 안 되는데 절반이나 그곳에 남겨두려 하니, 일이 매우 타당치 못합니다.”</p> <p>하고, 방계(防啓)하니 허락하지 않았다.</p>	<p>黃海監司馳啓，本道饑饉之狀，請除留京運米一萬一千石中一半，以爲賑救之資，啓下備局。備局以爲：“本道元穀及管餉之穀通共二十七萬餘石，今年雖未能盡捧還糶，亦足以推移賑救。上納萬餘石之米，至欲留半，事甚未妥。”防啓不許。</p>
<p>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9일(계미) 1 번째기사</p>	<p>상이 자정전(資政殿)의 상참(常參)에 나아갔다. 예(禮)가 끝나자 옥당과 간관이 전(殿)에 올라가 일을 아뢰었다. 대사간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p> <p>“경기 여주(驪州)에 지진의 변고가 있었는데도 도신(道臣)이 즉각 계문(啓聞)하지 않았으니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 정지화(鄭知和)를 추고하소서.”</p> <p>하니, 따랐다. 교리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p>	<p>癸未/上御資政殿常參禮訖，玉堂諫官上殿奏事。大司諫閔鼎重啓：“以京畿驪州，有地震之變，而道臣不卽啓聞，事甚可駭。請監司鄭知和推考。”從之。校理閔維重曰：“凶年禁酒，乃是法典應行之事。御供猶減，況於他乎？請申飭京外，一併痛禁。且外方癘疫漸熾，宜依故事，設行癘祭於各道。”</p>

	<p>“흉년에 금주(禁酒)하는 것은 응당 행해야 할 일로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어공(御供)도 감하는 관인데 다른 것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경외(京外)에 신칙하여 일체 통렬히 금하게 하소서. 그리고 외방에 전염병이 점점 만연되고 있으니,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각도(各道)에서 여제(厲祭)를 거행케 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따랐다. 이민서(李敏叙)가 다시 염분(鹽盆)·어전(漁箭)을 혁파하도록 청한 내용을 신품(申稟)하였는데, 민정중도 아뢰기를,</p> <p>“신이 해변에 사명(使命)을 받들고 나가 해곡(海曲)을 눈으로 확인한 결과 어디고 주인 없는 곳이 없었는데, 모두 궁가(宮家)와 공가(公家)에서 값을 받고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손발을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1년만 임시로 폐지한다면 그리 심한 손해는 없을 것이고 백성들은 필시 기뻐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혁파하려면 완전히 혁파해야지 단지 1년만 폐지한다면 걸치레에 가깝게 될 것이니 부당하다.”</p> <p>하였다. 우승지 정만화(鄭萬和)가 삭서(朔書)230)에 대한 상급(賞給)을 줄이고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만 하사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금년 동안만 상급을 줄이도록 하라.”</p> <p>하였다.</p>	<p>從之。李敏叙更申鹽盆漁箭革罷之請，鼎重亦曰：“臣奉使海邊，目觀海曲，無有無主之處，皆自宮家公家受價取利，民無所措手足。一年權罷，其在得失，不甚關緊，而民情則必悅。”上曰：“罷則全罷可也，只罷今年，近於爲名之地，不當矣。”右承旨鄭萬和請減朔書賞給，只贈居首者，上曰：“限今年減給可也。”</p>
--	--	---

<p>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9일(계미) 2 번째기사</p>	<p>호서 감사(湖西監司) 오정위(吳挺緯)가 하직 인사를 드리니, 상이 인견하고 위 임한 뜻을 저버리지 말도록 유시하였다. 정위가 청하기를,</p> <p>“본도에 있는 내수사·제궁가(諸宮家)·각아문(各衙門)의 염분(鹽盆)을 금년 동 안만 특별히 이급(移給)토록 허락하신다면 그런 대로 무관(貿販)하여 진구할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내사(內司)에 소속된 염분과 춘번(春燔)은 진구하는 데 옮겨 쓰도록 하고, 기 타의 염분도 비국에 말해 적당히 처리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정위가 또 서산(瑞山)과 태안(泰安)의 염(鹽)·철(鐵)·목면(木綿)을 진구 하는 데 옮겨 쓰도록 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해조에 말하여 적절히 처리하게 하라.”</p> <p>하였다. 승지 심세정(沈世鼎)이 아뢰기를,</p>	<p>湖西監司吳挺緯辭朝，上引見，諭以無 負委任之意。挺緯請：“本道所在內需 司諸宮家各衙門鹽盆，限今年特許移 給，則庶可轉販賑活矣。”上曰：“內 司所屬鹽盆春燔，移用於賑救，其他鹽 盆，言于備局，亦量宜處之。”挺緯又 請瑞、泰鹽鐵木，移用於賑救，上曰： “言于該曹量處。”承旨沈世鼎曰：“聞 宋時烈渾家阻飢，至於賣書冊以糊口 云。凡民亦且闕賑，況於此人，豈無 周急之道。”上曰：“言于本道監司， 食物題給。”</p>

	<p>“듣건대 송시열(宋時烈)의 온 가족이 기아(饑餓)에 직면하여 심지어는 서책(書冊)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도 친구해 주는 판에 더더구나 이 사람에 대해 어찌 급한 사정을 돌보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본도 감사에게 말하여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토록 하라.”</p> <p>하였다.</p>	
<p>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10일(갑신) 2번째기사</p>	<p>나라안에서 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p>	<p>禁國中用酒。</p>
<p>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16일(경인)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흥정당(興政堂)에서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鄭太和)가 재생(裁省)할 것에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무릎 걸음으로 나아가 아뢰기를,</p> <p>“신들이 대략 의논해 정했는데, 삼가 상께서 재결(裁決)하시기 바랍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庚寅/上引見大臣、備局諸臣于興政堂。 領相鄭太和持裁省文書跪進曰：“臣等略已議定，恭俟上裁耳。” 上曰：“卿等既已熟講，庸有未盡乎？ 依此行之。” 太和曰：“凡干減省，一如南漢出城初所爲耳。” 又曰：“京畿月令進上，亦有不緊者，敢請稟處。” 仍進一錄紙，上乃命或去或減。 太和曰：“其</p>

	<p>“경들이 이미 충분히 강구했을 텐데 무슨 미진한 점이 있겠는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감생(減省)과 관련되는 일은 일체 남한 산성에서 막 나와서 했던 대로 하옵습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경기 지방에서 달마다 진상(進上)하는 것 중에도 긴요치 않은 것이 있기에 감히 품처(稟處)합니다.”</p> <p>하면서, 이어 기록한 종이 한 장을 바치니, 상이 어떤 것은 없애고 어떤 것은 감하라고 명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기인(其人)234) 의 공물(貢物)이야말로 가장 큰일인데, 1인당 1년의 공물가(貢物價)가 무려 1백 20필(匹)이나 됩니다.”</p> <p>하고,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p> <p>“내간(內間)의 방구들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들이 감히 알 수 있는 성질이 못되니, 상께서 그 숫자를 적당히 감하신다면 어찌 편하지 않겠습니까.”</p> <p>하니, 상이 기록한 것을 바치도록 명하였다. 이경식(李景奭)이 아뢰기를,</p>	<p>人貢物，最是鉅役，一年一名之價，多至一百二十四匹也。”元斗杓曰：“內間房堦，非外人所敢知，自上量減其數，豈不便乎？”上命進其所錄。李景奭曰：“昔在祖宗朝，節用是務，內間溫堦，只數房，餘皆板房，故老傳說如是矣。向因工曹草記，有減元子一房之教，此亦美事。元子誕生之初，隨事節損，非但省費，乃所以惜福也。”上曰然，乃命又減一房。斗杓曰：“此地井水甚惡，久御不便，移御之事，請詢于大臣。”上曰：“本欲以春間移御，決行於二月間可也。然凡干雜物，不可徵於外方，自戶曹料理爲之。”景奭請減廐馬，以省用度。上曰：“減之何難，而脫有意外之用，則太縮亦不便。減其料可也。”又請減營將，上曰：“當初設立，意非偶然，此時尤不可罷也。”景奭又曰：“興平尉公主將出閣，此時興土木，有違恤民之道，姑待秋成似便。”上曰：“欲停土木之役，則勢將借入民家，此亦不便。”戶判鄭致和曰：“姑借閭家，亦愈於興土木矣。”上曰：“擇於二者，取便處之。”閔鼎重曰：“年饑至此，御供已減，臣僚之</p>
--	--	---

	<p>“옛적 조종조(祖宗朝)에서는 절용(節用)을 힘써 내간(內間)의 온돌방이 몇 개 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판방(板房)이었다고 하는데, 고로(故老)들이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조가 초기(草記)를 올리자 원자(元子)의 방 하나를 줄이라고 분부하셨는데, 이 역시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원자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일마다 절약하는 정신을 보여 준다면 비용만 감축될 뿐 아니라 복(福)을 아껴주는 길도 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하고, 이에 방 하나를 더 줄이도록 명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p> <p>“이곳의 샘물이 매우 좋지 않으니 오래 계시기에 불편합니다. 거처를 옮기는 일을 대신에게 자문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본래 봄철썸에 거처를 옮기려고 했다마는, 2월 안으로 결행해야 하겠다. 그러나 일체의 잡물(雜物)을 외방에서 거두면 안 될 것이니, 호조에서 요리하여 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경석이 구마(廐馬)를 줄여 비용을 감축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줄이는 것이야 뭐가 어렵겠는가. 하지만 만약 뜻밖에 써야 할 경우를 상정한다면 너무 줄이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요(料)235) 를 줄이도록 하라.”</p>	<p>仍舊受祿未安。百官頒祿，請自今代以朔料。”上曰：“百官之祿，減之又減，今又減之，何以責廉恥乎？”太和以兵判引入，祿政事過期，請差出參判，依舊例開祿政。上曰可。趙復陽曰：“兩南饑饉，民命垂盡，本道田稅，若畢運京中，則賑救無策。臣意則莫如仍置本道，以爲賑資也。”斗杓曰：“賑恤廳堂上之意，則欲全除兩南之稅，用於賑救。而國家經費，專賴於田稅，經費若絕，何以支繼。”上曰：“湖南右道，雖不當收稅，亦不可全除不捧，捧其實結之稅，以爲賑救之用。左道則或半收、或全收事，商量處之可也。”復陽請別遣賑卹御史於三南，太和亦贊成之，上曰：“極擇差出，先遣兩南。”復陽又請依祖宗朝舊典，復設堤堰司，嚴飭諸道，着實舉行，上曰，自今別加申飭。鄭致和曰：“平安道田稅收米，會錄於軍餉例也。今年稅入大減縮，前頭經費，無以繼用。清南沿海三縣及平壤、中和等八邑，上年田稅收米，請令運來補用。”上曰可。尹絳曰：“臣待罪禁府日淺，凡事固未能通解。閔光燾元情，與李之翼供辭，</p>
--	--	--

	<p>하였다. 또 영장(營將)을 줄이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당초 설립한 뜻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때에는 더더욱 폐지할 수 없다.”</p> <p>하였다. 경석이 또 아뢰기를,</p> <p>“흥평위(興平尉)와 공주가 대궐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이런 때에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백성을 돌보는 도리에 어긋나니, 잠시 추수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이 편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토목공사를 정지시키려 하자니 민가를 빌려 들어가야 할 형편인데, 이 또한 불편한 일이다.”</p> <p>하였다. 호관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p> <p>“우선 민가를 빌린다고 해도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보다는 나은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두 가지 방도 중에서 편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p>	<p>大相不同，而判付以議處爲教。之翼既以言事臺官，特蒙放釋，不可更囚，若不對辨，議處亦難，請與大臣商議。”上問于大臣。太和欲對而未及言，斗杓厲聲曰：“禁府議處公事，乃於榻前請議大臣，有嘗試聖意底意思，殊涉猥濫。大臣雖疲軟，豈可干與此等事也。此是筵中不嚴之致也，在前如此事，三司承旨，必有請推之舉矣。”上哂之。絳默然而退。</p>
--	--	---

	<p>“이토록 흉년이 들어 어공(御供)까지 이미 감했는데, 신료들이 옛날 그대로 녹봉을 받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백관에게 주는 녹봉을 지금부터는 삭료(朔料)236) 로 대신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백관의 녹봉을 그동안 감하고 또 감했는데, 지금 또 감한다면 어떻게 염치있는 행동을 요구하겠는가.”</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병관이 인혐(引嫌)하고 들어간 관계로 녹정(祿政)237) 하는 일이 기한을 넘기게 되었으니, 참관을 차출하여 구례(舊例)에 따라 녹정을 열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p> <p>“양남(兩南)에 기근이 들어 백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만약 본도의 전세(田稅)를 모두 서울로 운송한다면 진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대로 본도에 놔두어 진구할 자료로 쓰게 하는 것만 못하리라고 여겨집니다.”</p> <p>하고, 두표가 아뢰기를,</p> <p>“진휼청 당상의 생각은 양남의 전세를 완전히 면제시켜 진구용으로 쓰자는</p>	
--	--	--

	<p>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비를 전적으로 전세에 의지하고 있는데, 경비를 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호남우도(湖南右道)에서 전세를 거두는 것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면제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니, 곡식이 익은 전결(田結)에서 세금을 거두어 그것을 진구용으로 쓰도록 하라. 그리고 좌도(左道)는 반절만 거두기도 하고 전량(全量)을 거두기도 하되 잘 헤아려서 처리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북양이 진흙 여사를 별도로 삼남(三南)에 파견할 것을 청하니, 태화도 이에 찬성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p> <p>“엄밀히 가려 차출하되 먼저 양남(兩南)에 파견하라.”</p> <p>하였다. 북양이 또 조종조의 구전(舊典)대로 다시 제언사(堤堰司)를 설치하고 제도(諸道)를 엄히 단속해 착실히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지금부터 별도로 더 신칙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p> <p>“평안도에서 전세(田稅)로 거둬들이는 미곡은 군향미(軍餉米)로 회록(會錄)하는 것이 관례인데, 올해는 세입(稅入)이 대폭 감축되었으므로 앞으로 경비를 계속 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청천강(淸川江) 이남 연해의 3개 현(縣)과 평</p>	
--	---	--

	<p>양(平壤)·중화(中和) 등 8개 읍에서 지난해 전세로 거둔 미곡을 운반해 오도록 해 보충해서 쓰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허가하였다. 윤강이 아뢰기를,</p> <p>“신이 금부에 재직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루 모든 일을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광소(閔光燾)의 원정(元情)과 이지익(李之翼)의 공사(供辭)가 크게 서로 다른데, 판부(判付)하시면서 ‘의논해서 처리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익이 일단 일을 말한 대관(臺官)이었다는 이유로 특별히 석방된 상황이라서 다시 가둘 수가 없는데, 만약 대질 신문을 벌이지 않으면 의논해 처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니, 대신과 상의하소서.”</p> <p>하니, 상이 대신에게 하문하였다. 태화가 뭐라고 대꾸를 하려다가 미처 말을 하지 못했는데, 두표가 성난 소리로 아뢰기를,</p> <p>“금부에서 의논해 처리할 공사를 탑전(榻前)에서까지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청한단 말입니다. 이는 성상의 뜻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상당히 외람스러운 일입니다. 대신이 아무리 무기력한 존재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따위의 일에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연중(筵中)이 엄하지 못한 소치인데,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에 대해 삼사(三司)와 승지가 필시 추고하기를 청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빙그레 웃었다. 윤강이 묵묵히 있다가 물러갔다.</p>	
--	--	--

<p>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16일(경인) 3번째기사</p>	<p>함경도의 미곡 1만 5천 석을 강원도에 운반한 뒤, 다시 영남의 영해(寧海)에 수송하여 기민(飢民)을 진휼하였다. 이때 영북(嶺北)만은 조금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곡식을 옮긴 것인데, 백성들이 이 혜택을 상당히 입었다.</p>	<p>運咸鏡道米一萬五千石于江原道，轉輸于嶺南之寧海以賑饑。時獨嶺北稍稔，故移粟于南，民頗賴焉。</p>

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23일(정유)
1번째기사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흥정당(興政堂)에서 인견하였다. 조복양(趙復陽)과 유계(兪槩)가 호남의 전세(田稅)를 서울로 운반해오지 말고 기민(飢民)을 진휼하도록 청하고, 정치화(鄭致和)는 미곡을 운반해 와 경비를 보충할 것을 청하니, 상이 재해를 입은 19개 고을은 전액 감면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경창(京倉)에 운송해 들이도록 명하였다. 사간 이만영(李晩榮)이 아뢰기를,

“호남에서 기인목(其人木)239 을 곡식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긴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초에 행회(行會)했었는데 해가 바뀌어도 감감 무소식이니 해도 감사가 너무나도 태만하다 하겠습니다. 해당 감영의 관리를 우선 경옥(京獄)으로 잡아들여 중하게 죄를 매기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교리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땀을 흘렸다는 불상을 깨뜨려 부수라는 일로 상처하였는데, 성상께서 비답하시며 ‘깨뜨려 부술 필요까지는 없다.’고 분부하셨으므로, 신은 삼가 의혹됩니다. 불상에서 땀이 흘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우선 꼭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과장되게 선전하여 이를 기화로 터무니없이 꾸며낼 조짐이 앞으로 염려되므로, 반드시 통렬하게 물리쳐야만 인심을 진정시키고 뒤편단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꼭 깨뜨려 부수려고 하면 동요될 듯하니 차라리 묻지 않고 놔두는 것이 나으리라고 여겨진다.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丁酉/引見大臣、備局諸臣於興政堂。趙復陽、兪槩請勿運湖南田稅，以賑飢民，鄭致和請運來以補經費，上命被災十九邑則全減，其餘竝令運納京倉。司諫李晩榮啓：“以湖南其人木質穀事，萬分緊急。而冬初行會，歲飜寂然，該道監司怠慢甚矣。請該色營吏，爲先拿致京獄，從重科罪。”從之。校理閔維重曰：“臣於昨日，以出汗佛像毀破事進筭，聖批以不必毀破爲教，臣竊惑焉。佛汗之說，其爲眞妄，姑不必論，而其驚異誇傳，憑托壽張之漸，將有可憂者，必須痛斥，可以鎮人心、防後弊也。”上曰：“予意則必欲碎破者，似涉於動搖，不如置而不問之爲愈也。諸大臣之意如何？”太和曰：“聖教至當矣。臣與領府事李景奭，語及此事，則以爲：‘大聖人包容鎮定之道，當如是云矣。’”斗杓曰：“出汗之說，雖甚怪誕，益加修省而已，何至毀破其像哉？”太和曰：“頃在己亥年間，有佛汗啓聞之事。其時宋時烈、宋浚吉兩臣以爲：‘方伯不必啓聞’云，而亦無破碎之議矣。”維重曰：“天災層出，饑饉荐臻，恐懼修省之道，不可須臾忽

	<p>하니,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p> <p>“성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신이 영부사 이경석(李景奭)과 이야기하다가 이 일을 언급하였는데, 그도 말하기를 ‘대 성인께서 포용하고 진정시키는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p> <p>하고,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p> <p>“땀이 흘렀다는 이야기가 아무리 괴탄(怪誕)스럽기 그지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더욱 더 수성(修省)하면 그만이지 어찌 불상을 깨뜨려 부수기까지 해야 하겠습니까.”</p> <p>하고, 태화가 아뢰기를,</p> <p>“지난 기해년에도 불상에서 땀이 흘렀다고 계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시열과 송준길 두 신하가 ‘방백이 꼭 계문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였으며, 깨뜨려 부셔야 한다는 의논은 역시 없었습니다.”</p> <p>하였다. 유증이 아뢰기를,</p> <p>“천재(天災)가 겹쳐 일어나고 기근이 거듭 닥치는 상황인 만큼, 공구(恐懼)하고 수성(修省)하는 도리를 잠시라도 소홀히 해서선 안 됩니다. 행여 이를 심상한 글로 보지 마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也。幸勿視以尋常文字也。”上曰：“予豈以修省爲陳言哉？此等文字，屢言之愈好矣。”趙復陽請湖南田稅，依湖西例，十斗中減三斗，從之。俞榮曰：“曾因道臣啓聞，湖右庚子田稅，待秋退捧矣。辛丑凶荒，又甚於庚子，退徵田稅與當年田稅，一時督徵，則濱死之民，尤無辦納之理，合有變通之道矣。”復陽曰：“新穀成熟之後，則必無難捧之患矣。”致和曰：“秋收例畢於冬初，未凍前，其勢似難上納矣。”上曰：“然則一半今春上納，一半待秋退捧可也。”俞榮曰：“堤堰司復設事，曾已議定，舊例無可考出處，當何以處之？”太和曰：“既無可據之前例，則姑令戶曹判書及賑恤堂上，相與句管郎廳，亦以戶曹郎官，兼察似可矣。”上曰可。復陽曰：“今者移御時修理等事，務從簡約之意，聖教丁寧。而竊聞內殿鋪設塗排之物，可以因舊者，皆將易而新之。果若斯言，則自上恤費之盛意，反歸虛地，請更加申飭。”上曰：“卿言善矣，可不惕念焉。”又語及工曹進上貼扇，下送匠人于湖南，造來有弊事，上曰：“令本道端午扇封進</p>
--	---	--

	<p>“내가 어찌 수성에 관한 말을 진부한 이야기로 여기겠는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다.”</p> <p>하였다. 조복양(趙復陽)이 호남(湖南)의 전세(田稅)를 호서(湖西)의 예에 따라 10두(斗)당 3 두를 감해 줄 것을 청하니, 따랐다. 유계가 아뢰기를,</p> <p>“일찍이 도신(道臣)의 계문에 따라 호우(湖右) 지방에 대해 경자년의 전세(田稅)를 추수 때까지 기한을 물려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년의 흉년 든 상황이 경자년보다 더 심하였는데, 물려서 징수하기로 된 전세와 당년(當年)의 전세를 한꺼번에 독촉하여 징수한다면,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로서는 더욱 마련해 낼 길이 없을 것이니, 변통해 주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습니까.”</p> <p>하고, 조복양이 아뢰기를,</p> <p>“새 곡식이 익은 뒤에는 필시 바치기 어려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p> <p>하고, 정치화(鄭致和)는 아뢰기를,</p> <p>“추수는 으레 겨울 초에 끝나므로, 얼어붙기 전에 상납(上納)하기는 사세상 어려울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時, 一體封進。”</p>
--	---	------------------

	<p>“그렇다면 절반은 올봄에 상납토록 하고, 절반은 추수할 때까지 기한을 물려 받아들이도록 하라.”</p> <p>하였다. 유계가 아뢰기를,</p> <p>“제언사(堤堰司)를 다시 설치하기로 이미 의논해 정했는데, 상고할 만한 구례(舊例)가 없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p> <p>하였는데, 태화가 아뢰기를,</p> <p>“근거할 만한 전례(前例)가 없다면, 우선 호조 판서와 진휼청 당상이 서로들 구관(勾管)토록 하고, 낭청(郎廳)도 호조의 낭관으로 임명하여 아울러 살펴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허가하였다. 조복양이 아뢰기를,</p> <p>“이번에 거처를 옮기실 때 수리하는 등의 일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신 성상의 분부야말로 정녕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가 듣건대, 내전(內殿)에 깔고 도배하는 물건들을 옛날 것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모두 새것으로 바꾸려 한다 합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이라면 비용을 아끼려는 성상의 홀륭하신 뜻이 도리어 걸치레가 되는 결과로 돌아갈 것이니, 다시 더 단속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	--	--

	<p>“경의 말이 훌륭하다. 어찌 마음에 새기지 않겠는가.”</p> <p>하였다. 또 공조가 첩선(貼扇)을 진상하기 위해 장인(匠人)을 호남에 내려보내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단을 언급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본도(本道)에서 단오선(端午扇)을 봉진(封進)할 때 같이 봉진토록 하라.”</p> <p>하였다.</p>	
--	---	--

<p>현종 5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1월 30일(갑진) 1번째기사</p>	<p>장령 정양(鄭養)이 인피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은 현기증이 있어 오로지 술을 마셔야만 기력이 회복되는 관계로 보통 때에도 얼굴이 붉어 보는 이들이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한창 금주법(禁酒法)을 시행하여 향온(香醞)마저 폐지하게 된 이때에 금법을 이미 범했으니, 어떻게 감히 하루라도 대간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직명(職名)을 삭제해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정양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는데, 대사헌 박장원(朴長遠)이 처치하기를, “전에 조금 마셨다 하더라도 오늘 조심하면 되는 것이니,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러나 정양이 패(牌)로 불러도 나오지 않아 체직되었다</p>	<p>甲辰/掌令鄭養引避，略曰：“臣有眩虛之病，專以酒飲爲氣力，尋常面皯，有駭瞻視。當此酒禁方嚴，香醞亦罷之日，身既犯禁，何敢一日冒居臺席。請削職名。”答以勿辭。養退待。大司憲朴長遠處置云：“前雖少飲，在今可戒，請出仕。”上從之。養竟以牌不進見遞。</p>
<p>현종3년2월5일(기유), 두 번째 기사</p>	<p>경상 감사 민희(閔熙)가 치계하기를, “본도에 기근이 든 망극한 정상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게다가 전염병까지 크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이 각읍(各邑)에 분부하여 기민(飢民)을 정밀하게 추리고 전염병에 관한 사항을 따로 기록해 해가 바뀌기 전에 와서 보고하게 하였는데, 현재 먼저 도착한 33개 고을의 경우 기민의 숫자가 무려 2만 2천 6백 29인에 이르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먼저 보고해 온 26개 고을의 경우 현재 앓고 있는 자가 3천 6백 42인에 죽은 자가 53인에 이</p>	<p>○慶尙監司閔熙馳啓：“本道饑荒罔極之狀，有不忍言，加以癘疫大熾。臣分付各邑，精抄飢民，別錄染病，趁歲翻來呈矣。卽今先到者三十三官，飢民之數，多至二萬二千六百二十九人，染病人先報二十六官，而方痛者三千六百四十二人，物故五十三人。初頭如此，將來可知。”又曰：“上年本道常</p>

	<p>르고 있습니다. 현재 초기인데도 이러하니 앞으로 어떨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지난해 본도에 상평청에서 내준 곡식이 1만 석이었는데 올해도 이 숫자만큼 허락해 주시고, 지난해 진휼하다 남은 곡식 3천 5백 15석도 회감(會減)241) 하여 진휼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영북(嶺北)에서 옮겨오는 곡식 1만 5천 석을 반드시 빨리 배로 실어와야만 물이 멀리 있어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니, 비국으로 하여금海道(該道)에 분부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비국에 계하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p> <p>“상평청에서 지난해 진휼하고 남은 곡식 3천 5백 15석도 아울러 내주어 계속 진휼하게 하고, 올해 내주는 진휼용 곡식도 지난해의 숫자대로 가져다 쓰게 할 것이며, 다시 앞으로의 사태를 보아가며 연속해서 계문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영북의 곡식을 성화(星火) 같이 독촉하여 운반할 일로 함경·강원 양도의 감사에게 행문(行文)하여 신칙하게 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平穀捐許之數一萬石， 今年亦倣此數， 竝與上年賑餘穀三千五百十五石， 會減助賑。 且嶺北移轉穀一萬五千石， 必須急速船運， 可無遠水不救近火之患， 請令備局， 分付該道。” 啓下備局。</p> <p>回啓：“常平廳上年賑餘穀三千五百十五石， 竝令繼賑， 今年捐許賑穀石數， 亦依上年例取用， 更觀前頭， 使之連續啓聞。 嶺北穀星火督運事， 請行文申飭咸鏡、江原兩道監司。” 從之。</p>
<p>현종3년 2월 8일(임자), 3번째 기사</p>	<p>부교리 이민적(李敏迪), 수찬 김만기(金萬基) 등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해서, 때때로 소대(召對)하여 하정(下情)을 통하게 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副校理李敏迪、修撰金萬基等請對入侍， 願時賜召對， 以通下情， 上曰：“予非不欲， 病未能也。” 敏迪曰：“臣頃受由， 歸省老母於永柔縣， 關西農</p>

	<p>“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다.”</p> <p>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p> <p>“신이 지난번 휴가를 얻어 영유현(永柔縣)에 가서 노모에게 문안을 드렸는데, 관서(關西) 지방의 농사가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낫다고는 하나, 현재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세(田稅)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으므로, 물정(物情)이 지극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대두(大豆)를 상납(上納)케 한 것은 대체로 호남의 종자(種子)를 그 대신 남겨두려는 목적에서이다. 지금 만약 관서 지방의 대두 8천여 석을 면제해 준다면 호남의 대두를 장차 상납케 해야 할 형편이니, 이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전세로 미곡을 거두는 일에 대해서는 해조로 하여금 품달해 처리하도록 하겠다.”</p> <p>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p> <p>“듣는 사람의 마음은 본 자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곤 하는데, 이 일을 성상께서 결단을 내려 주신다면 무척 다행이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事，雖曰比他稍勝，即今田收稅之督責，大爲民間難堪之役，物情極以爲悶矣。”上曰：“大豆之上納，蓋爲湖南種子換留之地。今若除關西豆八千餘石，則湖南之豆，勢將上納，此出於不得已也。田收米事，當令該曹稟處。”敏迪曰：“聞者之心，不如見者，故每不蒙實惠，此事斷自聖衷，幸甚。”上曰：“今年異於他年，賑恤之事，既委該廳，詳議處之，方可曲盡。且見者之言，該備寫出，則聞者自可詳知矣。”萬基曰：“目今民事慘酷，救活無策，在外儒賢，至誠招致，則庶可救其一半矣。”上曰：“承旨別爲下諭可也。”敏迪曰：“雖有下諭之命，彼知出處之義，若無誠實，必不肯來。”又曰：“臣纔從外來，賑恤規畫，固未詳知，而試以朝報中所出者見之，白給之數太少，糶糴之給居多，雖御史下去，恐不得着實救活也。”上曰：“白給之物已盡，則雖元穀，豈不可出給，而坐視其死乎？”敏迪又曰：“湖南沙格之事，極涉冤悶。雖殺獄，亦無事干先死之理，而一向受刑，斃亦不難。其於獄體何如也？”金萬基曰：“沙格設有</p>
--	---	--

	<p>“금년은 다른 해와 달리 진흙하는 일을 이미 해청(該廳)에 위임했으니, 함께 자세히 의논하여 처리해야만 꼭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말로 자세히 표현한다면 듣는 이들도 저절로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p> <p>하였다. 만기가 아뢰기를,</p> <p>“현재 백성의 일이 참혹한데도 구제해 살릴 계책이 없는데, 외방에 있는 유현(儒賢)을 지성으로 초치(招致)한다면, 그런 대로 절반쯤은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승지는 별도로 하유하도록 하라.”</p> <p>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p> <p>“하유하라는 명이 계셨습시다만, 그네들도 출처(出處)에 대한 의리를 알고 있으니, 성실성이 담겨져 있지 않는 한 필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신이 방금 전에 외방에서 왔기 때문에 진흙에 관한 시책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삼아 조보(朝報)에 나온 것을 보건대, 백급(白給)242 하는 수량</p>	<p>隱情，其罪亦不至死。穎南之罪，則死無惜矣。”上良久曰：“梁穎南公事，收入可也。”敏迪曰：“當初李應著家書簡來傳時，米船亦來之說，藉藉傳播，李之翼以年少臺諫，乃敢發論，臣亦以爲善也。厥後處置，未得其當，不卽拿問東顯，而遂寢查覈之舉，此則中外聽聞之所拂鬱者也。其後之翼再避之辭，則收拾道路傳聞，多端附會，不無憤懣之意，至於侵及許多人，此則甚非也。若使沙格，先至死域，豈不冤枉乎？”萬基曰：“此事前後處置，皆未得當也。初不問東顯，已失事宜，中間拿囚之翼，亦非得臺諫之體。故臣忝言地，嘗爲陳達，而之翼廣爲援引，自同訟辨，多有憤懣之辭者，亦甚乖謬矣。之翼所引諸人中崔寬、李尙固，則以泛然傳說之言，與之語及云，至於密送家奴一款，最是緊切處，而閔光燾全不發說云，所謂參聽人元斗樞，語人以不曾與聞，元萬春時在外方，初不在坐云。其言之不實如此，必因憤懣之甚，言不暇擇而然也。卽今處置之道，之翼則雖有所失，似當付之風聞失實，而不必深罪也，獄情似無可問之</p>
--	---	---

	<p>은 너무 적은 반면 조적곡으로 주는 것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어사가 내려가더라도 착실하게 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백급할 물건이 이미 다 되었다면, 아무리 원곡(元穀)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죽는 것을 보기만 하면서 어찌 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민적이 또 아뢰기를,</p> <p>“호남 사격(沙格)243) 의 일은 지극히 원통하게 된 듯합니다. 아무리 살옥(殺獄)이라 하더라도 사간인(事干人)이 먼저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줄곧 형신(刑訊)을 받고 있으니 그대로 죽을 가능성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옥체(獄體)로 볼 때 어떠하겠습니까.”</p> <p>하고, 김만기가 아뢰기를,</p> <p>“설령 사격에게 숨긴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사죄(死罪)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영남(梁穎南)의 죄는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한참 있다가 이르기를,</p> <p>“양영남에 관한 공사(公事)는 거두어 들이도록 하라.”</p> <p>하였다. 민적이 아뢰기를,</p>	<p>事也。” 上不應。</p>
--	--	------------------

“당초 이응시 집에 와서 서간을 전할 때에 미곡을 실은 배도 왔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전파되었는데, 이지익(李之翼)이 연소한 대간으로서 감히 발론(發論) 하였으므로 신도 훌륭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처치한 것이 타당성을 잃어 즉시 이동현(李東顯)을 나문(拿問)하지 않고는 결국 조사하는 일을 중지시켜 버리고 말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중외(中外)에서 듣고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뒤에 지익이 재차 피험한 사연을 보건대, 길가에 퍼진 소문을 주워모아 갖가지로 건강부회하면서 성내고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이 없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허다한 사람들을 침해하였으니, 이 점은 그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격(沙格)이 먼저 죽게라도 된다면,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만기가 아뢰기를,

“이 일을 전후에 처치한 것이 모두 타당성을 잃었습니다. 애초에 이동현을 신문하지 않은 것부터가 마땅함을 잃은 것이었는데, 중간에 이지익을 잡아들여 구속시킨 것도 대간을 대우하는 체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언지(言地)에 있으면서 일찍이 이 점을 진달드렸었는데, 지익이 널리 끌어들여 스스로 재판에서 변론하는 것처럼 하면서 성내고 분통을 터뜨리는 말을 많이 한 것도 매우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지익이 증거로 낸 사람들 중에, 최관(崔寬)과 이상고(李尙固)는 ‘일반적으로 떠도는 소문들을 그와 함께 어찌다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하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가노(家奴)를 몰래 보냈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 민광소(閔光燾)는 ‘전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는가 하면, 소위 같이 들었었다고 지익이 주장하는 원두추(元斗樞)조차도 ‘그런 말을 같이 들은 적이 없다.’고 사람에게 말하였으며, 원만춘(元萬春)은

	<p>‘당시 외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익의 말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필시 그가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말을 가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지금 처치할 도리를 살펴보건대, 지익에게 잘못이 있긴 하지만 풍문을 잘못 들었던 것으로 돌려버리고 꼭 심각하게 죄를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옥정(獄情)으로 볼 때에도 더 이상 신문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응하지 않았다.</p>	
<p>현종3년 2월 17일(신유),</p>	<p>호남 진휼 어사 이숙(李翮)이 치계하였는데 그 대략에,</p> <p>“전일 도내(道內)의 굶주리거나 병들어 죽은 숫자에 대해서 도신(道臣)이 이미 계문(啓聞)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 고을에서 보고해 온 바에 따르면, 아사(餓死)한 자가 1백 42인, 전염병에 걸려 죽은 자가 9백 98인, 현재 앓고 있는 자가 6천 1백 47인이나 됩니다. 초봄에 사망한 자가 벌써 이토록 많으니, 장래의 일을 알 만합니다.”</p> <p>하고, 청하기를,</p> <p>“순천(順天) 등 8개 고을에서 납부해야 할 미두(米斗) 가운데 3분의 1을 정조(正租)247로 대신 납부하게 하여 올해의 종자(種子)를 삼게 하고, 가을철에 본색(本色) 미두로 상환케 하소서. 그리고 재읍(災邑)의 전세(田稅) 4천 석(石)을 받아들여 본도(本道)에 놔두었다가 진휼할 자료로 보충해 쓰도록 조가(朝家)에서 이미 허락했습니다다만, 이 역시 견감토록 허락하시어 죽어가는 기민(飢民)들을 위로하소서.”</p>	<p>○辛酉/湖南賑恤御史李翮馳啓略曰：“前日道內飢病物故之數，道臣既已啓聞，而近來各邑所報，餓死者一百四十二人，染病死者九百九十八人，方痛者六千一百四十七人，春初死亡，已至此多，前頭可知。”且請：“以順天等八邑應捧米豆三分之一，代捧以正租，以作今年種子，待秋以本色米豆還捧。且災邑田稅四千石，朝家既許捧留本道，以補賑資，請許蠲減，以慰垂死之飢民。”啓下賑恤廳。回啓以爲：“田稅惟正之供。意謂各邑已盡捧留，以待朝家分付，而御史欲以八邑米豆，換作種租，災邑田稅四千石，竝請蠲減。守令之至今不捧田稅，誠可驚駭，而亦不可一時論罪。監司之不曾檢督，亦甚可駭，請從重推考。且災邑田稅四</p>

	<p>하니, 진흙청에 계하하였다. 진흙청이 회계하기를,</p> <p>“전세(田稅)야 말로 유정지공(惟正之供)248) 입니다. 따라서 각 고을에서 이미 전액을 받아 놓고서 조정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어사가 8개 읍의 미두(米斗)를 바꿔 종자곡(種子穀)으로 삼게 하려 하면서 재읍(災邑)의 전세 4천 석까지 아울러 건감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수령들이 지금껏 전세를 바치지 않고 있는 작태가, 정말 경악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논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감사가 일찍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또한 놀랍기 그지없으니, 그를 중하게 추고하소서. 그리고 재읍의 전세 4천 석은 정조(正租)로 바꿔 납부하도록 허락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千石，許令換捧正租。”從之。</p>
<p>현개 6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3월 27일(경자) 1번째기사</p>	<p>진흙청이 강도(江都)로 이전할 쌀 6천 섬을 떼내어 경기도 백성들에게 꾸어 주기를 청하자, 상이 따랐다.</p>	<p>庚子/賑恤廳請除出江都移轉米六千石，分糶畿民，上從之。</p>
<p>현개 7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4월 4일(정미) 2 번째기사</p>	<p>헌납 민여로(閔汝老)가 병으로 사양하여 부름에 응하지 않고, 상소하여 당시의 폐단을 조목조목 진술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p> <p>“백년의 고질을 치료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신에게 한 가지 묘책이 있습니다. 전하께서 이 화창한 시절에 정전을 활짝 열고 모든 관료들을 나오게 한 뒤 술을 하사하고 분부를 내리소서. 나라가 장차 망하려는 형편에 대하여 안타깝게 여기면서 차근 차근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고, 다같이 화목해야 된다는 뜻으로 타이르소서. 또 선묘(宣廟) 어제시(御製詩)241) 인 ‘조정의 신하</p>	<p>獻納閔汝老，以病辭不赴召，上疏條陳時弊，且曰：</p> <p>百年痼疾，救藥實難。臣有一策，莫如自上趁此和煦之時，大開正殿，登進百僚，宣以香醞，賜以天語。悶然於國家將亡，諄諄然垂涕泣而道之，諭以共和之意。且以宣廟御製，朝臣今日</p>

	<p>들, 앞으로 다시 동인 서인을 따지랴.’라는 구절을 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조정이 화기에애하게 되면, 당쟁을 하는 자들도 사람이니 면전에서 직접 하명을 받고 누구인들 가슴이 몽클하여 전날의 한 일을 뉘우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편당의 폐단이 조금 누그러질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비답을 내렸다.</p> <p>민여로는 호서 출신으로서 사람됨이 선량하였으나 성품이 오활하여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였다. 그가 이 소를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p>	<p>後，尚可更西東之詩，使各諷誦。藹然一堂，和氣可掬，則黨人卽人臣也，親承面命，孰不釋然于中，而改前之爲哉？如是則偏黨之弊，庶可少弛也。</p> <p>上優批答之。汝老湖西人也，爲人善良，而性甚迂踈，不識世情。及上此疏，人多笑之。</p>
<p>현개 7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5월 14일(병술) 1번째기사</p>	<p>진휼청이 아뢰어 청하기를, “관항(管餉)을 위하여 상납해야 할 곡식으로서 쌀 4천 2백 석과 대두(大豆) 1천여 석을 본도에 그대로 두고 민간에 대여해 줌으로써 국가가 백성을 보살피는 뜻을 보이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丙戌/賑恤廳請以：“管餉應上納者，田米四千二百石、大豆一千餘石，停留本道，分糶民間，以示朝家顧恤之意，”上從之。</p>
<p>현개 7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6월 20일(신유) 1번째기사</p>	<p>상이 회정당에 거동하여 모든 승지들에게 공사(公事)를 갖고 입시하게 하였다. 옥당도 면대를 청하였다. 도승지 김수항이 아뢰기를, “근일에 비 내리는 형세가 폭우였는데, 이는 전에 없었던 일로서 곡식의 피해</p>	<p>辛酉/上御熙政堂，令諸承旨，持公事入侍，玉堂亦請對。都承旨金壽恒曰：“近日雨勢之暴急，前所未有，禾穀被傷之慘，可以想矣。今雖秋節未屆，</p>

	<p>가 참혹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을이 되지 않았으나 기청제(祈晴祭)를 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고, 우승지 이은상(李殷相)은 아뢰기를,</p> <p>“근래 전염병이 더욱 치열해지고 장마 또한 지리하여서, 동활인서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거의 2천여 명에 이르니 진흙하는 방도를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다.”</p> <p>하니, 상이 천막, 자리, 식량을 더 주도록 명하였다. 부제학 조복양이 아뢰기를,</p> <p>“그 밖에 사사로이 장막을 나온 사람들도 4천여 명이나 된다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해조로 하여금 모두 양식을 지급하도록 하라.”</p> <p>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p> <p>“간원이 아뢰진주 목사 이규로, 황주 판관 김현문 등의 하고(下考)를 말소시키고 현직에 그대로 두자고 한 일은, 이미 윤희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성적을 따져 출척함은 국가의 막중한 법이며 하등(下等)에 든 것을 없애주는 일은 실상 전례가 없고 또 훗날의 폐단에 관계됩니다. 전부터 수령으로서 피하기를 도모한 사람에게는 응당 적용할 벌이 있었습시다.”</p>	<p>而祈晴祭不可不行也。”右承旨李殷相曰：“近來癘疫轉熾，霖雨又如此，東西活人署染痛者，幾至二千餘人，合有軫恤之道。”上命加給覆蓋、藁席及糧米。副提學趙復陽曰：“此外私出幕之類，亦四千餘人云矣。”上曰：“令該曹，一體給糧。”壽恒曰：“以諫院之啓，晋州牧使李奎老，黃州判官金炫文等下考，蕩滌仍任事，既已蒙允。考績黜陟，乃國家莫重之典，蕩滌下等，實無前例，且關後弊。自前守令謀避者，則自有當施之罰矣。”上曰：“下考勿爲爻周，施以謀避之律宜矣。”筵臣以頻接臣僚，廓開言路，相繼陳達，上或答，或不答。復陽曰：“昔宋徽宗時，有水災，李綱上疏，極陳時事，而終被黜斥，至於亡國，仁宗時，亦遇水災，避殿減膳，蠲除民役，克盡消弭之道，而竟保太平。此兩君，其遇災一也，而或亡或興，非天之降災爾殊，應之之道有異也。臣意以爲，今日修省之道，不可以尋常遇災自處矣。”且曰：“宋時烈、宋浚吉、尹文舉、尹宣舉、李惟泰等處，別爲下諭，使之上來，兼詢弭災之策，則豈無所陳之言，</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하고는 말소하지 말고 피하기를 도모한 데 대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겠다.”</p> <p>하였다. 연신(筵臣)이, 자주 신하들을 접견하여 언로를 활짝 열어야 된다는 뜻으로 서로 계속하여 진달하자, 상이 혹은 대답을 하고 혹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복양이 아뢰기를,</p> <p>“옛날 송나라 휘종(徽宗) 때에 수재(水災)가 발생하자 이강(李綱)이 상소하여 당시의 일을 극력 진술하였는데, 이강은 마침내 쫓겨났고 휘종은 결국 나라를 망치기에 이르렀으며, 인종(仁宗) 때에도 똑같이 수재를 만났으나 정전을 피해 기거하고 반찬을 줄이고 백성들의 역(役)을 면제하는 등 재앙을 누그러뜨리려는 도리를 다하여 마침내 태평 시대를 누렸습니다. 이 두 임금의 재앙을 만난 것은 똑같았으면서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였으니, 하늘이 재앙을 내린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재앙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신은 오늘날 수성(修省)하는 방법이 평범하게 재앙을 만나 대처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송시열·송준길·윤문거·윤선거·이유태 등이 있는 곳에 특별히 하유하여 올라오게 하고 아울러 재앙을 누그러뜨릴 계책을 묻는다면, 어찌 진달할 말이 없겠으며 또 어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정신을 모아 만회하기에 급급해야</p>	<p>亦豈不上來乎? 此正會精聚神, 汲汲挽回之時。 不然, 則無以應天心而慰民望矣。” 校理李敏叙曰: “志者, 萬事之根柢。 自上先定志向, 使四方瞻聆, 灼然知上之所欲爲然後, 在野之人, 方可招致矣。” 上曰: “右贊成、前大司憲處, 遣史官詢問所懷, 從速上來之意, 及於諭旨中, 尹文學、宣學、李惟泰處, 亦下諭, 使之上來, 陳達所懷。” 副校理李敏迪曰: “臣曾以委靡之弊, 仰陳於前, 而復有所懷, 不得不更達矣。 諸宮家免稅結數, 戶曹既已釐正, 備局亦爲議定。 而自上時無處分, 臣恐此事出於親愛之僻也。” 上曰: “免稅等事, 登對時, 欲爲面定, 至於鹽盆、漁箭等事, 方令改查, 故未及發諾矣。” 復陽曰: “自前魯山、燕山兩墓, 時有致祭之典, 當此遇災之日, 似當舉行矣。” 上曰: “魯山致祭, 予固知之矣, 燕山墓亦有致祭之時耶? 復陽曰: “曾在先朝, 別遣禮官致祭矣。” 上曰: “令禮官考稟。”</p>
--	---	--

	<p>될 때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마음에 응하고 백성들의 바람을 달랠 수 없습니다.”</p> <p>하였고, 교리 이민서(李敏弼)가 아뢰기를,</p> <p>“뜻이란 모든 일의 밑둥입니다. 상께서 먼저 지향할 방향을 정하시고서 사방이 그것을 보고 들어 상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한 뒤에야 재야인사들도 초치할 수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우찬성과 전 대사헌이 있는 곳에 사관을 보내 그들의 생각을 묻고 또 빨리 올라오라는 뜻을 유지(諭旨) 속에 언급하며, 운문거·운선거·이유태가 있는 곳에도 하유하여 올라와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진달하게 하라.”</p> <p>하였다. 이어서 부교리 이민적이 아뢰기를,</p> <p>“신이 전에 기강이 진작되지 못하는 폐단에 대하여 어전에서 아뢰었으나 다시 생각한 바가 있으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궁가들의 세금을 면제한 결수(結數)에 대하여 호조가 이미 개정하였고 비국도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처분이 없으니 신은 이 일이 전하의 친애하는 마음이 지나친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두렵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	--	--

	<p>“세금을 면제하는 일은 등대(登對)하였을 때 대면하고서 정하려 하였고, 염분(鹽盆)·어전(漁箭) 등의 일은 이제 막 다시 조사하게 하였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p> <p>하였다. 또 조복양이 아뢰기를,</p> <p>“전부터 노산(魯山)·연산(燕山) 두 묘소에 때로 치제(致祭)하는 전례(典禮)가 있었으니, 지금 재앙을 만난 때에 거행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노산에 치제한 것은 내가 본래 알고 있지만, 연산묘에도 치제한 적이 있는가?”</p> <p>하자, 복양이 아뢰기를,</p> <p>“일찍이 선조(先朝) 때 예관을 따로 보내어 치제하였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예관이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p>현개 7권, 3년(1662 임인 / 청 강희(康熙) 1년) 6월 25일(병인) 3번째기사</p>	<p>영남 진휼 어사 남구만이 들어와 면대를 청하자, 상이 회정당에서 인견하고서 진휼하는 일의 전말을 묻고 또 죽은 자들이 얼마쯤이냐고 물으니, 남구만이 2천여 명이라고 답하였다. 상이 측은히 여기니, 남구만이 아뢰기를,</p> <p>“기민(飢民)들이 먹을 곡물로서 추가로 들여보낸 것은 형편상 되돌려 받기 어려우며 아예 감면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이미 반감하게 하였으나, 다 감하지 않은 것이 아직 미(米) 3천 석 정도, 조(租) 5천 석 정도입니다. 감사 민회(閔熙)가 신에게 이르기를 ‘반을 탕감하는 것은 흔쾌히 전체를 탕감하는 것만 못하다. 상평청에 진휼하고 남은 곡식이 아직 6천 석이 있으니, 3, 4천 석을 덜어내면 그 나머지는 본영의 별회곡(別會穀)으로 보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기민들이 받은 것을 모두 탕감시켜 주소서.”</p> <p>하니, 상이 묘당이 계품하여 처리하게 하였고, 대신들은 그의 말대로 탕감시켜 주도록 청하였다.</p>	<p>嶺南賑恤御史南九萬，入來請對，上引見于熙政堂，詢問賑事顛末，且問物故幾許，九萬曰：“二千餘人。”上爲之惻然。九萬曰：“迫入飢民所食穀物，勢難還捧，莫如蕩滌。故臣已令半減，未盡減者，尚有米三千石零，租五千石零。監司閔熙謂臣曰：‘一半蕩減，不如全減之爲快。常平賑餘之穀，尚有六千石，若捐三四千石，則其餘當以本營別會穀充補。’云。飢民所受，請并蕩滌。”上令廟堂稟處，大臣請依其言蕩滌。</p>

현종 3년 6월 29일(정오), 세 번째 기사	영남의 기민에게 나누어주어 진흙한 곡물을 모두 견감케 하였는데, 어사 남구만의 말을 들은 것이다.	
현종 3년 7월 26일(정유), 첫 번째 기사	진하정사 정태화, 부사 허적, 서장관 이동명이 사조하니, 상이 희정당에서 인견하였다. ~ 하고, 약물을 하사하며 위로해 타일러 보내었다.	
현종3년 7월 26일(정유). 두 번째 기사	유지로 진주에 거주하는 전 현감 하홍도와 함안에 거주하는 전 좌랑 조임도에게 쌀과 콩을 하사하였다. ~ 상이 따른 것이었다.	
현종 6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월 22일(신묘) 4번째기사	해서(海西) 지방에 나이 1백 세가 넘는 자가 8인 있었는데, 도신(道臣)이 조정에 보고하니, 상이 옷감과 음식물을 넉넉하게 내리도록 명하였다.	海西有年過百歲者八人， 道臣聞于朝， 上命優賜衣資食物。
현종 6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2월 12일(신해) 3번째기사	해풍군(海豐君) 정효준(鄭孝俊)은 아들 5인이 등과(登科)하였고 나이가 80여 세였는데, 예판 김수항(金壽恒)이 주달한 데 따라 자급(資級)을 뛰어넘어 관동녕부사로 삼았다. 윤경(尹綱)은 나이가 97세였는데, 이민서(李敏叙)가 주달한 데 따라 해조에 명하여 계속 음식과 비단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海豐君鄭孝俊之子五人登科， 且年八十餘， 因禮判金壽恒奏達， 超資爲判敦寧府事。 尹綱年九十七， 因敏叙奏達， 命該曹續賜食帛。
현종 6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6월 2일(무술) 3 번째기사	약방 제조 김좌명이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쓸 흑우(黑牛)가 갑자기 죽었기에 신이 오늘 병들지 않은 소들을 막 여염집에 내두어 전염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금 듣건대 계속해서 죽	藥房提調金佐明曰： “祭事黑牛猝斃， 臣今日以不病牛， 纔出置閭家， 勿之相染， 今聞斃者連續， 只七首餘在云。 此必牛疫之毒者， 宜令該司， 覓送救療

	<p>어가 일곱 마리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필시 소 전염병 중에서도 독한 것이어서 그럴 것이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구료(救療)할 약물을 찾아 보내도록 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앞으로 제향할 일이 매우 염려스럽다.”</p> <p>하였다.</p> <p>사신은 논한다. 희생물에 재변이 생긴 것은 변고 중에서도 큰 변고이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재이(災異)로 상문(上聞)하지 않고 위에서는 수성(修省)할 뜻을 다잡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구료하고 계속 쓸 수 있는지만 강론하고 있으니, 임금이나 신하 모두 잘못되었다 하겠다.</p>	<p>藥物。” 上曰：“前頭祭享，殊甚可慮也。”</p> <p>【史臣曰：“犧牲告災，變之大者。而下不以災異上聞，上不以修省加意，其所講論，不過乎救療之方，繼用之道，可謂君臣俱失之矣。”】</p>
<p>현종 6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6월 15일(신해) 1번째기사</p>	<p>지평 소두산(蘇斗山) 등이 아뢰기를,</p> <p>“환시(宦侍)의 직분이란 그저 소제(掃除)하는 일이나 맡는 것으로서 외조(外朝)의 관원과과는 사체(事體)가 현격히 다릅니다. 그런데 전일 내관(內官) 최대립(崔大立)은 함사(緘辭)에서 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을 배척하면서 심지어는 ‘사의(辭意)가 장황하고 잔뜩 성을 내며 공격(攻斥)하였다.’고 하는 등 모욕하는 뜻을 현저하게 드러내기까지 하였으니, 거리낌없이 방자하게 군 것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이런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점점 교만하고 방자하게 구는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될 것이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p>	<p>辛亥/持平蘇斗山等啓曰：“宦侍之職，只應掃除之役，與外朝之官，事體截然。而頃日內官崔大立緘辭，斥慶尙監司李尙眞，至曰辭意張皇盛怒攻斥，顯有侵侮之意，其縱恣無忌，何如也？此而不懲，日後驕橫之漸，有不可勝言，請先罷後推。” 不從曰：“辭意等八字，非出於搆捏，則予未知其縱恣無忌也。” 先是，內侍府以本府奴婢事，</p>

	<p>소서.”</p> <p>하니, 따르지 않고, 이르기를,</p> <p>“사의(辭意) 등 여덟 글자는 날조해 낸 것이 아닌 만큼, 나는 그가 거리낌없이 방자하게 군 것인지를 모르겠다.”</p> <p>하였다.</p> <p>이에 앞서 내시부(內侍府)가 본부의 노비에 관한 일로 차노(差奴)를 내려 보내면서 경상도에 행관(行關)461 한 일이 있었는데, 이상진이 치계(馳啓)하기를,</p> <p>“《법전(法典)》을 보건대 내시부는 단지 음식을 감독하고 명을 전하고 문을 지키고 청소하는 임무만을 관장할 뿐 외조(外朝)의 정사에 간섭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京外)의 각 아문과 문서를 통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조종조(祖宗朝)의 성헌(成憲)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 사체(事體)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한때 아문의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실로 뒷날 무궁한 폐단을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내시부는 인신(印信)을 통용하는 관사(官司)에 속해 있지 않은데, 도대체 어느 때부터 인신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까. 이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로서 언뜻 보기만 해도 너무 놀람기에 감히 이렇게 치계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회답할 성질의 것이 못되기에 법부(法府)에 써서 보내면서 아울러 이문(移文)했으니, 법부로 하여금 법에 의거하여 품처(稟處)토록 하소서.”</p>	<p>有下送差奴，行關於慶尙道者，尙眞馳啓曰：“法典，內侍府，只掌監膳傳命，守門掃除之任，未有干涉外朝之政。故絕無京外各衙門通文書之規，此祖宗朝成憲也。今乃創無前之舉，致事體之損，不但爲一時衙門之羞，實啓日後無窮之弊也。內侍府不列於印信行用之司，原其印信，創於何時乎？事涉法外，驟見駭甚，敢此馳啓。且其公事，非所回答，故裹送法府，竝爲移文，請令法府，據法稟處。”上下其狀於憲府。憲府請推大立，以當該被推，其緘答曰：“慶尙監司辭意張皇，盛怒攻斥。”又言：“祖宗朝設官之初，待之異於小各司，稱以內侍府，則府字之義，有意存焉。流來印信，刻以成化七年，其久可知。一體宮府二品印信，而府掌之人，秩亦二品相等，衙門通關，例也。雖戶兵曹，亦爲通關，則祖宗朝特賜奴婢五十口，乙未推刷時，都監刷出一百五十口，成籍以給，若有生產物故，則豈無移文推覈之舉耶？”至於三度抗拒。憲府請收大立職牒，進來推考，上不許曰：“各曹通關與否、奴婢推刷有無，從實查出稟處。”憲府</p>
--	--	--

	<p>하니, 상이 그 장계(狀啓)를 헌부에 내렸다. 헌부가 추고를 받아야 할 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최대립을 추고할 것을 청하였는데, 대립이 함답(緘答)하기를,</p> <p>“경상 감사의 사의(辭意)가 장황한데 잔뜩 성내며 공격(攻斥)하고 있습니다.”</p> <p>하고, 또 말하기를,</p> <p>“조종조에서 관직을 처음 설치할 때 소각사(小各司)와는 다르게 대우하여 내시부라고 칭했고 보면 부(府)라는 글자의 의미 배후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신(印信)을 성화(成化)462) 7년463) 에 새긴 것으로 보아 유래가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체의 궁부(宮府)가 똑같이 2품(品)의 인신을 쓰고 있고 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의 직질(職秩)도 2품인데, 서로 등급이 같은 아문끼리는 통관(通關)464)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비록 호조나 병조라 하더라도 통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조종조에서 특별히 노비 50구(口)를 하사하셨고 을미년에 추쇄(推刷)할 당시 도감이 1백 5구를 쇄출(刷出)하여 성적(成籍)한 뒤 지급했는데, 만약 더 태어났거나 죽었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 어찌 이문(移文)하여 추핵(推覈)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하며, 세 차례에 이르기까지 항거(抗拒)하였다. 헌부가 최대립의 직첩(職牒)을 환수하고 나아와 추고받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고, 이르기를,</p> <p>“각조(各曹)와의 통관 여부 및 노비를 추쇄한 일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p>	<p>又啓曰：“取考文書，內侍府與各曹通關推刷案，亦載本府奴婢。而考諸大典禮典，則二品衙門，直行移，其餘竝報屬司云，又按吏典所載，內侍府乃無品衙門。凡通關之式，實係衙門高下，不係於時任官品秩如何，則內侍府雖有通關各司之規，實是謬例。請依前啓。”上命分揀大立罪，議者以宦寺之凌轢朝士，自此始。</p>
--	---	---

사실대로 조사에 내어 품처(稟處)토록 하라.”

하였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문서를 가져다 조사해 보건대 내시부가 각조(各曹)와 통관해왔으며, 추쇄한 안(安)도 본부의 노비 문서 속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전(大典)》의 예전(禮典)을 상고해 보건대 2품 아문은 곧장 행이(行移)하고 나머지는 모두 속사(屬司)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또 이전(吏典)에 기재된 것을 보면 내시부는 품계가 없는 아문에 속해 있습니다. 대체로 통관하는 규식(規式)은 실로 아문의 고하(高下)에 관계되는 것이지 시임관(時任官)의 품질(品秩)이 어느 정도냐에 관계되지는 않으니, 내시부가 각사(各司)와 통관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로 잘못된 규례(規例)라 할 것입니다. 전계(前啓)한 대로 하소서.”

하니, 상이 대립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명하였는데, 의논하는 이들은 이때부터 환시(宦寺)가 조사(朝士)를 능멸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p>현종 6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6월 20일(병진) 2번째기사</p>	<p>대사간 김수흥(金壽興), 정언 송창(宋昌)이 아뢰기를, “헌부의 하리(下吏)를 가두도록 청한 것이야말로 전에 없던 일이었고, 글자 한자를 빠뜨린 것이 본래 체차되어야 할 잘못도 아니었고 보면 조사(措辭)하여 처치한 것은 참으로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진계(陳啓)하여 공격(攻斥)한 것이 뜻밖의 일이었던 만큼, 미안한 분부를 내리셨다 해도 별로 타당성을 잃었다는 혐의를 가질 것이 없으니, 이민서를 출사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르면서 이르기를, “글을 잘못 쓴[誤書] 하리를 가둔다고 해서 사체에 손상될 것이 없는데, 이민서가 어제 인피하면서 정원에 비답한 분부를 인용하며 ‘오서(誤書)’라는 두 글자를 슬쩍 빼버렸으니 그 의도를 내가 실로 모르겠다.” 하였다. 김수흥 등이 또 아뢰기를, “대각의 사체는 일반 관료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존엄한 인주(人主)로서도 그들을 예우하고 있는데, 더구나 정원이 어떻게 어떤 일을 빌미로 대각을 능멸하면서 하리를 가두어 다스리라고 청할 수 있단 말입니까.</p>	<p>大司諫金壽興、正言宋昌啓曰：“請囚憲吏，實是無前之舉，而落書一字，本非當遞之失，則措辭處置，誠爲得體。陳啓攻斥，出於意外，雖有未安之教，別無乖當之嫌，請出李敏叙。”從之。且曰：“囚誤書下吏，無損於事體，而敏叙昨避中，引答政院之教，隱然拔去誤書二字，予實未曉也。”金壽興等又啓曰：“臺閣事體，異於庶僚。雖以人主之尊，猶且禮貌之，況政院豈宜因事侵凌，以囚治下吏爲請乎？今此照律公事，既有落字，而政院該房及該吏，初未覺察而捧入，因傳教始知之，則固當待罪之不暇。而乃反不顧事體，創出新規，請囚憲吏，有若囚次知者然，事極可駭。請當該承旨從重推考。”不從。又啓曰：“畿甸民役之不可不變通者，最是田稅條貢物之弊也。其在司藥寺，則有粳米中米黃大豆黃豆，奉常寺則有粳米醬豆名色，而其收捧之式，</p>

그리고 이번의 조율 공사(照律公事)에 이미 빠진 글자가 있었는데도 정원의 해방(該房)이나 해리(該吏)가 당초 잘 살피지 못한 채 봉입(捧入)하였다가 전교(傳敎)가 있으신 뒤에야 비로소 알았고 보면, 원래 대죄(待罪)하기에 겨를이 없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만 거꾸로 사체를 돌아보지도 않고 신규(新規)를 새로 만들어 낸 다음 마치 차지(次知) 정도를 가두는 것처럼 헌부의 하리를 가두도록 청하였으니, 놀랍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당해 승지를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기전(畿甸)의 민역(民役) 가운데 가장 시급히 변통해야 할 것은 전세조(田稅條) 공물(貢物)에 따른 폐단입니다. 사도시(司隲寺)의 경우에는 경미(粳米)·중미(中米)·황대두(黃大豆)·황두(黃豆) 등의 명색(名色)이 있고, 봉상시(奉常寺)의 경우에는 경미·장두(醬豆) 등의 명색이 있는데, 수봉(收捧)하는 정식(定式)을 보면 7, 8갑(甲)465 석 받기도 하고 3, 4갑씩 받기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각 공물 주인(貢物主人)들이 기세를 부리며 마구 징수하여 1승(升)의 전세를 내는 자가 8, 9승을 더내고 1두(斗)를 내는 자가 8, 9두(斗)를 더 내는 형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각읍(各邑)이 매우 감당키 어려운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각 방면별로 돌아가며 정한 액수를 내게 함으로써 그 고통을 분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역(役)을 치르고 나면 그 방면의 백성들이 실업(失業)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제향(祭享)과 어공(御供)에 관계된 일이라서 선불리고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或以七八甲，或以三四甲，各其主人輩，刁蹬濫徵，出稅一升者，加八九升，出一斗者，加八九斗，而猶患不足，故各邑悶甚難堪，就其各面，輪回出定，以分其苦。一經其役，則厥面之民，無不失業，而事係祭享御供，不得輕改，以致於今矣。今者量田之後，田結有加，稅入倍數，自今以後，竝勿分定於各邑，該曹以其所稅米豆，竝前定甲數，而移送於各司，分給貢物主人，依例進供，則民蒙實惠，莫大於此矣，請令該曹，稟處變通。”上從之。又啓曰：“京畿物膳封進之規，流來既久，猝難變通。而宣惠廳設立之初，所定之價，可謂優矣，而近年來山海產乏，物價自踊，以定給之價，不足以辦。故主人輩，稱貸不給，至有賣屋破業者。不得已赴訴於本邑，則本邑亦難充給，或未免收捧民結，是爲科外之徵也。前頭量田後，收米餘剩，未知幾許，而自該廳，添給價米，亦患難繼。各邑常平廳穀物，耗米年增，宜以此米，量入添給，使其主人，往受於該邑，切禁各邑科外徵結之弊。則主人庶免破產之患，圻民亦無科外之役矣，請令

이번에 양전(量田)한 뒤에는 전결(田結)이 증가하여 세입(稅入)도 배나 늘어날 것이고, 지금 이후로는 각읍에 분정(分定)하지 말게 하고, 해조가 전세로 받는 미두(米豆)와 전에 정했던 갑수(甲數)의 곡식을 합쳐 각사(各司)에 옮겨 보낸 뒤, 공물 주인에게 나누어 주어 관례대로 진공(進供)케 하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이보다 더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는 일이 없을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여 변통케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경기 지방에서 물선(物膳)을 봉진(封進)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 온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변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혜청(宣惠廳)이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소정(所定)의 공물가(供物價)가 넉넉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년 이래로 산과 바다의 생산물이 부족해진 탓으로 자연히 물가가 뛰어 올라 지급되는 소정의 공물가는 마련하기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까닭에 공물 주인들이 지급된 공물가가 넉넉하지 못한 나머지 심지어는 집을 팔고 파산하는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본읍(本邑)에 가서 호소하게 되면, 본읍 역시 보충해 지급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흑민결(民結)에서 수봉(收捧)하는 일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는 과외(科外)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양전(量田)한 뒤에 미곡을 거두어들이고 얼마나 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청(該廳)에서 가미(價米)를 보태 지급한다 한더라도 역시 계속 대기에는 어려운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읍에 할당된 상평청(常平廳) 곡물의 모미(耗米)가 해마다 불어나고 있으니, 이 곡식을 가지고 세입을 헤아려서 첨가해 지급토록 하고 공물 주인들로 하여금 해읍(該邑)에 가서 받도록 하는 한

該廳，稟定變通。” 上從之。

	<p>편, 각읍에서 과외(科外)로 민결에서 징수하는 폐단을 철저히 금지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물 주인도 그런대로 파산하는 걱정을 면할 수 있고 경기 백성에게도 과외로 역(役)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니, 해청으로 하여금 품정(稟定)하여 변통케 하소서.”</p>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7월 3일(무진) 5 번째기사</p>	<p>동·서 활인서(活人署)의 전염병 환자들에게 양곡을 지급하였다.</p>	<p>給東西活人署染病人糧。</p>
<p>현종 7권, 4년(1663</p>	<p>상이 의관(醫官)들에게 명하여 들어와 진찰토록 하였다. 도제조 이경석(李景</p>	<p>上命諸醫入診。 都提調李景奭曰：“秋</p>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9월 5일(기사) 2
번째기사

爽)이 아뢰기를,

“가을 기운이 점점 싸늘해지니 약물과 음식을 드시도록 노력하시어 꾸준히 조섭하는 데 따른 효험을 보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올해 흉년든 상황이 전국적으로 대략 같습디다만, 양남(兩南)이 특히 심하고 양남 중에서도 영남이 더욱 심하며 북로(北路)535) 가 또 가장 혹독합니다. 그리하여 만백성이 장차 굶어죽을 지경인데, 앞으로 구제할 대책에 대해서는 묘당에서 생각해 둔 바가 필시 있겠습디다만, 신도 소회가 있기에 감히 진달 드립디다.

호남의 대동미(大同米) 13두(斗)는 감해주지 않을 수 없습디다. 그리고 영남은 현재 많은 사람이 흩어져 떠돌고 있으니, 내년 봄을 기다려서 비로소 요역을 경감하고 진휼할 대책을 의논한다면, 때가 늦었다는 탄식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디다. 또 북로는 올해 농사를 망친 중에도 생마(生麻)536) 가 특히 심하니, 으레 보내주던 면포(綿布)나 목화(木花) 또한 모쪼록 수를 늘려 보내야 하겠습디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에 말하라.”

하였다.

氣漸涼，宜勉進藥餌，以收不息之功。”又曰：“今歲歉凶，大略相同，而兩南尤甚，兩南之中，嶺南爲尤甚，而北路又最酷。萬民將餓死，前頭拯濟之策，廟堂必有所思，而臣亦有懷敢達。湖南大同十三斗，不可不減也。嶺南則方多流散，若待明春，始議輕徭賑恤之策，則必有後時之歎也。北路今年失稔之中，生麻特甚，例送綿布木花，亦須加數以送也。”上曰：“言于廟堂。”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0월 5일(기해)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듣건대 호광(湖廣)의 토적(土賊) 때문에 동병(動兵)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양(瀋陽)에 침범해 온다는 급보(急報)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만약 함(哈)546) 이 침범해 왔다면 필시 그전처럼 병력을 징발했을텐데 아직 그런 소식이 없으니 염려할 것이 못 된다고 하겠습니다.”</p> <p>하였다.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진흙청 당상이 관서(關西)의 미곡을 옮겨다 쓰고 싶어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럿의 의논은 어떠한가?”</p>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신은 서쪽 백성들이 고달픔을 받게 되는 것이 곤란하게 여겨집니다.”</p> <p>하고,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관서의 미곡을 가져다 쓰는 일은 조용히 강정(講定)해야 할텐데 왜 꼭 오늘</p>	<p>己亥/上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聞以湖廣土賊，彼國有動兵之舉。 且瀋陽急報侵犯云，若曰哈侵犯，則必徵兵如前，而尙無聲息，不足慮也。” 左議政元斗杓曰：“賑恤廳堂上，欲移用關西之米矣。” 上曰：“群議以爲如何?” 太和曰：“臣則以西民受困爲難矣。” 兵曹判書金佐明曰：“關西米取用事，可以從容講定，何必於今日急急爲之乎?” 太和曰：“必須趁速講定，方可預爲料理。 且當定其斛數矣。” 上曰：“當用幾斛。” 太和曰：“臣意則無過一萬斛也。” 斗杓曰：“只當取用清南及海西沿海米，清北米則不宜取用也。” 上皆許之。 趙復陽曰：“管餉穀各衙門銀布， 平安監營遼木，亦宜取用也。” 上曰可。 佐明曰：“禁軍衣裝薄劣者，請自本曹，給其衣資，以遵先朝故事。” 上許之。 司諫閔維重等啓曰：“石室書院賜額致祭時，監司分付本官，以境居前衙，差定執事，已極不可。 況本官境居前衙，亦不差遣，以致臨時窘急，乃以諸生，充備執</p>
--	--	---

	<p>급하게 해야 합니까?”</p> <p>하고, 태화가 아뢰기를,</p> <p>“반드시 속히 강정해야만 미리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곡수(斛數)를 정해야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몇 곡을 써야 하는가?”</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신은 1만 곡을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p> <p>하고, 두표가 아뢰기를,</p> <p>“단지 청남(淸南)547) 및 해서(海西) 연해의 미곡을 가져다 써야지 청북(淸北)의 미곡을 가져다 쓰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모두 허락하였다. 조복양(趙復陽)이 아뢰기를,</p> <p>“관향곡(管餉穀)과 각 아문의 은포(銀布)와 평안 감영의 요목(遼木)548) 도 가져다 쓰게 해야 하겠습니까.”</p>	<p>事。至於祭文，乃是王言，而使儒生宣讀，求之典禮，豈容如是。況祭物之不備，香陪校生下來時，指路之人，亦不待候，尤可見其怠慢。請京畿監司吳挺一從重推考，楊州牧使閔熙罷職。”上從之。副提學俞棨曰：“在先朝議均田之時，下教曰，量田後新結，雖倍於舊，民役之用，當以舊結，臣以此聖教，亦嘗對人而言，則圻民聞而鼓舞矣。今聞以十二斗爲定云，失信於民大矣。新結雖不倍舊，民間出米，當近五萬斛，民必曰國家爲得穀之多，爲量田，將何以解其謗乎？”上曰：“此言何如？”太和、斗杓曰：“臣等之意亦如此，而任事之臣，皆以十二斗爲便，故臣等亦從之矣。”佐明曰：“十二斗收米，則民役庶可爲便，故臣等請以十二斗爲定。今棨以失信爲言，在先朝，請爲量田者，臣父也，以十斗爲便者，亦臣父也。今臣不當以十二斗爲言，而只爲便民，乃爲此說矣。”上曰：“第以棨之言，更爲相議。”維重曰：“南海之露梁，卽李舜臣殉節之地也，有祠宇，已賜額忠烈矣。今聞統營，亦舜臣所創，故將士等，曾立祠宇，以</p>
--	---	---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p> <p>“금군(禁軍) 중에 의장(衣裝)이 누추한 자에게 본조에서 옷감을 지급해 주도록 함으로써 선조(先朝) 때의 고사를 따르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사간 민유중(閔維重) 등이 아뢰기를,</p> <p>“석실 서원(石室書院)549) 에 사액(賜額)하여 제사드릴 때, 감사가 본 고을에 분부하여 경내에 거주하는 전직 관원을 집사(執事)로 차정(差定)하게 한 것만도 불가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본 고을에서도 경내에 거주하는 전직 관원을 차견(差遣)하지 않은 탓으로 시기에 임박하여 급해진 나머지 그만 제생(諸生)을 집사로 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야말로 왕언(王言)인 제문(祭文)까지도 유생을 시켜 읽게 하였으니, 전례(典禮)로 살펴보건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밖에도 제물(祭物)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향배 교생(香陪校生)550) 이 내려올 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조차 대기하지 않고 있었으니, 그 태만함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경기 감사 오정일(吳挺一)은 중하게 추고하고 양주 목사(楊州牧使) 민희(閔熙)는 파직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부제학 유계가 아뢰기를,</p> <p>“선조(先朝)에서 균전(均田)을 의논할 때 하교하기를 ‘양전(量田)한 뒤에 신결(新結)이 구결(舊結)의 배가 되더라도 민역(民役)은 구결을 기준으로 쓰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신이 이 성교(聖敎)를 가지고 역시 언젠가 사람을 대해 말했더니, 경기의 백성들이 이를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p>	<p>致尊慕之誠，宜依露梁例，賜忠烈之號，不宜拘於疊賜也。”上許之。</p>
--	---	--

	<p>듣건대 12두(斗)로 정했다 하니, 이는 백성에게 크게 믿음을 잃게 될 일입니다. 신결이 구결의 배는 안 된다 할지라도 민간이 내는 미곡이 5만 곡(斛)에 가까울테니, 백성들이 필시 ‘국가에서 양전한 것은 곡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였다.’고 할텐데, 앞으로 무슨 수로 이 비방에 대해 해명할 것입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 말이 어떠한가?”</p> <p>하자, 태화와 두표가 아뢰기를,</p> <p>“신들의 의견도 그와 같습니다만 일을 맡은 신하들이 모두 12두를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들도 따른 것입니다.”</p> <p>하고, 좌명이 아뢰기를,</p> <p>“12두의 미곡을 거둘 경우 민역(民役)을 그런대로 편하게 해 줄 수 있겠기에 신들이 12두로 정하자고 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계가 믿음을 잃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선조 때 양전하자고 청한 것도 신의 아비이고 10두가 편하겠다고 한 것도 신의 아비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이 12두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만, 단지 백성을 편하게 해 줄 수 있겠기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	--	--

“아무튼 유계의 말을 가지고 다시 상의토록 하라.”

하였다. 유증이 아뢰기를,

“남해(南海)의 노량(露梁)은 곧 이순신(李舜臣)이 순절한 지역으로서 그곳의 사우(祠宇)에는 이미 ‘충렬(忠烈)’이라고 사액(賜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통영(統營) 또한 순신이 처음 개설한 곳이므로 장사(將士)들이 일찍이 사우를 세워 존모(尊慕)하는 정성을 바치고 있다 하니, 거듭 사액하는 데에 구애받지 마시고 노량의 예에 따라 ‘충렬’의 호를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0월 19일(계축) 6번째기사</p>	<p>함경도의 전세(田稅) 미두(米豆) 및 시노비(寺奴婢)·내노비(內奴婢)·사천(私賤)의 신공(身貢)을 감하고, 상평청의 모곡(耗穀)을 기민(飢民)에게 무상 지급하였으며, 또 조적 외에 창고에 남아 있는 곡식을 꺼내 각읍의 기민을 진휼하였는데, 감사 김휘(金徽)의 계청을 따른 것이었다.</p>	<p>減咸鏡道田稅米豆及寺奴婢、內奴婢私賤身貢，且以常平廳耗穀，白給飢民，又發糶糶外留庫穀，以賑各邑飢民，從監司金徽啓請也。</p>
<p>현개 9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0월 20일(갑인) 3번째기사</p>	<p>호남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처음에 감사 조귀석(趙龜錫)이 장계를 올려 신결수를 적용하여 추수미(秋收米)를 받을 것을 청하였으나, 묘당이 복계하여 그것을 막았다. 귀석이 또 치계하기를,“금년에도 구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적지(赤地)에서 쌀을 징수한다면 이는 백성을 가엾게 보시는 성상의 치화(治化)에 어그러지는 일입니다.”하니, 상이 선혜청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선혜청이 회계하기를,“재해를 당했거나 당하지 않았거나 따지지 말고 모두 신결수를 적용하여 받도록 허락하여 먼 곳의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 덕의(德意)를 알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르고 또 하교하기를,“본도의 일이 참으로 딱하다. 비록 대동미 1말씩을 이미 견감하였으나 너무 심한 읍은 2말, 좀 덜한 읍은 1말씩 더 견감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정이 진휼하고 있는 뜻을 알게 하라.”하였다.</p>	<p>湖南大饑，初監司趙龜錫狀啓，請以新結捧秋收米，廟堂覆啓防之。龜錫又馳啓曰：“今年仍用舊結，徵米於赤地之處，則實有乖於聖明如傷之化。”上令宣惠廳更議。宣惠廳回啓曰：“請勿論被災與否，許以新結收米，俾遐遠之氓，知朝廷德意。”上從之。又下教曰：“本道之事，誠爲矜惻。雖已減大同一斗，尤甚邑則又減二斗，次邑則減一斗，俾知朝廷軫恤之意。”</p>
<p>현개 10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1일(을축) 1번째기사</p>	<p>장령 김익렴(金益廉) 등이 인피하기를, “신들이 이전에 영풍군(靈豐君) 이식(李湜)을 잡아다 문초하자고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식이 창기에게 미혹되어 여러 번 불러도 오지 않으므로 그의 아우</p>	<p>朔日乙丑/掌令金益廉等，引避曰：“臣等向請靈豐君滄拿問，而今聞滄蠱惑娼女，屢招不至，故送其弟率來，而致有悖舉。滄是首罪，則拿問之啓，未爲</p>

를 보내 데리고 오도록 하였다가 꽤악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식이 수죄(首罪)이니 잡아다 문초하자고 아뢰는 일이 안 될 것은 없으나, 직접 가서 소란을 피운 자는 식의 아우들인 영은군(靈恩君) 이함(李涵)과 영신군(靈愼君) 이형(李潑)이었습니다. 신들이 일을 논하면서 잘못이 있었으니 어찌 감히 편안히 그대로 있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영풍군 식이 창기에게 미혹되어 있어 그 두 아우를 보냈다가 꽤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식은 당연히 수죄가 되어야 하고, 그 아우 함과 형도 공주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죄를 범했으니, 그들만 죄를 모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모두 잡아다 문초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갓가지 역(役) 가운데 응사(鷹師)349)의 역이 가장 고달픈 일입니다. 봄 석 달 및 겨울 석 달 동안에 응역(應役)하는 응사들이 죽을 땅으로 가는 것처럼 고달프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사옹원에서는 출궁한 공주·옹주에게까지 매일 썰을 제공하고 있어 조종조의 구례에 크게 어긋납니다. 선조 때에 어찌다 혁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했던 것인데, 이 또한 선조의 본뜻이 아닙니다. 국법도 지극히 중하고 방한(防限)도 엄격한 것이니 여러 공주·옹주의 집에 응사가 썰을 제공하는 예를 혁파하고, 응사가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응역하고 있는 폐단도 해조로 하여금 좋은 쪽을 따라 변통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전례(典例)를 고찰하여 처치하도록 하였는데, 나중

不可，而親往作拏者，則澆之弟靈恩君涵、靈愼君〔潑〕也。臣等論事，未免失漏，何敢晏然乎？請遞。”上令勿辭。仍啓曰：“靈豐君澆蠱惑娼物，至送其兩弟，致有悖學。澆當爲首罪，而其弟涵、潑身犯主家作亂之罪，理難獨免。請竝拿問定罪。”上從之。又啓曰：“百役之中，鷹師之役最苦。春三朔及冬三朔應役者，如就死地，司饗院日供之雉，猶進於出宮之公、翁主，大違祖宗朝舊例。先朝或未及罷，而因循到今，則亦非先朝之意。國法至重，防限且嚴，請速罷諸公、翁主家鷹師供雉之例，其一年再度應役之弊，亦令該曹從長變通。”上令該曹，考例處置，後竟不施。

	<p>에는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p>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8일(임신) 4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봉상시에서 각종 물품을 새로 받아들일 때 일일이 정밀하게 가리지 않으면, 신조(臣曹)의 당상과 본시(本寺)의 제조가 임시(臨時)하여 품질을 살핀다 하더라도 군박하게 되는 걱정을 면하기 어려우니, 아예 본시의 관원을 가려 차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본시의 관원을 십분 가려 차임해서 직무를 극진히 수행하게 하되 제물(祭物)을 진배할 때 정밀하게 가리지 못한 것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사(法司)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하여 죄를 매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禮曹啓曰：“奉常寺各其物種新捧之時，若不能一一精擇，則臣曹堂上及本寺提調，雖臨時看品，難免有窘急之患，莫如擇差本寺官員。今後則令該曹本寺之官，十分擇差，俾盡其職掌，而祭物進排時，如其不精，則令法司一摘發科罪。”上從之。</p>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11일(을해) 2번째기사</p>	<p>사용원 도제조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왕자와 공주·옹주가 출閣(出閣)한 뒤에는 날마다 공급하는 썩을 감하는 것이 법인데, 인조조(仁祖朝)에 특별히 하교하여 15년을 기한으로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간이 논계하자 성상께서 이렇게 비답하셨으니, 지금부터는 정과(停罷)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p>	<p>司饗院都提調鄭太和啓：“王子、公·翁主出閣之後，則減日供雉，法也。仁祖朝，下別教，限十五歲供給，今者臺諫論啓，聖批如此，自今似當停罷。”上曰：“今亦限年。”又啓曰：“自出閣後計年乎？抑無論出閣先後，</p>

	<p>“지금도 기한을 정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출합한 뒤부터 연수(年數)를 계산합니까? 아니면 출합한 선후를 따지지 말고 모두 지금부터 계산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부터 10년을 기한으로 그대로 지금토록 하라.” 하였다.</p>	<p>竝自今計之乎?” 上曰: “自今限十年仍給。”</p>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1월 12일(병자) 1번째기사</p>	<p>장령 김익렴(金益廉) 등이 출합(出閣)한 공주와 옹주에게 10년 기한으로 썩을 공급케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쟁집하며 폐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들어주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 대왕 대비전을 위로해드리던 날에 송선군(崇善君) 이정(李澁)과 낙선군(樂善君) 이숙(李瀟)이 감히 편복(便服) 차림으로 금중(禁中)을 출입했으니, 외람되게 행동한 죄를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모두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p>	<p>丙子/掌令金益廉等以出閣公、翁主供雉十年爲限，爲不可，爭執請罷，上不聽。又啓曰: “頃者大王大妃殿奉慰之日，崇善君澁、樂善君瀟敢以便服，出入禁中，其僭猥之罪，不可置之。請竝罷職。” 上不從。</p>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2일(을미) 3번째기사</p>	<p>우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상차하기를, “기전(圻甸)을 균전(均田)한 뒤로 1결(結)당 미곡 12두(斗)씩 거두자는 것이 바로 신의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12두를 거두어들여야만 안으로 각사(各司)의 공물가(貢物價)와 밖으로 영관(營官)·사객(使客)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인부와 말[馬] 등 잡역(雜役)도 모두 12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한번 거두어 들인 뒤에는 다시 더 부과해야 할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의 주된 의견은 이와 같을 뿐인데, 대신 및 해청(該廳)의 당상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좋은 방향으로 변통했으면 합니다.”</p>	<p>右議政洪命夏上筭曰: 圻甸均田之後，每結收米十二斗者，卽臣建請也。必以十二斗收捧，然後內而各司貢物之價，外而營官使客之需與夫夫馬雜役，皆入於十二斗之中，一者收捧之後，更無加賦之患。臣之主意，如是而已，願下詢大臣及該廳堂上，從長變通。</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토록 하겠다.”</p>	<p>上曰：“當令廟堂議處。”</p>
<p>현개 10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3일(병신) 2번째기사</p>	<p>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경기에서 거두는 쌀에 관한 일을 지금 회의하여 변통하였습니다. 대간의 의견은 8두를 수봉하자는 생각이었고, 신은 10두를 수봉하였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홍명하 및 김좌명은 12두가 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주관하는 신하의 논의가 이와 같기 때문에 신 등도 그 의논을 따랐고 지금도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하였고, 좌상 원두표가 아뢰기를, “호남·호서·경기에 모두 대동법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도(道)마다 제각기 다르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8두는 절대로 안 되고 10두나 12두로 의논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정태화가 아뢰기를,</p>	<p>上御熙政堂，引見大臣及備局諸宰。領相鄭太和曰：“京畿收米事，今當會議變通矣。臺諫之言，則欲捧八斗，臣則欲捧十斗，洪命夏及金佐明，則以十二斗爲定式。主事之臣，論議如此，故臣等亦從其議，今亦別無異意矣。”左相元斗杓曰：“湖南、湖西、畿甸，皆行大同，而道道各異，寧有是理？”上曰：“八斗則決不可爲，當以十斗、十二斗商確矣。”太和曰：“臣問于原任大臣領敦寧李景奭，初以十斗爲便，而後從右相之言，判府事鄭維城，則其意以爲，既以十二斗出令，今難猝改矣。”獻納李敏叙曰：“今此量田之舉，民皆想望，而及至今日，大與始望相左。且畿甸役煩者，皆是貢物多種故也。貢案，乃燕山弊政，若改定貢案，則雖捧八斗，必無不足之患。此事不可不詳定於初矣。且十二斗，則雖十全無弊，決非均賦之道也。”上曰：</p>

	<p>“신이 원임 대신(原任大臣)에게 물으니 영돈녕 이경석(李景奭)은 처음에 10두를 알맞게 여기더니 나중에는 우상의 말을 따랐고, 판부사 정유성(鄭維城)은 이미 12두로 출령(出令)한 이상 지금 느닷없이 바꾸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p> <p>하였고, 헌납 이민서가 아뢰기를,</p> <p>“이번에 양전(量田)하는 일을 백성이 모두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처음에 바라던 것과 서로 크게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전이 역사(役事)가 번다한 것은 모두 공물(貢物)의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안(貢案)은 바로 연산(燕山)의 폐정(弊政)이니, 만약 공안을 개정하게 되면 비록 8두를 수 봉하더라도 절대로 부족하게 되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일을 초기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12두로 하는 것은 비록 여러 모로 함당하여 폐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코 부세를 균등하게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12두로 하자는 것이 일을 담당 한 자의 의견이고, 8두로 하자는 것이 국외자(局外者)의 의견인데, 차라리 이미 정해진 12두로써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또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입암(笠巖)의 성곡(城穀)을 적간하는 일에 이미 상의 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염문하게 될 때를 기다렸다가 적간을 아울러 거행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사를 보내 적간해야 하겠습니까?”</p>	<p>“十二斗，當事者之言也，八斗，局外之言也，無寧以十二斗已定之法，試行之可也。” 太和曰：“〈笠〉巖城〔穀〕摘奸事，已有上命，待日後廉問時，兼行摘奸乎？抑別遣御史摘奸乎？” 上曰：“別遣御史。” 大司成閔鼎重曰：“各邑倉穀，亦宜令本道監司，一體摘奸矣。” 上從之。 鼎重又曰：“頃日遺棄兒收養者，已令許爲奴婢矣，如此之類，只限己身，至於子孫，則不可仍爲奴婢，舊規然也。 今亦當依此例爲之也。” 上從之。 持平張善〈澂〉曰：“京畿收米之捧，決不可加於湖西。 宜早變通。” 上不悅曰：“主議者一何多也。” 敏叙曰：“京畿收米事，廟堂既已議定，而臣意則終有所不然者。 國家統理衆庶，雖地有遠近，而理無異同，王者議事定制，必求事理之當，況弊在目前，皆謂不可行，難堪之勢，不待日後而可知也。 今若強而行之，欲待弊生而後，爲之變通，則法制已定之後，豈易變通乎？ 今若半減，而以若干不足爲言，則臣亦有一說。 國家如有至誠恤民之意，則不足者八百餘石，豈無推移充足之道乎？ 且爲國者，必立中</p>
--	--	--

	<p>하니, 상이 어사를 별도로 보내라고 하였다. 이에 대사성 민정중이 아뢰기를,</p> <p>“각읍의 창곡도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똑같이 적간토록 해야 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 민정중이 또 아뢰기를,</p> <p>“며칠 전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자는 노비로 삼는 걸 이미 허락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같은 경우에 단지 본인에만 국한하고 자손에 대해서는 그대로 노비를 삼을 수 없는 것으로 옛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 지평 장선징이 아뢰기를,</p> <p>“경기에서 거두는 쌀의 분량을 결코 호서보다 많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찌감치 변통해야 합니다.”</p> <p>하니, 상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p> <p>“주의(主議)하는 사람이 어찌 이리도 많은가?”</p> <p>하였다. 이에 이민서가 아뢰기를,</p> <p>“경기에서 거두는 쌀에 관한 일은, 묘당이 이미 의논해서 결정하였으나, 신의 생각은 끝내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국가가 많은 백성들을 통</p>	<p>正可行之制，用度贏縮，則視此出入。古人年飢用不足，而乃對以盍徹，蓋以此也。請依前啓辭，減捧八斗，夫馬則因舊定役。” 上曰：“已諭廟堂定奪之時矣。” 敏叙又曰：“諸宮家柴場、漁場事，爭執經年，尙未允從，臣欲知此事究竟而退矣。今日大臣、諸臣入侍，請下詢而夫斷也。” 上曰：“釐正則可，盡爲革罷則不可。” 命夏曰：“柴場事，臺諫爭執至此，蓋雖罷火田，不罷柴場，則柴場之內，便是火田。宜詢領、左相而變通之也， 太和曰：“今若查覈酌定，則可以釐正矣。” 敏叙曰：“查覈終歸無實矣。” 太和曰：“然則不必查覈柴場，折受文書，在於內司，可以考出矣。” 上曰：“令廟堂問于內司而處之可也。” 敏叙曰：“士大夫柴場，亦不可不禁斷，且海水折受之弊，亦當一體變通矣。” 上曰：“海水折受，已令查出矣。” 戶判鄭致和曰：“漁場，與漁箭有異，海中漁採之處，是爲漁場，結箭捉魚之處，是爲漁箭也。” 應教南九萬曰：“漁場之弊，甚於柴場，不可不一併查正。” 上曰：“事當從容處之， 凡柴場、漁場、網</p>
--	--	--

	<p>치함에 있어 비록 지역에 원근은 있다고 하더라도 다스리는 일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왕된 자는 일을 의논하여 제도를 정하는 데에 반드시 사리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법인데, 더구나 폐단이 눈앞에 있듯이 뻔하여 모두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감당하기 어려운 형세를 나중에 가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무리하게 시행한 다음 폐단이 생기기를 기다린 뒤에 가서 변통을 하려 한다면, 법제를 이미 정해놓은 후이니 어찌 쉽게 변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반만 감하면서 약간 부족해서라고 이유를 삼으신다면, 신도 한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만일 지성으로 백성을 보살피는 생각을 가진다면 부족한 8백여 석이야 어찌 형편을 바꾸어 충족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중정(中正)하여 행할 만한 제도를 세우고, 용도의 남고 모자람은 형편을 보아 융통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흉년에 용도가 부족한데도 도리어 ‘어째서 철(徹)을 시행하지 않습니까?’³⁶⁷ 라고 대답한 것은 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아뢴 말씀대로 8두로 줄여 수봉하고 인부와 말은 예전대로 역(役)을 정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미 묘당이 정탈할 때 하유하였다.”</p> <p>하였다. 이민서가 또 아뢰기를,</p> <p>“제궁가의 시장·어장에 대한 일을 쟁집한 지 한 해가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윤택하지 않고 계신데, 신은 이 일의 결말을 알고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오늘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입시하였으니, 의견을 물어 결단하소서.”</p>	<p>場、漁箭等處，欲爲查正者，蓋以此也。查出之後，可存者存之，可罷者罷之，如有未盡之事，則更論可也。”</p> <p>鼎重曰：“湖南、湖西凶歉，不至大異，而湖南減米三斗，湖西則不減，施惠不均矣。”上特命減湖西一斗。右相洪命夏曰：“郭齊華以月課不製，至於充軍，李世華則杖殺三人，而罪止永不敘用，輕重顛倒矣。”斗杓曰：“監司啓聞後，三人又斃云，事極驚駭。”上曰：“定配於本道邊地可也。”</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바로잡는 일은 가능하지만,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은 안 될 일이다.”</p> <p>하였다. 이에 홍명하가 아뢰기를,</p> <p>“시장에 대한 일을 대간이 이렇게까지 쟁집하는 것은, 비록 화전(火田)은 없앤다 하더라도 시장을 없애지 않으면 시장 안이 곧 화전이 되는 까닭입니다. 영상과 좌상에게 물어서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지금 만약 조사해 밝혀내서 알맞게 정한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p> <p>하고, 이민서가 아뢰기를,</p> <p>“조사해서 밝혀내는 일은 결국 실효가 없는 채로 끝날 것입니다.”</p> <p>하였다. 이에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그러면 꼭 시장을 조사해서 밝혀낼 것 없이, 떼어준 문서가 내사(內司)에 있으니 조사해 낼 수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	---	--

	<p>“묘당으로 하여금 내사에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이민서가 아뢰기를,</p> <p>“사대부들의 시장도 금단(禁斷)하지 않을 수 없고, 해수(海水)를 떼어준 폐단도 똑같이 변통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해수를 떼어 준 일은 이미 조사해 내도록 하였다고 말했고,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p> <p>“어장(漁場)과 어전(漁箭)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어채(漁採)하는 곳을 어장이라 하고 통발[箭]을 엮어 물고기를 잡는 곳을 어전이라 합니다.”</p> <p>하였다. 이어 응교 남구만이 아뢰기를,</p> <p>“어장의 폐해가 시장보다 심하니 한꺼번에 아울러 조사해서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일이란 차분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니, 무릇 시장(柴場)·어장(漁場)·망장(網場)·어전(漁箭) 등처에 대해 사정(查正)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조사해낸 뒤에, 남길 만한 것은 남기고 없애야 될 것은 없애되 만일 미진한 일이 있다면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p>	
--	--	--

	<p>하였다. 민정중이 아뢰기를,</p> <p>“호남과 호서의 흉년 상태가 그리 크게 차이나지 않은데, 호남은 쌀 3두를 감해주고 호서는 감해주지 않으니, 은혜를 베푼 것이 고르지 못합니다.”</p> <p>하니, 상이 특별히 명하여 호서에 쌀 1두를 감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우상 홍명하가 아뢰기를,</p> <p>“곽제화(郭齊華)는 월과(月課)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군까지 당하고, 이세화(李世華)는 사람을 셋이나 장살했는데도 영원히 서용하지 말라는 죄에 그쳤으니, 경중이 뒤바뀌었습니다.”</p> <p>하고, 원두표가 아뢰기를,</p> <p>“감사가 계문(啓聞)한 뒤 세 사람이 또 죽었다고 하니, 놀랍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p> <p>하니, 이에 상이 이르기를,</p> <p>“본도의 변방에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p>	
--	---	--

<p>현개 10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p>	<p>영동에 크게 흉년이 들어 백성은 상수리 열매와 채식으로 목숨을 부지했고, 상번하는 기병은 가지고 갈 식량이 없었다. 감사 이진(李珍)이 번(番)을 물리</p>	<p>嶺東大饑，民以橡實、[菜]食爲命，騎兵上番，無以持糧。監司李珍，請</p>

<p>2년) 12월 10일(계묘) 2번째기사</p>	<p>고 벼를 거두자고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p>	<p>退番收布, 上許之</p>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18일(신해) 1번째기사</p>	<p>공주와 옹주의 집에 꿩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논을 정계(停啓)하였다.</p>	<p>辛亥/停公、翁主家供雉之啓。</p>
<p>현개 10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18일(신해) 3번째기사</p>	<p>개성 유수 박장원(朴長遠)이 치계하기를, “이번 칙행에 통관배(通官輩)의 요구가 전에 비해 몇 곱절이나 많아 극심하기 짝이 없었으니, 각종 물건을 일일이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옛 도읍의 나머지 백성이 살아나갈 길이 만무하니, 본부(本府)에 있는 호서의 피곡 수천 석을 민간에 나누어 줌으로써 말할 수 없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하소서.” 하였는데, 조정이 1천 석만 허락하였다.</p>	<p>開城留守朴長遠馳啓曰： “今番勅行, 通官輩求請, 比前倍蓰, 罔有紀極, 各種物件, 難以悉舉。 舊都子遺之民, 萬無保存之理, 請得本府所在湖西皮穀數千石, 散給民間, 以解倒懸之急。” 朝廷只許一千石。</p>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26일(기미) 2번째기사</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제궁가(諸宮家)의 시장(柴場)에 대해서는 일찍이 초계(抄啓)해서 품정(稟定)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으니, 이제 그 이수(里數)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장(漁場)과 망장(網場)에 대해서는 모든 의논들이 혁파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曰： “諸宮家柴場事, 曾有抄啓稟定之教, 今當定其里數。 而至於漁場網場, 則僉議皆以爲當罷云, 何以爲之。” 左議政元斗杓曰： “壬辰亂前, 有宣飯之舉, 故諸處漁場, 禮賓寺收稅。 經亂之後, 物力不逮, 宣飯遂廢, 漁場亦不收稅, 作一閑地。 宣祖大王仍命賜給宮家, 此折受之所以創, 而至于今日, 其弊無窮矣。” 上曰： “革罷</p>

	<p>“임진 왜란 전에는 선반(宣飯)580)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어장에서 예빈시가 세금을 거두어들였는데, 난리를 치른 뒤로 물력(物力)이 못 미치어 선반하는 일이 폐지되면서 어장 역시 세금을 거두지 않고 하나의 한지(閑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선조 대왕(宣祖大王)께서 궁가에 사급(賜給)하도록 명하셨으므로 이때부터 절수(折受)받게 해주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폐단이 끝이 없게 되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혁파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은 없다. 다만 선조조(宣祖朝)의 왕자와 공주·옹주로서 현재 생존해 있는 자가 거의 없는데, 선조(先朝) 때 사급한 것을 하루아침에 혁파한다는 것은 인정상으로 차마 못할 일일 뿐만이 아니라, 돌아보건대 여러 궁가들의 여생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지 않으니, 우선 한 곳씩 남겨두어 그 몸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신이 제궁가에서 시장(柴場)을 절수받은 현황을 작성한 장부를 가져다 보건대, 절수받은 숫자에 다소의 차별이 있고 이수(里數)에도 원근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균등하게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두표가 아뢰기를,</p> <p>“사방의 둘레를 10리(里)로 한정한다면 과대한 폐단이 없어지겠습니다.”</p>	<p>亦無不可。而但宣祖朝王子、公·翁主，時存者無幾，先朝所賜，一朝革罷，非但情有所不忍，顧諸宮家，餘日無多，姑存一處，以終其身，不亦可乎。” 太和曰：“臣取見諸宮家柴場折受成冊，則其所折受，有多少之別，里數有遠近之殊，宜一體均定矣。” 斗杓曰：“以周回十里定限，則可無過大之弊矣。” 太和曰：“此說得中，請使諸宮家，自擇一處，而自公家打量里數以給之。” 上曰可。 太和又曰：“頃因湖南儒生裴紀等疏，以大同便否，問于本道監司，使之察見民情之如何，今見趙龜錫啓本，則井邑、求禮、龍潭三邑之外，皆以爲不便矣。” 右議政洪命夏曰：“龜錫狀啓有曰：‘山郡之民，猶恐其不罷，海邑之民，猶恐其或罷云’，山海民情，不同如是。從山乎，則當罷，從海乎則當行，二者之中，於何適從。” 上曰：“海邑願之，則爲之可也。山郡之不願，何可顧耶？” 斗杓曰：“大同之意，將欲以便民也，民不便，則罷之可也。若曰旋行旋罷，有同兒戲，則昔者漢祖，刻印銷印於頃刻之內，而終不失爲善策，唯觀事之當否</p>
--	---	---

	<p>하고, 태화가 아뢰기를,</p> <p>“이 설이 중도에 맞으니, 제공가로 하여금 스스로 한 곳을 선택하게 하되 공가(公家)에서 이수를 타량(打量)581) 하여 지급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p> <p>“지난번 호남 유생 배기(裴紀) 등이 상소한 데 따라 대동법(大同法)의 편부(便否)를 본도 감사에게 문의하여 민정(民情)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 했었는데, 지금 조귀석(趙龜錫)의 계본(啓本)을 보건대 정읍(井邑)·구례(求禮)·용담(龍潭) 3개 읍 외에는 모두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하였습니다.”</p> <p>하고, 우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p> <p>“귀석의 장계 중에 ‘산군(山郡)의 백성들은 오히려 험악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해읍(海邑)의 백성들은 오히려 흑시라도 험악될까 걱정한다.’고 하였으니, 산과 바다의 민정이 이처럼 같지 않습니다. 산군의 요구를 따른다면 당연히 험악해야 하고 해읍의 요구를 따른다면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데,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맞춰 따라야 합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해읍에서 원한다면 해야 할 것이다. 산군이 원하지 않는 것을 돌아 볼 것이 뭐가 있겠는가.”</p>	<p>而已。”命夏曰：“臣初以大同爲不便，而故相臣金堉，力主此議。臣於堉，有同子弟，而所見相左，故堉每以此怒臣。及臣身忝宣惠廳堂上之後，始知均役，莫善於大同也。山郡雖不願，而海邑皆願，則於此亦可見其山海賦役之不均，若欲均役，舍大同何以哉？若不行於山郡，而只行於海邑，則此所謂半邊大同也，一道之中，豈有半邊大同乎？”太和曰：“今之議者，或曰既已爲之，則竝山海而爲之可也，此論似是。蓋山郡之不願者，可見平日賦役之不重也，海邑之自願者，可見其平日賦役之偏苦也。雖然山郡之以大同爲不便者，亦有所以。蓋山郡之米，該廳不能取用，使之作布，作布之際，所損不細。夫以六斗五升之米，換作一匹之布，布價貴而米價賤，故不得已添給以買之，其弊實難堪也。”判尹許積曰：“厥布升品不甚細，尺數不甚長，以十五六斗，換得一匹之說，似不近理，而概聞民情，則怨之者多，其間不無添給之弊矣。”太和曰：“山郡之不願者，專在作布一款，則作布價米，似當略爲變通，俾無不足之患也。”上曰：“山郡</p>
--	--	--

	<p>하였다. 두표가 아뢰기를,</p> <p>“대동법을 실시하는 목적이 장차 백성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함이니, 백성이 불편하게 여긴다면 혁파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금방 시행했다가 금방 폐지하는 것은 아이들 장난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인(印)을 새겨놓았다가 경각간에 녹여 없애버렸는데도 끝내 선책(善策)이 되는 결과를 잃지 않았었으니, 오직 일의 당부(當否)만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p> <p>하고, 명하가 아뢰기를,</p> <p>“신은 처음에 대동법을 불편한 것으로 여겼고 고(故) 상신(相臣) 김육(金堉)은 강력히 이 의논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은 김육에 대해 자제와 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소견이 서로 틀렸기 때문에 김육이 늘 이것을 가지고 신에게 노여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이 직접 선혜청 당상을 맡게 된 뒤에야 비로소 균역(均役)에는 대동법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산군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어도 해읍에서는 모두 원하고 있고 보면, 여기에서 또한 산읍과 해읍의 부역(賦役)이 불균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 균역하려 한다면 대동법을 놔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산군에서는 행하지 않고 해읍에서만 행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반쪽 짜리 대동법이라 할 것인데, 한 도 안에서 어떻게 반쪽 짜리 대동법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태화가 아뢰기를,</p> <p>“지금 의논하는 자들이 더러 ‘일단 시행하는 이상에는 산군과 해읍 모두 아올</p>	<p>作布處，加給米斗。”</p>
--	--	-------------------

	<p>러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주장이 옳을 듯합니다. 대체로 볼 때 산군이 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 평일 부역이 그곳에서는 무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해읍이 스스로 원하는 것 속에서 평일 부역이 그곳에서는 치우치게 고달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p> <p>그렇긴 하지만 산군에서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에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산군의 미곡은 해청(該廳)에서 가져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포목으로 바뀌서 바치게 하는데, 포목으로 바꿀 즈음에 손해보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대체로 6두(斗) 5승(升)의 미곡을 가지고 포목 1필과 바꾸는데, 포목 값은 비싸고 미곡 값은 싸기 때문에 부득이 더 주고 사는 형편이니, 그 폐해를 실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p> <p>하고, 환윤 허적(許積)이 아뢰기를,</p> <p>“그 포목의 품질을 보면 승수(升數)가 그다지 조밀하지 않고 척수(尺數)도 그다지 길지 않은데 15, 16두씩 주고 1필과 바꾼다는 이야기는 이치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대체로 민정(民情)을 들어보면 원망하는 자가 많다 하니, 그 사이에 더 주고 사는 폐해는 없지 않을 것입니다.”</p> <p>하고, 태화가 아뢰기를,</p> <p>“산군에서 대동법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포목으로 바꾸게 하는 한 조목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포목으로 바꾸는 가미(價米)를 약간 변통해 주어 부족하게 되는 걱정이 없도록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 “포목으로 바꿔 바치는 산군에는 미두(米斗)를 더 지급토록 하라.” 하였다.</p>	
<p>현종 7권, 4년(1663</p>	<p>부산 첨사(釜山僉使) 이정옥(李廷沃)의 고신(告身)을 뺐었다.</p>	<p>奪釜山僉使李廷沃告身。 島主平義眞</p>

<p>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27일(경신) 2번째기사</p>	<p>대마도주(對馬島主) 평의진(平義眞)이 보낸 사신이 동래(東萊)에 도착하자 부사 이성징(李星徵)이 정옥과 함께 연향례(宴享禮)를 행하였다. 그런데 소위 봉진(封進)하러 왔다는 왜놈의 성격이 고약스러워 술잔을 들 무렵에 구례(舊例)를 바꾸려고 하였는데 부사가 사리를 들어 다투며 허락하지 않자 왜놈이 버럭 성을 내며 칼을 뽑아들고는 큰 소리를 치면서 뛰어나와 곧바로 부사 앞으로 대들었다. 이때 부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는데 정옥이 겁을 먹고 달아나 피하였다. 대간이 나라를 욕되게 하였다는 것으로 정옥을 탄핵하여 금부에 넘겼는데, 금부가 그 죄는 장 일백(杖一百) 탈고신(奪告身)에 해당한다고 아뢰었다.</p>	<p>遣使至東萊，府使李星徵，與廷沃行宴享禮。所謂封進倭者，性甚怪惡，行杯之際，欲變舊例，府使據理爭不許，倭暴怒拔劍，叫號躍出，直向府使。前府使不爲動，廷沃懼走避之。臺諫以辱國，劾廷沃，下吏奏當杖一百奪告身。</p>
<p>현종 7권, 4년(1663) 계묘 / 청 강희(康熙) 2년) 12월 30일(계해) 4번째기사</p>	<p>병조 참의 이태연(李泰淵)이 어미의 나이가 81세라는 이유로 상소하여 귀양(歸養)할 것을 청하였는데, 해조가 회계(回啓)하기를,</p> <p>“법전에서 이야기하는 귀양이라는 것은 대체로 먼 지방 사람이 아버이를 떠나 서울에서 벼슬하는 경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태연은 집이 서울에 있습니다. 따라서 벼슬하면서 봉양하면 공(公)과 사(私)를 겸행할 수 있으니 체직을 허락해선 안 됩니다.”</p> <p>하니, 상이 따르고, 정원에 하교하기를,</p> <p>“태연의 소를 보건대 말 뜻이 매우 간절하여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경향(京鄉)의 차이가 있어 준허(准許)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진휼(軫恤)하는 도가 없을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옷감과 먹을 것을 넉넉히 지급해 주도록 하라.”</p>	<p>兵曹參議李泰淵以其母年八十一歲，上疏乞歸養，該曹回啓言：“法典所謂歸養者，蓋指遠方人，離親從仕而言，泰淵則家在京中，仕官奉養，公私可以兼行，不宜許其遞職。”上從之。下教政院曰：“觀泰淵之疏，語意甚懇，有足感動，雖京鄉有異，不得準許，亦不可無軫恤之道，其令該曹，優給衣資食物。”戶曹乃給米十石、大豆五石、紬十匹木綿五十匹，人皆榮之。</p>

	하였다. 호조가 이에 미곡 10석(石), 대두(大豆) 5석, 주(紬) 10필, 목면(木綿) 50필을 지급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영광으로 알았다.	
현종 5년 1월 5일(무진), 네 번째 기사	선혜청이 탑전(榻前)에서 품정(稟定)한 데 따라 호남의 산군(山郡)에 작목(作木)할 미곡을 1두씩 더 주는 것으로 규식을 삼자고 청하니, 따랐다.	宣惠廳因榻前稟定，請添給湖南山郡作木米一斗，以爲式。從之。
현종 5년 1월 29일(임진), 세 번째 기사	충청감사 이홍연이 장계를 올려 통정의 체문을 발급해서 곡식을 모집해 기민을 진휼하게 해 줄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忠淸監司李弘淵狀請通政帖文，以募粟賑飢，許之。
현종 5년 2월 19일(임자) 첫 번째 기사	<p>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여러 승지에게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도록 명하였다. 좌부승지 권대운(權大運)이 남병사(南兵使) 윤천뢰(尹天賚)의 추고 공사를 읽으니, 상이 이르기를,</p> <p>“그의 함사(緘辭)가 어떠한가?”</p> <p>하자, 대운이 아뢰기를,</p> <p>“신이 추고할 것을 청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듣기에 정이룡(鄭二龍)이 기해년 국상 때 3년을 소식(素食)했다고 하는데 그의 어떤 점이 변장(邊將)으로 적합하지 않은지 그 내용은 비록 모르겠으나 제목(題目)상으로는 말이 차서가 없습니다.”</p>	<p>壬子/上御熙政堂，命諸承旨持公事入侍。左副承旨權大運讀南兵使尹天賚推考公事，上曰：“其緘辭如何？”大運曰：“此卽臣之所請推也。聞鄭二龍，於己亥國恤，食素三年，雖未知何事不合邊將，而其題目，則語無倫理矣。”右承旨元萬石曰：“忠孝素着，則豈不合於邊將乎？”上曰：“文短而然，不必責也。”挺緯曰：“咸鏡監司徐必遠以生瓜魚進上推考事，狀啓矣，雖係御供，守令遞易，似有弊也。”上曰：“此非御供，乃薦新也。”大運以薦新與御供，事體無間，請自上斟酌。上</p>

<p>하고, 우승지 원만석(元萬石)이 아뢰기를,</p> <p>“평소 충효(忠孝)가 현저하였으니 변장으로 어찌 적합치 않겠습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글이 짧아 그런 것이니 굳이 나무랄 것 없다.”</p> <p>하였다. 오정위(吳挺緯)가 아뢰기를,</p> <p>“함경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생과(生瓜)·생어(生魚)를 진상했다 하여 추고할 것을 장계하여 왔는데 그것이 비록 어공(御供)이라 하더라도 그때문에 수령을 잡아낸다면 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그것은 어공이 아니라 바로 천신(薦新)이었던 것이다.”</p> <p>하였다. 대운이 아뢰기를,</p> <p>“천신이거나 어공이거나 별로 다를 것이 없으니 상께서 참작하소서.”</p> <p>하니, 상이 답이 없었다. 만석이 아뢰기를,</p> <p>“여역이 또 번져 동·서 활인서에 병자가 매우 많고 그 밖에도 사사로이 막사</p>	<p>不答。萬石曰：“癘疫又熾，東西活人署，病人甚多，此外私自出幕者亦多。雨勢今雖開霽，令戶曹覓給空石，俾免沾濕如何？”上曰：“承旨出去，即分付。”大運曰：“諫院官員，以啓辭來在臺廳，使之入來乎？”上使之入侍。正言宋昌啓李行進罷職事，上從之。又啓：“諸宮家折受柴漁場請罷之論，本院曾已姑停，以待廟堂之稟處矣，聞初七日引見時，已有議定。而注書不書出於舉行文書中，臣送言問之，然後始書出，而其記事甚疎漏。其日入侍承旨，亦難免不察之失，請竝推考。”上從之。挺緯曰：“頃日晝講之命，出於日久未寧之餘，臣民孰不喜抃，而厥後更無開筵之事，臣等忝在近密，常以爲悶。今承有眼患之教，若一毫有妨於看書，則何可開筵。或召對儒臣，或引接臣等，使之講論文義，導達民情如何？”上曰：“眼患比前稍減，三四日調治後，欲開筵耳。”大運曰：“眼患復發，則臣意以爲：‘不必新受音釋，使儒臣講論文義而聽之，則亦有所益。’”挺緯曰：“先朝於開政之日，政官若晚來，則或推考，而今無此事。且先朝</p>
--	---

	<p>(幕舍)로 나가 있는 자도 많습시다. 지금은 비록 비가 개었으나 호조로 하여금 빈섬[空石]을 찾아주게 하여 비와 이슬에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승지가 나가서 즉시 분부하라.”</p> <p>하였다. 대운이 아뢰기를,</p> <p>“사간원 관원들이 아뢰는 일이 있어 대청(臺廳)에 와 있는데 들어오라고 합니까?”</p> <p>하니, 상이 입시하라고 하였다. 정언 송창(宋昌)이 이 행진을 파직하는 일을 아뢰었는데, 상이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여러 궁가가 떼어받은 시장·어장을 혁파하자는 청에 대하여 본원이 이미 정론(停論)을 하고 묘당이 여쭙어 처리하도록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듣기에 지난 7일 인견 때 이미 의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서(注書)가 그것을 거행 문서(舉行文書) 속에다 써 내놓지 않고 신이 물어본 후에야 비로소 써 내놓았는데 기사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빠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날 입시켰던 승지 역시 불찰의 잘못을 면키 어려우니, 그들을 다 추고하소서.”</p> <p>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정위가 아뢰기를,</p>	<p>入直之人，或有陳疏者，亦召見之。右承旨元萬石曾在春坊，因陳疏賜對，此所以開言路也。”萬石曰：“臣曾直春坊，適當求言，伏見聖教懇惻，乃敢陳疏，至有召見之舉。又下教于政院曰，‘如有請對者，予當見之。’此豈非聖世事也。臣見先朝爲政日望簡，隨入便下，此眞君臣酬酢如影響。今則政官朝入，輒至晚罷，事甚未安。”善激曰：“聖候久在靜攝之中，故無奮發惕厲氣象，以至君臣上下，委靡退托，大臣瞻前顧後，循塗守轍，媿媿苟同，臣未知國事，終至於何如也。頃日儒臣，議斥李行進事於榻前，自上，下問諸臣，則大臣乃以不聞仰對。而聞大臣在家之時，與其兄弟，亦嘗言此事。天威咫尺之下，豈可如是。”挺緯以爲：“卽今人心委靡，風俗極惡，不可專用仁政，宜用治蜀尙嚴之法也。”左承旨洪處大曰：“(愼) [信] 賞必罰，則紀綱自立。尙嚴之說，恐過矣。”善激曰：“諸葛亮治蜀尙嚴，崔寔譏政多恩貸，是豈不知治體而然哉。仁政雖曰人君大德，若專務仁政，則終歸於姑息苟且之域矣。且在先朝，以近侍</p>
--	---	--

	<p>“지난날 주장 명령이 오랜 기간 편찮으셨던 끝에 나와 신민 모두가 기뻐 손뼉 치지 않은 이가 없었으나, 그 후로 다시는 경연을 연 일이 없어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들로서는 항상 민망히 여겨왔습니다. 지금 안질이 있다는 하교를 들었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글 보기에 방해가 있다면 경연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혹 유신(儒臣)을 소대하시거나 혹은 신들을 인접하여 글뜻을 강론하고 백성들 실정을 여쭙게 하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안질이 전에 비하여 조금 덜하므로 3, 4일 더 치료하고 나서 경연을 열려고 한다.”</p> <p>하자, 대운이 아뢰기를,</p> <p>“안질이 재발하였으면 신의 생각에는 꼭 새로 음(音)과 해석을 배우실 것이 아니라 유신으로 하여금 글뜻을 강론하게 하고 듣기만 하시더라도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정위가 아뢰기를,</p> <p>“선왕조에서는 개정(開政)하는 날 정관(政官)이 만약 늦게 오면 혹 추고도 하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왕조에서는 입직한 사람이 혹 소를 올린 자가 있으면 그를 불러 인견도 하였습니다. 우승지 원만석이 일찍이 춘방(春坊)에 있으면서 소를 올렸던 연유로 사대(賜對)를 하였는데 그게 바로 언로를 여는 길인 것입니다.”</p>	<p>拜邊倅者，不但其人爲榮，朝家擇差之意，亦非偶然，而今則只爲陞擢之階梯，陞資之後，旋即百般圖遞。國家紀綱，豈容如是？以近事言之，吉州牧使任翰伯之事，誠極寒心矣。頃日雖有拿囚之命，其加資似當還奪矣。翰伯自赴任後，稱病廢衙，飲酒度日，終至圖遞而後已，安有如此事耶？”上曰：“翰伯加資還奪。此後自朝家施罪者外，謀避圖遞者，定其朔數，還奪其資，令廟堂定式。”備邊司啓：“以陞資除授外任之人，除朝家施罰者外，謀避圖遞之人，依上教還收其資，以此分付兩銓。”從之。</p>
--	--	---

	<p>하자, 만석이 아뢰기를,</p> <p>“신이 일찍이 춘방에 입직하였을 때 마침 구언(求言)을 하였는데 성상의 하교가 하도 간곡하여 그걸 보고서 감히 소를 올렸더니 심지어 불러 보기까지 하시고 또 정원에 하교하기를 ‘만약 청대자가 있으면 만나보겠다.’ 하셨으니, 그 어찌 성세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보건대 선왕조에서는 정사(政事)가 있는 날 망통(望筒)609) 이 들어오면 금방 내렸으니, 참으로 임금과 신하 사이의 응수가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빨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관(政官)이 아침에 들어오면 으레 저물어서야 파하니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p> <p>하였다. 장선징이 아뢰기를,</p> <p>“성상께서 오랜 기간 조용히 섭양만 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가다듬는 기상이 없어 그 결과 임금과 신하, 위 아래가 시들부들 엉거주춤하기만 하고 대신들도 앞뒤를 재면서 옛 것만을 답습하고 머뭇거리며 남의 의견만 따르고 있으니 신은 나라 일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날 유신(儒臣)이 이행진(李行進) 과척 문제를 놓고 탑전에서 의논드릴 때 상께서 제신들에게 하문하자 대신들은 못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바로는 대신들이 자기들 집에서는 자기 형제들과 그 일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천위(天威)를 지척에 두고 어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p> <p>하자, 정위가 아뢰기를,</p>	
--	--	--

	<p>“지금은 인심이 시들부들하고 풍속이 극도로 나빠 인정(仁政)만 써서는 안 되고 촉(蜀)을 다스리면서 엄한 법을 썼던 그 법을 써야만 합니다.”</p> <p>하니, 좌승지 홍처대(洪處大)가 아뢰기를,</p> <p>“상줄 데 상주고 벌줄 데 벌주면 기강은 저절로 확립될 것입니다. 엄한 법을 써야 한다는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p> <p>하였다. 선장이 아뢰기를,</p> <p>“제갈량(諸葛亮)은 촉을 다스리면서 엄한 것을 숭상하였고, 후한(後漢) 때의 최식(崔寔)은 정사에 은대(恩貸)가 많은 것을 나무랐는데 그들이 어찌 치체(治體)를 몰라 그랬겠습니까. 인정(仁政)이 비록 임금에 있어 큰 덕화라고는 하지만 인정만을 힘쓰다 보면 끝에 가서는 고식적이고 구차하게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왕조에서는 근시(近侍)로서 변방 수령을 제수받으면 그 사람 스스로 영광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그를 골라 임명한 뜻 역시 보통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만 승진 발탁의 디딤돌로 삼아 일단 자급만 오르고 나면 금방 온갖 방법으로 갈려갈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근간의 일로만 말하더라도 길주 목사(吉州牧使) 임한백(任翰伯) 건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지난날 비록 그를 잡아 가두라는 명령은 있었으나 가자(加資)도 당연히 도로 삭탈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백이 부임 이후로 병을 핑계하여 공무는 폐해버리고 술 마시는 일로 날을 보내다가 결국 체직이 되게 하고야 말았으니, 그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한백의 가자는 도로 삭탈하라. 이 후로는 조정으로부터 죄를 받은 자 외에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체직을 도모하는 자는 달 수를 정하여 가자를 도로 삭탈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규정을 정하게 하라.”</p> <p>하자, 비변사가 아뢰기를,</p> <p>“자급이 올라 외임에 제수된 사람 중에 조정으로부터 벌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체직을 도모한 자는 성상의 하교대로 그 가자를 회수하도록 두 전조(銓曹)에다 분부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	---	--

<p>현종 5년 3월 6일(무진), 두 번째 기사</p>	<p>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이 치계하기를,</p> <p>“각읍의 기민(飢民) 수가 통계 7만 4천 1백 5명인데 날마다 엄히 단속하여 각별히 구제하고는 있으나 지금 민간에는 극심한 춘궁기여서 뿌리박고 사는 백성이라 하여 기민 측에 끼지 못한 사람이라도 너무 가난하고 굶주린 자는 그를 세밀히 골라내어, 으레 급여하는 8결을 기준으로 한 환자곡 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별도로 조곡을 계속 주고 있고, 전염병에 걸린 자 1천 5백 29명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대로 건량(乾糧)을 주어 그들 겨레붙이나 이웃에서 보살펴 주도록 하고 있는데, 기민 병민이 날로 불어나고 있어 앞으로 진구책을 계속하자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사안을 진휼청에 내렸다. 진휼청이 회계하기를,</p> <p>“기민과 병민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죽 먹일 거리는 계속 대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종전에 재가하신 대로 곳곳에 죽 쬐는 곳을</p>	<p>慶尙監司李尙眞馳啓曰：“各邑飢民之數，通計七萬四千一百五名，日以嚴節，各別救濟，而卽今民間，春窮切急，有根着，而未參飢民之列，尤甚貧餒者，詳審抄擇，入結還上例給之外，一朔一二番，別爲繼糶。染病者一千五百二十九名，則依前式給乾糧，使其族隣救活，而飢民、病民日以益增，前頭繼賑之策，罔知攸措。”事下賑恤廳。回啓以爲：“飢民病民之數，若是漸多，饋粥之資，其勢難繼，殊甚可慮。依前啓下，處處設粥，一一分饋，俾無餓死之患，絕火者，別令繼給還上，及染病人救活等事，殊甚得宜，請以依此舉行之意，回移。”上從之。</p>

	<p>두고 낱알이 나누어 먹여 굶어죽는 걱정은 없도록 하게 하고 끼니가 끊긴 자에 대하여 별도로 조곡을 계속하고 환자곡을 급여하는 일, 또는 전염병자를 돌보아 살리는 일 등은 매우 잘한 일이니 그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회이(回移)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p>	
<p>현종 5년 3월 19일(신사), 세 번째 기사.</p>	<p>전라 감사 정만화(鄭萬和)가 사조(辭朝)하니, 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본도가 인물(人物)로는 팔도에서 가장 대단한 곳이니 흠어진 백성들을 안집시키는 책임에 있어 경은 마음을 다하라.”</p> <p>하니, 만화가 답하기를,</p> <p>“신이 재능은 비록 모자라지만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작년 재실(災實) 문제를 본도가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경은 인수인계 관계로 하여 구애받지 말고 사실대로 아뢴 것이며, 진휼 문제도 단단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p>	<p>全羅監司鄭萬和辭朝， 上御熙政堂引見。 上曰：“本道人物之盛， 最於八路， 安集流散之責， 卿其盡心焉。” 萬和對曰：“臣才雖不逮， 敢不竭心。” 上曰：“上年災實， 本道多不以實， 卿勿以交承爲拘， 從實啓聞， 賑事亦宜着念也。” 萬和對曰：“前監司雖有災實不以實之失， 或謂全無飢民云者， 亦似過實。 臣何敢拘於交承， 而啓不以實也。 聞沿海各邑， 未必皆失稔， 其中饑荒處， 設粥賑飢， 不無虛實相蒙之弊。 故賑恤廳以此爲慮， 而但念作粥賑飢之後， 其所用穀物， 賑廳若不會減， 及秋徵捧， 則其在國體， 誠極未安矣。” 承旨權大運曰：“作粥賑民， 而反徵其穀， 則國體果爲未安矣。” 上</p>

	<p>하니, 만화가 답하기를,</p> <p>“전임 감사가 재실을 사실대로 보고 하지 않은 잘못은 있을지라도, 혹자가 말한, 전혀 굶주린 백성이 없었다고 한 것은 그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인수인계에 구애받아 아뢰기를 사실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들리는 바로는 연해(沿海) 각읍이 꼭 다 흉년인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도 굶주림이 심한 곳을 찾아 죽을 썬어 기민을 먹이자면 허실이 서로 엇갈리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진휼청에서는 그것을 염려하고 있으나 다만 죽을 썬어 기민을 먹인 후 거기에 소요 되었던 곡식을 진휼청이 만약 회감(會減)610) 하지 않고 가을에 가서 징봉(徵奉)한다면 그는 국가 체면으로 보아 매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p> <p>하자, 승지 권대운이 아뢰기를,</p> <p>“죽 썬어 기민을 먹이고는 그 곡식을 도로 징봉한다는 것은 국가 체면으로 보아 과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호남 지방이 크기가 영남에 비하여 어떤가?”</p> <p>하니, 만화가 답하기를,</p> <p>“영남은 넓이가 매우 큼니다.”</p>	<p>曰：“湖南地方之大，比諸嶺南何如？”萬和對曰：“嶺南幅員甚大矣。”上曰：“土地肥饒，則湖南爲優耶？”萬和對曰：“田土比嶺南尤好，人物亦蕃於嶺南。而嶺南則人心敦實，自古無革號之變，湖南人心狡詐，虛僞之習、獄訟之弊，罔有紀極矣。”上曰：“軍兵比嶺南何如？”萬和曰：“湖南之兵，皆是精強，而其心狡詐，故丙子之亂，嶺南之兵，則戰敗後再聚，而湖南之兵，不得更聚矣。且湖南近行新法，而誠難善爲奉行，臣以此惶悶。”上曰：“大同之法，可着實舉行也。”仍賜臘藥弓箭等物。</p>
--	---	---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땅이 비옥하기는 호남이 더 나은가?”</p> <p>하니, 만화가 대답하기를,</p> <p>“땅도 영남에 비하면 더욱 좋고 인물도 영남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영남은 인심이 두터웁고 진실하여 옛날부터 혁호(革號)의 변이 없었고, 호남은 인심이 교활하고 속임수가 있어 허위적인 풍습과 옥송(獄訟)의 폐단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군대는 영남에 비하여 어떠한가?”</p> <p>하니, 만화가 아뢰기를,</p> <p>“호남은 군대가 모두 정예하고 강하지만 마음이 교활하고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병자년 난리에 영남 군대는 싸움에서 패한 후에도 다시 모였으나 호남 군대들은 다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호남에다 신법(新法)을 시행하고 있는데 잘 봉행(奉行)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어서 신이 그 때문에 두렵고 민망함을 느끼고 있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	---	--

	<p>“대동(大同)의 법을 착실히 거행하도록 하라.”</p> <p>하고, 이어 납약(臘藥)·궁전(弓箭) 등의 물품을 하사하였다.</p>	
<p>현종 5년 3월 19일(신사), 네 번째 기사</p>	<p>경상 감사 이상진이 치계하기를,</p> <p>“각읍의 기민이 통계 11만 3천 4백 38명인데 그들에게 죽을 먹인지 이미 5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봄갈이가 한창이어서 꼭 권농(勸農)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귀농(歸農)을 자원한 자에 대하여는 신축년에 하던 예대로 건량(乾糧)을 주어서 돌아가 농사에 임하게 하고, 그대로 죽 먹기를 원한 자는 종전과 똑같이 죽을 먹이고 있으며, 그 밖의 녹(祿)이 끊긴 전직자로서 궁하게 살면서 끼니가 끊긴 사람, 또는 행의(行誼)가 남다르면서도 너무 가난하게 사는 자로서 공론에 오른 사람이면 그들 명단을 뽑아 별도로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 자 4천 2백 84명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건량을 주어 이웃이나 겨레불이가 각별히 돌보고 농삿일도 도와주도록 하고는 있으나 기민·병민이 가면 갈수록 더욱 불어나 앞으로 그들을 구제하려면 두루 손이 미치지 못할 염려가 있어 그것이 매우 민망스럽고 걱정되는 것입니다.”</p> <p>하였는데, 그 사실을 진홀청에 내렸다.</p>	<p>慶尙監司李尙眞馳啓曰： “各邑飢民，通計十一萬三千四百三十八人，而饋粥已過五十日。 卽今春耕方急，合有勸農之舉，故自願歸農者，依辛丑年例給乾糧歸農， 只以仍願喫粥者， 依前饋粥，至如失祿前銜，窮居絕火之人及行誼表著，而尤甚貧餒，出於公論者，亦令單抄，別樣分賑。 染病者四千二百八十四人，依前給乾糧，使其隣族，各別救活，助耕田土，而飢民病民，愈往愈增，前頭救活，恐未遍及，極可悶慮。” 事下賑恤廳。</p>

<p>현종 5년 4월 3일(을미), 첫 번째 기사</p>	<p>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지난번 인견 때 대사성 민정중이 그 직을 간곡히 사양했기 때문에 신이 그것은 으레 겸임하는 직이 아니라고 아뢰었던 것인데, 못사람들 논의가 모두 정중이 그 동안에 한 일이 많은데 그것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선비들이 실망의 빛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대사성 일을 그대로 살피게 하소서.”</p> <p>하여, 상이 그를 운허하였다.</p> <p>상이 이르기를,</p> <p>“근래 전염병이 심하게 번지고 있으니 활인서(活人署)에서는 병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약물(藥物)도 두 의사(醫司)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라.”</p> <p>하였다. 김좌명이 아뢰기를,</p> <p>“영동(嶺東)이 흉년이기 때문에 대신이 도신(道臣)의 장계에 따라 대동청(大同廳)이 징수할 쌀을 6백여 섬이나 견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남(嶺南)은 견감한 잡역의 값을 모두 진청(賑廳)에서 주었습니다. 강원도도 그 견감한 잡역 값을 영남에서 한 예대로 처리해야 합니까?”</p> <p>하고, 정중이 아뢰기를,</p>	<p>乙未/上御熙政堂，引見大臣及備局諸臣。領議政鄭太和曰：“頃日引見時，因大司成閔鼎重懇辭其職，臣以此非例兼之職，仰達矣，群議皆以爲：“鼎重多有施措，未免中止，士心缺然云。大司成可使仍察，”上允之。上曰：“近來染患甚熾，活人署病人處食物題給，藥物亦令兩醫司題給。”佐明曰：“嶺東凶荒故，大臣因道臣狀啓，蠲減大同廳收米之數，至六百餘石矣。嶺南蠲減雜役之價，皆自賑廳給之。江原道蠲減之役，亦依嶺南例乎？”鼎重曰：“以事體言之，則蠲減役價，賑廳寧有移償之理哉？”積曰：“均是國事，何可不爲也。請使移給二百石。”上從之。積曰：“兩湖宣惠廳餘米甚不足，無以支用。今番裁省時，除留兩湖各邑官需米，以爲賑救之用，而湖西則時無賑事，其除留米，取用何如。”太和曰：“此則事體未安。當初除留各官自俸之米，爲賑飢民也。今若不用於賑政，則當還給本官，何可移用於宣惠廳乎？”積曰：“若不移用此米，則貢</p>

	<p>“일의 모양으로 말하자면 건감한 잡역의 샅을 어찌하여 진청이 대신 갚아야 할 이치가 있겠습니까.”</p> <p>하고, 허적이 아뢰기를,</p> <p>“똑같은 나라 일인데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2백 섬을 돌려주게 하소서.”</p> <p>하여, 상이 그대로 따랐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양호의 선혜청에 남아 있는 쌀이 매우 부족하여 지용(支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재생(裁省) 때 양호의 각읍 관수미(官需米)를 떼두어 진구(賑救)에 이용하게 하되, 호서는 당장 진구할 일이 없으므로 그 떼어둔 쌀을 가져다가 쓰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그것은 사리상으로 보아 미안한 일입니다. 당초 각관에서 자봉(自奉)의 쌀을 떼어둔 것은 기민 진구를 위해서인데 지금 만약 그것을 진구용으로 쓰지 않으려면 당연히 본관(本官)에게로 되돌려줘야지 어떻게 그것을 선혜청으로 옮겨다 이용한다는 말입니까.”</p> <p>하자, 허적이 아뢰기를,</p>	<p>物給價之米，無以充給，貢物主人輩，以未給價之故，怨聲徹天矣。” 鼎重曰：“如不得已，則取半用之猶可也，至於全數取用，事體不當。” 上曰：“一半還給本官，一半令宣惠廳取用。” 佐明曰：“別害僉使張文奎以朔試射，連次居首，除拜僉使，蓋出於賞格。而今聞其父母，年皆八十，群議以爲：‘情理可矜’似當有變通之道。” 太和曰：“此則非厭避之類也。情理如此，而不許遞，則賞職之意安在。” 上許遞。 太和曰：“國家當以孝理爲尙。昔在宣祖朝，有一武人，家在原州，連爲六鎮倅，遞歸之後，又除邊倅，其人上疏乞往見老母。宣廟憫然，特除南陽府使，榮養其母，其人不勝感泣。若以孝爲理，則人豈無報效之心乎？” 戶曹判書鄭致和曰：“上年湖南稅入之縮，其數甚多，米至四百餘石，大豆亦一百餘石。當此經費不足之日，且多養軍兵，一朔放料極多。賑廳所用兩湖貢物價，自戶曹移用何如？” 上曰可。 鼎重以還差大司成，事體顛倒，仍辭本職，上曰：“本職當從容處之。” 大司諫金壽興啓曰。 “蕃臣之於朝廷，</p>
--	---	--

	<p>“만약 그 쌀을 옮겨다 쓰지 않으면 공물값 지급할 쌀을 충당할 길이 없는데, 공물 주인들은 값을 주지 않는다 하여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p> <p>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p> <p>“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절반 정도는 이용해도 되겠지만 전량을 다 쓴다는 것은 사리상으로 보아 부당한 일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절반은 본관에게로 되돌려주고 절반은 선혜청에서 이용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p> <p>“별해 첨사(別害僉使) 장문규(張文奎)가 삭시사(朔試射)에서 연거푸 수석을 하여 첨사에 임명되었는데, 그것은 상격(賞格)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듣자니 그의 부모 나이가 모두 80이어서 못사람들 논의가 정리상으로 보아 애처롭다 합니다. 달리 변통의 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p> <p>하고, 태화가 아뢰기를,</p> <p>“그것은 싫어서 기피하는 유가 아닙니다. 정리가 그러한데도 체차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상직(賞職)이라는 의의가 어디 있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체차를 허락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事體嚴截，而近來體統大壞，藩臣少有責罰，輒敢費辭辭職，已極非矣。今者趙龜錫既已罷職之後，乃以災實一事，張皇馳啓，其在事體，誠極不當。請推考。”上從之。仍謂諸臣曰：“副校理李端夏上疏，亦與龜錫狀，先後入啓矣，龜錫於緘答，則猶可自明，至於狀啓，則實猥濫矣。”壽興又啓曰：“榻前辭職，事體重大，故堂上以下，則不敢爲之，而吏曹參議閔鼎重前後榻前，煩瀆辭職，請推考。”上從之。</p>
--	---	--

“국가는 마땅히 효리(孝理)를 숭상해야만 합니다. 옛날 선조조에서 어느 한 무인이 집이 원주(原州)인데, 연이어 육진의 고을원을 역임하고 갈리어 돌아온 후 또 변방 고을원에 임명되자 그가 상소하여 자기 노모를 뵈겠다고 빌었습니다. 이에 선조께서는 그를 측은히 여겨 남양 부사(南陽府使)를 특별 제수하여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게 하였으므로 그는 너무나 감격하여 울었습니다. 만약 효로 다스린다면 사람들이 어찌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

“작년에 호남 세입(稅入)은 너무 많은 수량이 줄어 쌀이 4백여 섬, 대두(大豆)가 1백여 섬이었습니다. 이렇게 경비가 부족한 날 많은 군대까지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방료(放料)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휼청이 써야 할 양호의 공물 값을 호조에서 옮겨다 쓰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민정중이 대사성에 도로 임명한 일은 사리와 체통이 전도된 것이라 하여, 이어 본직까지 사직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본직에 대하여는 조용하게 처리하리라.”

하였다. 대사간 김수홍이 아뢰기를,

“번신과 조정과는 사리나 체통으로 보아 사이가 엄격한데 요즘 와서 체통이 크게 무너져 번신으로서 조금만 책벌을 당하면 감히 금방 사연을 늘어놓으며 사직하곤 하니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조귀석만 하더라도 이미 파직이

된 뒤인데도 불구하고 재실(災實) 그 한 문제로 인하여 장황하게 치계를 하였으니 사리나 체면으로 보아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그를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이어 제신들에게 이르기를,

“부교리 이단하의 상소도 귀석의 장계와 전후하여 입계(入啓)가 되었는데 귀석이 함답(緘答)에서는 자기변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장계까지 한다는 것은 실로 외람된 일이다.”

하였다. 수홍이 또 아뢰기를,

“답전에서 사직하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당상(堂上) 이하는 감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조 참의 민정중이 한 번도 아니게 답전에서 번독하게 사직하였으니 그도 추고하소서.”

하여, 상이 그대로 따랐다.

<p>현종 8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11일(임신) 5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 이시매(李時棫)가 남한 산성의 쌀을 얻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기를 원한다고 장계를 올렸습니다. 수어사(守禦使)로 하여금 창고에 남아있는 쌀 3, 4천 석을 참작해서 도신에게 주어 그 지역 백성의 다소에 따라 공평히 나누어주도록 하고, 그 석수(石數)는 책을 만들어 본사 및 수어청(守禦廳)에 보내 가을에 대조하여 거두어들이는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윤택하였다.</p>	<p>備邊司啓曰：“京畿監司李時棫狀啓，願得南漢米，以救飢民。令守禦使，參量留庫米三四千石，以與道臣，隨其民口多少，平均給糶，而其石數成冊，送于本司及守禦廳，以爲待秋照捧之地。”上允之。</p>
<p>현종 8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12일(계유) 2번째기사</p>	<p>이 당시 경기 지방의 흉년이 특히 더 심하였다. 겨우 양전(量田)이 끝나 백성들이 더욱 곤궁하고 초췌한데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올 무렵이었으므로 백성들이 식량이 떨어져 굶주리고 있는데도 진휼해주는 거조가 없었다. 감사가 남한 산성에 비축해 둔 수천 석의 쌀을 나누어 지급하자고 청하면서 형세상 허다한 굶주린 백성에게 두루 다 나누어주기가 어렵다고 하니, 진휼청이 아뢰기를,</p>	<p>是時京畿農事，失稔特甚。纔經量田，民益困悴，春夏之交，民方阻飢，而無賑恤之舉。監司啓請分給南漢米數千石，以勢難遍及於許多飢民，賑恤廳啓：“以本廳遺在，尙有萬餘石，請除出其一半，令本道監司，參酌分給於願</p>

	<p>“본청에 남아 있는 것이 아직 1만여 석이나 되니, 그중에서 반을 제해 내어 본도 감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는 각읍에다 참작해 나누어 주어서 눈앞의 위급한 상황을 구제하고, 가을이 되거든 모곡(耗穀)을 제외하고 도로 거두어서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는 바탕을 삼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상이 윤허하였다.</p>	<p>受各邑，以救目前，而待秋除耗還捧，以爲一分蒙惠之地。”上允之。</p>
<p>현종 8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20일(신사) 2번째기사</p>	<p>진휼청이 아뢰기를,</p> <p>“식량이 떨어져 굶주리는 기전(畿甸)의 백성 문제에 있어서, 본청에서 진휼해 주고 남은 쌀 6천 석을 가지고 받기를 원하는 각읍에 나누어주라고 본도에 알렸는데, 지금 본도에서 만든 책을 보니 도내 각읍에서 받기를 원하지 않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읍에 나누어주는 몫이 많아도 3, 4백 석에 불과하고, 적게는 겨우 1백여 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쌀을 가지고서는 허다한 굶주린 백성들을 두루 구제하기가 형세상 어렵습니다. 청컨대 6천 석 이외에 4천 석을 추가로 지급해 1만 석의 숫자를 채워서 먹여주기를 바라는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혜택을 입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윤허하였다.</p>	<p>賑恤廳啓曰：“畿甸阻飢之民，以本廳賑餘之米六千石分給，願受各邑，知會本道，而今見本道成冊，則道內各邑，無不願受。故一邑所分，多不過三四百石，小則纔百餘石。以此些少之米，勢難遍救許多飢民。請於六千石外，加給四千石，以滿萬石之數，俾令望哺之民，得蒙實惠。”上允之。</p>
<p>현종 8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22일(계미)</p>	<p>함경 감사 서필원(徐必遠)이 치계하기를,</p> <p>“도내에 허통을 받지 못한 서얼로 과거 시험에 나아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p>	<p>癸未/咸鏡監司徐必遠馳啓曰：“道內未許通庶孽不得赴舉之類，願納粟受許通帖文。故以前日常平廳下送者，已盡</p>

<p>1번째기사</p>	<p>들이 곡식을 바치고 허통하는 체문(帖文)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전일 상평청에서 내려보낸 것은 이미 모두 나누어주고 곡식을 받았는데, 이외에도 허통첩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또 많다고 합니다. 진흙해 구제하기가 한창 급한 이때에 곡물은 또한 관계된 바가 매우 큼니다. 청컨대 해청으로 하여금 넉넉히 허통첩을 만들어 보내게 하소서.”</p> <p>하니, 일을 상평청에 내렸다. 상평청이 1백 장을 보내주기를 청하니, 허락하였다.</p>	<p>分給納粟，而此外亦多願受者。賑求方急之日，穀物亦甚有關，請令該廳，從優成送許通帖事。”下常平廳，請送一百張，上許之。</p>
<p>현종 8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22일(계미) 4번째기사</p>	<p>개성 유수 오정위(吳挺緯)가 치계하기를,</p> <p>“본부는 기근이 매우 심하고 염병이 크게 번져 혹 열 집, 혹 수십 집, 혹 온 마을이 모두 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각부에서 앓고 있는 사람이 모두 합해 6백 25인이고, 사망한 자가 40인이나 됩니다. 날마다 죽을 끓일 곡식을 청하는데, 쌀과 콩을 약간 모아 준 외에는 달리 손을 쓸 데가 없습니다. 장차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을 뻔히 서서 보게 되었으니, 청컨대 해조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소서.”</p> <p>하니, 일이 호조에 내려지자 진흙청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청하였고, 진흙청은 청하기를,</p> <p>“경기의 굶주린 백성들을 진흙해준 예에 따라 본청에 있는 대미(大米) 3백 석을 본부로 하여금 수령해 가서 나누어 진흙케 하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모곡(耗穀)은 제외하고 도로 경창(京倉)에 납입케 하소서.”</p>	<p>開城留守吳挺緯馳啓曰：“本府饑饉太甚，染病大熾，或十家、或數十家、或一村，皆染痛。各部合六百二十五人，而死亡者至於四十人。日請糜粥之資，而若干會付米豆之外，他無下手處。將未免立視其死，請令該曹指揮事。下戶曹，請令賑恤廳稟處，賑恤廳請依京畿飢民例，以本廳所在大米三百石，令本府受去分賑，待秋除耗，還納京倉。”上允之。</p>

	하니, 상이 윤택하였다.	
현개 11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25일(병술) 3번째기사	함경도에 전염병이 매우 심하여 감사 서필원이 약물을 보내달라고 계청하니, 상이 의사(醫司)로 하여금 내려보내게 하였다.	咸鏡道癘疫大熾， 監司徐必遠啓請藥物， 上令醫司下送。
현개 11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5월 28일(기축) 1번째기사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澥)가 상소하여 치사(致仕)를 청하고 아뢰기를, “나이 일흔이 되면 치사를 하는 것은 《예경(禮經)》에 분명하게 실려 있으며 신하에게는 영광된 절목입니다. 보잘것없는 신이 삼가 스스로를 헤아리지 못하고 망령되게 옛 사람을 본받아 여러 차례 치사하는 글을 올렸습시다만, 정성이 부족하여 윤택을 받지 못하였으니 삼가 훌륭한 조정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신은 그 글을 올린 뒤로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 말없이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러난 것도 아니며 의리도 없고 명분도 없으니 신의 처신이 신 스스로도 우습습니다. 성상께서는 이 늙은 신하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물러가 몸을 돌볼 수 있게 은혜를 내리소서. 그러면 신이 비록 매우 어리석으나 어찌 감격할 줄을 모르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신하는 노년의 절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니, 바른 자리로 돌아가서 죽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요즈음 들으니, 간원의 신하가 상소를 올리자 비로소 물러가는 것을 허락하여 신하의 절개를 면려하셨다고 하는데, 신은 죽기 전에 변함없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신이 전일에 올린 소청을 윤택해 주시어 신으로 하여금 여유있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성스러운 시대에 이 늙은 몸이 보존된다면	己丑/咸陵君李澥上疏乞致仕曰： 七十致仕， 禮經之明訓， 人臣之盛節。 臣之駑劣， 竊不自揆， 妄擬古人， 屢上告老之章， 只緣誠意淺薄， 未蒙恩許， 竊爲聖朝， 不無慨然。 臣自是之後， 杜門自廢， 悶默苟度。 不仕不退， 無義無名， 臣之行止， 臣亦自笑。 聖上特軫老臣， 加賜惠養。 臣雖至頑， 寧不知感？ 第念人臣晚節， 在所加勉， 得正而斃， 臣之上願。 近聞諫臣陳疏， 始開許退之路， 以勵人臣之節， 臣欲於未死之前， 冀蒙終始之恩。 乞許臣前日之請， 俾臣得以優閑自在。 不失爲聖代之舊物則， 禮使之道， 有光聖德礪世之具， 非特私幸。

	<p>예로써 부리는 도가 성덕을 빛나게 할 것이고 세상을 격려하는 문구가 저 개인의 다행일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상이 이조에 내렸다. 이조가 아뢰기를,</p> <p>“의리에 있어 국가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신하가 녹봉을 반납하고 일을 사양하는 것은 그 뜻은 비록 가상하지만 치사를 가벼이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 승지 김익경이 아뢰기를,</p> <p>“나이가 차서 치사를 하는 것은 예제(禮制)에만 분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법전에도 실려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에 관계되는 자가 아니면 본디 그의 소청을 따라 허락하여 염치를 면려하는 것이 옳은데, 근년 이래로 이 일이 폐지되어 조정의 신하 가운데 혹 나이가 차서 물러가기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조정에서는 반드시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니, 식자들이 참으로 이 일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p> <p>이제 함릉군 이해가 녹봉을 받지 않고 일을 사양한 것이 이미 해가 넘었는데, 지금 또 치사(致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한 것이 앞뒤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련두지 않고 물러나려는 뜻은 말세의 풍속을 면려할 수 있는 것인데, 해조가 회계하기를 ‘훈구 신하를 정성껏 대우하는 도리로 보아 가벼이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치사하는 법은 신하에게 있어서는 머물 곳을 알아서 머무는 고상한 절조이고, 조정에 있어서는 신하를 예로써 부리는 성대한 법전입니다. 그렇지만 구차스럽게 잡아두는 것으로 정성껏 대우하는 도리</p>	<p>上, 下吏曹。 吏曹以爲: “義同休戚之臣, 納祿謝事, 其志雖可尚, 不可經許致仕。” 上從之。 承旨金益旻啓曰: “年至致仕, 不但禮制甚明, 自是國典所載。 非係國家安危者, 固當因其請而許之, 以礪廉隅, 而近年以來, 此事廢閣, 朝臣中或有引年求退者, 而朝家視爲必不可許之事, 識者固已慨然於此矣。 今者咸陵君李澥納祿謝事, 今已有年, 今又以致仕爲請, 前後非一。 恬退之志, 足以風礪末俗, 而該曹回啓, 以爲: ‘眷待勳舊之道, 不可輕許。’ 致仕之法, 在人臣, 爲知止之高節, 在朝家, 爲禮使之盛典。 未聞以區區維繫, 爲眷待之道也。 今若以不許爲眷待, 而終不准其請, 則自今士大夫致仕, 將不可復見矣。 臣之愚意以爲, 先從李澥, 始特副其願, 以存禮典遺意, 必有光於國家矣。” 上不從。</p>
--	--	--

	<p>를 삼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뒤로는 사대부가 치사하는 것을 장차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먼저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특별히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 《예전(禮典)》의 남긴 뜻을 보존하면 필시 나라에 빛남이 있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p> <p>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p>	
<p>현종 8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6월 13일(갑진) 3번째기사</p>	<p>상이 회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우상 홍명하에게 이르기를, “무사히 갔다 왔으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행이다.”</p> <p>하니, 대답하여 아뢰기를,</p>	<p>上御熙政堂，引見大臣備局諸臣。上謂右相洪命夏曰：“無事往還，公私之幸也。”對曰：“皆聖上賜也。”領相鄭太和曰：“公貿米年限已滿。故備局曾以綿布與米便否，訪問民情於道臣矣。今見監司李尙眞狀啓以爲：‘今因復舊之舉，不陞木綿之品，而更不許</p>

	<p>“모두 성상의 은덕입니다.”</p> <p>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공무역하는 쌀을 보내는 연한이 이미 찻습니다. 그러므로 비국에서 일찍이 면포(綿布)로써 하는 것이 편한지 쌀로 하는 것이 편한지의 여부를 가지고 도신(道臣)에게 민간의 실정을 묻게 하였습니다. 지금 감사 이상진(李尙眞)의 장계를 보니 ‘지금 옛 제도를 회복하는 거조로 인해 목면의 품등(品等)을 올리지 않으면서 다시 쌀을 허락치 않는다면 매우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대마도(對馬島)는 본래 곡식이 귀하여 도주(島主)가 이 쌀을 얻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연한이 차기는 했지만 지금 만약 정지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전처럼 쌀을 지급하더라도 만약 그 양을 줄인다면 꽤 다행이겠습니다. 먼저 양을 줄이자는 것으로 말을 했다가 부득이한 뒤에 그대로 허락한다면 양을 줄일 수는 없더라도 점점 더해주는 데에는 반드시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주가 본도로 돌아오면 위문하는 역관을 으레 보내게 되니, 그때에 의논해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였다. 상이 명하에게 청나라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며 아뢰기를,</p> <p>“어린 황제가 재용을 절약하여 창고가 가득찼으며, 해마다 풍년이 들어 인물이 번성하며, 수레에 말을 매는 것을 금지하여 말로 짐을 실어나르지 못하게 하며, 바야흐로 과거를 베풀어 선비를 취한다고 합니다.”</p> <p>하였다. 상이 명하가 올린 방목(榜目)을 영상에게 내어주며 이르기를,</p>	<p>米，則大善云’，而此則恐難成也。馬島本來穀貴，島主以得此米，爲極幸。年限雖滿，今若停止，彼必不肯從。設令仍前給米，若減其斗數，則差幸。先以減其斗數爲言，不得已然後許之，雖不得減，必不至漸加矣。島主還島，例送問慰譯官，可於其時議定矣。”上問命夏以清國消息，對曰：“兒皇節用，而府庫充溢，年歲屢登，而人物蕃盛，禁馬駕車，使不得雇載，方設科取士云，矣。”上以命夏所上榜目，出授領相曰：“彼無乃假作榜目而矜耀我國耶?”命夏曰：“雲南、福建之人，亦入其中，統一據此可知。且臣路遇一舉子，舉子曰：‘無銀不得做進士。’以此觀之，似不虛也。”上笑曰：“此落榜者之言也。”命夏曰：“我國秘密之事，大通官輩，無不知之。如江都、南漢、紫燕等處營爲之事，亦知其概，言於譯輩，誠可慮也。”許積曰：“如搢紳間黨論，通官輩皆知之。至曰：‘某人某黨也，某人某黨也’，此實朝廷之羞也。”太和曰：“判敦寧尹綱以年迫百歲之人，頃者卒逝，既不得禮葬，又無別致賻之命。其家貧甚，無以爲葬，</p>
--	--	--

	<p>“저들이 거짓으로 방목을 만들어 우리 나라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닌가?”</p> <p>하니, 명하가 아뢰기를,</p> <p>“운남(雲南)과 복건(福建) 사람들도 그 방목 안에 들어 있으니, 통일된 것 위에 근거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이 길에서 한 과거 응시자를 만났는데, 그 응시자가 말하기를 ‘은(銀)이 없으면 진사가 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빈말이 아닌 듯합니다.”</p> <p>하자, 상이 웃으며 이르기를,</p> <p>“그 말은 낙방한 자의 말이구나.”</p> <p>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p> <p>“우리 나라의 비밀스런 일들을 대통관(大通官)들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강도(江都)·남한(南漢)·자연(紫燕) 등처를 경영한 일과 같은 것도 그 대략을 알고 있어 역관들에게 말을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p> <p>하니, 허적(許積)이 아뢰기를,</p> <p>“벼슬아치 사이의 당론과 같은 것도 통관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개는 무슨 당이고, 아무개는 무슨 당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니, 이는 실로 조정의 수치입니다.”</p>	<p>似當有顧恤之道矣。” 上曰：“優給葬需。” 命夏曰：“兩西民怨孔棘。或以糶糴之逋欠，或以各司奴婢身貢，既侵其族，又及其隣，一道無不皆然。至於管餉鋪子，其弊尤甚。關西，則設立既久，海西，則設立纔十餘年，而此非貿遷有無之義。勒給貨物，至累年殖利，然後方始督徵，而負債者或逃或亡，則侵及於族屬、隣里，呼怨之聲，遍於道路。不可不罷以紓民怨矣。” 上令諸臣，各陳所見。太和曰：“此事始因物力之不足，欲殖利補民，而至于今日，其弊果多矣。” 鄭致和曰：“民情願罷久矣。兩西所當，一體罷之。” 許積曰：“弊固如此，罷之爲當。而若罷鋪子，則雇馬極難，必先究其立馬之策，然後可罷。黃海道先爲革罷，平安道問于道臣，變通可也。” 上命從積言。積曰：“臣前年待罪刑曹，有各道全家罪人案更閱裁決之命，臣今已遞，仍爲處決未妥矣。” 上曰：“卿可仍決也。”</p>
--	--	---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관돈녕 윤경(尹綱)은 나이가 1백 살에 가까운 사람으로 얼마 전에 죽었는데, 예장(禮葬)을 얻지 못한 데다가 또 특별히 부의를 보내라는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집이 몹시 가난하여 어떻게 장례를 지낼 길이 없으니, 마땅히 돌아보고 구휼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장례 비용을 넉넉하게 지급하라.”</p> <p>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p> <p>“양서(兩西) 지방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극성합니다. 혹 조적(糶糶)의 포함(逋欠)으로, 혹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身貢) 때문에 이미 그 족속을 침탈하고 또 그 이웃에까지 징수하여 온 도가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습니다. 관향(管餉) 포자(鋪子)에 대해서는 그 폐단이 더욱 심합니다. 관서(關西) 지방은 그것을 설립한 지 오래되었고, 해서(海西) 지방은 설립한 지 겨우 10여 년이 되었는데, 이는 있는 데서 없는 데로 무역하여 옹기는 뜻이 아닙니다. 강제로 화물(貨物)을 지급하고서 몇 년 동안 이자를 늘린 뒤에야 바야흐로 독촉해 징수하는데, 채무를 진 자가 혹 달아나거나 죽기라도 하면 침탈이 그의 족속과 이웃 마을에까지 미쳐 울부짖고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혁파하여서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 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p>	
--	---	--

	<p>하니, 상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각기 소견을 진달하게 하였다. 태화는 아뢰기를,</p> <p>“이 일은 처음에 물력(物力)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를 늘려 백성을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오늘에 와서는 그 폐단이 과연 많습니다.”</p> <p>하고, 정치화는 아뢰기를,</p> <p>“백성들의 마음에 혁파하기를 바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양서(兩西) 지방은 마땅히 다 혁파해야 합니다.”</p> <p>하고, 허적은 아뢰기를,</p> <p>“폐단이 이와 같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약 포자(鋪子)를 혁파하면 관아에서 민간의 말을 빌려 쓰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니, 반드시 말을 관아에 준비시킬 계책을 먼저 강구한 뒤에야 혁파할 수 있습니다. 황해도는 먼저 혁파하고, 평안도는 도신에게 물어 변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상이 허적의 말을 따르라고 명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신이 지난해 형조에 몸담고 있을 적에 각도에서 온 집안 식구를 모두 죄인으로 처리한 명부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재단해 처결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그 자리에서 체직되었으니 그대로 처결하는 것은 옳편치 않습니다.”</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이 그대로 처결하여야 옳다.” 하였다.</p>	
--	---	--

현종 8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6월 23일(갑인)
1번째기사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강도 어사(江都御史) 민유중(閔維重)이 올린 별단 서계(別單書啓)를 조목조목 아뢰었다.

그 첫번째는 강도는 사방 곳곳에 배를 댈 수 있어 적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연해 일대에 보루를 많이 설치해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게 해서 급할 때에 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일이었다. 태화가 아뢰기를,

“오래 전에도 이 논의가 있었는데 이완(李浣)이 더욱 힘껏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번거롭게 소문이 날까 염려하여 오히려 과감히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천천히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그 두 번째는 물결이 사납고 급해 배들이 조수(潮水)를 따라 오르고 내리니 물길의 상류 하류에 전선(戰船)을 많이 배치한 뒤에야 급할 때 조수를 살펴보고 진퇴할 수가 있으며, 또한 월곶(月串) 등 네 진(鎭)은 원래 전선(戰船)이 없고 병선(兵船)만 있으니 반드시 전선을 넉넉하게 만들어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게 해야한다는 일이었다. 태화가 아뢰기를,

“신이 무장들과 이 일을 의논해 보니 모두 수호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甲寅/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鄭太和以江都御史閔維重別單書啓, 逐條稟達。 其一, 江都四面處處泊舟, 備禦甚難, 沿海一帶, 多設(壁) [堡] 壘, 以爲聲勢相倚, 臨急捍(蔽) [禦] 事也。 太和曰: “久有此議, 李浣尤力主。 而慮煩聽聞, 尙不果行矣。” 上曰: “姑徐。” 其二, 水勢悍急, 舟楫隨潮上下, 多置戰船於水上下, 然後緩急, 可以候潮進退, 且月串等四鎭, 元無戰船, 只有兵船, 必優造戰船, 以備倉卒事也。 太和曰: “臣與武將等議, 此事皆以守護爲難矣。” 柳赫然曰: “非但守護之難, 得軍爲尤難矣。” 李浣曰: “一船所用之軍, 多至八十餘人, 何以辦得。 且江都水勢甚急, 元非用船之地。 曾在先朝, 改造防牌船者, 是臣議也。 貴在堅固, 防牌船不必下於戰船也。” 鄭致和、李浣皆以船材絕乏爲言, 太和請姑置之, 上曰可。 其三, 移轉米, 及兩湖大同米, 納於本府者, 擇捧精鑿白米事也。 太和請依書啓行之, 上曰可。 其四, 江都米移轉改色, 爲近邑巨弊, 兩湖大同米船, 必過江都至京師, 若令該廳, 留置大同

	<p>하니, 유혁연(柳赫然)은 아뢰기를,</p> <p>“수호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군사를 얻기는 더욱 어렵습니다.”</p> <p>하고, 이완은 아뢰기를,</p> <p>“배 한 척에 소용되는 군사가 많게는 80여 인이나 되니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강도는 물결이 매우 급해 원래 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찍이 선왕조 때에 방패선(防牌船)을 개조한 것은 신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귀중한 점은 견고하게 하는 데 있으니, 방패선이 전선보다 반드시 못한 것은 아닙니다.”</p> <p>하였다. 정치화(鄭致和)와 이완이 모두 배를 만들 목재가 절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태화가 우선 놔두자고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그 세 번째는 이전미(移轉米) 및 양호(兩湖)의 대동미로서 본부에 들이는 것은 잘 빵은 백미를 가려 받아야 한다는 일이었다. 태화가 서계대로 시행하자고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그 네 번째는 강도의 쌀을 옮겨 개색(改色)하는 것은 인근 고을에 커다란 폐해가 되니, 양호의 대동미를 실은 배가 반드시 강도를 거쳐 서울로 들어가게 마련이므로 만약 해청으로 하여금 신고 오던 대동미를 강도에다 내려놓고 강도의 쌀을 바꾸어 신고 올라가 경창(京倉)에다 수송해 놓으면, 군향(軍餉)은 오래 묵은 쌀이 되는 근심을 면하게 되고 인근 각읍에는 개색하는 폐단이 없</p>	<p>米於江都，換取江都米，運致京倉，則軍餉免陳久之患，各邑無改色之弊矣。</p> <p>太和曰：“故相金瑒，曾主此論，先朝講定，而不得行矣。”上曰：“勢有難便，姑置之。”其五，倉穀耗縮，實由於開閉頻數，庫子用奸故，反庫時，別置會外於一庫，使不混於元穀，今本府爲例遵行事也。太和請依書啓，上曰可。其六，江都之民，以受糶爲救命地，故分給漸多，逋欠益滋，宜如南漢例，定其石數，啓聞分糶事也。太和請依書啓，上曰然。其七，分授軍餉於各堡，本欲存本取利，以資各堡之用，而爲別將者，率多本府人，故以顏情分給，多不能准捧，無益本堡，有損公穀，宜令本府，輸入各倉事也。鄭致和曰：“沒輸輸入，則受食之民，必多缺望。”上曰：“何如？”太和曰：“姑令各堡，如前糶糶，而自本府檢其捧、未捧，若有未捧，則別將及本府官，竝論罪似當。”上曰然。其八，火器中如小小黃字砲、小小碗口吳字砲等，力不及遠，用之不緊，請毀破添造火器事也。上曰：“既造之器，何必毀破，姑置之。”其九，各鎮火器，混</p>
--	---	---

	<p>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태화가 아뢰기를,</p> <p>“고 정승 김육(金堉)이 일찍이 이 의논을 주장하여 선왕조께서 강구해 정했지만 시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형세상 어려운 점이 있으니, 우선 놔두어라.”</p> <p>하였다.</p> <p>그 다섯 번째는 창고의 곡식이 줄어들어드는 것은 실로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여 창고지기가 농간을 부리는 데서 말미암으므로 반고(反庫)할 적에 한 창고에다 회계한 것 이외의 것을 별도로 두어 원곡(元穀)과 섞이지 않게 하고 본부로 하여금 예에 따라 준행토록 하자는 일이었다. 태화가 서계대로 하자고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그 여섯 번째는 강도의 백성들은 내어주는 환곡을 받는 것으로 목숨을 구제하는 바탕을 삼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것이 점점 많아져 포핍(逋欠)이 더욱 심해지니 의당 남한 산성의 예와 같이 해서 석수(石數)를 정하고 계문하여 환곡을 나누어주자는 일이었다. 태화가 서계대로 하자고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그 일곱 번째는 각보(各堡)에 군량미를 나누어준 것은 본래 본곡은 보존하고 이자를 취해서 각 보의 재용에 보태 쓰려고 한 것인데, 별장이 된 자들이 대</p>	<p>雜難用，申飭本府，或增其不足，或正其謬誤，以爲緩急可用事也。 上曰：“依此分付。” 其十，本府別破陣勸課成才，拔其尤者，別樣施賞事也。 其十一，火器中佛狼器，別爲優造事也。 其十二，火器中斤兩甚重，倉卒難運者亦多，宜令本府，別造小車可容數人挽曳者，以備緩急事也。 太和曰：“此數事，可令本府，依書啓行之。” 上曰然。 其十三，月申等四鎮，則設置時，不給水軍，自兵曹給價布雇立，而中間減削，平日不成貌樣，倉卒尤難得力，京畿、黃海兩道近邑陸軍畫給，且陞別將爲萬戶事也。 太和曰。 水陸軍勞逸懸殊，必抵死謀避，陞爲萬戶，事係沿革，亦恐有難支之弊矣。” 上曰：“待留守上來更稟。” 其十四，鐵串、德浦藏船處加掘事也。 上曰：“此則分付水使。” 右議政洪命夏曰：“臣於在北京時，得見宋時烈之疏，只以金萬均之陳疏被拿，有所慨然，且慮其漸入忘讎之域。 諸議不諒時烈本意，乃以忘讎亂倫等語，攻必遠。 至比於禽獸，此則過矣。 然必遠於臺啓方張之時，抗疏陳卞，此又不可。 諫院之論，實</p>
--	--	---

	<p>부분 본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에 따라 나누어주어 대부분 기준치대로 거두어들일 수 없으므로 본 보에 도움은 없고 국가의 곡식만 축나게 하니, 본부로 하여금 각 창고로 날라 들이게 해야 한다는 일이었다. 정치화가 아뢰기를,</p> <p>“전량을 다 날라 들이면 그것을 받아 먹고 살던 백성들이 반드시 대부분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어떻게 하면 좋겠는가?”</p>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p> <p>“우선 각 보로 하여금 전처럼 나누어주고 거두어들이게 하되, 본부에서 거두어들이는지 않는지를 검사하여 만약 거두어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별장 및 본부의 관원을 아울러 논죄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그 여덟 번째는 화기(火器) 중에 소소 황자포(小小黃字砲)와 소소완구 오자포(小小碗口吳字砲) 등은 힘이 먼 데까지 미치지 않고 사용하는 데 긴요하지 않으니 부셔서 다른 화기를 만드는 데 보태자는 일이었다. 상이 이르기를,</p> <p>“이미 만들어 놓은 화기를 부수어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우선 놔두도록 하</p>	<p>是事體上糾正之舉，宜速允從。”太和亦曰：“臺論未停之前，陳疏自辨，前所未有，不可不從。”上曰：“予之不許，非有他意，原其本情，元非大段，而轉輒相激，至於如此，予甚怪之。”命夏曰：“館儒之疏，雖或過中，既已空館之後，則其在待士之道，所當開諭還入。而伏聞自上教，至今不參疏，他儒代入，其於聽聞，殊極未安。此雖既往之事，恐有後弊，不得不並達。”太和曰：“越境採蓼之禁，彼既申飭，事勢比前尤難。今當蓼節，宜申嚴飭。請分付兩界監兵使。”上曰可。大司諫李弘淵啓徐必遠罷職事，從之。許積曰：“京畿大同刷馬一款，待右相回還議定事，曾已稟達矣。今者洪命夏既已還朝，下詢何如。”命夏曰：“臣自西來時，所經沿路，各邑民情，亦皆詢問。客使刷馬，則勢將分定於民結，自常平依例給價，其他刷馬，則切勿侵責民結，作事日施行何如。”上曰可。副校理張善澂曰：“北評事南二星多病，今若遠赴塞外，必有中路顛仆之患，恐非體下之道。”命夏曰：“臣亦知其多病。況又嗜酒，未知</p>
--	---	---

	<p>라.”</p> <p>하였다.</p> <p>그 아홉 번째는 각진의 화기가 뒤섞여 있어 사용하기 어려우니 본부에 신칙하여 혹 부족한 것은 늘리고 혹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일이었다. 상이 이르기를,</p> <p>“이에 의거하여 분부하라.”</p> <p>하였다.</p> <p>그 열 번째는 본부의 별파진(別破陣)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기예를 성취시키되 그 중에 우수한 자를 뽑아 특별하게 상을 베푸는 일이었다.</p> <p>그 열한 번째는 화기 가운데 불랑기(佛狼器)를 특별히 넉넉하게 제조하는 일이었다.</p> <p>그 열두 번째는 화기 가운데 무게가 매우 무거워 황급할 때 빨리 운반하기 어려운 것이 또한 많으니 의당 본부로 하여금 몇 사람이 싣고 끌 수 있는 작은 수레를 별도로 만들어 급할 때 대비하자는 일이었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이 몇 가지 일은 본부로 하여금 서계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其必能憚壓也。” 上曰：“然則改差。”</p>
--	--	----------------------------

	<p>그 열세 번째는 월곶(月串) 등 네 진은 설치할 때 수군을 지급하지 않고 병조로부터 가포(價布)를 지급해 고립(雇立)케 하였는데 중간에 그 예산이 줄어들고 깎여서 평일에도 모양을 이루지 못하므로 위급할 경우에는 더욱 힘을 얻기 어려울 것이니, 경기·황해 두 도의 가까운 읍에 있는 육군을 나누어주고, 별장 자리를 높여 만호로 하는 일이었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수군과 육군은 힘들고 편한 것이 현격히 달라 반드시 죽을 각오로 피하길 도모할 것이고, 별장을 만호로 올리는 것도 일이 연혁에 관계되어 또한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유수가 올라오길 기다려 다시 아뢰도록 하라.”</p> <p>하였다.</p> <p>그 열네 번째는 철곶(鐵串)과 덕포(德浦)에 배를 숨겨두는 곳을 더 파자는 일이었다. 상이 이르기를,</p> <p>“이는 수사에게 분부하라.”</p> <p>하였다.</p> <p>우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p>	
--	---	--

	<p>“신이 북경(北京)에 있을 때 송시열(宋時烈)의 상소를 보았는데, 단지 김만균(金萬均)이 소장을 진달했다가 나포된 것에 대하여 개탄하는 바가 있었고, 또한 점점 원수를 잊어버리는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논이 시열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는, 원수를 잊고 인륜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말로 곧 필원을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를 금수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나 필원이 대각의 논계가 한창 일어나는 때에 대항하는 소장을 올려 변명을 늘어놓았으니, 이 또한 옳지 못한 일입니다. 간원의 논계는 실로 일의 체계로 볼 때 규정(糾正)하는 조치이니, 의당 속히 윤택하고 따르셔야 합니다.”</p> <p>하고, 태화도 아뢰기를,</p> <p>“대각의 논계가 그치기도 전에 소장을 올려 스스로 변명하는 것은 전에 없던 바이니,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내가 허락하지 않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본정을 헤아려 보면 원래 대단한 것이 아니었는데 일이 불어나 서로 격해져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내 매우 괴이하게 생각한다.”</p> <p>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p> <p>“관학의 유생들이 올린 상소는 혹 중도를 넘어선 것이긴 하지만 이미 성균관</p>	
--	--	--

	<p>을 비우고 나간 뒤에는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타일러 도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삼가 듣건대, 상께서 전교를 내리시어 심지어는 소를 올리는 데 참여하지 않은 다른 유생들로 하여금 대신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거북합니다. 이는 비록 지나간 일이지만 뒤의 폐단이 있을까 하여 아울러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국경을 넘어가 삼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저들이 이미 신칙하였고 보면 일의 형세가 전에 비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삼을 캐는 절기가 되었으니 거듭 엄하게 신칙하여야 합니다. 청컨대 양계(兩界)의 감사와 병사를 분부하소서.”</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대사간 이홍연(李弘淵)이 서필원을 파직시키자는 일을 아뢰었는데, 따랐다.</p> <p>허적(許積)이 아뢰기를,</p> <p>“경기의 대동미(大同米)를 실어나르는 쇠마비(刷馬費)의 한 조항에 대하여 우상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의논해 정하자는 일을 일찍이 품달하였습니다. 지금 홍명하가 이미 조정으로 돌아왔으니 하문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명하가 아뢰기를,</p>	
--	--	--

	<p>“신이 서쪽에서 올 적에 지나는 연로(沿路)마다 각읍의 민정을 또한 모두 물어 보았습니다. 외국 사신에 대한 쇄마비는 형세상 민결(民結)에 나누어 배정하고 상평청(常平廳)으로부터 예에 따라 그 값을 지급해야겠지만, 그외 다른 쇄마비는 절대로 민결에 떠넘겨 거두어들이지 못하도록 사목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부교리 장선징이 아뢰기를,</p> <p>“북평사 남이성(南二星)은 병이 많아 지금 만약 멀리 변방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반드시 중도에서 쓰러질 염려가 있으니 아랫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도리가 아닌 듯싶습니다.”</p> <p>하고, 명하는 아뢰기를,</p> <p>“신 또한 그가 병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더구나 또한 술을 좋아하니, 그가 반드시 변방을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그렇다면 개차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	--	--

<p>현종 8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윤6월 13일(계 유) 2번째기사</p>	<p>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회정당에서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큰비가 온 뒤에 가뭄이 또 이와 같으니, 금년 농사도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는 장맛비가 열흘 넘게 쏟아졌는데 지금은 너무 가물어 비가 올 듯하면서 오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하였다. 태화는 아뢰기를, “기전(畿甸)은 비를 바라는 것이 절실하지만, 호서·호남의 경우 천안 이하 전주 이상 지역은 빗물이 크게 불어 수전(水田)도 재앙을 입었습니다.” 하고, 우의정 홍명하(洪命夏)는 아뢰기를,</p>	<p>引見大臣及備局諸臣於熙政堂。 領議政鄭太和曰：“大水之餘， 旱又如此， 今年農事， 亦極可慮。” 上曰：“頃日霖雨浹旬， 今則太旱， 欲雨不雨， 誠可悶也。” 太和曰：“畿甸則望雨雖切， 湖西南， 則天安以下全州以上， 雨水大漲， 水田亦被災矣。” 右議政洪命夏曰：“非但有禾穀沈腐之患， 人物之滄死者亦多， 誠可驚慘。” 吏曹判書朴長遠曰：“本曹佐郎呂聖齊， 今方呈病， 參判李尙眞在外， 參議李慶徽亦在告， 小臣獨當銓席重任， 誠可悶也。” 命夏曰：“曾在先朝， 有勿捧吏郎呈旬之事， 而近來朝廷不尊， 體統大壞， 群下不知君命之可畏。 少有不安， 則諉以廉隅， 皆不察任， 揆以事體， 寧不寒心。 然判書不捧呈旬， 則亦何敢乃爾。” 上</p>

	<p>“곡식이 물에 잠겨 썩을 근심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으니 참으로 놀랍고 참혹스럽습니다.”</p> <p>하였다. 이조 판서 박장원(朴長遠)이 아뢰기를,</p> <p>“본조의 좌랑 여성제(呂聖齊)는 지금 바야흐로 병으로 정사(呈辭) 중에 있고, 참판 이상진(李尙眞)은 지방에 있으며, 참의 이경휘(李慶徽) 또한 휴가 중에 있어 소신 혼자서 전석(銓席)의 중임을 감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민망스럽습니다.”</p> <p>하니, 명하가 아뢰기를,</p> <p>“일찍이 선왕조 때에 이조 낭관의 정순(呈旬)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근래 조정이 존중받지 못하고 체통이 크게 무너져 아랫사람들이 임금의 명이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일이 있으면 염우(廉隅)를 핑계로 모두 직임을 살피지 않으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보면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판서가 정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또한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성제가 불안해 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p> <p>하니, 명하가 아뢰기를,</p>	<p>曰：“聖齊不安者，何事耶？”命夏曰：“佐郎李敏叙特罷之時，渠以同任，適在外獨免，以此不安耳。該曹郎官與近侍有異，朝廷之所以待之者，亦不同。而必欲與敏叙同其去就，其習可惡也。仁祖末年則年少輩，不敢爲如此事矣。”上曰：“呈旬不可不捧耶？”太和曰：“雖不捧呈旬，若病滿三十日，則例有遞差之規。故以此爲限，期於必遞耳。”上曰：“今後除實病衆所共知者外 雖病滿三十日，勿許遞，假郎廳單子，亦令政院勿捧。”兵曹判書金佐明曰：“曾因戶曹判書鄭致和所啓，關西米領來差使員廣梁僉使鄭暹，漕船押領官鄭碩達等，有榻前論賞之教，《大典》有五十隻不敗者加資，資窮者准職之文。故前日領來人姜俊，亦除萬戶矣。”上曰：“五十隻領來，誠難耶？”太和曰：“越海領來，果不易矣。但此輩。雖有准職之賞，既無相當之職，終無可用之時，反不如卽除僉使矣。且老江僉使高嶮，亦有西來米萬餘石，再次領納之事，而前日鄭致和陳達時，未免落漏，似當一體論賞矣。”佐明曰：“萬戶則當陞僉使，而鄭暹、</p>
--	--	--

	<p>“좌랑 이민서(李敏叙)를 특별히 파직할 때에 그가 같은 직임으로 마침 지방에 있다가 홀로 파직을 면하여 이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조의 낭관은 근시(近侍)와 다른 점이 있으니, 조정에서 그들을 대우하는 것도 또한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민서와 거취를 함께 하려고 하니, 그 습성이 밍습니다. 인조(仁祖) 말년에는 젊은 사람들이 감히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정순을 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는가?”</p>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비록 정순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만약 병가(病假)를 내어 30일이 되면 으레 체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으로 기한을 삼아 반드시 체직되기를 기약하는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지금부터는 실제로 병이 나 사람들이 다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병가를 내 30일이 되었다라도 체가(遞假)를 허락치 말라. 그리고 낭청의 단자 또한 정원에서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p>	<p>高嶠，皆僉使也，何以爲之。” 太和曰：“兩人皆有武才，除拜守令，亦無妨矣。” 上曰：“然則鄭暹、高嶠守令除授，鄭碩達陞敍。” 以佐明言前日疏黃貿來人論賞事， 上命小通事朴命天，給通政帖，富商李應祥給嘉善帖，其餘則給賞布有差。 朴長遠曰：“北道試才重臣， 本曹今將差出矣。” 命夏曰：“臣意則以重臣差遣，似涉有煩。 雖遣承旨，無不可也。” 積曰：“當初徐必遠陳達此事時，以遣大臣獻議。 既不遣大臣，又不遣重臣，則邊民亦必缺望矣。” 佐明曰：“巡視邊民，出於慰悅之舉，自上有命，孰不可往。 臣請自行。” 長遠曰：“大司馬之行邊，豈不有煩。 此則決難爲也。” 太和請遣重臣，令該曹今日政擇擬，上曰可。 太和曰：“國家優老之典，自是美事。 曾在先朝，有年八十以上無論公私賤，竝陞堂上之教。 今者前監司洪憲，年滿八十，而未蒙盛典，青松居前主簿趙遵道，亦八十九歲，其子弟欲陳疏，而遵道禁止，使不得爲矣。” 上曰：“一體加資，如此落漏之人，令該曹訪問。”</p>
--	--	---

	<p>“일찍이 호조 판서 정치화(鄭致和)가 아뢰는 것으로 인하여 관서 지방의 쌀을 수령해 온 차사원 광량 첨사(廣梁僉使) 정섬(鄭暻)과 조선 압령관(漕船押領官) 정석달(鄭碩達) 등에 대하여 탐전에서 논상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대전(大典)》에 50척을 실패하지 않고 운송해 온 자는 가자하고 자궁자는 준직(准職)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일 수령해 가지고 온 사람 강준(姜俊)도 만호에 제수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50척을 수령해 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가?”</p>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p> <p>“바다를 건너 수령해 오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준직의 상을 주더라도 그에 상당한 직책이 없으면 끝내 그들의 재주를 쓸 수 있을 때가 없을 것이니, 도리어 즉시 첨사에 제수하는 것만 못합니다. 또한 노강 첨사(老江僉使) 고엄(高嶮)도 서쪽에서 오는 쌀 1만여 석을 수령해 들인 일이 있는데, 전일 정치화가 진달할 때 빠뜨림을 면치 못했으니, 똑같이 논상해야 할 듯합니다.”</p> <p>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p> <p>“만호는 첨사로 올려야 하겠지만, 정섬과 고엄은 모두 첨사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p>	
--	---	--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이 두 사람 모두 무재(武才)가 있으니, 수령에 제수해도 무방합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그렇다면 정섬과 고엄은 수령에 제수하고, 정석달은 품계를 올려 서용하라.”</p> <p>하였다.</p> <p>좌명이 전일 유향을 무역해 온 사람을 논상하자고 말한 일을 가지고, 상이 소 통사(小通事) 박명천(朴命天)에게는 통정첩(通政帖)을 지급하고, 부상(富商) 이 응상(李應祥)에게는 가선첩(嘉善帖)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게는 차등있게 배 를 상으로 지급하라 명하였다. 박장원이 아뢰기를,</p> <p>“북도 시재(試才)의 중신(重臣)을 본조에서 지금 차출하려 합니다.”</p> <p>하니, 명하가 아뢰기를,</p> <p>“신의 생각으로는 중신을 차출해 보내는 것은 번거로울 듯합니다. 승지를 보 내더라도 불가함이 없습니다.”</p> <p>하고, 허적은 아뢰기를,</p> <p>“당초 서필원(徐必遠)이 이 일을 진달하였을 때 대신을 보내자는 것으로 건의</p>	
--	--	--

	<p>하였었습니다. 대신을 보내지 않는 데다가 중신마저 보내지 않는다면 변방의 백성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p> <p>하고, 좌명은 아뢰기를,</p> <p>“변방의 백성을 순시하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니, 상께서 명을 내리시면 누가 가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신이 가겠습니다.”</p> <p>하자, 정원이 아뢰기를,</p> <p>“대사마(大司馬)가 변방으로 가면 어찌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결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p> <p>하였다. 태화가 중신을 보내되 해조로 하여금 오늘 정사에서 가려 비의하게 하자고 청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법전은 나름대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일찍이 선왕 조 때에는 나이 80세 이상인 자는 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모두 당상으로 올려 주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 감사 홍헌(洪憲)은 나이 80세가 되었는데 아직 성대한 의전을 받지 못하였고, 청송(靑松)에 사는 전 주부 조준도(趙遵道)도 89세인데 그의 자제들이 소를 올리려고 하였지만 준도가 금지하여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	---	--

	<p>“다 가자하도록 하고, 이들처럼 누락된 사람을 해조에게 수소문하도록 하라.” 하였다.</p>	
<p>현종 9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7월 4일(계사) 3</p>	<p>경상 감사 이상진(李尙眞)이 치계하기를, “신은 진휼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 나라에 비축이 없는 것이 큰 걱정이</p>	<p>慶尙監司李尙眞馳啓曰：“臣備嘗賑事 之艱，然後知國無蓄積之爲大患也。 賑救尙然，不幸遇兵興，而無軍餉，則</p>

<p>번제기사</p>	<p>됨을 알았습니다. 진흙하는데도 그러한데 불행하게 병난을 만나 군량이 없으면 어떻게 제도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남쪽 변방은 따스한 바람이 불어올 때 외적의 환이 있는 법인데, 여름철에 쌀을 다 방출한다는 것은 더욱 원대한 계획이 아니고 국사에 관계되므로 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의 곡식에서 그 절반씩만 저축하면 군량과 진흙에 있어서도 뜻밖의 일에 대비하여 쓸 수 있고, 민간에서 항상 괴롭게 여기는 많은 방출미의 폐단도 함께 없앨 수 있습니다. 명년부터 절반은 방출하고 절반은 창고에 유치하는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비국이 복계하여 치계에 의해 시행할 것을 청하니, 따랐다.</p>	<p>其何以濟。況此南徼，憂在風和，夏月盡糶，尤非遠慮，國事所關，誠不輕細。若以見在之穀，每儲其半，則其於餉資賑需，可以用備不虞，而民間常時所苦多糶之弊，亦可並除。始自明年，一半分糶，一半留庫事，請令廟堂稟處。”備局覆啓，請依施，從之。</p>
<p>현종 9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7월 4일(계사) 4번제기사</p>	<p>경상도 각읍의 진흙에 쓸 미곡에 대해 특명으로 세미를 견감해 주고, 주리고 병든 백성에게 받을 조적(糶糶)에 대해서도 모두 모곡(耗穀)을 면제해 주었다. 감사 이상진의 청을 따른 것이다.</p>	<p>慶尙道各邑賑用米穀，特命蠲減，飢病民所受糶糶，並皆除耗。從監司李尙眞之請也。</p>
<p>현종 9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7월 14일(계묘) 3번제기사</p>	<p>함경 감사 서필원이 무상으로 곡물을 지급하여 도내의 주린 백성 1만 5천 3백여 인을 구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p>	<p>咸鏡監司徐必遠白給穀物，賑救道內飢民一萬五千三百餘人以聞。</p>
<p>현종 9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8월 3일(임술) 1</p>	<p>신풍 부원군(新豐府院君)·영가 부부인(永嘉府夫人)의 묘소를 이장하기 위해 구묘를 금월 9일에 파기로 되어 있었다.王大妃(王大妃)가 양화당(養和堂)에서 망곡례(望哭禮)를 행하게 되어 궐내에서 마땅히 이를 수리해야 하므로, 일</p>	<p>壬戌/新豐府院君永嘉府夫人遷葬，破舊墳，在今月九日。王大妃將行望哭禮於養和堂，自內當修理，主掌內官，</p>

<p>번째기사</p>	<p>을 관장하는 내관이 호조의 구실아치를 불러 이에 소용되는 잡물을 준비해 놓고 대기하라는 것으로 분부하였다. 이에 호조가 아뢰기를,</p> <p>“이 일은 정원을 거쳐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근일 대간이 논계하여 윤허를 받은 뜻에 위배됩니다마는, 망곡례를 행할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본조에서 바로 거행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하교하기를,</p> <p>“해조의 일을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한 자의 벼와 한 말의 곡식도 모두 정원을 거쳐 분부해야 한다는 말인데, 임금으로 하여금 산가지를 잡게 해야만 마음이 시원하단 말인가. 이른바 윤허를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긴요한 일은 정원을 통해 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에 의해 시행하여 이처럼 터무니없는 처사가 없게 하라.”</p> <p>하였다.</p>	<p>招戶曹吏，以所入雜物措備以待事分付。戶曹啓：“以此事不關由政院，有違近日臺諫論啓蒙允之意，而望哭之日不遠，自本曹直爲舉行。”上下教曰：“該曹之事，誠未曉也。尺布斗粟，皆自政院分付，則使君上執籌，然後快耶。所謂蒙允云者，大段緊關，不可不關由政院之事也。自今依此施行，俾無如此無據之舉。”</p>
<p>현종 9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9월 5일(계사) 1번째기사</p>	<p>예조가 삼명일(三名日)의 방물 물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삼명일의 방물 물선을 모두 임시로 감축한 지가 10여 년이 되었다. 예조가 아뢰기를,</p> <p>“이것이 비록 성상께서 백성을 진념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일이나 위를 봉</p>	<p>癸巳/禮曹請復三名日方物物膳，上不許。是時，連歲凶荒，三名日方物物膳，皆權減已十餘年。禮曹啓：“以此雖出於聖上軫民之至意，其在享上之道，殊極未安。今年則外方農事，不</p>

	<p>양하는 도리에 매우 미안합니다. 금년에는 외방의 농사가 그리 부실하지 않으니, 금년부터 동지(冬至)에 진상하는 방물 물건을 각도 및 개성부로 하여금 전례대로 봉진하게 하소서.”</p> <p>하였으나, 상은 대비전 외에는 잠시 동안 전례대로 회복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p>	<p>至失稔，請始自今年，冬至方物物膳，令各道及開城府，依舊例封進。”上命大妃殿外，姑勿復舊。</p>
<p>현종 9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0월 19일(정축) 1번째기사</p>	<p>이조 판서 김수항(金壽恒)이 북관(北關)으로부터 돌아와 그곳의 폐해를 조목 조목 진달하였는데, 그 첫째에 이르기를,</p> <p>“본도 조적미(糶糶米)의 각종 곡식이 그 수가 많은 것이 폐단입니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내수사 노비 공포(貢布)의 사이 수[升數]가 점점 높아져 한 차례의 징수에 가산을 탕진하게 되므로 그 괴로워하는 분위기가 넉넉히 음양을 손상시킵니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여러 궁가 사패 노비(賜牌奴婢)의 신공을 징수할 때에 그 차임된 종의 작패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본도에 있는 내노비(內奴婢)는 절대 궁가에 사패하지 말아야 합니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丁丑/吏曹判書金壽恒自北關還，條陳弊瘼。一曰：“本道糶糶各穀數多之弊。”又曰：“內奴婢貢布升數漸濫，一次徵貢，蕩竭家產，愁苦之氣，足以感傷陰陽。”又曰：“諸宮家賜牌奴婢收貢之時，差奴作弊，罔有紀極。本道內奴婢，切勿賜牌於宮家。”又曰：“內奴束伍，在前除貢，而頃有還徵之令，旋復寢之。然而辛丑、壬寅兩年身貢，仍令追徵，已往應免之貢，似不可追徵。”又曰：“本道人民，多不舉子，蓋其生理極難，身役最重，民丁鮮少，無人無役。每年歲抄，閑丁不足，呱呱嬰兒，皆入搜括，增其年歲，徵其價布，故生一子，則隣里相唁，夫妻相泣，而棄於道。使小民，父子不能相保，實非王者之政。必須輕其身役，保有樂生之心，然後可杜其患。”又</p>

	<p>“내노(內奴)와 속오(束伍) 건은 전에는 신공(身貢)을 면제하였는데, 지난번에도 징수하라는 영을 내렸다가 즉시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임인 두 해의 신공은 그대로 추정하게 하였으니 앞서 면제되었던 신공을 추정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본도의 백성들이 대부분 아들을 키우지 않으니, 이는 대개 생활이 몹시 어려운데다 신역(身役)이 가장 중하고 민정(民丁)이 드물어 사람치고 역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세초(歲抄) 때면 장정이 부족하여 백 우는 어린 아이를 모두 색출해 나이를 늘리고 가포(價布)를 징수하기 때문에 아들 하나를 낳게 되면 이웃이 위문하고 그 부부는 서로 울면서 그 아들을 길가에 버립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비와 자식이 서로 보호하지 못하게 하니 실로 왕자의 정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신역을 경감하여 삶을 즐기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만 그 걱정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육진(六鎭)의 수령 중 종성(鍾城) 이외에는 모두 무관을 차임하여 보내고 있으므로 육진 사람이 모두 문신 수령이 오기를 원합니다. 민원을 헤아려 모두 문관으로 돌려가며 보내소서.”</p> <p>하고, 또 이르기를,</p>	<p>曰：“六鎭守令，鍾城一邑之外，皆以武弁差送，六鎭之人，皆願一得文臣守宰。宜體民情，皆以文官輪回差遣。”</p> <p>又曰：“本道量田，在於壬寅年，到今六十年後，地多陳荒，田結欠縮。而凡干貢物，皆以當初元結出定，道內物情，皆願改量。”</p> <p>又曰：“鏡城有國屯田，田甚瘠确，絕無可耕，民不堪苦，齊訴罷之，而每年以百石之穀，收捧於民間。既廢屯耕，而仍捧百石於窮民，事甚無據。”</p> <p>又曰：“高原梁泉寺位田，曾於反正初，許屬大同，以補民役，而自去年，內司直發移文，奪其田之所出，使之作布上送。斯實事理之不當者。”</p> <p>又曰：“本道不產鐵，故南北道各邑，皆捧鐵於民間，以備不時之用，而即今留儲，亦近二萬斤。民間農器鋤鎌，年年勒捧，怨苦不少。如有不時之用，則雖或加捧，而今姑停罷爲當。朝廷多所變通，而採施焉。”</p>
--	---	--

	<p>“본도의 양전(量田)이 임인년에 있었는데, 지금 60년이 흐른 후 묵은 땅이 많고 전결(田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온갖 공물(貢物)은 모두 처음에 정한 원결로 내야 하기 때문에 도내의 사람들이 모두 다시 측량하기를 원합니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경성(鏡城)에 국둔전(國屯田)이 있는데 토질이 몹시 척박하여 전혀 경작할 수 없으므로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일제히 호소하여 폐지하였는데도 매년마다 1백 석의 곡식을 민간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둔전의 경작은 폐지해 놓고 1백 석의 곡식을 공한 백성에게서 그대로 거두어 바치니, 일이 몹시 터무니없습니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고원(高原) 양천사(梁泉寺)의 위토를 일찍이 반정 초에 대동(大同)에 소속시켜 민역(民役)을 돕기로 허락하였는데도, 지난 해부터 내수사가 직접 공문을 보내 그 토지의 소출을 탈취하여 베[布]로 바꾸어 올려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사리에 부당합니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본도는 철(鐵)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도 각 고을이 모두 민간에서 거두어 불시의 용도로 비축하고 있는데, 지금 저축된 것이 또한 2만 근에 가깝습니다. 민간의 농기구인 호미·낫을 해마다 거두어들이므로 원망이 적지 않습</p>	
--	--	--

	<p>니다. 만약 불시에 쓸 일이 있으면 더 거두더라도 지금은 우선 중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에서 많이 변통하여 채택해 시행하소서.”</p> <p>하였다.</p>	
<p>현종 9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0월 28일(병술) 1번째기사</p>	<p>정언 장건이 아뢰기를,</p> <p>“칠곡 부사(漆谷府使) 이박(李璞)이 관직에 있으면서 일을 처리한 것이 하나도 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 봄에 기민을 구제할 때 끝내 방출미를 주지 않았으며, 복심(覆審)할 때에 미처서는 재해를 입었다 핑계하고 재해를 입은 결수를 속여 보고하였습니다. 파직하소서.”</p> <p>하였다. 재차 아뢰자 허락하였다.</p>	<p>丙戌/正言張鍵啓: “漆谷府使李璞居官處事, 無一可觀。 今春賑揀之日, 終不給糶, 及其覆審時, 稱以被災, 瞞報災結。 請罷職。” 再啓乃從。</p>
<p>현개 12권, 5년(1664)</p>	<p>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p>	<p>上, 下教于政院曰: “前執義尹宣學,</p>

<p>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1월 6일(계사) 3번째기사</p>	<p>“전 집의 윤선거(尹宣擧)가 성 안에 와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직을 제수하고 음식물을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머물러 있게 하라.”</p> <p>하였는데, 부제학 이경억 등이 차자를 올려 진달하였으므로 이런 명이 있었다. 그러나 호조가 음식물을 보내었을 때는 윤선거는 이미 떠나갔다.</p>	<p>來在城中，令該曹付職給食物，使之留在。” 因副提學李慶億等筭陳，有是命。 戶曹送食物，則宣舉已行矣。</p>
<p>현종 9권, 5년(1664) 갑진 / 청 강희(康熙) 3년) 12월 30일(정해) 1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기를,</p> <p>“전라 감사 정만화(鄭萬和)의 계문 가운데 개진한 내용의, 산간 고을의 대동미를 작목(作木)하는 문제는 모름지기 빨리 의정해야 합니다. 대동목(大同木) 1필은 일찍이 쌀 7말 반으로 환산하게 했는데 민정은 그래도 어렵게 여깁니다. 내년 을사년 봄부터 시초로 삼아 쌀 8말의 값으로 쳐서 무명 1필을 상납하게 하는 일을 분부하소서.”</p> <p>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그리고 이르기를,</p> <p>“올해는 농사가 이미 잘못되었으니 내년 봄의 쌀 정수는 산간과 해안을 막론하고 특별히 1말을 줄이라.”</p> <p>하였다.</p>	<p>丁亥/備邊司啓。 “全羅監司鄭萬和啓聞中所陳山郡大同作木一款，必須趁速議定矣。 大同木一匹，曾令折價米七斗半，而民情尚以爲難。 請自乙巳春爲始，以米八斗，作木一匹上納事，分付。” 上依啓。 且曰：“今年農旣不稔，來春收米，勿論山海，特減一斗。”</p>
<p>현개 12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1월 7일(갑오) 6</p>	<p>성균관에 밀감을 내리고 대제학 김수항에게 명하여 유생들에게 제술 시험을 보이게 하였다. 수석한 생원 이후징에게 전시에 직부하도록 명하였다.</p>	<p>賜柑于成均館，命大提學金壽恒試製儒生。 居首生員李厚徵，命直赴殿試。</p>

<p>번째기사</p>		
<p>현개 12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1월 23일(경술) 2번째기사</p>	<p>상이 침을 맞은 뒤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p> <p>“이무의 상소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는 이는 우상만한 이가 없는데 비방을 당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니, 나랏일이 염려됩니다. 우상을 도타이 권면하시어 출사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우상은 반드시 고사할 것이나 나는 결코 놓아줄 수 없다.”</p> <p>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p> <p>“춘궁기가 한창이니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봄철 쌀 거두는 것을 만약 참작하여 감면한다면 거꾸로 매달린 듯한 급한 사정을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특별히 2두(斗)를 줄이라고 명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p> <p>“저번에 충청 감사의 장계를 비국으로부터 방계(防啓)하였는데 그 말을 옳습니다. 만약 흉년이라 해서 줄이는 것을 허락한다면 양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p>	<p>上受鍼，後引見大臣及備局諸臣。左相洪命夏曰：“李整之疏，誠可寒心。當今盡心國事者，無如右相，而被詆至此，國事可慮。宜敦勉右相，使之出仕。”上曰：“右相必固辭，而予決不可相捨矣。”命夏曰：“春窮方甚，民生無以自活。春等收米，若參酌蠲減，則可救倒懸之急矣。”上命特減二斗。命夏曰：“頃日忠清監司狀啓，雖自備局防啓，而其言則是。若謂年凶而許減，則兩湖恐不可異同。”上曰：“湖西大同，亦依湖南減一斗可也。”命夏曰：“曾在仁祖朝，暗行御史必封上守令之不法文書然後，拿問重究。否則從輕論罪，蓋慮土民之誣陷邑宰也。”上曰：“予亦慮此矣。此後御史必得文書後啓聞封庫，不得文書者，勿爲舉論。”李慶億曰：“今後守令之文書被執者，該曹回啓時，以令攸司稟處照斷，如無文書，則或罷或推，定式施行。”上曰：“政院以此意捧承傳，書付壁上，御史辭朝時，分付以送。該曹亦依此遵行。”命夏又陳各陵參奉</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호서의 대동미도 호남의 예대로 1두를 줄이라.”</p> <p>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p> <p>“일찍이 인조조에 암행 어사가 수령의 불법 문서를 봉하여 올린 뒤에 잡아다 문초하고 엄중히 규명했습니다. 만약 문서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죄는 가벼운 쪽을 적용하였으니, 대개 주민이 고을 수령을 모함하는 폐단을 염려해서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나도 이것을 염려하였다. 이 뒤로는 어사가 문서를 입수한 뒤에 바야흐로 계문하여 봉고하고, 문서를 입수하지 못하면 거론치 말라.”</p> <p>하였다. 이경억이 아뢰기를,</p> <p>“지금 이후로는 수령의 문서가 포착된 자는 해조가 회계할 때 유사로 하여금 품신하여 단죄하고, 문서가 없을 것 같으면 파직하거나 추고하도록 법식을 정해 시행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정원은 이 뜻으로 승전을 받들어 벽 위에 써붙이고 어사가 하직할 때 분부</p>	<p>徒配之過重，上不聽。 司諫金禹錫以被李整疏斥，引避。</p>
--	--	-----------------------------------

	<p>하여 보내라. 해조도 이대로 준행하라.”</p> <p>하였다. 홍명하가 또 능 참봉의 도배는 과중하다고 진달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사간 김우석(金禹錫)이 이무의 상소에서 공격받았다 하여 인피하였다.</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2월 18일(을해) 2번째기사</p>	<p>상이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홍명하, 병조 참판 유혁연을 인건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공무목(公貿木)에 대한 일은, 차왜(差倭)가 이 때문에 아직도 가지 않고 있으므로 속히 품의해 정하고자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비국의 뜻은 허락하려는 것인가?”</p> <p>하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작미(作米)를 2 두로 줄이면 햇수를 한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고 2두를 감하지 않으면 햇수를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방식으로 허락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말하면 반드시 따를 것이다.”</p>	<p>上引見領議政鄭太和、左議政洪命夏、兵曹參判柳赫然。太和曰：“公貿木事，差倭以此尙今不去，故欲速稟定矣。”上曰：“備局之意，欲許之耶？”對曰：“然。”上曰：“若以減作米貳斗，則當不限年，如不減二斗，則亦當限年。許之之意言之，則必回聽矣。”太和曰：“二斗則必不從矣。”上曰：“渠若許減一斗，則自我亦限年以給，許減二斗，則不限年以給，若不許減，則我亦將不許作米，設爲三條，使東萊府使開諭。而東萊府使如有所見，則更令馳啓。”太和曰：“若不許公作米，則彼必發公木復舊之說，將何以處之？”上曰：“若言正鑣之事，則如何？”太和曰：“此則難以折彼，而公木復舊，則</p>

	<p>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p> <p>“2두는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그가 만약 1두를 줄이는 것을 허락하면 우리도 햇수를 한정하여 주고 2두를 줄이는 것을 허락하면 햇수를 한정하지 않고 주고,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도 작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등의 세 가지 조항을 가지고 동래 부사를 시켜 개유하게 하라. 동래 부사에게 다른 소견이 있으면 다시 치계하게 하라.”</p> <p>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공작미(公作米)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공목(公木)을 복구하자는 말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정납(正籩)에 대한 일을 말하면 어떻겠는가?”</p> <p>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그렇게 하면 그를 설득할 수 없으며, 공목을 복구하면 몹시 곤란합니다. 그가 우리 나라의 시가(市價)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따지는 것입니다.</p>	<p>極難矣。渠既知我國市價，故爭詰如此。我國一年所給，多至一萬六千石，使船載而去，事體極爲寒心。當初開路，誠未曉也。”上曰：“昉於何時。”太和曰：“柳滄時創開矣。”李星徵曰：“竊聞其時倭人，持二萬金來請質米，故不得已而許之。其後仍令以木換米，遂以爲例，海邑則使之，而陸邑，則極以爲悶矣。”太和曰：“人才不可不養，而近緣乏人，大司成久不差出，以致國子空虛，事極未安。請令該曹，從速差出。”上曰：“今日政，使之差出。”</p>
--	--	--

	<p>우리 나라에서 1년에 1만 6천 석이나 주면서 배에 싣고 가게 하니 사체가 몹시 한심스럽습니다. 당초에 왜 이렇게 길을 띄워놓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p> <p>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유심(柳滄)이 있을 때 처음 시작되었습니다.”</p> <p>하니, 이성징(李星徵)이 아뢰기를,</p> <p>“삼가 듣건대, 그 때 왜인이 2만 금(金)을 가지고 와서 쌀을 무역하기를 청하였으므로 부득이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그대로 포목으로 쌀을 무역하도록 한 것이 드디어 규례가 되었는데, 해읍(海邑)은 편하게 여기나 육읍(陸邑)은 몹시 답답하게 여깁니다.”</p> <p>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인재를 양성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즈음 사람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대사정을 오랫동안 차출하지 못해 성균관이 비어 있으니, 일이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속히 차출하게 하소서.”</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오늘 정사에서 차출하게 하라.”</p> <p>하였다.</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3월 22일(무신) 3번째기사</p>	<p>경기 감사 김수흥(金壽興)이 장계하기를,</p> <p>“강도(江都)에서 옮겨오는 쌀 수천 석을 얻어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휼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p> <p>“강도의 쌀 3천 석을 내어 감사로 하여금 균일하게 나누어주게 하고 가을이 되어 모곡(耗穀)과 함께 징수하게 하소서.”</p> <p>하였다.</p>	<p>京畿監司金壽興狀啓: “請得江都移轉米數千石, 分賑各邑飢民。” 備邊司回啓: “請出江都米三千石, 令道臣均一分給, 使待秋竝耗還徵。”</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4일(경신) 3 번째기사</p>	<p>동래 부사 안진(安縝)이 치계하기를,</p> <p>“왜인(倭人)이 쌀을 바꿔가고자 일부러 공무역의 면포를 도로 예전 급대로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서로 3개월을 버티었지만 아직껏 마땅한 방안을 찾</p>	<p>東萊府使安縝馳啓: “倭人意在換米, 而故以公貿木復舊品爲言, 相持三朔, 尙未停當。 當夏米貴, 民事可慮, 請令廟堂指揮。” 事下備局。 回啓: “公</p>

	<p>지 못했습니다. 바야흐로 여름을 맞아 쌀이 귀하여 민사가 걱정되니 묘당으로 하여금 지시하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이 일을 비국에 하달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p> <p>“면포를 쌀과 바꾸는 데 있어서 말[斗]의 수를 줄여줄 경우 연도를 한정하지 않고 바꿔주겠다는 뜻을 그들에게 여러번 일깨워 주었지만 끝내 듣지 않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올해와 내년 두 해 동안은 우선 예전대로 쌀을 바꿔주되, 다시 쌀의 양을 줄여주는가의 여부를 보아가면서 별도로 의논해 처리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木換米，斗數減定，則當不限年換給之意，使之開諭，非止一再，而終不動聽，事甚痛駭。今明兩年，姑令仍前換米，更觀減其米數與否，別爲議處。”從之。</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11일(정묘) 1번째기사</p>	<p>상이 침을 맞은 후, 허적이 나아가 아뢰기를,</p> <p>“듣건대, 충청 감사가 지금 어실(御室)을 아직 다 만들지 못했고 그밖의 일들도 미처 하지 못했다 하니, 형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을 먼저 보내어 그와 함께 서로 의논해 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나가서 서로 상의하여 하게 하라.”</p> <p>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丁卯/上受鍼後，許積進曰：“聞忠清監司今方營造御室，而未及完役，其他諸事，亦未及措，請先遣刑曹判書金佐明，與之同議爲之。”上曰：“出而相議爲之。”積曰：“凡事雖十分減省，至於調護聖躬之事，不可顧小弊也。內官雖掌衣櫛，而飲饈一節，則不可專委飯監。曾聞故事，亦有妃嬪陪往之時，蓋爲此也。請數三內人率去。”上曰：“飯監掌膳，必不精潔，而內人率去，必有巨弊矣。”積等反復陳達，</p>

	<p>“매사를 최대한 절약하여 한디 허더리도 성상의 옥체를 보호하는 일에 있어서 작은 폐단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관(內官)이 의대를 관장해 왔으니 음식물만은 반감(飯監)에게 전적으로 맡겨선 안 됩니다. 일찍이 비빈(妃嬪)이 떠나 갈 때도 있었다는 고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개 이를 위해서 안 것입니다. 칭컨대 서너 내인(內人)을 데리고 가소서.”</p> <p>-</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p> <p>“반감이 찬을 맡아하면 반드시 정결하지 않을 것이니 내인을 데리고 가면 반드시 큰 폐단이 있을 것이다.”</p> <p>-</p> <p>허자, 허적 등이 반복해 진달하니 상이 따랐다. 허적이 아뢰기를,</p> <p>-</p> <p>“각 고을이 사신을 접대하는 데도 다과상을 차렸으니 이번 어가가 지나가는 곳에 차리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p> <p>-</p> <p>하였으니, 상이 차리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p>	<p>上從之。 積曰：“各邑接待使星，尙設茶啖， 今此車駕所過， 似不可不設。”</p> <p>上曰：“使之勿設。”</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17일(계유)</p>	<p>이성징(李星徵)에게 하교하였다.</p> <p>“진상하는 음식물의 가짓수가 너무 많으니 경기도와 사옹원(司饗院)에게 분부</p>	<p>下教于李星徵曰：“供上物膳， 種數太多， 分付本道及司饗院， 以適宜之物， 從略捧入， 有弊之物， 勿令封進。”</p>

10번째기사	하여 적당한 물품만 간소하게 올리고 폐가 되는 물품은 진상하지 말도록 하라.”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18일(갑술) 8번째기사</p>	<p>경기 감사 김수흥(金壽興)이 장계하기를,</p> <p>“방금 진상하는 음식 물품을 간소하게 받아들이라는 성상의 분부를 보았는데 이는 폐단을 덜려는 지극하신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로서 대전께 진헌하는 도리는 여러모로 심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하물며 이 봉진하는 물품들은 산해(山海)의 토산품에 불과한 것들로 원래 얻기 어려운 물품들이 아니어서 반드시 폐단을 끼치지 않을 것이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마련한 것이니 그대로 봉진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하교하기를,</p> <p>“지금은 우선 받아들이고 환궁할 때는 다시 간소하게 받아들일 것을 엄히 밝히고 거듭 주의시키라.”</p> <p>하였다.</p>	<p>○京畿監司金壽興狀啓：“卽伏見聖教，供上物膳，從略捧入，此實出於省弊之至意。而臣子享上之道，靡不用極，況此封進之物，不過山海土產，元非難得之物，必無貽弊之端，而既已措辦，請仍爲封進。”上下教曰：“今姑捧入，而還宮時，則更以從略事，嚴明申飭。”</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20일(병자) 3번째기사</p>	<p>호조 판서 정치화(鄭致和)가 빚기를 청하니, 막사에서 인견하였다. 치화가 아뢰기를,</p> <p>“호위 군병은 처음에 각기 5일 양식을 지참케 했으니 온양에 도착한 후에는 급료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건대, 충청도의 군사는 동원한 지 벌써 오래되어 싸가지고 온 양식이 이미 바닥나 굶주리게 될 걱정에 놓여 있다 하니 필요한 물품들은 마련해 주어야 할 듯합니다. 군사 6천 7백여 인의 하루</p>	<p>戶曹判書鄭致和請對，引見于幕次。致和曰：“扈衛軍兵，初令各持五日糧，到溫陽後，當放料。而竊聞忠淸軍兵，調發已久，裹糧已盡，方有饑餓之患，似當有接濟之舉。軍士六千七百餘人，一日之糧，當爲八十餘石，稷山亦有會付之穀，請以此分給。”上從之。</p>

	<p>식량이 80여 석인데, 직산(稷山)에도 회부(會付)한 곡식이 있으니, 이것으로 나누어 주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21일(정축) 8번째기사</p>	<p>정원에 하교하였다.</p> <p>“수령들이 차사원(差使員)으로 와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으니, 지금 농사철을 맞아 그 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차사원을 수령들에게 겸임시키고 나머지 수령들은 본 읍으로 돌려보내라. 음식물을 담당하는 차사원들이 들락거리면 역시 폐해가 있을 것이니 1인만 정하되, 각읍에서 음식물을 진상할 때 배지리(陪持吏)가 도착하면 차사원이 사옹원의 관례에 따라 살핀 다음 올리게 하라.”</p>	<p>下教于政院曰：“守令以差使員，多留在者，當此農時，其弊不少。差使員使之兼任，其餘則還送本邑。物膳差員往來，亦有弊，只定一員，各邑物膳進上之時，陪持吏來到，則差員依司饗院例監進。”</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21일(정축) 12번째기사</p>	<p>정원에 하교하여, 농사철이어서 민폐가 염려되니 수랏간에 배정되어 보내진 급수군(汲水軍)들과 여러 곳에 배정되어 보내진 자들을 아울러 모두 돌려 보내라고 하였다.</p>	<p>下教于政院，以農節民弊可慮，水刺間，定送汲水軍及諸處定給者，併皆罷遣。</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22일(무인) 5번째기사</p>	<p>상이, 정원이 아된 7인이 너무 적다고 하여 다시 감사로 하여금 자세히 물어 아되라 하니, 감사 김시진이 다시 1백 70인으로 서계하였다. 상이 나이 90 이상된 자에게는 쌀 5말과 조기 20마리를 하사하고 80된 자에게는 쌀 3말과 조기 10마리를 하사하고 70된 자에게는 쌀 1말을 하사하였다.</p>	<p>上以政院所啓父老七人太少，更令監司詳問以啓，監司金始振更以百七十八書啓。上命年九十者賜米五斗、石魚二束，八十者賜米三斗、石魚一束，七十者賜米一斗。</p>
<p>현종 10권, 6년(1665</p>	<p>약방이 들어와 진찰하였다. 도제조 허적이 기력을 헤아려 천천히 온천에 목욕</p>	<p>藥房入診。都提調許積，請量氣力從</p>

<p>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25일(신사) 2번째기사</p>	<p>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그리하겠다. 그리고 충청도에서 매일 바치는 음식물의 가짓수가 어찌하여 그렇게도 많은가?”</p> <p>하니, 허적이 아뢰기를,</p> <p>“모두가 제때에 나는 토산물이니 구득하기 어려운 물품들이 아닙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거의 30종에 가까웠다. 간소하게 하라는 뜻을 충청 감사에게 분부하고 산노루는 경기의 전례대로 3일 간격으로 봉진하게 하라.”</p> <p>하였다.</p>	<p>容湯沐，上曰，“然。且忠清道日供物膳，種數何太多也？”許積曰：“皆是時物土產，不是難得之物也。”上曰：“幾至三十種。以從略之意，分付本道監司，生獐依京圻例，使之間三日封進。”</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26일(임오) 3번째기사</p>	<p>약방이 들어와 진찰하였다. 형조 판서 김좌명이 뵈기를 청하고 입시하여 아뢰기를,</p> <p>“엇그제 심리 때에 도년형(徒年刑)은 모두 풀어 주었고 그 나머지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유들은 모두 다 관대히 판결을 내리거나 풀어주지 못하였으므로 그 문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충청도 내의 죄인은 거동하시는 날 여기에서 너그러이 판결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p> <p>하니, 상이 그 문서를 써서 들이라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p>	<p>藥房入診。刑曹判書金佐明請對入侍曰：“頃日審理時，盡放徒年，其餘全家之類，未盡疏放，故其文書持來于此。道內罪人，則當臨幸之日，於此疏決好矣。”上曰：“其文書書入。”佐明曰：“居民田土之在宮牆內者，多至六結。此外人馬蹂踐者，亦且九結餘，布帳外民居，亦有十餘戶，而皆失業。朝家雖追後顧恤，而大同米數百</p>

	<p>“거주민의 전도가 행궁의 담 안에 들어간 것이 무려 6결에 이릅니다. 이 밖에 사람과 말에 의해 짓밟힌 것 역시 9결쯤 되며, 포장 밖에 거주하는 백성들 또한 10여 호가 있는데 모두 생업을 잃었습니다. 조정에서 비록 추후에 돌봐 주겠습니다만, 대동미 수백 석이 지금 이 군에 있으니 만일 특별히 분부를 내리어 나누어 주게 하시면 백성들이 반드시 감격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p> <p>“호위하는 여러 군사들이 종일 일이 없어 심지어는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으니 중일(中日)의 관례에 따라 활쏘기와 말타기 시험을 보인 다음에 병조에서 수송해온 목면을 그들에게 상주어 격려, 권장하게 해야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것을 허적에게 물었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복시에도 수송해 온 목면이 있으니, 만일 병조의 목면이 부족하면 이것을 쓰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 좌명이 아뢰기를,</p> <p>“호위 군사들에게 분부하여 그로 하여금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도록 하고 환궁할 때도 호조로 하여금 강가에서 군사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위로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餘石，方在此郡，若下特教分給，則民必感戴矣。”上可之。佐明曰：“扈衛諸軍，終日無事，至於昏睡，宜令依中日例，試射試放，以兵曹輸來木匹賞之，以爲激勸之地。”上以問許積，積曰：“此言好矣。司僕亦有輸來木布，兵曹之木若不足，則以此繼之，無不足矣。”上從之。佐明曰：“扈衛軍不可不一次犒饋。”上曰：“然。分付監司，使之犒軍，還都時，亦令戶曹，犒軍於江頭。”</p>
--	--	---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4월 26일(임오) 4번째기사</p>	<p>정원에 하교하였다.</p> <p>“은천 근처의 백성 중 어떤 이는 그들의 집이 철거되었고 어떤 이는 그들의 집을 비워주고 한데서 지내고 있으며 또 포장 안팎의 전토를 많이 경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몹시 딱하게 여기고 있다.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먼저 쌀과 콩을 지급해 주어 당장 호구할 수 있도록 하라.”</p>	<p>下教于政院曰：“溫井近處民人等，或有撤其家舍者，或有空其廬，而露處者，且布帳內外田土，不得起耕者亦多，予甚愍之。其令宣惠廳，爲先題給米豆，以爲目前餬口之地。”</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1일(병술) 2 번째기사</p>	<p>영의정 정태화(鄭太和), 형조 판서 김좌명(金佐明), 대사간 이경억(李慶億)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무과(武科)는 언제쯤 끝내야 하겠는가?”</p>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마땅히 4, 5일 사이에 시험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가가 돌아가는 기일을 알 수 있다면 이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引見領議政鄭太和、刑曹判書金佐明、大司諫李慶億。上曰：“武科何時當畢?”太和曰：“當畢試於初四五日間矣。若知回鑾之期，則可以放榜於此矣。”上曰：“欲以十一日間旋軫矣。”太和曰：“若造紅牌及賜花，則似無不及之患，以十一日放榜，十二日回鑾則好矣。”上曰然。太和曰：“隨駕武士還都後，又卽設科，似煩瑣。初五日犒軍後，仍試取，一時出榜何如?”上從之，太和曰：“回鑾時，又將徵發此道兵乎?”上曰：“予欲以馬兵爲前隊，</p>

	<p>“11일 사이에 돌아가려고 한다.”</p>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만약 홍패(紅牌)와 사화(賜花)를 만들더라도 기일에 미치지 못할 염려는 없을 듯하니, 11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일에 어가를 돌리시면 좋을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어가를 수행하는 무사들이 서울로 돌아간 후에 또 곧바로 과거를 실시하는 것은 번거로울 듯합니다. 5일에 호군(犒軍)을 하고 나서 그대로 시취(試取)를 하고, 일시에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따랐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어가를 돌릴때 또 다시 이 도의 군사를 징발할 것입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나의 생각으로는 마병을 전대(前隊)로, 보군을 후대로 삼고, 본도의 군사는 징발하지 않았으면 한다.”</p>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p>	<p>步軍爲後隊，而毋發本道兵。” 太和曰：“甚當。請以此分付，使民知之。” 上曰：“分付于忠清監兵使處。” 慶億曰：“水原軍亦一體勿發乎？” 上曰然。 太和曰：“溫陽人特命賜第，實是慰悅之舉。而其中見落者趙鳴漢、申翰宣，不無冤抑，請令該曹除職。” 上從之。 上曰：“今觀忠清監司狀啓，民間麥前十餘日，將不得支活。分付本道監司，如此者，特爲賑救，流離乞丐者，則白給可也。” 佐明曰：“行宮之外，北湯之傍，有古井。曾聞世祖朝，泉水忽湧出，故以爲神井，立碑記事。其碑至今尙存，而字畫漫漶，不可識。臣欲改刻，竊聞掖庭，有工人，使之改刻。” 上從之。 仍命正書一本以入。 慶億曰：“車駕遠臨下邑，實是曠世之舉。自上宜行非常之惠，以慰此土之民。” 上曰：“謂蠲賦耶？予欲臨時行之。” 太和曰：“臣意亦然。不獨此邑，所過郡縣，皆留聖念，則實是美事。” 慶億曰，“民生賦役之外，身役最苦，悅民之道，莫如變通身役。且老人題給食物事，曾已仰達，而尙不施行矣。” 上曰：“老人曾令加資，又不</p>
--	--	---

	<p>“매우 지당하십니다. 이대로 분부하셔서 백성들이 알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충청도 감사, 병사에게 분부하도록 하였다. 경역이 아뢰기를,</p> <p>“수원의 군사도 일체 징발하지 말도록 합니까?”</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은양 사람에게 특별히 급제를 주도록 명하신 것은 실로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조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탈락한 조명한(趙鳴漢)·신한선(申翰宣)은 억울함이 없지 않을 듯하니, 해당 관서로 하여금 그에게 직책을 제수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p> <p>“지금 충청 감사의 장계를 보니, 민간에서 보리가 익기 10여 일 전을 버티어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본도 감사에게 분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진휼하여 구제하도록 하고,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먹을 것을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좌명이 아뢰기를,</p> <p>“행궁 밖의 북탕(北湯) 옆에 오래된 우물이 있습니다. 세조조에 샘물이 갑자기 솟아 나왔기 때문에 신기한 우물이라고 하여 비를 세워 이 일을 기록하였다고 일찍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으나</p>	<p>可題給食物。只九十以上者，又給食物，則似好矣。”太和曰：“誠然。令監司精查一道人以聞，而先將本郡人舉行。”從之。慶億曰：“本道人才，亦訪問于監司，令兩銓收用。”從之。上曰：“忠孝節義人，何以爲之？”太和曰：“此則不可卒然行之，令監司必以行義表著，衆所共知者，啓聞施行。”上曰“可。且沿路各邑老人，並令抄啓，加資食物，一體行之。”</p>
--	---	---

	<p>자획이 흐려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이 다시 새기고자 하는데, 액정(掖庭)에 공인이 있다고 하니 그로 하여금 다시 새기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르고 아울러 한 부를 정서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경역이 아뢰기를,</p> <p>“어가가 멀리 아랫고을에 임하신 것은 실로 한 세상의 드문 일입니다. 상께서 마땅히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지방의 백성들을 위로해야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부세 감면을 이르는 말인가? 내 그때 임해서 시행하려 한다.”</p>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p> <p>“신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비단 이 고을 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군현마다 성상께서 유의해 주신다면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p> <p>하였다. 경역이 아뢰기를,</p> <p>“백성들은 부역 외에 신역(身役)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신역을 변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에 대해 이미 우러러 진달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노인들에게 일찍이 자급을 올려 주도록 하였으니 다시 음식을 제급(題給)해 줄 수는 없다. 다만 90세 이상된 자에게 다시 음식물을 지급해 준다면 좋을 듯하다.”</p>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p> <p>“진실로 그러합니다. 감사로 하여금 한 도(道) 안의 사람을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고, 우선 본 고을 사람부터 시행하소서.”</p> <p>하니, 따랐다. 경역이 아뢰기를,</p> <p>“본도의 인재에 대해서도 감사에게 물어 보시고 양전(兩銓)으로 하여금 거두어 쓰도록 하소서.”</p> <p>하니,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p> <p>“충효와 절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p> <p>하니, 태화가 아뢰기를,</p> <p>“이것은 갑자기 시행하기 어려우니, 감사로 하여금 반드시 행실이 뚜렷하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자를 아뢰도록 하여 시행하소서.”</p>	
--	---	--

	<p>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연로 여러 고을의 노인들을 뽑아 보고하도록 하여, 자급을 올려 주는 일과 음식을 지급하는 일을 일체로 시행하도록 하였다.</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1일(병술) 5 번째기사</p>	<p>대사헌 송준길이 와서 알현하니, 상이 행궁에서 인견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상께서 편찮으시어 멀리 하읍(下邑)에 왕림하셨는데, 근자에 온천에서 목욕을 하신 뒤로 신통한 효험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실로 종사와 신민의 경사입니다. 그런데 신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곧바로 달려와 문안을 드리지 못하였으니 더욱더 황송합니다.”</p>	<p>大司憲宋浚吉來謁， 上引見于行宮。 浚吉曰：“玉候未寧， 遠臨下邑， 近聞湯沐之後， 快收神效。 此實宗社臣民之慶。 而臣有狗馬疾， 未卽趨來起居， 尤極惶悚。” 上曰：“眼疾自春初尤重， 醫官輩， 技窮罔措。 近來始知出於濕熱， 故或望萬分之效， 爲此非時之舉。</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눈병이 지난 초봄부터 더욱 심해졌는데 의관(醫官)들의 의술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근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습열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고는 혹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때아닌 거동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듣자니 경이 살고 있는 곳이 멀지 않다고 하기에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대를 만났으니 나의 기쁨이 어떠하겠는가.”</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이 지난번 장성한 아들을 잃고 마음에 잊지 못하여 스스로 병을 초래하였으므로 항시 머지않아 죽지나 않을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금 상의 얼굴을 다시 뵙게 되니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흐릅니다. 신이 비록 시골에 물러나 있으나 밤낮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다만 성상의 건강이 날로 강건하시고 성상의 학문이 날로 진보하시며, 성상의 공경이 날로 진전하시고 은택이 날로 퍼지는 데 있을 뿐이었는데, 소망에 부합되지 못하여 전야에 있는 신민의 근심이 날로 더욱 심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신은 실로 민망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온천에서 목욕하시고 효험을 보셨으니, 서울로 돌아가신 후에 모든 일을 지난날보다 더욱 힘쓰신다면 어찌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상께서 뜻을 견고하게 갖지 못하시어 매양 질병에 걸려 한결같이 무너진 대로 내버려 두시는데, 이는 신이 매우 걱정하는 바입니다. 상께서 만약 큰 뜻을 분발하신다면, 비록 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신하들을 자주 접견하지는 못하시더라도 때때로 침소로 불러서 다스리는 도리를 의논하시고, 옥당의 유신으로 하여금 글뜻을</p>	<p>而聞卿所居不遠，意謂相見矣，今得見卿，予喜如何。” 浚吉曰：“臣頃喪壯子，不能理遣，自致病敗，常恐死亡無日。不意今者，復見天顏，感淚自零。臣雖退伏畎畝，日夜所望者，只在於聖體日強，聖學日進，聖敬日躋，聖澤日流，而今乃不副所望，田野之憂，日以益甚，臣實悶焉。今幸收效於湯泉，還都之後，凡事益勉於前日，則豈不幸甚。聖志不能堅固，每於疾病之中，一任頽塌，此臣所大憂者。自上若奮發大志，雖有眼患，何事不可。爲引接臣隣，繼不能頻數，時時召入臥內，訪論治道，令玉堂儒臣講義，承旨持公事啓讀，臥而聽之，則豈有廢事之理乎。今乃專廢經筵，十年不御，公事留滯，浹旬乃下，此皆志不立之致也。若於行宮之中，時接儒臣，講論經義，豈不爲美事也。今此行幸，出於萬不獲已，而凡百施措，多有慰悅民心者，遠近之民，莫不感祝。玉候收效，固是莫大之慶，而民情悅服，其幸又不下於此。若不失此心，則實是轉移之大機會也。” 上問卿新從鄉居來，民事如何，浚吉因言：“今年飢荒，</p>
--	--	---

강의하게 하시며 승지로 하여금 공사를 가지고 들어와 읽도록 하되, 누워서 이를 들으신다면 어찌 일을 폐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예 경연을 모두 폐지하여 10년 동안 열지 않으셨고 공사는 묵혀두고 밀려서 열흘이 되어야 재가가 내려오고 있으니, 이는 모두 뜻을 세우지 않은 소치입니다. 만약 행궁에 계시는 중에라도 때때로 유신들을 접하시어 경전의 뜻을 강론하신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거동은 부득이해서 하신 것이지만, 무릇 여러 가지 조처들 중에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기쁘게 하는 일이 많아 원근의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여 축하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옥체에 효험을 보셨으니 진실로 더할 수 없는 경사이지만, 백성들이 기뻐하며 심복하는 것은 이에 못지 않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실로 전환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준길에게 시골에서 새로 올 때 백성들의 실정이 어떠한가에 대해 물으니, 준길이 인하여 아뢰기를,

“금년의 기근으로 백성들이 하나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는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참상은 신축년이나 임인년보다도 심합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아직 구휼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실로 감사와 수령들이 성상의 뜻을 우러러 받들지 못하여 이처럼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영상 정태화를 불러서 이르기를,

“지금 대사헌의 말을 들으니 본도의 흉년이 특별히 심하다. 내가 들은 바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려는 것이다.”

民生赤立，阻飢之狀，甚於辛丑壬寅。而朝廷尚不顧恤，此實監司及守令，不能仰承德意，以致民怨如此也。”上命招領相鄭太和謂曰：“今聞大憲之言，本道凶荒特甚。與予所聞相左，故欲相議耳。”太和曰：“臣亦不知年事至此。民間疾苦漠然不聞，誠極驚慮。請推考本道監司，分給穀物，急速賑救。”上從之。浚吉曰：“近來舒川僧變，極可驚駭。蓋千方寺僧，實是亂賊也。李翊漢令楊逸漢往捕，而逸漢處事顛妄，此非翊漢之罪也。及其置對之時，不能直陳，此則罪也，若論以欺瞞，則非本情也。道內物情，皆惜翊漢之不能窮捕，而翊漢反以此被罪，故人情頗憤鬱矣。”上曰：“翊漢非以此被罪，不報朝廷，擅發軍兵，故以是罪之矣。”浚吉曰：“金始振所爲，亦未妥當，而李慶億啓辭，至有無故僧人之語，故道內人心，皆以爲駭矣。所未可曉者，朝廷不信翊漢啓本，而反信始振啓本，翊漢則被囚於京獄，僧徒則囚繫於此。刑罰之無章至此，人心何以能服乎？竊聞首倡僧人，尚在獄中，若令梟示本郡，撤毀其寺，勿令重建，

	<p>하자, 태화가 아뢰기를,</p> <p>“신 역시 농사가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막연히 듣지 못하고 있었으니 실로 매우 놀랍습니다. 본도 감사를 추고하시고 곡식을 나누어 주어 급히 구제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준길이 아뢰기를,</p> <p>“근래 서천(舒川)에서 승려들이 일으킨 변고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대개 천방사(千方寺)의 중들이 바로 난을 일으킨 적도입니다. 이익한(李翊漢)이 양일한(楊逸漢)으로 하여금 가서 체포하도록 하였는데, 일한이 일을 잘못 처리하였으니 이는 익한의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대질시켰을 때에 사실대로 진달하지 못하였으니 이게 그의 죄입니다만, 만약 기만하였다는 죄로 논한다면 본래의 실정이 아닙니다. 도내의 여론들은 모두 익한이 끝까지 다 체포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는데, 익한이 도리어 이 때문에 죄를 받았으므로 사람들이 자못 울분을 품고 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익한은 이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정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군대를 동원하였기 때문에 죄를 준 것이다.”</p> <p>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p> <p>“김시진(金始振)이 한 일 역시 타당하지 않은데, 이경억(李慶億)의 계사(啓辭)</p>	<p>而放釋翊漢，則當矣。”上皆從之，命翊漢減等。浚吉請以別諭召李惟泰、尹宣舉，上令政院下諭。浚吉又陳衰病，乞解本職，上不許。</p>
--	---	---

중에 무고한 승려라는 말까지 하였기 때문에 도내의 인심이 모두 괴이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정에서 익한이 아뢰지 않고 시진이 아뢰지 않은 것을 믿어 익한은 서울의 감옥에 갇혀 있고 승려의 무리들은 이곳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이 정도로 일정하지 않는데 인심이 어떻게 승복하겠습니까. 삼가 듣자니 앞장서서 선동한 승려가 아직도 옥중에 있다고 하니, 만약 그를 본군에서 효시한 다음 그 절은 헐어서 다시 중건하지 못하게 하고 익한은 석방시킨다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를 모두 따르고, 익한의 죄를 감등하라고 명하였다.

준길이 유시를 별도로 내려 이유태(李惟泰)와 윤선거(尹宣舉)를 부를 것을 청하니, 상이 정원으로 하여금 유시를 전하도록 하였다. 준길이 또 자신의 늙고 병든 상황에 대해 아뢰고 본직을 체차해 달라고 청하였으나,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2일(정해) 2 번째기사	대사헌 송준길에게 식량과 찬거리를 하사하라고 명하였다.	命賜大司憲宋浚吉糧饌。
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3일(무자) 4 번째기사	경상 감사 임의백(任義伯)이 익힌 복어(鮓魚)를 보내 약방(藥房)에 올린다고 장계로 아뢰었다.	慶尙監司任義伯以文報送獻熟鮓于藥 房。
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6일(신묘) 3 번째기사	어가를 호위하는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 普)에게 명하여 훈국의 기보병(騎步兵)과 금군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음식을 먹이게 한 후에 돌아와서 어가를 호위하게 하였다. 또 어영 대장 유혁연(柳赫 然)에게 명하여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음식을 먹이도록 하고, 중사(中 使)와 사관을 보내어 감시하도록 하였다.	犒饋扈衛軍兵。 命兵曹判書洪重普， 領訓局騎步及禁軍，先往犒饋後，還來 扈衛。 又命御營大將柳赫然，領其兵 出往犒饋，遣中使史官監視。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6일(신묘) 4 번째기사</p>	<p>운천 근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장막의 안팎으로 피해를 입은 토지나 가옥이 파손된 자 및 탕직(湯直) 등에게 모두 등급에 따라 쌀과 콩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였다. 사람과 말에 의하여 논과 밭이 짓밟힌 자에 대해서도 쌀과 콩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도록 명하였다.</p>	<p>濫井近處居民及布帳內外田土被害，家舍撤毀人及湯直等，竝命分等題給米豆。田土被人馬踐踏者，亦命計給米豆。</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7일(임진) 3 번째기사</p>	<p>우찬성 송시열이 와서 알현이니, 상이 행궁에서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초봄부터 눈병이 더욱 심해져서 부득이 이번 거동을 하였던 것인데, 목욕을 한 뒤로 날마다 조금씩 효험이 있다.”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효과를 보는 것이 빠르면 실효도 빨리하는 것이니, 서서히 효과를 거두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몸에 고질이 있어서 일을 할 가망이 없는데 이처럼 오래도록 헛되이 직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모두 체차해 주소서.” 하자, 상이 이르기를, “신축년에 서로 이별한 이후로 벌써 4, 5년이 흘렀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와서 다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경들이 가까이 살고 있어서 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만나보았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제 나의 병이 점차로 차도가 있으므로 경들과 함께 경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경악(經幄)을 출입하며 나를 가르쳐 인도하기를 내 실로 바라고 있다. 경의 직책은 모두 한가한 직무이니 서둘러 바꿀 일이 별로 없다.”</p>	<p>右贊成宋時烈來謁，上引見于行宮。上曰：“自春初眼疾深重，不得已爲此舉，沐浴之後，日漸有效矣。”時烈曰：“得效速，則失之速，徐徐收效幸甚。臣痼疾在身，無望供仕，而虛帶職名，至於此久。乞竝許遞免。”上曰：“自辛丑相別之後，忽已四五年，今予來此，所幸者，卿等居在近地，得以相見。予心之喜何如也。今予病向差，欲與卿等偕歸京城，出入經幄，教導寡躬，予實望之。卿之職名，皆係閑務，別無急遞之事。”時烈以負罪、病痼爲辭。上曰：“予固知卿之疾病，豈以職事相迫耶。不過使之出入經筵，匡輔不逮而已。況罪累之事，予每明其不然，而卿常以罪自稱，每聞此言，予心不平矣。”時烈曰：“自上明竝日月，仁同天地，故每賜寬假，而朝廷者，非一人之朝廷。若公議峻發，則聖明雖欲終始曲貸，有不可得矣。</p>

	<p>하니, 시열이 죄를 진 몸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 있다고 사양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경에게 병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어찌 직무를 보라고 강요 하겠는가. 다만 경연에 출입하면서 부족한 것을 도와주라는 데 불과하다. 하 물며 죄를 지고 있다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누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혔 는데도 경은 항시 스스로 죄가 있다고 청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p> <p>하니, 시열이 아뢰기를,</p> <p>“위에서 해와 달처럼 밝으시고 천지와 같이 어지시므로 매번 너그럽게 대해 주시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조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공공의 의 론이 준엄하게 일어나면 비록 성명께서 끝까지 곡진히 보존해주고 싶더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처신함이 무상하고 신하로서 불충하여 갖가지 죄 를 몸에 지고있는데 어찌 다시 조정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p> <p>하자, 상이 여러모로 위로하여 타일렀다. 그리고 양식과 찬거리를 내려주도록 명하였다.</p>	<p>臣行身無狀，爲臣不忠，多少罪戾，積萃于身，豈可更廁於朝班乎。”上慰諭備至，命賜以糧饌。</p>
--	--	--

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9일(갑오) 3 번째기사	호군 이유태, 전 집의 윤선거에게 음식물을 내려주도록 명하였다.	命賜護軍李惟泰、前執義尹宣舉食 物。
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10일(을미) 4번째기사	정원에 하교하였다. “어가가 돌아갈 때 물선(物膳)을 숙소에만 진배(進排)하도록 하고, 주정소(晝 停所)에서는 진위(振威)에서 말고는 모두 올리지 말도록 하라.”	下教于政院曰：“回鑾時物膳，只令進 排於宿所，晝停則振威，外皆勿進。
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10일(을미) 6번째기사	우찬성 송시열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고, 또 식량과 찬거리를 내려준 명을 사양하니, 상이 관대하게 비답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右贊成宋時烈上疏乞免，且辭糧饌之 命，上優批不許。
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10일(을미) 7번째기사	부호군 이유태가 상소하여 음식물을 내려준 것에 대해 사양하였으나, 상이 허 락하지 않았다.	○副護軍李惟泰上疏辭食物，上不許。
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10일(을미) 8번째기사	전 집의 윤선거가 소를 올리고 물러갔다. 선거가 명을 받들고 행궁에 달려온 것은 다만 한번 사정을 진달하고 비답을 받아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다. 그런 데 상이 음식물을 내려주도록 명하고 또 불러 만나보려고 하자, 선거가 스스 로 불안하게 여겼으며, 또 의리로 보더라도 음식물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겨 상 소하고 곧바로 돌아갔다. 충청 감사가 그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로 음식물을	前執義尹宣舉陳疏退去。宣舉承命來 赴行朝者，只欲一陳情，承批而歸。 而上命給食物，且欲召見，宣舉不自 安，且以於義不當受食物，遂拜疏徑 歸。忠淸監司輸送食物于寓舍，則已

	<p>보내니 이미 떠나고 없었다. 감사가 이를 아뢰니 상이 역시 모른 채하였다.</p>	<p>去矣。 監司以聞，上亦不之省。</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5월 25일(경술) 1번째기사</p>	<p>정언 권두추(權斗樞)가 상소하기를,</p> <p>“백성은 진실로 국가의 근본이며, 왕기(王畿)는 진실로 사방의 근본입니다. 불행하게도 팔도가 모두 연이어 흉년을 당하였고 경기 지역이 더욱 심하니 이는 진실로 국가에서 마땅히 먼저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토지를 측량한 이후로 전결이 배로 늘어나고 부세도 이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만 근본이 되는 지역에 유독 2두를 증가시켰으니 우둔한 저 백성들이 공가의 경비는 각기 다르며 책응(策應)에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어찌 알아서 유독 고통을 받고 있다고 탄식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신이 듣자니 어가가 온천에 머물러 있던 날에 특별히 호서 지방의 백성들을 근심하시어서 노인들을 우대하고 굶주린 자들을 구휼하게 하시는 등 여러 조치를 모두 시행하시니, 덕음이 한번 퍼지자 모두들 일시에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정이 쉽게 동화되고 왕정이 쉽게 나타나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경기 지역의 허덕이는 백성들에게까지 두루 혜택을 입히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마땅히 묘당으로 하여금 급히 창고의 곡식을 내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다시 수미(收米)의 법을 상의하시어 충청도 지방의 경우와 같이 영원히 2두를 감해 주어 골고루 혜택이 미치도록 하소서.”</p> <p>하였는데, 답하기를,</p> <p>“충성스럽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을 내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p>	<p>庚戌/正言權斗樞上疏以爲：</p> <p>民固國家之本，而王畿，實四方之根本也。 不幸連值凶歉，八路同然，畿輔尤甚，此誠國家所宜先恤者也。 一自改量之後，田結倍多，賦稅隨增，而根本之地，獨加二斗，蠹彼小民，安知公家經費之各異，策應之有殊，而不懷偏苦之歎耶。 臣聞駐駕溫泉之日，特軫湖西之民，優老恤飢，諸典畢舉，德音一播，歡聲齊動。 人情之易感，王政之易效，有如是者，殿下何不推此心，而遍及於畿甸殿屎之民耶？ 宜令廟堂，急發倉粟，分糶飢民，更議收米之法，永減二斗，一如湖西，以爲均施惠澤之地。</p> <p>上答以：“忠愛之誠，予甚嘉之。” 疏下備局，無所施行。</p>

	<p>하였다. 상소를 비국에 내렸으나 시행된 것이 없었다.</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6월 3일(무오) 1 번째기사</p>	<p>정언 이익상(李翊相) 등이 아뢰기를, “강원 감사 이만영(李晩榮)과 수원 부사 박경지(朴敬祉) 역시 다 제멋대로 과례(科例)를 어기고 봉진(封進)하였으니, 적발하여 추궁하는 일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 과직하소서.”</p> <p>하고, 또 아뢰기를, “성균관 유생이, 성균관에 나졸이 들어간 일로 인하여 공조 판서 이완(李浣)과 다투었습니다. 이완은 이를 여론에 부쳐야 했을 것인데 감히 방자하게 상소하여 마치 스스로 해명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니, 일의 체모로 보아 적발하여 추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엄중히 추고하소서.”</p> <p>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만영은 체차한 뒤에 추고하고 경지는 추고하라고 명하였다.</p> <p>이 당시 경상 감사 임의백(任義伯)이 삶은 전복을 내국(內局)에 보냈다가 대</p>	<p>戊午/正言李翊相等啓曰：“江原監司李晩榮、水原府使朴敬祉，亦皆踰越科例，擅自封進，糾劾之舉，宜無異同。請竝罷職。”又啓曰：“太學儒生因邏卒入泮，與工曹判書李浣，有所爭詰。在浣之道，惟當付之公議，而乃敢肆然投疏，有若自明者然，其在事體，不可無糾劾之舉。請從重推考。”上不從，命遞推晩榮，而敬祉則推考。時慶尙監司任義伯，既以送熟鮓于內局，被臺劾而遞。江原監司李晩榮，亦以文報送數種魚產，以備藥用，駕過水原，府使朴敬祉別造藥果，進于內局，提調許積，齎往溫陽。至是臺諫劾晩榮等，積亦上章自劾，上答以安心勿辭。</p>

	<p>간의 탄핵을 받고 이미 체직된 상황이었다. 강원 감사 이만영도 문보(文報)를 보내는 편에 몇 가지 어산물을 보내어 약용(藥用)으로 쓰게 하였고, 대가가 수원을 지날 때에 부사 박경지가 특별히 약과를 만들어 내국에 진봉하자 제조 허적(許積)이 온양으로 가지고 갔었다. 이때에 이르러 대간(臺諫)이 만영등을 탄핵하자 허적도 상소하여 스스로를 탄핵하였는데, 상이 안심하고 사임하지 말라고 답하였다.</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7월 1일(을유) 4 번째기사</p>	<p>호조가 좌참찬 송준길에게 이달 월봉 및 쌀과 반찬을 보냈다. 송준길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는데, 상이 다시 보내게 하였다.</p>	<p>戶曹送今月月俸米饌於左參贊宋浚吉。辭不受，上更使輸送。</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7월 3일(정해) 4 번째기사</p>	<p>강원 감사 이만영(李晩榮)이 치계하기를, “영동의 9개 고을은 가뭄이 특히 더 심하므로 구휼하는 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아서는 안 되겠는데, 본도(本道)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흉년이 들어 공사(公私)간에 비축된 것이 하나도 없어 손을 쓸 길이 없습니다. 곡식을 옮겨 구제하는 방도를 묘당으로 하여금 미리 강구하게 하소서.” 하니, 비국이 회계하기를, “9개 고을의 가뭄은 너무도 놀랍고 처참합니다. 경자년(657)의 예에 따라 타</p>	<p>江原監司李晩榮馳啓，“嶺東九邑，旱乾特甚，賑救之舉，不可不前期料理，而本道連年失稔，公私赤立，無措手之路。移粟之策，請令廟堂，預先講究。”備局回啓：“九邑旱災，極可驚慘。依庚子年例，以他道近地之粟，移轉以救，令新監司下去，商度被災輕重、移粟多少，而啓聞稟處。”從之</p>

	<p>도(他道) 고을 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의 곡식을 옮겨 구제하되, 신임 감사로 하여금 내려가는 대로 가뭄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와 수송할 곡식의 양을 헤아려 보고하고 여쭙어 처리하도록 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7월 29일(계축) 2번째기사</p>	<p>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p> <p>“최근에 있는 지방의 풍재(風災)는 벼와 곡식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무가 뽑히고 돌이 날아갔으니 극히 놀랍고 두렵습니다.”</p> <p>하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천재(天災) 가운데에서도 바람의 변고가 가장 두렵습니다. 과거의 일을 가지고 말을 해보면, 을해년과 신묘년에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끝내 큰 화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중외(中外)의 인심이 모두 놀라고 의혹하는 것입니다. 풍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해일의 변고까지 도처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 또한 두려운 일입니다.”</p> <p>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형조 판서 김좌명이 아뢰기를,</p> <p>“김근행(金謹行)이 유향을 밀거래하기로 약속했던 건은 지금 여쭙어 처리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引見大臣及備局諸臣。左相洪命夏曰：“近來外方風災，非但損傷禾穀，至於拔木飛石，極可驚懼。”領相鄭太和曰：“天災之中，風變最可畏。以已事言之，乙亥、辛卯兩年之風，其終皆有大禍，故中外人心，莫不驚惑。不但風災如此，海溢之變，到處皆然，亦可畏也。”上曰然。刑曹判書金佐明曰：“金謹行所約潛商疏黃事，今當稟處矣。”上曰：“其數幾何？”佐明曰：“向則一萬五千餘斤，今則二萬七千斤矣。”太和曰：“政府奴欲爲免賤計，潛貿以來。蓋此事，故相元斗杓在時，自備局分付譯官，密令商賈，往約彼中以來矣。”戶曹判書鄭致和曰：“潛商乃彼國極禁。而我國所爲，館倭無不洞知，且商賈等，必藉此事，恣意潛行，豈不有傷於國體乎。臣意以爲：此後則痛加禁斷爲可。”命夏曰：“嶺東旱</p>

	<p>“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가?”</p> <p>하자, 좌명이 아뢰기를,</p> <p>“전에는 1만 5천여 근이었는데 이번에는 2만 7천 근입니다.”</p> <p>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p> <p>“정부(政府)의 노복이 면천(免賤)하기 위하여 밀무역하여 온 것입니다. 대개 이 일은 고 상신(相臣) 원두표(元斗杓)가 재직하던 당시에, 비국이 역관에게 분부하여 은밀히 장사꾼으로 하여금 저들에게 가서 약속하고 오게 한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p> <p>하니, 호조 판서 정치화가 아뢰기를,</p> <p>“밀무역은 저들 나라가 엄중히 금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하는 처사를 관 왜(館倭)가 뻔히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장사꾼들이 반드시 이 일을 빌미삼아 멋대로 밀무역을 하려들 것이니, 어찌 나라의 체통을 손상시키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이후로 엄중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p> <p>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p> <p>“영동 지방의 가뭄은 매우 참담한데 강릉은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이미 감사로 하여금 직접 살펴본 다음 보고하여 구휼할 근거를 삼도록 하였습니다</p>	<p>災甚慘，而江陵爲尤甚。已令監司親審啓聞，以爲賑救之地，而似不無匹夫抱冤之事，請本道未決刑獄，一一啓聞，令刑曹疏決。”上從之。致和曰：“故校理尹集在南漢時，以斥和執送胡中，不屈而死，當其去時，仁祖大王引見集，以恤其老母妻子爲教，仍給月廩于其家。今聞其妻身死，而家甚窮乏，限三年仍給其廩，俾供祭奠何如？”太和以其未及窆葬，請給喪需，上從之。吏曹判書金壽恒曰：“臣忝元子輔養官之任，而尙不得瞻拜，下情誠爲鬱抑。且實錄今已瞻來，當有稟定之事。”上曰：“實錄所瞻甚踈略。太宗朝則稱以元子府，官屬稱以侍學官，中宗朝則直以世子稱之，仁宗大王六歲加冠，出入書筵。此是中宗朝創設，今不必遵行矣。”命夏曰：“雙童髻出於《大明會典》。”壽恒曰：“祖宗朝故事，則侍講之官，多數差出，中宗朝則至以大臣爲之。仁祖朝則差出元子官屬，而堂上官，則謂之講學官，堂下官，則謂之侍學官，今不可不盡爲差出。宋浚吉之意如此矣。”上曰：“久欲使之相見，而元子近有疾病，病若愈，則當令卿等</p>
--	--	--

	<p>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백성이 없지 않을 듯하니, 아직 처결되지 않은 본도의 옥사를 일일이 아뢰게 한 다음 형조로 하여금 소결(疎決)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치화가 아뢰기를,</p> <p>“고 교리 윤집(尹集)은 남한 산성에 있었을 때에 화의를 배척하였다가 청나라로 잡혀가 굴복하지 않고 죽었는데, 그가 청나라로 떠나던 때에 인조 대왕께서 윤집을 인견한 자리에서 ‘노모와 처자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교하셨고, 그후 매달 쌀을 그의 집에 지급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듣건대 그의 처는 죽고 집안이 매우 궁핍하다고 하니, 3년 동안은 쌀을 계속 지급해 주어 제사에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태화가,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으니 상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건을 지급해 주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조 판서 김수항이 아뢰기를,</p> <p>“신은 원자 보양관의 직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직 배알하지 못하였으니, 아랫사람된 자로서 심정이 매우 답답합니다. 또 실록을 지금 이미 베껴 왔으니 여쭙어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실록에서 베껴온 것은 매우 소략하다. 태종조에는 원자부(元子府)라 칭하고 관속(官屬)은 시학관(侍學官)으로 칭하였는데, 중종조에는 곧장 세자로 칭하고 인종 대왕이 6세 되던 때에 관을 쓰고 서연에 출입하였다. 이는 중종조에 창</p>	<p>相見耳。” 太和請使禮判及輔養官相議，以定節目，上從之。</p>
--	---	-------------------------------------

	<p>설한 것이니 지금은 따를 필요가 없다.”</p> <p>하자, 명하가 아뢰기를,</p> <p>“쌍동계(雙童髻)는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나옵니다.”</p> <p>하였다. 수항이 아뢰기를,</p> <p>“조종조의 고사(故事)에는 시강하는 관원을 여러 명 차출하였는데 중종조에는 심지어 대신으로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조조에는 원자 관속을 차출하여 당상관은 강학관, 당하관은 시학관이라고 불렀으니, 지금 다 차출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송준길의 뜻은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서로 만나보게 하고자 한 지가 오래인데, 원자가 근래에 병을 앓고 있으니 병이 나으면 경들과 서로 만나보게 하겠다.”</p> <p>하였다. 태화가, 예관 및 보양관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절목(節目)을 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p>	
--	---	--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8월 7일(경신) 1 번째기사</p>	<p>사간 박정 등이 아뢰기를, “평안도 각 고을이 원곡(元穀) 이외에 매년 전세(田稅)로 받는 쌀과 콩은 거 두어 본 고을에 두고, 갖가지 모곡(耗穀)은 전부 관향사(管餉使)의 관할하에 두었는데, 이자가 또 이자를 낳아 해마다 불어나므로 빌려주고 받는 즘음에 주민에게 대단히 큰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축적하느라 병폐를 끼치기보다 는 변통하여 곤궁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본도(本道)에는 비·바람·우박 세가지 재해가 한꺼번에 일어났으니, 구휼하는 대책을 깊이 강 구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금년 모곡을 특별히 감면해 주어 서도(西道) 백성 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니, 상이 관서의 1년 모곡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었다. 호조가 아뢰기를, “작년의 회계를 상고해 보건대 평안도에 나누어 지급한 관조(官糶)가 35만 1 천 5백 80섬[石]이니, 모곡은 3만 5천 1백 78섬이 되겠습니다.”</p>	<p>○庚申/司諫朴挺等啓曰：“平安道各邑 元穀之外， 每年田稅米菽， 收置本邑， 而各樣耗穀， 專屬管餉， 耗又生耗， 逐 年增益， 糶糶之際， 大爲居民所苦。 與其蓄積而有弊， 不若變通而救急。 目今本道， 雨水風雹， 三災竝作， 救之 之策， 不可不熟講。 今年耗穀， 特許 減除， 以施西民一分之惠。” 上問關西 一年耗穀幾何。 戶曹啓：“以取考上年 會計， 則平安道分給官糶爲三十五萬一 千五百八十石， 耗穀當爲三萬五千一百 七十八石矣。” 上命蕩減其三分之 一。</p>

	<p>하니, 상이 그 수의 3분의 1을 견감해 주라고 명하였다.</p>	
<p>현종 10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8월 14일(정묘) 3번째기사</p>	<p>원양 감사(原襄監司) 이준구(李俊耆)가 치계하기를, “강릉 등 3개 고을은 흉년이 가장 심하게 들어 백성들이 벌써 굶주리고 있 니, 다른 곳의 곡식을 옮겨 구휼하소서. 또 기해년(663)의 전례를 그대로 따 라 부역(賦役)을 견감하소서.” 하니, 그 부근에 있는 함경도와 경상도의 고을 곡식을 옮겨 구휼하라고 명하 였다.</p>	<p>原襄監司李俊耆馳啓: “江陵等三邑, 凶荒特甚, 民方饑餓, 請移粟以賑之。 且一依己亥年例, 蠲減賦役。” 命以咸 鏡、慶尙附近邑穀物, 移賑之。</p>
<p>현종 11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9월 5일(무자) 2 번째기사</p>	<p>좌참찬 송준길이 소장을 올려 온천(溫泉)에 가서 목욕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다행히 원자를 뵈게 되었습니다. 종사와 신민의 큰 경사가 실로 여기에 있으니 위에서 제가(齊家)하는 법을 잘 실행하여 원자로 하여금 취하여 본받 게 한다면 어찌 국가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보양하는 책임이 제신들에게 있 는 합니 다만 나아가 뵈는 것이 때가 있으니 십한(十寒)681)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항상 좌우에 두고 곳에 따라 교유하는 것은 오직 전하게 달려 있습 니다. 신은 노병(老病)이 날로 깊어져 가고 있으므로 지금 서늘해져 가는 시 기에 맞추어 휴가를 얻어 목욕을 하러 가고 싶어 감히 이렇게 거듭 청합니</p>	<p>○左參贊宋浚吉上疏, 請往浴溫泉, 上 引見。浚吉曰: “臣幸得拜元子。宗 社臣民之大慶, 實在於此, 自上若克行 齊家之法, 使元子取則, 則豈非國家之 福乎。輔養之責, 雖在諸臣, 而進見 有時, 不無十寒之慮。至於恒置左右, 隨處教誘, 則惟在殿下矣。臣老病日 深, 欲趁今向涼之時, 得暇往浴, 敢此 申請。” 上曰: “即今天氣已涼, 卿雖 下去, 必不得沐浴。元子既已相見,</p>

	<p>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지금 천기(天氣)가 이미 서늘하여 졌으니, 경이 내려간다고 해도 반드시 목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자가 이미 상견례를 행했으니 글을 배우게 해야 하는데 경이 내려간다면 누가 그를 교도(教導)하겠는가. 그리고 원자가 전에는 수염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는데 경을 만나고 난 뒤부터 항상 다시 만나보고 싶어했다. 오늘도 경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방금 나와서 만나보려고 하고 있다.”</p> <p>하였다. 상이 원자를 나오게 하라고 명하니, 원자가 당수(唐首)·옥잠(玉簪)에 남색사 도포(藍色紗道袍)·홍사대(紅絲帶)·흑화(黑靴) 차림으로 나와서 북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어좌(御座)의 왼쪽에 앉았다. 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이 압존(壓尊)되어 답례(答禮)를 할 수 없기에 매우 황공스럽습니다.”</p> <p>하니, 상이 원자에게 이르기를,</p> <p>“좌참찬을 본 적이 있느냐?”</p> <p>하자, 원자가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상이 안석(案席)에 기대어 웃음을 머금은 채 원자를 눈여겨 바라보았다. 원자는 미목(眉目)이 청아하고 신기(神氣)가 빼어났는데 단정하게 손을 마주 잡고 정좌하여 제신들을 둘러보았다. 입시켰던 신하들이 모두 은근히 기뻐하였다. 조금 있다가 상이 원자에게 대내(大內)로</p>	<p>使之始學，卿若下去，誰與教導。且元子曾前惡見有髻之人，自見卿後，常欲更見。今日聞卿入來，方欲出見矣。”上命元子出來，元子唐首玉簪藍色紗道袍紅絲帶黑靴而出，北向再拜，坐於御座之左。浚吉曰：“臣壓尊不得答禮，極爲惶恐。”上謂元子曰：“曾見左參贊否？”元子對曰：“唯上，倚案含笑，諦視元子。眉目清朗，神氣秀拔，端拱危坐，周視諸臣。入侍之臣，無不竊喜。少頃，上命元子入內，元子起再拜而入。浚吉曰：“竊觀元子行禮，揖讓拜跪，無不中度。雖或預習於宮中，若非天成，何以如此。自今當勉令講學，以開益其性，所講之書，當講《孝經》矣。”上曰：“然，字音想必不解，先講《訓蒙字會》何如？”浚吉曰：“講《孝經》，兼講字書，則好矣。”因請講學逐日間日之當否，上曰：“間日爲之可也。輔養官不必定以一人。若無故則雖二人入來，可矣。”浚吉又請往浴，上勉諭不許。浚吉曰：“竊聞進宴之舉已定，考之時勢，有不可者。卽今民事慘然，大無之災，八路同然，民將填壑。加以向來，天災</p>
--	---	--

<p>들어가라고 명하니, 원자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들어갔다. 준길이 아뢰기를,</p> <p>“삼가 원자께서 행례(行禮)하는 것을 살펴보니 읍양하고 배례(拜跪)하는 것이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궁중(宮中)에서 예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자질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힘써 학문을 강론하게 함으로써 품성을 개도하여 증익시켜야 하는데 강해야 할 글은 의당 《효경(孝經)》으로 해야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그렇기는 하지만 자음(字音)을 필시 알지 못할 것이니 먼저 《훈몽자회(訓蒙字會)》를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p> <p>하자, 준길이 아뢰기를,</p> <p>“《효경》을 강하면서 겸하여 자서(字書)도 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였다. 인하여 강학(講學)함에 있어 날마다 할 것인가 하루씩 걸러 할 것인가에 대한 당부(當否)를 결정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하루씩 걸러 하도록 하라. 보양관은 1인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일이 없을 경우에는 2인이 들어와도 된다.”</p> <p>하였다. 준길이 또 목욕하러 가게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면유하고 윤택하지 않았다. 준길이 아뢰기를,</p>	<p>驚心，太白晝見，至今未弭，當此憂虞之時，而爲此豐亨豫大之舉，則外方聽聞，將謂如何？況帝王之孝，不在於口體之養，而實在於宗社鞏固，百姓安樂而已。似聞明春，將奉慈殿往浴溫泉，若待明年慈候平復，年歲豐登然後，舉行盛禮，與民同樂，則豈不好乎？”上曰：“自國喪之後，連值凶歉，尙未得一進宴於兩慈殿。壬寅年年事稍豐，將欲設行，而萬壽殿遭喪制，又不得行。萬壽殿喪制盡於冬間，故茲與大臣相議，欲行於冬末春初。若一年二年，漸至遷延，則終無可爲之時。群意則或有欲行豐呈者，而只欲略設進宴，少紓予情而已。”浚吉曰：“天災民怨，如是孔棘，而國家一邊爲此舉措，則遠外之民，將必謂國家不恤，而反爲豐大之舉，將何以自解於民哉？凡人君舉措，若不少合於天意民心，則恐非帝王之孝也。曾在先朝丁酉年間，將設進宴，而適有冬雷之變，臣陳達於榻前，則先王卽命退行。此乃畏天之道也。近來天災及慶州、江陵之變，皆是前古所無。此時此舉，極爲未安，故敢此陳達，伏望更加思量。”上曰：</p>
---	--

“삼가 듣건대 진연(進宴)을 거행할 것을 이미 결정했다고 하는데 시세를 상고하여 보면 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백성의 일이 참담하여 큰 흉년의 재앙이 팔로(八路)가 똑같은 실정이어서 백성의 주검이 구렁을 메울 상황입니다. 게다가 근래 천재(天災)가 마음을 놀라게 하고 태백(太白)이 낮에 나타나 지금껏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걱정스런 때를 당하여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는 것을 외방 사람들이 듣는다면 장차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더구나 제왕(帝王)의 효도는 구체(口體)를 봉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종사를 공고하게 하여 백성들이 안락(安樂)을 누리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년 봄에 자전을 모시고 온천으로 목욕하러 간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내년에 자전의 체후가 평복되고 농사도 풍년이 든 뒤에 성례(盛禮)를 거행하여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국상(國喪)이 있는 뒤로 잇따라 흉년이 든 탓에 아직 한번도 두 자전께 진연을 올리지 못하였다. 임인년(682) 에는 연사(年事)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장차 설행(設行)하려 했으나 만수전(萬壽殿)의 상제(喪制)를 당하였던 탓에 또 설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만수전의 상제가 겨울에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신들과 상의하여 겨울 끝이나 초봄에 설행하려 했다. 만일 1년, 2년 자꾸 미루다 보면 끝내는 설행할 때가 없게 될 것이다. 여러 사람의 의견에는 풍정(豊呈)을 행하자고 하는 이도 있었으나 단지 간략하게 진연(進宴)을 설행하여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을 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였다. 준길이 아뢰기를,

“人子愛日之情，只恐流光不待，後悔莫及，故爲此不得已之舉也。” 浚吉曰：“臣等亦有父母，聞此聖教，何敢更達？但臣意，則帝王之孝，不在於此，若先行其大者，則如此等事，雖或不，何損於孝乎。”

“천재(天災)와 민원(民怨)이 이렇게 매우 극심한 상황인데 나라에서 한편으로 이런 거조를 행한다면 먼 외방의 백성들이 장차 반드시 국가에서 구휼(救恤)하여 주지 않으면서 도리어 성대한 행사를 거행한다고 여길 것이니, 어떻게 백성들에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임금의 거조가 조금이라도 천의(天意)와 민심(民心)에 합치되지 않는 점이 있게 된다면 이는 아마도 제왕의 효도가 아닐 듯싶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정유년(683)에 진연을 설행하려 했는데 마침 겨울에 우레가 치는 변이 발생했으므로 신이 탐전에서 진달하였더니 선왕께서는 즉시 물러서 설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두려워하는 도리인 것입니다. 근래 천재와 경주(慶州)·강릉(江陵)의 변고는 모두 전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때에 이런 거조가 있는 것은 매우 미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진달하니, 삼가 바라건대 다시 생각하여 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식이 되어 날짜가 가는 것을 아끼는 마음에 있어 흐르는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이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지경에 이를까 우려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거행하려는 것이다.”

하자, 준길이 아뢰기를,

“신들도 부모가 있는데 이런 성교(聖敎)를 듣고 어떻게 감히 다시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신의 뜻은, 제왕의 효도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큰 것을 행한다면 이런 일은 비록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효도에 무슨 손

	<p>상될 것이 있겠느냐고 여겨 아뢰는 것입니다.”</p> <p>하였다.</p>	
--	--	--

<p>현종 11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9월 12일(을미) 1번째기사</p>	<p>간원이 아뢰기를,</p> <p>“국가에서 저축하는 것은 가뭄과 장마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시의 경우에 견준 것입니다. 지금 팔로(八路)에 저축되어 있는 숫자를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양서(兩西)의 경우는 가호가 얼마 안 되는 작은 고을일지라도 수만 석(石)을 밀돌지 않고 있고 기타 각도 여러 고을에 저축된 것도 숫자의 다소가 고르지 않습니다. 곡식이 많은 고을은 조적(糶糴)을 실시할 즈음 백성들이 이를 감내할 수 없어 포핍되는 걱정을 면할 수가 없으며, 곡식이 적은 고을은 만일 흉년이 들게 되면 백성들이 모두 먹여주기를 바라는 것은 물론 다른 고을의 적곡(糶穀)을 받으러 가기에 이르고 있으니, 실로 널리 은택을 베푸는 데 병통이 있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 각 고을의 전결(田結)의 다과(多寡)를 가져다 조사하여 조처한다면 3년의 식량을 저축하는 숫자는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원수를 참작하여 결정해서 매년 적곡을 나누어 주고 모곡(耗穀)과 아울러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래 정한 실수 이외에 여유가 있게 된 부분은 경창(京倉)으로 운송해다가 군수(軍需)에 대비하도록 한다면, 제도의 민력을 조금이나마 펴지게 할 수 있고 대농(大農)686)의 경비에도 보탬이 되는 점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묘당에 나아가 의논하여 각 고을의 조적을 그 고을 전결의 다과에 따라 원수를 일정(一定)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폐단을 조금이나마 제거하도록 하소서.”</p>	<p>○乙未/諫院啓曰：“國家之有蓄積，所以備旱澇，而擬緩急者也。目今八路儲峙，雖未能詳知，而兩西則雖十室殘邑，不下數萬石，其他各道諸邑所儲，多少不齊。穀多之邑，則糶糴之際，民不支堪，未免逋欠之患，穀少之邑，則倘遇凶歲，民皆望哺，至於就糶他邑，實有病博施之歎。今若取考各邑田結多寡，雖未滿三年之蓄，酌定其元數，每年分糶，並耗收捧。元定實數之外，如有餘裕，運致京倉，以備軍需，則諸道民力，可以少紓，大農經費，亦不無補。請令該曹，就議廟堂，各邑糶糶，隨其田結多寡，一定元數，以除民間一分之弊。”上從之。</p>
<p>현종 11권, 6년(1665)</p>	<p>사간 이유 등이 아뢰기를,</p>	<p>○司諫李穡等啓：“各邑糶糶之際，必</p>

<p>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9월 21일(갑진) 3번째기사</p>	<p>“각 고을에서 조적(糶糶)을 수납할 즈음에 반드시 모곡(耗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터 유래되어 온 정식(定式)이라고는 하지만 근년 이래 흉년이 잇따라 발생하였으므로 원곡(元穀)도 간신히 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진실로 논할 겨를도 없고 모곡에 이르러서도 충비(充備)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입추(立秋) 이후로 수재·바람·우박·해일 등의 재해가 거듭 나타나니, 앞으로의 민사(民事)를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본원(本院)의 계사를 인하여 관서 관향곡(管餉穀)의 모곡(耗穀)은 이미 양감(量減)했습니다만 기타 제도의 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도 똑같이 진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도 가운데 피해가 더욱 극심한 고을에 대해서는 금년의 모곡을 특별히 감제시켜 조정에서 은혜롭게 돌본다는 뜻을 보이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해조에게 그 가운데 더욱 극심한 고을을 초출하여 품처하게 하였다.</p>	<p>捧耗穀，雖曰流來定式，近年以來，凶歉連仍，元穀之艱備，固不暇論，至於耗穀，亦不能充備。而立秋以後，水患風雹海溢之災，疊見層出，前頭民事，已可知矣。頃因本院之啓，關西管餉耗穀，雖已量減，其餘諸道被災之處，亦不可不一體軫念。請諸道中尤甚被災之邑，今年耗穀，特爲減除，以示朝家優恤之意。”上令該曹，抄出其尤甚邑稟處。</p>
<p>현종 11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11월 10일(임진) 1번째기사</p>	<p>평안 감사 이정영(李正英)이 치계하기를,</p> <p>“도내(道內) 삭주(朔州)·창성(昌城)·벽동(碧潼)·이산(理山)·위원(渭原)·맹산(孟山) 등 여섯 고을의 재이가 더욱 극심합니다. 수세미(收稅米), 노비공(奴婢貢), 진봉리(進封吏) 등 제역(諸役)과 월과 군기(月課軍器) 같은 것은 금년을 기한으로 견감시켜 주시고 그 나머지 여러 고을에도 제역(諸役)을 양감(量減)시켜 주소서.”</p> <p>했는데, 호조에 내렸다. 회계하기를,</p>	<p>○壬辰/平安監司李正英馳啓：“道內朔州、昌城、碧潼、理山、渭原、孟山等六邑，被災尤甚。如收稅米、奴婢貢進封吏諸役及月課軍器，請限今年蠲減，其餘列邑，亦量減諸役。”下戶曹，回啓：“請六邑收米全減，奴婢貢半減，官糶一半收捧，月課軍器進封等役，竝停罷。義州等十二邑，竝減收米一斗，官糶令減三分之二。”從之。</p>

	<p>“여섯 고을의 수미(收米)는 완전히 견감하고 노비공은 반만 견감하고 관조(官糶)는 일체 반만 거두어 들이고 월과·군기·진봉 등의 역(役)은 모두 정파하게 하소서. 의주(義州) 등 열두 고을은 수미 1두(斗)씩을 견감하고 관조는 삼분의 이를 견감하게 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현종 11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11월 10일(임진) 2번째기사</p>	<p>부응교 김만기(金萬基)가 소장을 올려 노모(老母)를 봉양하기에 편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소장을 이조에 내렸다. 회계하기를,</p> <p>“경악의 신하를 외방 고을에 보임시켜 내보내는 것은 사체가 중난(重難)하니, 시행하지 마소서.”</p> <p>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전례를 조사하여 쌀을 내리라고 하였다.</p>	<p>○副應教金萬基上疏，乞便養老母，疏下吏曹，回啓：“以經幄之臣，出補外邑，事體重難。請勿施。”上令該曹，考例賜米。</p>
<p>현종 11권, 6년(1665 을사 / 청 강희(康熙) 4년) 12월 25일(병자) 1번째기사</p>	<p>이때 우역(牛疫)이 크게 치성하여 전생서(典牲署)에서 기르던 검은 소 14두(頭)가 병으로 죽었고, 충청도에서 기르던 소 2두도 죽었다. 예조가 본서(本署)의 첩보(牒報)를 인하여 아뢰기를,</p> <p>“제주(濟州)에 있는 소 16두는 급속히 올려보내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때 우역이 크게 치성하여 팔도가 모두</p>	<p>○丙子/是時牛疫大熾，典牲署留養黑牛十四頭病斃，忠清道留養牛二頭亦斃。禮曹因本署牒報啓：“請濟州牛十六頭，使之急速上送。”上可之。時牛疫熾盛，八道皆然，而濟州尤甚，犧牲將無以供焉。</p>

	<p>그러했는데 제주가 더욱 극심하여 희생(犧牲)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였다.</p>	
<p>현종 11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월 20일(신축) 2번째기사</p>	<p>상이 선정전(宣政殿)의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부제학 조복양, 수찬 오두인이 《심경(心經)》을 진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나서 지경연 김수항이 아뢰기를,</p> <p>“품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특명으로 경연을 열었으므로 신료들이 기뻐서 용동하며 흡족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로부터 매일 법연에 나아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유신을 접견하여 성학(聖學)을 유념하신다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재이를 없앨 수 있음은 물론 나라도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p> <p>하고, 승지 김만기(金萬基)는 아뢰기를,</p> <p>“앞으로는 잇따라 시사(視事)할 것을 품해도 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정언 이세장(李世長)이 만화에 대해 처치하여 아뢰기를,</p> <p>“경솔히 진달한 것을 물의가 그르게 여기니, 제차시키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강을 과한 뒤 대신과 비국의 제신들을 접견하였다. 우의정 허적이 아뢰기를,</p> <p>“진연(進宴)하는 일을 특명으로 정지시킨 것은 매우 성대한 거조입니다. 삼가 비망기를 살펴보건대 날이 가는 것을 아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상의 효</p>	<p>○上御宣政殿晝講。副提學趙復陽、修撰吳斗寅，進講《心經》。講訖，知經筵金壽恒曰：“不待稟達，特命開筵，臣僚欣聳，莫不翕然。自此以後，雖不能日御法筵，常接儒臣，留心聖學，則可以格天弭災，而國其庶幾矣。”承旨金萬基曰：“今後則連續稟以視事乎？”上曰：“然。”正言李世長處置萬和曰：“率爾陳達，物議非之，請遞。”上從之。講罷後，引見大臣、備局諸臣。右議政許積曰：“進宴之事，特命停止，甚盛學也。竊見備忘，有愛日之語。聖孝如此，而進宴猶且停止，至於昨日，三司合辭請停溫幸，而終不之允，臣竊悶焉。”上曰：“慈殿患候，本由於濕熱，若浴湯泉，可望有效，必欲奉往於夏前耳。昨日三司，或請停止，或請退定明年，若等待明年，而可以安過，則何故必欲汲汲乎。”領議政鄭太和曰：“上教誠然矣。”上曰：“疏決廳堂上四人加差，使之從速查出稟處。”復陽曰：“去年</p>

	<p>성이 이러한데도 오히려 진연을 정지하였는데 어제 삼사가 합사로 온천의 행행을 정지하라고 청한 것에 대해서는 끝내 윤택하지 않으시니, 신은 삼가 안타깝게 여깁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자전의 환후가 본디 습열(濕熱)에 연유된 것이므로 뜨거운 온천 물로 목욕하면 효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필코 여름이 오기 전에 모시고 가려는 것이다. 어제 삼사가 정지할 것을 청하기도 하고 내년으로 물려서 정할 것을 청하기도 했는데 내년을 기다리도록 편안히 보낼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필코 급급히 서두르겠는가.”</p> <p>하자,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상의 하교가 참으로 옳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소결청(疏決廳)의 당상 4인을 더 차출해서 조속히 사출하여 품처하게 하라.”</p> <p>하니, 복양이 아뢰기를,</p> <p>“지난해의 흉년은 기내가 더욱 극심하니, 거두어들일 대동미(大同米)를 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失稔，畿內尤甚，大同收米，不可不減。” 太和及積，亦言當減，上曰：“今年春等，六斗減一斗。” 因大臣、諸宰陳達，命定元子冊禮於五月。</p>
--	--	---

	<p>하고, 태화와 허적도 감해야 한다고 아뢰자, 상이 이르기를,</p> <p>“금년의 춘등(春等)은 6두(斗)에서 1두씩을 감하게 하라.”</p> <p>하였다. 대신과 제재들의 진달에 따라 원자(元子)의 책례(冊禮)를 5월로 정하라고 명하였다.</p>	
<p>현종 11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월 25일(병오) 4번째기사</p>	<p>전라 감사 민유중(閔維重)이 장계를 올리기를,</p> <p>“부안현(扶安縣)의 패선미(敗船米) 수백 석(石)을 탕감시켜 주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全羅監司閔維重狀啓，請蕩滌扶安縣敗船米累百石，上從之</p>
<p>현종 11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2월 23일(갑술) 1번째기사</p>	<p>대신과 비국의 제신들을 인견하였다. 강화 유수(江華留守) 서필원(徐必遠)이 아뢰기를,</p> <p>“포수(砲手)들에게 대포 쏘는 것을 익히게 하고 싶지만 탄약을 준비하기가 어려워니, 이를 회계(會計)에 부쳐 쓰고 싶습니다.”</p> <p>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필원이 아뢰기를,</p>	<p>○甲戌/引見大臣、備局諸臣。江華留守徐必遠曰：“欲使砲手習放，而藥丸難備，欲以會付用之。”上許之。必遠曰：“軍兵試才時，無物賞格，或以戶曹奴婢貢木，或以會外米，或以老職通政帖量給，則似便。”右議政許積曰：“戶曹木則不可，宜給會米五百餘石。”領議政鄭太和曰：“令用會米，</p>

	<p>“군병들에게 시재(試才)할 때 상격(賞格)으로 줄 물품이 없으니, 호조의 노비 공목(貢木)이나 회계(會計) 이외의 쌀이나 노직(老職)인 통정첩(通政帖)을 헤아려 지급해 주거나 하면 온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p> <p>하고, 우의정 허적은 아뢰기를,</p> <p>“호조의 포목(布木)은 지급할 수 없으니, 의당 회미(會米) 5백여 석(石)을 지급해야 합니다.”</p> <p>하고, 영의정 정태화는 아뢰기를,</p> <p>“회미를 쓰게 하고 회계로 보고하게 한다면 무슨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첩문(帖文)에 이르러서는 매우 구차스러운 것 같습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양사에서 이미 온천의 행행에 대한 논계를 중지했으니, 반드시 먼저 날짜를 가린 연후에야 바야흐로 분부(分付)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날짜를 보아가면서 날짜를 가리려 한다. 응당 행해야 될 일에 이르러서는 미리 헤아려 조치하도록 분부하게 하라.”</p> <p>하였다. 응교 이민서(李敏叙)가 아뢰기를,</p>	<p>而會計以報，則有何不可。至於帖文，甚似苟且矣。” 上曰：“可。” 積曰：“兩司既停溫幸之啓，必先擇日，然後方有分付之舉矣。” 上曰：“欲觀日候擇日。至於應行之事，預令料理分付可也。” 應教李敏叙曰：“今者行幸，出於萬不獲已，而民情事勢，大異於前。前年則實是初幸，故萬民爭瞻羽旄，莫不欣悅。今則連年行幸，貽弊民間，必不無怨咨之心。凡事必須十分節損，方可得宜。” 上曰：“然。” 司諫李翊亦以省弊從簡之意力陳，上然之。 翊以鄭漢驥事實引避。 崔寬、李嵒亦以此引避，處置皆遞。</p>
--	---	--

	<p>“이번의 행행은 만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만 민정(民情)과 사세(事勢)가 전과는 크게 다릅니다. 지난해는 실로 처음 행행한 것이기 때문에 만백성이 다투어 우모(羽旄)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마다 잇단 행행인데다가 민간에 폐를 끼치게 되니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반드시 십분 절약하고 감손시켜야 바야흐로 사의에 맞게 됩니다.”</p> <p>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사간 이익(李翊)도 폐를 줄이고 간략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극력 진달하니, 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익이 정한기(鄭漢驥)의 일이 사실과 어긋났다는 것으로 인피하였고 최관(崔寬)·이혜(李喆)도 이 때문에 인피했는데 모두 체직시킬 것으로 처치하였다.</p>	
<p>현종 12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3월 24일(갑진) 1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이번 왕세자의 책례를 행한 뒤 백관과 제도(諸道)가 진(箋)을 올려 진하할 때 대전(大殿)의 진문(箋文)·방물(方物)·물膳(物膳) 및 대왕 대비전·중궁전·세자궁의 방물·물膳을 전례에 따라 봉진할 것입니까?”</p>	<p>○甲辰/禮曹啓: “今此王世子冊禮後, 百官諸道進箋陳賀時, 大殿箋文, 方物物膳及大王大妃殿、中宮殿、世子宮方物物膳, 依例封進乎?” 上曰: “只封物膳, 勿封方物。”</p>

	<p>하니, 상이 물선만 봉진하고 방물은 봉진하지 말라고 하였다.</p>	
<p>현종 12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4월 1일(신해) 2 번째기사</p>	<p>상이 이르기를, “작년에 만약 과거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본도(本道)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금년에는 자전까지 모시고 왔으니 필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격동되어 기쁘게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과거를 시행하라.”</p> <p>하니, 도승지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 “작년에 본도 노인에게 음식을 하사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대로 행하셔야 합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관광 온 사람 중에 아흔살 된 노모를 업고 온 자가 있다는데 사실인가?”</p> <p>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上曰：“上年若不設科，則本道人初不生意，而今年又奉慈殿而來，人心必益鼓動，望其慰悅。今則特爲設科。”都承旨金壽興曰：“上年道內老人，賜以食物，今亦依此行之宜矣。”上曰：“聞有觀光之人，負九十老母而來，信否？”積曰：“然矣”上曰：“本道老人等，當給食物，京畿亦一體題給乎？”領相鄭太和曰：“當先本道矣。”上曰：“可。”</p>

	<p>“본도의 노인들에게는 마땅히 음식을 내려주어야겠지만, 경기도도 똑같이 제급(題給)해야 하는가?”</p> <p>하니, 영상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p> <p>“본도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p> <p>하자, 상이 윤허하였다.</p>	
<p>현종 12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4월 2일(임자) 2번째기사</p>	<p>도내의 노인 중에 관직에 있었던 자는 70세 이상에게, 사서인(士庶人)은 80세 이상에게 음식을 하사하였다.</p>	<p>○道內老人，有職人則七十以上，士庶人，則八十以上賜食物。</p>
<p>현종 12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4월 16일(병인) 2번째기사</p>	<p>대사헌 조복양과 대사간 정만화(鄭萬和)가 청대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복양이 아뢰기를,</p> <p>“이번 거동은 목욕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순수(巡狩)하여 지방을 살피려는 뜻이 있습니다. 작년의 예에 따라 도신(道臣)과 유대 수령(留待守令)을 인견하여 백성의 질고를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복양이 또 아뢰기를,</p> <p>“예로부터 임금이 거동할 때면 효행이 두드러진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내렸고, 불러서 만나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도내의 효행이 두드러진 사람에게도 노인의 예에 따라 음식을 하사하소서.”</p>	<p>○大司憲趙復陽、大司諫鄭萬和請對，上引見。復陽曰：“今此舉動，雖爲沐浴，而實有巡狩省方之意。宜依上年例，引見道臣及留待守令，問民疾苦。”上然之。復陽又曰：“自古人君，行幸則凡有孝行表著之人，必加嘉獎，亦或有召見矣。今此道內孝行表著者，亦依老人例，賜以食物。”上分付道臣舉行。復陽又曰：“有愼仁立者，牙山人，有至行。其同氣得毒腫，仁立吮之出膿，其他行誼，人不可及。故朝家聞而除職，終辭不至。尹參亦</p>

	<p>하니, 상이 도신에게 거행하도록 분부하였다. 복양이 또 아뢰기를,</p> <p>“신인립(愼仁立)이라는 자가 있는데 아산인(牙山人)으로서 지극히 훌륭한 행실이 있습니다. 형제가 독종(毒腫)을 앓자 인립이 그 고름을 빨아내었고, 그 밖의 행실도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듣고 관직을 제수하였으나 끝내 사양하고 이르지 않았습니다. 윤삼(尹參)도 아산인으로서 일찍이 정축년(767)의 난에 조카와 아들이 다 포로가 되었는데, 속환(贖還)하려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조카를 먼저 속환하고 아들을 나중에 하였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등백도(鄧伯道) 768)의 부류로구나.”</p> <p>하였는데, 복양이 아뢰기를,</p> <p>“일찍이 영릉(英陵) 참봉을 제수하였으나 역시 나가지 않았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본도로 하여금 계문하여 거행하게 하라.”</p> <p>하였다.</p>	<p>牙山人，曾於丁丑之亂，兄子及其子俱被擄，欲贖還，而價不足，先兄子，而後其子。” 上曰：“鄧伯道之類也。” 復陽曰：“曾除英陵參奉，亦不就矣。” 上曰：“令本道啓聞舉行。”</p>
--	--	--

<p>현종 12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4월 21일(신미) 6번째기사</p>	<p>좌참찬 송준길이 부름에 나왔다.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p> <p>“작년에는 이곳에 와서 곧 경들과 만났고, 우찬성은 비록 중도에 돌아갔으나 경은 함께 귀경하였는데, 지금은 불행히도 사설(邪說)이 중간에 일어나 경들이 인협하며 나오지 못하게까지 하였다. 이제 경이 연로한 몸으로 더위를 무릅쓰고 와서 만나주니, 나의 기쁜 마음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p> <p>하니, 준길도 자신을 맞다고는, 아뢰기를,</p> <p>“사람의 마음은 같은 법이어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지금 영남의 무리가 신들의 심사를 이다지도 알지 못하니, 이는 모두가 신의 평소 언행이 남에게 신뢰받지 못해서입니다. 부끄러움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p> <p>하고, 이어 물러나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내가 그대들로 하여금 원자(元子)를 보양하게 하려 하니, 믿고 의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 찬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경마저 돌아가고자 하니 이 어찌 내가 기대했던 일이겠는가.”</p> <p>하니, 준길이 아뢰기를,</p> <p>“성상의 분부가 이와 같으시니 죄를 지을 따름입니다.”</p>	<p>○左參贊宋浚吉赴召。上引見謂之曰：“去年則來此之後，卽與卿等相見，右贊成雖中路徑歸，而卿則與之同歸于京，今也不幸，邪說中起，至令卿等引嫌不出。今卿以年老之人，冒炎來見，予喜可言。”浚吉亦引答，仍曰：“人同此心，不大相遠，而今嶺人輩，不知臣等心事至此，此無非臣平日言行，不見信於人。慙愧何言。”仍乞退歸，上曰：“予欲使之輔養元子，倚毗甚重。且望贊成之來，今卿又欲退，豈予所期者乎。”浚吉曰：“聖教如此，只負罪戾而已。”上曰：“卿既來此，與予同歸如去年，則幸之甚也。予之欲見卿，不但爲一時開懷而已。”浚吉曰：“雖欲陳情勢，豈敢徑達於今日乎。”上謂承旨曰：“分付道臣，參贊處輸送糧饌。”</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경이 이곳에 왔으니 작년처럼 나와 함께 귀경한다면 매우 다행스럽겠다. 내가 경을 보고자 했던 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만은 아니다.”</p> <p>하니, 준길이 아뢰기를,</p> <p>“정세를 진달하고 싶지만 어찌 감히 오늘 곧바로 하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승지에게 이르기를,</p> <p>“도신에게 분부하여 참찬의 처소에 양식과 반찬을 보내주도록 하라.”</p> <p>하였다.</p>	
<p>현종 12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4월 26일(병자) 2번째기사</p>	<p>우찬성 송시열과 전 정랑 이상(李翔)이 부름에 나왔다.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p> <p>“이곳에 온 지 오래도록 서로 만나보지 못하여 내 마음이 서운하였는데, 경이</p>	<p>○右贊成宋時烈、前正郎李翔赴召。上引見謂之曰：“來此已久，不得相見，予用缺然，卿今來見，予喜何言。”時烈曰：“臣負罪人也，聖教至此，惶感</p>

	<p>지금 와서 만나게 되니 나의 기쁨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p> <p>하니, 시열이 아뢰기를,</p> <p>“신은 죄를 진 사람인데 성교가 이러하시니, 황공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예를 의논하던 당초에 전혀 신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영남 유생의 상소에 유독 신의 이름을 들어 배척하였으니, 이는 신이 스스로 반성해야 할 바입니다. 어찌 감히 남을 탓하겠습니까. 국조 이래 유생 1천여 명이 연명(連名)하여 처벌을 청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며, 국가가 유생의 상소를 중외에 내걸어 보인 것도 전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니, 이것은 다 신의 죄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경은 스스로 죄가 유독 무겁다고 말하지만 어찌 그렇겠는가. 경이 선왕의 지우(知遇)를 입어 국사를 담당했으므로 그들의 원망을 더욱 많이 받은 것이니, 어찌 이것을 죄라고 하겠는가.”</p> <p>하니, 시열은 매번 자신을 탓하며 처벌을 청하였고, 상도 지극한 정성으로 위로하고 타일렀다. 시열이 아뢰기를,</p> <p>“기해년에 자의 대비의 복상을 기년으로 정한 이후 사람들의 말이 망극하였으나 신은 그때마다 스스로 반성하였지, 감히 조금이라도 남을 탓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근거없는 의논이 더욱 심합니다. 이것이 어찌 말하는 자의 잘못이겠습니까. 실로 신의 죄입니다.”</p>	<p>益切。 其時議禮， 初非臣之所擅爲， 而嶺疏獨舉臣名攻斥， 是臣自反處也。 豈敢尤人乎。 國朝以來， 儒生千餘人， 列名請罪， 曾所未有， 國家之以儒疏， 榜示中外， 亦未前聞， 此莫非臣之罪也。” 上曰：“卿自以爲罪戾獨重云， 豈其然乎。 卿蒙先王知遇， 擔當國事， 故其取怨益甚， 豈可以此爲罪乎。” 時烈每引咎請罪， 上亦慰諭勤至。 時烈曰：“己亥以後， 人言罔極， 而臣每自反， 不敢少有尤人之心， 及至今日， 浮言益甚。 此豈言者之過乎。 實臣之罪也。” 力請退去。 上反覆開諭曰：“予必欲與卿同歸京城者， 蓋欲鎮定浮議也。” 命道臣， 輸送食物。</p>
--	---	--

	<p>하고, 힘써 물러갈 것을 청하였다. 상이 반복하여 타이르면서 이르기를,</p> <p>“내가 곧이 경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근거없는 의논을 진정시키고자 함이다.”</p> <p>하고, 도신에게 명하여 음식을 보내게 하였다.</p>	
<p>현종 12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7월 10일(기축) 3번째기사</p>	<p>상이 서연청(西宴廳)에 거둥하여 청사와 서로 읍하고 다례를 행하였다. 이를 마치자 이일선이 나와 칙사의 말을 전하기를,</p> <p>“먼저 유황에 관한 금령을 범한 사람을 조사해야겠습니다.”</p> <p>하니, 상이 허락하고 금령을 범한 최선일(崔善一)을 뜰로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p> <p>일선이 묻기를,</p> <p>“염초(焰硝)는 법으로 금한 물건인데 어떻게 샀느냐? 금한 물건인지 모르고 샀다고 할테냐?”</p>	<p>○上詣西宴廳，與清使相揖行茶訖，一先進傳使言曰：“當先查硝黃犯禁人。”上曰：“然。”命捉入犯禁人崔善一于庭。一先問曰：“焰硝乃是禁物，何以買爲得，無不知爲禁物而買之乎？”善一對曰：“迷劣之人，果不知爲禁物，而所以買來者，實緣身有瘡疾，爲其藥用耳。”上曰：“使臣每以禁物申飭，豈有不知之理。這漢情狀甚奸，宜鞫問也。”一先曰：“買於何處，而賣之者爲誰。”善一對曰：“賣之者，卽松站居王姓人，而只記其姓，不記其名。果知爲禁物，而死期將迫，冒法而買</p>

<p>하니, 선일이 대답하기를,</p> <p>“어리석고 못난 사람이 과연 금한 물건인지 몰랐으며, 사온 것은 실로 몸에 중기가 나서 약으로 쓰려는 것이었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사신이 매번 금한 물건이라고 신칙하였을 텐데 어찌 모를 리가 있었겠는가. 이놈은 정상이 매우 간사하니 국문해야 하겠소.”</p> <p>하였다. 일선이 말하기를,</p> <p>“어디에서 샀으며, 판 자는 누구냐?”</p> <p>하니, 선일이 대답하기를,</p> <p>“판자는 송참(松站)에 사는 왕씨 성을 가진 자인데, 성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고 이름은 모릅니다. 사실 금한 물건인 줄 알았으나 죽을 날이 닥쳐오므로 법을 무시하고 샀으니, 한번 죽어도 달게 받겠습니다.”</p> <p>하였다. 일선이 또 묻기를,</p> <p>“사신은 몰랐느냐?”</p> <p>하니, 대답하기를,</p>	<p>之，萬誅甘心。”一先又問曰：“使臣不知乎？”對曰：“使臣向北而去，吾於回還時，潛買以來，使臣何可知之。使臣申飭甚嚴，而妄犯之，死罪死罪。”又問曰：“焰硝斤數幾何？”對曰：“小如一拳矣。”太和謂一先曰：“與受罪均，大國亦宜痛禁也。”一先曰：“然。”又招入靑平尉沈益顯等，坐之月臺上，問曰：“所帶之人，犯是禁，將何辭以答之乎？”對曰：“使臣入去之後，渠則中路回還，潛買於松站，使臣何得以知之乎。”又曰：“禁物勿犯事，果能申飭乎？”對曰：“竝招領將，十分嚴飭矣。”又招入領將朴善一、黃山伊問曰：“汝是領將，則所帶之人，犯法而不能禁，乃反以爲不知？使臣初不嚴飭而然歟？”對曰：“非不嚴飭，而潛買禁物，藏置囊中，何以知之乎。”曰：“汝於中路搜檢乎？”對曰：“然。”曰：“然則何云不知囊中物乎？既謂之搜檢，又謂之不知，奸狀已露。其同心買來可知也。”上曰：“此是誣飾，若加訊問，必當直告矣。”一先與通官等出，訊問中門之外，領將等以初不搜檢納供。一先又請鞫問，善一以</p>
---	--

	<p>“사신은 북쪽을 향하여 가고 저는 돌아올 때에 몰래 사가지고 왔으니, 사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신이 매우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함부로 범하였으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p> <p>하였다. 또 묻기를,</p> <p>“염초는 몇 근이나 되었느냐?”</p> <p>하니, 대답하기를,</p> <p>“한 주먹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양이었습니다.”</p> <p>하였다. 정태화가 일선에게 말하기를,</p> <p>“관 자나 산 자가 다 죄가 있으니, 대국(大國)도 엄히 금해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일선이 수궁하였다. 또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 등을 불러들여 월대(月臺) 위에 앉히고 묻기를,</p> <p>“데리고 간 사람이 금령을 범하였으니 무슨 말로 대답하겠소?”</p> <p>하니, 대답하기를,</p> <p>“사신이 들어간 뒤에 그가 중도에서 되돌아 오다가 송참에서 몰래 샀으니 사</p>	<p>使臣申飭與否。 上命積出言于罪人，使勿亂言。 一先仍訊之，罪人曰：“申飭極嚴，而潛自犯禁，死罪死罪。” 又問曰：“領將等同心否？” 對曰：“誠無是也。” 一先曰：“此一款既已查畢，當以何罪勘定乎？” 勅使曰：“犯禁人，則擬以斬罪，而領將等，則宜論以次律，杖一百、流三千里也。” 上曰：“然。” 副使穆舒於座上，搆出查草。 又行走回人查事，上謂曰：“今此走回事，所失專在於寡躬，同參查問，心甚不安。” 使曰：“勅書既云與國王同查，豈敢引嫌乎。” 上曰：“然則雖不得不參，而在予之道，實涉未安。” 使曰：“走回人事，主上豈得知之。 此實群下之罪也。” 上曰：“知而不及奏者，是予之失，豈宜諉之群下乎。” 使曰：“誠如上教，則本國自當別爲奏聞。 而至於諸臣，則俺等不可不查聞也。” 太和、命夏竝離席而言曰：“秋元逃來之初，以見其父母妻子爲言，故意謂必無逃還之理，且有惻隱之心。 使留見其父母妻子後，保授其族，以爲從實奏聞計，不意秋元，先自逃還。 既去之後，無辭奏知，事至於此，則當初欲奏之</p>
--	---	--

	<p>신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p> <p>하였다. 또 묻기를,</p> <p>“범으로 금한 물건이니 범하지 말라고 과연 제대로 신칙했소?”</p> <p>하니, 대답하기를,</p> <p>“영장(領將)도 함께 불러 매우 엄히 신칙했습니다.”</p> <p>하였다. 또 영장 박선일(朴善一)과 황산이(黃山伊)를 불러들여 묻기를,</p> <p>“너희는 영장으로 있으면서 데려간 사람이 법령을 범하는데도 금하지 못하였으니, 그런데도 몰랐다고 하겠느냐? 사신이 처음에 엄히 신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엄히 신칙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금한 물건을 몰래 사서 자루 속에 숨겨두었으니 어떻게 알았겠습니까.”</p> <p>하였다. 말하기를,</p> <p>“너희가 중도에 수색하였느냐?”</p>	<p>意，暴白無路。亦安得取信於勅使乎。此無非身爲大臣，上而不善事君，下而不善處事，致有上國之督過。罪在吾等，君上豈有所失乎。”上曰：“予之本情及大臣之意，有難暴於今日，而要其事首末，則專由予不敏故耳。”命夏曰：“主上曲念大臣，至有此教耳，上豈有所失乎。皆吾大臣不職之罪也。”使相顧而笑曰：“君臣上下，各稱有失，互相引咎，將奈何。”上曰：“君臣一體，安有臣獨知，而君不與知之理，亦安有下有失，而上無所失之理乎。”使曰：“日勢已暮，差待後日更查宜矣。”上曰：“如是遷延，不亦未安乎？”使曰：“主上之引咎如此，俺等勢難獨查。且有辨覈之事，不可倉卒停當，遲待後日，有何妨乎。”都承旨金壽興曰：“彼之必欲請退者，其意有在，亦難強迫。”上許之，遂相揖而罷。積奏曰：“渠輩私相論辨，終不得善處之道，故爲延拖之計，其意可知也。且觀一先所爲，頗似便順矣。”上曰：“已給五千兩，故渠自擔當而然歟。”上遂還宮。</p>
--	--	---

	<p>하니, 대답하기를,</p> <p>“그렇습니다.”</p> <p>하자, 말하기를,</p> <p>“그렇다면 어떻게 자루 속의 물건을 몰랐다고 하느냐? 수색했다고 하고서는 또 몰랐다고 하니, 간악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다. 서로 짜고 사왔음을 알 수 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이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신문을 하면 반드시 바른대로 고할 것이오.”</p> <p>하니, 일선이 통관들과 함께 나가서 중문밖에서 신문하였는데, 영장 등이 애당초 수색하지 않았다고 공초하였다. 일선이 또 선일을 국문하여 사신이 신칙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내고자 청하였다. 상이 허적에게 명하여 나가서 죄인에게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일선이 이어 신문하자 죄인이 말하기를,</p> <p>“신칙이 매우 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몰래 스스로 금령을 범하였으니 죽을 죄를 졌습니다.”</p> <p>하였다. 또 물기를,</p>	
--	--	--

	<p>“영장들과도 봤느냐?”</p> <p>하니, 대답하기를,</p> <p>“그렇지 않습니다.”</p> <p>하였다. 일선이 말하기를,</p> <p>“이 한 가지 일은 조사를 다 하였는데, 어떤 죄안을 적용해야 하겠습니까?”</p> <p>하자, 칙사가 말하기를,</p> <p>“금령을 범한 사람은 사죄(死罪)를 적용하고, 영장들은 한 등 낮은 법률인 장일백 유 삼천리(杖一百流三千里)를 적용해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부사 목서(穆舒)가 좌상(座上)에서 조사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다.</p> <p>또 도망은 사람의 일을 조사하려 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번에 도망해온 일은 잘못이 전부 나에게 있으므로 조사에 함께 참여하기가 매우 미안하오.”</p> <p>하니, 칙사가 말하기를,</p>	
--	---	--

	<p>“칙서에 이미 ‘국왕과 함께 조사하라.’ 하였는데 어찌 감히 인혐하십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그렇다면 함께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나의 입장으로는 실로 미안하오.”</p> <p>하였다. 칙사가 말하기를,</p> <p>“도망해온 사람의 일을 주상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는 실로 신하들의 죄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알면서 미처 주문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인데, 어찌 신하에게 잘못을 미루겠소.”</p> <p>하자, 칙사가 말하기를,</p> <p>“참으로 주상의 분부와 같다면 본국이 마땅히 별도로 주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우리가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정태화와 홍명하가 동시에 자리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p>	
--	--	--

	<p>“안추원이 처음 도망왔을 때 ‘부모와 처자를 만나러 왔다.’고 했으므로 절대 도망쳐 돌아갈 리 없다고 생각했고, 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부모 처자를 만나보게 해준 뒤에 그 친척에게 보수(保授)하고 사실대로 주문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예상 밖에 추원이 먼저 스스로 달아나 돌아가버렸습니다. 달아나 버리고 나자 뭐라고 주문해야 할 지 모르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처음에 주문하려고 하였던 것을 드러내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 어찌 칙사에게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모두 대신 된 자가 위로는 임금을 잘 모시지 못하고 아래로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상국의 견책을 초래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있으니 군상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나의 본뜻과 대신의 뜻은 오늘에 와서 드러내어 증명하기 어렵지만, 그 사건의 본말을 요약해 보면 오로지 내가 불민한 데 원인이 있소.”</p> <p>하니, 명하가 말하기를,</p> <p>“주상께서 대신을 지극히 염려하여 이렇게까지 분부하시는 것일 뿐이지 주상께 어찌 잘못이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 대신들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입니다.”</p> <p>하였다. 칙사가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말하기를,</p> <p>“군신 상하가 제각기 자기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죄를 돌리려 하니</p>	
--	--	--

	<p>어찌해야 한단 말이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임금과 신하는 한몸인데, 어찌 신하만 알고 임금은 모를 리가 있겠으며, 또 어찌 아래가 잘못했는데 위는 잘못이 없을 수 있겠소.”</p> <p>하였다. 칙사가 말하기를,</p> <p>“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내일 다시 조사해야 하겠습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면 미안하지 않겠소?”</p> <p>하니, 칙사가 말하기를,</p> <p>“주상이 이렇게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므로 우리들이 독단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분별하여 밝혀야 할 일이 있어 갑자기 결정하기 어려우니, 내일로 미룬다고 무엇이 해롭겠습니까.”</p> <p>하였다. 도승지 김수홍이 아뢰기를,</p> <p>“저들이 굳이 미루려고 청하는 것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일 것이므로 일을 강행하기 어렵습니다.”</p>	
--	--	--

	<p>하니, 상이 윤택하여 마침내 서로 읊하고 파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저들이 자기들끼리 논란하다가 끝내 좋은 처리 방안을 모색하지 못했으므로 미루자고 한 것이니,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선의 행동을 보면 일이 자못 순조로울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미 5천 냥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담당하여 그런 것인 듯하다.”</p> <p>하였다. 상이 환궁하였다.</p>	
--	--	--

<p>현종 12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8월 23일(신미)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때 관동과 경기에 심한 흉년이 들었으므로 역(役)을 견감하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경기의 세태(稅太)는 반으로 감하고, 수미(收米) 가운데 한전(旱田)에서 거두는 것은 추등(秋等)에서 1말을, 내년 춘등(春等)에서 2말을 감하라. 또 영남 연해지(沿海地)의 쌀 5천, 6천 섬을 관동으로 옮겨 기민을 구제하라.”</p> <p>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p> <p>“근래에 불법 행위를 하는 수령이 많다고 하니 염문(廉問)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辛未/上引見大臣備局諸臣。時關東、京畿凶荒最甚，議蠲役賑饑等事。上曰：“畿甸稅太則減半，而收米中收捧於旱田者，減秋等一斗，減明春等二斗。且令移轉嶺南沿海米五六千石於關東，賑飢民。”左相洪命夏曰：“聞近來守令，多有不法者，宜有廉問之舉。”上曰：“御史可送人抄啓。”承旨金萬基、校理南二星曰：“臣伏見文宗大王行狀，以眼患，大臣請停經筵，而不賜允許，甚盛事也。卽今聖明，雖有患候，宜體先朝故事，召入儒臣於臥內，時時進講。”上曰：“至於召對，則與經筵有異，雖不能親自讀之，亦可爲之也。”萬基曰：“曾有承旨持公事</p>

	<p>“어사로 보낼 만한 자를 뽑아 아뢰라.”</p> <p>하였다. 승지 김만기와 교리 남이성이 아뢰기를,</p> <p>“신이 삼가 문종 대왕의 행장을 보건대, 안질로 인하여 대신이 경연을 열지 말도록 청하였는데도 윤택하지 않으셨으니,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비록 환후가 있으시더라도 선조(先祖)의 고사를 본받아 침실 안으로 유신을 불러 들여 수시로 진강하셔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소대(召對)라면 경연과는 차이가 있으니, 비록 친히 스스로 읽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만기가 아뢰기를,</p> <p>“일찍이 승지가 공사를 가지고 입시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별 일이 없는 날에는 취품하게 하되 옥당으로 하여금 동참하여 진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따랐다.</p>	<p>入侍之規。 今亦以無故日稟之，而使玉堂同參進講何如。” 從之。</p>
<p>현종 12권, 7년(1666)</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p>	<p>庚辰/上引見大臣、備局諸臣。 左相</p>

<p>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9월 3일(경진) 1 번째기사</p>	<p>“근래에 잇따라 개강(開講)하시니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쇠퇴하지 않고 시종 한결같다면 전화위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p> <p>“북도의 기민으로 노인(路引)을 가지고 다른 도(道)에 취식(就食)하는 자는 그들이 간 고을에서 진휼해야 할 것이되, 임시로 명부를 작성하여 쇄환할 자료로 삼아야 하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윤택하였다. 강화 유수 서필원(徐必遠)이 아뢰기를,</p> <p>“작년에 세태(稅太)를 전면 감하였으므로 지금 콩으로 바꾸어 부족한 양을 충당하고자 하는데, 관가의 무역은 자칫하면 민폐가 되기 쉬우니, 콩 2섬을 쌀 1섬으로 계산하여 받으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따랐다. 교리 홍만용이 아뢰기를,</p> <p>“며칠 전에 헌부가, 상가의 환수에 관한 계를 정지한 일로 인해 간관을 체직할 것을 논하면서 이름을 지적하지 않고 막연히 체직하라고만 청하였으니, 자못 대간의 체면을 잃은 것입니다. 대사헌 이경휘, 장령 맹주서, 지평 안숙을 모두 체차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洪命夏曰：“近來連有開講之舉，群下之情，莫不忻悅。此心不衰，終始如一，則可以轉災爲福矣。”領相鄭太和曰：“北道飢民之持路引就食於他道者，所到官當設賑以救，而宜臨時籍名，以爲刷送之地。”上曰：“可。”江華留守徐必遠曰：“上年全減稅太，故今將換太備充，而官家貿易，動爲民弊，豆太二石，以米一石計捧何如？”上從之。校理洪萬容曰：“頃日憲府，以賞加停啓事，論遞諫官，而不爲指名，混同請遞，殊失臺體。大司憲李慶徽、掌令孟胄瑞、持平安塾，請竝遞。”從之。</p>
---	--	--

<p>현종 13권, 7년(1666 병오 / 청 강희(康熙) 5년) 11월 3일(기묘) 2번째기사</p>	<p>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중용》을 강하였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와 삼사를 모두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부응교 이민적(李敏迪)이 진강하였다. 승지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p> <p>“일찍이 선조(先朝) 때에 안자(顔子)의 이름을 휘하고 읽지 않았으니, 상께서 읽을 때에도 휘하소서.”</p> <p>하고,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이 글 뜻을 해석하여 아뢰기를,</p> <p>“문기를 좋아하고 살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훌륭한 말을 들으면 그 말 중에서 또 양단을 나눈 다음 헤아려서 중(中)을 쓴다는 것으로, 중이란 도리에 부합되는 것을 이룬 것입니다. 순(舜)의 지혜가 어찌 크지 않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중용(中庸)이 좋은 것인 줄을 모르지는 않지만 스스로 지키지를 못하니, 이는 사람이 함정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피할 줄을 모르는 것과 같다.”</p>	<p>○上御宣政殿，講《中庸》。大臣、備局諸臣三司，竝命入侍。副應教李敏迪進講。承旨閔維重曰：“曾在先朝，諱顔子之名，而不讀，上臨讀時諱之。”副提學趙復陽釋文義曰：“好問好察，得其善言，而其言之中，又折其兩端，量度而用中，中者，合於道理之謂也。舜之爲知，豈不大矣乎。”上曰：“非不知《中庸》之爲好，而不能自守，是猶人知陷穽之可避，而自不知避者也。”領中樞李景奭曰：“人孰不知陷穽之可避，而莫之知避，正如人君知亂亡之可惡而，終不自戒，以至於滅亡也。”敏迪曰：“當此遇災之日，自上大警動，作此非常之舉，甚盛事也。日後怠忽乘之，或有中輟，則是所謂不能朞月守也。”副校理沈粹曰：“必有不息之功，然後方可有爲。每當遇災，雖或開筵，而旋即停罷，未見有不息之</p>

	<p>하자, 영중추 이경석(李景奭)이 아뢰기를,</p> <p>“사람들 가운데 누가 함정을 피해야 할 것인 줄을 모르겠습니까마는 피할 줄 모르는 것은, 마치 임금이 난망(亂亡)을 미워할 줄은 알면서도 마침내 스스로 경계하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p> <p>하였다. 이민적이 아뢰기를,</p> <p>“재해를 만난 이때에 상께서 크게 경동하여 이러한 비상한 거조를 하시니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뒤에 게으름이 틈을 타 혹시라도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면 이것이 이른바 능히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p> <p>하고, 부교리 심재(沈粹)가 아뢰기를,</p> <p>“반드시 쉬지 않는 노력을 한 후에야 바야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가 닥칠 때마다 비록 경연을 열지만 곧바로 정지하기 때문에 쉬지 않는 노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경연에 납시어 쉬지 않고 부지런히 하신다면 임금의 덕이 성취되는 것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강을 마치고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엇그제 바람이 불고 우리가 친 변괴는 전에도 보기 드문 일이었으니, 이는 신 같이 형편없는 자가 오랫동안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면직시켜 주소서.”</p>	<p>功。自今日御經筵，孜孜不息，則君德成就，其可量乎。”講畢，領相鄭太和曰：“再昨風雷之變，前所罕見，莫非如臣無似，久叨相職，不能輔佐之致，請策免。”上曰：“咎實在予。”左相洪命夏曰：“天怒孔棘，國勢委靡，若不奮發，無以振國勢而回天怒也。”上曰：“此雖在於予，亦由群下之各自勉勵，盡其職事耳。”景奭曰：“當今急務，惟在於行仁政，天怒於上，民怨召之也。仁政無他，輕徭薄賦，以安民生：任賢使能。以盡其職而已。”大司憲金壽恒曰：“今日諸臣，昵侍咫尺，宜下詢消災之策。”上曰：“其各陳之。”於是諸臣各以所懷陳達，兵判洪重普以爲：“宜常存今日警懼之心，修省之道，無過於此。”禮判鄭致和以爲：“人君致治之道，莫如宵衣旰食，勵精勤政。”刑判金佐明以爲：“諸臣進言，特賜察納，收拾人材，以廣用人之路。”金壽恒以爲：“頻接臣僚，親近方策，大行蕩滅之政，以紓小民之怨，量入爲出，務盡節損。”吏判朴長遠以爲：“堅持此心，日又日新，隨才任用，振發淹滯，可爲揀災萬一之</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잘못은 사실상 나에게 있다.”</p> <p>하였다. 좌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p> <p>“하늘의 노여움이 매우 심한데다 국가의 형세도 쇠약해지고 있으니 만약 분발하지 않으면 국가의 형세를 진작시키고 하늘의 노여움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 일이 비록 나에게 달려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신하들이 각자 힘써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데에 말미암을 것이다.”</p> <p>하자, 이경석이 아뢰기를,</p> <p>“오늘날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은 오직 인정(仁政)을 행하는 데 있으니, 하늘이 위에서 노여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불러온 것입니다. 인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역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며 훌륭한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유능한 자에게 일을 시켜서 맡은바 직책을 다하게 하면 됩니다.”</p> <p>하였다. 대사헌 김수항이 아뢰기를,</p>	<p>助。”判尹吳挺一以爲：“臣見大臣筭批，去文具、取誠信，上下交修，寅協爲心等教。切於今日修省之道。惟聖上惕念振作，責礪臣工。”戶判金壽興以仁明武三字，陳達歎懇，左尹俞樞以諸臣所達，執兩端，而用中勸戒。副提學趙復陽，脩身安民用人爲言，而又以女樂出入宮中之事，縷縷陳戒。大司諫李殷相，以咸鏡、原襄兩道內奴婢及諸宮奴婢身貢及兒弱收布未收者，一時蕩減爲言。執義呂聖齊以諸般役布，參酌減除，慰悅民心爲言。司諫吳斗寅以遷善改過，悅民心、回天意爲言。掌令崔逸以景奭所達仁政之說，服膺勿失，以爲發政之本爲言。副應教李敏迪以節用愛民，漸裕國力，特發中旨，斷然革弊爲言。副校理沈粹以閑丁歲抄，限今年停止，慰悅民心爲言。校理洪萬容則曰：“奮發振作，日開經筵，頻接臣僚，以詢治道，常存今日之心，可爲消災之策。”持平趙聖輔則曰：“今日民弊，奴婢身貢，兒弱收布爲最，限數三年勿捧，則其於恤民隱之道，不能無少補。”獻納李東老則曰：“木花連年大無，不減布役，則赤</p>
--	--	---

	<p>“오늘 여러 신하들이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재해를 소멸시킬 대책을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제각기 진달하라고 하였다. 이에 신하들이 각각 생각한 바를 진달하였는데,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는 아뢰기를,</p> <p>“오늘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할 것이니, 공구 수성하는 도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p> <p>하고, 예조 판서 정치화(鄭致和)는 아뢰기를,</p> <p>“임금이 정치를 잘하는 방법은 밤낮으로 쉴사이 없이 정신을 가다듬어 정사에 부지런히 하는 것만한 것이 없습니다.”</p> <p>하고, 형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은 아뢰기를,</p> <p>“신하들이 진언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살펴 받아들여시고, 인재를 수습하여 사람을 채용하는 길을 넓히소서.”</p> <p>하고, 김수항은 아뢰기를,</p> <p>“신하들을 자주 접견하고 좋은 서책을 가까이하시며, 탕감해주는 정책을 크게 실행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시고, 받아들일 것을 헤아려 지출해서 절약하기에 최선을 다하소서.”</p>	<p>脫之民，無以保活。各邑糶穀之逋欠，誠是難掇之弊，或以十年爲限，量減其數，或以十石爲準，特除其半。”正言李夏則曰：“糶穀逋欠，限其多少，分等減除，閑丁歲抄，亦令停止，則民怨少紓。”修撰尹深則曰：“克勤無怠，諸臣既已陳達，今日急務，孰加於此。非知之艱，行之惟艱，願勿替此心，力行不已。”修撰金錫胄則曰：“特開久廢之經席，至召三司，下詢弭災之道，願常存此心，勿如前日之乍開乍輟。倘留心於不能朞月守之訓，則可庶幾矣。”上曰：“諸臣所陳之言，相議稟定可也。”太和曰：“諸臣所達糶穀逋欠，實爲今日之痼弊。”上曰：“積年耗穀，當納於今年者，竝皆蕩減，歲抄亦依沈粹言，限今年停止。物故布，限代定間勿捧，軍布三匹之類，特減一匹。”且謂承旨曰：“今日諸臣所陳之言，實合修省之道。予欲常目省覽，其令注書正書以入。”</p>
--	--	---

	<p>하고, 이조 판서 박장원(朴長遠)은 아뢰기를,</p> <p>“이 마음을 굳게 가져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여 재능에 따라 임용하여 승진하지 못하고 체류된 자들을 진작시켜 발탁하신다면 재해를 구제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하고, 판윤 오정일(吳挺一)은 아뢰기를,</p> <p>“신이 대신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보건대,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성신(誠信)을 취하여 위아래가 서로 가다듬어 공경과 화합의 마음을 가지라는 등의 분부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수성하는 도에 절실합니다. 오직 성상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진작하시어 신하들을 책려하소서.”</p> <p>하였다.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은 인(仁)·명(明)·무(武) 세 글자로서 진달하기를 매우 간절하고 지성스럽게 하고, 좌윤 유철(兪徹)은 신하들이 진달한 말에 대해 양단을 잡아서 중도를 쓰도록 권계하고, 부제학 조복양(趙復陽)은 수신(修身)·안민(安民)·용인(用人)에 관하여 말하고 또 여악(女樂)이 궁중에 출입하는 일을 가지고 누누이 진계하였다. 대사간 이은상(李殷相)은 함경(咸鏡)·원양(原襄) 두 도의 내노비 및 여러 궁가 노비의 신공(身貢),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징수하는 배 가운데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을 일시에 탕감해줄 것에 대해 말하고, 집의 여성제(呂聖齊)는 모든 역포(役布)를 참작하여 탕감해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을 말하였다. 사간 오두인(吳斗寅)은 잘못을 시정하고 착한 데로 나아감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뜻을 돌리게 하라고 말하고, 장령 최일(崔逸)은 이경석이 진달한 인정(仁政)을 행하라는 말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 정치를 하는 근본으로 삼으라고 말하였다. 부</p>	
--	---	--

	<p>응교 이민적은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함으로써 국력을 점점 넉넉하게 하고 중지(中旨)를 특별히 발하여 단연코 폐단을 혁파하라고 말하고, 부교리 심재(沈粹)는 한정(閑丁)의 세초(歲抄)를 금년에 한하여 정지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라고 말하였다. 교리 홍만용(洪萬容)은 아뢰기를,</p> <p>“분발하고 진작하여 경연을 열어서 자주 신하들을 인접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묻고, 오늘날 가진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면 그것이 바로 재해를 해소시키는 계책이 될 것입니다.”</p> <p>하고, 지평 조성보(趙聖輔)는 아뢰기를,</p> <p>“오늘날 백성들의 폐해로는 노비들의 신공(身貢)과 어린아이 몫으로 베를 징수하는 것이 가장 심하니, 2, 3 년을 한정하여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게 한다면 백성들의 고통을 보살피 주는 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하고, 헌납 이동로(李東老)는 아뢰기를,</p> <p>“목화가 해마다 큰 흉년이 들고 있으니 포역(布役)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헐벗은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각읍 조곡(糶穀)의 포흠(逋欠)은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폐단이니, 10년을 한정하여 그 수량을 헤아려 탕감해 주거나 10석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히 그 반을 면제해 주소서.”</p> <p>하고, 정언 이하(李夏)는 아뢰기를,</p> <p>“조곡의 포흠은 얼마간의 수량을 한정하여 분등(分等)해서 탕감해주고 한정</p>	
--	--	--

	<p>(閑丁)의 세초(歲抄)도 정지시키게 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조금은 해소될 것입니다.”</p> <p>하고, 수찬 윤심(尹深)은 아뢰기를,</p> <p>“근면하고 태만하지 말라는 말을 신하들이 이미 진달하였습니다만, 오늘날 시급한 일로서 무엇이 이것보다 더하겠습니까. 알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마음을 변치 마시고 줄곧 힘써 시행하소서.”</p> <p>하고, 수찬 김석주(金錫胄)는 아뢰기를,</p> <p>“오랫동안 폐지했던 경연을 특별히 열어서 삼사(三司)를 불러들여 재해를 그치게 할 방법을 하문하기까지 하시니, 이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지난날 잠시 열었다가 곧 중지했던 것처럼 하지 마소서.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는 훈계를 깊이 유념하신다면 뜻하신 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신하들이 진달한 말에 대해 서로 의논하여 품정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신하들이 진달한 조곡의 포흠은 사실상 오늘날의 고질적인 폐단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	---	--

	<p>“여러해 동안 누적된 모곡으로서 올해에 납부해야 할 것을 모두 탕감하고, 세초도 심재(沈粹)의 말에 따라 금년에 한하여 정지하라. 또 죽은 자에게 부과하는 베도 그의 대신자를 정하기 전에는 거두어들이지 말고, 3필씩 거두는 군포(軍布)의 경우 특별히 1필을 감해주도록 하라.”</p> <p>하고, 또 승지에게 이르기를,</p> <p>“오늘 여러 신하들이 진달한 말은 실로 공구 수정하는 도에 알맞다. 내 항상 곁에 두고 보려 하니, 그것을 주서(注書)로 하여금 정서하여 들이도록 하라.”</p> <p>하였다.</p>	
--	---	--

<p>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3월 16일(경인) 2번째기사</p>	<p>능원 대군(綾原大君) 이보(李輔)의 집에 영시연(迎諡宴)을 베풀었는데, 상이 술과 풍악을 내리라고 명했다</p>	<p>○綾原大君輔家，設迎諡宴，上命宣醢賜樂。</p>
<p>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3월 17일(신묘) 1번째기사</p>	<p>정리사(整理使) 김수흥(金壽興)이 들어와 아뢰기를, “신이 온천을 왕래하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 3년째 거동하시어 원망과 고통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지나는 각읍에는 세미(稅米)를 견감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1결당 5두(斗)에서 2두를 감하라고 일렀다.</p>	<p>○辛卯/整理使金壽興入奏曰：“臣於溫泉往來，得聞民人之言，三年行幸，怨苦頗多。所經各邑，宜蠲稅米。”上曰：“一結五斗減二斗。”</p>

<p>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3월 22일(병신) 5번째기사</p>	<p>상이 회정당에서 침을 맞았다. 병조 판서 김좌명이 들어가 아뢰기를,</p> <p>“온천 거동시 지나는 각읍에 대해서 거두는 쌀을 감하여 거두어들이라는 분부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원읍(遠邑)의 백성들도 왕래하며 지공하느라 역사(役使)에 피폐해졌는데, 유독 은혜를 입지 못하니, 참으로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거두어 들인 쌀을 덜어내어 도신으로 하여금 지쇄(支刷)한 값으로 나누어주게 한다면, 은혜가 고르게 돌아갈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 훈련 대장 이완(李浣)이 아뢰기를,</p> <p>“농사철이 이미 급박해졌으니, 외방의 마병(馬兵)은 징발하지 말도록 하고 도감의 마병 5백 명을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허락하였다.</p>	<p>上受鍼於熙政堂。兵判金佐明入奏曰：“頃有溫幸，所經各邑收米減捧之教。而遠邑之民，往來支供，疲於役使，獨不蒙惠，實有不均之嘆。以其收米除出，令道臣分給支刷之價，則惠可以均矣。”上從之。訓練大將李浣奏曰：“農節已迫，外方馬兵，則勿令徵發，宜帶行都監馬兵五百人。”上許之。</p>
<p>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4월 22일(병인) 2번째기사</p>	<p>도내의 나이 팔십 이상인 노인들에게 자급을 더하는 한편 옷감과 음식물을 차등 있게 하사했다.</p>	<p>道內老人年八十以上者加資，且賜衣資食物有差。</p>
<p>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4월 22일(병인)</p>	<p>이때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유리 결식하던 자들이, 대가가 거동했다는 말을 듣고는 무리를 지어 이끌고 행궁 밖에 와서 모였는데, 상이 이것을 듣고 유사로 하여금 상평창의 곡식을 차등있게 지급하게 했다.</p>	<p>時比歲凶歉，流離丐乞者，聞車駕行幸，扶携成群，來聚於行宮之外，上聞之，令攸司散給常平穀物有差。</p>

3번째기사	<p>상이 목욕했다. 상이 행궁의 편전에서 신하들을 인견했다.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p> <p>“두해나 거둬하면서 번번이 견감하라는 명을 해왔으므로 올해 들어 만약 폐지한다면 민정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감사 이민적(李敏迪)을 명초하여 물었다. 민적이 대답하기를,</p> <p>“해마다 2두를 특별 감면했는데, 올해 만약 이 수효를 감면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견감은 또 매우 고르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감면한 쌀을 도신(道臣)에게 떼어주어, 고생하는 자와 수월한 자를 구분해서 나누어주게 한다면 거의 고르게 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본군 및 천안(天安)과 직산(稷山)은 작년의 전례에 따라 전부를 감면하고, 그 밖의 부역에 응하는 고을은 절반을 감면하라.”</p> <p>하였다.</p>	<p>癸酉/上沐浴。 上引見諸臣於行宮便殿。 右相鄭致和曰：“連歲行幸，輒有蠲減之命， 今若廢閣， 民情必落莫矣。” 上命招監司李敏迪問之， 對曰：“年年特減二斗， 今減此數， 則民必缺望矣。 且前日蠲減， 亦甚不均。 臣意則以所減之米， 劃給於道臣， 使之分苦歇分給， 則庶乎其均也。” 上曰：“本郡及天安、稷山， 依上年例全減， 其餘應役之邑， 減其半。”</p>
<p>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4월 29일(계유) 1번째기사</p>	<p>도내의 노인들에게 옷감과 먹을 거리를 차등 있게 하사했다.</p>	<p>賜道內老人衣資食物有差。</p>

6년) 윤4월 8일(임오) 5번째기사		
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윤4월 14일(무 자) 2번째기사	함경도에 큰 기근이 들어, 관서의 영원(寧遠)·맹산(孟山)·양덕(陽德)에 쌓아 둔 관향곡(管餉穀) 1만여 곡(斛)을 옮겨다가 북관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감사 민정중(閔鼎重)의 계청을 따른 것이다.	咸鏡道大饑，移關西寧遠、孟山、陽德所置管餉穀萬餘斛，分賑北關飢民。從監司閔鼎重之啓請也。
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윤4월 17일(신 묘) 1번째기사	가뭄으로 구언(求言)하는 교지를 내리고, 전례대로 정전을 피하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 연주를 그쳤다.	辛卯/以旱災，下求言教，避正殿、減膳、撤樂如例。
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윤4월 23일(정 유) 1번째기사	이때疫病(染病)이 크게 번져, 서울 백성들 중 성밖에 나가 장막을 친 자 및 동·서활인서에 수용된 자들이 거의 수천 명에 이르렀으며, 관동과 관서의 유리결식하는 백성들이 뒤를 이어 모여들었는데, 오부(五部)로 하여금 그 실제 숫자를 파악하여 각각 양식 거리를 지급하게 했다.	丁酉/時染病大熾，都下民人，出幕城外及接置東西活人署，幾至數千，而關東、關西流丐之民，接踵而至，竝令五部，知其實數，各給糧資。
현종 13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5월 18일(신유) 2번째기사	함경도 안의 굶주린 백성 1만 2천 3백여 인에게 양식을 주어 구휼했다.	○咸鏡道內飢民一萬二千三百餘人，給糧以賑。
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6월 14일(정해) 3번째기사	상이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 “영녕전(永寧殿)의 추향 대제(秋享大祭) 날짜가 다가오니 반드시 그전에 도로 봉안하여야만 급박한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자, 예조 판서 홍중보가 아뢰기를,	○上引見諸臣。右相鄭致和奏曰：“永寧殿秋享大祭漸迫，必趁其前還安，可無窘急之患矣。”禮判洪重普曰：“問于日官，則七月初六日爲吉云。以是日還安，後初八日行秋享大祭宜矣。”上從之。承旨閔維重奏：“嶺東飢民，流離乞食，轉向京畿、湖西、嶺南等

	<p>“일관(日官)에게 물어 보니 7월 6일이 길하다고 합니다. 이날 도로 봉안한 뒤 8일에 추향 대제를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 승지 민유중이 아뢰기를,</p> <p>“영동 지방의 굶주린 백성들이 유리걸식하면서 경기와 호서·영남 지방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보릿가을은 비록 지났지만 가을 추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만약 이때 구휼해주지 않는다면 굶어 죽을 걱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세 도에 분부를 내려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구휼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p> <p>하자, 상이 옳다고 하였다. 정치화가 아뢰기를,</p> <p>“지난번에 강상 죄인을 삼성 추국한 것은 사체가 몹시 엄한 것인데, 헌관(憲官) 조원기(趙遠期)는 패초(牌招)하였으나 나오지 않다가 다시 패초한 뒤에야 나와 참여했습니다. 그 때문에 국문에 참여한 여러 신하들이 모두 모여 개좌(開坐)해 밤새도록 기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조정에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이 고사를 듣건대, 비록 재상의 반열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처음 패초하였을 때 나오지 않은 뒤에 다시 패초한 경우가 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요즈음은 모든 관원들이 태만하여 패초에 나오지 않는 것을 예사롭게 여겨 다시 패초하게 합니다. 대관도 오히려 다시 패초해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하반 사관이겠습니까. 사관 홍만중(洪萬鍾)은 직소(直所)에서 병을 이유로 마음대로 나가 세 번 패초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았으며, 봉교 윤경교(尹敬教)는 고풍(古風)을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소를 올리고 나가더니 역시 세 번 패초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아 네 번째 패초</p>	<p>道，卽今麥秋雖過，西成尙遠。若不救活於此時，則難免餓死之患。宜分付三道，隨所在賑之。”上曰：“可。”致和曰：“頃日綱常罪人三省推鞫〔推鞫〕，事體極嚴，牌招憲官趙遠期不進，至於更招而後來參。而參鞫諸臣，齊會開坐，達夜企待。朝廷少有紀綱，豈敢如是乎。臣聞古事，雖宰秩年老之人，初牌不進之後，未聞有更招之例。近來則百隸怠慢，視牌不進，爲尋常事，以致更招之舉。臺諫猶不當更招，況下番史官乎。史官洪萬鍾自直所，因病擅出，三牌不進，奉教尹敬教則以爲墜落古風，投疏而退，亦三牌終不入來，至有四牌之舉。紀綱之解紀，國事之委靡，至於此極。誠可寒心。”上曰：“萬鍾則拿問定罪。”上顧敬教曰：“此翰林亦甚未妥矣。”敬教惶悚，但俯伏興，僕僕而已。致和曰：“砥礪廉隅，雖是美事，近來朝臣，每以廉隅爲事，時因朋儕間言語，或呈辭、或陳疏，引入不出，曠職廢事，實由於此。同寅協恭，非所可望，恪謹奉職，亦不可得。臺諫若聞臣言，必爲一場避嫌。然既有所懷，何可不</p>
--	---	---

	<p>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기강이 해이되고 국사가 느슨해진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홍만중은 잡아다 추문하여 죄를 주라.”</p> <p>하였다. 상이 윤경교를 돌아보고 이르기를,</p> <p>“저 한림(翰林)도 역시 몹시 온당치 못한 짓을 하였다.”</p> <p>하니, 경교가 황송하여 굽신거리면서 어쩔줄을 몰랐다. 치화가 아뢰기를,</p> <p>“절개를 깨끗하게 닦는 것이 비록 아름다운 일이긴 하나, 요즈음 조정의 신하들이 매사에 절개 지키기만을 일삼아 때때로 동료들간의 말로 인해 정사(呈辭)하거나 진소하고는 들어가버린 채 나오지 않는데, 자리를 비우고 직무를 폐기함이 실로 여기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서로 화합하기를 바랄 수가 없으며 부지런히 직무에 종사하는 것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대간이 만약 신의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한바탕 피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품은 생각이 있으니 어찌 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신이 각사의 문서를 볼 때마다 고신(告身)을 빼앗기거나 파직당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벌을 받은 자가 많은데도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하지 않고 있으며, 파산(罷散)된 자가 많은데도 주의(注擬)함에는 균색합니다. 이에 수령 하나를 의망함에 있어서도 장부를 들춰가면서 하나하나 폼아보아도 적</p>	<p>達。 臣每見各司文書，奪告罷職之類，連續不絕，被罰既多，而人益不畏，罷散者衆，而注擬亦窘。 雖一守令望，按簿指畫，不得其人，而終未免苟充差遣。 典邑之任，雖似輕卑，苟非其人，則一境之民，受害不細也。” 上然之。 維重曰：“前參議李惟泰遭其母喪，而家甚貧乏，似當有軫恤之典矣。” 上命本道，題給喪需。</p>
--	--	--

	<p>당한 사람이 없어서 끝내는 구차하게 채워 보냄을 면치 못합니다.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임무가 가벼운 것 같으나 참으로 적당한 사람이 아니면 온 경내의 백성들이 적지 않게 피해를 받습니다.”</p> <p>하니, 상이 그렇다고 하였다. 유중이 아뢰기를,</p> <p>“전 참의 이유태(李惟泰)가 어미의 상을 당하였는데, 집이 몹시 가난하니 은전을 내려 보살펴 주어야 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본도에 명하여 장례 물품을 주게 하였다.</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6월 20일(계사) 2번째기사</p>	<p>북병사 이만영(李晩榮)이 하직 인사를 하니, 상이 인견하여 관방(關防)에 대한 일을 논하였다. 또 개시(開市)와 채삼(採蔘)에 대한 폐단 및 육진의 풍속, 군졸의 훈련 정도에 대해 논하였는데, 아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어 힘쓰라고 유지하고서 보내었다.</p>	<p>北兵使李晩榮辭朝，上引見論關防事。且及開市採蔘之弊，六鎮之風俗，軍卒之精悍，論說甚勤。因勉諭而送之。</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6월 25일(무술) 2번째기사</p>	<p>대미(大米) 3백 석, 전미(田米) 4백 석을 경기에 나누어 주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라고 명하였다.</p>	<p>命給大米三百石、田米四百石于京畿，分賑飢民。</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7월 2일(갑진) 1 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강화 유수 서필원(徐必遠)이 주달하기를,</p> <p>“본부의 백성들이 양맥(兩麥)이 모두 떨어진 때를 당하여서 살아가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몇 석의 곡식을 얻어서 궁핍한 백성을 구휼하게 하소서.”</p> <p>하니, 우상 정치화가 아뢰기를,</p> <p>“기전 백성을 구휼하는 것을 전적으로 강도(江都)의 곡식에 의지하고 있는데, 지레 먼저 다 흠어주면 뒷날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많이 줄 수 없습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그렇다면 5백 석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p> <p>하였다. 상이 승지 민유중에게 일렀다.</p> <p>“시임(時任) 대간으로 월과(月課)를 제출하지 않아 응당 추고해야 할 자들은 ‘탕척’으로 부표(付標)하여 들이라. 그리고 추고를 받은 후에 대간에 제수된 자들은 추고 전지(推考傳旨) 가운데 역시 ‘탕척’으로 부표하여 들이라.”</p>	<p>○甲辰/上引見大臣、備局諸臣。江華留守徐必遠奏曰：“本府民人，當此兩麥既盡之時，資生極難。請得若干碩，以賑窮乏。”右相鄭致和曰：“畿甸賑救，專藉於江都之穀，徑先散盡，不無後日之慮。不可多給矣。”上曰：“然則劃給五百碩。”上謂承旨閔維重曰：“時任臺諫月課不製應推者，則以蕩滌付標以入。被推後除拜臺諫者，則推考傳旨中，亦以蕩滌付標而入。”</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7월 25일(정묘) 1번째기사</p>	<p>지평 홍만형이 또 인피하기를, “출사시키라는 처치가 뜻밖에 나왔습니다. 견해가 서로 어긋나 끝내 다시 고치기 어려우니, 체차하여 주소서.”</p> <p>하고, 지평 신경윤도 또 인피하기를, “대각에서는 소견이 서로 다른 경우 한쪽은 그르고 한쪽은 옳은 것일텐데 모두 출사시키라는 처치가 실로 뜻밖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괴험한 말 중에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김익훈이 그 여인을 데리고 산 것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는데 어찌 그 많은 재화를 다 썼을 리가 있겠습니까. 은장도와 만호영(曼胡纓)의 설이 한때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데에 들어갔으니, 역시 어찌 까닭없이 그러하였겠습니까. 민점에 대한 일은, 그 당시에 비록 금주령(禁酒令)은 없었으나 가뭄이 몹시 심하였으니, 어찌 사대부가 모여서 술마실 때였겠습니까. 동료가 그릇의 수요는 알고 있으면서 멀리까지 들린 노랫소리는 모르고 있으니, 어찌 이다지도 자세하고 소략함이 현격하단 말입니까. 더구나 국기일에 재계하는 것은 법조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체차하여 주소서.”</p> <p>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정언 이선(李選)이 아뢰기를, “장선은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판에 외람되이 끼어 있으니, 어찌 탄핵하여 그 사람을 도태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정관(政官)의 잘못을 바</p>	<p>丁卯/持平洪萬衡又引避: “以處置請出, 出於意外. 所見相左, 終難強改, 請遞.” 持平愼景尹又引避: “臺閣所見不合, 則必有一非一是, 而處置竝出, 實出意外. 且於同僚之避, 亦有所未能曉者. 益勳之率畜其女, 不過數歲, 豈有盡用許多財貨之理乎? 銀粧刀曼胡纓之說, 入於一時之唾點, 則亦豈無所由而然乎? 閔點事, 則其時雖無酒禁之令, 而旱災已到十分, 豈士夫會飲之時乎. 同僚能知器皿之數, 而不能知遠聞之歌笛, 是詳略之相懸耶. 況國忌齋戒, 法文所載者乎? 請遞.”</p> <p>退待. 正言李選啓曰: “張植以有累之人, 冒占仕版, 安得不劾汰其人, 而竝規政官之失乎. 政官疏批, 辭旨極嚴, 政官疏本, 語多不平, 臣誠震越, 繼以驚訝也. 夫失行家子弟, 不特人恥比肩, 不許東西班正職, 國有定制. 改嫁被擄失行, 則一. 政官所謂有間云者, 臣未能知也. 至於禮所謂: ‘出母之子, 參以禮律, 似無永枳仕路’ 云者, 實啓禮家無窮之恥. 夫出母, 固無服</p>

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관의 상소에 대한 비답 내용이 매우 엄하고, 정관의 상소 내용도 대부분 평온하지 않으니, 신은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무릇 실행(失行)한 자의 자제(子弟)는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동서반의 정직(正職)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 국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가한 것과 잡혀간 것은 실행(失行)하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이 이른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신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경(禮經)》에 이른바 이혼한 어머니의 아들이니 예율(禮律)로 헤아려 볼 때 영원히 사로(仕路)를 막을 리는 없을 듯하다.’고 말한 데에 이르러서는, 실로 예가(禮家)의 무궁한 수치를 열어 놓는 것입니다. 무릇 이혼한 어머니는 복(服)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모자간의 의를 끊을 수 있겠으며, 다시는 허물이 미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예경의 뜻을 끌어와 맞추고 힘을 다해 분소(分疏)하였으니, 어찌 다만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병통만 되고 말겠습니까. 그리고 성상의 비답에 최선이 처음 베푼 것이 신의 아버지가 이조 판서로 있을 때였는데도 신이 피험하지 않았다고 하시었는데, 신은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최선에게 하자가 있는 것은 근래에 비로소 드러났고, 신의 아버지는 최선과 본디 전혀 몰랐었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때에 먼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관직에 제수된 것은 강경(講經)에서 잇따라 통과되어 전례에 따라 주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비록 최선이 처음 베푼 것이 신의 아버지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관을 추고하기를 청하는 논계를 함에 있어서 무슨 피험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성상의 노여움을 촉발시켜 드러내 놓고 꾸짖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신이 망령되어 척완(戚畹)을 논계한 탓이니, 체차하여 주소서.”

矣。豈可以此永絕母子之義，無復累及之理乎。牽合禮意，費力分疏，奚但爲病於自是而已乎。且聖批，以崔宣之筮仕，在於先臣秉銓時，爲臣不避嫌，臣請有說也。宣之有累，始露於近來，先臣與宣，素昧平生，其何能知人所不知之時，而又其除職，出於講經連畫，循例備擬。則臣雖知宣之筮仕，出於先臣之手，今於政官請推之論，有何所嫌也。不料因此，而重激天怒，辭氣太露。無非臣妄論戚畹之致，請遞。”上答曰：“觀此避辭，且笑且駭矣。昨者疏批，別無加怒之語，而爾敢曰重激天怒，必指定制事而發也。茲事關係國家用人之道。況靖社元勳家事，朝家其可不爲之變通乎。初非以張愔事，先責爾而定制，何敢以戚畹二字，拊制至此乎？誠極痛駭矣。噫！天翻地覆，致有曩日之變，則此與家內潛自失行者，大相不同，何言之至此。雖曰其父不知，其子既知之，則爲嫌乎？不爲嫌乎？予尤未曉也。既不知其父之所爲，而何敢與論於宣祖、仁祖兩朝所定之制乎？予所以深加駭笑也。”仍命勿辭，選退待。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 인피하는 말을 보니,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어제 상소에 대해 비답한 것에는 별로 노여워한 말이 없는데도 너는 감히 성상의 노여움을 촉발시켰다고 하니, 이는 반드시 제도를 정한 일을 지적해서 한 말일 것이다. 이 일은 나라에서 사람을 쓰는 도리에 관계가 된다. 더구나 정사 원훈(靖社元勳)인 사람의 집안 일이니 조정에서 변통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당초에 장선의 일로 너부터 나무라며 제도를 정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찌 감히 ‘척완’ 두자로 이토록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가. 참으로 몹시 놀랍다. 아, 하늘과 땅이 뒤집혀 지난날의 변란이 일어났었으니, 이는 집안에서 몰래 간통하여 실행한 자와는 크게 경우가 다른 것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인가. 비록 아버지가 몰랐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이미 아버지가 한 일인지 알았을 경우, 피혐해야 하겠는가, 피혐하지 않아야 하겠는가? 내가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도 모르면서 어찌 감히 선조(宣祖)와 인조(仁祖) 두 조정에서 정한 제도에 대해 논한단 말인가. 내가 몹시 놀랍고 우습게 여기는 까닭이다.”

하고, 이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니, 이선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7월 26일(무진)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국가의 경비와 녹봉의 재감(裁減) 및 경외의 백성을 구휼하는 방책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영상 홍명하가 아뢰기를,</p> <p>“농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오로지 모두가 협심하여 난국을 헤쳐나가야 마땅한데, 어찌 이조 판서와 병조 판서가 인협하고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김좌명이 지난번에 진달한 것은 그 곡절을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항이 대관들의 말에 대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으니, 몹시 마땅치 않습니다. 이선이 인피한 말은 비록 온당치 못한 점이 있으나 성상께서 지나치게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나이 어린 대관들의 기를 꺾었으니, 이것이 어찌 성대한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선은 지나쳤다. 그의 아버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험하여야 하겠는가, 아니면 피험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응당 피험해야</p>	<p>戊辰/上引見大臣、備局諸臣，商論國家經費、(錄) [祿] 俸裁減、京外賑救之策。領相洪命夏曰：“年事大無，民命近止。當此之時，惟當協心共濟，吏兵判何可引入乎。金左明向者所達，未知其曲折，而金壽恒不能無愠於臺官之言，甚不當也。李選之避辭，雖未穩貼，而聖明辭氣太露，氣折年少臺官，此豈盛德事乎。”上曰：“選過矣。其父不知，而渠則猶可知之。然則在所避乎？在所不避乎？應避之教，亦非向渠而言，而何敢費辭自明乎。近來臺諫自是之習，誠可惡也。兵判之責勉維重、萬基，皆是共濟國事之意，有何懷嫌於兩人而然也。維重尚不出仕，彼亦必呈病矣。”</p>

	<p>한다는 전교도 그를 향해 말한 것이 아닌데 어찌 감히 많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변명한단 말인가, 요즈음 대관들이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습성이 가증스럽다. 병조 판서가 민유중(閔維重)과 김만기(金萬基)를 책면(責勉)한 것은 모두가 국사를 함께 처리해 가자는 뜻이지 두 사람에게 무슨 혐의를 품은 것이 있어서 그랬겠는가. 민유중이 아직도 출사하지 않고 있으니, 그 역시 반드시 정병(呈病)할 것이다.”</p> <p>하였다.</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8월 3일(을해) 3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기근이 들었다는 이유로 비용을 의논해서 줄이게 하였다. 내주방(內酒房)과 각전(各殿)의 주미(酒米)와 사포서(司圃署)의 진서과가(眞西瓜價)를 반을 감하도록 명하였으며, 사복시(司僕寺)의 마초가(馬草價)를 반감하였고, 의정부와 종친부의 납약가(臘藥價)를 3분의 1을 감하였다. 그리고 상의원에서 진어하는 초피(貂皮)와 중국에서 무역해 오는 물품 및 판별방(辦別房)의 당초피(唐貂皮)도 감하였다. 내년 가을까지를 기한으로하여 내궁방(內宮房)의 별조(別造)를 파하였고, 4품 이상 관원의 녹봉을 1석을 감하였다. 그리고 경기 지방의 전세미(田稅米)를 16두를 감하고서 단지 1두 6승만 받도록 하였다. 서북 지방의 추쇄(推刷) 및 양남 지방의 세초(歲抄)를 정지하였다.</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上以歲饑，議省費用，命半減，內酒房各殿酒米及司圃署眞西瓜價半減，司僕寺馬草價、議政府宗親府臘藥價， 三分減其一。 尙衣院進御貂皮唐物貿易及辦別房唐貂皮亦減之，限明秋罷內弓房別造，四品以上祿俸減一石。 畿田之稅減十六斗，而只收一斗六升。 停西北推刷及兩南歲抄。</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8월 7일(기묘) 3 번째기사</p>	<p>집의 여민제(呂閔齊)가 상소하여 아뢰기를, “내탕고에 쌓아두는 것은 전혀 사재(私財)를 축적하지 않는 왕자의 도가 아니나,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혁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혼자만 부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흉년에 창고를 풀지 않는 것에 대해 옛사람이 조롱하였습니다. 내사(內司) 및 수진궁(壽進宮)·명례궁(明禮宮)에 쌓아둔 재물과 곡식을 덜어내어 가난한 백성들을 진휼하소서.” 하니,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렸다. 그러나 시행하지는 않았다.</p>	<p>執義呂閔齊上疏言： 內帑之藏，殊非王者無私之義，而其來已久，猝難革罷。然民既轉壑，安得獨享其富哉。凶歲不知發，古人有譏。請捐內司及壽進、明禮兩宮所蓄財帛穀物，以賑貧民。 上優答而不能行。</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8월 19일(신묘) 1 번째기사</p>	<p>상이 침을 맞았다. 상이 진휼청 당상 조복양에게 일렀다.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하거나 면제하였는데, 올 9월부터 내년 9월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p>	<p>辛卯/上受鍼。上謂賑恤堂上趙復陽曰：“今因凶歉，凡百減除，自今年九月，至明年九月爲限，可也。”</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9월 5일(병오) 1 번째기사</p>	<p>밤에 우레가 쳤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홍명하가 나아가 아뢰기를, “가뭄이 든 뒤에 또 어젯밤에 우레가 쳤으니, 무슨 화의 기미가 아득한 가운데 숨어 있기에 이렇게 재변이 연거푸 닥친단 말입니까?” 하고, 이어 책면시켜 주기를 청하니, 상이 하유하여 위로하였다. 상이 원양도(原襄道)의 삼명일 방물(三名日方物)을 감해주라고 명하고, 양서 지방의 금년도 전조(田租)의 반을 내려 주라고 하였는데, 우상 정치화의 말을 따른 것이</p>	<p>○丙午/夜雷動，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領相洪命夏進曰：“旱災之餘，又有昨夜之雷，有何禍機，伏於冥冥之中，災異之荐臻，如此？”仍乞策免，上慰諭之。上命蠲原襄道三名日上供之物，賜兩西今年田租之半，從右相鄭致和之言也。禮曹判書鄭知和曰：“今旣得雨，請復常膳，擊金鼓。”上曰：</p>

	<p>다. 예조 판서 정지화가 아뢰기를, “지금 이미 비가 내렸으니 상선(常膳)으로 회복하고 금고(金鼓)를 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10월부터 시행하라.” 하자, 홍명하가 아뢰기를, “가을철은 금기(金氣)에 속하니, 금고를 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자, 상이 허락하였다.</p>	<p>“自十月爲之。” 命夏曰：“秋令屬金，宜擊金鼓。” 上許之。</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9월 16일(정사) 2번째기사</p>	<p>장령 이단석(李端錫), 지평 신경운(愼景尹)이 아뢰기를, “영서 지방에 기근이 들었으니, 잡역(雜役)을 감해야 하고 봄보리 종자를 나누어 주어야 하며, 신역에 대해 포를 거두는 것도 1필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p>	<p>掌令李端錫、持平愼景尹啓曰：“嶺西歲饑，雜役宜減也，春麩種宜給也，身役收布，亦宜只捧一匹也。” 上不從。</p>
<p>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0월 9일(경진) 1번째기사</p>	<p>지평 이명익(李溟翼)이 아뢰기를, “병조 낭관으로 있었을 때 잡인을 수금하여 이 때문에 공상(供上)을 바치는 사람이 저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추고당하였으니, 체차하여 주소서.”</p>	<p>庚辰/持平李溟翼以爲：“騎省郎，時囚禁雜人，以致供上進排人見阻被推，請遞。” 免。</p>

	하니, 면직하였다.	
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6년) 10월 11일(임오) 1번째기사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명하가 아뢰기를,</p> <p>“고 부제학 정홍익(鄭弘翼)은 혼조(昏朝) 때에 절개를 지켰는데, 그가 죽자 그의 아내는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그의 아내가 또 죽었는데, 가난하여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합니다.”</p> <p>하니, 상이 장례 물품을 지급해 주라고 명하고, 또 제주(濟州)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의 부모에게 쌀을 내려주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이보다 앞서 전적 송상주(宋尙周)가 상소하여, 제주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한 자들에게 쌀을 내려 주어 권장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영상 홍명하에게 물으니, 홍명하가 대답하기를,</p> <p>“이것은 법외의 일로 다섯 아들이 과거에 급제한 경우와 견줄 수는 없으나, 먼 외방의 자제가 과거에 급제한 것은 다른 곳과는 다르니, 오로지 상께서 특별히 은전을 베푸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p> <p>하니, 상이 쌀을 내려 준 것이다.</p>	<p>壬午/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領議政洪命夏曰：“故副提學鄭弘翼，立節於昏朝，及其身歿，其妻無所依賴。今聞其妻又死，貧無以治喪云矣。”上命給喪需，特命賜米于濟州登科者之父母。先是，濟州人登科，前典籍宋尙周上疏，請賜米以勸之，上問于領相洪命夏，對曰：“此乃法外，雖不可擬之五子登科之類，遐荒子弟之登科，異於他處，惟在上特施恩典耳。”上乃賜米。</p>
현종 14권, 8년(1667 정미 / 청 강희(康熙)	사간 여성제(呂聖齊) 등이 탄핵하기를,	司諫呂聖齊等劾：“坡州牧使朴由東，多有不廉之誚。其妻母之喪，稱以賻

<p>6년) 11월 8일(무신) 2번째기사</p>	<p>“과주 목사(坡州牧使) 박유동(朴由東)은 청렴치 못하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의 장모의 상을 치루면서 부의(賻儀) 물품이라고 하면서 마을에서 수십 석을 어거지로 거두어들였습니다. 파직하소서.”</p> <p>하니,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p> <p>“정원이 새로 제수된 간관을 서경(署經)하는 일로 양사 성상소(城上所)를 패초(牌招)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간원이 정원(成員)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런 아뢰미 있는 것이 마땅하나, 본부(本府)는 현재 정원을 갖추지 못한 일이 없는데 뒤섞어서 패초하기를 청하였으니, 일이 몹시 타당치 않습니다. 해당 승지를 추고하소서.”</p> <p>하니, 따랐다.</p>	<p>物，勒捧數十石於鄉中。請罷職。”不從。又啓：“政院以新除諫官署經事，請牌招兩司城上所。諫院既不備員，則宜有此啓，而本府則時無不備員之事，而混請牌招，事極未安。請當該承旨推考。”從之。</p>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1일(경오) 3 번째기사</p>	<p>경성 내의 굶주린 백성 남녀 노소 1천 5백 20여 명을 죽을 끊여주어 진휼하였다. 그 후에 더욱 늘어나 2천 8백여 명이나 되었다.</p>	<p>京城飢民男女老壯弱，竝一千五百二十餘人，設粥賑之。其後增至二千八百餘人。</p>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3일(임신) 4 번째기사</p>	<p>경기와 해서·호서 지방에 크게 기근이 들고 또 여역(癘疫)이 치성하였다. 창고의 곡식을 내어 진휼하도록 명하였다.</p>	<p>圻甸、海西、湖西大饑，癘疫又熾。命發倉賑之。</p>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p>	<p>대사간 이태연 등이 아뢰기를,</p>	<p>大司諫李泰淵等啓：“近來密封蔘商之弊，甚無謂也。所謂蔘商者，自該曹</p>

<p>7년) 2월 6일(을해) 2 번째기사</p>	<p>“근래에 삼상(蔘商)을 밀봉(密封)하는 폐단은 몹시 형편없는 짓입니다. 이른바 삼상에 대해서는 해조에서 액수(額數)를 정해 세금을 거둡니다. 그런데 도망하였거나 죽은 자의 대신을 해당 부(部)로 하여금 밀봉하게 하고는 각계(各契)에서 독촉해 받아들이게 하면서 마구 매질을 가하므로, 각계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아무나 가리켜 삼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송도(松都)의 경우에는 해조가 체문(帖文)을 유수(留守)에게 직접 보내 다른 장사를 하는 자에게 삼세(蔘稅)를 독촉해 거두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규례가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전의 규례를 혁파하게 하여 서울과 송도의 백성들이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라.”</p> <p>하였다. 또 아뢰기를, “훈국(訓局)의 포수(砲手)가 시장에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역(役)을 내는 시장 백성들과는 경중이 현격하게 다르므로, 지난해 겨울 초에 인대하였을 때 변통하라는 뜻으로 진달하자, 상께서 평시서와 훈련 대장이 상의하여 세를 매기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평시서의 관원이 대장의 집에 다시 가서 의논해 정하려고 하였으나 대장이 즉시 거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몹시 타당치 않으니, 대장 이완(李浣)을 중한 쪽으로 추고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定額收稅。而逃故之代，使該部密封，使各契督捧，鞭朴隨之，各契人不勝其苦，強指某人，輒稱蔘商。至於松都，則該曹直送帖文於留守，業以他商者，督徵蔘稅。謬例已久，至于今日而極矣。當此民窮財竭之時，不可不變通，請令該曹，革罷前例，俾無兩都民人呼冤之弊。”上曰：“令該曹稟處。”又啓曰：“訓局砲手，坐市興販，而與市民之應役者，輕重懸殊，故去年冬初引對時，陳達變通之意，則自上許令平市與大將相議加稅矣。今聞平市官員，再往大將家欲議定，而大將不卽舉行。殊甚未妥，請大將李浣從重推考。”上從之。</p>
---------------------------------	--	--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6일(을해) 3 번째기사</p>	<p>상이 재이로 인하여 정전(正殿)을 피하였다. 정원에 하교하였다.</p> <p>“아, 오늘날의 국사가 위태롭고도 위태롭다고 하겠다. 위로는 하늘의 노여움이 몹시 심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일이 그지없이 애닦아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을 마음속에서 조금도 늦춘 적이 없었다. 금년 봄 새해 초에 이미 무지개가 해를 꿰는 재변이 있었는데 한 달도 채 못 되어 또 이런 괴이하고 놀라운 변이 있다. 자나 깨나 이에 대해 생각하며 꿈속에서도 놀라니, 깊은 연못과 깊은 산골짜기에 빠진 듯한 마음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실로 나의 덕이 부족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부터 정전(正殿)을 피하여 지난날의 허물을 반성하고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 더 가져 조금이나마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겠다. 승지는 나를 대신해서 교서를 지어 널리 직언을 구하여 나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라. 너희 대소 신하들은 서로 협동하고 각자의 직분을 부지런히 수행하라. 인재를 선발하고 옥사(獄事)를 심리하는 것은 참으로 재변을 늦추는 데 있어서 급선무이니, 각 해당 관원들로 하여금 착실히 시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고 음주를 금하는 등의 일도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p>	<p>上以災異，避正殿。 下教政院曰：“嗚呼！今日國事，可謂岌岌乎殆哉？上而天怒孔棘，下而民事罔極！憂悶惶懼之心，未嘗少弛于中矣。 今春歲首，已有虹貫之災，曾未踰月，又有此可怪可愕之變。 寤寐思之，魂夢亦驚，若隕淵谷之懷，曷可勝喻。 推求其原，實由予涼德。 自今日避正殿，追省既往之咎，益加敬畏之心，小答天譴。 承旨代予草教，廣求直言，以補不逮。 咨爾大小群工，務盡寅協，恪勤乃職。 至於甄拔人才，疏決庶獄，誠是弭災之急務，宜令各該掌，着實施行。 減膳禁酒等事，亦令該曹舉行焉。”</p>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9일(무인) 3 번째기사</p>	<p>대사간 이태연이 상소하기를,</p> <p>“신이 보건대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재변이 일어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구언하는 교서를 여러 차례 내렸으나 전례에 따라 임시방편만을 하여 진작시킬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하께서 하늘에 응답하는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곧고 올바른 말을 한 사람이 있었으나 교만한 기색을 보이어서 천리 밖에서 사람을 막았으니 전하께서 구언하신 것을 성의껏 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써 어진 이를 초빙하여 오더라도 임용하는 정성이 처음만 못하니 무슨 뽑아 쓸 만한 특별한 인재가 있겠습니까. 비록 옥사를 자주 심리하더라도 죄를 결정하는 즈음에 경중을 잃으니, 어찌 번거롭게 소결(疏決)하여 요행의 길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p> <p>하고, 또,</p> <p>“정전을 피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참으로 재변을 두려워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일이지는 하나, 이미 실제적인 것이 없이 한갓 형식적으로만 하였으니, 전하께서 비록 한 달을 넘도록 한테 앉아 있고 날마다 한 가지 반찬만 올린다 하더라도 저 땅을 비추이는 하늘이 반드시 감동하여 마음을 바꿀 리가 없을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상이 가납하였다.</p>	<p>大司諫李泰淵上疏曰：</p> <p>臣竊觀殿下卽祚以來，災異之作非一，求言之教屢下，而因循架漏，振作無期。則殿下之應天，其可謂以其實乎？危言讜論，或有其人，而訑訑聲色，拒人千里，則殿下之求言，其可謂以其誠乎？禮賢雖至，而任用之誠，不承權輿，則有何別樣人才，可以甄發者乎？審理雖頻，而議讞之際，失其輕重，則何必煩加疏決，以開倖門乎？又曰：避殿減膳，固是懼災之一節，而既無其實，徒事文具，則殿下雖閱月露坐，日一進膳，彼照臨下土之天，必無感回之理矣。</p> <p>上嘉納之。</p>
---	--	--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9일(무인) 7 번째기사</p>	<p>집의 심유(沈攸) 등이 차자를 올려 수정(修省)하는 방도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그 조목이 다섯 가지였다. 첫째는 오랫동안 경연을 정지하였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간언을 거부한다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적조(糶糶)를 독촉하는 것을 늦추는 것이고, 넷째는 각 고을에서 별도로 마련해 올리는 군기(軍器)에 대한 규정을 혁파하는 것이었으며, 다섯째는 궁가에서 전장(田庄)을 설치하는 폐단에 대한 것이었는데, 상이 가납하였다. 그 뒤에 군기를 별도로 마련해 올리는 규정을 혁파하라고 명하였는데, 대개 이 말을 따른 것이다.</p>	<p>執義沈攸等筭陳修省之策，而其目有五。其一久停經筵也，其二自用拒諫也，其三緩督糶糶也，其四請罷各邑別備軍器之規也，其五宮家設庄之弊也。上嘉納之。其後命罷軍器新別備之規，蓋從此言也。</p>
<p>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11일(경진) 3번째기사</p>	<p>재신(宰臣) 이하와 당하관인 시종 신하의 나이 많은 부모에게 가자(加資)하거나 아니면 음식물과 옷감을 내려주라고 특별히 명하였다. 이에 예조 판서 김수항 등이 진문(箋文)을 올려 사례하였다.</p>	<p>○特命宰臣以下及堂下侍從臣之年老父母，加資或賜食物、衣資。禮曹判書金壽恒等上箋謝之。</p>
<p>현개 18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11일(경진) 4번째기사</p>	<p>90세가 넘는 강화 백성에게 가자하고 음식물을 내려주라고 명하였는데, 유수인 서필원(徐必遠)의 청을 따른 것이다.</p>	<p>江華府人民年九十以上者，命加資賜食物，從留守徐必遠之請也。</p>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12일(신사) 2번째기사</p>	<p>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김좌명이 아뢰기를, “남한 산성의 쌀을 전에는 각 고을에 옮겨 나누어주었다가 가을에 도로 받아 들였는데, 근년 이래로 옮겨 나누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경기 백성들이 많이들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향(軍餉)으로 쓸 것을 가볍게 내어주기는 참으로 어려우나, 이와 같은 흉년에는 한 가지 법만을 굳게 지켜서는 안 되고,</p>	<p>引見備局諸臣。金佐明曰：“南漢米，前日則移轉各邑，待秋還捧，而近年以來，不許移轉，故畿民多號訴。軍餉所需，固難輕發，而當此凶歲，不可膠守一切之法，宜有變通之道。”上曰：“江都米一萬石，既許移轉，山城米五</p>

	<p>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만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강도(江都)에 있는 쌀 1만 석은 이미 옮기도록 허락하였고, 남한 산성에 있는 쌀 5천 석도 옮기도록 하되, 강도에서 가까운 고을은 강도에 있는 쌀을 옮기고 남한 산성에서 가까운 고을에는 남한 산성에 있는 쌀을 옮기라. 피곡(皮穀)은 경기 지방의 백성들이 종자를 구하지 못하였을 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p> <p>하자, 김좌명이 아뢰기를,</p> <p>“서필원은 강도에 있는 피곡을 각 고을에 옮겨다 주어 백성들에게 종자곡으로 나누어 주고자 하는데, 조복양(趙復陽)의 말을 들으니 강도에 있는 벼는 상한데다가 잘 여물지 않아서 종자곡으로 쓰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서필원을 이미 올라오라고 하였으니, 그가 오면 알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이완이 아뢰기를,</p> <p>“도감의 초관(哨官) 선귀영(宣貴榮)은 지난 기해년에 형조에서 송사(訟事)가 일어나자 죄받을까 두려워하여 양주(楊州) 송산(松山)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을 보내어 체포하여 오는 도중에 또 몸을 빼어</p>	<p>千石，亦令移轉，而江都近邑，則移江都之米，南漢近邑，則移南漢之米。皮穀則待畿民不得種子時，分給爲當矣。” 佐明曰：“徐必遠以江都皮穀，欲移轉各邑，爲民種子，而聞趙復陽之言，則江都之租，傷而不實，不合於種子云矣。” 上曰：“必遠已使之上來，來則可知矣。” 李浣曰：“都監哨官宣貴榮，往在己亥年間，接訟于刑曹，懼其被罪，逃避于楊州松山地。 臣發遣隨率，跟捕以來，中路又脫身逃走矣。今聞以非理好訟，被囚于長湍府，移關捉致，囚禁京獄。 貴榮身爲將官，至於再逃。 如此之人，不可不明正軍律，以爲懲戢之地。 請臬示軍前何如?” 上曰：“可。” 浣又曰：“設訓局，所以重軍門也。 兵曹郎官，稱以禁亂，捉去書字的，任自棍打，又捉去砲手，勒令旗隊摠棍打云。 事甚駭異，請推考。” 大司諫李泰淵曰：“郎官因禁亂，而治罪，則既非私事。 而況訓局於兵曹，事體自別，大將何可直自請推乎? 請浣推考。” 上曰：“此事之出已久，而兵曹尙無舉論之事，則大將之請推，烏可已乎。” 泰淵曰：“訓局都提調，</p>
--	--	---

	<p>도주하였습니다. 지금 들건대 사리에 어긋난 일로 송사를 일으키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장단부(長湍府)에 갇혀 있는 것을 공문을 보내어 잡아다가 경옥(京獄)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선귀영은 장관(將官)으로 있으면서 두 차례나 도망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군법을 엄하게 밝혀 징계시키는 바탕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전(軍前)에서 효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그러라고 하였다. 이완이 또 아뢰기를,</p> <p>“훈국(訓局)을 설치한 것은 군문(軍門)을 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병조 낭관이 금란(禁亂)한다고 하면서 서리(書吏)를 잡아다가 마음대로 곤장을 때렸으며, 또 포수(砲手)를 잡아다가 기대총(旗隊摠)을 억박질러서 곤장을 때리게 했다고 하니, 일이 몹시 놀랍습니다. 추고하소서.”</p> <p>하고, 대사간 이태연이 아뢰기를,</p> <p>“낭관이 금란으로 인하여 죄를 다스렸다면 이미 사사로이 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훈국은 병조에 대해선 사체가 자연 구별되는데, 대장이 어떻게 곤장 추고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이완을 추고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 일은 나온 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병조에서 거론하는 일이 없었으니, 대장이 추고하기를 청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p> <p>하자, 이태연이 아뢰기를,</p>	<p>則請推兵郎可，大將則不可。浼之事，曾所未有也。” 上曰：“大將推考，兵郎先罷後推。”</p>
--	---	---

	<p>“훈국의 도제조는 병조의 낭관을 추고하라고 청할 수 있으나 대장은 청할 수 없습니다. 이완의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대장은 추고하고 병조 낭관은 파직한 다음에 추고하라.”</p> <p>하였다.</p>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15일(갑신) 3번째기사</p>	<p>상이 침을 맞은 후 약방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때 상이 핵환(核患)을 앓아 누군가 현삼주(玄參酒)가 핵환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다고 권하자, 상이 일렀다.</p> <p>“비록 좋은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입에도 못 대니 어찌겠는가.”</p>	<p>○上受鍼後，引見藥房諸臣。是時，上有核患，或勸玄參酒最宜治核，上曰：“雖是良方，酒不能近口，奈何？”</p>

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24일(계사)
2번째기사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도승지 오정위(吳挺緯)가 아뢰기를,

“지난번 노인들을 우대하는 일에 은혜를 베푸셨을 때 신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므로 저희 모자와 형제들이 머리를 맞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신은 감격스러운 마음에 다시 구구한 생각이 있기에 감히 황궁하게도 진달합니다. 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은 나이가 74세나 된 원로 대신이나 현달한 자식이 없는 연고로 은전(恩典)을 받지 못하여 바깥의 의논이 모두들 흠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전 경력(經歷) 김경(金炯)은 바로 인조께서 잠저에 계실 때의 친구인데 나이는 늙고 자식이 없어 의지할 곳이 없으니, 역시 성상께서 마음쓰셔야 할 사람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경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을미생으로 바로 인조와 동갑입니다.”

하였다. 오정위가 아뢰기를,

“동지(同知) 홍헌(洪憲)은 인조조의 시종신으로 금년 나이가 84세인데도 참여하지 못하였기에, 아울러 아뢰입니다.”

引見大臣、備局諸臣。 都承旨吳挺緯曰：“頃日推恩優老之時，臣忝蒙異數，母子兄弟，聚首感泣。 以臣感激之心，復有區區之懷，惶恐敢達。 領府事李景奭年今七十四，元老大臣，以無貴子之故，未蒙恩典，外議皆以爲欠缺。 前經歷金炯，卽仁祖潛邸時故人，年老無子，靡所依歸，亦聖上軫念也。” 上曰：“炯年歲幾何？” 鄭太和曰：“年乙未生，卽仁祖同甲也。” 挺緯曰：“同知洪憲，以仁祖朝侍從之臣，年今八十四，而不得與焉，竝此仰達。” 太和曰：“武弁中，亦有父母年老之人，而不得均荷恩典，不無缺然之心云矣。” 上曰：“當初武臣，不爲一體抄啓，乃該曹不察之致。 曾經營將以上人，令該曹更抄以啓。 予於領府事，亦嘗有意，固欲言及，而未果矣。 紬帛食物，從優題給。 炯特爲加資，優給食物。 憲亦題給食物。” 金佐明曰：“靖社功臣，只有二三人，具仁壑，則纔已加資。 咸陵君李灑年老辭位，恬退可尙，累乞致仕，朝廷不許，以無貴子，不得蒙優老之典矣。” 太和曰：“臣與之同閤，備知其人。 不但廉節，內行亦純，

	<p>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p> <p>“무신 가운데도 부모가 연로한 자가 있는데 균등하게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실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당초에 무신을 일체로 뽑아 아뢰지 않은 것은 해조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소치이다. 일찍이 영장(營將) 이상을 지낸 사람을 해조로 하여금 다시 뽑아서 아뢰게 하라. 내가 영부사에 대해서도 일찍이 생각이 있어서 참으로 그에 대해 언급하고 싶었으나 말하지 못하였다. 명주와 비단 및 음식물을 넉넉하게 지급하라. 김경은 특별히 가자하고 넉넉하게 음식물을 주라. 홍헌에게도 음식물을 지급하라.”</p> <p>하였다. 김좌명이 아뢰기를,</p> <p>“정사 공신(靖社功臣)은 단지 두세 사람만 있는데, 구인기(具仁璽)는 얼마 전에 가자하였습니다. 함릉군(咸陵君) 이해(李漈)는 나이 들어 직을 사양하였으니 조용히 물러남이 가당한데, 여러 차례 치사(致仕)를 청하였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며, 현달한 아들이 없어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p> <p>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신은 그와 같은 마을에 살아서 그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렴할 뿐</p>	<p>多有長處，年今七十八，辭祿家食久矣。”上曰：“漈資爲何階？”太和曰：“崇祿也。”上曰：“今加一階，則當爲府院君乎？”對曰：“然。古者年老致仕，則使之奉朝賀，亦給常祿。”上曰：“所謂奉朝賀，何謂也？”對曰：“古者年老宰臣，雖不能奉職行公，例給三品祿以優之，此之謂奉朝賀也。”挺緯曰：“近來致仕之法久廢，特許其請，以勵廉隅，亦豈非朝廷之美事乎。”上曰：“漈氣力如何，至於不能奉職歟？”太和曰：“氣力則尙康健矣。”上曰：“加資，食物題給可也。”</p>
--	--	--

	<p>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행실도 깨끗해 많은 장점이 있으며, 나이가 지금 78세인데 녹봉을 사양하고 집의 쌀을 먹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해의 자급이 어느 품계인가?”</p> <p>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승록 대부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지금 한 자급을 가자하면 부원군(府院君)이 되는가?”</p> <p>하자, 정태화가 대답하기를,</p> <p>“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 치사하면 봉조하(奉朝賀)하게 하였으며, 또한 정상적으로 녹봉을 주었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른바 봉조하란 무엇을 말하는가?”</p> <p>하자, 정태화가 대답하기를,</p>	
--	--	--

	<p>“예전에 나이 든 대신은 비록 직무를 보면서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오래 3품의 녹봉을 주어 우대하였는데, 이것을 봉조하라고 합니다.”</p> <p>하니, 오정위가 아뢰기를,</p> <p>“근래에는 치사하는 법이 폐해진 지 오래되었으니, 특별히 그의 청을 들어주어 엽치의 도리를 격려시키는 것도 어찌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이해의 기력은 어떠한가? 직무를 보지 못할 지경인가?”</p> <p>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기력은 아직도 건강합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가자하고 음식물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p> <p>하였다.</p>	
--	---	--

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2월 24일(계사) 3번째기사	경기 백성이 크게 굶주려 죽을 끊어서 진구하였다.	○畿民大饑，設粥以賑之。
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3월 7일(을사) 4 번째기사	예조가 요사스러운 기운이 사라지고 측후(測候)하는 것도 정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늘부터 정전(正殿)에 다시 입어하고 상선(常膳)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상이 일렸다. “아된 대로 시행하되,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널렸고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항상 슬퍼 밥을 먹어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무슨 마음으로 상선을 회복하겠는가.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라.”	禮曹以氛祲既滅，測候又停，請自今日，還御正殿復常膳。上曰：“依啓施行，而每聞餓殍載路，民生顛連之說，心常慘怛，食不下咽，其將何心，復常膳乎。其秋之待。”
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4월 13일(신사) 1번째기사	쌀과 콩 각 1만 곡(斛)으로 경기 고을의 기민을 구제하고 남쪽에서 운반해 온 쌀 4천 곡으로 충청도와 황해도 두 도의 기민을 구제하라고 명하였다.	辛巳/命以米太各一萬斛，賑畿邑飢民，以南運米四千斛，賑忠清、黃海兩道飢民。
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4월 24일(임진)	문신 당상 이상과 당하 시종신 및 무신으로 일찍이 관수(關帥) 이상을 지낸 자의 부모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 옷감과 음식물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文臣堂上以上及堂下侍從及武臣曾經關帥以上人之父母年七十以上者，賜衣資食物有差。

2번째기사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4월 28일(병신) 1번째기사</p>	<p>이때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잇따라 죽었는데, 천연두와 홍역으로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경성의 5부에서 죽었다고 보고한 자가 9백여 인이었는데, 실제로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의관으로 하여금 약을 가지고 가 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p>	<p>丙申/時八道癘疫大熾，死者相繼，而以痘疫，紅疫死者尤多。京城五部報死九百餘人，而其實則不可勝計。命令醫官，持藥以救之。</p>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5월 12일(기유) 1번째기사</p>	<p>남쪽에서 운반해 온 쌀 1만 3천 석을 도성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였다.</p>	<p>己酉/命以南運米一萬三千石，分糶都民。</p>
<p>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5월 13일(경술) 1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함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 및 삼사를 인견하였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p> <p>“대간은 십분 잘 가려서 임용해야 합니다. 소결(疏決)할 때 이동로가 집의로서 입시하여 살인한 죄수인 이세공(李世恭)을 풀어주기를 청하였는데, 어찌 이와같은 대간이 있단 말입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나 중한 벌을 내려 뒷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파직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먼저 법을 무너뜨리다니, 실로 뒤 폐단에 관계가 된다. 파직하라.”</p> <p>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p>	<p>庚戌/上御養心閣，引見大臣、備局諸臣、三司，左相許積曰：“臺諫當十分擇任也。疏決時李東老，以執義入侍，請放殺人罪囚李世恭。豈有如此臺諫乎？事雖既往，宜施重罰以徵後。請罷職。”上曰：“執法之官，先自壞法，實關後弊。罷職。”積又曰：“聞李滄之言，捕盜廳有窺伺之事，而有一臺官，捉致本廳下人，使之亟寢窺伺，反治呈狀人云。亦豈有如此臺官乎。”上曰：“誰也。”對曰：“崔文湜而今不在臺職矣。”上曰：“事極駭異，文湜先罷後推。”積曰：“臣於前日，以絕去私意，可做國事仰達矣。近聞以信川於義宮屯民，被侵於船格，本郡鄉所</p>

	<p>“이완(李浣)의 말을 듣건대 ‘포도청에서 몰래 엿보는 일이 있는데, 어떤 대관이 본청의 하인을 잡아다가 속히 몰래 엿보는 일을 정지하게 하고 도리어 정당한 사람을 치죄하였다.’고 합니다. 어찌 이와 같은 대관도 있단 말입니까.”</p> <p>하니, 상이 누구냐고 물었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최문식(崔文湜)인데 지금은 대간의 직에 있지 않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일이 몹시 놀라우니 최문식을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라.”</p> <p>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신이 지난번에 사사로운 뜻을 끊어 버려야만 국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진달하였습니다. 요즈음 듣건대 신천(信川)의 어의궁(於義宮) 둔전 백성이 선격(船格)들에게 침해를 당하자 본군 향소(鄉所)의 7인을 경기에 옮겨 가두고 5차례나 형신하였다고 합니다. 둔전 백성을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죄주어야 하나 본도로 하여금 죄주게 하면 충분합니다. 하필 옮겨 가둔단 말입니까. 죄인들의 자녀가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소리가 듣기에 애처롭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미 형벌을 시행하였으니 풀어주라.”</p>	<p>七人，利囚京畿，受刑五次云。 侵役屯民，固可罪，令本道科罪足矣。 何必移囚。 罪人等子女，號冤訴悶，有惻聽聞。” 上曰：“既已施刑放送。” 正言閔宗道請還收賞加賞格，上不從。 大司憲閔鼎重曰：“年年論賞有若應行者然，揆諸事理，實甚未妥。 臺官如是爭執，而不從者，何也？” 上曰：“賞格與賞加有異，而併請還收，予所未曉也。” 至是鼎重知上意，只請還收賞加及子弟除職之命，上即從之。 又啓：“賑穀之劃給畿邑，使之分糶，實出於軫恤饑荒之意。 而今聞各邑守令，除出民結應給之數，私與在京之人，民情怨怒，謗言喧傳。 爲字牧者，奪飢民口吻之資，以酬相識者顏面之情，其心可惡，其事可駭。 不但爲循私蔑法而已。 請令本道監司，一一摘發啓聞科罪。” 上從之。 後竟不得摘發，監司張善激啓聞待罪。</p>
--	--	---

	<p>하였다. 정언 민종도(閔宗道)가 상가(賞加)와 상격(賞格)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대사헌 민정중이 아뢰기를,</p> <p>“해마다 논상하기를 응당 행해야 할 것처럼 하고 있으니, 사리로 헤아려 볼 때 실로 몹시 타당치 않습니다. 대관이 이와 같이 쟁론하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상격과 상가는 차이가 있는데 아울러 환수하기를 청하다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p> <p>하였다. 이때 와서 민정중이 상의 뜻을 알아차리고 단지 상가와 자제들에게 직을 제수하라는 명만 환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즉시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진흙할 곡식을 경기 고을에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나누어주게 한 것은 실로 기근을 진념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건대 각 고을의 수령들이 민결(民結)에 따라 응당 주어야 할 숫자를 빼어내어 사사로이 서울에 사는 사람에게 주었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여 비방하는 말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령으로 있는 자가 굶주린 백성들이 먹을 것을 빼앗아 서로 아는 자에게 생색을 낼 밀천으로 삼고 있으니, 그 마음씀이 가증스럽고 일이 몹시 놀랍습니다. 이 일은 사사로움을 따르고 법을 무시한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 본도 감사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하여 계문한 다음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뒤에 끝내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감사 장선정이 계문하고</p>	
--	---	--

	대죄하였다.	
현종 14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5월 21일(무오) 1번째기사	한성부가 방민(坊民)들의 16가지 폐단을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 방민들의 폐단이 아주 심하였는데 마침 참봉 박승후(朴承後)란 자가 소를 올려 진달하자 상이 한성부에 명하여, 오부(五部)의 관원을 불러다가 방민들이 응당 해야 할 역(役) 이외의 폐단에 대해 상세히 물은 다음 아뢰고서 처리하게 하였다. 이에 이완(李浣)이 판윤이 됨에 미쳐서 조목별로 아뢴 것이다.	戊午/漢城府枚舉坊民十六弊，請令廟堂稟處，上從之。時坊民之弊滋甚，適參奉朴承後者陳疏，上命漢城府，招致部官，詳問坊民應役外弊端，稟啓處置。及李浣爲判尹，條列以啓。
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6월 6일(계유) 1 번째기사	충청도 예산(禮山) 등 스물 두 고을의 나이 90 이상인 노인들에게 가자하고 먹을 거리를 내렸다.	癸酉/忠淸道禮山等二十二邑，老人年九十以上者，加資賜食物。
현종 15권, 9년(1668	장령 이휴징(李休徵) 등이 논핵하기를,	○掌令李休徵等：“劾春川府使柳炳然，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6월 19일(병술)
2번째기사

“춘천 부사(春川府使) 유병연(柳炳然)은 자기 휘하의 진홀 감색(賑恤監色)이 형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서 도사(都事)를 업신여기고 일처리를 어그러지게 하였습니다. 사직하는 장계를 먼저 올려 능멸하고 날조하였는데, 그 말을 꾸며 비방하고 모함한 정상이 참으로 매우 놀랄 만합니다. 사관에서 삭제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아뢰니 윤택하였다. 또 아뢰기를,

“삼가 최문식(崔文湜)이 세 번째 항거한 추함(推緘)을 보건대, 포도청의 규찰을 정파한 데에 관한 말은 모두 맹랑하게 되었습니다. 문식이 대간과 시종의 반열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범한 바가 있는데도 왜곡되게 죄를 면할 계책을 하면서 꾸며대는 말이 이러하였다면 분석하여 논핵하는 것은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신들이 본부에 모였을 때에 여러 아전들에게 물어 보았는데, 모두들 한결같이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당일 차를 마실 때에, 지사 유혁연(柳赫然)의 상소 가운데 끌어댄, 목면을 도둑맞은 물주 함계성(咸繼聲)을 불러 물어보고, 그가 한 말을 가지고 문식의 함사를 참고해 보니, 대개 문식이 이때에 민진익(閔震益)을 논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허실을 자세히 알고자 하여 계성에게 물은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 생각건대, 문식이 연좌된 바가 대관 때의 일이었으니 이미 체직되었다는 이유로 일반 관리와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진래 추고(進來推考)했다가 또 항거를 한다면 금부에 이송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怒其賑恤監色被刑，慢蔑都事，舉措乖悖。先呈辭狀，侵侮搆捏，其造謗傾陷之狀，誠極可駭。請削版。”上不從，屢啓乃允。又啓：“臣等伏見崔文湜三度抗拒推緘，則捕盜廳窺伺停罷之說，都歸之孟浪。文湜以出入臺侍之人，苟有所犯，而曲爲免罪之計，有此文飾之言，則分析論劾，在所不已。故臣等於本府之坐，問於諸吏，則明其不然，如出一口。又於當日茶時，招問知事柳赫然疏中所引木綿見偷物主咸繼聲，以其所言，參考文湜緘辭，則蓋文湜，於是有閔震益論啓之事，而欲詳其虛實，有問於繼聲之舉耳。仍念文湜所坐，乃是臺官時事，則不可以已遞之故，而視同庶官。今若進來推考，而又爲抗拒，則移送禁府者例也。初出於臺官時論事慎重之意，而終以訛傳之言，至於就理，則虧傷國體，莫此爲甚。若使憲府捕盜廳下輩及見偷物主，一處對辨，則其間眞僞，自可立現。請令有司，明查處置，還收文湜進來推考之命。”上答曰：“再三抑揚，語意模糊，予未知其主意也。然則當初，何請進來二字於啓目之末耶？尤可笑

	<p>처음에는 대관 때에 논사를 신중히 하자는 뜻에서 나왔는데 끝내 잘못 전해진 말을 가지고 다스리기까지 한다면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키는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헌부와 포도청 하배 및 물건을 도둑맞은 물주를 한 곳에서 대질시켜 분명하게 한다면 그간의 진위가 즉시 밝혀질 것입니다. 유사로 하여금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고, 문식을 진래 추고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p> <p>하니, 상이 답하기를,</p> <p>“두 번 세 번 이말 저말을 하여 말 뜻이 모호하므로 그 주장하는 뜻을 모르겠다. 그렇다면 당초에 무엇 때문에 진래라는 두 자를 계목 끝에서 청했었는가? 더욱 우스운 일이다.”</p> <p>하고, 따르지 않았다. 지평 민종도(閔宗道)가 많은 말을 하며 피험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상이 답하기를,</p> <p>“이 피험하는 글을 보건대, 구차스러운 뜻을 끝내 스스로 엄폐하지 못하였다. 내 매우 애석하게 여긴다.”</p> <p>하였다. 장령 이휴징이 이튿날 이것을 이유로 피험하였다. 간원이 처치하여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이휴징과 민종도가 또 피험하였다. 간원이 또 출사시키기를 청하였다. 이때에 문식이 규찰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실상이 없었지만 상이 이미 대신의 말을 들은 데다 금부로 이송하기 전에 대관이 일에 앞서 쟁집하여 구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답이 이와 같았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p>	<p>也。” 不從。 持平閔宗道費辭避嫌，明其不然。 上答曰：“觀此避辭，苟且之意，終未自掩，予甚惜之。” 掌令李休徵翌日以此避嫌。 諫院處置請出，而休徵、宗道又避。 諫院又請出時，文湜之令寢窺伺，未必實狀，而上既納大臣之言，未及移禁府，而臺官先事爭執營救，故答批如此。 屢啓不從。 文湜竟下吏。</p>
--	---	--

	따르지 않았다. 문식은 결국 법을 맡은 관리에게 내려졌다.	
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6월 20일(정해) 1번째기사	상이 정전(正殿)으로 다시 돌아오고 음식의 가짓수를 원래대로 회복하였다. 예조가 29일이 입추절이라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丁亥/上還御正殿，復常膳。禮曹以二十九日，爲立秋節啓請也。
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7월 1일(무술) 1 번째기사	상이 양심합(養心閣)에서 평안 감사 이태연(李泰淵)을 인견하였다. 상이 본도의 군사 행정이 정밀하게 되어 있는지와, 인심이 순후한지와, 논밭이 기름진지와, 농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이태연이 대답한 뒤에 아뢰기를, “본도의 수령은 칙사(勅使)의 행차를 접대하는 것을 꺼려하여 으레 대부분 피하기 때문에, 모두 용렬한 사람들로 구차스럽게 충당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문관이나 남행, 무관을 따지지 말고 잘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戊戌朔/上引見平安監司李泰淵于養心閣。上問本道兵政之踈密、人心之淳薄、田土之膏瘠、農事之得失。泰淵仰對後，言于上曰：“本道守令，憚於接待勅行，例多厭避，皆以庸雜之類苟充。今後則請勿論文南武擇差。”上曰：“言于該曹。”將退，上曰：“邊地防禁，最可慮也。採參等禁令，別加嚴飭。”對曰：“敢不惟命。”都承旨李殷相曰：“故相臣洪命夏一生清貧，死未久，而貧不能祭矣。”上命賜祭

	<p>“해조에 말하라.”</p> <p>하였다. 물러나올 무렵에 상이 이르기를,</p> <p>“변방의 금령(禁令)에 대한 일이 가장 걱정이 된다. 삼(蔘)을 캐는 일 등에 대한 금령은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라.”</p> <p>하니, 답하기를,</p> <p>“분부대로 하겠습니다.”</p> <p>하였다. 도승지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p> <p>“고 상신(相臣) 홍명하(洪命夏)는 일생을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가난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제사지내는 데에 쓸 물품을 내려주라고 명하고, 또 녹봉(祿俸)을 내려주어 3년 동안 거두지 말라고 명하였다.</p>	<p>需, 且命祿俸, 限三年勿收。</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7월 1일(무술) 2 번째기사</p>	<p>평안도의 굶주린 백성이 3만 8천 3백 40여 명이었는데, 전후로 진구한 곡식이 1만 1천 3백여 석이었다.</p>	<p>平安道飢民三萬八千三百四十餘人, 前後賑穀之費, 一萬一千三百餘石。</p>
<p>현종 15권, 9년(1668</p>	<p>진구하고 남은 쌀 2천여 석을 시민들에게 빌려주었다. 민원을 따른 것이었다.</p>	<p>發賑餘米二千石, 分糶市民, 從民願</p>

<p>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7월 2일(기해) 2 번째기사</p>		<p>也。</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7월 14일(신해) 2번째기사</p>	<p>상이 침을 맞은 뒤에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강도(江都)의 곡식은 나누어 준 것이 이미 많으므로 모곡(耗穀)을 감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흉년에는 본색(本色)만 바치게 하는 것도 실제적인 혜택이 됩니다.”</p> <p>하였다. 조복양이 이 의논을 힘써 주장하고, 민정중도 찬성하자 상이 따랐다. 상이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휘(金徽)에게 이르기를,</p> <p>“생각한 바가 있으면 아뢰도록 하라.”</p> <p>하니, 김휘가 아뢰기를,</p> <p>“신은 본디 일을 잘 모릅니다. 가보고 난 뒤에도 편리한지의 여부를 자세히 알기 어려울 것인데, 지금 어떻게 멀리서 그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려간 뒤에, 큰일일 경우에는 마땅히 올라와서 여쭙어 결정할 것이고, 작은 일일 경우에는 계문하여 의논을 여쭙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上受鍼後，引見大臣、備局諸臣。領相鄭太和曰：“江都之穀，分散已多，不宜減耗，而當此荒歲，只捧本色，亦爲實惠矣。”趙復陽力主是議，閔鼎重又贊之，上從之。上謂江華留守金徽曰：“如有所懷進啓。”徽曰：“臣素不解事。往見之後，猶難詳知便否，今何以遙度其利害乎。下去之後，大事當上來稟定，小事則啓聞稟議未晚矣。”上曰：“然。”鼎重言于上曰：“賑廳所用米布，有餘儲。若別備十萬石，儲置都下，名以軍餉，可爲不時之需也。”上問便否。左右皆曰可，上乃許之。後築倉於軍資倉舊基，而無穀以儲矣。趙復陽、閔鼎重等，請以朴世采、尹拯、申碩蕃，備擬臺閣，上從之。</p>

	<p>“그래라.”</p> <p>하였다. 민정중이 아뢰기를,</p> <p>“진청(賑廳)에 쓰고 남은 미포(米布)가 있습니다. 별도로 10만 석을 갖추어 서울에 군항(軍餉)이라는 명목으로 저축해 두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편리 여부를 물었다. 모두들 옳다고 하자 상이 허락하였다. 뒤에 군자창(軍資倉)의 옛터에다 창고를 지었는데, 저축할 곡식이 없었다. 조복양, 민정중 등이 박세채(朴世采), 윤증(尹拯), 신석번(申碩蕃) 등을 대각에 갖추어 의망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7월 16일(계축) 2번째기사</p>	<p>명나라 복건성(福建省) 장주부(漳州府) 사람이 경상도 곡포(曲浦) 앞바다에 표류해 와서 뿔나무와 물을 찾아 신고 갔다. 감사가 계문하였다.</p>	<p>皇明福建省漳州府人漂到慶尙道曲浦前洋, 索柴水以去, 道臣以聞。</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7월 21일(무오) 5번째기사</p>	<p>이달 7일에 당선(唐船) 한 척이 표류하다가 방답(防踏) 지경의 안도(安島) 앞포구에 들어와 정박했는데, 배의 제도가 우리 나라의 전선(戰船)과 크기가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머리가 길고 수염이 있었으며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대략 3, 4십 명쯤 되었는데, 나무를 하고 물을 길고는 바로 배를 띄워 떠났다. 전라 좌수사가 계문하였다.</p>	<p>本月初七日, 唐船一隻, 漂到防踏地境安島前浦, 船制大如我國戰船。 人皆有髮有鬚, 皆着黑衣。 約三四十人, 取柴汲水, 旋即發船而去。 全羅左水使以聞。</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8월 7일(계유) 1 번째기사</p>	<p>형조의 금제조(禁制條)가 이루어졌다. 모두 8개 조항인데, 소와 말을 도살하는 일[牛馬屠殺], 술을 금하는 일[酒禁], 난전에 대한 일[亂塵], 상놈이 성안에서 말을 타는 일[常漢城內騎馬], 신사의 고중에 대한 일[神祀高重], 조운선에 대한 일[漕船], 음녀에 대한 일[淫女], 성안의 승려들에 대한 일[城中僧人] 등이다. 한성부의 금제조가 이루어졌다. 모두 6개 조항인데, 각전의 고중에 대한 일[各廳高重], 소와 말고기를 금지하는 일[牛馬肉禁], 네 산의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일[四山松禁], 난전에 대한 일[亂塵], 되와 말의 크기를 규제하는 일[大小升斗], 동·서활인서의 무녀를 적간하는 일[東西活人署巫女摘奸] 등이다.</p>	<p>癸酉/刑曹禁制條成。凡八條，牛馬屠殺、酒禁、亂塵、常漢城內騎馬、神祀高重、漕船淫女、城中僧人。漢城府禁制條成。凡六條，各廳高重、牛馬肉禁、四山松禁、亂塵、大小升斗、東西活人署巫女摘奸。</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8월 27일(계사) 2 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도의 전세(田稅)를 줄이고자 하는데 어떤가?”</p> <p>하니,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이민적(李敏迪)이 감사로 있을 때에 2두(斗)를 줄였고, 민유중(閔維重)이 부임한 뒤에 또 1두를 줄였습니다. 어찌 계속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꼭 줄이시겠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쇠마 인부(刷馬人夫) 및 진상가(進上價)를 감사로 하여금 숫자를 정하여 개록해서 계문하게 하여 줄이는 바탕을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호조 판서 이경억(李慶億)이 안흥(安興) 앞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는 폐단에 대해서 극력 말하고 인하여 안흥 뒤쪽에 항구를 파서</p>	<p>上引見大臣、備局諸臣。上曰：“本道田稅欲減捧，何如？”左相許積曰：“李敏迪爲監司時，減二斗，閔維重莅任後，又減一斗。何可續續減除乎。無已則有一焉。刷馬人夫及進上價，令監司定數開錄啓聞，以爲減除之地何如？”上從之。戶曹判書李慶億盛稱安興前洋敗船之弊，因請掘鑿安興後港，以便漕運之路。上問左右，積曰：“若能鑿成，則誠爲萬世之功。如趙復陽曾居此地，可知其利害便否。”復陽曰：“臣居在近地，慣聞民言。昔年不善鑿掘，以致敗功。蓋潮水往來處，故必須先掘高處，以作深港，然後始爲</p>

	<p>조운하는 길을 편리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상이 좌우에게 물으니, 허적이 아뢰기를,</p> <p>“파서 이를 수만 있다면 참으로 만세의 공이 될 것입니다. 조복양이 일찍이 그 땅에 있었으니, 이해와 편부를 알 것입니다.”</p> <p>하자, 조복양이 아뢰기를,</p> <p>“신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말을 익히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착굴을 잘못하여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대개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인데, 반드시 높은 곳을 먼저 파서 깊은 항구를 만들고, 그런 뒤에 비로소 조수를 타고서 그 막았던 곳을 터주면 통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통하게 되면 절로 포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p> <p>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올해 잃은 세미(稅米)가 무려 2천 5백 석이나 됩니다. 만약에 이 숫자를 덜어내어 일을 한다면 어찌 이루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p> <p>하고, 이조 참판 민정중이 아뢰기를,</p> <p>“이 일은 촉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해를 두고 해나가면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乘潮，決其防處，則可以通矣。 旣通海水，則自然成浦矣。” 積曰：“今年所失稅米，多至二千五百石。 若捐此數，而興役，則豈有不可成之理乎。” 吏曹參判閔鼎重曰：“此事不可促迫也。 期以數年，自可成矣。” 上曰：“戶判率監司往審形勢。” 慶億曰：“與復陽、鼎重，偕往見之何如?” 上許之。</p>
--	---	---

	<p>“호관이 감사를 데리고 가서 형세를 살피도록 하라.”</p> <p>하였다. 이경억이 아뢰기를,</p> <p>“조복양과 민정중도 함께 가서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허락하였다.</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8월 29일(을미) 3번째기사</p>	<p>사간 김정, 헌납 송창 등이 아뢰기를,</p> <p>“조정에서 관서의 향곡(餉穀)을 작목(作木)하여 상납하라는 명을 내려, 그 당시의 감사 이정영(李正英)이 본도의 쌀 10만 석을 작목하여 올려 보냈는데, 그 가운데 직로(直路)와 연해(沿海) 각읍의 쌀 2만 석으로 사들인 목면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뒷날 불시의 수요가 있을까 염려하여 다시 작미(作米)하여 숫자를 맞추어 회록(會錄)하게 하였습니다. 정영은 이에 그 목면으로 사사로이 상인 모리배들과 함께 값을 줄여 은으로 바꾸어, 구별하지 않은 채 물려내려오던 향은(餉銀)의 전체 숫자 가운데 엮어 기록하였습니다. 외람되고 난잡함이 이미 극도에 이르러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많은 군항(軍餉)이 장차 그 밑천을 잃게 되어 관서 지방에 난처한 폐단이 되게 하였으니, 그간에 한 소행이 참으로 매우 놀랍습니다. 판윤 이정영을 우선 파직하고, 그 은화의 실</p>	<p>○司諫金澄、獻納宋昌等啓曰：“朝家有發賣關西餉穀作木上納之令，其時監司李正英，以本道米十萬石，作木上送，而其中直路及沿海各邑米二萬石所質之木，則朝家爲慮他日不時之需，使之還爲作米，准數會錄矣。正英乃以其木，私與商賈牟利之輩，減價換銀，不爲區別，混同載錄於流來餉銀都數之中。濫雜已極，人言甚多。許多軍餉，將失其本，遂爲關西難處之弊，其間所爲，誠極可駭。請判尹李正英姑先罷職，其銀貨實數及商賈姓名，令本</p>

	<p>제 숫자 및 상인들의 성명을 본도로 하여금 분명하게 조사하여 계문하게 해서 처리할 바탕을 삼으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우선 추고하라.”</p> <p>하였다. 또 논핵하기를,</p> <p>“예조 정랑 이태서(李台瑞)는 평소에 하는 짓마다 웃음거리가 되니, 예조의 낭관에 알맞지 않습니다. 체직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道明查啓聞，以爲處置之地。” 上曰：“姑先推考。” 又劾：“禮曹正郎李台瑞，平居所爲，動輒貽笑，不合禮部之郎。請遞。” 上從之。</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8월 29일(을미) 4번째기사</p>	<p>행 대사간 정만화(鄭萬和)가 인피하기를,</p> <p>“신이 이정영을 교대한 관원으로서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연달아 흉년을 만나 본미(本米)를 다시 갖추지 못하였고, 체직되어 돌아올 때에는 전장 문서(傳掌文書)에 나누어 놓지 못하였으니, 그저 대충 처리한 책임을 신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논핵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찌 감히 이 의논에 가타부타 할 수가 있겠습니까.”</p> <p>하고, 인피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사간 김징이 처치하기를,</p> <p>“도로 갖추어 놓지 못한 것은 본가(本價)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만, 시종 그냥 있었으니 덮어두려고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체직시키소</p>	<p>○行大司諫鄭萬和引避曰：“臣以李正英交代之官，在任三載，連值凶荒，既未能還備本米，及其遞歸，又不能區別於傳掌文書，因循之責，臣亦難免。自劾不暇，何敢可否於此論乎。” 引避退待。 司諫金澄處置曰：“未能還備，雖緣本價之縮，終始因循，未免掩置之歸。請遞。” 上從之。</p>

	<p>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9월 2일(무술) 3 번째기사</p>	<p>호조 판서 이경억 등이 안흥(安興)의 포구를 파는 일의 형세를 살펴보고 돌아 왔다. 상이 인견하고 묻기를, “포구를 파는 일의 편리 여부가 어떠하던가?” 하니, 경억이 탐전에다 도형을 펴놓고 아뢰기를, “만약 이 포구를 파게 되면 조운하는 배가 안흥으로 돌아와야 하는 폐단이 없이 바람을 타고 하루아침에 강화(江華)에 도착하게 될 것이니, 어찌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민정중이 아뢰기를, “급히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기다리면 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세조 대왕께서 안철손(安哲孫)을 보내어 가서 보게 했는데, 철손이 팔 수가 없다고 하자, 또 대신인 신숙주(申叔舟) 등을 보내어 보게 하였더니 팔 수 있 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p>	<p>戶判李慶億等看審安興掘浦形勢而 歸。上引見問曰：“掘浦便否如何?” 慶億手披圖形於榻前曰：“若掘此浦， 則漕船無周廻安興之弊，乘風一朝而到 江華，豈不便好乎。”鼎重曰：“若欲 急就則不可。若磨以歲月，曠日持久， 則自然可成矣。”積曰：“世祖大王送 安哲孫往見，則哲孫之言曰：‘不可掘’， 又遣大臣申叔舟等見之，則曰可掘。 然而終不得爲之云矣。”鼎重曰：“若 勿動浮言，勿計小弊，從容料理，何難 有成。”上曰：“令監司料理，啓稟行 之。” 【謹按掘此浦，而漕路順，則自祖宗 朝，當先爲之，奚待乎今日哉。唯其 潮水往來，掘之甚難，隨掘隨填，徒費 功役，故自古有此論，而不得爲之者， 此也。近來此論，始發於宋時烈，而 慶億、鼎重等，贊助之甚力，故朝紳皆 知其決不可成，而畏時烈輩之氣勢，莫</p>

	<p>하고, 정중이 아뢰기를,</p> <p>“헛된 말에 동요되지 말고 작은 폐단을 따지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나간다면 일을 이루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감사로 하여금 잘 생각해서 계품하여 행하게 하라.”</p> <p>하였다.</p> <p>삼가 살피건대, 이 포구를 파서 조운(漕運)하는 길이 순조로와질 수 있었다면 조종조에서 우선적으로 했지 무엇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다렸겠는가. 그러나 이 곳은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곳이라서 파기가 매우 어렵고, 파내면 금방 메꾸어져서 공력만 낭비되었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런 의논이 있었는데도 파지 못했던 것이었다. 근래에 이 의논이 송시열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경역과 정중 등이 힘껏 동조를 하였다. 때문에 조정의 신료들이 모두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송시열 무리의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그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이 없으니, 통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p> <p>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p> <p>“목화(木花)가 흉년이 들어서 포보(砲保)가 가포(價布)를 갖추어 납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흙청에서 쌀을 갖다가 쓰고 진흙청에 남아 있는 목면을</p>	<p>敢矯其非，可勝痛哉。】</p> <p>維重曰：“木花失稔，砲保無備納之勢。自賑恤廳，取米以用，而以賑廳留在木，移送都監何如？”上許之。維重曰：“繼后事至重，外方之人，或有不呈禮曹，擅自立后者。概道路既遠，難於上京呈狀，仍成此弊。今則自本道收合列錄，啓聞施行，而其作紙，則送于禮曹何如？”積曰：“父子之定，人倫之大者。豈可使本道啓聞。不可許也。”</p>
--	---	---

	<p>도감으로 이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민유중이 아뢰기를,</p> <p>“후사를 잇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외방에 더러 예조에 정장(呈狀)을 올리지 않고 멋대로 후사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길이 멀어 서울에 와서 정장을 올리기가 어려워 이러한 폐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도에서 거두어 모아 열록(列錄)하고 계문하여 시행하되 그 작지(作紙)는 예조로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하니, 허적이 아뢰기를,</p> <p>“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정하는 것은 인륜 가운데에서도 중대한 일입니다. 어찌 본도로 하여금 계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p> <p>하였다.</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p>	<p>이조 판서 송준길이 조정에 나왔다. 송준길이 행궁에 나아갔다가 뒤에 떨어져 남쪽으로 돌아갔는데, 상이 사관을 보내어 유지를 전했는데도 소장을 올리고</p>	<p>○吏曹判書宋浚吉赴朝。浚吉來詣行宮，落後南歸，上遣史官傳諭，而陳疏</p>

<p>7년) 9월 12일(무신) 2번째기사</p>	<p>오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세자의 병이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성밖에 도착하여 상소하여 스스로 논열하면서 본직을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상이 답하기를,</p> <p>“어저께 경의 상소를 보고 마음에 매우 놀랐었는데, 오늘 경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근심하는 가운데에 얻은 바가 있는 듯하다. 행궁에서 정녕하게 나눈 이야기를 경은 기억하고 있는가? 상소 끝에 한 말이 또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어찌 억지로 직임을 떠맡길 수가 있겠는가. 본직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대 뜻대로 따라줄 것이니, 안심하고 들어와서 나의 소망에 부응하라.”</p> <p>하고, 이르기를,</p> <p>“이조 판서가 성밖에 와 있다고 하니, 해조로 하여금 쌀과 고기를 잇대어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p>	<p>不來，至是聞世子疾篤，來到城外，上疏自列，乞免本職。上答曰：“昨觀卿疏，予心愕然，今聞上來，憂慮之中，如有所得。行宮丁寧相語之意，卿能記得否？疏末之言，又出至情，何可強責以職任乎。本職當勉副焉，安心入來，以副予望。”上曰：“吏曹判書來在城外云，令該曹繼送米肉。”</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0월 5일(경오) 2번째기사</p>	<p>장령 이관징(李觀徵), 오상(吳尙)이 아뢰기를,</p> <p>“지난해의 흉년은 예전에도 드문 것이어서, 올봄에 국곡(國穀)을 나누어 꾸어준 것이 그 숫자가 예년의 몇 배가 됩니다. 또 각 해[各年]마다 받은 것을 가난하여 다 갚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올해의 농사는 비록 지난해보다는 조금 낫다고 하나 여러 해 밀린 많은 곡식을 일시에 독촉하여 받아들일 경우,</p>	<p>○掌令李觀徵、吳尙啓：“上年凶荒，前古所罕，今春國穀之分糶者，厥數倍蓰於常年。且各年所受，貧不能備納者亦多。今年農事，雖稍勝於上年，許多各穀，一時催捧，則未及卒歲，流離飢餒之狀，必無異於今春。聖明亦</p>

	<p>이 해가 다 가기도 전에, 떠돌며 굶주리는 상황이 필시 올봄과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명께서도 필시 생각이 여기에 미치시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올봄에 나누어 지급한 곡식은 절반으로 줄여서 바치게 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남은 절반을 납부하게 하면, 아무 것도 없는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잘 헤아려 품정해서 각도에 알리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必念及於此，而惻然於中矣。今春分給之穀，減捧一半，姑待年豐，使之畢納其半，則赤立之民，庶蒙一分之惠。請令廟堂，商確稟定，行會諸道。”上從之。</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0월 8일(계유) 4번째기사</p>	<p>북청(北靑)·이성(利城)·단천(端川)·길주(吉州)·명천(明川)에서 해마다 서울로 바치는 공물(貢物)의 가포(價布) 및 주(州)에 바치는 공물의 작미(作米)와 내노비, 궁노비, 각아문 노비, 사노비(私奴婢)의 공미포(貢米布)를 완전히 감면하고, 전세(田稅)로 바치는 쌀과 콩은 절반으로 줄여주고, 경성(鏡城)·회령(會寧)·안변(安邊)·덕원(德源)·문천(文川)·고원(高原)·영흥(永興)·함흥(咸興)·홍원(洪原)·삼수(三水)·갑산(甲山)에서 전세(田稅)로 내는 쌀과 콩 및 내노비, 시노비(寺奴婢), 궁노비, 각아문 노비의 공포(貢布)와 공미(貢米)를 반으로 줄이고, 사노비(私奴婢)의 공미포를 완전히 감면시켜주라고 명하였다. 이는 감사 권대운(權大運)이 재해 당한 곳을 분등(分等)하여 계문하였기 때문이었다.</p>	<p>○命全減北靑、利城、端川、吉州、明川年例京上納貢物價布及州上貢物作米，內奴婢宮奴婢各衙門奴婢私奴婢貢米布。半減田稅米太。半減鏡城、會寧、安邊、德源、文川、高原、永興、咸興、洪原、三水、甲山田稅米太及內奴婢、寺奴婢、宮奴婢、各衙門奴婢貢布貢米。全減私奴婢貢米布。以監司權大運分等被災之啓也。</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0월 8일(계유)</p>	<p>관부사 송시열이 조부(祖父)의 산소를 성소(省掃)하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고, 말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본도로 하여금 요전상(澆奠床)을 갖추어 주라고 하였다. 시열이 사양하니, 상이 답하기를,</p>	<p>○判府事宋時烈請省掃祖父墓，上許之，命給馬，令本道備給澆奠床。時烈辭之，上答曰：“此是國家常用之典，</p>

<p>7번째기사</p>	<p>“이것은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례이니, 안심하고 사양하지 말라.”</p> <p>하고, 사관을 보내어 유지를 전하게 하였다.</p>	<p>安心勿辭，遣史官傳諭。</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0월 11일(병자) 2번째기사</p>	<p>고 장령 조속(趙涑)에게 제수(祭需)를 내리고 고 대사헌 유경창(柳慶昌)의 처자(妻子)에게 먹을 것을 내리라고 명하였다. 교리 이규령이 아뢰기를,</p> <p>“조속은 청백리이고 절조가 있었는데, 죽은 뒤에 집이 가난하여 제사도 지내지 못합니다. 유경창도 청렴하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가 죽은 뒤에 자손들이 떠돌며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진념하셔야 합니다.”</p> <p>하니, 송시열이 아뢰기를,</p> <p>“이 두 신하의 일에 대해서는 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경창은 청백하기가 옛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데, 벼슬살이를 할 때에 자봉(自奉)하는 것이 매우 박하였고 감사로 있을 때에는 처자식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으니, 이것이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조속도 광해조 때에 아버가 비명에 죽자 왕부(王裒)803 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계해년 정사(靖社)할 때에 험찬한 공이 많았는데, 녹훈할 때에는 지성으로 면하기를 도모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광해가 대궐을 나갈 때에 뒤에서 칼을 들고 세 번이나 치려고 하였답니다. 사람됨이 청백하고 지조가 매우 높았는데, 서울에 있으면서도 아침 저녁 끼니를 잊지 못하였고 얼마 전에 그가 죽었는데 가난하여 제사</p>	<p>○命故掌令趙涑賜祭需，故大司憲柳慶昌妻子賜食物。 校理李奎齡曰：“涑清白有節操，身沒之後，貧不能祭。 慶昌亦以廉潔著聞，身死後，子孫流離，不免飢寒。 此皆軫念者也。” 時烈曰：“此兩臣事，臣亦熟諳。 慶昌清白，無愧古人，居官自奉甚薄，爲監司時，妻子不免飢寒，實是人所不及者。 涑當光海朝，以父死於非辜，有王裒之行。 癸亥靖社時，多有協贊之功，而錄勳之際，至誠圖免。 人言光海出闕時，自後拔劍擬刃者三。 爲人清白，志操甚高，雖在輦下，不繼朝夕，頃己身死，貧不能祭云矣。” 上乃有是命。 慶昌有苦清，人所難及，而或有不近人情者。 曾以宮官，陪昭顯世子往藩中也，世子從獵，則慶昌輒必稱病不往。 故孝宗大王惡其厭避不用， 時烈爲吏判，以此爲係節概， 力薦至大司憲而終。</p>

	<p>도 지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p> <p>하여, 상이 이 명을 하게 된 것이다.</p> <p>유경창이 청렴하고 고결한 것은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바이지만 더러 인정에 가깝지 않은 것도 있었다. 일찍이 궁관(宮官)으로서 소현 세자(昭顯世子)를 배종하여 심양에 갔을 때에, 세자가 그들을 따라 사냥을 나가면 유경창은 번번이 병을 칭탁하고 나가지 않았다. 때문에 효종 대왕이 그가 싫어서 피하는 것을 미워하여 등용하지 않았는데, 송시열이 이조 판서가 되어서는 이것을 절개에다 갖다 붙여 힘껏 천거하여, 대사헌에까지 이르렀다가 죽었다. 그러나 식자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p> <p>조속은 탁월한 지조가 있고 또 변란을 대처함에 있어 사람들이 미치지 못할 바가 있었으나, 칼을 빼어들고 찌르려고 했다는 말은 필시 조속의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비록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도 조속에게 있어서는 취할 만한 일이 아니고 또한 임금에게 아뢰일 일도 아닌데, 시열이 경망하게 진달하였으니 애석하다.</p>	<p>然識者不取。 涑有拔俗之操， 且其處變， 有人所難及， 而拔劍擬刃之說， 未必是涑之事。 雖有之， 於涑非可取事， 亦非告君之言， 而時烈率爾陳達， 惜哉。</p>
<p>현종 15권, 9년</p>	<p>관부사 송시열이 차자를 올려, 상록(常祿)을 사양하며 아뢰기를,</p>	<p>○判府事宋時烈劄辭常祿曰：“食物猶</p>

<p>(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0월 12일(정축) 2번째기사</p>	<p>“음식물을 받는 것도 마음이 편치 못한데, 또 다시 녹을 받으면 이것은 참으로 농단을 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이고 무덤 사이에서 더 얻어먹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답하기를,</p> <p>“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을 예로 대우하는 별도의 일이고 반록(頒祿)을 하는 것은 대신이 응당 받아야 할 상록이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이미 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상록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하다. 경이 이른바 농단한다는 등의 말은 어찌 그러하겠는가. 아무튼 경의 사양이 이러하니, 애써 그대의 뜻을 따르겠다.”</p> <p>하고, 사관을 보내어 유지를 전하게 하였다.</p>	<p>且難安，而又復受祿，則是直壟斷之罔利，而播間之顧他也。”上答曰：“食物云者，乃所以禮卿之別樣事，頒祿者，是大臣應受之常祿，其在事體，不可謂之已有所受，而減去常祿也明矣。卿所謂壟斷等說，豈其然哉。第卿辭至此，當勉副。”遣史官傳諭。</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0월 25일(경인) 1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함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강을 마치고 찬선 송준길이 조식잠(調息箴)을 외고 아뢰기를,</p> <p>“신이 이것을 외워서 들려드린 것은 조양(調養)하는 데 도움이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오래도록 경연을 폐하고 있다가 잇따라 경연을 여시니, 못사람들이 누군들</p>	<p>庚寅/上御養心閣，講《心經》。講訖，贊善宋浚吉誦調息箴以達曰：“臣之誦此以聞者，庶幾有補於調養也。”又曰：“久廢經筵之餘，連爲開筵，群情莫不欣悅。雖不如祖宗朝日三開筵，或連日開講，或間日爲之乃可，不然則恐無益也。”大司諫南九萬進啓曰：“臣伏見江華留守金徽上疏，則自癸卯以後，給民以小斛，收民以大斛云。</p>

	<p>기빠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조종조에서 하루에 세 번씩 경연을 열던 것처럼은 할 수 없더라도 혹 매일 경연을 열거나 혹 격일로라도 경연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p> <p>하였다. 대사간 남구만이 진계하기를,</p> <p>“신이 삼가 강화 유수 김휘(金徽)의 상소를 보니, 계묘년 이후부터 백성들에게 곡식을 지급할 때는 소곡(小斛)으로써 하고 거둘 때는 대곡(大斛)으로써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비록 조정의 명령이더라도 수령이 된 자는 마땅히 고쳐 계품하는 일을 했어야 마땅한데, 본부의 전후 관원은 단지 균형이 모자랄까만 염려하고 아래를 덜어서 위를 더해 주는 것이 그르다는 것을 모른 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를 않았으니, 일의 체모에 있어서 아주 놀랄 만한 일입니다. 계묘년 이후의 강화 유수와 경력을 모두 중하게 추고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강도(江都)에서 임인년 이전에 받아들인 곡물은 이미 소곡(小斛)을 썼습니다. 지금 만약 변통하지 않으면 적게 주고 많이 취하는 폐단이 필시 여전할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지하여 처리하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이르기를,</p> <p>“강도에서 곡자(斛子)를 개조한 것은 시임 관리가 한 일이 아니니, 경력 신승구(申嵩壽)는 죄가 없다.”</p>	<p>如此之事，雖是朝命，爲官守者，當有改稟之舉，而本府前後之官，只慮軍餉之欠縮，不知損下益上之爲非，今至六年，仍遵不改。其在事體，殊甚可駭。請癸卯以後，江華留守、經歷竝從重推考。”上從之。又啓：“江都壬寅以前所捧穀物，既用小斛。今若不變通，則寡與多取之弊，必將如前，請令該曹稟旨處置。”上從之。上曰：“江都改造斛子，非時任之事，則經歷申嵩壽無罪矣。”鄭太和曰：“宜若無罪，而未原情前，自下不敢先稟矣。”上曰：“帶職放送。”禮曹判書趙復陽曰：“朝臣中經學，無如李端相。宜招致侍講之列。”浚吉曰：“朴世采卽窮經之士。使之出入經席，豈不好哉。臣之出入筵中，亦非常例，若因臣言，使世采入侍，則與臣等何異乎。”上曰：“端相除拜館職，世采開筵時，使之入侍。”太和請蕩滌端相中考，上從之。浚吉曰：“臣之鄉隣，有故參議宋國澤之妻，年近八十。於內殿。爲外祖母，而不免飢寒，事體恐不當如是。”太和曰：“此與他人有異。雖非月廩，春秋衣資食物，所當題給。揆</p>
--	--	---

	<p>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죄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마는 원정(原情)하기 전이라서 아래에서 감히 계품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직무를 떼 채로 풀어 보내도록 하라.”</p> <p>하였다. 예조 판서 조복양이 아뢰기를,</p> <p>“조정의 신하들 가운데에 경학(經學)이 이단상(李端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땅히 불러다가 시강하는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p> <p>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p> <p>“박세채(朴世采)는 경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경연에 드나들게 하면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신이 경연에 드나드는 것은 또한 보통의 예가 아닌데, 신의 말을 인하여 세채를 입시하게 하면 신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단상은 관직(館職)에 제수하고 박세채는 경연을 열 때에 입시하게 하라.”</p>	<p>諸國體，斷不可已者也。” 浚吉曰：“臣意則以爲：‘分付監司，月給廩料，固無害矣。’” 上曰：“令本道監司，題給月廩。” 侍讀官金萬重進曰：“臣聞頃日浚吉請收用權認云。臣未知認之爲人，而既曰愛君憂國，則何可一向廢棄乎。臣抑有所過慮。《易》曰履霜堅冰至。夫履霜，未必遽至於堅冰，而其言如此者，其幾不可不慎也。臣恐儉細之徒，或以此窺測朝廷，而日後傾危之輩，亦必有調戲朝家者也。以殿下之明聖，臣猶有此過慮，可謂狂妄，而每講《宋史》，至於元祐、紹聖之間，未嘗不骨驚心寒。願殿下之加意於進退消長之幾也。” 上不答。</p>
--	---	--

	<p>하였다. 정태화가 이단상의 중고(中考)를 타격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송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의 이웃에 고 참의 송국택(宋國澤)의 아내가 있는데, 나이가 여든에 가깝습니다. 내전(內殿)에게는 외할머니가 되는데,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의 체모로 보아서 이와 같아서 안 될 듯합니다.”</p> <p>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p> <p>“이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비록 월름(月廩)이 아니더라도 봄 가을로 옷과 음식물을 대주어야 마땅합니다. 나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결코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p> <p>하고, 송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의 생각으로는 감사에게 분부하여 능료를 달마다 지급하게 하는 것도 참으로 해로울 것이 없다고 여겨집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본도 감사로 하여금 월름을 지급하게 하라.”</p> <p>하였다. 시독관 김만중(金萬重)이 나아가 아뢰기를,</p> <p>“신이 들으니, 지난번에 송준길이 권시를 거두어 쓸 것을 청하였다고 합니다.</p>	
--	---	--

신은 권시의 사람됨을 모릅시다만,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일을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한결같이 폐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은 또한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서리를 밟으면 곧 단단한 얼음이 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서리를 밟는다고 해서 반드시 단단한 얼음이 갑자기 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말이 이와 같은 것은 그 기미를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은 간사한 무리들이 혹 이것으로 인해 조정을 엿보아 헤아리고 훗날 나라를 위태롭게 할 무리들이 또한 조정을 희롱하는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전하처럼 밝고 훌륭한 분을 두고 신이 오히려 이런 지나친 염려를 하고 있으니, 광망하다고 하겠습니까만, 송사(宋史)를 강하다가 원우(元祐) 소성(紹聖) 연간에 이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송연해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진퇴 소장의 기미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삼가 살피건대, 권시는 기해년에 예를 논할 때에 삼년설을 주장하여 송시열의 무리들에게 죄를 얻어, 조정에서 폐기된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으니, 송준길이 경연에서 거두어 쓸 것을 청한 것은 또한 늦었다고 하겠다. 김만중은 이것을 인하여 다시 진용할까 염려하여, 심지어는 ‘소장(消長)의 기미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고, 또 ‘간사한 무리들이 이것으로 인해 조정을 엿보아 헤아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할 무리들이 또한 조정을 시험하는 일이 필시 있게 될 것이다.’고 하고, 끝에서 다시 ‘원우 소성 연관을 볼 때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의 아첨하는 행태와 남을 시기하는 마음은 차마 바로 보지 못할 바가 있었는데, 송준길이 전석(前席)에 함께 입시하여 끝내 한 마디도 바로잡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 그의 거두어 서용하자는

계청이 애당초 공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명예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겠다. 《예기(禮記)》에서 이른바 ‘부끄러워하여 그 불선한 것을 숨긴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이 참으로 맞는 말이다.

금산군(錦山君) 이성윤(李誠胤)을 증직하고, 충정(忠貞)이라는 시호를 주라고 명하였다. 성윤은 성종 대왕의 후손이다. 광해가 모후를 폐할 때에 성윤이 거적자리에 엎드려 울면서 사흘 동안 그치지 않고 적신 이이첨을 참수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귀양을 가서 죽었다. 이때에 조복양이 경연에서 아뢰어 증직하고 시호를 내리는 법전을 시행하여 절의를 포창할 것을 청하고, 정태화도 그 말을 하자 상이 따랐다.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1월 3일(무술) 2번째기사</p>	<p>예조가 아뢰기를, “예전 일을 상고하니 계해년 9월 고 영의정 이원익에게 궤장을 하사할 때 교서를 반포하고 내외에 선운(宣醞)을 내린 뒤, 또 기로소로부터 기로연(耆老宴)을 열 것을 계청(啓請)하니, 같은 날 일등악(一等樂)을 하사하라고 특별히 명하였습니다. 지금 영부사 이경석에게 궤장을 하사하는 이때에 내외에 선운하는 등의 일을 각 해당 관사에 분부하고 교서 또한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내게 하심이 마땅합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禮曹啓曰：“取考前事，則癸亥九月，故領議政李元翼賜几杖時，領教書，內外宣醞後，又自耆老所啓請耆老宴，同日特命一等賜樂矣。今此領府事李景奭賜凡杖時，內外宣醞等事，分付各該司，教書亦令藝文館撰出宜當。”上曰可。</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1월 18일(계축) 3번째기사</p>	<p>검토관 이단하가 아뢰기를, “《대전(大典)》 양전(量田) 조에 ‘항상 경작하는 것을 정전(正田)이라 하고 경작하기도 하고 묵히기도 하는 것을 속전(續田)이라 한다. 정전으로서 토질이 척박하여 곡물이 잘 되지 않거나, 속전으로서 토질이 비옥하여 소출이 많은 경우는 다음 식년(式年)에 개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개 전답을 측량할 때 자세히 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 법을 설치한 것입니다. 근년에 경기도에서 양전할 때 산간 고을의 척박한 전답이 정전으로 들어간 경우가 많아 묵힌 해에도 조세를 내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일찍이 이러한 뜻으로 상소하여 연분 사목(年分事目) 가운데에다 개정할 것을 반포하자는 뜻을 청하여 재가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조가 각읍으로 하여금 정전이 될 만한 속전을 책임지고 얻도록 하</p>	<p>○檢討官李端夏言于上曰：“《大典》量田條曰：‘常耕者爲正田，或耕或陳者爲續田。正田而土品瘠薄，禾穀不遂，續田而土性肥膏，取實倍多者，式年有改正’之規，蓋慮量田時，有未詳盡，而設此法也。頃年京畿量田時，山郡瘠薄之田，多入正田，陳荒之歲，亦艸租稅，民或稱冤。臣曾以此意陳疏，請於年分事目中，頒布改正之意，得蒙允可，而該曹使各邑，責得續田之可爲正田者，以充正田，還爲續</p>

	<p>여 속전으로 바뀐 정전의 수를 충당하게 하였으므로, 일이 막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니다. 만약 농사꾼으로 하여금 사실대로 말하게 하고 이어서 부정을 적발 하되, 여전히 거짓으로 꾸며대는 자가 있는 경우 무거운 법으로 다스린다면 실상을 파악하여 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도에서 양전할 때도 똑같이 행하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호조 판서로 하여금 살펴서 개정토록 함이 옳을 것이다.”</p> <p>하였다.</p>	<p>田之數，故事格而不行。 苦使田夫首實，而仍爲矯奸，有妄冒者，繩以重律，則可以覈實改正。 請於他道量田時，一體行之。” 上曰：“令戶判考出，改正可也。”</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2월 3일(정묘) 1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좌부 승지 오두인(吳斗寅)이 무과 전시(武科殿試) 때 관 화살[官箭]로 시험해 뽑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에 앞서 무과 전시에서는 으레 관 화살로 시험해 뽑았는데 법령이 점차 해이해져 과거 응시자들이 사제 화살[私箭]을 사용해 이미 잘못된 예로 굳어졌다. 그러므로 두인이 이전의 규례를 따르도록 청한 것이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p> <p>“근래 기후가 이상하여 병에 걸린 자가 매우 많고 심지어는 문·무 과거 응시자도 사망한 자가 많다고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丁卯/上御養心閣， 引見大臣、備局諸臣。 左副承旨吳斗寅請武科殿試時，以官箭試取，上從之。 先是武科殿試，例以官箭試取，而法令漸弛，舉子用以私箭，已成謬例。 故斗寅請遵前規。 領議政鄭太和曰：“近來時氣失節， 染患甚多，至於文武學子，亦多死亡者云矣。” 上曰：“事甚務憐。 申飭賑恤廳，舉行恤典，而無使落漏。” 戶曹判書閔鼎重曰：“各邑會付元穀， 有米太俱無者，直路諸邑，亦多不足處，脫有</p>

	<p>“매우 불쌍한 일이다. 진휼청에 신칙하여 홀전을 거행하되 누락됨이 없게 하라.”</p> <p>하였다. 호조 판서 민정중이 아뢰기를,</p> <p>“각읍에 회부(會付)된 원곡(元穀)에 쌀과 콩이 모두 없는 경우가 있으며 큰 길 주변에 있는 여러 고을 역시 부족한 데가 많으므로, 만약 급한 일이라도 있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인데다 군수(軍需)에 있어서는 용도를 잇달 길이 더욱 없습니다. 각 고을로 하여금 마련하여 수를 채우고 저축이 있게 만들며, 원곡이 부족한 곳은 각종 포목으로 쌀을 바꾸어 수를 채워야 마땅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환곡을 출납한 후 부정을 모두 적발토록 하라.”</p> <p>하였다.</p>	<p>緩急，勢難支用，至於軍需，尤無繼用之路。使各邑措備充數，俾有儲畜，元數不足處，宜以雜色木作米充數。”</p> <p>上曰：“糶糴後，竝使摘奸。”</p>
<p>현종 15권, 9년(1668 무신 / 청 강희(康熙) 7년) 12월 5일(기사)</p>	<p>내년 삼명일(三名日) 진상 방물(方物)은 양 대비전 외에는 모두 정지하고 탄일(誕日) 방물 역시 일체 정지하도록 명하였다.</p>	<p>○命明年三名日進上方物，兩太妃殿外，竝停止，誕日方物，亦一體停止。</p>

2번째기사	<p>정언 김세정(金世鼎)이 박형에게 죄 등급을 낮추어 준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였는데, 여러 차례 아뢰자 따랐다. 새로 급제한 현령 이당규(李堂揆) 등을 논하여 그의 직을 파하도록 청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이때 새로 급제한 민암(閔黯)은 선현을 모욕하였다는 죄로 유벌(儒罰)을 무겁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 민암이 계속하여 자기 변명을 하였기 때문에 벌이 풀리어 과거에 응시하였다. 급제하여 문묘에 참배하는 날에 성균관에 기숙하는 한두 유생이 의론을 제기해 거명하여 배척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 장원(壯元) 민홍도(閔弘道)는 민암의 형의 아들인데, 인협하여 방하(榜下)에 참여하지 않았고, 서문상(徐文尙) 등만 문묘에 참배하였으며, 당규 등은 민암을 위해 예를 행하지 않고 물려가 상소를 진달하여 그 상황을 고하였다. 이에 공의가 모두들 유생들이 망령되어 그른 짓을 한 것과, 당규 등이 과당에 치우쳐 예를 폐하고 소장을 올려 고소한 것에 대해 탓하였다. 간원이 그 죄를 논핵하였는데, 상이 당규 등만을 죄주는 것을 그르다 여겨 따르지 않고 이르기를,</p> <p>“새 급제자에게만 그 벌을 시행하자는 것을 나는 실로 이해하지 못하겠다.”</p> <p>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또 제도 감사로 하여금 열읍에 분부하여, 역에 불응하는 완악한 토호 부민(土豪富民) 외에, 감당해 낼 수 없는 빈민과, 도망하여 절호(絶戶)된 집 대신으로 침징(侵徵)당하는 인족(隣族)을 일일이 조사해 내고, 각종 적곡(糶穀) 및 제반 신역(身役)을 다 납부하지 못한 것은 모두 똑같이 봉입하지 말도록 하였다가 풍년을 기다려 추후 징수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기를,</p> <p>“진실로 합당한 일이지만, 만약 잘 구별하지 않으면 필시 허실이 서로 뒤섞이</p>	<p>○正言金世鼎請還收朴洞減等之命，累啓乃從之。 論新及第縣令李堂揆等，請罷其職，上不從。 時新及第閔黯曾以侮辱先賢之罪，重被儒罰，黯自明不已，故解罰赴科。 及登第謁聖之日，一二守齋儒生倡議，舉名擯斥，使不得與焉。 壯元閔弘道，黯之兄子也，引嫌不參榜下，徐文尙等獨謁聖，而堂揆等爲黯不爲行禮，相率陳疏告其狀。 於是，公議咸尤儒生之妄作不韙，堂揆等偏黨廢禮，投疏告訴。 諫院論其罪，上非其獨罪堂揆等，不從曰：“新及第獨施其罰，子實未曉。” 累啓終不從。 又請令諸道監司，分付列邑，土豪富民之頑不應役者外，貧民之不能責辦者，流亡絶戶之侵徵族隣者，一一查出，各樣糶穀及諸般身役之未盡備納者，竝皆一切勿捧，以爲待豐追徵之地，上答曰：“誠爲允合，而如不善區別，必有虛實相蒙之弊。 令廟堂，商量分付。” 又劾：“羅州牧使朴贊曾任公山，稅米納倉之際，有不謹之諂。 人言至今未已，請罷職。” 上不從。 世鼎終以失實，引避遞。</p>
-------	--	---

	<p>는 폐단이 있게 될 것이다.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분부토록 하라.”</p> <p>하였다. 또 나주 목사 박지(朴贄)를 탄핵하기를,</p> <p>“일찍이 공산(公山) 고을을 맡았을 적에 세미를 창고에 들일 때 근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으니 파직하소서.”</p> <p>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세정은 결국 실상과 틀리게 논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p>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1월 3일 (정유) 2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養心閣)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대사간 윤집, 집의 김정도 입시하였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p> <p>“정언 김세정(金世鼎)의 계사에서 ‘지난해 감해준 제반 신역(身役) 및 징수를 늦춘 관청 대출 곡식[官糶]을 지금 모두 일시에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없어 심지어는 전택을 팔고 있습니다. 유난히 더욱 가난하여 장만하도록 책임지울 수 없는 빈민이나 흩어지고 죽어서 없어진 가호 대신 이웃과 일가붙이들에게 징수하는 것들을 일일이 조사해 내어 모두 납부</p>	<p>上御養心閣，引見大臣備局諸臣。大司諫尹鏞，執義金澄亦入侍。左相許積曰：“正言金世鼎啓辭：‘上年所減諸般身役及官糶之退徵者，今皆一時督捧，故民不能支，至賣田宅。尤甚貧民之不能責辦者，流亡絕戶之侵徵隣族者，一一查出，竝皆一切停捧，以爲待豐追徵之地。’官糶則已有減半收捧之</p>

	<p>를 일체 정지하도록 하고 풍작을 기다려 추후에 징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 다. 관청 대출 곡식의 건에 있어서는 반으로 감하여 거두라는 명이 이미 있었 고, 흠어지고 죽어서 가호가 없는 것은 으레 뒤섞여 부실한 폐단이 많아 잠시 그냥 두었지만, 여러 해 거두지 못한 신역의 경우는 일시에 징수하기가 진실 로 어려운 형편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여러 해 거두지 못한 것을 일시에 독촉해 받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어느 해 에 얼마나 거두지 못했는지 조사하여 몇 해 동안에 분배한 다음 시한을 정하 여 거두어 들일 것을 호조와 병조에 이르라.”</p> <p>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p> <p>“함경도는 재해가 매우 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도신의 계문으로 인 하여 전세의 쌀·콩을 반으로 감하고, 공물 대신 쌀로 내는 것과 상납 공물도 모두 전수 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남은 줄여준 일이 없으니, 이는 매우 불공 평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영남 좌·우도가 똑같이 흉년이 들었으니, 신역에 관계된 모든 것을 헤아려 감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p>	<p>令，流亡絕戶，例多混雜不實之弊，今 姑置之，而身役之累年未收者，一時徵 捧，其勢誠難矣。” 上曰：“累年未收， 不可一時督捧。查出某某年未收幾許， 分排數年定限收捧事，言于戶兵曹。” 積又曰：“咸鏡道，則被災不至太甚， 而因道臣啓聞，田稅米菽減半，貢物作 米及上納貢物，亦皆全減。而嶺南， 則無蠲減之事，此甚不均矣。” 上曰： “嶺南左右道一樣凶歉，凡干身役，使 之量減。” 積又曰：“崔文湜使寢窺伺 之說，以李端夏前後疏本及刑曹查覈文 書觀之，則文湜似無其罪。纔經大需， 死罪皆赦，而獨不見原，久滯凍獄，疾 病亦重，不無冤矣。” 上命罷職放送。 鏐進啓平安兵使具文治罷職事，而誤請 遞差，上曰：“遞差。鏐又請還收朴洞 減等之命，上不從。金澄論劾百官過 歲問安時，承旨推諉不即出待之失，請 先罷後推，又論清風府院君金佑明乘怒 先出之失，上皆從之。初一日問安時， 承旨不即出待，佑明乘醉發怒，顧謂判 府事宋時烈曰：“此由國綱解弛，朝廷 不尊也。”奮袂而起，見者笑之。故 澄竝劾之。有星州義士李士用者，時</p>
--	--	---

“최문식(崔文湜)이 엿보는 관례를 중지시켰다는 얘기는, 이단하(李端夏)의 전후 소본(疏本) 및 형조의 조사 문서로 보건대, 문식은 그 죄가 없는 듯합니다. 방금 큰 사면령을 거쳐 죽을 죄도 모두 용서받았는데 그 사람만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아 차가운 옥방에 오래 체류되어 있고 질병도 중하니 억울함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파직하여 방송하도록 명하였다. 윤집이 평안 병사(平安兵使) 구문치(具文治)를 파직하도록 아뢴 것이 잘못이었음을 아뢰고 체차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체차하라 하였다. 윤집이 또 박형(朴炯)의 죄 등급을 감하라고 한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김징(金澄)이 백관들의 새해 문안 때 승지가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즉시 나와 기다리지 않은 잘못을 논핵하면서 우선 파직하고 이어 추고할 것을 청하고, 또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이 환김에 먼저 나간 잘못을 논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정월 초하루 문안 때에 승지가 즉시 나와 기다리지 않자, 우명이 취한 김에 화를 내며 관부사 송시열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는 나라 기강이 해이하고 조정이 존엄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니, 보는 자들이 모두 웃었다. 그래서 김징이 아울러 논핵한 것이다. 성주(星州)에 의사(義士) 이사용(李士用)이란 자가 있었는데, 시열이 그가 의를 위해 죽은 일을 말하고 이어 그의 자손들을 녹용할 것을 청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 이르러 호조 판서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본도에 자세히 물어 보았더니, 사용에게 아들 이선(李善)이 있고 사용의 처

烈嘗陳其死義事，仍請錄用子孫。至是，戶曹判書閔鼎重白上曰：“詳問本道則土用有子善，土用之妻亦尙存，而內外良族云矣。”上命收用其子，且令本道，存恤其妻賜米。積曰：“臣於呈告時，聞因李浣所啓，西北守令，使問于大臣差出，此甚不可。臣等雖不勝任，擇差銓官，是臣之職。何可以擇差守令爲己任乎。事不當如是。”上曰：“然則仍前自該曹擇差，如有不可，則檢飭可也。”上謂鼎重曰：“閔黯旣解削赴學，則固無不得謁聖之事。謁聖何等重禮，而使之昏夜展謁，寧有是理。”對曰：“儒生等事，非也。”積曰：“釋菜時，差殿內執事，登第後，不許庭中謁聖，豈理也哉。”上曰：“著令禁之。今後有如此事，則不但儒生，大司成當受其責。”

	<p>도 아직 살아 있는데 내·외족이 모두 양민이라 합니다.”</p> <p>하니, 상이 그 아들을 거두어 쓰라고 명하고 또 본도로 하여금 그 처를 보살피게 하고 쌀을 내렸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신이 정고(呈告)할 때 듣기로는 이완(李浣)이 아뢴 바로 인하여 서북의 수령을 대신에게 물어 차출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신들이 비록 직임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전관(銓官)을 가려 임명하는 것이 신의 직책입니다. 어떻게 수령을 차출하는 것을 임무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그렇다면 예전대로 해조에서 차출하게 하되, 만약 불가한 점이 있으면 단속하여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상이 정중에게 이르기를,</p> <p>“민암(閔黯)이 이미 삭적(削籍)의 죄벌을 벗고 과거에 응시하였으니 성묘(聖廟)에 배알하지 못할 일은 없다. 성묘를 알현하는 일이 얼마나 중한 예인데 늦은 밤에 전알하게 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유생들이 한 일이 잘못되었습니다.”</p>	
--	--	--

	<p>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석채(釋菜)827) 때에는 전내(殿內)의 집사로 차임하다가, 과거에 합격한 뒤에는 뜨락에서 알성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p> <p>하자, 상이 이르기를,</p> <p>“법령을 만들어 금하라.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있다면 유생뿐만 아니라 대사성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p>	
--	--	--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1월 6일 (경자) 1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송시열·송준길이 시강하고 글 뜻을 강론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p> <p>“주자께서 ‘지금의 시세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고 육군자탕(六君子湯)을 써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송나라가 남쪽으로 천도한 이후 힘이 빠지고 일하는 것도 느슨해졌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형세도 이와 같으니 너무도 한탄스럽습니다.”</p> <p>하고, 허적이 아뢰기를,</p> <p>“이 말이 극히 옳습니다. 정령을 시행함에 있어 매양 나태하고 느슨함이 걱정인데, 이는 신들이 봉행하지 못하는 죄이지만, 군상(君上)에도 관계됩니다. 위가 느슨하면 아래가 게을러짐은 당연한 형세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정령을 다시 수축하는 건으로 허적에게 묻기를,</p> <p>“종묘에 배향하는 일은 갑자기 거행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경의 뜻은 어떠한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배향은 비록 어렵습니다만 능을 수축하는 한 건은 속히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p>	<p>○庚子/上御養心閣，講《心經》。宋時烈、宋浚吉侍講，講論文義。時烈曰：“朱子言今之時勢，當用大承氣湯，而用六君子湯，蓋言宋南渡之後，委靡不振，而作事徐緩也。今日之勢亦猶是，可勝歎哉。”左相許積曰：“此言極是。政令之間，每患怠緩，此臣等不能奉行之罪，而亦係君上。上緩則下怠，勢固然矣。”上以貞陵改封事，問于積曰：“配享宗廟，雖難猝舉，此事則所當行者。卿意何如？”對曰：“配享雖重難，封陵一事，不可不速舉行也。”閔鼎重以安興掘浦事，請於上曰：“大臣今方入侍，請速議定。”時烈曰：“漕船年年致敗，死者相繼，故相臣金堉以爲，不得掘浦，則設倉爲宜。”積曰：“臣未知掘浦利害，而以爲必可成者閔鼎重也，以爲必不可成者李滄也。掘浦議定，則滄將欲以存亡爭之矣。”諸臣皆言不可成，而鼎重猶執前見，上命以設倉議定。</p>
--	---	---

	<p>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안흥(安興)에 포구(浦口)를 파는 일로 상에게 청하기를,</p> <p>“대신이 지금 입시해 있으니 속히 의논해 정하소서.”</p> <p>하니, 시열이 아뢰기를,</p> <p>“조운선이 해마다 침몰하여 죽는 자가 줄을 잇고 있으므로 고 재상 김육(金堉)은 ‘포구를 팔 수 없다면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p> <p>하고, 허적은 아뢰기를,</p> <p>“신은 포구를 파는 것의 이해 득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민정중이고, 필시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완(李浣)입니다. 포구를 파기로 의논을 정한다면 완은 죽기 살기로 쟁집할 것입니다.”</p> <p>하였다. 신하들은 모두 완성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민정중은 여전히 이전 견해를 고집하니, 상이 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논을 정하라고 명하였다.</p>	
--	---	--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1월 8일 (임인) 2번째기사</p>	<p>소대하였다. 상이 양심함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판부사 송시열이 시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호조 판서 민정중이 청대하여 입시하고 아뢰기를,</p> <p>“태안(泰安)에 창고를 설치하기로 이미 정하였습시다만, 그 사이에 장애되는 일은 조정에서 미리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시작한 후에 기치 않은 의론들이 필시 분분할 것입니다.”</p> <p>하였다. 시열이 김육이 창고를 설치하려다가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여, 김좌명(金佐明)으로 하여금 내려가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행하도록 청하니, 좌명이 아뢰기를,</p> <p>“조정에서 신에게 명하니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p> <p>하였다. 좌명이 안면도(安眠島)에서 재목을 채취하고 수사(水使)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도록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시열이 낭비를 줄이도록 상에게 권하니, 상이 호조 판서 민정중에게 명하여 진상하는 산삼과 도라지의 가미(價米)를 뽑아 써 올리게 하였는데, 8백 6십여 석에 이르렀다. 시열이 반으로 줄이고 그 쌀을 가지고 종실에게 나누어 주어 친목의 의리를 돈독히 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 평안도 자모 산성(慈母山城)을 쌓고 있었다. 정중이 아뢰기를,</p> <p>“이것은 비록 도신(道臣)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인 김세귀(金世龜)를 포상해야 합니다.”</p> <p>하자, 좌명이 안 된다고 하니, 상이 상을 주게 하되 소문이 시끄럽게 나지 않</p>	<p>○召對上御養心閣，講《心經》。判府事宋時烈侍講。講畢，戶曹判書閔鼎重請對入侍曰：“已定泰安設倉，而其間窒礙之事，則朝廷當預知以處。不然，始事之後，必有橫議紛紜矣。”時烈以金堉欲設倉未果，請使金佐明下去，與道臣相議爲之，佐明曰：“朝廷命臣，臣何敢辭。”佐明請取材於安眠島，使水使監董，上許之。時烈以省費勸上，上命戶曹判書閔鼎重，抄出進供山蔘桔梗之價米，至八百六十餘石。時烈請減半，以其米分賜宗族，以惇親睦之義，上從之。時修築平安道慈母山城。鼎重曰：“此雖出於道臣指揮，董役人金世龜當褒賞也。”佐明以爲不可，上使之賞，而又使不煩耳目。時朝廷畏清國，專拋兩西武備。凡有一動一靜，恐爲彼所聞知，故上教如此。</p>
--	--	--

	<p>도록 시켰다. 이때 조정에서 청나라를 두려워하여 양서(兩西)의 군사 대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무릇 한 가지 동정이라도 있으면 저들에게 알려질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상의 하교가 이와 같았다.</p>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1월 27일 (신유) 2번째기사</p>	<p>호조 판서 민정중이 경비를 줄인 단자(單子)를 올렸다. 상이 이르기를, “어공(御供)하는 물품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 값이 배나 된 것은 필시 그 연유가 있을 것인데 아마도 도성 백성들을 구제하려는 뜻에서 나왔을 것이다.”</p> <p>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그렇게 해야만 공물의 주인(主人)이 역(役)에 응할 수 있습니다.”</p> <p>하였다. 이때 판부사 송시열이 민정중과 함께 경비를 줄이는 데 뜻을 기울여 각사(各司)의 어공(御供) 물건에 대해 모조리 조사하여 공물 중 너무 과한 것은 감하고자 하였다. 이에 안팎에 원망과 비방이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상이 이와 같이 하교한 것인데 허적 역시 상과 백성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이 말을 고하였다. 상이 평안 병사 이어발을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변방을 공고히 하고 무력을 닦는 방책에 대해 물었다. 여발이 대답하기를,</p>	<p>○戶曹判書閔鼎重以減省單子呈進。 上曰：“御供之物雖微，厥價倍多者，必有其由，蓋出於欲救都民之意也。” 許積曰：“如此而後，貢物主人，可以應役矣。”時判府事宋時烈，與閔鼎重銳意省費，就各司御供物件中，盡行查正，欲減貢物之太濫者。於是，中外怨謗大興，故上教如此，積亦欲不失上下之心，告之以此。上命平安兵使李汝發進前，問以固邊修武之策。汝發對以：“觀勢訓練軍兵，修葺器械，不煩聽聞。”上戒左右，勿令宣泄。左議政許積以鐵瓮藥山山城修築事，陳達曰：“此城險塞，賊兵實難攻陷，去直路二十里。李浣則以爲：‘兵使當於直路留鎮，以截敵兵，不可退守十里外地。’臣意則於此可以待變，何可將兵</p>

	<p>“형세를 보아 군병을 훈련시키고 기계를 수리하되, 소문이 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p> <p>하자, 상이 좌우에게 누설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좌의정 허적은 철옹(鐵甕)의 약산 산성(藥山山城) 수축 건을 가지고 진달하기를,</p> <p>“이 성은 험한 요새이어서 적병이 공격하여 함락시키기가 실로 어렵고, 큰길에서 20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완은 ‘병사(兵使)가 큰길에다 진(鎭)을 두고 적병을 막아야지 10리 밖으로 물러나서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만, 신의 의견으로는 여기에서 변란을 대비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맞이하여 헛되이 그 칼날 아래 죽을 것이 있겠는가 생각합니다.”</p> <p>하였다. 여발이 아뢰기를,</p> <p>“신이 약산 산성의 형세를 보건대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만, 안주(安州)와는 30리, 박천(博川)과는 50리이므로 만약 사변을 만나 약산으로 물러나 진을 친다면 반드시 적을 피하였다는 비방을 불러올 것입니다.”</p> <p>하자, 허적이 아뢰기를,</p> <p>“여발은 무장(武將)이므로 그 말이 실로 이러하지마는 만약 정병(精兵)들이 칼날 앞에서 모두 죽고나면 어떻게 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迎敵，徒斃其鋒乎。” 汝發曰：“臣見藥山山城形勢，可以禦敵，而去安州三十里，去博川五十里，若遇事變，退屯藥山，則必招避敵之謗矣。” 積曰：“汝發武將，其言固如是，而若以精兵，當鋒盡斃，則事無可爲者。” 上曰：“若或先斃於初頭，則更無支吾之勢矣。” 汝發曰：“若臨時不能修築安州城池，則當依聖教，入於藥山城矣。” 是時朝廷聞蒙古貳於清國，慮有嫁禍之患，以汝發擇差平安兵使。而及至辭朝，上引見，議定方略，大要在於避敵鋒，據險山城而已。</p>
--	--	--

	<p>“만약 초두에 지레 죽는다면 다시금 버터널 형세가 없을 것이다.”</p> <p>하자 여발이 아뢰기를,</p> <p>“만약 때에 임박하여 안주(安州)의 성지(城池)를 수축하지 못한다면 성상의 하교대로 약산 산성에 들어가야 합니다.”</p> <p>하였다. 이때 조정에서 몽고가 청나라와 틈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전가될까 염려하여, 여발을 평안 병사로 차출하였다. 그가 조정을 떠나갈 때 상이 인견하여 방책을 의논해 정하였는데, 대체적인 요지는 적의 칼날을 피하여 산성의 험함을 이용하자는 것뿐이었다.</p>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p>	<p>예조가 아뢰기를,</p>	<p>禮曹啓: “以咸陵府院君李澥既已致仕, 考諸法典, 則堂上官致仕者, 月致酒肉</p>

<p>(康熙) 8년) 2월 9일 (임신) 2번째기사</p>	<p>“함릉 부원군(咸陵府院君) 이해(李澥)가 이미 치사한 일 때문에 법전을 상고해 보니, 당상관으로서 치사한 이에게는 매월 주육(酒肉)을 준다는 것이 예전(禮典) 혜홀조(惠恤條)에 실려 있으니, 법전대로 거행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p> <p>하니, 상이 율허하였다.</p>	<p>事，載錄於禮典惠恤條，似當依法典舉行。”上允之。</p>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3월 5일 (무술) 1번째기사</p>	<p>상이 춘당대에 몸소 나아가 관무재(觀武才)를 하고 입시한 여러 신하에게 별찬을 하사하였다.</p>	<p>戊戌/上親臨春塘臺觀武才，賜入侍諸臣饌。</p>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4월 3일 (을축) 4번째기사</p>	<p>상이 이익(李翊)에게 하교하기를,</p> <p>“지난 봄 거동했을 때에는 떠돌며 구걸하는 무리들을 구제하였는데, 이번에는 조정의 명령이 없으니 거행하지 않는 것이냐? 해조에서 별도로 구제했으면서도 품처를 하지 않은 것이냐?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p> <p>하니, 이익이 아뢰기를,</p> <p>“해조에 물어보니, 금년에는 이런 무리들이 많지 않아서 급료를 지급하고 남은 쌀로 한 되씩 나누어 주었는데, 수량이 얼마되지 않아 품달하지 않은 것이라 합니다.”</p> <p>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하였다.</p>	<p>上下教于李翊曰：“前者春間舉動時，流離乞丐之類，有顧恤之事，今則無朝家命令，其不舉行耶，該曹別有顧恤之事，而無稟處之舉耶？問啓。”翊啓曰：“問于該曹，則今年此類不多，以須料餘米，升升分給，而其數既少，茲不仰稟矣。”上答以知道。</p>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p>	<p>묘시에 삼전의 어가가 과천현을 출발하여 나루터에 이르렀는데, 상이 관병(觀兵)하려고 하자 옥당이 청대하여 중지하기를 간언했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p>	<p>庚辰/卯時三殿車駕發果川縣，次津頭，上將觀兵，玉堂請對諫止，上不從，命</p>

<p>(康熙) 8년) 4월 18일 (경진) 1번째기사</p>	<p>결진을 호령하라고 명하자 옥당이 물러났다. 양사가 청대하여 또 간쟁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는데, 군사들이 이미 진형(陣形)을 갖추었다. 대사간 남용익이 아뢰기를,</p> <p>“이것은 곧 계사이니 옥당의 청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p> <p>하고, 지평 조성보는 아뢰기를,</p> <p>“대간이 한 쪽에서 논계하고 있는데 한 쪽에서는 열무(閱武)를 하니, 이는 대각을 설치한 본의가 아닙니다.”</p> <p>하자, 상이 노하여 이르기를,</p> <p>“아무리 대간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토록 스스로를 높힐 수 있단 말인가. 이미 호령했다. 어떻게 대간의 계사가 있을 줄 미리 알아서 호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소회(所懷)라고 하다가 이제는 계사라고 하면서 대각을 설치한 뜻이 아니라고 하니, 과연 이것이 계사라면 어찌하여 전계는 없었는가. 스스로 대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말을 감히 이처럼 하는가.”</p> <p>하였다. 남용익 등이 엄중한 교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혐하고 물러났다. 상이 진세를 벌여 놓는 것을 구경하고 마친 후 금군 별장 구문치(具文治)와 마대 별장 이간을 불러 각각 갑옷 1부(部)를 하사했다. 오시에 강에 이르렀는데, 배종한 근시(近侍)에게 음식물을 하사하였다. 미시에 환궁했다. 상이 먼저 와서 돈화문 안의 막차에 들어 갔는데, 왕대비의 보련(步輦)이 이르자 상이 공경히 맞이하여 인화문을 지나 대내로 들어갔다. 약방·정원·옥당의 2품 이상</p>	<p>號令結陣，玉堂退。兩司請對又諫，上不從，而軍士已成陣勢。大司諫南龍翼曰：“此乃啓辭，非玉堂請對之比也。”持平趙聖輔曰：“臺諫一邊論啓，而一邊閱武，非置臺閣之意也。”上怒曰：“雖臺諫，何可自尊如是乎。既已號令。安知臺啓之有無，而不爲乎。初以所懷言之，今日啓辭，謂非置臺閣之意，果是啓辭，則何無前啓耶。自謂臺諫而言，何敢若是。”龍翼等，以承嚴旨，引避而出。上仍觀擺列陣勢，罷後招禁軍別將具文治、馬隊別將李旰，各賜甲冑一部。午時到江，賜饌陪從近侍。未時還宮。上先至，入敦化門內幕次，王大妃步輦至，上祇迎，由仁和門入大內。藥房政院玉堂二品以上問安。</p>
---------------------------------------	---	---

	의 관원들이 문안을 올렸다.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4월 23일 (을유) 1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養心閣)에 거동하여 대신과 비국의 제신 및 삼사를 인견했는데 좌참찬 송준길도 입시하도록 명했다. 김좌명(金佐明)이 호서 선혜청의 쌀이 부족한 형편을 아뢰고 저축이 완전히 회복될 동안은 각사의 공물가를 경기 선혜청의 예에 따라 감하여 지급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평안도의 강변 및 재해를 입은 고을에 관곡의 반을 분급한 외에도 더 분급하도록 명했다. 당시에 각도의 각읍으로 하여금 환곡의 반은 분급하고 나머지 반은 창고에 남겨두도록 하였는데, 각관에서 액수대로 다 거두어 들일 수가 없었으므로 다만 거두어 들인 액수에서 그 반을 분급한 까닭에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곳곳에서 원망했다. 정지화가 서도로부터 돌아와 강변 및 재해를 입은 고을에 대하여 더 분급해 주기를 청하여, 상이 이런 명을 내린 것이다. 또 관서의 강변 각읍과 북도의 육진에서 정월 초하루에 보내는 진봉리(進封吏)를 일체 정파하라고 명하니, 거리가 멀어 폐단이 있기 때문이었다.</p>	<p>乙酉/上御養心閣，引見大臣、備局諸臣、三司。左參贊宋浚吉亦命入侍。金佐明陳達湖西宣惠廳不足之狀，請儲置完復間，各司貢物價，依京畿宣惠廳例，減分題給，上從之。命平安道江邊及被災邑，官穀一半分給之外，使之加給。時令各道各邑糶穀一半分給，一半留庫，而各官不能盡數收捧，只以所捧之數，一半分給，故民未蒙實惠，在處號冤。鄭知和自西還，請令江邊及被災邑，加數分給，上有是命。且命關西江邊列邑及北道六鎮正朝進封吏，一體停罷，以其地遠有弊也。</p>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4월 30일</p>	<p>도내의 환곡을 가지고는 빈민들에게 두루 나누어 줄 수 없다고 경기 감사가 장계하여, 강도미(江都米) 7천 석과 남한미(南漢米) 3천 석을 환곡으로 나누어 주도록 허락했다.</p>	<p>因京畿監司狀啓，道內列邑官糶，不能逼及貧民，出江都米七千石，南漢米三千石，許以糶糶分給。</p>

<p>(임진) 3번째기사</p>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5월 19일 (신해) 1번째기사</p>	<p>상이 회정당(熙政堂)에 거동하여 송준길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경이 이제 하직하니 내가 매우 섭섭하다.”</p> <p>하니, 송준길이 아뢰기를,</p> <p>“신의 신병이 이와 같고 개인적 사정 역시 절박하여 부득이 귀향을 청한 것입니다. 끝없는 은총을 입었으니 비록 향리로 물러난들 한시라도 잊겠습니까. 황공하고 감격하여 눈물이 날 뿐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섭섭하게 서로 헤어져도 기쁘게 다시 만난다면 시종(始終)이 있는 것이다. 경은 모름지기 어제 나의 뜻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라.”</p> <p>하니, 대답하여 아뢰기를,</p> <p>“신이 비록 우매하지만 어찌 성상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전하께서 성심으로 대우하시는데 신이 성심으로 보답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의 도리이겠습니까.”</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이제 멀리 떠나는데 특별히 아될 것은 없고, 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자</p>	<p>○辛亥/上御熙政堂, 引見宋浚吉。 上曰: “卿今拜辭, 予倍缺然矣。” 浚吉曰: “臣身病如此, 私情又切, 不得不乞歸。 而受恩無涯, 雖退鄉曲, 豈敢一飯忘乎。 惶恐感激, 涕淚而已。” 上曰: “缺然相別, 欣然更逢, 則有始有終。 昨日子意, 卿須體之。” 對曰: “臣雖愚闇, 豈不知聖明之意哉。 殿下待以誠心, 而臣不以誠心報之, 豈人理哉?” 又曰: “今當遠離, 別無所達, 而第昨日所達世子正當學問之日, 自上必須自修, 爲表率於世子, 德器成就, 俱有進益之資, 此乃臣之所望也。 趙復陽、朴長遠老成忠實, 輔導東宮之任, 責之兩人可也。” 且曰: “人君自治之道, 只在於經筵一事。 雖或未開法筵之時, 頻數召對, 無令作輟, 此群情之至望也。” 上曰: “當留心加勉焉。” 浚吉曰: “明朝時, 以景泰皇帝復號及錢皇后祔廟爲盛德事。 我朝則以復昭陵爲盛德事。 卽今請祔貞陵之論, 再發於久停之餘。 他日論者, 談盛德, 必與復昭陵並舉矣。 自上持難固然, 而畢竟必以義理, 參酌善處焉。” 上以</p>
---	--	---

	<p>가 한창 공부하는 때이니 반드시 성상께서 스스로 학문을 닦아서 세자의 모범이 되어야 덕성이 이루어지게 되며 두 분에게 모두 유익하게 되는 바탕이 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이 바라는 바입니다. 조복양과 박장원은 노성하고 충실하니 동궁을 보도하는 책임을 이 두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인군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길은 다만 경연 하나에 있습니다. 간혹 경연을 열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자주 소대하여 중단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니, 이는 여러 사람이 지극히 바라는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마땅히 명심하고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p> <p>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p> <p>“명나라 때에는 경태 황제(景泰皇帝)를 복호한 일과 진 황후(錢皇后)를 부묘한 일을 훌륭한 일로 삼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릉(昭陵)을 복위한 일을 훌륭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릉(貞陵)을 부묘하자는 논의가 오래도록 거론되지 못하다가 다시 발론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소릉의 복위와 함께 이 일을 병칭할 것입니다. 상이 어렵게 여기시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지만 마침내는 의리로써 참작하여 선처해야 할 것입니다.”</p>	<p>宣廟朝未行之事爲言，浚吉曰：“義理不如是矣。 孝者，善繼人之志，善述人之事，當持守，而持守孝也，當變通，而變通亦孝也。 膠守先朝未邊之事，不顧義理，不思變通，此豈繼述之道乎。” 仍問上候，又曰：“古語云：‘毋以病自諉’，願加勉勵之志，以圖維新之業。 臣累月入侍，今當遠離，衰病又如此，區區犬馬之情，何可勝建乎。” 請退，上曰：“從容下去，調理上來。” 右承旨金萬基曰：“群下之情，皆以上許歸爲不可。 且雖以秋爲期，衰病之人，何可必其上來乎。 然自上許歸，出於誠心，猶愈於固執而留之。 君臣猶父子，浚吉亦何忍負諸。 第浚吉等上來時，雖或頻開筵席，下去則復停，雖緣聖候未寧，若能勉強，豈無引接之時乎。 毋謂浚吉之下去，頻數引接，群下之望也。 且浚吉臨行，又以貞陵事陳達者，欲殿下之採納也。 貞陵事體雖重，求之義理之正，則亦非終始持難之事。 今浚吉辭歸，願毋忘今日臨辭之言。” 浚吉曰：“萬基所言，臣不敢當，而其所陳達，大概是也。” 上宣醞賜與甚厚，世子亦宣醞賜與。</p>
--	---	---

	<p>하니, 상이 선조(宣祖) 때에 실행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자, 송준길이 아뢰기를,</p> <p>“의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효라는 것은 조상의 뜻을 잘 계승하는 것이며 조상의 사업을 잘 이어가는 것이니,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효이나 마땅히 변통해야 할 것을 변통하는 것도 효입니다. 선대에 미처 하지 못한 일을 고집스레 지켜 의리를 돌아보지 않고 변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찌 잘 이어받는 도리가겠습니까.”</p> <p>하였다. 이어 상의 건강을 묻고 또 아뢰기를,</p> <p>“옛말에 ‘병을 이유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더욱 뜻을 면려하시어 유신(維新)의 위업을 도모하소서. 신이 몇 달 곁에서 모시다가 이제 멀리 떠나게 되었고 또 이처럼 늙고 병들었으니, 구구한 견마지정(犬馬之情)을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p> <p>하고, 물러가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편안히 내려가서 조섭하고 상경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우승지 김만기가 아뢰기를,</p> <p>“여러 신하들이 모두 상이 귀향을 허락한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을까지 기한을 정하기는 하였지만 늙고 병든 사람의 상경을 어떻게 기</p>	
--	---	--

필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께서 귀향을 허락한 것이 성심에서 나왔으니 오히려 고집하여 만류하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군신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송준길도 어찌 차마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송준길 등이 상경하였을 때에는 비록 자주 경연을 열었지만 내려가 버리면 다시 열지 않게 될 것이니, 비록 성상께서 몸이 불편한 것 때문이라 하지만 만약 힘써 노력하신다면 어찌 신하들을 인견할 수 있는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 신하들의 바람은 송준길이 내려갔다고 생각지 마시고 자주 인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준길이 막 떠나기에 앞서 또 정릉의 일에 대하여 아뢴 것은, 전하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정릉 문제는 사체가 비록 중대하기는 하지만 바른 의리로써 추구해 보면 끝까지 어렵게 여길 일은 아닙니다. 이제 송준길이 숙배하고 귀향하니, 떠나기에 앞서 오늘 아뢴 말씀을 잊지 마소서.”

하니, 송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감히 김만중이 말한 바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 아뢴 바는 대개 옳습니다.”

하였다. 상이 술을 내리고 여러가지 물품을 매우 많이 하사하였으며, 세자도 술을 내리고 여러가지 물건을 하사하였다.

<p>현종 16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5월 25일 (정사) 4번째기사</p>	<p>행 대사헌 박장원이 상소하여 지방관으로 내려가 부모를 봉양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 소를 해조에 내렸다. 해조가 회계하기를,</p> <p>“박장원은 정경(正卿) 중신으로서 그 어미의 나이가 80에 가까워져 오기 때문에 지방관으로 나아가 봉양하고자 하니, 그 뜻이 매우 간절합니다. 그러나 박장원은 현재 대부의 우두머리로 있고 또 삼공의 물망이 있으니, 그가 나가는 것은 조정의 경중에 관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원에 따라 고을에 보임하는 것은 형편상 가벼이 의논하기 어렵습니다.”</p> <p>하니, 상이 계문에 따르고 해조로 하여금 미포를 충분히 주도록 하여 봉양하게 하였다.</p>	<p>○行大司憲朴長遠上疏, 乞郡便養, 上下該曹。 回啓曰: “長遠以正卿重臣, 爲其老母, 年垂八秩, 乞外便養, 其情甚懇。 而長遠方在列卿之首, 且有台鉉之望, 其出有關朝廷輕重。 從其私願, 出補州郡, 揆以事體, 有難輕議。” 上依啓, 而令該曹優給米布以爲養。</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6월 11일 (임신) 1번째기사</p>	<p>이조 판서 이경휘(李慶徽)가 얼굴에 종기가 나서 병이 날로 심해지자 잇따라 사직소를 올렸는데 상이 윤택하지 않고 어의를 보내어 곁에서 떠나지 말고 간병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상이 그의 병이 몹시 심하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체직을 허락하고 별감(別監)을 보내어 약물을 하사하고 문병하게 하였다.</p>	<p>○壬申/吏曹判書李慶徽得面腫, 病日甚, 連上辭疏, 上不許, 遣御醫, 不離看病。 至是, 上聞其病劇, 始許遞, 遣別監賜藥物問疾。</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7월 12일 (계묘) 1번째기사</p>	<p>봉산(鳳山)·안악(安岳)·신천(信川)·재령(載寧)·문화(文化)·연안(延安) 등 16고을의 세선(稅船)이 3월 22일에 바다에서 파선되어 47명이 익사하였고 3천 1백 24석의 세곡이 침몰되었는데, 호조의 기사에 따라 모두 탕감하도록 하였다.</p>	<p>癸卯/鳳山、安岳、信川、載寧、文化、延安等十六邑稅船，並於三月二十二日，致敗於洋中，滄死四十七人，臭載米三千一百二十四石，因戶曹啓辭，並蕩減。</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7월 23일 (갑인) 8번째기사</p>	<p>함릉 부원군(咸陵府院君) 이해(李澥)가 봄가을로 하사하는 미곡을 사양하였다. 애초에 이해가 여러 번 치사(致仕)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택하지 않았다. 이에 이해는 정상으로 주는 녹도 받지 아니하여 기어이 치사할 뜻을 보이자 대신이 상에게 아뢰어 봄가을로 쌀과 콩을 주도록 하였다. 이해가 치사한 뒤 조정에서 봉조하(奉朝賀)의 정3품 녹을 주게 하였다. 이때 이르러 창고의 관리가 쌀 10석과 콩 5석을 이해의 집으로 싣고 가자, 이해가 말하기를,</p> <p>“지금 이 봄가을로 주는 쌀과 콩은 치사의 윤택을 받기 이전에 녹을 사양했을 때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미 치사의 윤택을 받았고, 또 봉조하의 녹도 받고 있으니, 봄가을로 특별히 하사하는 미곡을 결코 겹쳐 받을 수 없다.”</p> <p>하고, 거절하며 받지 않았다. 호조가 아뢰기를,</p> <p>“이해가 오늘날 미곡을 받지 않는 것은 사리에 있어 또한 옳은 듯합니다. 이후로는 실어보내지 말도록 하소서.”</p> <p>하니, 상이 윤택하였다.</p>	<p>○咸陵府院君李澥辭春秋賜米。初澥屢請致仕，而上不許。澥於是不受常祿，以示必欲致仕之意，大臣白上，春秋賜以米豆。澥既致仕，朝廷給奉朝賀正三品祿。至是倉官輸送賜米十石、大豆五石於澥家，澥以爲：“今此春秋米豆之賜，在於不許致仕前辭祿之時，今則既蒙致仕之命，又受奉朝賀之祿。春秋特賜之米，決不可疊受。”辭不受。戶曹啓：“以澥今日之不受，事理亦然。今後請勿輸送。”上允之。</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7월 25일 (병진) 3번째기사</p>	<p>좌의정 허적이 아뢰기를, “호조 판서 김좌명, 예조 판서 박장원을 정릉(靖陵) 정자각의 중건청(重建廳) 당상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공역(工役)을 감독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왕래할 때 정릉(貞陵) 중건청의 예에 따라 각 고을로 하여금 나와 대접하지 말도록 하고 선혜청(宣惠廳)에서 쌀이며 찬대를 지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p>	<p>○左議政許積啓: “請以戶曹判書金佐明、禮曹判書朴長遠, 爲靖陵丁字閣重建廳堂上, 使之往來看檢。 而往來之時, 依貞陵重建廳例, 勿令各邑出待, 自宣惠廳給糧饌價米。” 從之。</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8월 23일 (계미) 1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뜸을 떴다. 뜸이 끝난 뒤에 수라 드시기를 싫어하고 다리가 편치 않은 것에 대해 약을 처방하여 들었다. 이때 상의 건강이 한 달이 넘도록 편찮았는데, 턱 아래 좌우에 난 응어리가 점점 커지고 피부가 수척해져 탕약도 잘 드시지 못했으므로 신하들이 걱정하였다.</p>	<p>癸未/上御養心閣受灸。 罷後, 以水刺厭進, 脚部不調, 藥房議藥以入。 時上候彌月未寧, 曠下左右, 結核漸大, 肌膚漸瘦, 不能進御湯藥, 群下憂之。</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9월 1일 (신묘) 1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養心閣)에 나가니, 약방(藥房)이 들어와 진찰해 보고 상의 열이 높다며 뜸뜨던 것을 중지시켰다. 도제조 허적(許積)이 나아가 상의 병세를 묻고 여러 의원들에게 진맥해 보도록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맥이 뛰는 것이 허약합니다.” 하였다. 이때 상이 수라 드시기를 싫어하여 수랏상이 앞에 이르면 구역질부터 먼저 하였다. 여러 의원들이 모두들 말하기를 “이는 분명히 담화(痰火)이니 육군자탕(六君子湯)을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p>	<p>○辛卯朔/上御養心閣, 藥房入診, 以上熱盛停灸也。 都提調許積進問上候, 使諸醫診脈, 皆曰脈候虛弱矣。 時上厭進水刺, 近前則先嘔逆。 諸醫皆以爲明是痰火, 宜進六君子湯。</p>

	<p>하였다.</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9월 7일 (정유) 1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養心閣)에 거둥하니 약방이 들어와 진찰하였다. 도제조 허적이 나아가 상의 병세를 묻고 또 식사의 정도를 물으니, 상이 이르기를</p> <p>“먹는 것이 하루에 불과 두어 홉이다.”</p> <p>하였다. 이때 상이 수라를 싫어한 지 이미 넉 달째여서 옥체가 수척해 있었다. 허적이 의관(醫官)으로 하여금 들어와 맥을 짚어보게 할 것을 청했다. 의관들이 물러가자 허적이 능풍군(綾豐君) 구인기(具仁壆)의 병이 중함을 아뢰자 상이 이르기를,</p> <p>“구인기는 훈신(勳臣)으로 아들이 하나뿐이다. 그 아들 구일(具鎰)을 홍주 영장(洪州營將)에서 체직시켜 죽기 전에 서로 만나보도록 하라.”</p> <p>하니, 허적이 아뢰기를,</p> <p>“구인기의 신병이 이같으니 구일을 영장에서 체직시킨다 하더라도 교대하는 시일이 걸려 생전에 서로 보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일찍이 인조조(仁祖朝)에 이수광(李睟光)이 병을 앓을 때 그 아들 이성구(李聖求)가 전라 감사였는데, 인조가 그로 하여금 올라와 병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 일처럼 분부하소서.”</p>	<p>○丁酉/上御養心閣，藥房入診。都提調許積進問上候，又問玉食多少，上曰：“所噉不過數合矣。”時上厭進水刺，已四朔，玉體瘦削。積請令醫官，入診脈候。醫官退，積陳綾豐君具仁壆病重狀，上曰：“仁壆以勳臣，只有獨子。遞其子鎰洪州營將，使及未死前相見。”積曰：“仁壆之病如此，雖遞鎰營將，交代之際，似難及生前相見。曾在仁祖朝，李睟光有病，而其子聖求爲全羅監司，仁祖使之上來救護。今亦依此分付。”上可之。積曰：“刑曹事可慮。而必遠削版之論，極可駭，六卿寧有以此擬律之時乎。然必遠之陳疏，人皆以爲不可無臺啓，速爲處置可也。”上曰：“必遠今姑差。”積曰：“吏曹判書趙復陽陳疏引入。向日復陽有失對之過，故臣意以爲不可無罰，果一不擬於吏判望。而復陽時望，元非不合，不可因此永廢。速下疏批，使之行公可也。”</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형조의 일이 염려스럽습니다. 서필원을 삭판하자는 논의는 극히 놀라우니, 육경(六卿)에게 이러한 벌을 적용시킨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서필원의 상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두 대각의 논계가 없을 수 없다고 말하니, 속히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서필원을 지금 우선 체차하도록 하라.”</p> <p>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이조 판서 조복양(趙復陽)이 상소를 올리고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전일 조복양이 대답을 잘못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신의 생각에 벌이 없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과연 이조 판서의 후보에 한번도 의망(擬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복양의 인망이 원래 부적합한 것은 아니니, 이로 인해 영원히 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소에 대한 비답을 속히 내려 공무를 집행하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p> <p>하였다.</p>	
--	---	--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9월 29일 (기미) 2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에 나아가니 약방이 들어와 진찰하였다. 의관이 물러가자 허적이 이어 나아가 아뢰기를,</p> <p>“평안도 무사들의 시재 단자(試才單子)를 아직까지 계하(啓下)치 않고 계시는데, 정시(庭試) 때 명을 내리시고자 해서입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합격한 사람이 60인인가?”</p> <p>하자, 답하기를,</p> <p>“73인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이미 명관(命官)을 보내 시재(試才)해 놓고 만일 보통 때의 상격(賞格)으로 시상한다면 반드시 낙망할 것이므로, 정시 때 모두를 급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p> <p>하니, 답하기를,</p>	<p>○上御養心閣，藥房入診。醫官退，許積因進曰：“平安道武士試才單子，時未啓下，無乃欲於庭試時發命乎？”上曰：“入格六十人乎？”對曰：“七十三人也。”上曰：“既遣命官試才，若施以常時賞格，則必落莫，欲盡數賜第於庭試時也。”對曰：“臣意如是，而此乃恩典，不敢請矣。”又以正言金德遠疏批，久不下爲言，上不答。上曰：“禮曹以祔廟後飲福宴取稟。飲福之義，親祭受福，還與群工同慶之義。不親祭而攝行，則飲福之禮，何所據而取稟乎。問于該曹。”臨罷，積曰：“前日庭試稟定之後，纔出閣門，而前席之言，已播中外人。此西路武士取才賜第事，出於特教，若以臣之所達傳播，則事甚未安。請使承旨，分付史官，慎勿傳說。”上曰然。承旨李程承教而退。</p>

“신의 생각도 그와 같았으나 그것은 은전이기에 감히 청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 정언 김덕원(金德遠)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 오랫동안 내리지 않고 있음을 아뢰었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예조가, 부모한 뒤 음복연(飲福宴)을 열 것인지 물어 왔다. 음복(飲福)의 의미는 친히 제사를 지낸 뒤 복을 받고 다시 여러 신료들과 경사를 함께한다는 뜻이다. 친히 제사지내지 못하고 섭행시켰는데, 음복의 예를 어디에 근거해 묻는단 말인가. 해조에 물으라.”

하였다. 파할 무렵에 허적이 아뢰기를,

“전일 정시를 품정한 뒤 함문(閤門)을 나서자마자 탑전에서 한 말들이 벌써 중외의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서로(西路) 무사를 시재하여 급제시키는 일은 특별 분부에서 나온 것인데 만일 신이 아뢴 것이라고 전파된다면 매우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승지로 하여금 사관에게 분부케 하여 절대로 말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하였다. 승지 이정(李程)이 전교를 받고 물러갔다.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10월 1일 (신유) 3번째기사</p>	<p>장령 변황(卞攄)과 지평 이명익(李溟翼)이 제향에 쓴 소가 살찌지 않은 죄를 논계해 전생서(典牲署)의 해당 관원을 파직하자고 청하니, 상이 따랐다.</p>	<p>○掌令卞攄、持平李溟翼論祭享牛牲 不腓之罪，請罷典牲當該官，上從之。</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10월 14 일(갑술) 1번째기사</p>	<p>홍문관이 물의 힘으로 돌아가게 만든 혼천의(渾天儀)와 자명종(自鳴鐘)을 올 렸다. 앞서 상이 이민철(李敏哲)에게 명해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혼천의를 만 들게 하고 홍문관으로 하여금 맡아 감독케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민철이 만들어 올린 것이다. 또 송이영(宋以穎)에게도 자명종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 던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두 사람이 몸과 마음을 기울인 공로가 결코 적지 않다. 해조로 하여금 참작 해 논상토록 하고, 장인들에게도 해조로 하여금 미포(米布)를 지급하게 하 라.” 하니, 이민철은 가자하고 송이영은 실직을 제수하였다.</p>	<p>甲戌/弘文館進渾天儀水激之制及自鳴 鐘。先是上命李敏哲，造成渾天儀水 激之制，而令弘文館句管，至是敏哲畢 造以上。又令宋以穎，造自鳴鐘以 進。上曰：“兩人運用心力，功甚不 小。令該曹參酌論賞，工匠等亦令該 曹題給米布。”敏哲加資，以穎拜實 職。</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10월 28 일(무자) 3번째기사</p>	<p>어사 권격(權格)을 수원(水原)에 보내 무사들을 유엽전(柳葉箭)·기추(騎菟)·조 총(鳥銃)으로 시재(試才)케 하였다. 입격한 장수와 제 부대의 군인들에게는 전 일 강도와 남한 산성의 시재에서 내린 상격처럼 미포(米布)와 궁전(弓箭)을 차등있게 지급했다.</p>	<p>○遣御史權格于水原，試才武士，以柳 葉箭騎菟鳥銃。其入格將官諸色軍人 等，依前日江都、南漢試才賞格，給米 布弓箭有差。</p>
<p>현종 17권, 10년 (1669 기유 / 청 강희 (康熙) 8년) 11월 22 일(신해) 1번째기사</p>	<p>약방이 약을 상의해서 들었다. 약방이 여러 의원들과 선비들 중 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상의하니, 모두들 “크게 보(補)가 될 효험으로는 지금 드시고 계시는 황기 인삼차(黃芪人蔘茶) 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으나, 만일 탕제(湯劑)를 곁해 드신다면 효험이 반드</p>	<p>辛亥/藥房議藥以入。藥房與諸醫及 士夫之曉解藥理者商議，皆以爲峻補之 功，無踰於卽今所進黃芪人蔘茶，而若 兼進湯劑，則收效必倍，遽劑進補中益 氣湯。</p>

	<p>시 배로 나타날 것이다.”</p> <p>고 해서, 마침내 보중 익기탕(補中益氣湯)을 지어 올린 것이다.</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1월 8일 (병신) 2번째기사</p>	<p>이 당시 겨울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을 떠낼 수가 없었는데, 이에 이르러서 비로소 얼음의 저장을 명하였다. 그런데 공역이 배나 들고 모집한 일꾼들의 가미(價米)가 태반이나 부족하였으므로, 예조가 진휼청으로 하여금 보조토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는 대개 진휼청에는 저축된 것이 많이 있었고, 일찍이 흉년에 가미를 보조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p>	<p>○時冬暖，不得伐冰，至是始命藏冰。而功役倍重，募軍價米，太半不足，禮曹請令賑恤廳相助，上從之。蓋以賑廳多有留儲，曾於凶歲助價，有例也。</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2월 12일 (경오) 2번째기사</p>	<p>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왼쪽 응어리진 곳에 침을 맞고 고름을 뽑아냈는데, 약방의 도제조 이하가 입시하였다. 의관들이 물러가자, 영의정·우의정과 호조판서 권대운, 예조 판서 박장원(朴長遠)을 인견하였다. 권대운이 청국의 사신에게 별도의 선물 제공과 통역관에게 비밀히 선물 제공하는 일을 진달하니, 상이 별도로 은그릇을 제공하고 또 인삼·표피(豹皮)·호초(胡椒) 등의 물품을 제공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청국 상사(上使)가 황제에게 친애를 받는 자라고 자칭하면서 바라는 바가 매우 컸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는 빛이 있었다. 상이 두 번이나 중사(中使)를 보내 오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그릇을 선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데다 또 뒤 폐단이 염려되어 중도에서 몰래 선사하게 하였는데, 그제서야 상사는 크게 기뻐하였다. 네 통역관에게 선사한 은이 2천 수백여 냥에 이르렀다.</p>	<p>○上御養心閣，左邊核處，受鍼破膿，藥房都提調以下入侍。醫官退，引見領右相、戶曹判書權大運、禮曹判書朴長遠。大運以清使別贈及通官密贈之事陳達，上命別贈銀器。又贈人蔘豹皮胡椒等物。時清上使，自稱爲皇帝所親信，意望甚大，頗有不悅色。上再遣中使請來，而終不來，故欲贈銀器。而難其名，且慮後弊，密贈於中路，使乃大喜。四通官都贈銀，至二千數百餘兩。</p>

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3월 9일
(병인) 1번째기사

상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빈(賓)과 찬(贊)에게 세자의 관례를 시민당(時敏堂)에서 의식대로 행하라고 명하였다. 빈은 좌의정 허적(許積), 찬은 예조 판서 박장원(朴長遠)이었다. 사(師)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찬신 송준길(宋浚吉), 빈객 민정중(閔鼎重)·이경억(李慶億)·조복양(趙復陽), 주인(主人) 낙선군(樂善君) 이숙(李淑)이 먼저 시민당에 나아가 각자의 위치로 들어가 있었다. 빈이 교서를 받들고 동궁에 나아가 교서를 읽었다. 교서의 내용에,

“왕은 이른다. 세자 이돈(李焯)에게 교시하노라. 길일에 관례를 행하는 것은 대개 옛 법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에 좌의정 허적에게 명하여 동궁에 나아가 예식을 행하게 하노라.

나는 생각건대, 예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요, 관례는 예를 행하는 시초이다. 하늘을 본뜬 것이 관의 제도이고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은 관례의 의식이다. 관례를 행한 뒤에야 인도가 갖추어지고 인도가 갖추어진 뒤라야 예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옛날에 성왕들이 관례를 중요시하였다. 더구나 너는 임금의 후사로 종묘를 받들 것이므로 만백성들의 기대 속에서 관례를 행하게 되었으니 그 예가 중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너 세자 이돈은 천성이 순수하고 기질이 청명하였다. 어릴 때부터 늙름하기가 장성한 자 같아 힘써 가르쳐 주는 스승이 없었지만 행동은 반드시 법도를 따랐다. 겨우 옷을 지탱할 만한 때에 세자로 정하였더니, 공부가 날로 진보되고 글 솜씨도 날로 빛났다. 나를 따라 종묘에 알현케 하였더니 몸가짐을 스스로 엄숙하게 하였고, 나아가 배움에 있어서는 예의에 어긋남이 없었다. 나이는 비록 어리나 덕기(德器)가 이미 드러났기에, 너의 관을 갖추고 너의 의복을 갖추었다. 너에게 술을 내리고 자(字)를 내려 아름다운 일을 이루니,

○丙寅/上御仁政殿，命賓贊行世子冠禮于時敏堂如儀。賓左議政許積，贊禮曹判書朴長遠也。師領議政鄭太和、贊善宋浚吉、賓客閔鼎重·李慶億·趙復陽，主人樂善君瀟，先詣時敏堂，入就位。賓奉教者，詣東宮宣教。

王若曰，

教世子諱【焯。】吉日元服，率由舊章。命左議政許積，就宮展禮。予惟禮，爲國之本，冠，爲禮之始。象天，冠之制也，成人，冠之儀也。冠而後，人道備，人道備而後，禮義立。是故古者，聖王重冠，矧爾君嗣，主器承祧，萬姓攸望，加以元服，其禮可不重歟。咨爾世子諱，資性純正，氣質清明。粵自孩提，儼若長成，居無勤傳，動必循矩。甫及勝衣，爰正儲位，講誦日進，溫文日章。從而謁廟，齊莊自將，出而就學，禮容無違。年齒雖幼，德器已彰，茲具爾冠，用備爾服。醴爾字爾，以成嘉事。予喜既深，責彌大。此謂成人，其可不勩。夫人有百

	<p>나의 기쁨 매우 깊지만, 너의 책임은 더욱 커졌다. 이것을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니,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대체로 사람에게겐 여러 가지 행실이 있으나 효제(孝悌)보다 앞서는 것은 없나니, 지극한 덕과 긴요한 도리를 성현이 밝게 가르쳤다. 너는 이미 능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 힘써 행하여, 군친(君親)에게 사랑과 공경을 독실히 하고 동기(同氣)에게 화락을 다하라. 이를 온 나라에 미루어 나가면 인륜의 기강이 설 것이니, 요순의 도도 이것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반드시 배워서 밝혀야만 능히 행하여 실천할 수 있다. 배우는 방법의 요점은 이치를 궁구하여 성품을 다하고 공경을 주로 삼아 성심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다. 심법(心法)으로 서로 전한 것이 책 속에 갖추어져 있으니, 너는 힘써 처음부터 끝까지 학문에 종사하라.</p> <p>《전(傳)》에 ‘대인은 어린아이 때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고, 《주역(周易)》에 ‘대인은 천지와 덕이 합치되고 일월과 밝음이 합치된다.’고 하였다. 대인이 천지 일월과 합치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때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제 어린 나이로 수양이 벌써 올라라서, 천리가 완전하고 외부의 유혹이 섞이지 않았다. 이런 근본을 바탕으로 굳게 지켜 확충해 나가면, 지행(知行)이 서로 이루어지고 습성(習性)이 함께 이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조예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p> <p>아, 우뚝한 관으로 머리를 장엄하게 하고 옷을 갖춰 몸을 감싸는 것은, 화려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행을 책임지우려는 것이다. 예식만 행하고 그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너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예의를 공경히 하여 의관을</p>	<p>行，莫先孝悌，至德要道，聖訓所昭。因爾所已能者，而力行之，篤愛敬於君親，盡和樂於同氣。推及率土，人紀可立，堯、舜之道，惟是而已。然必學而明之，乃能行而踐之。學之道，要在窮理而盡性，主敬而存誠。心法相傳，方冊具在，爾其懋哉，終始典學。傳曰：“大人者，不失赤子之心。”《易》曰：“大人者，與天地合其德，與日月合其明。”大人之合天地日月者，以其有赤子之心也。爾今沖年，蒙養既正，天理渾全，外誘不雜。由此根基，固守擴充，知行交致，習性俱成。則其所造詣，何可量也。於戲！巍冠而莊首，備服而庇躬，非爲其華，將責其實也。行其禮，而不能行其道，與童幼奚別焉。惟爾念哉。服此訓辭，欽此禮儀，整其衣冠，尊其瞻視，敬禮賢德，沈潛聖學，夙夜寅畏，罔或豫怠。承天之慶，永永無疆，故茲教示，想宜知悉。</p> <p>讀畢，世子行禮如儀。尚方官進翼善冠，陞西階，賓受之，進世子席前，東向立祝曰：“令月吉日，始加元服，棄</p>
--	--	---

단정히 하고 시선을 바로 가지며, 공경의 예와 훌륭한 덕으로 성인의 학문에 몰두하되,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안일과 나태가 없게 하라. 그러면 하늘의 축복을 받아 길이길이 끝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시하노니, 다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노라.”

하였다. 입기를 마치자 세자가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상방관(尙方官)이 익선관(翼善冠)을 받들고 서편 계단으로 오르니, 빈이 받아서 세자의 자리 앞에 올리고, 동쪽을 향하고 서서 축원하기를,

“좋은 달 좋은 날에 처음으로 관을 씌우니, 어릴 때의 뜻을 버리고 어른의 덕을 삼가소서. 오래오래 장수하시어 큰 복을 받으소서.”

하고, 꿇어앉아 관을 씌웠다. 세자가 관을 쓰고 일어서니, 빈이 읍하였다. 세자가 동서(東序)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나오니, 빈이 또 읍하였다. 세자가 자리에 앉으니, 빈과 찬이 꿇어앉아 처음에 씌웠던 관을 벗기었다. 상방관이 원유관(遠遊冠)을 올리니, 빈이 받아서 앞에 올리고, 서서 축원하기를,

“좋은 달 좋은 때에 아름다운 관(冠)을 다시 올리오니, 위의를 공경하고 덕을 밝히소서. 만년토록 장수하고 길이 행복을 받으소서.”

하고, 꿇어앉아 관을 씌우고 빈이 읍하였다. 세자가 들어가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나오니, 빈이 읍하고, 세자는 자리에 앉았다. 빈과 찬이 꿇어앉아 두 번째 씌웠던 관을 벗겼다. 상방관이 평천관(平天冠)을 올리니, 빈이 받아 앞에 올리고, 서서 축원하기를,

厥幼志，慎其成德。壽考維祺，以介景福。”乃跪而冠之。世子既冠而興，賓揖。世子入東序帷內，服袞龍袍出，賓又揖。世子坐，賓、贊跪，脫初加之冠。尙方官進遠遊冠，賓受之進前，立祝曰：“吉月令辰，乃申嘉服，克敬威儀，式明厥德。眉壽萬年，永受祺福。”乃跪而冠之，賓揖。世子入，服絳紗袍出，賓揖，世子坐。賓、贊跪，脫再加之冠。尙方官進平天冠，賓受之進前，立祝曰：“以歲之正，以月之令，咸加其服，以成厥德。萬壽無疆，承天之慶。”乃跪而冠之，賓揖。世子入，輔德設醴席。世子服冕服以出，就席南向坐。賓受醴，詣世子席前，北向立祝曰：“甘醴惟厚，嘉薦令芳。拜受祭之，以定厥祥。承天之休，壽考不忘。”跪進醴爵。世子受醴爵祭醴，啐醴。弼善引世子，降自西階，立於西階之東南向。賓少進，字之曰：“禮儀既備，令月吉日，昭告厥字。君子攸宜，宜之於嘏，永受保之。奉教字明普。”世子再拜曰：“某雖不敏，敢不祇奉。”世子行冠禮畢，賓許積、贊朴長遠詣闕復命。

	<p>“좋은 해 좋은 달에 관복을 모두 입히오니, 그 덕을 이루소서. 만수 무강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소서.”</p> <p>하고, 꿇어앉아 관을 씌우고 빈이 읊하였다. 세자가 들어가니, 보덕(輔德)이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세자가 면복(冕服)을 입고 나와 자리에 나아가 남쪽을 향하고 앉았다. 빈이 술을 받아 세자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축원하기를,</p> <p>“맛좋은 술을 정성껏 올리니 향기롭습니다. 절하고 받아 제사지내어 상서로움을 정하소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받들어 노년이 되도록 잊지 마소서.”</p> <p>하고, 꿇어앉아 술잔을 올렸다. 세자가 술잔을 받아 제사지내고 술을 마셨다. 필선(弼善)이 세자를 인도하여 서쪽 계단으로 내려와서, 서편 계단의 동쪽을 향하였다. 빈이 조금 앞으로 나가 자(字)를 전하면서 말하기를,</p> <p>“관례가 이미 갖추어졌으니 좋은 달 좋은 날에 자(字)를 고하옵니다. 군자에게 마땅한 바이고 복받기에 마땅하오니, 받아서 길이 보존하소서. 교지를 받들어 자를 명보(明普)라 하옵니다.”</p> <p>하니, 세자가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p> <p>“내 비록 어리석으나 감히 공경히 받들지 않으리오.”</p> <p>하였다. 세자가 관례를 마치니, 빈 허적과 찬 박장원이 대궐에 나아가 복명하</p>	
--	--	--

	<p>였다.</p>	
<p>현종 18권, 11년</p>	<p>중화(中和)에 침몰한 배의 쌀과 콩 5백 30 석, 양덕(陽德)에 받아들이지 못한</p>	<p>○命中和敗船米太五百三十石零, 陽德</p>

<p>(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4월 3일 (기축) 2번째기사</p>	<p>환곡의 쌀과 콩 1백 60석을 모두 탕감하도록 명하였다. 이는 감사의 장계로 인한 것이다.</p>	<p>未捧還上米太一百六十石零，一併蕩滌。因監司狀啓也。</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8월 8일 (임진) 1번째기사</p>	<p>사간 이익상(李翊相)이 아뢰기를, “팔도에 흉년이 들어 인민들이 굶어 죽었다는 보고가 연속하여 들어오고 있으니, 흉년 구제 정책을 불에 타고 물에 빠진 것을 구원하듯 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에 분부하여 굶주리는 자들을 뽑아내어 먼저 구제하도록 하소서. 또 지금 서리가 너무 일찍 내려서 추수가 결딴났으니, 경차 도사(敬差都事)를 즉시 파견해서 연분(年分)을 속히 마치도록 하여, 시급히 구제 정책을 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p>	<p>○壬辰/司諫李翊相啓曰：“八路凶歉，人民餓死之報，連續入來，賑荒之政，當如救焚拯溺。請令諸道監司，分付各邑，抄錄其飢餓之類，而爲先賑救。且今霜降太早，秋事已決，敬差都事，登時發遣，使之速完年分，急行賑政。”上從之。</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8월 23일 (정미) 7번째기사</p>	<p>진휼청에 강도의 미곡 3만 석을 배로 운반해다가 용도에 보충해 쓰라고 명하였다. 허적 등이, 도하(都下)에 크게 기근이 들었는데 각사의 공물가를 은포(銀布)로만 주게 되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강도의 미곡을 옮겨다 계산해 주고 은포는 각 아문에 맡겼다가 풍년이 되거든 미곡으로 바꾸어 그 수량을 채우게 하라고 청해서, 상이 허락한 것이다.</p>	<p>○命賑恤廳，船運江都米三萬石，以補用度。許積等以都下大飢，各司貢物之價，只給銀布，則勢將難支，請移江都米計給之，以其銀布，付諸各衙門，待年買米，以充其數，上許之。</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8월 28일 (임자) 1번째기사</p>	<p>서울에 사는 선비 중 굶어 죽은 자가 있었다. 한성부에서 보고하니, 상이 하교하기를, “매우 놀랍고 참혹한 일이다. 특별히 홀전을 베풀고 그의 처자에 대해서는 진휼청으로 하여금 양식을 주어 구제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壬子/京城士人有餓死者。漢城府以聞，上下教曰：“事極驚慘。別施恤典，其妻子亦令賑恤廳，給糧救活。”</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9월 10일 (갑자) 3번째기사</p>	<p>통영의 곡식을 옮겨다 제주의 기민을 구제하고, 또 본도의 각사 노비 신공(身貢)을 건감시켰다. 목사 노정(盧錠)이, 세 고을에 있는 곡식은 8천 석에 불과한데 인민의 숫자는 무려 4만 2천 7백여 명이므로 사람은 많고 곡식은 적어 결코 구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연해의 곡물을 얻어 온 섬의 다 죽게 된 목숨을 구제할 것을 청하였는데, 허적(許積)이 아뢰기를,</p> <p>“제주 흉년의 참혹함은 옛날에도 듣지 못한 일입니다. 목사 노정이 촌가를 출입하며 백성이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친히 살피고 기근이 더욱 심한 자는 지성으로 구제하고 있습니다만, 관곡이 매우 적어 이렇게 곡식을 옮겨 줄 것을 요청하였으니, 호남 연해의 각 고을에 있는 통영곡(統營穀)을 보내준다면 거의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사 노비 신공도 완전히 감해 주어 걱정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p> <p>하니, 상이 모두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쌀 2천 석, 조(租) 3천 석을 배로 실어다 구제하였다.</p>	<p>○轉統營穀，賑濟州飢民，且蠲本島各司奴婢身貢。 牧使盧錠以三邑留糴不過八千石，而人民之數，多至四萬二千七百餘口，人多穀少，決難賑活，請得沿海穀物，以濟一島濱死之命。 許積白上曰：“濟州凶荒之慘，古亦未聞。 牧使盧錠出入村家，親審民食之有無，尤甚飢餓者，至誠賑救，而官糴甚少，有此移粟之請，以統營穀在湖南沿海各邑者移送，則庶可救活。 且各司奴婢身貢，亦宜全減，以示軫恤之意也。” 上皆許之，遂以米二千石、租三千石，船運以賑之。</p>
<p>11년(1670 경술 / 청 강희(康熙) 9년) 9월 11일(을축) 2번째기사</p>	<p>이때 제주 등 세 고을에 크게 기근이 들어 다투어 말을 잡아 먹었는데, 백성들이 모두들, ‘말을 잡아 먹느니 차라리 국가의 둔전에 바치고 국가 곡식을 받아먹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다. 이를 목사 노정이 보고하고 상경한 제주 사람들도 이를 비국에 호소하였으므로, 허적이 상계 아뢰어, 태복시 소속의</p>	<p>○時濟州等三邑大飢，爭殺馬畜而食之。 民情皆以爲與其殺食，寧納國屯而受食國穀。 牧使盧錠以聞，濟州人上京者，亦以此訴于備局。 許積白上，</p>

	양남 둔전의 곡식으로 값을 계산해 주고 사들여 연해의 목장에 두도록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請以太僕所屬兩南屯穀，計價買之，置於沿海牧場，上許之。
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9월 29일 (계미) 1번째기사	모든 도의 임기가 만료된 수령을 명년 보리 추수 때까지 유임시킬 것을 명하였다. 이때 팔도에 큰 흉년이 들어, 수령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일이 고을 백성들의 큰 폐단인데다 진흙을 처리하는 정사를 숨씨가 서툰 자에게 맡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癸未/命諸道瓜滿守令，限明年麥秋仍任。時八路大侵，守令迎送，實為邑民之巨弊，而料理賑救之政，尤不可付諸生手。故有是命。
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11월 1일 (갑인) 3번째기사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치계하여 구황의 방책을 조목조목 아뢰었다. 비국이 회계하여 그 가운데 아홉 조항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다. 그 내용은, 1. 격포 등의 적곡을 특별히 모곡을 감면하도록 명하여서 작으나마 은혜를 베풀 것, 2. 산성의 적곡을 각기 그 성 아래의 창고에서 거두게 하고 각종 곡식으로 대신 올리는 것을 허락할 것, 3. 각 관사의 노비에게 면전을 허가하여 받은 돈으로 진흙의 비용에 보태 쓸 것, 4. 본도의 전결을 중중(中中) 이하로부터 하상(下上)까지 3등급은 모두 하중(下中)에다 넣고 하중의 전을 하하(下下)에다 넣는 것은 허락하지 말 것, 5. 속오군의 각종 병기는 관비나 자비를 막론하고 관가에서 거두어 모아 명년 가을에 다시 지급하게 하고, 전선(戰船)과 군기도 소속 본관 및 각 진포에	○全羅監司吳始壽馳啓，條陳救荒之策。備局回啓，就其中九條，請施行之。一曰，格浦等糴穀，特令除耗，以施一分之惠。二曰，山城穀，使之收捧于各其城底之倉，而且許其代捧各穀。三曰，各司奴婢許令免賤，受價補用於賑資。四曰，本道田結宜自中中以下，至下上三等，並置下中，而下中之田，則勿許更置下下。五曰，東伍軍各樣兵器，勿論官備與自備，許令收聚官家，待明秋還給，戰船軍器，亦許移置於所屬本官及各鎮浦。六曰，設賑時所用沈醬之豆，統營與各衙門會簿中，許給三千石。七曰，旱田木綿之尤甚不實處，亦許給災。八曰，戶曹所管鹽稅木，許以本營銀貨相換，捕用於賑資。九曰，軍士之物故者，宜

	<p>옮길 수 있게 할 것,</p> <p>6. 진휼할 때 필요한 장을 담글 콩은 통영과 각 아문의 회부 가운데서 3천 섬을 지급할 수 있게 할 것,</p> <p>7. 가뭄이 든 밭의 목면 가운데 특히 부실한 곳도 급재(給災)를 허락할 것,</p> <p>8. 호조 소관의 염세 목면을 본영의 은화와 바꾸어 진휼의 자금에 보태 쓰게 할 것,</p> <p>9. 사망한 군사는 명년 가을까지 대정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그 번포를 감할 것 등이었는데, 상이 모두 허락하였다.</p> <p>선혜청이 또 그 장계 가운데 각종 복호(復戶)에 결수를 양감하는 일은 역의 완급에 따라 차례로 감하되, 경기·호서도 함께 시행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를 기를,</p> <p>“효자, 충신, 열녀에 내린 복호는 이와 같은 흉년에는 특별히 진휼함이 옳으니 감하지 않는 것이 좋다.”</p> <p>하였다. 전에 허적이 오시수의 장계를 상 앞에서 조목조목 아뢴 때 노비의 속량에 관한 내용에 이르자 상이 체신에게 두루 물었다. 김좌명이 아뢰기를,</p> <p>“1백 구를 속량하면 겨우 5천 섬을 얻으니 소득이 많지 않은데 길을 여는 것은 매우 곤란하니 신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p>	<p>限明秋未代定間， 減其番布， 上皆許之。 宣惠廳又以其狀啓中， 各樣復戶量減結數事， 請從役之緊歇， 次第減之， 因令京畿、湖西， 亦一體施行， 上曰：“孝子、忠臣、烈女所給復戶， 如許此凶年， 尤宜軫恤勿減可也。” 先是許積以始壽狀啓， 條陳於上前， 至奴婢贖良事， 上遍問諸臣。 金佐明曰：“許贖一百口， 僅得五千石， 所得無多， 開路甚難， 臣未知其可也。” 洪重善曰：“此路一開， 則京人以賤直， 圖贖官婢， 必將紛紜， 決不可輕許也。” 許積曰：“誠如重善之言。 今當只許外方各司奴婢， 而嶺南亦曾有此請， 似當一體許之耳。” 上從之。 因命竝許他道。</p>
--	--	--

	<p>하고, 홍중보가 아뢰기를,</p> <p>“이러한 길이 일단 열리게 되면 서울의 사람들이 싼 값으로 관비를 속량하려 하여 장차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이니 절대로 가볍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p> <p>하니, 허적이 아뢰기를,</p> <p>“진실로 중보의 말과 같습니다. 지금은 외방 각사의 노비만 허락을 하되, 영남에서도 일찍 이러한 청이 있었으니 함께 허락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p> <p>하자, 상이 따랐다. 인하여 다른 도도 아울러 허락하라고 명하였다.</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11월 10 일(계해) 2번째기사</p>	<p>전라 감사 오시수가 상소하여 납육(臘肉)을 진상하는 일이 큰 민폐가 되는 상황을 극진하게 논하니, 상이 훌륭하다고 비답하고, 하교하였다.</p> <p>“이번에 오시수의 상소를 보니 납육의 진상이 한 도의 큰 폐라고 하니, 마음이 몹시 측은하다. 금년의 납육은 양 대비전 외에는 잠시 동안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p>	<p>○全羅監司吳始壽上疏, 極陳臘肉進上, 大爲民弊之狀, 上優批答之, 因下教曰: “今觀吳始壽疏, 臘肉進上, 爲一道巨弊云, 心甚惻然。今年臘肉, 兩大妃殿外, 姑勿封進可也。”</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11월 20 일(계유) 2번째기사</p>	<p>강원 감사 김익경(金益景)의 장계에 따라 춘천·횡성·낭천·원주 등 4개 읍의 콩 1백 73석과 양구·인제·홍천·정선·평해·울진·고성 등 7개 읍의 콩을 작목(作 木)한 것 3동(同) 30필을 본도에 지급하여 진휼에 보태게 하였다.</p>	<p>○因江原監司金益景所啓， 春川、橫 城、狼川、原州等四邑， 太一百七十三 石零及楊口、麟蹄、洪川、旌善、平 海、蔚珍、高城等七邑， 太作木三同三 十匹零， 劃給本道， 俾補賑資。</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12월 6일 (기축) 3번째기사</p>	<p>경상도에서 아직 거두지 아니한 공물가(貢物價)에 대해서 특히 흉작이 심한 읍은 3분의 2, 그 다음은 반, 다소 여문 읍은 3분의 1을 감하라고 명하였다. 총 1백 90여 동이었다.</p>	<p>○命減慶尙道未收貢物價， 尤甚邑減三 之二， 其次減半， 稍實邑減三之一。 凡一百九十餘同。</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12월 25 일(무신) 3번째기사</p>	<p>황해 감사 맹주서(孟胄瑞)가 청하기를, “도내 전세의 쌀과 콩을 도저히 거두어 올릴 길이 없으니, 해조가 강도(江都) 에서 그 대용을 취하여 쓰고 본도로 하여금 가을에 강도에 비납케 하여 주소 서. 또 곡식을 얻어 진휼의 자본으로 쓰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진휼청에서 회계하기를, “그 말대로 하소서. 그리고 진휼 자금은 여러 가지 관향 환자곡 4천 석을 지 급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p>	<p>○黃海監司孟胄瑞以道內田稅米太， 萬 無收捧之路， 請自該曹， 取用其代於江 都， 使本道， 待秋備納於江都。 且請 得某穀， 以爲賑救之資。 賑恤廳回啓， 請依其言。 賑資則以管餉還上各穀四 千石劃給。 上許之。</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p>	<p>제주의 세 읍이 태풍의 피해를 심하게 입어 기근의 참상이 다른 곳에 비해 특히 심하였다. 조정에서 전라도로 하여금 미조(米租) 5천 석을 이전하여 구</p>	<p>○濟州三邑， 告被風災， 饑饉之慘， 比 他尤甚。 朝廷令全羅道移轉米租竝五</p>

<p>(康熙) 9년) 12월 27일(경술) 2번째기사</p>	<p>제케 하고 또 각종 씨앗 1천 5백 석을 주었다.</p>	<p>千石以救之， 且與種子各穀一千五百石。</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12월 28일(신해) 4번째기사</p>	<p>황해도에 은율현(殷栗縣)을 다시 두었다. 현이 혁폐되어 그 기한에 차지 않았으나 흉년에 진휼을 베푸는 데 장애가 많았으므로 백성들이 원하여 이 명을 내렸다.</p>	<p>復設黃海道殷栗縣。 縣之革廢， 未准其限， 而凶歲設賑， 事多妨礙， 因民願有是命。</p>
<p>현종 18권, 11년 (1670 경술 / 청 강희 (康熙) 9년) 12월 29일(임자) 3번째기사</p>	<p>청주 목사 남구만(南九萬)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전세 및 대동미 여분을 받아 두었다가 진휼의 자금으로 충당하고, 속오군의 복호 문제는 그대로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잃지 말고, 훈국 별대(訓局別隊)의 보인에게 미포를 징수하여 올리라는 명을 거두어 정지하셔서 그들에게 신의를 잃지 마소서.”</p>	<p>○清州牧使南九萬上疏略曰： 田稅及大同餘米， 願捧留以充賑資， 束伍復戶， 願仍給冊失其心， 訓局別隊保人處， 徵捧米布之令， 願還停冊失其信。 上下其疏于備局議啓， 束伍給復一事外， 皆從其言。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實錄卷之十八終</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1월 8일 (경신) 3번째기사</p>	<p>예조 판서 조복양(趙復陽)이 상차하기를, “신이 접때 등대하였을 때에 양호(兩湖)의 전세는 혹 감면해 주거나 혹 남겨 두어 진휼하는 데 쓰게 하고 관서(關西)의 쌀을 가져와서 대신 채우자는 뜻으로 누누이 아뢰었으나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요즈음 외방의 말을 들으면 민간에 굶어 죽는 무리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날마다 들리는 것이 모두 놀랍고 슬픈 일들입니다. 이런 때에 굶주린 백성에게서 전세를 독촉해 받아 수송해 온다는 것이 차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전량을 남겨 두는 것을 때</p>	<p>○禮曹判書趙復陽上筭曰： 臣頃日登對時， 以兩湖田稅， 或蠲減、或留賑， 而取來關西米， 以充其代之意， 縷縷陳達， 未蒙開允。 近聞外方之言， 民間餓死之類甚多， 日日所聞， 無非驚慘。 當此之時， 督捧田稅於飢餓之民， 轉輸上來， 是可忍者乎？ 今若以盡數停</p>

	<p>우 어렵게 여긴다면 양호의 연해안 고을만 상납하게 하되 쌀과 콩의 두수(斗數)를 적당히 줄여 주게 하고 산간 고을은 모두 받아서 본도에 두었다가,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구휼하는 것은 결코 그만 둘 수 없을 듯합니다.”</p> <p>하였다. 이에 앞서 조복양이 민정중(閔鼎重)·김만기(金萬基) 등과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삼남(三南)의 전세를 감면해 주자고 청하였는데, 허적(許積)·김좌명(金佐明)·권대운(權大運)이 다들 ‘경비가 염려되므로 전세는 결코 줄일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의논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조복양이 물러가서 또 상차하고 며칠이 안 되어 병으로 죽었다. 상이 차자의 사연을 신하들에게 여러 번 물어 보고는 마침내 전세를 받아서 남겨 두었다가 진휼하는 데 보태 쓰라는 명을 내렸다.</p>	<p>留爲甚難，只令兩湖沿海之邑上納，而量減其米太斗數，山邑則竝令捧留本道，分賑飢民，竊恐決不可已也。</p> <p>先是，復陽與閔鼎重、金萬基等，因入侍請減三南田稅，許積、金佐明、權大運皆以爲：“經費可慮，田稅決不可減，”議遂不決。復陽退又上筭，未數日而病卒。上以筭辭，屢詢諸臣，竟有捧留補賑之命。</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1월 16일(무진) 3번째기사</p>	<p>이날 서울 안 선혜청(宣惠廳)·한성부(漢城府)·훈련원(訓練院)의 세 곳에다 비로소 죽을 장만하여 두고 굶주린 백성에게 먹였다. 첫날에는 죽을 먹으러 간 자가 6천여 인이었고 이튿날에는 이미 1만이 넘었다. 빌어먹는 무리에게는 죽을 쑤어 나누어 먹이고 죽을 먹으러 가기 어려운 사족(士族)의 부녀자와 죽을 먹는 사람 중에 시골로 돌아가 농사짓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모두 마른 식량을 주었다.</p>	<p>○是日京中始設粥於宣惠廳、漢城府、訓練院三處，以賑飢民。初日就粥者，六千餘人，翌日已過萬數。丐乞之類，作粥分饋，士族婦女之難於就粥者，食粥中願爲歸農者，竝給乾糧。</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p>	<p>상이 승문당(崇文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p>	<p>○壬申/上御崇文堂，引見大臣、備局諸宰。左相許積曰：“田稅終始以爲可</p>

<p>(康熙) 10년) 1월 20일(임신) 1번째기사</p>	<p>“전세를 줄여야 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자는 민정중(閔鼎重)이고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는 권대운(權大運)입니다. 신은 호조의 경비가 모자라는 것을 익히 압니다마는, ‘백성이 바야흐로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는 말씀을 듣고부터는 성상의 홀륭하신 뜻에 감격해 이제는 감히 처음의 소견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p> <p>“신의 뜻은 본디 전량을 감해 주고 싶었습니다마는, 만일 할 수 없으면 받아서 본관(本官)에다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삼남(三南)과 경기·황해·원양(原襄) 등 여섯 도의 전세는 모두 받아서 본도에 두어 구휼할 밑거리로 삼으라.”</p> <p>하였다. 민정중이 또 나아가 아뢰기를,</p> <p>“각사(各司) 노비의 신공(身貢) 중에서 확실히 지목하여 거둘 곳이 없는 것들은 탕감해야 할 듯합니다.”</p> <p>하고, 권대운이 아뢰기를,</p> <p>“번번이 탕감해 주면 필시 뒤폐단이 있을 것입니다.”</p>	<p>減者，閔鼎重也，以爲不可減者，權大運也。 臣則習知戶曹經費之不足，而自聞有民方飢死，何以救濟之教，感聖上之德意，今不敢膠守初見。” 鼎重曰：“臣意固欲全減，而如不得已，則捧留本官亦好。” 上曰：“三南及京畿、黃海、原襄等六道田稅，竝捧留本道，以爲賑救之資。” 鼎重又進曰：“各司奴婢身貢，指徵無處之類，似當蕩減。” 大運曰：“每每蕩減，則必有後弊。” 上曰：“庚戌條，各司奴婢指徵無處者，蕩減。”</p>
-----------------------------------	---	---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경술년933) 조의 각사 노비 중에서 확실히 지목하여 거둘 곳이 없는 것은 탕감하라.”</p> <p>하였다.</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1월 23 일(을해) 3번째기사</p>	<p>상이 승문당(崇文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이런 때에 나라에 저축된 것이 있다면 백성의 부역을 줄여 주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마는, 저축된 것이 전혀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다.”</p> <p>하자,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p> <p>“지난해에 조금 풍년이 들어 쌀값이 자못 싸지자 공사간에 함부로 쓰고 아낄 줄을 몰랐으니 매우 한스럽습니다.”</p> <p>하고,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p> <p>“모든 일에서 적당히 줄여써야 하겠습니까만 군사에게 드는 것이 가장 많으니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습니다.”</p> <p>하고,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p>	<p>上御崇文堂， 引見大臣、備局諸宰。 上曰：“當此之時， 國有所儲， 則蠲減民役， 顧何難哉？ 蓄積空虛， 誠可悶也。” 柳赫然曰：“上年稍豐， 米價頗賤， 而公私濫用， 不知撙節， 甚可恨也。” 閔鼎重曰：“凡事必須裁省， 而軍兵所費， 最爲不貲， 不可不慮也。” 金萬基曰：“昔在宋時， 輦轂之下， 多養軍兵， 以致國儲虛耗。 中國尙如此， 況我國乎。” 閔鼎重曰：“京中賑濟， 旣已設行， 必須發遣御史， 訪問民間疾怨， 荒政得失， 使之啓聞處置， 此實外方民情之所願也。 雖不遍送諸道， 而自有警飭之效矣。”</p>

	<p>“예전에 송(宋)나라 때 도성에다 군사를 많이 양성하다가 나라의 저축이 헛되이 소비되고 말았습니다. 중국도 이러한데 더구나 우리 나라이겠습니까.”</p> <p>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p> <p>“서울의 구휼에 있어서는 이미 설치하여 시행하였습니다만, 반드시 어사를 보내어 민간의 고통과 원망이나 구황 정책의 잘잘못을 탐문하여 아뢰게 한 다음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로 외방의 백성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각도에 두루 보내지 아니해도 경계하는 효과가 저절로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1월 30일(임오) 3번째기사</p>	<p>제주 목사 노정(盧錠)이 치계하기를,</p> <p>“본도(本島) 세 고을 민생의 일은 이미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백성이 산에 올라가 나무 열매를 줍는데 나무 열매가 이미 다하였고 내려가 들나물을 캐는데 풀뿌리가 이미 떨어졌으므로 마소를 죽여서 배를 채우고 있으며, 무뢰한 자들은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공사간의 마소를 훔쳐서 잡아먹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람들끼리 잡아먹을 걱정이 조석에 닥쳤으니 비참한 모양을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8월부터 죽을 장만하여 구제하고 있으나, 창고의 곡식이 이미 다하여 4만여 명의 굶주린 백성을 다시금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해안 고을의 소금을 넉넉히 들여 보내소서. 전일 옮겨</p>	<p>○濟州牧使盧錠馳啓曰：“本島三邑民事，已至十分地頭。大小人民，上山拾木實，木實殆盡，下取野菜，草根已乏。殺牛馬以充腹，無賴之徒，處處結黨，公私牛馬，偷取屠殺，不知其幾。相食之患，迫在朝夕，愁慘之象，有不忍言。自八月設粥揀活，而倉穀已竭，四萬餘飢民，更無可濟。請以沿海邑鹽石，優數入送。前日移轉五千石之穀，不爲不多，而正二月兩朔賑資猶不</p>

	<p>은 5천 석의 곡식은 많지 않은 것은 아니나, 1, 2월 두 달의 진휼할 거리도 모자라므로 3, 4월에는 한 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서 진구할 방책을 묘당을 시켜 품처하게 하소서.”</p> <p>하였다. 조정에서 전라도에 있는 호조 소금 5백 석과 상평청(常平廳)·통영(統營) 및 양남(兩南)의 사복시 목장 등의 곡식 7천 석을 획급(劃給)하여 전라수영의 병선(兵船)으로 실어 보내게 하였다. 그런데, 해로가 멀고 풍파에 오래 막혀서 지난해 초겨울에 부친 장계가 이제야 도착했고 전후로 곡식을 나르는 배도 제때에 미처 도달하지 못하여 굶어 죽은 섬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p>	<p>足，三四月，則無一升餘存。前頭繼賑之策，請令廟堂稟處。”朝廷以全羅道所在戶曹鹽五百石，常平廳統營及兩南司僕寺牧場等穀，劃給七千石，令全羅水營兵船載送。但海路遼遠。風波久阻，上年冬初所封狀啓，今始來到，而前後運穀之船，亦不能及期得達，以致島民餓死尤多。</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2월 6일 (무자) 4번째기사</p>	<p>경상 감사 민시중이 치계하기를,</p> <p>“진휼한 곡식을 장만할 계획이 없으니, 태복·훈국·호조·상평청 등 각 아문의 소관 곡물을 전량 빌려 쓰게 하고 가을이 되거든 도로 받아서 갚게 하소서.”</p> <p>하였는데, 진청(賑廳)의 회계에 따라 태복 이외 각 아문의 잡곡을 모두 운허하였다.</p>	<p>○慶尙監司閔著重馳啓：“賑穀無計辦出，請太僕訓局、戶曹常平廳、各衙門所管穀物，盡數貸用，待秋還捧以償。”因賑廳回啓，太僕外各衙門雜穀，併許之。</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2월 10</p>	<p>이때 국가의 재정이 바닥이 났다. 호조의 삼창(三倉)에 저축된 것이 4만 석도 채 못되어 두어 달도 버틸 수가 없었으므로 강도(江都)의 군향미(軍餉米) 3만 석과 관서(關西)의 쌀 3만 9천 5백 석을 가져다 경비를 채우고, 또 강도의</p>	<p>○是時，國用蕩竭，戶曹三倉所儲，未滿四萬石，不足以支數朔，乃取江都軍餉米三萬石、關西米三萬九千五百石，</p>

<p>일(임진) 2번째기사</p>	<p>쌀 2만 4천 석과 관서의 쌀 1만 5백 석을 가져오고 또 어영청의 보미(保米) 5천 석을 대여하여 진휼의 밑거리를 채웠다.</p>	<p>以補經費。 又取江都米二萬四千石、關西米一萬五百石，且貸御營廳保米五千石，以充賑資。</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2월 10 일(임진) 3번째기사</p>	<p>서울의 기근이 날로 심하여 한 섬의 쌀 값이 은으로 3냥이었으므로 진휼청이 쌀 8천 3백여석을 내되 한 섬의 값을 1냥 8전으로 정하고 또 목포(木布)로 계산하여 바치는 것을 허용하여 백성을 편리하게 하되 한 사람이 1냥을 넘지 못하게 하여 때를 타서 이익을 노리는 폐단을 막았다. 또 쌀 1만 2천 8백여 석을 내어 서울 백성에게 대여하되 호수(戶數)를 계산하고 등급을 나누어 주었다. 대호(大戶)는 1석, 중호는 10두, 소호는 5두, 독호(獨戶)는 2두였고, 봉료(俸料)를 받는 군사는 대호·중호·소호를 막론하고 모두 3두를 주었다. 이 때문에 굶주리는 자가 자못 구제되었다.</p>	<p>○京城飢日甚，一斛米直三兩銀，賑恤廳發米八千三百餘石，一石之價，以一兩八錢，且許計納木布以便民，惟不使一人過一兩，防乘時射利之弊。 又出米一萬二千八百餘石，糶都民，計戶數分等。 大戶一石，中十斗，小五斗，獨戶二斗，受料軍兵，勿論大中小戶，並給三斗。 是以，飢者頗獲濟。</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2월 17 일(기해) 2번째기사</p>	<p>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치계하였다.</p> <p>“도내 각 고을에서 정월 스무날 이후 혹은 2월 초부터 모두 죽을 쭈어 구휼하고 있습니다만 얼굴이 누렇게 뜬 무리는 죽을 먹여도 구제되지 않아 진휼하는 곳에서 잇따라 죽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날마다 크게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자 굶주린 백성이 모여서 추위와 굶주림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 소리가 몇 리까지 들리고 있으니, 비참한 꼴을 말하자니 목이 메입니다. 죽을 먹는 수는 큰 고을이면 1만여 명이고 작은 고을도 수천 명에 밀돌지 않으니, 한도에서 받아들인 것을 다 쓰더라도 결코 보리가 나기 전까지 이어서 진구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형세를 상세히 살펴보면 종자를 비축하여 둔 집이 열 가운데서 한둘도 안 되고 모두 관가의 대출을 바라고 있는데, 약간 받아들여논 것도 종자로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조정에 보고하더라도</p>	<p>○全羅監司吳始壽馳啓曰：“道內各邑，或自正月念後，或自二月初，舉皆設粥，而黃浮滿面之類，饋粥而猶不能救，連續致斃於賑所。 二月初，連日大風雪，飢民屯聚，呼寒啼飢，聲徹數里，愁慘之狀，言亦哽塞。 就粥之數，大邑萬有餘，小邑不下數千，雖竭一道之所奉，決難繼賑於麥前。 細察民間形勢，種資儲置之家，什無一二，全仰公糶，而若干所奉，無一可合於種子者。 此則雖報朝廷，亦無奈何。 言念及此，痛哭不足云。”</p>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다 보면 통곡도 부족합니다.”	
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2월 17 일(기해) 3번째기사	경기 감사 오정위(吳挺緯)가 치계하여 종자로 쓸 벼와 진구에 쓸 곡물을 얻어 각 고을에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조정에서 강도(江都)의 벼 7천 6백 석과 쌀 8천 석 및 남한(南漢)의 쌀 6천 석을 획급(劃給)하였다. 또 그 계청(啓請)에 따라 남한의 쌀 8천 석과 강도의 쌀 6천 석을 더 주어 백성을 진구하게 하였다.	○京畿監司吳挺緯馳啓，請得種租及賑穀，移轉各邑，朝廷以江都租七千六百石，米八千石，南漢米六千石劃給。又因其啓請，加給南漢來八千石，江都米六千石以賑民。
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2월 21 일(계묘) 2번째기사	팔도의 관찰사와 개성(開城)·강화(江華) 두 부(府)의 유수에게 하유하였다. “나라가 의지하는 것은 백성이고 백성이 하늘처럼 우러르는 것은 먹는 것인데, 근년 이래로 참혹한 기근을 여러 번 만나 공사 간에 텅텅 비어서 굶어 죽는 자가 즐기고 있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이 장차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한밤중에 생각하면 아픔이 내 몸에 있는 듯하다. 아아, 가뭄과 홍수가 재해를 가져오는 것은 농사의 운세가 불행하기 때문이기는 하나, 도량이 수리되지 않은 것은 또한 사람이 힘을 다 들이지 않아서이니, 식량을 넉넉히 할 방법에 힘을 다할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날씨가 점점 풀려서 봄의 경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 이때가 바로 온갖 곡식을 파종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권장하는 정사를 조금도 늦출 수 없으니, 사방을 순행하면서 들관을 살펴보되 종자와 식량이 있는가 묻고 경운(耕耘)과 파종이 늦지 않은가를 살피라. 그리하여 무릇 백성의 힘이 모자라는	○諭八道觀察使、開城、江華兩府留守曰：“國之所依者民，民之所天者食，而近年以來，累遭饑饉之慘，公私赤立，餓莩相望，哀我民生，將至靡有孑遺。中夜以思，若恫在己。噫！旱澇致災，雖因年運之不幸，溝洫不治，亦由人力之未盡，裕食生穀之道，可不思所以盡其力乎？即今春日漸舒，東作漸迫，播藝百穀，此正其時。勸課之政，不可少緩，巡行四境，審視田野，詢其種食之有無，察其耕播之早晚。凡諸民力之所不足，菑畬之所未墾，有以助其窮乏，勸其耕耘者。其責在卿，卿其體予至意，告諭于道內。而守令亦

	<p>것이 있거나 목정밭이 일구어지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들의 공핍을 도와 주고 그들의 경운을 권해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이 경에게 있으니, 경은 내 지극한 뜻을 몸받아 도내에 알리라. 그리고 수령도 반드시 하인을 간단히 거느리고 친히 다니며 살펴 종자와 식량을 도와 주고 경작과 개간을 권하여 파종이 시기를 잃어 농토가 황폐해지지 않게 하고 인사가 미진한 것이 없도록 힘써서 농삿일에 부족한 것이 없기를 기필하게 하라.”</p>	<p>須簡率驕從，親自行審，資其種糧，勸其耕墾，毋使播種愆期，農畝就荒，務盡人事之未至，以期田功之無虧。”</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2월 25 일(정미) 2번째기사</p>	<p>황해 감사 맹주서(孟胄瑞)가 치계하여, 굶주리는 백성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보릿가을은 아직도 멀었으니 곡물을 얻어 진구를 계속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본도는 고을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조정에서 처음에 4천 석을 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진구하고 남은 첩가(帖價)와 월과 군기(月課軍器)를 쌀로 바꾼 것 등의 곡물 수천 석을 계속하여 쓰도록 또 허가하였다.</p>	<p>○黃海監司孟胄瑞馳啓，以飢民日增，麥秋尙遠，願得穀繼賑云。本道郡邑最少，故朝廷初給四千石，至是又許繼用賑餘帖價，月課軍器作米等穀數千石。</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2월 29 일(신해) 4번째기사</p>	<p>진휼청에서 2월 달에 돌본 굶주린 백성이 2만 인이었고 죽은 자가 60인이었다. 이때 굶주린 백성 2만 인에게 먹이는 죽을 서른 또는 마흔 가마를 쑤어서 썼는데 닭이 울 때 시작하여 한낮에 이르러 끝나고 한낮부터 다시 쑤어서 밤이 깊어서야 파하였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붐벼서 혹 먹지 못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거둬 먹는 자도 있었다.</p>	<p>○賑恤廳二月朔，飢民二萬人，死者六十人。是時飢民二萬所饋粥，煮用三四十釜，始自鷄鳴，至午而畢，自午更設，夜深乃罷。末捐則紛沓莫甚，或有不得食者，或有疊食者。</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3월 3일 (갑인) 1번째기사</p>	<p>왕세자의 가례(嘉禮) 때에 서울과 지방에서 진전(進箋)·진하(進賀)하고 방물(方物)·물선(物膳)을 봉진하는 규례가 있으므로 예조가 규례에 따라 계품하니, 상이 진전만 하고 방물·물선은 봉진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흉년이기 때문이었다.</p>	<p>○甲寅/王世子嘉禮時，有京外進箋、陳賀、方物、物膳封進之規，禮曹依例啓稟，上命只進箋，勿封方物、物膳。以凶年故也。</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3월 10일(신유) 3번째기사</p>	<p>함경 감사 홍처후(洪處厚)가 치계하기를, “지난해에 흉년은 온 도내가 똑같습니다. 조금 곡식이 여물었다는 고을도 어느 해에 재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고을에 비하여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므로 올 봄의 주리는 것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전세로 낼 쌀·콩과 각사(各司)의 공물 값으로 낼 베와 여러 가지 노비공(奴婢貢)으로 낼 쌀·베 등 부역을 일체 감면해 주소서.” 하였는데, 비국이 회계하기를, “해조의 물력으로는 옮겨 채울 길이 없습니다.” 하니, 전세로 낼 쌀·콩만 반으로 줄이도록 하였다.</p>	<p>○咸鏡監司洪處厚馳啓曰：“上年失稔，一道同然。所謂稍稔邑，比常年尤甚邑，少無異同，今春飢餓，混爲一般。田稅米太及各司貢物價布諸色奴婢貢米布等役，請一切蠲減。”備局回啓以爲：“該曹物力，無路推移。只許半減田稅米太。”</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3월 25일(병자)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우의정 홍중보(洪重普)가 아뢰기를, “병조의 용도가 다 비어서 봉부동(封不動)인 목면(木綿)을 쓰게 되었는데 남은 것이 많지 않으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하고, 좌의정 허적(許積)이 진휼청을 시켜 4월, 5월의 한 당번(當番)을 요리하</p>	<p>○丙子/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右相洪重普曰：“兵曹用度匱竭，至用封不動木綿，而餘存不多，誠非細慮也。”左相許積請令賑恤廳料理，四五月一當番，上許之。執義李端錫進曰：“賑所飢民之尸，車載相續，所見慘酷，其中或有命脈未絕，而混同載出者。</p>

	<p>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윤택하였다. 집의 이단석(李端錫)이 나아가 아뢰기를,</p> <p>“진흙하는 곳에 있던 굶주린 백성의 주검을 수레로 실어내는 일이 잇따라 보기에 참혹한데, 그 가운데에는 흙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도 싸잡아 실어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화기(和氣)를 상할 만하니, 진흙청과 각부의 관리를 엄히 경계하여 이런 폐단이 없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이 뒤로 이런 폐단이 다시 있으면 진흙청의 당상·낭청과 각부의 관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각별히 엄하게 경계하라.”</p> <p>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p> <p>“죽은 사람을 묻을 때에 주검을 엄하여 깊이 묻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드러나고야 말 것이니, 더욱 불쌍하다.”</p> <p>하자, 허적이 아뢰기를,</p> <p>“이미 진흙청에서 면포를 주어 몸을 가리고 단단히 묻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니 곧 파내어 얽한 것을 벗겨 간다 하니 참으로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만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p> <p>하였다. 홍중보가 아뢰기를,</p>	<p>此足以感傷和氣，請嚴飭賑廳及各部官吏，俾無此弊。” 上曰：“此後若復有此弊，則賑廳堂郎及各部官吏，難免其責。各別嚴飭。” 上又曰：“死人埋葬之際，若不斂尸深瘞，則非久必不免露出，尤可矜慘。” 許積曰：“已自賑廳，覓給綿布，使之掩體堅瘞。而似聞旋即掘出，脫其所斂而去，誠極驚慘，而亦無奈何矣。” 洪重善曰：“臣頃於街上，見有命脈未絕之人，而足有繫索。此則洞內人，預爲曳出之具也，極可矜慘。” 上爲之惻然。承旨成後高，以漢城府粥所，頗近於時御所，而瘴氣尤盛，請令移設，上曰：“搬運之際，必有失時之患，飢民或因此致斃，則亦甚矜惻。” 金萬基請於世子嘉禮前三日，姑令合設於附近賑所，上許之。李端錫連啓李元禎父子事，上不從。未幾停之。端錫又以各營買賑革罷事連啓，許積曰：“兵水營，則不可全廢此事，至於監司，只當承流宣化而已，若先自干預於財利，則又何以禁人乎？此弊不可不革矣。” 上令廟堂查處。後因備局回啓，只罷監營買販。</p>
--	--	--

	<p>“신이 접때 목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은 사람의 발에 줄을 묶어 논 것을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동네 사람이 끌어내기 위해 미리 만든 도구인데 매우 불쌍합니다.”</p> <p>하니, 상이 슬퍼하였다. 승지 성후설(成後堯)이, 한성부의 죽을 먹이는 곳인 시어소(時御所)와 자못 가까운데 여역의 기세가 더욱 성하다고 하여 옮겨 설치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운반할 즈음에 반드시 끼니를 잃을 걱정이 있을 것인데, 굶주린 백성이 혹시 때문에 죽게 된다면 또한 매우 불쌍하다.”</p> <p>하였다. 김만기(金萬基)가 세자의 가례(嘉禮) 사흘 전에 잠시 부근의 죽먹이는 곳에다 합하여 설치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이단석이 이원정(李元禎) 부자의 일을 잇따라 아뢰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그 뒤 얼마 안 가서 정계하였다. 이단석이 또 각영(各營)에서 매매하는 일을 폐지할 것을 잇따라 아뢰었는데, 허적이 아뢰기를,</p> <p>“병영(兵營)·수영(水營)에서는 이 일을 완전히 폐지할 수 없습니다만, 감사에 있어서는 은택을 받아 교화만 퍼면 되는데 먼저 스스로 재리에 간여한다면 또한 어떻게 남을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폐단은 고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p> <p>하니, 상이 묘당을 시켜 살펴 처치하게 하였다. 그 뒤에 비국의 회계에 따라 감영의 매매만 폐지하였다.</p>	
--	--	--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4월 12 일(계사) 2번째기사</p>	<p>대사간 남용익(南龍翼), 사간 이합(李栻)이 아뢰기를, “올해 진흙하는 곳에서 떠돌이들의 주검이 날로 늘어나 도성 문 안쪽에 주검을 나르는 수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청(該廳)에서는 오래 월말에 서계(書啓)하고 있으므로 날짜가 이미 오래 지나서 죽은 자의 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진흙청으로 하여금 닳새에 한 번 아뢰도록 하여 허술한 폐단이 없게 하소서. 해골을 묻어 주는 정사는 성스런 왕들이 중히 여기었습니다. 지금 길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잇따라 누워 있으니 더욱 유념하여 거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칙하였는데도 대부분 거두어 묻지 않아서 파리들이 빨아먹도록 버려두고 있으니, 보기에 처참합니다. 해부로 하여금 날마다 살펴보게 하여 혹 한데에 버려두고 일찍 묻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당해 부관(部官)을 나문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요즈음 팔도의 장계를 보면 굶거나 여역을 앓거나 불에 타거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거의 없는 날이 없지만, 검탈하고 살상하는 도둑의 사건에 대해서만은 원래부터 아뢰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개 도신(道臣)이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는 소치이지, 본디 홍수나 가뭄이나 도둑을 아울러 아뢰어야</p>	<p>○大司諫南龍翼、司諫李栻啓曰：“今年賑所，流莩日增，都門內外，屍車相望。而該廳例於月終書啓，故日字既久死亡之數，不得其實。請令賑所，五日一啓，俾無踈漏之弊。掩骼之政，聖王所重。卽今道殣相枕，尤當惕念舉行。而既已申飭，多不收埋，任他噉噉，所見慘惻。請令該府，逐日看檢，或有露置，趁不埋瘞者，當該部官，拿問科罪。近見八路狀啓，則飢疫燒溺，死亡之數，殆無虛日，而獨於盜劫戕殺者，元無上聞之事。此蓋道臣因循謬例之致，本非水旱盜賊竝聞之意也。況今殺越之患，處處有之，前頭之慮，不可勝言。請令該道監司，申飭列邑，使之劃卽報知，且嚴勅討捕使，另加機捕，俾無滋蔓之患。”上從之。</p>

	<p>하는 의의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살상하고 약탈하는 걱정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서 앞날의 염려를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도의 감사를 시켜 열읍(列邑)에 신칙하여 곧 알리게 하고 또 토포사(討捕使)를 엄히 주의시켜 각별히 계략을 써서 붙잡아서 널리 퍼지는 걱정이 없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5월 6일 (병진) 2번째기사</p>	<p>정언 정유악(鄭維岳)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p> <p>“듣건대, 진흙하는 곳에서 죽을 먹이는 일을 이달 15일에 중지한다고 하니, 세 곳에서 죽을 먹는 백성이 마침내 돌아갈 곳이 없어 죽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유사에게 명하여 잠시 동안 홍제원(弘濟院)의 진흙하는 한 곳을 그대로 남겨 두고 가을까지 죽을 쑤어 주어 혜택을 끝까지 베푸소서. 그리고 삼남(三南)의 민사도 매우 염려스러우므로 보릿가을을 할 때가 되었다고 진흙의 정사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더욱 심한 고을은 빨리 방백(方伯)을 시켜 요리하여 끝까지 구제하게 하는 것이 가까운 데를 미루어 먼 데에 미치고 차별없이 사랑하는 도리에 맞는 것입니다.”</p> <p>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p>	<p>○正言鄭維岳上疏，略曰：</p> <p>伏聞賑所設粥，將以今月十五日停罷云，三處就粥之民，終必無所歸而死。特命有司，姑爲因留弘濟院賑所一處，限秋設粥，以終其惠。且三南民事，亦甚可慮，不可諉以麥秋，輟其賑政。其中尤甚之邑，亟令方伯料理，終始救活，允合推近及遠一視同仁之道。</p> <p>上答曰：“憂國進言之誠，予用嘉之。當令廟堂議處焉。”及後引見時，許積曰：“罷賑與否，多有窒礙，而鄭維岳</p>

	<p>“나라를 근심하여 말해 준 정성을 내 아름답게 여긴다. 묘당을 시켜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겠다.”</p> <p>하였다. 그 뒤 인견할 때에 허적(許積)이 아뢰기를,</p> <p>“진흙의 정사를 중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구애되는 점이 많이 있는데, 정유악이 이른바 한 곳만을 남겨 둔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p> <p>하고,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p> <p>“정유악이 아뢴 바는 대체로 좋으나, 국가의 형세가 결코 지탱할 수 없을 뿐 더러 한 곳만 남겨 두는 것도 과연 폐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p> <p>하고, 서필원(徐必遠)이 아뢰기를,</p> <p>“지금 밀보리가 전부 흉작이어서 결코 끝까지 구제할 희망이 없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살릴 수 없을 사람에게 헛되이 쓰는 것보다 조금 저축을 남겨 두어 토착민을 구제하는 것이 나을 것이므로 모두 폐지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깁니다.”</p> <p>하였다. 여러 신하의 의논이 다 폐지해야 한다 하니, 정유악이 드디어 인피하였는데, 그 대략에,</p> <p>“각종 마료(馬料)가 한 달에 1천 석에 가깝고 정초청(精抄廳)의 마병(馬兵)은 그리 긴요할 것이 없는데도 일체 폐지하여 진흙에 옮겨 썼다는 말을 듣지 못</p>	<p>所謂只存一處者，亦甚難便。” 閔鼎重曰：“維岳所陳，大體儘好，而不但國家形勢，決難支當，只存一處，亦未知其果能無弊也。” 徐必遠曰：“卽今兩麥全失，決無終始救活之望，臣謂與其虛費於必不可活之人，寧留小儲，以救土着之民。 爲得宜， 不如一併罷之也。” 諸臣之議，皆以爲可罷，維岳遂引避，略曰：“諸色馬料，一朔近千，精抄馬兵，無甚緊關，而亦未聞有一切停罷移用賑恤之舉， 如此而謂賑民之無粟，民誰信之？ 假令屯衛雖盛，馬畜雖肥，民類將盡，邦本既蹶，則未知國家將焉用之。 臣妄陳愚見， 言不見採， 況以舉動不參， 方被推勘， 請命遞斥。” 憲府處置，以推緘未勘，遞之。</p>
--	--	---

	<p>하였습니다. 이러하고도 백성을 진구할 곡식이 없다고 한다면 믿을 백성이 있겠습니까. 설사 둔위(屯衛)가 성대하고 말이 살찼다 하더라도 백성이 다 죽어가 나라의 근본이 거꾸러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는 그것을 장차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신이 어리석은 소견을 함부로 아뢰어 채용되지 못하였고, 더구나 거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야흐로 추감을 받고 있으니, 갈아서 물리치도록 명하소서.”</p> <p>하였는데, 헌부가 처치하여 추함(推緘)을 아직 감결(勘決)하지 않았다 하여 갈았다.</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康熙) 10년) 5월 11일(신유) 3번째기사</p>	<p>비변사가 아뢰었다.</p> <p>“본사의 낭청을 나누어 보내어 동서도(東西道)의 병이 든 사람을 적간(摘奸)하게 하였더니, 두 활인서(活人署)를 합하여 1천여 인이었고 사막(私幕)에 있는 자가 또 7천 8백 60여 인이었는데 다 진홍청의 쌀로 마른 양식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만, 바야흐로 막에서 나간 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 죽은 자가 많다는 것을 이것으로 미루어 알 만합니다.”</p>	<p>○備邊司啓曰：“分遣本司郎廳，摘奸東西道病人，則兩活人署，合一千餘人，在私幕者又七千八百六十餘人，皆以賑廳米，計給乾糧，而方出幕者，不知其幾，死亡之多，推此可知云。”</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5월 15 일(을축) 4번째기사</p>	<p>각도의 굶주린 백성에게 진휼하는 일을 그만두었는데 보릿가을 철이 되었고 또 안팎의 저축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의 세 군데 진휼하는 곳의 굶주린 백성이 모두 3만 2천 40여 인이었다. 서울 백성 1만 9천 5백 70여 인을 제외하고 과하여 본토로 돌아가는 외방의 굶주린 백성에게 각자의 여정을 셈하여 돌아갈 때에 먹을 양식을 차등있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더욱 심한 자에게는 15일 분의 죽거리를 주었다. 병에 전염된 자에게는 각각 양식을 주고 활인서(活人署)를 시켜 치료하게 하고, 의지할 데 없는 어린 무리에게는 따로 양식거리를 지급하되 진휼하는 곳을 설치하였을 때의 감관(監官)에게 주어 그 친속 또는 수양할 사람을 찾아서 구분하여 처리하게 하였다.</p>	<p>○罷各道飢民販餽，以節屆麥秋，且緣內外儲蓄之罄竭也。京城三賑所飢民，合三萬二千四十餘人。除都民一萬九千五百七十餘人外，方飢民之罷歸本土者，計其道里，分給歸糧有差，其中尤甚者，給十五日粥資。染病者各給乾糧，使活人署救療，兒弱無依之類，別給糧資，授諸設賑時監官，訪問其親屬，若收養之人，以爲區處之地。</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5월 17 일(정묘) 2번째기사</p>	<p>도성의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민호(民戶)의 대소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분조(分糶)하였다. 강도(江都)·관서(關西)의 쌀과 좁쌀을 전후에 나누어 준 것이 2만 6천 5백여 석이었다.</p>	<p>以都城飢甚，從民戶大小，分糶有差。竝江都、關西大小米，前後分給二萬六千五百餘石。</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5월 24 일(갑술) 1번째기사</p>	<p>진휼청이 아뢰기를, “서울에서 진휼을 과한 뒤에 의지할 데 없어 빌어먹는 무리에게는 각소(各所)에서 혹 양식을 주기도 하고 죽을 먹이기도 하면서 그 족속과 수양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일 진휼을 과한 지 꽤 오래 되었는데도 굶주린 백성이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항간에서 빌어먹다가 굶고 병을 앓아서 장차 죽게 된 자가 자못 많습니다. 듣건대, 홍제원(弘濟院)에는 아직도 병을 앓는 백성을 머물러 두고 먹이고 있으므로 또 다시 슬피 부르짖으며 살려 주기를 바라고 있는 수가 이미 2백을 넘었습니다. 이제 진휼을 과하였다 하여 일체 물리친다면 물러가도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반드시 다들 구덩이에 굴러 죽을</p>	<p>○甲戌/賑恤廳啓曰：“京中罷賑之後，無依丐乞之類，自各所或給糧、或餽粥，以待其族屬及收養之人。近日罷賑稍久，而飢民不歸本土，丐乞閭巷，以至飢病將斃者頗多。聞弘濟院尚有病民留餽之舉，又復哀號乞生，其數已過二百。今若以罷賑，而一切拒斥，則退無所歸，必皆填壑，不可無區處之道。請自本廳，收合三所留接之飢民，別置江倉，仍爲餽粥，更觀事勢，而罷</p>

	<p>것이니,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본청에서 세 곳에 남아 있는 굶주린 백성을 거두어 모은 다음 따로 강창(江倉)을 설치하고 이어서 죽을 먹이다가 다시 사세를 보아 파하여 보내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윤택하였다.</p>	<p>送。”上許之。</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6월 23 일(임인) 1번째기사</p>	<p>상이 하교하기를,</p> <p>“이런 흉년을 당하여 백성이 다 구덩이에 굴러 죽고 있으니, 음식을 대하면 두렵고 지나깨나 놀라고 있다. 서울 안의 물건은 이미 줄었으나 각도에서 진상하는 것도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두 대비전(大妃殿) 이외의 각전(各殿)에 바치는 것은 모두 내년 가을까지 특별히 멈추게 하라.”</p> <p>하자,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p> <p>“위에 바치는 약간의 물건까지 모두 멈출 수 없으니 적당히 줄이소서.”</p> <p>하니, 드디어 별도로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매월마다 3분의 2를 줄였다</p>	<p>○壬寅/上下教曰：“值此凶歲，民皆填壑，對食瞿然，夢寐亦驚。京中之物，雖已裁減，諸道進上，其弊不貲。兩大妃殿外各殿所捧，竝限明秋，特令停止。”鄭致和以爲：“若干享上之物，不可全然停止，請加量減。”遂令別錄以進，每朔減三之二。</p>
<p>현종 19권, 12년</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정치화가 아뢰기를,</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鄭致和曰：</p>

<p>(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6월 23 일(임인) 2번째기사</p>	<p>“전하께서 백성에게 폐를 끼친다고 하여 각도의 삭선(朔膳)을 폐지하셨으니 무릇 보고 듣는 자이면 누구인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상방(尙方)에서 베를 짜는 것과 궐내(闕內)에서 남색을 물들이는 일 같은 것은 모두 긴요하지 않은 것이니 폐지하더라도 어찌 옷이 부족할 걱정이야 있습니까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공장에게 별로 시킨 일이 없다.”</p> <p>하자, 정치화가 아뢰기를.</p> <p>“그런 일이 없더라도 이는 성상께서 늘 힘쓰셔야 할 것입니다.”</p> <p>하였다.</p>	<p>“殿下既以民弊，罷諸道朔膳，凡在瞻聆，孰不感動，第如尙方織組，闕內染藍，俱涉不緊，設令停罷，豈患衣櫛之不足乎？”上曰：“工匠別無役使之事矣。”致和曰：“雖無是事，此聖上所當加勉處也。”</p>
<p>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7월 20 일(기사) 1번째기사</p>	<p>사간 박지(朴贄), 정언 정유악(鄭維岳)이 아뢰기를,</p> <p>“기아가 급함은 보릿가을 이후에 더욱 심하였는데 경기 백성 중에 그래도 살아 남은 자가 있는 것은 실로 접때 7천 석의 곡물을 나누어 준 데에 힘입은 것입니다. 덕의(德意)가 미친 바에 누군들 감복하여 떠받들고 송축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수가 멀지 않아서 수수·조가 점점 익어가므로 산골짜기 백성은 이삭을 따고 나락을 훑어 혹 죽을 쓸 밀거리로 삼을 수 있으나, 바닷가 여러 고을에는 수수·조도 없는데다가 벼가 익을 때도 아직 멀었으므로 사람들</p>	<p>○己巳/司諫朴贄、正言鄭維岳啓曰：飢餓之急，麥後尤甚，而畿內之民，尙有孑遺者，實賴頃日七千石穀物之分給。德意所及，孰不感戴而頌祝乎？目今秋事不遠，黍粟漸熟，山峽之民，摘穗搗粒，或可爲糝粥之資，而沿海諸邑，既無黍粟，粳稻尙遠，人皆阻飢，得延一日，如度一年。倘於此時，更</p>

	<p>이 다 굶주림에 괴로워 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한 해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때에 다시 몇 말이나 몇 되의 곡물을 얻는다면 가을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니, 호조의 콩 수천 석을 내어 구제하소서.”</p> <p>하니, 상이 묘당을 시켜 품처하게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p> <p>“지금 분부하더라도 필시 이달 안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고 개시되면 온갖 곡식이 잇달아 익을 것입니다. 8월 초기에 나누어 주는 것은 급한 것을 구제하는 방도가 아닐 듯하니, 시행하지 마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임기가 찬 수령을 올해에 한하여 유임시킨다는 것은 대개 각 고을에서 맞아들이고 떠나보내는 폐단을 염려해서입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내년 봄 진홀의 정사는 올해에 비해 더욱 심할 것인데, 올 겨울에 갈릴 관원은 필시 내년 봄 일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 봄에 부임할 관원은 새로 도입하여 생소하므로 사세 상 주선하기 어려울 것이며 가을 곡식이 성숙한 뒤에는 맞아들이고 떠나보내는 데 대한 폐단도 봄·여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니, 임기가 찬 수령은 모두 가을 곡식이 성숙한 뒤에 교체하소서.”</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전에 이미 유임시킨 자는 같고 올 가을에 임기가 차는 자는 모두 내년 보릿가을까지 유임시키도록 하라.”</p>	<p>得斗升之穀，則秋成可待，生路可尋，請出地部大豆累千石，以救之。”上令廟堂稟處。許積以爲：“今雖分付，必不及於此月之內，開初則各穀相繼成熟。分給於八月之初，似非救急之道，請勿施。”上從之。又啓曰：“瓜滿守令，限今年仍任者，蓋慮各邑迎送之弊也。第念明春賑政，比今年尤甚，而今冬當遞之官，必不爲明春之憂，明春赴任之官，新到手生，勢難周旋，而秋成之後，迎送之弊，亦不至如春夏。請瓜滿守令，一併待秋成遞改。”上曰：“前已仍任者遞之，今秋瓜滿者，並限明年麥秋，仍任可也。”又啓曰：“宮禁守直，事體莫重，軍士逃亡，律文甚嚴，而今七八月兩朔，宮禁直守軍士之逃亡者，幾至百餘名。皆是外方上番者也，寄寓糧絕，無以自存，爲此等死之計，至於逃散而歸。論其情狀，雖甚矜惻，誘以飢餒，任他逃散，則後弊難防，請令該曹查究重治。今此逃軍等，雖甚頑愚，逃軍罪重，渠亦自知。此豈樂爲之哉？以此推之，其寄寓飢餒之狀，舉皆一般。不逃則死，其勢必至，其爲哀矜，豈特平民而已哉？當初</p>
--	---	--

	<p>하였다. 또 아뢰기를,</p> <p>“궁금(宮禁)을 수직(守直)하는 것은 사체가 매우 중대하므로 도망간 군사에 대한 처벌의 법이 매우 엄한데도 불구하고 올 7, 8월 두 달에 궁금을 수직하는 군사로 도망간 수가 거의 1백여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다 외방에서 상번한 자인데, 남의 집에 기숙하다가 양식이 떨어져 스스로 보존할 수 없게 되자 심지어 이런 죽을 생각을 하고 달아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상을 논하면 매우 불쌍하기는 하나, 굶주림을 핑계로 제멋대로 달아나게 버려둔다면 뒤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니, 해조를 시켜 조사해 무겁게 다스리소서. 이번에 달아난 군사들은 매우 완고하고 어리석기는 하나, 달아난 군사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그들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이 것을 어찌 즐거워서 하였겠습니까. 이로 미루어 보면 기숙하며 굶주리는 정상은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달아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형세상 반드시 오게 되어 있으니 그 가엾은 것이 어찌 일반 백성 정도뿐이겠습니까. 당초에 향군(鄉軍)으로서 입번(立番)을 자원한 자가 2백 명에 가까웠는데 도망가거나 죽은 자를 제외하면 지금 남아 있는 자가 40명도 채 못됩니다. 진휼청을 시켜 날마다 뒷쌀을 주어 연명하여 번 서는 기한을 마칠 수 있게 하소서.</p> <p>조정 인사들의 식료(朔料)를 시기에 앞서 나누어 준 것은 실로 가난한 걱정을 염려하신 것입니다마는, 약간의 무록관(無祿官)에게는 두어 필의 무명만 주었을 뿐입니다. 여느 때에는 녹과(祿科)에 한정이 있어서 녹을 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봉료(俸料)를 준 뒤에는 이서(吏胥)와 같은 천한 자도 봉료를 받았는데, 관직이 있는 사람이 봉료를 받지 못하였으니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해조를 시켜 일체로 봉료를 주게 하소서.”</p>	<p>鄉軍自願立番者，近二百名，除逃亡物故，目今餘存，不滿四十。請令賑恤廳，日給升米，俾得延命，以畢番限。朝士朔料，先期分給者，實是軫念貧窶之患，而第若干無祿官，只給數匹綿布。常時則祿科有限，雖未得付祿，而今此頒料之後，吏胥之賤，亦沾料食，則衣冠之人，獨未受料，事甚不當。請令該曹，一體給料。”上從之。其後大臣，以無祿官給料，乃是祖宗朝所未行之典，今不可猝變爲言，事遂寢。又啓曰：“忠清兵使李泌曾於己亥國恤三年之內，爲海美營將，巡到牙山縣，挾娼張樂，其娼卽本縣士人愼仁立之婢也。仁立不勝駭憤，重杖其婢，撞破樂器，泌之悖行，人莫不知。而夤緣仕路，至授闕任，事極可駭。請削去仕版。”答曰遞差。及後榻前連啓，特命拿問，刑推五次，而定配。</p>
--	--	---

하니, 상이 따랐다. 그 뒤에 대신이, 무록관에게 봉료를 주는 것은 조종조에서 행하지 않은 법이므로 이제 갑자기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그 일이 중지되고 말았다. 또 아뢰기를,

“충청 병사 이필(李泌)은 일찍이 기해년(946) 국상 3년 안에 해미 영장(海美營將)으로서 순행차 아산현(牙山縣)에 이르러 기생을 끼고 풍악을 벌였는데 그 기생은 본현의 사인(士人) 신인립(愼仁立)의 여종이었습니다. 신인립이 놀라움과 분함을 금치 못하여 그 여종을 매우 치고 악기(樂器)를 부숴버렸기에 도리에 어긋난 이필의 행실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슬길을 타고 군수의 직임에 제수되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관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체차하라고 답하였다. 그 뒤에 탐전에서 연이어 아뢰니, 특별히 명하여 나문하게 하였는데, 다섯 차례 형추하고 정배(定配)하였다.

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8월 15 일(계사) 1번째기사	상이 가까이 모시는 신하에게 먹을 것을 내렸다.	○癸巳/上賜食物于近侍。
현종 19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9월 14 일(임술) 3번째기사	영중추부사 이경석(李景奭)의 병이 위독하자 어의(御醫)를 보내어 병을 보게 하고 이어서 약물을 내렸다.	○領中樞府事李景奭疾篤， 遣御醫視 疾， 仍賜藥物。
현종 20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11월 24 일(신미) 1번째기사	상이 하교하였다. “옛날에도 없던 이러한 기근을 당하여 두 자전의 삭선(朔膳)만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줄였으나, 명일(名日)의 물선(物膳)은 미처 줄이지 못했다. 대전(大 殿)·중전(中殿)에게 삼명일(三名日)에 육조(六曹)에서 바치는 물선과 표리(表 裏)는 모두 임자년(961) 동지(冬至)까지 임시로 줄여야 할 것이다.”	○辛未/上下教曰：“遭此無前饑饉， 兩 慈殿外朔膳， 皆已減省， 而但名日物 膳， 未及裁減。 大殿中殿三名日六曹 物膳及表 [裏]， 竝限壬子冬至， 權減 可也。”
현종 20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12월 2 일(기묘) 1번째기사	관서(關西)의 쌀 3만 석을 배로 서울에 실어 날라 내년 봄 진흥의 자본에 보 태라고 명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진흥청에 저축된 것이 이미 다하였으므로 다시 관서에서 가져다 써야겠으니 석수(石數)를 미리 정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요리하여 실어 보내게 하소 서.”	○己卯/命以關西米三萬石， 船運京中， 以補明春賑資。 閔鼎重以爲：“賑廳所 儲， 已竭， 便當取用於關西， 請預定石 數， 使之料理輸送。” 上命通計大小米 合三萬石， 趁明春船運賑廳。 又以關 西有會外羨餘各穀， 請待春取用， 上許 之， 其數亦八千石。 許積以閔維重別

	<p>하니, 상이, 쌀과 좁쌀을 통계하여 모두 3만 석을 내년 봄 이전에 배로 진휼청에 실어 나르라고 명하였다. 또 관서에는 회록(會錄)한 이외의 남은 각종 곡식이 있으니 봄철을 기다렸다가 가져다 쓰자고 청하니, 상이 윤택하였는데, 그 수도 8천 석이었다. 허적(許積)이, 민유중(閔維重)이 특별히 장만한 은(銀)이 거의 1만 냥이나 되는데 본도에는 긴요하게 쓸 곳이 없으니 진휼청에서 가져다 쓰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또한 윤택하였다. 드디어 이것으로 공물가(貢物價)를 나누어 주고 선혜청(宣惠廳)의 공물가미(貢物價米)를 바꾸어 썼다.</p>	<p>備之銀， 殆至萬兩， 而本道無緊用之處， 請令賑廳取用， 上亦許之。 遂以分給於貢物價， 換用宣惠廳貢物價米。</p>
<p>현종 20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12월 23 일(경자) 2번째기사</p>	<p>온 가족이 죽어서 홀전(恤典)을 거행한 무리를 조사해내어 올해에 준 적곡(糶穀)을 특별히 감면해 주라고 명하였다. 당초에 조정에서 서울이나 지방에 온 가족이 모두 죽은 자를 뽑아내어 홀전을 베풀었다. 이윽고 묘당의 의논들이, 온 가족이 죽은 자 가운데에도 이웃이나 겨레붙이나 전토가 있는 자가 있으므로 그들이 먹은 적곡은 탕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인견 때에 사간 이합(李栻)이 일체로 감면해 주자고 청하고 민정중(閔鼎重)이 이미 홀전을 베풀 무리를 살펴 조사해내어 탕감해 주자고 청하니, 상이 윤택하였다.</p>	<p>○命查考闔家死亡恤典舉行之類， 特減今年所給之糶。 初朝廷抄出京外闔家俱死者， 施以恤典。 既而廟堂諸議， 以闔家死亡中， 亦有有隣族田土者， 不當蕩滅其所食之糶。 是日引見時， 司諫李栻， 請一體減之， 閔鼎重請出其已施恤典之類而蕩滅之。 上許之。</p>
<p>현종 20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12월 23 일(경자) 4번째기사</p>	<p>전라도 연해안 각 고을의 수미(收米) 2천 석으로 제주(濟州)의 굶주린 백성을 진구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앞서 이하(李夏)가 본도(本島)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나올 때에 온 섬의 백성이 통곡하며 전송하면서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아 있</p>	<p>○命以全羅道沿海各邑收米二千石， 賑濟州飢民。 先是， 李夏還自本島， 言：“出來時一島之民， 痛哭以送曰：‘吾輩之至今生存， 莫非朝家罔極之惠澤， 而卽今朝家， 亦無活我之力， 吾輩將不免</p>

	<p>는 것은 모두가 국가의 그지없는 혜택인데, 이제는 국가에서도 우리들을 살릴 힘이 없으니, 우리들은 장차 모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p> <p>하였는데, 허적이 이 말을 상에게 보고하여 아뢰기를,</p> <p>“지금 제주 백성의 형세는 한 시각이 급하니, 쌀을 빨리 실어보내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하였다. 김수흥(金壽興)은 호남에 있는 훈국(訓局)의 둔전(屯田)과 태복(太僕)의 목장(牧場) 등 여러 곳의 걸곡식으로 진구하기를 바라고, 민정중은 연해안 각 고을의 수미를 덜어서 구제하기를 청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p> <p>“먼저 수미를 보내어 서둘러 구제하고 이어서 걸곡식을 실어보내 종자의 밑거리를 도와주는 것이 낫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윤택하였다.</p>	<p>盡劉’云。”許積以聞於上，且曰：“卽今濟民之勢，一刻爲急，必速運米以送，庶可及救也。”金壽興欲以湖南之訓局屯田及太僕牧場等諸處，皮穀賑之，閔鼎重請除沿海各邑收米，以救之，積以爲：“不如先送收米，汲汲濟活，繼運皮穀，助其種資。”上許之。</p>
<p>현종 20권, 12년 (1671 신해 / 청 강희 (康熙) 10년) 12월 23일(경자) 5번째기사</p>	<p>양서(兩西)의 쌀과 콩 모두 2만 석을 배로 실어다가 경비에 보태라고 명하였다.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p> <p>“경비가 바닥이 났으므로 반드시 미리 요리해야만 떨어질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서가 아니면 달리 가져다 쓸 곳이 없는데, 관서(關西)는 진흙청에 계하(啓下)된 것이 이미 3만 석이나 되니, 해서(海西)의 쌀과 콩 각각 5천 석과 관서의 쌀 1만 석을 얻어서 보태쓰도록 하소서.”</p>	<p>○命船運兩西米豆合二萬石，以補經用。戶曹判書金壽興以爲：“(經) [經] 費蕩竭，必須預爲料理，庶免乏絕之患。若非兩西，他無取用之處，而關西則賑廳啓下，已至三萬石，請得海西米豆各五千石、關西米一萬石，以爲補用之地。”上許之。</p>

	<p>하니, 상이 윤택하였다.</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1월 2일 (기유) 1번째기사</p>	<p>약방(藥房)에게 들어와 진찰하라고 명하였다. 도제조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근래 일기가 좋지 않은데 성상의 건강이 어떠하십니까? 수라를 자꾸 적게 드신다고 하니, 걱정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늘 들어와 진찰하라는 것은 증세를 의논해 보려고 한 것이다. 동지(冬至) 후부터 기운이 여전히 위축되어 수습을 할 수가 없으며, 항상 한기(寒氣)가 있어 간혹 창을 열어 놓으면 마치 얇은 옷을 입고 밖에 나간 것과 같다.”</p> <p>하였다. 제조 정지화(鄭知和)가 아뢰기를, “하천고(霞天膏)를 처음 달일 때는 입에 댈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고약이 되고 보니 먹을 만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병조 판서 민정중(閔鼎重)이 아뢰기를, “오늘 성적을 평가할 때, 정초 중군(精抄中軍)인 전동홀(全東屹)이 감기가 매우 심해 아문(衙門)에 나오지 못해서, 중(中)을 맞고 말았습니다. 무사(武士) 한 사람이지만, 인재를 등용하는 데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뢰니다.”</p>	<p>○己酉/命藥房入診。 都提調許積曰：“近來日氣不佳，聖候何如？水刺之進，有減無加云，不勝憂慮。”上曰：“今日入診，欲議証情耳。自冬至後，氣尚萎爾，不能收拾，常有寒氣，時或開窓，則有若衣薄衣而出外者然矣。”提調鄭知和曰：“霞天膏始煎時，則似不堪近口，成膏之後，猶可以服之耳。”兵判閔鼎重曰：“今褒貶時，精抄中軍全東屹，寒疾極重，不得赴衙，未免居中。武士一人，有關於用，故敢此仰達。積曰：“閔昇亦有調用之命，而時無下等蕩滌之教矣。”上曰：“東屹居中，昇居下，竝蕩滌。”</p>

	<p>하고, 허적이 아뢰기를,</p> <p>“민승(閔昇)도 발탁해 쓰라고 하신 명이 계셨으나, 현재 하등(下等)의 고과를 삭제해 주라는 하교는 없으셨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동홀이 중을 맞은 것과 민승이 하를 맞은 것을 모두 삭제하라.”</p> <p>하였다.</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2월 10 일(병술) 2번째기사</p>	<p>평안도 양덕(陽德) 등 세 고을이 관리하는 각종 곡식 9천 3백 90석과 원양도 통천(通川) 등 세 고을의 각종 곡식 1천 5백 50여 석을 재해를 당한 북도(北道)의 고을에 옮겨 백성을 구제하도록 명하였다.</p>	<p>○命以平安道陽德等三邑， 管餉各穀， 九千三百九十石， 及原襄道通川等三邑， 各穀一千五百五十餘石， 移賑北道災邑之民。</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2월 16 일(임진) 1번째기사</p>	<p>약방에 술을 내렸다. 자전의 병환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p>	<p>壬辰/宣醞于藥房， 以慈候平復也。</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와 삼사를 불러 진휼하는 방법의 편리 여부를 의논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의견이 제각기 달라, 혹은 마른 양식을 나누어 주</p>	<p>○丁未朔/上召大臣、備局諸臣三司， 議賑濟便否。 諸臣意見各異， 或乾糧</p>

<p>(康熙) 11년) 3월 1일 (정미) 1번째기사</p>	<p>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고, 혹은 죽을 쑤어 주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고, 혹은 곡식을 나누어 대여해 주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상이 여러 의견을 참작하여, 평민에게는 호구를 계산하여 곡식을 대여해 주도록 하고, 떠돌아다니는 걸인들에게는 죽을 쑤어 구휼하도록 하였다.</p>	<p>便, 或設粥便, 或分糶便。 上參酌衆議, 平民則使之計戶分糶, 流丐之民, 設粥以賑</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3월 9일 (을묘) 3번째기사</p>	<p>상이 영상 허적과 호조 판서 김수흥을 불러 보았다. 허적이 아뢰기를, “빌려준 곡식을 모두 탕감해주는 일에 대해 오늘 의논해서 결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오년을 포함한 그 이전의 빌려준 것 중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수흥이 대답하기를, “10만여 석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탕감하라.” 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p>	<p>○上召見領相許積、戶判金壽興, 積曰: “糶穀蕩滌事, 請於今日議定。” 上曰: “丙午以前, 未捧之數幾許?” 壽興曰: “十萬餘石也。” 上曰: “盡爲蕩滌。” 壽興曰: “常平廳等穀外, 各營糶穀, 不係戶曹者, 多有之。 此則依各邑糶糶例, 丙 [午] 以前未捧者, 宜盡蕩滌。” 上曰: “可。”</p>

	<p>“상평청(常平廳) 등의 곡식 외에, 각영에서 빌려준 곡식 가운데는 호조와 관계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고을에서 조적(糶糶)하는 예에 따라, 병오년을 포함한 이전의 것 중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모두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p> <p>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3월 29 일(을해) 1번째기사</p>	<p>경술년과 신해년 두 해의 기근은 옛날을 통틀어봐도 없었던 것인데다 신해년부터 올봄까지 돌림병이 크게 번져 2월 이후로 굶주림과 병으로 죽은 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함경도가 7백여 명, 황해도가 4백 70여 명, 평안도가 4백여 명, 전라도가 4백 30여 명, 경기도가 3백여 명, 충청도가 2백 60여 명, 경상도가 5백여 명, 원양도가 1백여 명이였다. 이때 상평청과 진휼청에서 진휼할 죽을 쑤는 곳을 나누어 설치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는데, 조석으로 와서 먹는 자가 많을 때는 4천 3백여 명이었고 적을 때는 2천여 명이였다. 외방의 백성들은 먹을 곳이 없자 서로 모여 도둑질을 하였는데 명화적(明火賊)처럼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민간의 저축이 이미 고갈되어 그들이 훔쳐 봤자 겨우 한 되나 한 말 밖에 안 되었으므로 길에서 장사꾼을 만나면 서로 앞을 다투어 죽이고 빼앗는데 호남과 영남 사이가 더욱 그들의 소굴이였다. 충청도 청주 등의 고을에서는 반 달 동안에 무려 열네 군데에서 인명이 살상되었다 한다.</p>	<p>○乙亥/庚辛兩年饑荒，振古所無。自辛亥至今春，癘疫熾盛，二月以後，因饑病死者，無數。咸鏡道七百餘人，黃海道四百七十餘人，平安道四百餘人，全羅道四百三十餘人，京畿三百餘人，忠清道二百六十餘人，慶尙道五百餘人，原襄道一百餘人。時常平、賑恤兩廳，分設賑粥，以濟飢民，朝夕就哺者，多則四千三百餘，少則二千餘。外方之民，無所食，相聚爲盜，明火殺越之賊，處處而發。民間儲蓄，已竭，其所偷取，不過升斗之米，道遇商旅，爭相剽奪，湖嶺之間，尤爲淵藪。忠清道清州等官，半月之內，殺越人命，多至十四處云。</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4월 3일 (무인) 1번째기사</p>	<p>강화도의 곡물 3천 9백여 석과 해서(海西)의 관향곡 6천 석을 경기도와 황해도 가운데 재해를 입은 고을로 수송해서 나누어 주어 파종하도록 명하였다. 헌부의 계사에 따른 것이다.</p>	<p>○戊寅/命以江都穀三千九百餘石，海西管餉穀六千石，輸送京畿、黃海道被災邑，使之分給播種。因憲府之啓也。</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4월 3일 (무인) 2번째기사</p>	<p>해서의 곡물 1만 4천 석과 진흥청의 곡물 6천 석을 제주에 보내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게 하였다.</p>	<p>○命以海西穀一萬四千石，賑恤廳穀六千石，移於濟州，賑飢民。</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4월 3일 (무인) 3번째기사</p>	<p>병판 민정중이 빚기를 청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정중이 아뢰기를, “강화도의 곡식을 경기 백성들에게 종자용으로 나누어 주고, 또 해서의 관향곡과 둔곡(屯穀)을 경기로 옮겨다 백성들에게 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승지 맹주서가 아뢰기를, “사신의 명을 받고 나갔다가 이역(異域)에서 죽으면, 으레 추증하는 법이 있습니다. 서장관(書狀官) 정적(鄭積)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뜻밖에 병들어 죽었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추증하라고 하였다.</p>	<p>○兵判閔鼎重請對，上引見。鼎重請，移江都穀，分給畿民種子，且以海西管餉屯穀，移給畿民，上從之。承旨孟胄瑞曰：“奉使出疆，而身死異域，則例有追贈之典矣。書狀官鄭積，出疆未還，意外病死，故敢達。”上曰：“[追]贈。”</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4월 5일</p>	<p>원양도의 강릉·삼척 등 네 고을에 산불이 크게 나서 불타버린 민가가, 1천 9백여 호이고, 강릉 우계(羽溪)의 창고 곡물과 군기(軍器) 등의 물건이 한꺼번에 다 타버렸으며, 불에 타 죽은 사람이 65명이었다. 네 고을의 백성들이 기</p>	<p>○原襄道江陵、三陟等四邑，因山火熾烈，民家延燒者，一千九百餘戶，江陵羽溪倉穀軍器等物，一時燒燼，民人爛</p>

<p>(경진) 2번째기사</p>	<p>근을 겪은 뒤에 또 이 화재를 당해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닿았다. 도신이 이를 아뢰니, 상이 영서(嶺西)의 곡식 1천 석을 옮겨 구제하라고 명하였다</p>	<p>死者，六十五人。四邑之民，饑饉之餘，又罹此災，呼哭徹天。道臣以聞，上命移嶺西穀一千石，以賑之。</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6월 23 일(정유) 5번째기사</p>	<p>선혜청에서 관리하는 충청도·전라도의 패선(敗船)한 미곡 3천 8백 석, 콩 1백 50석과 작년 서울에 방출하였다가 미수된 미곡 1천 8백 석 중 징수할 곳이 없는 3백 석을 모두 탕감하도록 명하였다.</p>	<p>○宣惠廳所管兩湖敗船米，三千八百石，大豆，一百五十石，及上年都下糶米未收千八百石。指徵無處三百石，命皆蕩滌。</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10월 3 일(갑진)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료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도성의 방출곡에 대한 일을 거론하고 여러 신료에게 하문하였는데, 모두 아뢰기를,</p> <p>“다 미곡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미곡값이 폭등할 근심이 있을 것이니, 백성의 소원에 따라 은화로 계산해 받느니만 못할 것입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 지평 이유(李濡)가 연달아 앞전의 일을 아뢰 뒤, 생각한 바를 진달하기를,</p> <p>“윤경교(尹敬敎)를 이미 안치시키도록 형을 감하였다면 다시 잡아다 문초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잡아다 문초한다는 것은 숨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윤경교를 아직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대면하더라도 나졸들의 공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구원하기에 급하여 며칠 지체하였다고 하지만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p>	<p>○甲辰/上引見大臣、備局諸臣。上舉都下糶穀事，問于諸臣，皆以爲以米準捧，則必有米貴之患，不如從民願，以銀貨計捧，上從之。持平李濡，連啓前事之後，因陳所懷曰：“尹敬敎既減安置，則更何拿問爲哉？拿問者，有隱情之謂也。敬敎時未置對，若置對則與羅卒所供何異乎？”上曰：“急於救護，以數日遲滯爲言，予豈不知乎？”承旨崔逸曰：“臺啓所言，不過因羅卒之供而言也。”上厲聲曰：“其臺諫豈無目乎？”臺啓中寬仁等語，非溫順之言，似沙譏嘲。如予深刻之君，豈能寬仁乎？”濡以嚴旨，引避而出。</p>

	<p>하였다. 승지 최일(崔逸)이 아뢰기를,</p> <p>“대간의 계사에서 한 말은 나졸의 공초대로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p> <p>하니, 상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p> <p>“그 대간이 어찌 눈이 없겠는가? 대간의 계사 중에 관인(寬仁) 등의 말은 온순한 말이 아니라 기롱하고 조소하는 것 같다. 나같이 매우 각박한 임금이 어찌 관인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이에 이유가, 엄한 분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나갔다.</p>	
<p>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11월 27 일(무술) 1번째기사</p>	<p>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이 상소하기를,</p> <p>“효종 대왕이 왕위에 10년 동안 계시면서 큰일을 하시려고 하였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임금의 마음에 든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지극한 정성과 융숭한 예의로 유신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을 불러다 놓고, 빈사(賓師)로 대우하고 높은 직위에 있게 하여 온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왕께서는 큰 왕업을 끝마치지 못한 채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자 마침내 두 신하에게 명하여 우리의 성상에게 물려 주셨습니다. 불행히도 이번</p>	<p>○戊戌/戶判金壽興上疏曰：</p> <p>孝宗大王臨御十年，將大有爲，而在朝諸臣，莫有當聖心者。乃以至誠優禮，招致儒臣宋時烈、宋浚吉，待以賓師，處以〔鈞〕衡，將舉國而聽之。先王大業未卒，奄棄群臣，遂命兩臣者，以</p>

	<p>송준길이 한 번 올린 소가 거듭 상의 위엄을 건드려 점점 격동된 바람에 기상이 팍 막혔습니다. 지금 들으니, 준길의 병세가 위독하여 아침 저녁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을 임금에게 아뢰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진다면 영원히 떠난 혼백이 반드시 구천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어찌 준길만의 여한이겠습니까. 그의 한가닥 숨이 끊어지기 전에 속히 좋은 말씀을 내리고 특별히 위로해 주신다면, 준길이 죽더라도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찌 성상의 덕에 빛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p> <p>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p> <p>“차자 중의 일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다만 근일에 시거나 틈을 노리는 자들이 한두 사람뿐만이 아니므로 내가 매우 미워하는 것이다. 요전 정원의 계사와 문찬(文燦)의 상소는 매우 형편없었고 때를 틈타 엿보는 뜻이 매우 올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몫시 미워하였다. 내 어찌 그의 죽음을 걱정하지 않겠는가.”</p> <p>하였다. 이튿날 상이 어의(御醫)를 보내 약물을 가지고 가서 구호하라고 명하였다.</p>	<p>遺我聖上。不幸今者，浚吉一封疏章，重觸天威，輒轉激惱，氣象否隔。而今聞浚吉，病勢危劇，朝夕莫保，其心事，未白於君父，而一朝溘先朝露，則長逝者魂魄，必不瞑目於九泉。此豈但浚吉之遺恨也？及其一息未絕之前，亟下德音，特賜存問，則不惟浚吉，雖死猶榮，豈不有光於聖德也？</p> <p>上答曰：“筭中事，予豈不知？但近日投間抵隙之輩，非特一人而已，此予之所以深惡也。曩者政院之啓，文燦之疏，俱極無狀，乘時窺覬，意甚不正，故予甚痛之。予豈不恤其死生乎？”翌日上命遣御醫，持藥物往救之。</p>
--	---	---

현종 20권, 13년
(1672 임자 / 청 강희
(康熙) 11년) 12월 30
일(신미) 2번째기사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료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 우의정 이경억(李慶億)이 지난해 감했던 물종을 복구시키는 것이 마땅한지의 여부에 대해 의논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무릇 진상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이 감히 의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명께서 절충하여 처리하시는 데에 달렸을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상하는 물품 중에 긴요한 것은 복구시키고 그 나머지는 모두 원래 수량 중에서 반만 복구시키라. 제주(濟州)는 농사가 흉작이니 작년에 다달이 진상하였던 것과 각사에 상납할 물종은 모두 복구시키지 말라.”

하였다. 김수항이 아뢰기를,

“접위관 조사석(趙師錫)이 지금 내려갈 것인데 저들과 응수할 말을 대략 강구해서 결정해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왜관 이전을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각기 소견을 말하라.”

하였다. 김수항과 이경억이 아뢰기를,

○上引見大臣、備局諸臣。左相金壽恒、右相李慶億，以往年裁減物種，議復舊當否。壽恒曰：“凡係上供，臣不敢容議。惟在聖明折衷處之耳。”上曰：“上供之物，其中緊要者復舊，其餘竝令元數中，一半復舊。濟州年事失稔；上年月令進上，及各司上納物種，竝勿復舊。”壽恒曰：“接慰官趙師錫，今當下去，與彼酬應之言，大約講定，以送宜矣。”上曰：“然。移館許否，亦各陳所見可也。”壽恒、慶億曰：“許與不許，無大段難決之事。以今書契見之，則顯有哀乞之狀，不知其更有他憂也。臣且聞領相鄭太和、判中樞鄭致和之言：‘我國與日本，水路通信，而渠憂水路之不便，既已掘浦，則其在交隣之道，終不之許，未知其可。’云矣。”禮判鄭知和曰：“近以移館許否，論議不齊，臣蚤夜以思，未得善策。而第近日騷屑太甚，人心大變，因此生釁，亦何難乎？是可慮也。”知中樞柳赫然曰：“彼所請移館之地，不出於順天、熊川、巨濟三處。許順天，則湖南漕運之路絕矣，許熊川、巨濟，則統營不得措手足矣，如何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리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서계(書契)를 보건대, 두드러지게 애절하는 태도가 있으니 다시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이 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와 판중추 정치화(鄭致和)의 말을 들으니, ‘우리 나라는 일본과 수로로 통신하고 있는데, 저들이 수로의 불편을 걱정하여 이미 포구(浦口)를 봤고 보면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에 있어서 끝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정지화(鄭知和)가 아뢰기를,

“근래 왜관 이전을 허락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가 같지 않으므로 신이 밤낮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좋은 계책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근일 너무나 소요스럽고 인심이 크게 변하였으니, 이로 인해 불화의 불씨가 생기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지중추부사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저들이 청한 왜관을 이전할 곳은 순천(順天)·웅천(熊川)·거제(巨濟) 등의 세 곳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순천을 허락한다면 호남 조운(漕運)의 길이 끊어질 것이며, 웅천과 거제를 허락한다면 통영이 제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포구를 봤다는 말은 본래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其許之? 況掘浦之說, 本不可信者乎?”
上曰: “令接慰官, 姑塞其請, 待渡海譯官之歸, 更議可也。” 且命近日開市之外, 令釜山僉使, 嚴禁倭館近處往來之人, 其犯禁者, 卽令梟示, 如僉使不能嚴禁, 則令東萊府使, 糾察論罪。”

	<p>“접위관으로 하여금 우선 그 요청을 막도록 하고 바다를 건너간 역관이 돌아 오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또 근일 시장을 여는 일을 제외하고는 부산 첨사로 하여금 왜관 근처에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엄히 금지하게 하고 금령을 범하는 자는 즉시 효시하게 하되, 만일 첨사가 엄히 금지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동래 부사로 하여금 규찰하여 논죄하도록 명하였다.</p>	
<p>현종 21권,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 (康熙) 12년) 2월 13 일(계축) 1번째기사</p>	<p>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을 인견하였다. 상이 왜관(倭館)을 옮겨 설치하는 일에 대해 언급하니, 여러 신하들이 반복하여 논란하였지만 끝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상이 복창군(福昌君) 등의 소본(疏本)을 내어 보이면서 이르기를,</p> <p>“선왕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무함을 받고 있으니 신원하고 변무하는 거조를 그만둘 수 없게 되었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p> <p>하니, 좌상 김수항(金壽恒)이 아뢰기를,</p>	<p>○癸丑/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 上以倭館移設事，言及諸臣，反復論難，卒無歸宿。 上以福昌君等疏本，出示曰：“先王受誣至此，伸卞之舉，不容但已，諸意何如?” 左相金壽恒曰：“此說自仁祖朝有之。 改玉之初，至有查問之舉，其時朝廷百官，呈文卞誣，臣祖臣尙憲，以陳奏使朝京。 禮部致書問之曰：‘八路不盡歸順於新王云，其不附者，何人主之云云?’ 臣祖卽已呈</p>

“이 말은 인조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반정을 한 초기에는 조사 심문하는 일까지 있게 되어, 그때 조정의 백관들이 정문(呈文)으로 변무하였는데, 신의 할아버지 김상헌(金尙憲)이 진주사(陳奏使)로 연경에 사신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부(禮部)가 글을 보내어 묻기를 ‘팔로(八路)의 백성들이 모두 새임금에게 귀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가 주동하고 있는가…….’ 하자, 신의 조부가 즉시 정문하여 변명하였고, 돌아올 때에는 등채무신(登萊撫臣)이 또한 그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이는 필시 폐조(廢朝)의 흉열(凶孽)들이 가도(假島)에 말을 퍼뜨려 중국에 흘러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필부가 무함을 당해도 반드시 원통함을 풀려고 할 것인데, 하물며 선왕이 무함을 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뒤로 신하의 마음에 어찌 하루인들 편안하겠습니까. 시세와 사체가 종계(宗系)를 고칠 때와는 다름이 있습니다만, 이 글을 보게 되니 차마 보아 넘길 수 없습니다. 비록 책망을 받게 되더라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병판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

“조종(祖宗)이 이런 무함을 받고 있으니, 신원하고 변무하는 일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종계를 고치던 때와는 그 도리와 사체 및 시세가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도리에 대해서는 번거로운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성명께서 반드시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세라고 말한 것은, 비록 변무라고 하더라도 때가 다르고 일이 변한 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나라가 기록한 것을 저네들이 고친들 어찌 후세 자손에게 빛날 것이겠습니까. 사체라고 말한 것은, 대신이 시작만 해놓고 끝맺음을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전(會典)》은 황제와 학사가 직접 점검하고 문장을 고친 것이니, 이 책에 사실과 틀리는 말이 있다면 마땅히 진달하여 변명해서 고쳐야 함

文卞之，回還時，登萊撫臣亦問之。此必廢朝凶孽，飛語假島，流聞中朝。匹夫受誣，亦必欲伸雪，況先王受誣乎？自聞此語，臣子之心，何可一日恬然乎？時勢事體，與改宗系時有異，而及見此書，不忍看過。雖有被責，不可恤也。”兵判金萬基曰：“祖宗受此誣讒，伸卞之舉，不容少緩。而第臣之愚見，與改宗系時，道理事體及時勢皆異。道理不待煩說，聖明必思之。時勢云者，雖曰卞誣，時異事變之後。皇明所紀，彼人改之，豈能有光於後世乎？所謂事體云者，大臣發端，而未畢矣。《會典》卽皇帝與學士，親自點竄，此有爽實之言，則所當陳卞而改之。至於《明史》皆野史也，不過以一人之誤聞，誤傳而隨錄，何可以隨其所錄，每請改之乎？”江華留守閔著重、應教李選與萬基議同，訓練大將柳赫然、執義鄭載禧皆曰：“不可不卞。”上曰：“待右相李慶億出仕，與原任大臣，及二品以上，會議可也。”後卞誣之舉，不果行。選請置魯山墓守卒，自官給四時及忌辰祭需，上從之。又言反正時，勳臣只有綾豐君具仁暨，及

	<p>니다. 그러나 《명사(明史)》의 경우는 모두 야사(野史)로서 한 사람이 잘못 전해진 것을 잘못 듣고 수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록한 것마다 번번이 고치기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p> <p>하였다. 강화 유수 민시중(閔著重), 응교 이선(李選)은 김만기와 의논이 같았고, 훈련 대장 유혁연과 집의 정재희(鄭載禧)는 아뢰기를,</p> <p>“변무해야만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우상 이경억(李慶億)이 출사하거든 원임 대신 및 2품 이상과 회의하는 것이 좋겠다.”</p> <p>하였다. 그러나 뒤에 변무하는 일은 실제로 시행하지는 않았다. 이선(李選)이 청하기를,</p> <p>“노산군(魯山君) 묘에 수졸(守卒)을 두고 관청에서 사시제 및 기제의 제수(祭需)를 주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p> <p>“반정(反正) 때의 훈신으로 능풍군(綾豐君) 구인기(具仁壑) 및 원종 공신 두어 사람만이 있으니, 아울러 옷감과 먹을거리를 내리소서.”</p>	<p>原從功臣數人，請竝賜衣資食物。上從之。</p>
--	--	----------------------------

	<p>하니, 상이 따랐다.</p>	
<p>현종 21권,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 (康熙) 12년) 4월 15 일(갑인) 2번째기사</p>	<p>함경도에 전염병이 심하게 번져 죽은 자가 2백여 명이나 되었고 가뭄이 또 심하여 보리, 밀이 누렇게 말랐으므로, 영남 지방의 곡식 7천 곡을 옮겨 안변(安邊) 등 고을의 굶주린 백성을 구휼했다.</p>	<p>○咸鏡道癘疫熾發，死者二百餘，旱乾且甚，兩麥萎黃，移嶺南粟七千斛，賑安邊等邑飢民。</p>
<p>현종 21권,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 (康熙) 12년) 5월 1일 (경오) 1번째기사</p>	<p>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아, 내가 왕위에 오른 뒤로 수재·한재·풍재·상재가 없는 해가 없었다. 경자년·신축년에 대기근을 만난 후에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참혹하게 오갈 데 없이 죽었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지난해 농사도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이 채 소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을 당하여 달포나 비가 오지 않고 간혹 조금씩 빗발이 있기는 하지만 햇빛이 쨍쨍하여, 망종(芒種)이 이미 지났는데도 파종(播種)의 적기를 잃고 있다. 경작을 하여야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파종하지 못했으니 추수를 어떻게 바라겠는가? 말이 이에 미침에 오장이 불에 타는 듯하여 차라리 죽고 싶다. 아, 백성은 먹</p>	<p>○庚午朔/上教于政院曰：“嗚呼！子忝位，以來，水旱風霜之災無歲無之。纔遭庚、辛大侵之餘，哀我赤子，顛連死亡之慘，誠不忍言。上年農事，亦未豐登，民未蘇完。正當南訛之節，不雨殆月餘，間或有微霑，出日杲杲，芒種已過，播種愆期，有耕有穫，自然之理，種不入土，西成何望？興言及此，五內焚灼，寧欲無生。噫！民依於食，國依於民，民無食，則國何依而</p>

을 것에 의지하는 것이고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나라가 무엇을 의지하여 나라꼴이 되겠는가. 조용히 그 허물을 생각해보니 진실로 나의 몸에 있는데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대신 재앙을 받고 있다. 백성의 부모인 내가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하는가. 오늘부터 정전(正殿)을 피하고 더욱 수성의 도를 더하여 조금이라도 하늘의 꾸지람에 답하겠으니, 승지는 나를 대신하여 교서(敎書)를 초(草)해서 널리 직언을 구해 부족한 점을 보충하게 하라. 생각해 보건대 오늘날의 재해를 오게 한 것은, 실로 덕이 부족한 나의 잘못이 너무 무거운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여러 신하들도 어찌 책려할 도가 없겠는가? 아, 여러 신하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치우치거나 편당을 하지 말고 동료간에 공경하고 협동하여 나라를 위해 못 원망을 해소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부족한 나의 과실 및 시정의 이익과 병폐를 죄다 말하여 허물을 고치고 착한 데로 옮기는 바탕으로 삼게 하라. 그리고 인재를 선발함에 이르러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전후하여 내린 교지에 정녕하게 반복한 것인데 끝내 실효가 없으니 참으로 한심스럽다. 묘당으로 하여금 사의를 참작 결정하여 중외에 신칙해서 실효가 있게 하라. 감선(減膳)과 금주(禁酒) 등의 일에 있어서도 해조로 하여금 일체 거행하게 하라.”

하니, 승지가 왕의 말씀으로 직접 중외에 반포하기를 여러번 청하자, 상이 따랐다.

爲國乎? 靜思厥咎, 亶在寡躬, 哀我赤子, 替受其殃。 爲民父母當作何如懷耶? 自今日, 避正殿, 益加修省之道, 少答天譴, 承旨代予草敎, 廣求直言, 以補不逮。 第念今日之致災, 實由寡昧之獲戾深重, 而大小臣僚, 亦豈無策礪之道乎? 嗚呼! 咨爾群工, 體予至意, 無偏無黨, 同寅協恭, 爲國任怨, 殫竭誠忠, 極言寡昧過失, 及時政利病, 以爲省愆遷改之地。 至於甄拔人才, 爲國之急務。 故前後之旨, 丁寧反復, 而終無實效, 誠極寒心, 不可無別樣舉措。 令廟堂, 酌定事宜, 申飭中外, 俾有實效。 減膳、禁酒等事, 亦令該曹, 一體舉行。” 承旨累請, 直以王言, 頒示中外, 上從之

<p>현종 21권,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 (康熙) 12년) 9월 21 일(정해) 2번째기사</p>	<p>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우상 김수흥이 아뢰기를,</p> <p>“경술년 조의 전세(田稅)를 납부하지 않은 데가 경기는 다만 4읍(邑)이고, 원양(原襄)·황해·전라 등의 도(道)도 매우 적은데, 경상도 조령 밑의 11읍과 충청도는 전혀 바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흉작이 되었으니 형세상 다 받아 들이기는 어렵습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경기는 탕감하고, 충청도의 받아 들이지 못한 수령은 조사하여 규명하고, 조령 밑 11읍과 충청도의 궁한 백성과 뿔뿔이 흩어져 호(戶)가 없어져 버린 곳들은 구별해서 탕감하라.”</p> <p>하였다. 수흥이 아뢰기를,</p> <p>“이번 천릉(遷陵) 때에 경기의 백성은 노역(勞役)이 배나 심했습니다. 여주 등 5읍의 대동미는 이미 세 말을 감하였고 기타는 각각 한 말을 감했습니다만 다시 한 말을 더 감하여 우휙(優恤)하시는 뜻을 보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고, 부교리 윤지선(尹趾善)이 아뢰기를,</p> <p>“다만 징수할 쌀만 감해주면 백성 중에 농토가 없는 자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으니, 조곡으로 바꾸어 탕감하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p>	<p>○上引見大臣及備局諸臣。 右相金壽興曰：“庚戌條田稅未納，京畿只四邑，原襄、黃海、全羅等道，亦零星，而慶尙道嶺底十一邑，及忠淸道全不輸納。今年又復失稔，勢難盡捧矣。” 上曰：“京畿則蕩滌， 忠淸道不捧守令查究，而嶺底十一邑，及忠淸道窮民及流亡絕戶，區別蕩滌可也。” 壽興曰：“今此遷陵時，京圻之民，勞役倍甚。 五邑大同，既減三斗，其他各減一斗，而更減一斗，以示優恤之意可也。” 副校理尹趾善曰：“只減收米，則小民無田者，不得蒙其惠， 移轉糶穀， 許令蕩減可也。” 壽興曰：“此則難矣。” 兵曹判書金萬基曰：“捧糶時竝許除耗， 則亦大惠也。” 上從之。</p>
--	--	--

	<p>하니, 수홍이 이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가 아뢰기를,</p> <p>“조곡을 받을 때에 아울러 이자의 면제를 허락하면 또한 큰 은혜입니다.”</p> <p>하니, 상이 따랐다.</p>	
<p>현종 21권,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 (康熙) 12년) 10월 13 일(기유) 2번째기사</p>	<p>상이 우의정 김수홍을 인견하고 이르기를,</p> <p>“송 판부사(宋判府事)의 소 안에 ‘능의 흙을 한 자쯤 파헤친 뒤에 무덤 안에 이상이 없음을 알았지만, 일을 맡은 여러 신하들이 망극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봉하자는 의논을 끝내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나는 총호사에게 묻고자 한다. 그 당시에 과연 이런 의논이 있었는가?”</p> <p>하니, 대답하기를,</p> <p>“신들은 이런 의논이 없었습니다. 설혹 현궁(玄宮)이 무사하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 이르러 어찌 감히 그대로 봉하자는 의견이 있었겠습니까.”</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上引見右議政金壽興謂曰：“宋判府事疏中，有啓土尺許，已審〔隧〕內之無事，而任事諸臣，恐懼於罔極之人言，改封之議，終不敢出云，予欲問於摠護使矣。其時果有此議耶？”對曰：“臣等無此議也。設或玄宮無事，到此地頭，安敢有改封之意。”上曰：“設令隧內無事，啓土之後，不可改封。況未啓玄宮之前，潤濕之氣，至於四旁石之底云，何以知其內之無事，引朱子戒山陵之事爲言，而人功如此，何可不爲開見乎？大禮無事過行，而有如此之言，心甚未安也。表石一款，以予爲</p>

	<p>“설령 광중(壙中)이 무사하더라도 능을 판 뒤에는 그대로 봉할 수 없다. 더구나 현궁을 열기도 전에 질척질척한 기운이 네 귀퉁이의 돌 밑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어찌 그 속이 무사할 줄을 알아 주자(朱子)가 산릉(山陵)을 경계한 일을 인용하여 말할 수 있으며, 사람이 한 일이 이 지경인데 어찌 열어보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대례(大禮)가 무사히 지나갔는데도 이같은 말이 있으니 마음이 매우 편안치 못하다. 표석(表石) 한 조목에 대해서 내가 우물쭈물 구차하게 썼다고 한다만, 그 일을 행할 수 없었다면 내가 어찌 판부사의 말을 구차하게 따랐겠는가. 지난번 우상(右相)의 물음에 내 뜻을 다 말했었는데 판부사가 어찌 듣지 못했겠는가.”</p> <p>하니, 김수홍이 아뢰기를,</p> <p>“이것은 필시 상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일 것입니다.”</p> <p>하였다. 상이 이르기를</p> <p>“양주(楊州)·여주(驪州)는 특별히 넉넉하게 보살펴야 하겠다.”</p> <p>하니, 수홍이 그렇다고 하였다. 상이 금년 봄의 대동미(大同米)를 모두 감해주도록 명하였다. 수홍이 아뢰기를,</p> <p>“죽산(竹山)·음죽(陰竹)·지평(砥平)·용인(龍仁)·양지(陽智) 등의 읍도 대동미 두 말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p>	<p>依違苟且而用之云，事不可行，則予豈以判府事之言，苟且從之。頃日右相之間，予意盡言之矣，判府事豈未之聞耶？”壽興曰：“此必不知上意，而有此言也。”上曰：“楊、驪州，當別爲優恤矣。”壽興曰：“然。”上命全減春大同。壽興曰：“竹山、陰竹、砥平、龍仁、陽智等邑，大同米，又減二斗，似當。”上從之。壽興曰：“糶穀亦當定式收捧矣。”上曰：“舊分給，只捧三分之一，而新分給，准捧可也。</p>
--	---	--

	<p>하니, 상이 따랐다. 수흥이 아뢰기를,</p> <p>“적곡(糴穀)도 마땅히 법식을 정하여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p> <p>하니, 상이 이르기를,</p> <p>“예전에 나누어 준 것은 다만 삼분의 일만 받고, 새로 나누어 준 것은 일정 기준에 의해 받아들여라.”</p> <p>하였다.</p>	
<p>현종 21권, 14년 (1673 계축 / 청 강희 (康熙) 12년) 12월 2 일(정유) 1번째기사</p>	<p>비국이 아뢰기를,</p> <p>“도성 백성이 이미 큰 역사를 겪었고 또 흉년을 만났으니 이치상 구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앞으로 얼음을 채취하여 빙고(氷庫)에 저장하는 역사에는 오래 호미(戶米)를 징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수는 4, 5백 석에 불과합니다만, 예전에는 흉년을 당하면 진청에서 헤아려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특</p>	<p>○丁酉/備局啓曰：“都民既經大役，又值凶年，理宜軫恤。前頭藏氷之役，例有戶米收捧之事。其數不過四五百石，曾前或當凶年，則自賑廳料理舉行矣。今亦特減戶米，請令賑廳，依前題給米布，以爲一分施惠之地。”上許</p>

	<p>별히 호미(戶米)를 감하고, 진휼청으로 하여금 예전처럼 미포(米布)를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은혜를 베푸는 바탕으로 삼으소서.”</p> <p>하니, 상이 허락하였다.</p>	<p>之。</p>
<p>현종 22권, 15년 (1674 갑인 / 청 강희 (康熙) 13년) 2월 1일 (병신) 4번째기사</p>	<p>장령 안후태가 대청(臺廳)에 나아가 계사를 전한 뒤에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약물을 주라고 명하였다.</p>	<p>○掌令安後泰詣臺廳傳啓後， 猝然昏室， 不省人事， 命賜藥物。</p>
<p>현종 22권, 15년 (1674 갑인 / 청 강희 (康熙) 13년) 2월 17 일(임자) 1번째기사</p>	<p>대사헌 남용익, 집의 김석주, 지평 민암이 아뢰기를,</p> <p>“호서 지방은 신축년(1059) 이래로 재앙과 흉년이 계속되어 전결(田結)이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또 온양에 거둥하신 뒤로 춘추로 거두어 들이는 쌀을 온전으로 인해 감해주기도 하고 재앙으로 인해 감해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해청(該廳)에 상납하는 게 많이 삭감된데다 본도에 비축된 것도 점차로 소비되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경술·신해년의 큰 흉년을 만나 안팎이 바닥나 수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호서에서 호조·기청(畿廳)·진휼청·상평청에게 차용한 것을 계산해 보면, 벼는 1천여 동, 쌀은 3만여 석, 은은 4천여 냥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모두 문안대로 상환받되 채무 이행을 꼭 시켜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신이 그 수량을 계산해 보니, 지금 비록 온 도에 부세를 더 매기고 1년 내내 받아들인 것을 모두 끌어잡는다 해도 채무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p> <p>에당초 진휼청에서 각종 재물과 곡식을 모아둔 것은, 바로 이러한 흉년과 재</p>	<p>○壬子/大司憲南龍翼、執義金錫胄、持平閔黯啓：“湖西自辛丑以來， 災荒相繼， 田結日縮， 而又自溫陽行幸之後， 春秋收米， 或以恩而減， 或以災而減， 該廳上納， 既多減削， 本道儲置， 又漸消費， 而猝然復值庚、辛之大侵， 以致內外蕩然， 莫可收拾。 卽今湖西， 以所假貸於版曹、畿廳、賑恤、常平者計之， 布至一千餘同， 米至三萬餘石， 銀至四千餘兩， 而此皆有執券待償收責不舍之議。 臣竊計其數， 今雖至於加一道之賦， 盡一年之納， 亦不足以充其債也。 當初賑廳之萃合各樣財穀， 正爲調濟， 此等凶荒受災之地， 而今欲計物而受之。 實有乖於恤患敷惠之</p>

	<p>양을 당한 곳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물량을 따져 받아들이고자 하니 혜택을 베풀어 환란을 돌봐주는 도리에 사실 어긋납니다. 상평청의 경우 모곡(耗穀)으로 이자를 뇌 경상비 이외 수용 자본을 마련하는 곳이니, 이 역시 어떻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 추심할 수 있겠습니까. 진흥청·상평청으로 하여금 즉시 호서에서 쓴 은과 쌀의 수량을 모두 깨끗이 면제해주게 하소서. 그리고 호조·기청에서 빌려준 쌀과 베에 대해서도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경비를 헤아려서 반을 감해주거나 소량을 감해주게 하여 좋은 법을 폐지하지 않고 애처로운 백성을 크게 위로하는 소지로 삼으소서.”</p> <p>하니, 답하기를,</p> <p>“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p> <p>하였다.</p>	<p>道。至於常平，只是轉殖耗穀，以辦格外需用之資者，此亦豈推其所貸？請令兩廳，竝即蕩滌，湖西所用銀米之數。版曹、畿廳見貸米布，亦令該衙門，且須斟酌經費，或半減或減分數，以爲不廢良法，大慰窮民之地。” 答曰：“令廟堂稟處。”</p>
<p>현종 22권, 15년 (1674 갑인 / 청 강희 (康熙) 13년) 2월 23 일(무오) 4번째기사</p>	<p>이때에 상이 오랫동안 편찮았고 땀질로 인해 난 부스럼도 아물지 않은데다가 여러 날 병시중을 드느라 수라를 전폐하였는데 갑자기 큰 슬픔을 당하니, 신하들이 너나없이 걱정하였다.</p>	<p>○時，上候久在未寧中，灸瘡亦未完合，累日侍疾，水刺全廢，猝遇大慙，群下莫不憂惶。</p>
<p>현종 22권, 15년 (1674 갑인 / 청 강희</p>	<p>총호사 김수홍이 아뢰기를,</p>	<p>○乙卯/摠護使金壽興啓：“發引時應入船，合計一百五十隻，曳船軍都合三千</p>

<p>(康熙) 13년) 4월 21일(을묘) 1번째기사</p>	<p>“발인할 때에 소요될 배가 함께해 보니 1백 50척이고 예선군(曳船軍)은 도합 3천 6백 90명입니다. 진휼청으로 하여금 한 사람당 한 말의 쌀을 지급하여 식량으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상이 따랐다.</p>	<p>六百九十名。請令賑恤廳，人給一斗米，以爲口糧。”上從之。</p>
<p>현종 22권, 15년 (1674 갑인 / 청 강희 (康熙) 13년) 6월 5일 (무술) 1번째기사</p>	<p>약방이 아뢰기를, “고기 반찬 없이 수라를 드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미 장례를 치렀으니 여느 때처럼 수라를 드소서.”</p> <p>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p>	<p>○戊戌/藥房啓：“素膳已久。卽今玄宮已下，請復常膳。”不從。</p>
<p>현종 22권, 15년 (1674 갑인 / 청 강희 (康熙) 13년) 7월 17일(기묘) 4번째기사</p>	<p>서부(西部)에 사는 과부가 나이 1백 6세였는데, 역관 장효건(張孝建)의 어머니이다. 그에게 쌀·명주베·물고기 찬거리를 주라고 명하고 이어서 달마다 쌀 여덟 말을 지급하라 명하였다.</p>	<p>○西部居〔寡〕女，年一百六歲，譯官張孝建之母也。命賜米、紬、魚饌，仍命月給八斗米。</p>
<p>현종 22권, 15년 (1674 갑인 / 청 강희 (康熙) 13년) 8월 16일(정미) 1번째기사</p>	<p>상의 증세가 여전히 위급하여 오직 때때로 인삼차만 복용하였는데 종일토록 혼미하고 지쳐서 잠자는 것 같기도 하고 잠들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p>	<p>○丁未/上候一向危急，唯時服(參)〔蔘〕茶，而終日氏困，似睡非睡。</p>
<p>현종 22권, 15년 (1674 갑인 / 청 강희 (康熙) 13년) 8월 14일(을사) 1번째기사</p>	<p>상의 몸이 더욱 편찮아지자 진시에 들어가 진찰하였다. 창성군 이필이 김석주·정유악과 함께 나아가 진찰한 다음 아뢰었다. “시령탕(柴苓湯)이 증세에 맞는 약이니 연이어 복용하시면 효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乙巳/上尤不豫，辰時，入診。昌成君〔必〕與金錫胄、鄭維岳，進診曰：“柴苓湯乃是當劑，連服則可收效也。”</p>
<p>현종대왕행장</p>	<p>국왕의 성은 이씨(李氏)이고 휘(諱)는 연(淵)이며 자(字)는 경직(景直)이니, 효</p>	<p>○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行狀。</p>

	<p>종 대왕의 아들이고 인조 대왕의 손자이다. 어머니 인선 왕후(仁宣王后) 장씨(張氏)는 의정부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이다. 효종이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에 심양(瀋陽)에 볼모로 들어갔는데, 신사년(1077) 2월 4일에 심양 관소(館所)에서 대왕을 낳았다. 왕은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어 두세 살 적부터 행동거지가 범상하지 않았는데, 4세에 본국으로 먼저 돌아왔다. 인조 대왕이 무엇을 물을 때마다 어른처럼 대답하였으므로 인조 대왕이 매우 기특하게 여겨 사랑하였다. 여러 왕자·왕손과 함께 궁중에서 자랐는데, 인조 대왕이 항상 말하기를,</p> <p>“이 아이는 보통 아이보다 특별히 다르니 내 뒷날의 근심이 없겠다.”</p> <p>하였으니, 대개 기대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이때 효종이 미처 귀국하지 못하였는데 왕이 부모를 사모한 나머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적마다 축원하기를,</p> <p>“부모가 어서 돌아오게 하여 내가 뵈 수 있도록 해 주소서.”</p> <p>하였다. 새로 맛있는 음식을 대할 적마다, 그 지방(1078)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이면 바로 보내게 하고 나서야 맛을 보았다. 왕이 5세에 궁중 안의 시아(侍兒)가 쑥대 화살(蓬矢)로 그의 동기를 쏘아 눈을 다치게 했다는 말을 듣고 골육을 해친 것을 미워하여 마침내 그를 멀리 내쫓아 버렸다.</p> <p>인조가 한번은 증선지(曾先之) (1079)의 《사략(史略)》을 펴놓고 제왕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에 대해 죽 들어 물었는데, 요(堯) 순(舜)에 이르러서는 지극히 어질다고 대답하고, 걸·주에 이르러서는 매우 나쁘다고 대답하였다. 인조</p>	<p>國王姓李氏，諱欄，字景直，孝宗大王之子，仁祖大王之孫也。母仁宣王后張氏，議政府右議政維之女。孝宗爲大君時，入質瀋陽，以辛巳二月己酉，生王于瀋館。王幼有異質，自二三歲，動止不凡，四歲先歸本國。仁祖有所問，應對如成人，仁祖大奇愛之。與諸王子、王孫，並育於宮中，常曰：“此兒與凡兒特殊，他日吾無憂矣。”蓋有所屬意焉。時孝宗未及歸，王思慕父母，每見日初出，輒祝曰：“願令父母早歸，令我得見。”每遇新味，非彼地所產，輒令送獻，然後始嘗。五歲聞掖庭侍兒，以蓬矢射其同氣傷目，王惡其害骨肉，遂黜遠之。仁祖嘗展曾先之《史略》，歷問帝王賢否，至堯、舜，則對以極賢，至桀、紂，則對以甚惡。仁祖曰：“何爲而賢，何爲而惡。”對曰：“堯則土階三等，遠金玉而親君子，其仁如天，其知如神，豈非賢乎？桀、紂則剝民財以實府庫，爲瓊宮瑤臺，忠諫者謂之誹謗，進言者謂之妖言，豈非惡乎？”仁祖益奇之。仁祖嘗受方物，以豹皮品劣，將退之。王</p>
--	--	---

	<p>가 묻기를,</p> <p>“요 순은 어째서 어질고 걸·주는 어째서 나쁜가?”</p> <p>하자, 왕이 대답하기를,</p> <p>“요임금은 흙으로 계단 세 층을 만들었고, 금옥(金玉)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 하였으며, 그의 인자함은 하늘과 같고 그의 지혜로움은 신과 같았으니, 어찌 어질지 않습니까. 걸·주는 백성의 재물을 굶어모아 창고에 채워 놓는다면 궁전과 누대를 화려하게 지었으며 충성으로 간하는 자를 비방한다고 하고 의견을 올리는 자를 요망한 말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나쁘지 않습니까.”</p> <p>하니, 인조가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p> <p>한번은 인조가 방물(方物)을 받다가 표피(豹皮)의 품질이 나빠서 되돌려 보내려고 하였다. 왕의 나이 이때 7세였는데 곁에 있다가 말하기를,</p> <p>“표범 한 마리를 잡으려면 아마도 사람이 많이 다칠 듯합니다.”</p> <p>하니, 인조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돌려 보내지 말라고 명하였다.</p> <p>부모가 쓰는 의복이나 거마(車馬), 그리고 기용(器用)에 있어서는 비록 하찮은 물건이라도 반드시 공경을 다해 다루고, 감히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다. 부모의 경계를 들으면 기뻐하였다. 때로 여염집에 나가 임시 거처하면서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바는 감히 행하지 않았는데 곁에 있는 것처럼 하였다. 가까운 이</p>	<p>時七歲在傍曰：“一豹之捕，恐多傷人。”仁祖嘉其意，命勿退。父母之服御器用，雖微物，必致祇敬，不敢遷移。聞父母之戒責，則喜。時或出寓閭家，父母之所不欲，則不敢行，如在側焉。比隣人有高聲者，侍者呵禁，王止之曰：“人在其家，安得無聲？宜使人安，不可使苦也。”嘗在宮出見閭門外守卒，衣弊面顰，問曰：“何爲如此。”侍者對曰：“凍餒也。”王嗟歎，命賜以衣，又令內繼賜餘飯，終其踐更。每見竊餓之人，輒爲之矜惻，必有所賜給焉。其孝友仁明之德，著於幼時者如此。己丑二月，仁祖親臨仁政殿，冊爲王世孫，姿表岐嶷，儀度閑雅，百僚相賀。設講書院，置講官，課學益勤。先讀《小學》，竝註文，背誦精熟，講官稱服焉。是年五月仁祖大王薨孝宗大王嗣位，王進陞儲貳。輔道益備，睿德日就。孝宗又欲王之知稼穡艱難，嘗使農夫入耕後苑，俾王見之。王曰：“牛之有功於人。人之勤苦得食，有如是夫。”(亟)[極]稱之。王記性絕類，凡有一見聞，輒不忘。嘗讀《孟子》訖，孝宗欲試之，</p>
--	--	---

	<p>옷 중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어 시자(侍者)가 꾸짖어 금하자, 왕이 말리기를,</p> <p>“사람이 자기 집에 있으면서 어찌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야지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p> <p>하였다. 한번은 궁중에서 나오다가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색이 검은, 함문(閤門) 밖을 지키는 군졸을 보고 묻기를,</p> <p>“어찌하여 이와 같은가?”</p> <p>하니, 시자(侍者)가 대답하기를,</p> <p>“얼고 굶주려서 그렇습니다.”</p> <p>하였다. 왕이 탄식하다가 옷을 주도록 명하고 또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남은 밥을 계속 주되 그가 천경(踐更)1080) 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곤궁하여 굶주린 사람을 볼 적마다 불쌍히 여기고 반드시 구휼해 주었다. 어렸을 적에 나타난 그의 효성과 우애 그리고 자애와 밝은 덕이 이와 같았다.</p> <p>기축년1081) 2월에 인조가 인정전(仁政殿)에 친히 남시어 왕세손(王世孫)으로 책봉(冊封)하였는데, 자태가 우뚝하고 의도(儀度)가 한아(閑雅)하였으므로 백관이 서로 하례하였다. 강서원(講書院)을 설치하고 강관(講官)을 두었는데 학문에 더욱 부지런하였다. 먼저 《소학(小學)》을 읽었는데, 주(註)까지 정밀하게 잘 외웠으므로 강관이 탄복하였다. 이해 5월에 인조 대왕이 승하하고</p>	<p>令一時背誦，終七篇，無少錯，孝宗大驚喜焉。自幼及長，非讀書，未嘗離父母之側。有不安節，日夜扶持，雖命之退休，亦不退。辛卯行嘉禮，王妃金氏，領敦寧府事清風府院君佑明女也。壬辰行入學禮，奠謁先聖。仍就博士請業。禮容莊重，講音洪亮，多士環庭而聽者，莫不咨嗟欣悅。己亥五月乙丑，孝宗禮陟，王恤宅宗制斬杖如古禮，毀損涕淚，有出於禮經者。越五日己巳，王嗣位于仁政殿。顏色之戚，哭泣之哀，百僚不忍仰視。時，吏曹判書宋時烈、左參贊宋浚吉等，寔敦喪禮，以大王大妃爲大行大王服碁制。蓋用禮疏，雖承重，不得爲三年者，有四種說也。未成服也，時烈問於布衣尹鏞，尹鏞以爲：“禮有爲君斬，內外宗皆斬之文，且帝王家以宗統爲重，四種之說，恐用不得。”時烈不能從。延陽府院君李時白，趨三年之說，報領議政鄭太和欲從之，時烈既時四種說，終以國制，父母爲子，不分長、庶，皆碁服爲言，朝廷遂下其議大臣，大臣議皆如時烈意，碁制遂行。王素重儒術。時烈、浚吉等，自先王朝，有儒</p>
--	--	--

	<p>효종 대왕이 왕위를 잇자, 왕이 세자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보도(輔導)가 더욱 갖추어지니 슬기로운 덕이 날로 진취하였다. 효종이 또 왕에게 농사의 어려움을 알게 하려고 일찍이 농부로 하여금 후원(後苑)에 들어와 밭을 갈게 하고는 왕으로 하여금 보도(輔導) 하도록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p> <p>“소가 사람에게 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야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게 이와 같은가 봅니다.”</p> <p>하고, 자주 일컬었다. 왕은 기억력이 매우 뛰어나, 무릇 한번 보고 들은 것마다 잊지 않았다. 일찍이 《맹자(孟子)》를 다 읽고 나자, 효종이 시험해 보려고 일시에 모두 외우게 하였는데, 7편을 다 외우는 동안 조금도 틀리지 않았으므로 효종이 매우 놀라고 기뻐하였다.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독서하는 일이 아니면 부모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부모의 몸이 편치 못하면 밤낮으로 부축하고 시중을 들며, 비록 물러가 쉬라고 명하여도 물러가지 않았다.</p> <p>신묘년(1082)에 가례(嘉禮) 1083)를 행하였는데, 왕비 김씨(金氏)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의 딸이다.</p> <p>임진년(1084)에 입학(入學)하는 예를 행하고 선성(先聖) 1085)에게 전을 드리며 배알하였다. 이어서 박사(博士)에게 나아가 학업을 청하였다. 예의에 맞는 거동이 장엄하고 중후하며 강하는 음성이 크고 맑으니, 뜰 주위에서 듣는 선비들이 너나없이 감탄하며 기뻐하였다.</p> <p>기해년(1086) 5월 4일에 효종이 승하하자, 왕이 상막(喪幕)에서 상(喪)을 주관하면서 상례를 옛날 예법대로 하며 슬퍼하고 야위음이 《예경(禮經)》보다 과</p>	<p>名, 大爲一時所推, 先王亦甚任之。及王仍倚重尊禮之, 凡朝廷大議, 多從時烈等出焉。然時烈實執拗好黨, 無學識。其所議國制者, 亦實非《國朝五禮儀》大喪之制也, 聞者憂嘆焉。領府事李景奭, 撰進孝宗大王行狀, 王下札曰:</p> <p>堯、舜之道, 孝悌而已。欲致堯、舜之治, 當盡堯、舜之道。以此爲修身、致化之本焉。且痛慨世事, 禮羅賢俊, 托置心腹, 交修道義, 期挽斯世於三代, 伸大義於天下, 實先王之志, 平日樹立之宏規大範也。而今此狀中, 不甚學論。此一款不可不明白寫出, 傳諸來世。</p> <p>札出群下, 見者無不忻服, 王闡揚之思, 繼述之志焉。正當盛熱, 廬居隘陋, 近臣請限秋涼, 移御他所, 王曰: “此何時, 可擇居。擇居而處身, 雖安而心不安矣。”十月丙辰, 葬孝宗大王于寧陵。每朔望祭奠, 非甚病, 不許攝行。出省陵寢, 哀哭不止, 近侍咸掩涕, 至有失聲者。是年行優老人恤</p>
--	--	---

	<p>도하게 하였다. 5일이 지난 9일에 왕이 인정전(仁政殿)에서 왕위에 올랐다. 왕이 안색에 슬픔을 띠고 곡하는 소리가 애처로우니 못 관료가 차마 쳐다보지 못하였다. 이때 이조 판서 송시열(宋時烈), 좌참찬 송준길(宋浚吉) 등이 실로 상례를 주관하였는데, 대왕 대비(大王大妃)1087)에게 대행 대왕(大行大王)1088)을 위하여 기년복(基年服)을 입게 하였다. 이는 대개 《의례(儀禮)》주소(注疏)에 ‘비록 승중(承重)하였더라도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다.[雖承重不得爲三年者有四種]’는 설을 채용한 것이다. 성복(成服)1089)하기 전에 송시열이 이에 대해 포의(布衣)인 윤희에게 물으니, 윤희가 말하기를,</p> <p>“예(禮)에 ‘임금을 위해 참취(斬衰)를 입고 내종(內宗)·외종(外宗)이 모두 참취(斬衰)를 입는다.[爲君斬內外宗皆斬]1090)’는 문구가 있으며, 또 제왕가(帝王家)는 종통을 중시하고 있으니, 네 가지 설[四種說]1091)은 아마도 쓸 수가 없을 듯하다.”</p> <p>라고 하였으나, 송시열이 따르지 않았다.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이 삼년의 설을 옳게 여겨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에게 보고하고 그 설을 따르려 하였으나, 송시열이 이미 네 가지 설을 옳게 여기고 마침내 말하기를,</p> <p>“국제(國制)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장자나 서자(庶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년복을 입게 되어 있다.”</p> <p>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그 의논을 대신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의 의논도 모두 송시열의 뜻과 같으므로 마침내 기년의 복제가 행해졌다.</p>	<p>孤獨之典，忠孝節義人、清白吏、戰亡子孫，亦於歲時，題給食物。濫刑官吏，命終身禁錮，勿爲書入於絞命。時下內司木綿千匹，使補用於兒弱收布，鑄兒弱九千餘名，其收布之自外方用下者，命以監、兵營所儲，推移之，京納之數，則以常平五千金，遞給之。且命除諸道侵徵隣族之弊，緩充定闕額之令，減各道大同，省山陵進排物膳。以海西水災，特給災減役。湖南。京畿、湖西，減收米有差，尤甚失稔處，更減之，他道亦如之。以北道凶荒，權減其貢賦，移定配人於南方。其流民之丐乞於關西者，以管餉米穀，計口白給之。王始卽位，明習政事，軫恤民隱，所行者無非節用愛民，除其疾苦之事也。庚子元年正月，鑄端川銀貢四千兩。遣史官敦諭左參贊宋時烈，使之上來。領議政鄭太和引疾乞免，王敦諭起之。鑄減嶺東、西大同米，以助其道賑恤。遣御史，詢問北民之流出於嶺東西、關西者，撫恤安集之。命減江原道三稅中，收米、奴婢貢布。載寧人金斗榮者，上變告，七十餘人，招問無實。坐斗榮誣告之律，被誣諸</p>
--	---	---

	<p>왕이 평소에 유술(儒術)을 중히 여겼다. 송시열·송준길 등이 선왕조(先王朝)1092) 때부터 선비라는 이름이 있어 크게 일시의 추앙을 받았고 선왕도 그들을 매우 신임하였다. 왕에 이르러서도 그들을 중시하고 예로 받들었으므로 대체로 조정의 큰 의논은 대부분 송시열 등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송시열은 실로 성질이 집요하고 편당짓기를 좋아하였으며 학식이 없었다. 그가 의논드린 국제(國制)란 것도 실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상(大喪)의 제도가 아니었으므로, 그 논의를 들은 사람은 근심하고 탄식하였다.</p> <p>영부사 이경석(李景奭)이 효종 대왕의 행장을 지어 올리자, 왕이 서찰을 내려 이르기를,</p> <p>“요(堯) 순(舜)의 도는 효도와 공순일 따름이다. 요순의 치세(治世)를 이루려면 요순의 도를 다해야 한다. 선왕은 이것으로써 몸을 닦고 교화(教化)를 이루는 근본으로 삼으셨다. 또 세상의 일을 몹시 개탄하신 나머지 어진 사람과 출중한 사람들을 예로 초빙하여 심복으로 삼고 도의(道義)를 서로 닦아, 이 세상을 삼대(三代)의 시대로 만회하고 대의를 천하에 펴려고 하였으니1093), 이는 실로 선왕의 뜻으로서 평일 수립한 커다란 규범이다. 그런데 지금 이 행장 중에는 그다지 거론하지 않았다. 이 한 조항을 명백하게 써서 후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였다. 서찰이 나오자, 이를 본 신하들은 선왕을 천양(闡揚)하려는 생각과 계술(繼述)하려는 뜻에 너나없이 감복하였다.</p> <p>이때가 한창 무더운 여름철인데다가 상막도 좁고 누추하였으므로 측근의 신하가 서늘한 가을이 될 때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 청하자, 왕이 이르기를,</p>	<p>人, 皆給齋糧放送之, 其被奪於金吾卒者, 皆令徵尋還給之, 以示優恤之意。二月, 申嚴戶口之法, 從右尹權認之言也。大臣、備局堂上, 引見時, 王曰: “往者歲飢, 百官俸祿, 群臣皆以爲, 可減, 而先父王特令裁減御供, 百官俸祿, 則仍存矣。今雖匱乏, 而祿俸則不可先減, 御供中可減者, 又爲抄啓可也。” 三月下備邊司所管餘丁布, 于江原監司處, 使之分給, 遇災之民, 又分給中外老人食物、米布。以全羅道諸邑所給之物太略, 王曰: “朝家德意, 豈容若是慢忽? 其邑宰論罰可也。” 九十歲、百歲老人, 則特令加給紬絮, 且命文武科初試得中, 窮不能齋糧者, [令] 沿道各邑, 給糧赴學。前掌令許穆, 上疏論大王大妃服孝宗大王碁制之失, 引《禮》賈疏, 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爲言, 且曰: “昭顯既早世, 孝考以仁祖大王第二長子, 既承宗廟, 大妃爲孝廟齊衰三年, 禮無疑也。今乃以體而不正, 不得爲三年者比, 臣不知其何據也。” 王下其疏于禮曹, 禮曹請議大臣、儒臣定奪。左參贊宋浚吉, 設難依違之, 請考貞熹王</p>
--	---	--

	<p>“지금 이 어느 때인데 거처를 가린단 말인가. 좋은 곳을 가려 지내면 몸은 편안하겠지만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다.”</p> <p>하였다. 10월 27일에 효종 대왕을 영릉(寧陵)에 장사지냈다. 초하루와 보름날의 제전(祭奠)마다 심한 병을 앓지 않을 경우에는 대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가서 능침(陵寢)을 참배할 적에 슬피 곡해 마지않으니 근시(近侍)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린 자도 있었다.</p> <p>이 해에 노인을 우대하고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사람을 구출하는 은전(恩典)을 거행하였으며, 충효(忠孝)와 절의가 있는 사람, 청백한 관리, 전쟁터에 나가 죽은 사람의 자손에게도 세시(歲時)마다 음식물을 지급하였다. 형벌을 남용한 관리는 종신토록 금고(禁錮)시키고 서명(叙命)1094)의 문부에 써넣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때 내수사(內需司)의 무명 1천 필을 내려 어린아이에게 징수하는 면포에 보태 쓰게 하여, 어린아이 9천 명에게 징수하는 군포(軍布)를 견감하였으며, 징수한 군포 중 외방에서 쓰는 것은 감영(監營)과 병영(兵營)에 저축된 것을 쓰도록 명하였으며, 서울에 납입하는 수량은 상평창(常平倉)의 백금(白金) 5천 냥으로 대체해 주었다. 또 명하여 제도(諸道)에서 이웃이나 일가붙이에게 대신 징수하는 폐단을 제거하고 비어 있는 군인의 액수를 충정(充定)하는 조처를 느슨히 하였으며, 각도의 대동미(大同米)를 감하고 산릉(山陵)에 진상하는 물선(物膳)을 줄였다.</p> <p>해서(海西)에 수재가 들었다 하여, 특별히 재해입은 전세(田稅)를 면제하고 신역(身役)을 견감하였다. 호남·경기·호서에서 수납하는 세미(稅米)를 차등있게 감해주고, 흉년이 특히 심한 곳은 더 감해 주었으며, 다른 도에도 그렇게 하</p>	<p>后爲睿宗服《實錄》，且曰：“假令人家有十餘子，將傳重繼死，皆可服斬乎？註疏既明言，第二子以下爲庶子之義，而許穆必以妾子當之，不知禮意，果如是否也。又有或者之論，帝王家以繼統爲重，太上皇爲嗣君，雖支子入承者，當服三年云，此則無論正體、非正體，皆可服三年耶？”右贊成宋時烈，盛言恭制之非失，且引《禮經》長、庶之說曰庶子之稱，固妾子也。然人君母弟，亦謂之庶子。然則孝宗大王，不害爲仁祖大王之庶子也。古固有舍嫡而立庶者，然聖人制禮之意，未嘗不謹於倫序，故文王傳國，則舍伯邑考，而立武王。周公制禮，則必〔拳拳〕於長庶之別。”又曰：“次子爲長子之說，賈疏固有之，黃勉齋通解續亦收之。然不經程、朱勘破，未知其說果如許穆之所云乎？”延陽府院君李時白，右議政鄭維城，病不收議。史官考《江華實錄》來，睿宗大王之薨，貞熹王后服制，未有可考，末期已令群臣釋服云。</p> <p>四月副護軍尹善道，上疏論服制，其略</p>
--	--	---

	<p>였다. 북도에 흉년이 들었다하여, 공물과 부역을 임시로 감해 주고 정배(定配)된 사람을 남방으로 옮기었다. 그리고 관서 지방의 결식하는 유민(流民)들에게는 관향(管餉)의 미곡으로 사람의 수효를 계산하여 무상으로 주게 하였다. 왕이 즉위하여 정사를 환히 습득하고 백성의 고통을 보살폈으므로 거행한 바가 모두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 그 고통을 제거해 주는 일이었다.</p> <p>즉위 1년인 경자년(1095) 정월에 단천(端川)에 기근이 들었다 하여, 공은(貢銀) 4천 냡을 감해 주었다. 사관(史官)을 좌참찬 송시열(宋時烈)에게 보내어 도타이 타일러서 올라오게 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병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자, 왕이 도타이 타일러서 출사(出仕)하게 하였다. 영동·영서의 대동미를 견감하여 그 도의 진흥에 보태 쓰게 하였다. 어사를 보내어 영동·영서·관서에 떠돌아다니는 북도의 백성들을 위문하고 구휼하여 안주케 하였다. 강원도의 삼세(三稅) 1096) 중에서 수미(收米) 1097) 와 노비의 공포(貢布)를 감해 주라고 명하였다.</p> <p>재령(載寧)에 사는 김두영(金斗榮)이란 자가 고변하였는데 70여 인을 불러 심문하였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 김두영에게는 무고율(誣告律)을 받게 하고 무고당한 모든 사람에게는 모두 양식을 주어 방면하였으며, 금부의 이졸(吏卒)에게 재물을 빼앗긴 자에게는 모두 찾아서 되돌려 주게 하여 너그럽게 보살피 주는 뜻을 보였다.</p> <p>2월에 호구(戶口)의 법을 더욱더 엄밀하게 하였는데 우윤(右尹) 권시(權諤)의 말을 따른 것이다.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인견할 때에 왕이 이르기를,</p>	<p>曰：</p> <p>聖人之於喪禮，制爲五服，豈偶然也？親疎、厚薄，非此則無以別焉，輕重、大小，非此則無以定焉。用之於家，而父子之倫乃明，用之於國，而君臣之分乃嚴，天地之尊卑，宗社之存亡，無不係焉，此所以莫重莫大，而不可以毫髮僭差者也。承統之子，與祖爲體。父之於嫡子之喪，其爲服制，必爲斬衰三年者，非爲子也，乃爲承祖宗之統也。私家尙如此，況國家乎，三代太平之世，尙如此，況於末世危疑之際乎？定臣民之心志，絕不逞之覬覦，在於此矣。然則有國家者之於此禮也，其可不謹乎？臣聞先孝宗大王之喪，大王大妃殿之服，考諸《禮經》，當爲齊衰三年，無可疑者，而當初禮官儀註，定爲期年之服，朝野臣民之有識者，莫不駭嘆，未曉其意之所在。此豈明大統定民志固宗社之禮也？此誠不可不卽議釐正。而練期將迫，寥寥無一人，爲國家進此言者，臣宴居深念，不勝宗社之憂。頃聞前掌令許穆，考據《禮經》，投進一疏，臣誠失喜，國家之有</p>
--	---	---

	<p>“지난번 흉년이 들었을 적에 백관의 녹봉을 ‘모두 감해야 한다.’고 여러 신하들이 말하였으나, 선부왕(先父王)께서 특별히 어공(御供)을 재량해서 감하고 백관의 녹봉은 그대로 두게 하셨다. 지금도 비록 궁핍하지만 녹봉을 먼저 감할 수는 없으니 어공 중에 감할 수 있는 것을 또 뽑아 아뢰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p> <p>3월에 비변사에서 남은 정포(丁布)를 강원 감사(江原監司)에게 내려 재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고 또 서울과 지방의 노인에게 음식물과 쌀·포목을 나누어 주었다. 전라도의 여러 고을에서 지급한 물건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하자 왕이 이르기를,</p> <p>“조정에서 베풀려고 하는 은덕의 뜻을 어찌 이같이 소홀히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고을의 수령들에 대해 벌을 논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90세나 1백 세 된 노인에게는 특별히 명주와 솜을 더 주도록 명하고 또 문·무과의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빈궁하여 양식을 싸 가지고 올라오지 못하는 자는 연도의 각 고을로 하여금 양식을 공급하게 하여 과거에 응시하도록 하였다.</p> <p>전 장령 허목(許穆)이 상소하여,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효종 대왕에게 기년복(暮年服)을 입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하고, 《의례(儀禮)》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적처(嫡妻)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웠을 경우에도 역시 장자(長子)라고 부른다.[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亦名長子]’는 말을 인용하여 말하고 또 아뢰기를,</p>	<p>人也。嗚呼！許穆之言，非徒議禮之大經，實是謀國之至計，此厥不聽，後悔莫及。殿下所當斷自宸衷，卽令禮官，依聖經釐正，而其所以復詢宋時烈者，優禮儒臣之意也。時烈正當如文純公李滉之聞奇大升駁正之說，瞿然而改其前見曰：“若非奇明彥，幾不免爲千古罪人云云者矣。”今乃反有遂非文過之計，掇拾《禮經》文字，附會己意，其爲辭說，不勝其煩。而其於《禮經》，父之於子，所以斬衰者，只在於與祖爲體，而聖人之所以嚴此禮者，只在於統承宗廟之大旨，則終始見不到說不出。臣實未服其言，而未曉其意也。嗚呼！自先朝所倚重委任者，無如宋〈時〉烈、宋浚吉。然此二人者，一生所講，在於禮學，已亦擔當，而其於國家大禮，所見之謬誤如此，況可與議於脩己治人之術，固國威天下之謨乎？今茲大王大妃之服，謂宜以三年改儀註，行會八方，使大小臣民，曉然知朝議之無異，以正名分定國是措國勢，於泰山之安，期而除服，決不可爲，而定爲三年之喪，決不可不爲也。</p>
--	--	--

	<p>“소현(昭顯)이 이미 세상을 일찍 떠났고, 효종께서 인조 대왕의 둘째 아들로 종묘를 이었으니 대비(大妃)께서 효종을 위해 자취 삼년(齊衰三年)을 입어야 함은 예(禮)로 볼 때에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통이기는 하나 정통이 아니므로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體而不正不得爲三年]’는 것으로 비교하였으니, 신은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p> <p>하였다. 왕이 그 소를 예조에 내리니, 예조가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청하였다. 좌참찬 송준길(宋浚吉)이 난점을 제기하면서 어물어물 결정하지 못하고, 정희 왕후(貞熹王后)1098) 가 예종(睿宗)을 위해 입은 복제(服制)를 《실록(實錄)》에서 고증하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p> <p>“가령 어떤 집안에 10여 명의 아들이 있는데 전중(傳重)한 다음 잇따라 죽을 경우 모두 참최복을 입어 주어야 합니까? 주소(註疏)에 이미 둘째 아들부터는 서자(庶子)가 된다는 의의를 분명히 말하였는데, 허목은 꼭 첩의 아들이라고 하니, 예의 뜻이 과연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의논은 이르기를 ‘제왕가(帝王家)는 왕통(王統)을 잇는 것을 소중히 여기므로 태상황(太上皇)1099) 이 사군(嗣君)1100) 을 위해서는 비록 지자(支子)로서 입승(入承)하였다 하더라도 마땅히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정체(正體)이든 정체(正體)가 아니든 모두 삼년복을 입어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p> <p>하였다. 우찬성 송시열(宋時烈)은 기년 복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극력 말하고 또 《예경(禮經)》의 장자(長子)·서자(庶子)의 설을 인용하여 말하기를,</p>	<p>疏至政院， 承旨金壽恒等， 以用意陰凶， 譎張眩亂， 逆啓之， 王命還給其疏， 削其官爵， 放歸田里。 金壽恒入對言：“原其罪狀， 雖鞫問可也。 放逐田里， 不足以懲其惡。” 副提學俞榮、副校理安後說、修撰沈世鼎等， 以善道之言凶慘， 請焚其疏， 放諸四裔。 善道遂竄三水。 館學儒生李嵒等， 疏請正邦刑， 大司諫李慶億、司諫朴世模、正言權格、掌令尹飛卿、持平李整·鄭脩等， 累以嚴鞫按律啓之， 王不從， 只命安置。</p> <p>右尹權譔上疏， 極言尹善道按律之非， 且曰：</p> <p>大王大妃， 今日之喪， 當爲三年之制， 必然無疑， 今雖義起， 可質百世。 時烈所謂先王不害爲庶子云者， 謬之甚矣。 一世學知其非， 而不敢言， 善道能言人所不敢言， 其亦敢言之士也。 而朝論大激， 無罪而殺士， 不幸近之。</p> <p>王賜批嘉納之。 金壽恒封還批旨， 屢覆逆之， 遂改批以誅之雖不可， 竄之終</p>
--	---	--

	<p>“서자(庶子)라는 칭호는 물론 첩의 아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임금의 아우[母弟]도 또한 서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효종 대왕이 인조 대왕의 서자라고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적자(嫡子)를 버리고 서자를 세운 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예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장자와 서자(庶子)의 구별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차자가 장자가 된다.’는 설은 물론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있고, 황면재(黃勉齋)1101)의 《통해속(通解續)》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감정(勘定)을 거치지 않았으니 그 설이 과연 허목이 말한 바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p> <p>하였다. 연양 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 우의정 정유성(鄭維城)은 병 때문에 의논을 개진하지 못하였다. 사관이 강화(江華)의 《실록(實錄)》을 고증하여 아뢰기를,</p> <p>“예종 대왕이 승하하였을 때에 정희 왕후가 어떤 복을 입었는지 고증할 수 없고, 기년(期年)도 못 되어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복을 벗게 하였습니다.”</p> <p>하였다.</p> <p>4월에 부호군(副護軍)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복제를 논하였는데, 그 대략에 아뢰기를, “성인이 상례(喪禮)를 오복(五服)으로 제정한 것이 어찌 우연히 한 것이겠습니까. 친소(親疎)와 후박(厚薄)을 이것이 아니면 구별할 수 없</p>	<p>不可悖群情爲教。諫院李慶億·朴世模、憲府尹飛卿·李整等，以論善道，而爲認所斥，論啓之，副提學俞棨，率館僚校理金萬基·李時術、副修撰沈世鼎等，筭論認罪，又申請焚善道疏，飛卿、慶億、世模等，又疏攻之。正言權格以認庇護凶人，請罷旋停。工曹佐郎李翔，疏攻認甚力，副護軍李惟泰，入對極論之，至言諸葛亮誅馬謖事。其後大司諫李廷夔，以同僚遽停，復論罷之。始認之出門待罪也，王特命遣史官慰諭。承旨朴世城，以臺論方張，不卽舉行，王震怒，以知有臺諫，不知有君父，下嚴旨拿鞫，將罪以逆命。政院、兩司啓請還收，王皆不允，俄而因大臣言，釋之。四月，罷諸宮家願堂。且命廟堂，議罷江原道諸宮家、各衙門柴場折受，自今以後，勿令加設。命常平廳，北道、嶺東西，飢民之流入城中者，令各部牒報，題給米鹽，都民尤甚絕火者，亦一體行之。命嶺底十一邑田稅，納可興倉者，使之待秋收捧。七月，以大旱，命行雩祭。國制秋後無祈雨，至是特行之。八月，命禁各衙門貿販利息，分徵隣族</p>
--	--	--

으며, 경중(輕重)과 대소(大小)를 이것이 아니면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이를 사용하면 부자의 윤기가 밝아지고, 국가에서 이를 사용하면 군신이 분의(分義)가 엄해지며, 하늘과 땅의 높고 낮음과 종묘와 사직의 보존과 망함이 모두 여기에 매여 있으니, 이게 바로 막중 막대해서 터럭만큼도 참람하거나 어긋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통(嫡統)을 계승한 아들은 할아버지와 체(體)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적자(嫡子)에게 반드시 참취 삼년(斬衰三年)을 입도록 복제를 만든 것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조종(祖宗)의 적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가(私家)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이겠으며, 삼대(三代)의 태평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위태롭고 어지러운 말세의 때이겠습니까. 신민의 마음을 정하고 불만을 품은 자들이 넘보는 것을 끊는 것이 이 상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소유한 자가 이 예에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상에 대왕 대비전의 복제는 《예경(禮經)》을 고증해 보면 자취 삼년(齊衰三年)으로 정해야 함은 의심할 것이 없는데, 당초 예관(禮官)의 의주(儀註)에 기년복으로 정하였으므로 조야(朝野)의 신민 중에 유식한 이는 모두 놀라고 탄식하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어찌 대통(大統)을 밝히어 백성의 뜻을 정하고 종사를 튼튼히 하는 예라고 하겠습니까. 이야말로 곧바로 의논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기(練期)1102)가 임박하였으나 적적하게도 국가를 위해 이 말을 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신이 평소 깊이 생각해 볼 때 종사에 대한 근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전 장령 허목이 《예경(禮經)》을 상고하여 소한장을 올렸다는 말을 듣고 신은 자신도 모르게 나라에 사람이 있구나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아, 허목의 말은 예를 의논하는 대경(大經)일 뿐만 아니라 실로 국가를 경영

之弊。領議政鄭太和以爲：“凶年旣減御供，請減百官俸祿。”王曰：“御供雖曰減損，尙多未減之物，何必先減百官之祿。”不許。庚戌謁寧陵，命勅侍衛將士，勿令損傷沿路禾穀。九月，以歲凶，命承旨草教，遍諭八方，使之安集，減御供精米、中米、酒房香醞米。十月，以雷變，政院、玉堂，請加修省，王嘉納之。時關西有雌鷄化雄之異，王乃下教責己，廣求直言。十一月，命八道各薦人材。賓廳啓：“以拘忌之疾，請停啓覆。”王曰：“嗚呼！天性，人皆有之，愚民不遵法令，不復其初，以至爲惡。當覆之罪，不卽處斷，而又從而嚴囚之，罪雖當誅，其情則戚矣，至於無辜，而死於囹圄之中？言念至此，不覺慘然。今歲以此不行，明年又以此不行，則彼罪人，皆爲囹圄之魂而後已，此非爲國之道也。”辛丑二年正月，撤都中兩尼院。初王惡僧尼亂教，有僧尼並令還俗之教。大臣、玉堂奏以爲，難猝行，王乃命撤去城中慈壽、仁壽二院，還年少者于俗，黜其老者于城外。以佛寺材修學宮及武館。蓋佛教始於新羅，盛

하는 지극한 계책이니, 말을 듣지 않으실 경우 후회해 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결단을 내리시어 곧바로 예관으로 하여금 성경(聖經)에 의거하여 바로잡게 하셔야 할 터인데 송시열에게 다시 물으신 것은 유신(儒臣)을 우대하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송시열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기대승(奇大升)의 논평을 듣고 깜짝 놀라 옛날의 견해를 바꾸면서 1103) ‘만일 기명언(奇明彦)이 아니었다면 천고의 죄인이 됨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다…….’라고 한 것 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나쁜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고 허물을 어름어름 숨기려는 심산으로, 《예경》의 글귀를 주워모아 자기의 의견에다 뜯어 맞추었으므로 그 사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번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경(禮經)》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참최복을 입어 주는 것은 오직 할아버지와 체(體)가 되는 데 있고 성인이 이 예를 엄하게 하는 것은 다만 종묘의 계통을 잇는 데에 있다는 큰 뜻에 대해, 중시 견해가 미치지 않았고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신은 실로 그 말에 복종하지 못하겠고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선조(先朝) 때부터 신임하여 위임한 이로는 송시열·송준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일생 동안 강구(講究)한 바는 예학이었고 자기들도 이를 말을 만하다고 자부하였을 것입니다만, 국가의 대례(大禮)에 대해 이처럼 소견이 빗나갔는데, 더구나 자기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와 나라를 튼튼히 하고 천하에 위엄을 펼치는 계책을 같이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왕 대비의 복제는 마땅히 삼년으로 의주(儀註)를 고친 다음 팔방에 알려, 대소의 신민으로 하여금 조정의 의논이 이의(異意)가 없음을 환하게 알도록 함으로써 명분을 바르게 하고 국시를 정하여 나라의 형세를 태산처럼 안전한 터전 위에 올려 놓아야 하며, 기년(基年)만에 복을 벗는 일은 결코 해서

於麗代，至我朝而猶未盡祛，至是而闢之廓如也，數千載所未有之舉也。命禁中外淫祀，下內帑緡布，以補京需。

[○] 四月旱，遣承旨放釋輕囚，使之勿拘常規，趁速疏放，俾無滯囚。命移配尹善道于北青，執義郭之欽、獻納吳斗寅、校理金萬均等，啓請還收。以故相臣李時白，有清忠之操，命限三年，仍給祿俸。分遣御史六人，於三南，使之廉問民瘼。以旱災下教責己，減膳禁酒。勅百官恪勤寅協。將行祈雨祭，筵臣以聖候未寧爲言，王曰：“予何愛一身，不顧萬姓之命哉？”副司直趙綱，疏救尹善道，其疏略曰：

悶旱之事，審理冤獄爲第一義也。一國大小輕重繫累之人，疇不舉論？尹善道之獨不入於審理，何哉？臣不知善道之罪，何罪也。善道之罪，惟在於以宗統、嫡統爲孝廟左袒也。上以盡忠於先王，下以勉殿下追孝之道，其寸誠之赫然，殆不可掩也。當善道投疏之時，誰爲殿下進焚疏之策也？臣竊見前史，恭愍焚李存吾疏，光海焚鄭蘊疏。

	<p>는 아니되고, 삼년상으로 정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p> <p>하였다.</p> <p>소가 정원에 이르자, 승지 김수항(金壽恒) 등이, 그의 마음씀이 음흉하고 속임수로 허풍을 쳐서 현란하게 한다고 지레 헤아려 아뢰니, 왕이 명하여 그의 소를 돌려주고 그의 관작을 삭탈하여 향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김수항이 입대(入對)하여 아뢰기를,</p> <p>“그의 죄상을 따져보면 비록 국문을 하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를 향리로 내쫓는 조치만으로는 그의 죄악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p> <p>하고, 부제학 유계(兪棨), 부교리 안후열(安後說), 수찬 심세정(沈世鼎) 등은 윤선도의 말이 흉악하고 참혹하므로 그의 소를 불태우고 먼 변방으로 내쫓자고 청하였다. 이에 윤선도가 삼수(三水)로 귀양가고 말았다. 관학 유생(館學儒生) 이해(李穡) 등은 소를 올려 국가의 형벌을 바르게 시행할 것을 청하고, 대사간 이경억(李慶億), 사간 박세모(朴世模), 정언 권격(權格), 장령 윤비경(尹飛卿), 지평 이무(李耆)·정수(鄭脩) 등은 엄히 국문하여 율(律)에 비추어 죄를 정하자고 누차 아뢰었으나, 왕이 따르지 않고 다만 안치(安置)하라고 명하였다.</p> <p>우윤 권시가 상소하여, 윤선도를 율에 비추어 죄를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극구 말하고, 또 아뢰기를,</p>	<p>恭愍、光海，非亂亡之主乎？今日廷臣，不以堯、舜之道，導殿下，反以亂亡之轍，引殿下躬駕而隋之，何也？臣恐後之視今，猶今之視昔也。善道之死生、存亡，臣不必論，臣不必惜也，其所進宗統、嫡統之說，斷不可置之也。殿下若大覺悟，而明辨宗統之歸，昭載先王之實錄，使後之論禮者，不敢異辭，則救諸神道，豈遠人情？惟我祖宗陟降之靈，理宜和豫於冥冥之中，收譴爲祥，變旱爲霖，使殿下長保我子孫、黎民，其德不豈大於走群望而祈報乎？</p> <p>疏奏，承旨南龍翼等，以黨惡譴張啓之，命還給其疏。執義郭之欽、掌令朴增輝等，請削黜，大司諫李殷相、正言權格等，請遠竄，爭之闕月。副提學兪棨、校理李敏迪等，請從兩司之啓，王不從。六月，將行祔太廟禮，停陳賀、頒教、飲福宴，還宮時儺禮、進歌謠街巷、結綵等事，皆令停之。命加尹善道，圍籬，因大司諫李殷相，榻前啓也。七月，移江都、南漢米，以賑三南。戶曹判書許積，請減內供</p>
--	---	--

“대왕 대비께서 오늘날의 상에 삼년복을 입어야 함은 필연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지금 비록 의리로 헤아려 제정한다 하더라도 백세토록 질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시열이 이른바 ‘선왕1104) 은 서자가 되어도 지장이 없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모두 그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윤선도는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는 바를 말하였으니 그 또한 과감히 말하는 선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의 논의가 크게 격렬해져서 ‘죄없는 선비를 죽인다.’1105) 라고 한 말과 불행히도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하니, 왕이 비답을 내려 가상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김수항이 그 비답을 봉해 왕에게 도로 올리고 누차 반대의 의견을 아뢰자 마침내 비답을 고쳐 ‘그를 죽이는 것은 불가하나, 귀양보내자는 여러 사람의 심정은 결국 어길 수 없다.’는 것으로 분부하였다.

사간원의 이경억·박세모와 사헌부의 윤비경·이무 등이, 윤선도를 논하다가 권시에게 배척을 받았다 하여 그를 논계하고, 부제학 유계는 관료(館僚)인 교리 김만기(金萬基) 이시술(李時術), 부수찬 심세정 등을 거느리고 차자를 올려 권시의 죄를 논하고 또 윤선도의 소를 불태워버리기를 거듭 청하자, 윤비경·이경억·박세모 등이 또 소를 올려 그를 공격하였다. 정언 권격은, 권시가 흉인(凶人)1106) 을 비호한다 하여 파직을 청하였다가 곧바로 중지하였다. 공조 좌랑 이상(李翔)이 소를 올려 권시를 매우 강력히 공격하고, 부호군 이유태(李惟泰)도 입대(入對)하여 그를 극렬히 논하였는데, 심지어는 ‘제갈량이 마속을 죽인 일’1107) 을 들어 말하였다. 그 뒤에 대사간 이정기가, 동료가 갑자기 계사를 중지하였다 하여 다시 그를 논하여 파직시켰다.

酒米，王曰：“民命且盡矣，苟有可以活我民者，當盡力爲之。”下別諭三南監司，令各思濟活飢民之策。七月甲寅，王格于太廟，行孝宗大王祔廟禮，〔祧〕仁宗、明宗神主于永寧殿。蓋國朝廟祀，太祖世室外，祀四親而用兄弟同昭穆之制，仁、明兩廟，於今爲五代，當遷故也。先是，王以兩廟同祧事重，詢于大臣、儒臣。判中樞府事宋時烈，上疏略曰：

廟制世數，自太祖竝及四親，以爲五世，則仁、明二位，皆在數外。今日竝遷何疑？第有一說焉。帝王之家，以繼體爲重，雖兄繼弟，叔繼姪，猶以爲父子，而各爲昭穆。《春秋》譏逆祀，朱子論宋、太祖、太宗、哲、徽，皆兄弟爲一世，非是。今我仁廟、明廟，身雖兄弟，義則父子。合爲一世，雖有前事，揆以孔、朱之訓，則當仁祖大王祔廟時，先遷仁廟，今日又遷明廟，是爲得禮之正。然既往不諫，前頭遷奉永寧時，猶可二其昭穆，以正已事之未安。且念我朝廟制，太祖及四親之主，皆在太廟，而穆、翼、度、桓

	<p>처음에 권시가 도성문 밖에 나가 대죄(待罪)할 적에 왕이 특별히 사관을 보내어 위로하고 타이르라고 명하였다. 그런데 승지 박세성(朴世城)이, 대론(臺論)이 바야흐로 격렬하다는 이유로 즉시 거행하지 않자, 왕이 진노하여 ‘대간이 있는 것만 알고 임금이 있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엄한 분부를 내려 잡았다. 국문하고 장차 왕명을 거역한 것으로 죄주려 하였다. 승정원과 양사에서 그 명을 도로 거두도록 계청하였으나 왕이 모두 윤택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대신의 말로 인하여 풀어주었다.</p> <p>4월에 모든 궁가(宮家)의 원당(願堂)을 혁파하였다. 또 묘당(廟堂)에 명하여, 강원도에 있는 모든 궁가(宮家)와 각 아문이 떼어받은 시장(柴場)에 대해 의논하여 혁파하고 지금부터 더 설치하지 못하게 하였다. 상평청(常平廳)에 명하여 북도·영동·영서의 굶주린 백성 가운데 도성 안으로 흘러 들어온 자에 대해 각부(各部)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여 쌀과 소금을 지급하게 하고, 도성 백성 중에 특히 끼니를 잇지 못한 사람에게도 일체로 시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가흥창(可興倉)에 바쳐야 할 영(嶺) 밑 11개 읍의 전세(田稅)를 가을을 기다렸다가 거두어 들이라고 명하였다.</p> <p>7월에 크게 가물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라고 명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가을 이후에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때 와서 특별히 거행하였다.</p> <p>8월에 각 아문에서 매매한 이식(利息)을 이웃과 일가붙이에게 나누어 징수하는 폐단을 금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p> <p>“흥년에 이미 어공(御供)을 감하였으니 관원들의 녹봉도 감하소서.”</p>	<p>祧主, 皆藏於永寧殿。 太廟正廟也, 永寧, 別廟也, 以穆祖之尊, 而居於別廟, 揆之義禮, 便非所安。 宋朝議者, 欲遷僖祖於別廟, 朱子極言其非。 今以我朝太廟, 準宋之廟制, 而證之以朱子之說, 則我穆祖, 是宋之僖祖, 而擬周之后稷者也, 太祖、太宗, 亦宋之太祖、太宗, 而擬周之文王、武王者也。 穆祖不得冠於太廟, 而太祖居太廟之第一室, 所謂以僖祖, 爲無功業, 而以得天下爲自己爲之, 爭較強弱, 無遜避者也。 此恐非太祖當日孝奉之心, 不待賢孝君子然後, 知其不可者也。 以臣愚意, 當因我先王, 遷祔之時, 亟令禮官、儒臣, 相與講究, 移奉穆祖, 於太廟第一室, 以爲始祖, 太祖、太宗, 以下世室之禮, 一如周家之舊, 又於太廟, 造爲東西 [夾] 室, 以奉翼祖以下祧主, 則名正理得, 義明事安, 可百世以俟聖人而不惑云云。</p> <p>王下其疏該曹, 禮官啓以爲: “祧廟之事, 仁、明二廟并遷, 大臣、儒臣無異議, 其他所陳, 係是國家莫重、莫大之禮, 該曹不敢容議, 請議于大臣。” 王</p>
--	--	---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어공을 줄였다고는 하나 감하지 않은 물품이 아직도 많은데 하필이면 관원들의 녹봉을 먼저 감한단 말인가.”</p> <p>하고, 윤택하지 않았다. 8월 26일에 영릉(寧陵)을 참배하였는데, 시위하는 장사들에게 당부하여 도로가의 벼와 곡식을 손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p> <p>9월에 흉년이 들자 승지에게 교서(敎書)를 초하게 한 다음 팔방에 두루 유시하여 안주하게 하고, 어공(御供) 중의 정미(精米)·중미(中米)와 주방(酒房)의 향온미(香溫米)를 감하게 하였다.</p> <p>10월에 우리가 치는 재변이 있자 정원과 옥당이 더욱 수성(修省)하시기를 청하니, 왕이 가상히 받아들였다. 이때에 관서에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이변이 있었는데, 왕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직언(直言)을 두루 구하였다.</p> <p>11월에 팔도에 명하여 각각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아뢰기를,</p> <p>“사위스러운 질병이 있으니 계복(啓覆)1108) 을 정지하소서.”</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아, 천성은 사람마다 지니고 있건만, 어리석은 백성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타고난 천성을 회복하지 않아 악한 일을 하기에 이르렀다. 복심(覆審)해야 하</p>	<p>允之。原任大臣李景奭、領議政鄭太和、左議政沈之源等，以方被物論，辭不獻議，原任大臣鄭維城，請大臣、儒臣，一處會議，熟講可否。其後太和、之源等，於榻前，陳其不可，王遂止會議，亦不答其疏。蓋宗廟之制，天子禘始祖以配天，而立七廟，諸侯祖其始受封之君爲太祖，而竝四親爲五廟，禮也。我朝廟制，實遵古制，而永寧之制，亦增損祭法壇〔壇〕之制而爲之節，卽先儒所謂，鬼其百世者也。時烈之意，模倣先賢，擬議非倫。遽欲干大事，以亂舊章。疏上，聞者駭懼，謂時烈既以服制事，誣誤朝廷，貶貳大統，而儕之匹庶，行且以此遷動五廟，踰犯天險，而得罪祖宗矣。及王寢其議不行，而廟祧得以不動，神人得以奠位，有識長老，服王淵懿之識焉。至其兄弟，合世之說，我朝廟制，雖循前代同堂之制，而代爲一室，各專其尊，未嘗如宋世兄弟并位之制。乃兄弟爲一世同祧，與異昭穆迭遷者，固爲不同，然此二禮者，禮經無徵，先儒異論，歷代各爲一王之制，有不可遽爲相奪者，其祧永寧也，亦無可以貳其昭穆</p>
--	--	---

는 죄인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또 그를 엄하게 가두어 두면, 아무리 죄는 비록 사형에 해당되지만 그 정상은 슬픈 일인데, 심지어 죄없이 감옥 속에서 죽는 것이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참담해진다. 금년에 이것 때문에 복심을 거행하지 않고 명년에 또 이것 때문에 복심을 행하지 않는다면 저 죄인들은 모두 감옥 속의 귀신이 되고 말 터이니, 이는 국가를 다스리는 도리가 아니다.”

하였다.

신축 2년 정월에 도성 안에 있는 두 이원(尼院)을 철거하였다. 전에 왕이 승니(僧尼)들이 교화를 어지럽히는 것을 미워하여 ‘승니들을 모두 환속(還俗)하게 하라.’고 하교하였다. 그런데 대신과 옥당이 갑자기 거행하기 어렵다고 아뢰자 왕이 명을 내려 도성 안의 자수원(慈壽院)과 인수원(仁壽院) 두 곳을 철거하게 하여, 나이 젊은 자는 속인으로 돌아가게 하고 늙은 자는 성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헐어버린 불사(佛寺)의 재목으로 학궁(學宮) 및 무관(武館)을 수리하게 하였다. 대체로 불교는 신라 때에 비롯되어 고려 때에 성하였고, 우리 조선조에 와서도 다 제거하지 못하였는데, 이때 와서 시원하게 물리쳤으니, 수천 년 동안 없었던 쾌거였다. 명을 내려 중외(中外)의 음사(淫祀) 1109)를 금하고 내탕고의 면포를 내려 서울의 수용(需用)을 보충하였다.

4월에 가뭄이 들자 승지를 보내어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였는데, 상규(常規)에 구애되지 말고 속히 너그럽게 방면하여 정채된 죄수가 없게 하라고 하였다. 명을 내려 윤선도의 유배지를 북청(北靑)으로 옮기도록 하였는데, 집의 광지흙(郭之欽), 헌남 오두인(吳斗寅), 교리 김만균(金萬均) 등이 그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다. 고 상신 이시백(李時白)이 청백하고 충성스런

者。時烈蓋未之究而爲言也，王又舍其說不問，而如舊禮祧奉焉。下教減兩殿慶尚道朔膳，以明秋爲限，全南、公忠兩道朔膳，亦令量減。八月己巳，王謁寧陵。九月庚午幸太學，釋菜先聖，因取士。左議政沈之源以爲：“御供既減，則百官祿俸，亦不當如前。”王曰：“朝士之所賴者，祿奉，漸至殘薄，何以責其廉隅乎？”十一月，命罷侍女抄選之舉，因憲府之啓也。十二月，命三南、京畿、海西，被災邑糶糴，一切免之，且減春收米。出大僕喂馬穀千餘石，以賑飢民。壬寅三年正月，以年饑禁酒，諸官府及御供用酒處，皆罷之，命朝參舉動，限秋成勿用樂。二月，遣賑恤御史于兩南，令以便宜從事。三月，以旱災，命中外審冤獄。下教責己，避殿減膳撤樂，廣求直言。又出御宣政殿，召大臣、備局堂上，講弭救之策，命撤尹善道〔圍〕籬。四月，右參贊應慶亨，因請對，請宥善道，王以問大臣鄭太和，亦以應亨言爲是。玉堂金萬基，以臺諫不爭執撤圍爲言，持平李東溟、呂聖齊、掌令李程等，遂請還收撤圍之命，

	<p>지조가 있다 하여 3년 동안 녹봉을 그대로 주도록 하였다. 어사 6인을 삼남(三南) 지방에 나누어 보내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게 하였다. 가뭄이 들자 교서를 내려 자신을 꾸짖고 어선(御膳)을 감하고 술을 금하였다. 그리고 못 관원들을 신칙(申勅)하여 공경하고 부지런히 하며 단결하고 화합하도록 하였다. 친히 기우제를 지내려 하자, 경연의 신하들이 성상의 건강이 편치 못한 것을 들어 말하니, 왕이 이르기를,</p> <p>“내 어찌 내 한 몸을 아껴 백성들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부사직(副司直) 조경(趙綱)이 소를 올려 윤선도를 구원하였는데, 대략 아뢰기를,</p> <p>“가뭄을 고민하는 일로는 억울한 죄수를 심리하는 것을 첫째가는 의의로 삼습니다. 일국의 갖가지 죄수들에 대해 어느 누가 거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윤선도만 홀로 심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무엇 때문입니까? 신은 윤선도의 죄가 무슨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선도의 죄는 오직 종통(宗統)·적통(嫡統)으로 효종을 위하여 편든 데에 있을 뿐입니다. 위로는 선왕(先王)께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전하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권면한 것이니, 그 성의가 뚜렷하여 가릴 수가 없습니다. 윤선도가 소를 올릴 때에 누가 전하를 위하여 소를 태워버리라는 계책을 올렸습니까? 신이 삼가 전대의 사서(史書)를 보니, 공민왕은 이존오(李存吾)의 소를 불태웠고, 1110) 광해주(光海主)는 정온(鄭蘊)의 소를 불태웠습니다. 1111) 공민왕과 광해주는 난망(亂亡)을 초래한 임금이 아닙니까. 오늘날의 조정 신하가 요(堯) 순(舜)의 도리로써 전하를 인도하지 않고 도리어 전하에게 난망의 전철(前轍)로 인도하며 직접 명예를 메고 따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신은, 후세에 오늘날의 일을 보는 것이 오늘날에</p>	<p>王不允。遣官賜祭，于義州、江華、金化、廣州、安州、免山、安邊諸處，丙子戰場，及湖南水操時，大風溺死人等處。癘疫大熾，命賜都城中外，藥物、糧廩。六月，遣官致祭，于魯山君墓。魯山君遜于寧越而歿，國人憐之。中廟、宣廟、孝廟朝，皆嘗遣官致祭，至是復行。賜嶺南行誼人河弘度、趙任道米穀有差。以嶺南賑恤御史書啓，凡飢民所受穀，一切蕩滌。諸道大水，民多漂死。命諸道自官埋葬之。命各衙門船隻，有定數，內需司、明禮宮、龍洞宮、壽進宮、於義宮等，船隻時存外，勿加數。七月，命西北監司，採訪人才以聞。八月，遣京畿均田使閔鼎重、金始振等，折量田畝，定湖南大同田結米布之數。九月己卯，王謁健元陵。是歲命麗朝諸王陵，禁火、禁伐。賜南海露梁，故統制使李舜臣廟額。舜臣者，宣廟朝累破倭寇，忠勇最著，沒於戰陣者也。癸卯四年三月，改建永寧殿，拓舊規改翼室。四月，定諸宮家田結，大君、公主、王子、翁主，有差。修撰洪宇遠上疏曰：</p>
--	--	---

	<p>옛일을 보는 것과 같을까 염려됩니다.</p> <p>윤선도가 죽고 사는 것은 신이 논할 필요가 없고 신이 애석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만, 그가 말씀드린 종통(宗統)·적통(嫡統)의 설은 단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크게 깨달아 종통의 귀결을 명확히 분별하여 선왕의 실록(實錄)에 밝게 실어서 후세에 예를 논하는 자로 하여금 감히 다른 말이 없게 한다면 신도(神道)에서 찾아보더라도 어찌 인정과 멀겠습니까. 좌우에 오르내리시는 우리 조종(祖宗)의 영혼이 이치상 저승에서 기뻐하여, 견책을 거두어 상서가 되고 한재를 바꾸어 장맛비가 되게 하여 전하로 하여금 우리 자손과 백성을 장구히 보전하게 할 것이니, 그 덕이 못 산천(山川)에 가서 제사를 지내어 보답을 비는 것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p> <p>하였다.</p> <p>소가 주달되자, 승지 남용익(南龍翼) 등이 ‘악인과 편당을 지어 터무니없는 말로 허풍을 친다.’고 아뢰니, 그 소를 되돌려 주라고 명하였다. 집의 곽지흠(郭之欽), 장령 박증휘(朴增輝) 등은 벼슬을 삭제하여 쫓아내자고 청하고, 대사간 이은상(李殷相), 정언 권격(權格) 등은 먼 곳으로 귀양보내자고 청하는 등 달이 넘도록 논쟁하였다. 그리고 부제학 유계(兪槩), 교리 이민적(李敏迪) 등은 양사(兩司)의 청을 따르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따르지 않았다.</p> <p>6월에 장차 태묘(太廟)에 부제(附祭)하는 예를 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진하(陳賀)·반교(頒敎)·음복연(飲福宴)을 정지하고, 환궁(還宮)할 때에도 나례(儼禮)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결채(結綵)하는 등의 일을 모두 정지하게 하였다. 명을 내려 윤선도를 위리 안치(圍籬安置)하게 하였는데, 대사간 이은상</p>	<p>臣竊見，前參議尹善道，曾以右贊成宋時烈議禮之失，投疏攻斥時烈，朝論大發，善道因此，圍置極邊。厥後因審理，量移北青，臺章又發，復還前所配地。臣嘗得見，善道之疏，其命意造辭，多出忿激，過爲深文，善道之事，誠過矣。然其宗統、嫡統之說，則實是明白、的確，不可易之論也。時烈雖山林儒雅，負重望，然其議禮之錯，固不可掩也。今之護時烈者，全爲覆蓋其失，而至欲使人不敢議，斥善道者，指爲構禍士林，直以兇賊目之。善道言之過當，則固有之矣，亦豈有構禍士林之意也？人各有見，不可苟同。公論所在，焉可誣也？今則惡其不同，而強欲同之，士大夫之間，稍有異議者，則必群起而攻之。許穆再上論禮之疏，則斥出遠郡，罷歸之後，不復收用，權認纔立赤幟，則卽被重劾，趙綱一言，救善道，則指之爲奸邪，竝其子亦被收司之律。夫趙綱以累朝耆舊之臣，其平生忠直一節，可質神明，而今忽變而爲奸邪，豈古人所謂，人固未易知，知人亦未易者耶？此實臣所未解者</p>
--	--	---

	<p>이 탑전(榻前)에서 아뢰었기 때문이다.</p> <p>7월에 강도(江都)와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쌀을 옮겨 삼남(三南)을 진휼하게 하였다. 호조 판서 허적(許積)이 술 담그는 쌀을 감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p> <p>“백성의 목숨이 죽어가고 있으니, 진실로 우리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p> <p>하고, 삼남(三南)의 감사에게 별도로 유시를 내려 각각 굶주린 백성을 구제해 살릴 수 있는 계책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7월 7일에 왕이 태묘(太廟)에 나아가 효종 대왕의 부묘례(附廟禮)를 행하고 인종(仁宗)·명종(明宗)의 신주를 영녕전(永寧殿)에 조천(祧遷)하였다. 대개 국조의 묘사(廟祀)는 태조의 세실(世室)1112) 이외에 사친(四親)1113) 을 제사지내는데, 형제는 같은 소목(昭穆)의 제도를 쓰게 되었으므로 인종과 명종 두 위는 이때에 5대가 되어 조천해야 했기 때문이다.</p> <p>이에 앞서 왕이, 양묘(兩廟)1114) 를 같이 조천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라고 하여 대신과 유신(儒臣)에게 물었다. 판중추부사 송시열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p> <p>“묘제(廟制)의 세대 수를 태조로부터 사친(四親)까지 5세로 잡는다면, 인종과 명종 두 위는 모두 대수 이외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아울러 옮기는 것이 의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p>	<p>也。 臣於善道，素不相識，非敢爲之緩頰也。 但念善道，自是有氣節，敢言之人。 曾以直疏，立節於昏朝，及在先〔朝〕，且有師傅舊恩。 而今以語言之過，久竄風霜之域，白首殘年，死亡無日，誠恐一朝溘然，貽聖朝殺士之名。 伏願殿下，深加矜憫，亟賜放還，俾得歸死田里。 是亦仁聖主不忍人之一政也。</p> <p>王優批答之。 諫院金萬均、宋時喆、元萬里、憲府鄭繼胄、金益廉等，啓請削黜，玉堂李敏迪、李翊、鄭哲等，劄論之，王不聽。 七月，以旱災下教，責躬求言，命中外大小臣僚，同寅協恭，以答天譴。 八月，命召大臣、備局堂上，講求賑荒之策。 九月，減司藥寺御供精米，大臣請仍之，王曰：“百官俸祿，既已減省，何獨於御供不減乎？” 十二月，命諸宮家柴場，各自望定一處，量其大小，漁場、網場，宣廟朝賜給外，一切勿許，雖賜給之處，只限其身。 甲辰五年五月，蕩滌戊戌以後內需司奴婢身貢，追徵於已死者之一族，分給南漢米五千餘石，于畿邑，</p>
--	--	---

	<p>다만 일설이 있습니다. 제왕가(帝王家)에서는 대통의 계승을 중히 여기므로 형이 아우의 뒤를 계승하고 숙부가 조카의 뒤를 계승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어 각각 소목(昭穆)이 됩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서는 역사(逆祀)1115) 하는 것을 비평하였고, 주자(朱子)는 ‘송(宋)나라 태조·태종과, 철종(哲宗)·휘종(徽宗)이 모두 형제이긴 하지만 한 세대로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논하였습니다.</p> <p>지금 우리 인종과 명종은 비록 형제간이지만 의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위를 합하여 한 세대로 치는 것이 비록 과거에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공자(孔子)와 주자(朱子)의 말씀으로 헤아려 보면, 인조 대왕을 태묘(太廟)에 합부(合附)할 때에 먼저 인묘(仁廟)를 조천하고 오늘 또 명묘(明廟)를 조천하는 것이 올바른 예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영녕전(永寧殿)에 옮겨 모실 적에 소목(昭穆)을 둘로 만들어서 과거의 온당치 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p> <p>또 생각건대, 우리 나라의 종묘 제도는 태조 및 사친(四親)의 신주가 모두 태묘(太廟)에 있으나,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의 조천한 신주는 모두 영녕전(永寧殿)에 모셔져 있습니다. 태묘는 정묘(正廟)이고 영녕전은 별묘(別廟)인데 높으신 목조께서 별묘(別廟)에 모셔져 있으니, 의리나 예로 헤아려보면 편안한 바가 아닙니다. 송나라 조정에서 의논하는 이가 희조(僖祖)를 별묘에 옮기려 하자, 주자(朱子)가 그 잘못된 점을 극력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태묘를 송나라 종묘 제도에 비교하고 주자의 설로 증거해 보면, 우리 목조는 곧 송나라의 목조와 같고 주(周)나라의 후직(后稷)에 비교되며, 태조와 태종은 송나라의 태조와 태종 같고 주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에 비교됩니다. 그런데 목조께서 태묘의 윗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태조</p>	<p>以賑飢民，使之待秋除耗還捧。 七月，遣右參贊金壽恒，于咸鏡北道，訪邊瘼。 設文、武科取士。 命該曹，分付兩南方伯，印出《小學》書，頒布中外，申命勸講。 九月癸卯，王謁光陵。 以戶曹判書許積爲右議政。 十一月己丑，彗星出于軫，下教責己，避殿。 命大小群工，恪勤乃職，具陳得失。 令該曹，舉行減膳、禁酒等事。 以風雷之變，放內司獄囚，停尙方織錦之役。 乙巳六年正月元日，白虹貫日。 二月，彗星復見，下教責己避殿，理冤獄。 儒生成大經，上疏請釋尹善道，以開敢言之路。 三月，移配尹善道于光陽。 掌令李東溟，啓請還收，王不允。 蕩滌諸道，甲辰以上諸般身役，及各樣糶糶，指徵無處者。 四月，幸溫泉行宮。 以時當農節，罷遣本道軍兵扈衛者。 王體中有疾，患久未愈，中外憂懼，醫者言，當浴溫泉。 溫泉之行，國朝故事也。 王往浴數月，體蘇快。 遂命其道，禮耆老、舉孝悌、祀忠烈、減田租、設科舉。 既還宮，又推優老之典，於沿道。 厥後比累幸，禮皆如之。 王在溫泉行宮，命道內老</p>
--	--	---

	<p>가 태묘의 제1실에 계시니, 이른바 ‘희조(僖祖)는 공업(功業)이 없고 천하를 얻은 것을 자기가 이룩한 것으로 여겨 강약(強弱)을 다투어 비교해 겸손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그 당시 태조께서 효도로 봉양하던 마음이 아닐 듯한데, 어질고 효성스런 군자가 아니라도 그 불가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p> <p>신의 어리석은 의견으로는, 우리 선왕을 옮겨 합부하는 때를 인하여 서둘러서 예관(禮官)과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서로 더불어 강구하게 한 다음 목조를 태묘의 제1실로 옮겨 모시어 시조로 삼고 태종·태조 이하의 세실(世室)의 예를 일체 주나라의 옛 제도처럼 하며, 또 태묘에 동서의 협실(夾室)을 만들어 익조 이하 조천한 신주를 모시면 명분이 바르고 이치가 맞게 되며 의리가 밝아지고 일이 온당하여 백 세 이후에 성인이 나오더라도 의혹되지 아니할 것으로 여깁니다…….”</p> <p>하였다.</p> <p>왕이 그 소를 해조(該曹)에 내리니, 예관이 아뢰기를,</p> <p>“조묘하는 일은, 인종과 명종 두 위를 아울러 옮기는 데 대해 대신과 유신이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그 밖에 진달한 바는 국가의 막중하고도 막대한 예에 관계되므로 해조가 감히 의논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소서.”</p> <p>하니, 왕이 윤희하였다. 원임 대신 이경석(李景奭), 영의정 정태화(鄭太和), 좌의정 심지원(沈之源) 등은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고, 원임 대신 정유성(鄭維城)은 ‘대신과 유신이 한곳에 모</p>	<p>人, 年八十以上者, 毋論職名有無良賤, 竝給老職, 通政帖。 致祭故參判金長生、東萊府使宋象賢、提督官趙憲、統制使李舜臣、延平府院君李貴之墓。 遣史官敦諭于宋時烈、宋浚吉等處, 且訪問溫陽境內行迹表著人, 啓聞旌表。 老人八十以上, 加資, 九十以上, 加資之外, 又給食物。 令京畿, 大駕所經一路, 一體爲之。 左贊成宋時烈、大司憲宋浚吉、副護軍李惟泰等, 來朝于行宮。 王欲與之偕來, 惟泰以母老辭, 時烈以流言辭, 至稷山而還。 浚吉隨後入城, 命該曹繼粟。 十月癸丑朔, 夜大風雨雷電, 王驚懼, 命在野儒臣, 具實封以聞。 退行進豐呈於明春, 申明中外官吏, 酷刑之禁, 民結之暗, 錄於宮家免稅者, 一切罷之。 無主陳荒田, 諸宮家、各衙門占奪者, 令還給開墾之民。 命旌表中外節義孝行之人。 命各道監、兵使, 所管牙兵, 除收布專鍊習, 減關西、京畿稅豆, 其餘諸道有差, 減砲保納布, 以兵曹所儲充給之。 丙午七年正月戊戌, 白虹貫日, 王下教罪己求言。 以天怒孔棘, 災異層出, 退進宴待秋。 二月, 諫院</p>
--	---	---

여 의논하여 그 가부를 정밀히 강구하자.’고 청하였다. 그 뒤에 정태화, 심지원 등이 탑전에서 그 불가함을 아뢰니, 왕이 마침내 회의를 중지시키고 그의 소에도 답하지 않았다. 대체로 종묘의 제도는, 천자는 시조를 체례(禘禮)로 받들어 하늘과 배향(配享)해서 칠묘(七廟)를 세우고, 제후는 맨 처음에 나라를 봉해 받은 임금을 조(祖)로 받들어 태조로 삼아 사친(四親)까지 아울러 5묘(廟)를 세우니, 이것이 예이다. 우리 나라의 종묘 제도는 실로 옛날 제도를 따른 것이고, 영녕전의 제도도 제법(祭法)의 ‘단선(壇蟬)의 제도’¹¹¹⁶⁾ 를 가감하여 조절한 것이니, 곧 선유(先儒)가 이른바 ‘2백 세(世)에 귀(鬼)가 된다.’는 것이다. 송시열의 의견은 선현(先賢)을 모방하되 비의하여 의논한 것이 두서가 없었다. 갑자기 큰 일에 간여하여 옛 헌장(憲章)을 어지럽히려 하였다. 소가 올라가자, 듣는 이가 놀라고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송시열이 이미 복제(服制)의 일로 조정을 그르쳤는가 하면 대통(大統)을 깎아내려 서인(庶人)의 위치와 똑같이 만들었고 또 이로써 오묘(五廟)를 뜯어고치려고 하였으니 천험(天險)¹¹¹⁷⁾ 을 범하고 조종에 죄를 얻게 되었다.”

하였다. 왕이 그 의논을 중지시키고 시행하지 않으므로써 종묘의 조주(祧主)가 움직이지 않고 신과 사람이 제자리에서 편안히 있게 되자, 유식한 장로(長老)들이 왕의 깊고 아름다운 식견에 감복하였다.

형과 아우를 한 세대로 치는 설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종묘 제도가 비록 동당(同堂)에 모시는 전대의 제도를 따르고는 있으나, 대(代)마다 한 실(室)을 만들어 각기 그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송나라 시대에 형제의 신위(神位)를 나란히 모시는 제도와는 같지 않다. 이는 형제를 1세(世)로 잡아 같이 조천하는 것으로서 소목(昭穆)을 달리하여 차례로 옮기는 것과는 본디 다르기는

李殷相、崔寬、李翊、李嵒等，啓削工曹正郎金壽弘仕版。己亥墓制之既行也，壽弘移書宋時烈，論服制，責時烈主墓之失。至是，以倡邪說妄議朝廷大禮，論削之。三月，嶺南儒生柳世哲等，千餘人，上疏極論，時烈己亥墓服之非制，引《禮》天子、諸侯之喪，皆斬衰無墓之說，且進《喪服考證》一冊。疏至政院，承旨金壽興等，以驚動上心，網打善類，啓之，王以疏意未安，退修學業，答之，因會群臣議之。左議政洪命夏曰：“當初服制之議，尹鑄以爲，當服斬衰三年，宋時烈以爲，斬衰乃臣服君之服，不可爲之。尹鑄必欲勝，長書往復爭辨。許穆之論，不過祖述尹鑄而已。今此嶺疏，專是綴拾緒餘，主意無定，而意實在於構陷儒臣矣。”金壽恒、金萬基，請明辨痛斥，右議政許積言，三年之說，不獨世哲，世哲不可罪。王曰：“予意則不必以痛卞爲急，後日相議立法，以杜日後之患可也。”憲府趙復陽、鄭繼胄、孟胄瑞、魚震翼、蘇斗山，諫院李程、崔逸、李東稷、鄭載禧等，請考律定罪，玉堂李敏叙、吳斗寅、李端夏、朴

	<p>하지만 이 두 예는 《예경(禮經)》에 증거가 없고 선유(先儒)들의 논의가 달라 역대마다 각각 한 왕조의 제도가 되었으니, 갑자기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르니 할 수 없는 바가 있으며, 영녕전에 조천하는 것도 소목을 달리할 수 없다. 그런데 송시열은 대개 그것을 구명하지 못하고 말하였던 것이고 왕은 또 그 설을 버리고 묻지 않은 채 구례대로 조묘(祧廟)에 모셨다.</p> <p>하교하여, 양전(兩殿)에 바치는 경상도 삭선(朔膳)1118) 을 명년 가을까지 감하도록 하고, 전라도·공충도(公忠道)의 삭선도 헤아려 감하게 하였다.</p> <p>8월 23일에 왕이 영릉(寧陵)을 참배하였다.</p> <p>9월 24일에 태학(太學)에 거둥하여 선성(先聖)에게 석채례(釋菜禮)를 행하고 이어서 선비를 시취(試取)하였다.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이 아뢰기를,</p> <p>“어공(御供)을 이미 감하였으니, 관원들의 녹봉 또한 전대로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조정의 관원들이 의뢰하는 것은 녹봉인데, 점차로 박해지고 있으니 어떻게 염치를 지키라고 책할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11월에 시녀(侍女)를 선발하는 일을 과하도록 명하였는데 사헌부의 청을 따</p>	<p>世堂等，又筭論之，館學儒生洪得禹等，亦上疏，主募制而論斥之，請正其罪，王不聽。校理崔攸之，疏請以長子期制，布告中外，且依國忌懸板例，刻之，各衙門廳壁。王留其疏，不下，既而以國家上下服制，宜一遵《五禮儀》行之，無論長、衆，皆服碁。有如憑藉論禮，惹起鬧端者，當施以刑章之意，布告中外，洪命夏之請也。王復幸溫陽，奉王大妃以行。四月，王在溫泉行宮，命湖西道內孝行表著者，依老人例，題給食物，以示優異。命溫陽及本道各邑，京畿所經一路，鑿役，依上年例舉行。七月，北使來，查犯禁買賣及走回人容接等事，以斬罪勘斷邊臣。王曰：“此予之失也，豈可諉之於群下乎？”北使又論，大臣以死律，王又曰：“予之失也，吾當自請罪耳。”北使乃處以次律，使左議政許積于北京，大臣免罪罰金。八月，以日食、歲凶，下教罪己避殿。九月，移轉嶺南穀于嶺東西，海西穀于北道，以賑飢民。命減砲保價布，嶺東西、京畿、兩南，有差，其不足之數，以訓局、戶部所儲者，推移之。以木花之</p>
--	---	--

	<p>른 것이다.</p> <p>12월에 명하여 삼남·경기·해서에서 재해를 입은 고을의 조적을 일체 면제해 주고 또 봄에 징수하는 미곡을 감해 주게 하였다. 태복시(太僕寺)의 말 먹이는 곡식 1천여 석을 방출하여 굶주린 백성을 먹이게 하였다. 임인 3년 정월에, 기근이 들었다 하여 금주령을 내리고 모든 관부 및 어공(御供)의 술에 소요되는 것을 모두 파하였으며 조참(朝參)의 거동에 추수 때까지 음악을 쓰지 말라고 명하였다.</p> <p>2월에 양남(兩南)에 진휼 어사(賑恤御史)를 보내어 편의에 따라 일하라고 하였다.</p> <p>3월에 한재로 중외에 명하여 억울한 죄수를 심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분부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정전(正殿)을 피해 거처하고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철폐하고 직언을 널리 구하였다. 또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불러 재이를 중지시키고 구제하는 계책을 강구하였으며, 윤선도의 우리(圍籬)를 철폐하라고 명하였다.</p> <p>4월에 우참찬 민응형(閔應亨)이 뵈기를 청하고 인하여 윤선도를 용서해 줄 것을 청하자 왕이 대신에게 물었는데, 정태화도 민응형의 말을 옳다고 하였다. 옥당의 김만기(金萬基)는 대간(臺諫)이 윤선도의 우리 철폐에 대해 쟁집(爭執)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지평 이동명(李東溟)·여성제(呂聖齊), 장령 이정(李程) 등이 드디어 우리를 철폐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관원을 보내어, 의주·강화·금화(金化)·광주(廣州)·안주(安州)·토산(兔山)·안변(安邊) 등의 병자 호란(丙子胡亂) 전쟁터와 호남(湖南)의 수상</p>	<p>貴, 減各司奴婢身貢有差, 或許以米代納。嶺東西奴婢身貢、兵曹所捧軍布, 亦如之。十一月, 蕩除各司奴婢身貢, 指徵無處者, 乙巳以後身貢, 一半作米者, 亦除之。命停歲抄, 其兒弱物故徵布, 悉令查出蠲減。兒弱者以實年十歲爲限, 未滿十歲者, 其身役一切蠲之。申各道兒弱冒定之禁。命諸道, 查出監、兵、水營, 營將在家軍官, 以俟朝家裁處。如不實聞, 則施以瞞報軍情之罪。減咸鏡道上納貢物中牛黃、豹皮等物。以御史聞見別單, 減北道安邊、德源、洪原、文川、高原、鏡城、慶興、利城、富寧九邑田稅。丁未八年正月丁酉, 行王世子冊封禮。兩司以罰金, 請罪奉使之入, 及北使在館查〔問〕時相臣, 合啓論之, 王以不知事情, 妄論大臣, 下嚴教斥之。執義李翻、掌令朴增輝·申命圭、持平俞樾·李夏、獻納金澄、正言趙聖輔等, 并竄遠地。四月, 復奉王大妃, 幸溫陽。以當農節, 命京畿、忠清道, 勿出迎護軍兵。沿路老人等, 依上年例, 食物題給, 道路乞丐人, 以常平米穀, 散給賑之, 亦命食物</p>
--	--	--

	<p>조런 때에 큰 바람으로 인하여 사람이 빠져 죽은 곳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돌립병이 매우 성하자 중외(中外)에 약물과 양곡을 주라고 하였다.</p> <p>6월에 관원을 보내어 노산군(魯山君)의 묘소에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노산군이 영월(寧越)로 물러가 있다가 죽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가련하게 여겼다. 중종·선조·효종조에 모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와서 다시 행한 것이다. 절행(節行)이 바른 영남의 사람 하홍도(河弘度)·조임도(趙任道)에게 미곡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영남 진흥 어사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굶주린 백성이 대어받은 곡식을 일체 탕감해 주었다. 제도(諸道)에 홍수가 저서 백성이 많이 떠내려가 죽었다. 제도에 명하여 해당 고을에서 매장하라고 명하였다. 명하여 각 아문(衙門)에서 소유하고 있는 배[船]의 숫자를 정하게 하고, 내수사(內需司)·명례궁(明禮宮)·용동궁(龍洞宮)·수진궁(壽進宮)·어의궁(於義宮) 등의 배는 현존하는 숫자 이외에 더 늘리지 못하게 하였다.</p> <p>7월에 서북 감사(監司)에게 인재를 찾아내 아뢰라고 명하였다.</p> <p>8월에 경기에 경기 균전사(京畿均田使) 민정중(民鼎重)·김시진(金始振) 등을 보내어 전지를 측량하게 하고, 호남의 대동 전결(大同田結)의 미곡과 포목의 수량을 정하였다.</p> <p>9월 9일에 왕이 건원릉(健元陵)을 참배하였다. 이 해에 고려조의 여러 왕릉(王陵)에 화재와 벌채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남해(南海) 노량(露梁)에 있는 고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의 사당 편액을 하사하였다. 이순신은 선조조에 왜구를 누차 격파하여 충의와 용맹이 가장 드러났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다.</p>	<p>題給。命官致祭于本郡鄉校，且命收用行宮近邑人才，行宮赴役之人，別加優恤。閏月，加給食物于百歲老人。以旱災，下教責己，避正殿減膳，勉群臣寅協恪勤。</p> <p>[○] 六月，各司奴婢身貢，減半，楮貨價亦爲特減。國典奴婢身貢之外，又有楮貨。厥後楮貨廢，而代以綿布。至是，特減楮貨價，永爲定式。七月，以旱災，親祀于社稷。且令再行審理獄囚。以旱災之酷，下教責己，戒群臣朋黨，以盡交修之道。且令廣求直言，減膳、禁酒。八月，命放尹善道，還田里。特令除京畿田稅、大同。戶曹判書金壽興，請減百官俸祿，王曰：“百官俸祿，原來薄略，今雖減省，所減幾何，所補於賑需者，亦幾何？予不欲減省矣。”鄭致和曰：“上供之物，下人料布，皆已減省，百官俸祿，何獨不減。”王曰：“限四品，各減一石可也。”王命備局，各樣經費應入之數，別單開錄。司圍署、司僕寺、軍器寺、造紙署、議政府、宗親府、尙衣院、經費等物，皆令減半，罷</p>
--	--	---

	<p>계묘 4년 3월에 영녕전을 다시 지었는데, 옛 규모를 넓히고 익실(翼室)을 고쳤다.</p> <p>4월에 여러 궁가(宮家)의 전결(田結)을 정하였는데, 대군·공주·왕자·옹주가 차등이 있었다. 수찬 홍우원(洪宇遠)이 상소하기를,</p> <p>“신이 삼가 보건대 전 참의 윤선도는 일찍이 우찬성 송시열이 예를 잘못 의논하였다고 소를 올려 송시열을 공박 배척하였는데, 조정의 논의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윤선도가 먼 변방에 위리 안치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심리로 인하여 북청(北靑)으로 옮겨있다가 대간(臺諫)의 소장이 또 제기되어 다시 옛날의 유배지(流配地)로 돌아갔습니다. 신이 일찍이 윤선도의 소를 얻어 보았는데, 그 의미와 말투가 대부분 분노에 격동된 데서 나왔고 지나치게 문구를 따졌으니 윤선도의 일은 참으로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통과 적통에 관한 말은 실로 명백하고 정확하여 바꿀 수 없는 논의였습니다. 송시열이 비록 산림(山林)의 유아(儒雅)로 큰 명망을 잃어지고 있으나 그가 예를 잘못 의논한 잘못은 참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 송시열을 옹호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과실을 덮어 주고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의논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윤선도를 배척하는 사람은 윤선도가 사림(士林)의 화를 빚으려 한다고 지적하여 곧바로 흉적(凶賊)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선도가 말한 것이 사리에 지나친 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찌 사림의 화를 빚으려는 의사야 있었겠습니까. 사람마다 각각 소견이 있으므로 구차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론이 있는데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견해가 나와 같지 않은 것이 싫어서 억지로 같게 만들고자 하고 사대부의 사이에 조금만 의논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때를 지어 일어나 공격합니다. 허목이</p>	<p>江界等六邑豹皮，減半。 端川等四邑奴婢細布，內弓房別造，限明秋停罷。 減戶曹瑞、泰鹽稅。 以兩西歲饑，命鑷收米。 十月，蕩滌北路逋欠糶糴。 以冤死藩中人鄭雷卿母死，特命題給喪需、造墓軍。 以昏朝立節人副提學鄭弘翼妻死，亦題給葬需。 命畿內上番騎兵，及各鎮水軍，減朔立番，納布者減半。 十二月，蕩滌各道奴婢貢布，乙未推刷以前未收者。 戊申九年正月戊申，白虹貫日。 二月癸酉，〔蚩尤〕旗見於西方，下教責己，避殿求言。 戒群臣寅協恪虔。 甄拔人才，疏決庶獄。 移江都米一萬石，南漢米五千石，於畿內，以賑飢民。 領議政許積免，以右贊成宋時烈爲右議政。 三月，禮曹以彗變既消，請停避殿、減膳、輟樂之舉，王曰：“常膳所減，雖曰些少，每聞餓殍載路，心常惻恒，食不下咽。 其何心復常膳？ 姑勿舉行，以待秋事可也。” 出軍資儲穀七千餘石，分給都、畿願受者，換賑湖西田稅、大同米于山邑。 遣官賜祭于險川、雙嶺、金化、兎山等，丙子勤王之師戰歿處。 四月，以湖南人司書金麟</p>
--	--	---

	<p>재차 예를 논하는 소를 올리게 되어서는 먼 지방의 군(郡)으로 내쫓고, 파면되어 돌아온 뒤에는 수용(收用)하지 않았으며, 권시가 이의를 제기하자마자 곧 중한 탄핵을 입었으며, 조경이 윤선도를 구원하는 말을 한마디 하자 간사한 사람으로 지적됨과 아울러 그의 아들까지 연좌의 율(律)을 입었습니다. 조경은 여러 조정을 거친 노성한 신하입니다. 그의 평생 충직하였던 오릇한 지조는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변하여 간사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옛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진실로 쉽게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알아보기란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실로 신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은 윤선도와 본디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므로 감히 그를 위해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생각건대, 윤선도는 본디 기절(氣節)이 있고 과감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소를 올려 혼조(昏朝)에서 절개를 세웠고, 1119) 선조(先朝) 때에는 사부(師傅)의 옛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잘못된 과실로 풍상(風霜)이 험난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배되어 백수의 쇠잔한 나이에 죽을 날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니 참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 성조(聖朝)에서 선비를 죽였다는 이름을 끼칠까 염려됩니다.</p> <p>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방면하여, 전리에 돌아와 죽게 하소서. 이것 또한 인자한 성주(聖主)께서 사람에게 막하지 못하는 하나의 어진 정사입니다.”</p> <p>하니, 왕이 너그럽게 비답하였다.</p> <p>사간원의 김만균(金萬均)·송시철(宋時喆)·원만리(元萬里)와 사헌부의 정계주(鄭繼胄)·김익렴(金益廉) 등이, 홍우원을 삭탈 관작하여 쫓아내기를 청하고, 옥당의 이민적(李敏迪)·이익(李翊)·정석(鄭皙) 등도 차자를 올려 논하였으나, 왕이</p>	<p>厚, 經學、行誼, 義兵將金德齡, 起義冤死, 命贈諡贈職。 七月, 以旱災, 下教責己, 避殿、輟樂。 八月, 幸溫陽。 右議政宋時烈來朝, 引見。 請遞職而後隨駕, 王許之。 九月, 王發溫泉行宮。 吏曹判書宋浚吉, 祇送落後, 右議政宋時烈, 至中道上疏不至, 以謗言爲辭。 其所謂謗言者, 蓋指許穆, 丁未請早建儲之疏, 而疑其由服制事, 疑己而發也。 王皆遣承旨懇諭之, 乃入城, 俄而皆退去。 是歲, 儒生黃<孺>、李碩馥、李泰陽等, 相繼陳疏, 極言時事, 斥用事者, 以應求言之旨。 三司請竄鞫之閱月, 王終不允。 己酉十年正月, 以嶺南飢荒, 命各司奴婢, 乙巳以後身貢, 指徵無處者, 嚴飭守令, 明查啓聞, 而蠲減之。 以忠清監司狀啓, 公主房折受處, 有主民田及宮家未折受前民人起耕處, 盡出給之。 冒濫圖占者, 治其罪。 以原襄監司狀啓, 嶺東七邑凶荒處, 停西北民刷還之令。 命朝參時百官, 陳所懷。 二月, 宋時烈請罷歲時松葉進排事, 王曰, 如此等事, 何難革罷, 松葉、桃杖、桃枝、人勝、歲畫, 竝革罷可也。 四月,</p>
--	--	--

	<p>듣지 않았다.</p> <p>7월에 한재로 인해 분부를 내려 자신을 책하면서 도움되는 말을 구하고, 중외의 대소 신료에게, 서로 공경하고 협조하여 직무에 힘써 하늘의 견책에 답하도록 명하였다.</p> <p>8월에 대신과 비국의 당상을 불러 흉년 구제의 계획에 대해 강구하였다.</p> <p>9월에 사도시의 어공에 소요되는 정미(精米)를 감하게 하므로 대신이 그대로 두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p> <p>“백관의 봉록을 이미 줄였는데, 어찌 어공(御供)만 감하지 않겠는가.”</p> <p>하였다.</p> <p>12월에 명하여 여러 궁가(宮家)의 시장(柴場)을 각자 한 곳에 망정(望定)하여 그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 남겨 두게 하였고, 어장(漁場)과 망장(網場)은 선조조(宣祖朝)에서 하사한 것 이외에는 일체 허락하지 못하게 하고 비록 하사한 곳이라 하더라도 하사받은 자에게만 한정하도록 하였다.</p> <p>갑진 5년 5월에, 무술년(1120) 이후 내수사(內需司) 노비의 신공(身貢)을 이미 죽은 자의 일가붙이에게 추징(追徵)하는 것을 탕감하고 남한 산성(南漢山城)의 쌀 5천여 석을 경기 지역 고을에 나누어 주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하되, 추수를 기다려 이자 없이 도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p>	<p>王在溫泉行宮，蠲本邑戊申田稅，己酉歲幣，疏決本道罪人，及本道人定配於他道者。十月辛酉，初禱神德王后神主于太祖室，上徽號曰，順元顯敬。復貞陵，置守護，象設如儀。神德王后，太祖大王再室也。自太祖卽位，已正位中壺，受誥冕之賜。及太祖禮陟祔廟時，群臣失於議禮，闕竝祔之禮焉，人神久鬱。廷議雖間發，而列聖猶未遑也。至是，太學生上疏言之，三司筭啓之，王初不許，及群臣廷請而後，允之，蓋重之。封陵設祭之日，驟雨滿盈，貞陵一洞，民以爲洗冤之雨。十一月，以雷電雨雹，命疏決中外獄囚。給三南木花田災，減宣惠廳大同收米，十二月，右議政宋時烈，免。庚戌十一年夏，大旱。五月，連霜，七月，風霜。八月，以歲凶，命量減各殿香醞米。運江都米三萬石，使之發賣于京中。以全羅監司狀啓，劃給戶曹案付鹽盆布二十四同，羅州、靈光鹽鐵布七十餘同，以爲賑救之資。停八路御營軍立番者，自今年十月，至明年，留其保米于本道，以賑御營軍。九月，以濟州凶荒，民多餓死，運湖南</p>
--	--	--

	<p>7월에 우참찬 김수항(金壽恒)을 함경 복도에 보내어 변방의 폐단을 조사하게 하였다. 문·무과의 시험을 시행하여 선비를 뽑았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양남(兩南)의 방백에게 분부하여 《소학(小學)》을 인출해 중외에 반포하고 강독을 권하도록 거듭 명하였다.</p> <p>9월 15일에 왕이 광릉(光陵)을 참배하였다. 호조 판서 허적(許積)을 우의정으로 삼았다.</p> <p>11월 2일에 혜성(彗星)이 진성(軫星)에서 나오자, 하교하여 자신을 책하고 정전을 피해 거처하였다. 대소의 신료에게 명하여 자기의 직분을 삼가고 부지런히 하며, 정사의 득실(得失)에 대해 자세히 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해조로 하여금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하는 등의 일을 거행하게 하였다. 바람과 천둥의 변고로 인해 내사옥(內司獄)1121)의 죄수를 방면하고 상의원(尙衣院)의 비단 짜는 일을 정지하게 하였다.</p> <p>을사 6년 1월 1일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p> <p>2월에 혜성(彗星)이 다시 나타나자,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원옥(冤獄)을 심리하게 하였다. 유생成大經(成大經)이 상소하여 ‘윤선도를 석방해 과감히 간언하는 길을 열어놓으라.’고 청하였다.</p> <p>3월에 윤선도의 유배지를 광양(光陽)으로 옮겼다. 장령 이동명(李東溟)이 그 명을 거둬 들이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희하지 않았다. 징수할 곳이 없는 제도(諸道)의 갑진년(1122)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신역(身役) 및 각종 조적곡을 깨끗이 면제해 주었다.</p>	<p>穀二千石給之，又以統營米租，加賑之，本州奴婢身貢，盡蕩滅之。九月，狂人李世直者，擊街鍾上變誣告，在外宰臣等，按覈無實，斬之。十月，勅戶曹、賑恤廳、漢城府、給寒凍飢餓人，米穀、襦衣有差。減被災尤甚邑布貢，鑄京畿、咸鏡、原襄進上虎皮。十二月，以酷寒，下諭各道，賑飢之外，特疏決罪囚，俾無滯獄。辛亥十二年正月，命京外年八十者，勿論士夫、常漢，特爲陞資，以示優老之意。引見群臣，王曰：“當此無前大侵之歲，各道田稅，輪運之際，民弊不貲。三南、原襄、黃海、京畿等六道，並留本道，以爲今春賑飢之地。各司奴婢身貢，指徵無處，在庚戌條者，並令蕩滅。”是歲大無麥，餓殍載道，疫癘又熾，民無免者，設賑恤廳于諸道。京中則置三處，作粥以賑飢民，士大夫則給乾糧。三月，命放賣賑恤廳糶穀，令飢民棄子女收養者，本主不得推。六月，停酒房日次供上，各道進上兩大妃殿外，勿許上納。九月，命京畿退捧大同田稅，所納糶糶，亦令除耗。遣宣諭御史于濟州，慰諭三邑耆老、軍</p>
--	---	--

4월에 왕이 온천 행궁(溫泉行宮)에 거둥하였다. 때마침 농사철이었기 때문에 호위하는 본도의 군병을 파해 보냈다. 왕이 질병이 있어 오래도록 낫지 않자 중외(中外)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의원이 온천의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온천 행차는 국조의 고사이다. 왕이 가서 수개월 동안 목욕하니 몸이 쾌히 나았다. 드디어 그 도에 명하여 노인들을 예우하고 효제(孝悌)의 행실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충신과 열녀에게 제사지내고 전조(田租)를 감하고 과거를 보였다. 대궐로 돌아온 후 다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거처온 도에 베풀었다. 그 뒤에 여러 차례 거둥하였는데 그 예(禮)는 모두 같았다. 왕이 온양 행궁(溫陽行宮)에 있을 적에 도내의 노인 중 나이 80 이상인 자는 관직이 있건 없건 양인이나 천민을 막론하고 모두 노직(老職)의 통정첩(通政帖)을 주었다. 고 참관 김장생(金長生), 동래 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 제독관(提督官) 조헌(趙憲), 통제사(統制使) 이순신(李舜臣), 연평 부원군(延平府院君) 이귀(李貴)의 무덤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사관(史官)을 보내어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에게 도타이 타이르고, 또 온양 경내에 행적이 드러난 사람을 찾아 아뢰게 하여 정표(旌表)하였다. 80세 이상인 노인에게는 가자(加資)하고 90세 이상인 노인에게는 가자하고 또 음식물을 주었다. 경기도로 하여금 대가(大駕)가 경유하는 일로에 일체로 시행하게 하였다.

좌찬성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부호군 이유태 등이 행궁에 와서 뵈었다. 왕이 그들과 함께 서울에 오려 하였는데, 이유태는 어머니가 늙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송시열은 유언 비어가 있다는 이유로 사양하고는 직산(稷山)에 이르러 돌아갔다. 송준길은 뒤따라 도성에 들어오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식량을 계속 공급하게 하였다.

民，且將綿布四千匹，以給窮民，加送麥種二千石，以爲耕種之助。凡係上供土宜，各司常貢，畢令裁減，內司及各司奴婢身貢，并賜全減。仍命問民疾苦，賙其死喪。且訪孝友、節行特著者，以爲甄拔之地。又命加給湖南監、兵營及度支所儲布數千匹，以賑之。時濟州大風雨，皆鹹味，田野濯濯故也。致祭于漢拏山，山一島之鎮也。又設文、武科，以慰其民。發京畿僧軍，掩埋中外飢民病死者，十月，命京外乾糧受食人，身死亡無田土者，一切蕩除之，俾無侵及隣族。廣州糶糶，折半收之，中外已酉已上身役布，並令退捧，各司奴婢，指徵無處者，亦全減之。因雷變，引見大臣、備局、三司，求聞消弭之策。疏決罪囚，設厲壇于東、西郊，遣官致祭于疫死人，減正朝方物，自明年至于癸丑。減平安道江邊六邑田稅，三分之二。加送濟州，宣惠廳米二千石。是歲八路大熟，有不芸而獲者。十二月，命還給尹善道職牒。獻納尹敬教，疏攻領議政許積，以迎合固寵爲言，王下嚴教責之，特補宜寧縣監。臺諫請還收，王

10월 1일 밤에 비바람이 크게 휘몰아치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니, 왕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초야에 있는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실봉(實封)1123) 을 갖추어서 아뢰게 하였다. 풍정연(豊呈宴)1124) 을 내년 봄으로 물려 행하게 하고, 중외의 관리에게 거둬 당부하여 혹형을 금지하게 하고, 민결(民結)이 궁가(宮家)의 면세 전결(免稅田結)에 몰래 등록된 것은 일체 파하였다. 여러 궁가와 각 아문에서 점유하고 있는 묵혀진 전토를 개간한 백성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중외에 절의와 효행이 있는 사람을 정표(旌表)하게 하였다. 각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명하여 관하의 아병(牙兵)1125) 에게 거두는 포목을 면제하고 오로지 훈련에만 힘쓰게 하였으며, 관서와 경기의 세두(稅豆)를 감하고 그 나머지 도들도 차등있게 감해 주었으며, 포보(砲保)가 바치는 포목을 감하고 병조에 저축해 둔 것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병오 7년 1월 17일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자, 왕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도움되는 말을 구하였다. 하늘의 노여움이 매우 심하고 재이가 겹쳐 발생한다는 이유로 진연(進宴)을 뒤로 물려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게 하였다. 2월에 사간원의 이은상(李殷相)·최관(崔寬)·이익(李翊)·이혜(李穡) 등이 계사를 올려, 공조 정랑 김수홍(金壽弘)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였다. 기해년1126) 에 기년복의 제도를 이미 시행하였는데, 김수홍이 송시열에게 편지를 보내어 상복의 제도를 논하면서, 송시열이 기년의 복제를 주장한 잘못을 책하였다. 이때에 와서 김수홍이 사설(邪說)을 제창하여 조정의 대례(大禮)를 망령되이 의논하였다고 논죄하여 삭직(削職)하였다.

3월에 영남 유생 유세철(柳世哲) 등 천여 인이 상소하여, 송시열이 주장한 기해년1127) 의 기년복이 잘못된 복제임을 극렬히 논하고,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천자와 제후의 상에는 모두 참최복을 입고 기년복은 없다.’는

不允。壬子十三年正月，命減三南春收米。以右議政宋時烈疏，命各邑，申飭治盜之策。且命大同收米，勿用己酉田結，用上年之結，以紓民力。命各道監司、守令，條陳賑飢之策，以備採擇。引見時，大臣請賑恤不必設粥，以乾糧分給，王曰：“若論久遠安民之道，則乾糧分給，固可也。然彼流丐之民，又何可立見不救也？”二月，前正趙嗣基，因陳弊疏論基制貶降之失，有曰：

殿下承大統，惟當極尊親之道。而嫡統、庶子一說，未免貶降短喪之歸，百世之下，終必有議之者，不可不追悔，以慰孝考在天之靈云。

都承旨張善〈澂〉等啓：“疏辭怪妄無倫，有犯禁令，請付攸司，使之稟旨勘罪。”嗣基就理編配。諫院李枏、尹深、閔宗道等，啓請遠竄，王不允。俄命特絃。三月，以吏曹參議李端夏疏，命 中廟廢妃愼氏神主，移奉於愼家直孫家，官給祭需，置守墓三戶。愼氏，中廟潛邸時正妃也。以湖南穀

	<p>설을 인용하였으며, 또 《상복고증(喪服考證)》 1책을 올렸다. 소가 정원에 당도하자, 승지 김수흥(金壽興) 등이 ‘주상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동요시키어 선한 사류를 일망타진하려 한다.’고 아뢰니, 왕이 ‘소의 뜻이 온당하지 못하니 물러가 업을 닦으라.’고 비답하고, 이어서 못 신하들을 모아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p> <p>좌의정 홍명하(洪命夏)가 아뢰기를,</p> <p>“당초 복제에 대해 의논할 때, 윤희는 ‘참최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고, 송시열(宋時烈)은 ‘참최는 신하가 임금의 복(服)을 입는 것이므로 참최를 입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희는 이기고자 기필하여 긴 편지를 왕 복하며 쟁변(爭辯)하였습니다. 허목의 논의는 윤희의 논의를 본받아 기술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영남 유생의 소는 오로지 그들의 끄트머리를 주워모아 엮은 것으로 정해진 주된 뜻이 없으나, 그 뜻은 실로 유신(儒臣)을 엮어 모함하려는 데에 있습니다.”</p> <p>하고, 김수항(金壽恒)·김만기(金萬基)는 ‘밝게 분변하여 통렬히 배척하시라.’고 청하고, 우의정 허적은,</p> <p>“삼년(三年)의 설은 유세철(柳世哲)만 주장한 것이 아니니, 유세철을 죄줄 수 없습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내 의견으로는 반드시 통렬히 분변하는 것을 급한 일로 삼을 필요가 없고</p>	<p>一千石、海西二千石，入送濟州，以給種子。又命給布五十同，俾作衣資。命各道辛亥以上，諸般身役，未收者，勿論指徵無處者，退捧，未捧者竝令蕩滅。命二品以上，已行東班實職者，六曹參議、三司、守令薦人材。疏釋罪囚，中外死罪以下，一時蒙宥者，凡八百餘人。命限丙午以前糶糴逋欠，查出實數，使之一切蕩滌。許漕軍依水軍例赴科。國制，漕、水軍役最苦，禁赴舉，世傳故也。下教罪己，巫稅、匠稅、管餉稅逋欠，各衙門破鹽盆、漁船稅未收者，竝命蕩滌。四月，行護軍宋浚吉，疏論領議政許積，比之盧杞，且救尹敬教，疏入不報。於是積去位，王累遣承旨敦諭。判府事宋時烈，亦疏攻積益甚，蓋以積疏中，有權不在上之語故也。持平吳挺昌，疏論時烈、浚吉等，所以持積者，擬議非倫，兩司劾請削黜之，王不允。五月，前執義李翔，疏論積營私植黨，交媚上下，虛譽隆洽，許忠臣之說，遍滿內外。王爲佞臣所陷溺云。王下教，以翔托迹山林，奔走世路，其行心、處事，路人所知，斥之，削其官爵。臺</p>
--	--	---

	<p>후일 상의해 법을 만들어서 후일의 근심을 막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p> <p>하였다. 사헌부의 조복양(趙復陽)·정계주(鄭繼胄)·맹주서(孟胄瑞)·어진익(魚震翼)·소두산(蘇斗山), 사간원의 이정(李程)·최일(崔逸)·이동직(李東稷)·정재희(鄭載僖) 등은 율을 상고하여 죄를 결정하기를 청하고, 옥당의 이민서(李敏紱)·오두인(吳斗寅)·이단하(李端夏)·박세당(朴世堂) 등은 또 차자를 올려 그를 논하고, 관학 유생(館學儒生) 홍득우(洪得禹) 등도 상소하여, 기년의 복제를 주장하면서 그를 논척(論斥)하고 그 죄를 다스리자고 청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p> <p>고리 최유지(崔攸之)가 소를 올려 ‘장자(長子)는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중외에 포고하고 또 국기(國忌)를 판자에 새기어 달아 놓은 예에 따라 각 아문의 청사 벽에 그것을 새기게 하자.’고 청하였는데, 왕이 그 소를 궁중에 놔두고 내려보내지 않았다. 얼마 뒤에,</p> <p>“국가의 위아래 복제(服制)를 일체 《오례의(五禮儀)》에 따라 행해야 하고 장자(長子)나 중자(衆子)를 논할 것 없이 모두 기년복(基年服)을 입어야 한다. 만일 예를 논한다고 빙자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야기하는 자는 마땅히 형벌을 시행하겠다.”</p> <p>는 뜻으로 중외에 포고하였는데, 홍명하가 청한 것이었다.</p> <p>왕이 다시 온양(溫陽)에 거둥하면서 왕대비(王大妃)를 모시고 떠났다.</p> <p>4월에 왕이 온천 행궁(溫泉行宮)에서 호서(湖西)의 도내에 효행이 드러난 사</p>	<p>諫請還收，王不允。十二月，以憲府啓辭，命停大內殿閣修繕之役。命減大殿三名日方物物膳，減濟州月令進上。申兒弱勿定軍役之令。癸丑十四年正月，以圻甸被災，命減收米有差。二月，命庚、辛兩年未收糶糶，抄出蕩減。諭八道監司、江華、開城等府留守曰：“予惟國依於民，民依於食。足食之道，實在乎務農重穀而已。是以古昔帝王，知小人之依，罔不以稼穡爲先。《詩》之《豳風》，《書》之《無逸》，豈非後世之龜鑑乎？肆惟我祖宗，深軫厚民之術，首之以田制之正，且慮小民，或昧樹藝之宜，譯解農書，以訓諭之，因土地已試之方，而著爲《農事直說》，俾愚蚩之氓，得以曉然，又領勸農之書，凡可以利於農者，靡所不用其極。漢家之紅腐貫朽，唐室之斗米三錢，不足多矣。逮予寡昧，不弔于天，水旱之災，靡歲不有，而飢荒之慘，至于往年而極矣。老弱填壑，骼齒相望，無地可移，無粟可濟。予用寢不安席，食不下咽，思得裕食之策，以救〔阡〕危之急。而終至立視其死，使祖宗三百年休養之生</p>
--	---	---

	<p>람을 노인의 예에 의해 음식물을 지급하여 특별히 대우한다는 뜻을 보이게 하라고 명하였다. 온양 및 본도의 각 고을과 경유하는 경기의 일로에 역(役)을 감면해 주되, 지난해의 예에 의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p> <p>7월에 청나라 사신이 와서 금령을 범하고 물건을 사고 판 사람 및 도망해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등의 일을 조사하고 변신(邊臣)을 참형의 죄로 논란하였다. 왕이 이르기를,</p> <p>“이것은 나의 잘못인데, 어떻게 신하들에게 떠넘길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청나라 사신이 또 대신을 사형의 율로 논란하니, 왕이 또 이르기를,</p> <p>“나의 잘못이므로 내 마땅히 스스로 죄주기를 청해야 하겠다.”</p> <p>하자, 청나라 사신이 그 다음 율로 처결하였다. 좌의정 허적을 북경에 사신으로 보내어 대신은 죄를 면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다.</p> <p>8월에 일식을 하고 흉년이 들었다 하여,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정전을 피해 거쳐하였다.</p> <p>9월에 영남의 곡식을 영동과 영서로 옮기고, 해서의 곡식을 북도로 옮겨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명을 내려, 포보(砲保)의 가포(價布)를 감하였는데, 영동·영서·경기·양남(兩南)이 각각 차등이 있었고, 그 부족한 수량은 혼련 도감과 호조에 저축된 것을 가져다 쓰게 하였다. 목화가 귀하었으므로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을 차등있게 감하고 혹은 미곡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허락하였</p>	<p>靈，一朝蕩然，桑麻之境，變作蒿萊之墟，噫嘻！尚忍言哉？究厥所繇，雖因年運之不齊。實由人事之未盡。若如古昔，三年耕，餘一年之畜，九年耕，餘三年之畜，則豈有顛連死亡之至此哉？夫農之爲務，不外乎趨時與用力二者焉耳。今也耕種，既不及時，耘耔又不用力，陂堤灌溉之利，間或廢而不修，糞土芟草之功，亦多忽而不務。嗚呼！四民之中，唯農最苦。寒耕暑耘，終歲勤動，而猶未免於飢寒，縣官催科之政，因以擾之，逐末遊食之徒，又從而〔耗蠹〕之，奈之何民不窮且困也？目今春日載陽，土脈初開，于〔耜〕之節已邁，舉趾之期奄迫，勸課之政，不容少緩。而一自牛疫之熾，民有頽肩之歎。矍矍之〔耜〕，無以服之，澤澤之耕，其將廢矣。古之王公，躬行親耕之禮，以率天下之民。予欲與卿士大夫，倣古之制，爲四方倡，而顧有所未遑於斯者，予實歉然。嗟乎！大侵之餘，田疇蕪穢，予遣之民，生理蕭然。撫摩之道，當急而不當緩，勸課之方，宜舒而不宜迫。與我共理，其惟方岳，近民之職，莫如守令。卿</p>
--	---	--

	<p>다. 그리고 영동·영서의 노비 신공과 병조에서 거두는 군포(軍布)도 그와 같이 하였다.</p> <p>11월에 징수할 곳이 없는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을 전부 면제해 주고 을사년(1128) 이후 신공의 반을 미곡으로 바꾸어 납부하게 한 것도 면제해 주었다. 명을 내려 세초(歲抄)를 정지하게 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죽은 자에게 군포(軍布)를 징수하는 것을 다 조사해 내서 견감하게 하였다. 어린아이는 실지의 나이 10세를 한계로 하고 10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역(身役)을 일체 감면해 주었다. 그리고 각도에 명을 내려 어린아이에게 신역을 함부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되풀이하여 일렀다.</p> <p>제도(諸道)에 명을 내려, 감영·병영·수영의 영장(營將) 집에 있는 군관을 조사해 내서 조정의 조치를 기다리게 하였다. 만일 사실대로 아뢰지 않을 경우 군사의 실정을 속여 보고한 죄로 벌을 시행하게 하였다.</p> <p>함경도에서 상납하는 공물 중에 우황(牛黃)·표피(豹皮) 등의 물품을 감하였다. 어사(御史)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별도의 보고서에 의하여 북도의 안변(安邊)·덕원(德源)·홍원(洪原)·문천(文川)·고원(高原)·경성(鏡城)·경흥(慶興)·이성(利城)·부령(富寧) 등 9 개 고을의 전세(田稅)를 감하였다.</p> <p>정미 8년 1월 22일에 왕세자의 책봉례를 거행하였다. 양사(兩司)가 임금이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청나라로 사신 갔던 사람과 청나라 사신이 관(館)에 있으면서 조사할 때의 상신에게 죄주기를 청하며 함께(合啓)하여 논하니, 왕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대신을 망령되어 논한다.’고 하면서 엄한 분부를 내려 배척하였다. 집의 이숙(李翮), 장령 박증휘(朴增輝)·신명규(申命圭), 지평</p>	<p>其體予明農之意，布告字牧之官，使之出入阡陌，而毋擾乎閭里，審視田野，而毋妨乎民事。 陂堤之可灌者，于以修之，溝洫之可通者，于以疏之。 民力有所不贍，則思所以助之，種食有所不足，則思所以補之，期使耕播不違其時，耘耔不愆其期。 生穀之土，務令盡墾，遊食之民，咸歸於農。 庶幾民樂本業，戮力不怠，上以供經常之賦，下以遂事育之願。 奠民生於耕鑿，固邦本於磐石。 卿勿視以文具，惕念舉行。” 命贈故參贊宋浚吉議政，命題給文武官堂上以上父母年七十以上者食物，慶平君、貞明公主及宗室中父母年七十以上者，亦如之。 命守護高麗恭讓王陵墓，命大臣妻及親功臣妻生存而窮乏者，食物題給。 三月，御春塘臺，設庭試取文武士。 四月，以旱氣愈酷，下教理冤獄。 五月，又下教責己，避殿、減膳、禁酒。 以政院端午帖製進之啓，王曰：“旱災此酷，不必爲此虛文，勿爲之可也。 命蕩滌辛亥以上軍兵、奴婢逃故人丁及壬子未上納身役，癸丑應納之布，命辛亥騎、步兵逃亡，勿拘年限，許定其代。 八月，以遷 陵</p>
--	---	---

	<p>유헌(兪櫨)·이하(李夏), 헌남 김징(金澄), 정언 조성보(趙聖輔) 등을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냈다. 4월에 다시 왕대비를 모시고 온양으로 거둥하였다. 농사 철이라고 하여 경기·충청도에 영호 군병(迎護軍兵)1129) 을 동원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연로의 노인들에게 지난해의 예에 따라 음식물을 지급하고 도로에 떠돌아다니는 빌어먹는 사람에게는 상평창(常平倉)의 미곡을 내어 주어 구제하고 또한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관에 명하여 본군의 향교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행궁(行宮) 부근에 있는 고을의 인재를 수용(收用)하도록 하고, 행궁의 역사에 나온 사람에게는 별도로 우대하여 구휼하게 하였다.</p> <p>윤사월(閏四月)에 백세 된 노인에게 음식물을 더 내려주게 하였다. 한재로 인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마음을 합하여 조심하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권면하였다.</p> <p>6월에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身貢)을 반으로 감하고, 저화가(楮貨價)도 특별히 감하였다. 국전(國典)에 노비의 신공 이외에 또 저화가 있었다. 그 뒤에 저화를 폐지하고 대신 면포를 거두었다. 이때에 와서 저화가를 특별히 감하고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았다.</p> <p>7월에 한재로 인해 사직단(社稷壇)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또 옥의 죄수를 다시 심리하게 하였다. 한재가 혹심하다 하여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신하들에게 편당짓는 것을 경계하고 서로 닦는 도를 다하게 하였다. 또 도움되는 말을 널리 구하고 수라의 가짓수를 감하고 술을 금하였다.</p> <p>8월에 윤선도를 방면하여 전리로 돌아가게 하라고 명하였다. 특별히 경기의</p>	<p>之役, 命減所經楊、廣、驪、利、楊根等五邑大同收米, 圻邑春收米有差。命蕩滅京畿、黃海、全羅、原襄等四道, 庚戌條田稅未收者。 九月乙未, 行啓舊陵望哭禮。 緬禮, 非應服三年者, 無服總之文, 而王特命禮官曰: “己亥大喪時, 大王大妃過暮後, 以淺淡服終三年, 今亦依此磨鍊, 以淺淡服終三月。” 蓋己亥大喪, 宮中實行三年喪故也。 舊寧陵之始奉也, 因議宅兆未定, 期日迫促, 董事者嚴不能致慎, 封築崩陷, 雨水滲漏, 屢經修補, 而不完。 群臣奉審者, 亦不敢以實聞, 但隨時以石灰填隙而已。 是歲三月, 有宗室靈林令、翼秀者, 上疏言之, 王驚悼, 卽召見翼秀, 問其狀。 翼秀具言陵上土石崩陷之故, 且曰: “昔周成, 不悟周公之忠聖, 故天示以風雷之異。 今殿下不知, 先陵之有變, 近歲災異之作, 未必不由於此。” 王謂翼秀曰: “爾能言人所不敢言, 予用嘉之。 且能格君心之非, 予甚感之。 遂決意遷奉。 命大臣、六卿、兩司, 審視, 且令翼秀, 隨大臣同審。 左議政金壽恒, 繕工提調閔維重等, 與翼秀爭言, 而不</p>
--	--	---

	<p>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면제하게 하였다. 호조 판서 김수흥(金壽興)이 관원들의 녹봉을 감하자고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p> <p>“관원들의 녹봉은 원래 박하니 지금 줄인다 하더라도 얼마나 줄일 수 있겠으며, 구제하는 데 도움되는 바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나는 줄이고 싶지 않다.”</p> <p>하였다. 정치화(鄭致和)가 아뢰기를,</p> <p>“상공(上供)하는 물품과 아랫사람의 요포(料布)도 모두 줄였는데, 어찌하여 관원들의 녹봉만 줄이지 않는단 말입니까.”</p> <p>하니, 4품까지만 각각 1석씩 감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명을 내려, 비국에 써야 할 각종 경비의 수량을 별도의 단자에 일일이 기록하게 하였다. 사포서(司圃署)·사복시(司僕寺)·군기시(軍器寺)·조지서(造紙署)·의정부·종친부·상원의원의 경비에 소요되는 물품들을 모두 반으로 줄이도록 하고, 강계(江界) 등 6개 고을의 공물로 바치는 표피(豹皮)를 과하여 반으로 줄였다. 단천(端川) 등 4개 고을의 노비가 신공(身貢)으로 바치는 세포(細布)와 내궁방(內弓房)의 별조(別造)1130) 를 내년 가을까지 중지하도록 하였다. 호조의 소관인 서산(瑞山)과 태인(泰仁)의 염세(鹽稅)를 감하였다. 양서(兩西)에 흉년이 들었다하여 징수하는 미곡을 감하라고 명하였다.</p> <p>10월에 북도의 포획된 조적곡을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 심양(瀋陽)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정뇌경(鄭雷卿)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특별히 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품과 조묘군(造墓軍)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혼조(昏朝) 때에 절의</p>	<p>與之復命。翼秀又疏奏之，且言：“宜勿拘舊陵年月、吉凶，速圖遷奉。”王嘉納之。副修撰趙威鳳上疏言：</p> <p>臣伏聞奉審寧陵，公卿臺侍還奏，翼秀疏不窾，上有陵上四面八方，無一完全之教。奉安寧陵，今十五歲，而乃致如此，則萬歲喬山之慮，窮天罔極。昔宋仁宗永昭之葬，皇堂棟損。諸使欲仍掩之，韓琦正色曰：“損當易之。若違葬期，侈所費，此責猶可當，若苟且掩之，後有壞而致人主疑心，臣下何以當其責？”惜乎！其時監董諸臣，不顧後壞之患，唯以竣事爲務，其視韓琦之言，何如也？董役之官，固有罪也，自有復土、排石報異之後，前後奉審之臣，只事塗灰罅隙，而不以四方、八面，可虞之勢，啓于王。審視而不知，則猶或可也，若知而不啓，則罪實浮於監董之官也。奉審陵寢，是何等重事？而瞻顧前後，不以實聞？長此不已，則雖有取長陵一抔土者，臣恐殿下，不得聞也。不體孝思，敢肆欺誣，復有大於此者乎？陵事無完之實，著見已久，而兩司默默，不舉前後奉審不實之非，</p>
--	---	---

	<p>를 세운 사람 부제학 정홍익(鄭弘翼)의 아내가 죽었는데, 또한 장사에 드는 물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명을 내려 경기 경내에서 번을 드는 기병(騎兵) 및 각 진영(鎭營)의 수군에게 매월 입번(立番) 조로 납입하는 군포(軍布)를 반으로 줄였다. 12월에 각도 노비의 공포(貢布)로 을미년(1131) 추쇄(推刷) 이전에 징수하지 못한 것을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p> <p>무신 9년 1월 9일에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었다.</p> <p>2월 4일에 치우기(蚩尤旗)가 서방에 나타나자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처하고 도움되는 말을 구하고, 신하들에게 서로 공경하고 화합하며 직무에 신중히 하고 힘쓰도록 경계하였다. 그리고 인재를 선발하고 옥사를 관대히 처결하였다. 강도의 미곡 1만 석과 남한 산성의 미곡 5천 석을 경기로 옮겨다가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 영의정 허적을 면직하고 우찬성 송시열을 우의정으로 삼았다. 3월에 예조에서, 혜성(彗星)의 재변이 이미 사라졌다 하여 정전을 피해 거처하며 수라 가짓수를 줄이고 음악을 철거한 일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p> <p>“반찬 가짓수를 감한 것이 비록 사소한 일이지만, 굶어죽은 자가 길에 널려 있다는 말을 들을 적마다 마음이 항상 측은하여 음식물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다. 무슨 마음으로 반찬 가짓수를 회복한단 말인가. 아직은 거행하지 말고 가을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군자감(軍資監)에 저축된 곡식 7천여 석을 풀어서 도성과 경기에 대여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호서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산간 고을의 용도와 바꾸어 진휼하였다. 관원을 보내어 험천(險川)·쌍령(雙</p>	<p>是何意也? 愚臣不勝憂慨, 敢進瞽說。</p> <p>威鳳, 紉之子也。 王批之曰: “覽爾疏, 慨然之志, [忠] 愛之誠, 溢於辭表, 深用嘉歎。 今者先王萬歲陵寢儀物, 未有全完之處, 將有不得已之舉, 其在予心, 當作何如? 前後奉審之臣, 若以有爲無, 以大爲小, 則其罪誠難逃矣。 予當覈得實狀而處之。 近日臺閣之臣, (贍) [瞻] 前顧後者多, 誰有爲國, 憤發爲此等說也? 誠爲慨然。” 臺諫俱以含默, 引避, 玉堂請出, 特命遞差。 王下教曰: “考見前後奉審文書, 則寧陵石物, 生隙後, 有大臣以下奉審之事。 而丁未春秋, 兩度奉審之時, 則該曹別生意見, 引他陵之例, 只本曹堂上進去奉審。 是大臣進去爲重, 而陵上事體反輕也。 且寧陵奉審, 豈與他陵比而同之? 他陵未有如此之變故也。 誠極痛駭。 其時堂上、郎廳, 竝拿鞫嚴問處之。” 於是前禮曹判書鄭知和、參議李俊耆、正郎李惟源、佐郎吳始復等, 皆下獄。 又下教: “辛亥奉審書啓, 尤無狀。 其時奉審諸臣, 竝命拿問定罪。” 其時大臣, 判府事鄭</p>
--	---	---

	<p>嶺)·금화(金化)·토산(兎山) 등 병자 호란에 임금을 위해 힘쓴 군사들이 전사한 곳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p> <p>4월에 호남 사람 사서(司書) 김인후(金麟厚)는 경학(經學)과 행의(行誼)가 있었고, 의병장 김덕령(金德齡)은 의병을 일으켰다가 원통하게 죽었다 하여 시호를 내리고 관작을 추증하라고 명하였다.</p> <p>7월에 한재로 인해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망하면서 정전을 피해 거쳐하고 음악 연주를 중지하였다.</p> <p>8월에 온양에 거둥하였다. 우의정 송시열이 와서 뵈자 불러 보았다. 그가 체직된 뒤에 어가를 수행하겠다고 청하므로 왕이 허락하였다.</p> <p>9월에 왕이 온천 행궁을 떠났다. 이조 판서 송준길은 어가를 전송하고 뒤처졌고, 우의정 송시열은 중도에 이르러 소를 올리고 오지 않으면서 비방하는 말이 있어서라고 핑계댔다. 그가 이른바 ‘비방하는 말’이란 대개 허목이 정미년(1132)에 일찍 세자를 책봉하기를 청한 소를 가리킨 것인데, 그것은 상복 제도의 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심하여 발론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이다. 왕이 그들 모두에게 승지를 보내어 간절히 타이른 뒤에야 도성에 들어왔는데 얼마 뒤에 모두 물러갔다.</p> <p>이 해에 유생 황연(黃孺)·이석복(李碩馥)·이태양(李泰陽) 등이 서로 잇따라 소를 올려 시사를 극렬히 말하고 권력을 장악한 자를 지적하여 구언(求言)하는 왕의 뜻에 응하였다. 삼사(三司)가 그들을 귀양보내 국문하기를 청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왕이 끝내 윤택하지 않았다.</p>	<p>致和、繕工提調左議政金壽恒，先罷其職，姑俟罪名，前觀象監提調南龍翼、禮曹佐郎安漢珪等，竝下獄削職。俄而因旱，請審理，皆蒙釋。於是前參議張應一，上疏曰：</p> <p>寧陵石物，罅隙之事，國家大變，無過於此。補土不密，人謀不〔臧〕，而然耶？宅兆不利，神道不寧，而然耶？仰惟聖懷震惕，何所底定？側聽處分，日夜憂鬱，及覩前後備忘，始知監董諸臣、奉審大臣，俱被罪譴，遷陵之教，斷自聖衷，不幸之幸，國家之福也。天久不雨，有審理之命，至於奉審大臣，不敬、不忠之罪，竝皆免宥。殿下之待大臣，可謂盡矣，而其於事先王之道，未知何如也。所謂審理者，其罪犯雖重，其情容有可恕故耳，今此奉審大臣，不敬不忠之罪，殿下以爲，其情容有可恕者耶？不敬、不忠，人臣之大罪，王法之所不赦，殿下之枉法有罪如此，臣恐不足以感天心而致天雨也。奉審陵寢，是何等重事？而一二大臣，不體上意，只拘人情，承命奉審，不以實聞，致令殿下，今始知變。此在聖</p>
--	--	---

	<p>기유 10년 1월에 영남에 흉년이 들었다 하여 각사 노비 중에 을사년 이후 신공(身貢)을 징수할 곳이 없는 것들을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분명히 조사해서 보고하게 한 다음 감면하였다. 충청 감사의 장계로 인해 공주방(公主房)에서 떼어받은 것 가운데 주인이 있는 백성의 전지와, 궁가(宮家)에서 떼어받기 전에 백성들이 일구어 경작한 곳을 그들에게 다 내주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점유한 자는 그 죄를 다스렸다. 원양 감사(原襄監司)의 장계에 의해 흉년이 든 영동(嶺東) 7개 고을에 ‘서북 지방 백성을 쇄환(刷還)하라.’는 명령을 정지하였다. 조참(朝參) 때에 백관에게 명하여 소회를 진달하게 하였다.</p> <p>2월에 송시열이, 설날에 술일을 진배(進排)하는 일을 과하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p> <p>“이와 같은 일들은 혁파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술일·도장(桃杖)·도지(桃枝)·인승(人勝)·세화(歲畫)를 모두 혁파해야 할 것이다.”</p> <p>하였다. 4월에 왕이 온천 행궁에 있으면서 본읍의 무신년(1133) 전세(田稅)와 기유년(1134) 세폐(歲幣)를 감면해 주고, 본도의 죄인 및 본도 사람으로 다른 도에 정배(定配)된 자를 관대하게 처결하였다.</p> <p>10월 1일에 처음으로 신덕 왕후(神德王后)(1135)의 신주를 태조실(太祖室)에 합부(合附)하고 휘호(徽號)를 올렸는데 순원 현경(順元顯敬)이었다. 정릉(貞陵)을 회복한 다음 수호관(守護官)을 두고 의절대로 석물 등을 설치하였다. 신덕 왕후는 태조 대왕의 두 번째 아내이다. 태조가 즉위한 뒤로부터 이미 중전(中殿)의 자리에 앉아 고명(誥命)과 면복(冕服)의 하사를 받았다. 그런데 태조가</p>	<p>心, 固宜讎遇之不暇, 而全釋之必無也。 殿下寧得受制之名, 而不敢傷大臣。 殿下雖有此念, 且隱忍待新陵畢役後, 曲爲之地, 猶未晚也。 何乃汲汲爲審理之謬舉, 有若塞責趙威鳳之言者耶? 噫! 道路傳聞, 有以改封築之說, 進於榻前者云, 其用意凶慘, 罪浮奉審之臣。 殿下左右大小之臣, 有不可信者如此, 安知日後遷陵之際, 保無寧陵前日之患也? 至於梓宮移奉, 尤不可委之於大臣。 願殿下, 親臨新、舊兩陵, 以盡必誠必信之孝焉。</p> <p>疏入, 王以覽爾疏辭, 只恨誠孝無狀。 五內摧裂, 自不覺痛泣。 監董之人, 罪莫重焉。 疏意亦可, 而其他曲折各異, 流聞爽實, 批之。 掌令成虎徵, 以造意陰險, 遣辭無倫, 離間上下, 啓請削黜, 大司諫申晟, 以應一藉先王陵寢之有事, 以爲售奸之計, 疏斥之。 應教李選, 又疏論之, 有曰:</p> <p>宗統、嫡統之說, 初爲嫁禍之樞柄。 善道唱之於前, 趙綱和之於後, 陵寢之事, 又換面而出。 其日夜之所祈望者,</p>
--	---	---

	<p>승하하여 부묘(附廟)할 때에 신하들이 예를 잘못 의논하여 아울러 부묘하지 않았으므로 사람과 신이 오래도록 억울하게 여겼다. 이점에 대해 조정 의논이 간간히 나오기는 하였으나, 역대 왕들도 미처 이 일을 거행하지 못하였었다. 이때 와서 태학생이 상소하여 말하고 삼사(三司)가 차자로 아뢰니, 왕이 처음에는 윤희하지 않다가 못 신하들이 대궐 뜰에 나와 청하자 윤희하였는데, 이는 대개 신중히 여겨서 그런 것이다. 능을 봉하고 제사를 지내던 날에 소낙비가 내려 정릉(貞陵) 한 골짜기가 가득히 찼는데 백성들이 ‘원한을 씻어주는 비이다.’고 하였다.</p> <p>11월에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우박이 내렸는데 명을 내려, 중외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대히 처결하게 하였다. 그리고 재해를 입은 삼남(三南)의 목화밭을 돌보아주어 선혜청(宣惠廳)의 대동미(大同米)를 감해주었다.</p> <p>12월에 우의정 송시열이 면직되었다.</p> <p>경술 11년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다. 5월에 서리가 연달아 내리고 7월에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렸다.</p> <p>8월에 흉년으로 인해 각전(各殿)의 향온미를 헤아려 감하게 하였다. 강도(江都)의 쌀 3만 석을 운반하여 이를 서울에 팔게 하였다. 전라도 감사의 장계에 따라 호조에 안부(案付)된 염분포(鹽盆布)1136) 24동(同)과 나주(羅州)·영광(靈光)의 염철포(鹽鐵布) 7십여 동을 전라도에 나누어 주어 진구하는 밀친으로 삼게 하였다. 팔도의 어영군(御營軍)에 입번(立番)하는 것을 정지하고 금년 10월부터 이듬해까지 그 보미(保米)를 본도에 남겨두었다가 어영군을 진구하게 하였다.</p>	<p>專在於壙中之有水，梓宮之成隙。萬一有一毫之疑似，則必將相率而起，欲敗亂朝廷而後已。趙威鳳之疏，繼出於翼秀之後，乘機巧中之說，反蒙嘉獎之批。今此應一之疏，又自千里而至，有同燕王十日之書。願亟治應一之罪，以戢奸凶之輩。</p> <p>掌令金粹五、獻納金錫胄，則請遠竄應一，王謂筵臣曰：“李選之疏，語意無倫。惟其怒在應一，而不覺語犯陵寢。初欲置之罪，而人必謂不罪應一而罪選云，故姑爲容忍矣。應一疏辭，亦不正，遠竄，選削職。”</p> <p>[○] 九月，啓舊陵見和。十月癸卯，奉遷于驪州弘濟洞，自附 [棹] 附壙，以至儀衛、象設，無不致慎。而其功費，皆取辦於內帑，不徵於民。將啓陵，王必欲親臨壙，金壽興、張善〈濶〉等，力止之。始啓陵也，已見有封築不堅，既遷奉之後，王又遣重臣、近臣、內臣等，審視舊陵壙中，有濕漏蟲蛇跡，又或有木石雜築者。王怒群臣不敬慎大事，下教曰：“舊陵陵</p>
--	---	--

	<p>9월에 제주(濟州)에 흉년이 들어 굶어죽은 백성이 많았으므로 호남의 곡식 2천 석을 운반하여 지급하고 또 통영(統營)의 조곡(租穀)을 더 주어 구제하였으며, 본주(本州) 노비의 신공(身貢)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p> <p>9월에 미친 사람 이세직(李世直)이란 자가 거리의 종을 치고 고변하여 외방에 있는 재신 등을 무고하였는데, 조사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를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10월에 호조·진휼청·한성부(漢城府)에 명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에게 미곡과 동옷 등을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은 고을의 공포(貢布)를 감하여 주고 경기·함경·원양(原襄) 등의 도에서 진상하는 호피를 감면해 주었다.</p> <p>12월에 혹독한 한파로 인해 각도에 하유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이외에 특별히 죄수를 관대히 처결하여 정체된 옥사가 없게 하였다.</p> <p>신해 12년 1월에 명을 내려 서울 및 지방에 나이 80세가 된 사람은 사대부나 상민을 물론하고 특별히 자급을 올려주어 노인을 우대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였다. 못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왕이 이르기를,</p> <p>“지금과 같이 예전에 없었던 큰 흉년을 당하여, 각도의 전세(田稅)를 수송할 적에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삼남·원양(原襄)·황해·경기 등 6도의 전세는 모두 본도에 놓아두었다가 오는 봄에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게 하라. 징수할 곳이 없는 각사(各司) 노비의 신공(身貢)으로 경술년(1137) 조에 들어 있는 것은 모두 탕감하게 하라.”</p>	<p>上石物，既已撤毀，看審其時都監堂上、郎廳等罪，不可不考律處之。”竝令拿囚。都監堂上鄭致和，以辛亥奉審大臣，不以實聞，方在削奪中。王又命拿問，減死編配。郎官申命圭、李鼎基等，論以一罪，臺諫爭之，累月，王不聽。後因大臣言，減死遠竄。始舊寧陵之卜宅也，右議政宋時烈，實主之。及是，上疏言，宜改築而不當遷奉，有曰：</p> <p>舊陵神穴，極其安寧。當初啓土尺許之後，已審隧內之無故，而任事諸臣，恐懼於罔極之人言，仍爲改封之議，終不敢出焉。新陵之吉，雖自昔所稱，而豈若仍安於至安之地哉？且表石一事，殿下既於諫院之批，以爲如此不言，非國家之福，國舅之言，卽斥臣之言，而未聞有停止之命。是殿下之心，實以此爲非，而強行之也，恐非誠信勿悔之道也。聖明更詢於廷臣，詳審其可否，決其行罷然後，理得而名正矣。幸勿復依違苟且，以來人言也。臣又竊聞，聖明以金萬重之攻斥相臣，爲有待而發，外間喧傳，以爲萬重所待者卽</p>
--	--	--

	<p>하였다. 이 해에 보리 농사가 크게 흉작이 되어 굶어죽은 자가 길에 즐비하였고, 돌립병이 또 치성하여 걸리지 않은 백성이 없었으므로 제도(諸道)에 진휼청을 설치하였다. 서울에는 진휼청을 세 곳에 설치하여 죽을 쑤어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고 사대부는 마른 양식을 주었다.</p> <p>3월에 명하여 진휼청의 적곡(糴穀)을 발매하게 하고 굶주린 백성이 버린 자녀를 거두어 기르는 자는 본주가 추쇄(推刷)하지 못하게 하였다.</p> <p>6월에 주방(酒房)의 일차(日次)에 공상(供上)하는 것을 정지하고 각도의 진상(進上)에 있어서는 양대비전(兩大妃殿) 이외에는 상납을 허락하지 않았다.</p> <p>9월에 명하여 경기의 대동 전세(大同田稅)를 기한을 뒤로 물려 받아들이게 하고 납입한 조적곡도 이자를 면제하게 하였다. 제주(濟州)에 선유 어사(宣諭御史)를 보내어 세 고을의 노인과 군민(軍民)을 위로하고 또 면포 4천 필을 가지고 가서 곤궁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보리씨 2천 석을 더 보내어 파종을 도와주게 하였다. 무릇 상공(上供)하는 토산물과 각사의 상공(常貢)에 관계되는 것은 다 재량하여 감하게 하고, 내사(內司) 및 각사 노비의 신공(身貢)은 아울러 전부 감해 주게 하였다. 이어서 명하여,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묻고 사상자(死喪者)를 도와주게 하였다. 또 효우(孝友)와 절행(節行)이 특별히 드러난 사람을 찾아 발탁하는 소지로 삼게 하였다. 또 호남의 감영(監營)·병영(兵營) 및 호조에 저축된 포목 수천 필을 더 주어 진휼하게 명하였다. 이때 제주에 크게 비바람이 휘몰아쳤는데 빗물의 맛이 모두 짜서 들판에 곡식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까닭이었다. 한라산(漢拏山)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한라산은 제주 섬 전체의 진산(鎭山)이다. 또 문·무의 시험을 실시하여 그 백성들을 위로하였다. 경기의 승군(僧軍)을 동원하여 안팎의 굶주린 백성과 병사</p>	<p>臣也。噫! 萬重雖至愚, 豈不知臣之今日蹤跡, 自救不暇, 而猶有待於臣哉? 聖明不惟不諒臣之情 [迹], 而亦不察萬重之爲人也。日前殿下, 每以君臣之間, 貴相知心爲教, 豈料今日, 不蒙聖明之知, 乃至此也?</p> <p>王批曰: “覽卿疏, 不覺驚訝。卿受恩先朝, 復出尋常, 予以爲先陵之事, 則卿必不避水火矣。今日之事, 不但大違所望於卿者, 陵內雨水滲漏停留之狀, 石物執頗之事, 卿聞見之熟矣, 玄宮無欠, 非外面可知, 何容改封之議? 此予所以疑惑, 而未曉卿意也。今日遷陵之舉, 非惑於風水之說, 而卿疏有若由此而然, 尤爲驚惑, 未曉卿意也。至於答諫院之批, 不過責後尙體例間事而已。有何一毫, 以不論卿爲非之意? 況萬重之言, 無狀甚矣, 予用駭憤。而至今思之, 待卿之說, 專未憶得。無乃傳播於卿者, 有意然耶? 卿之辭疏, 無非不平之語, 而反疑予言, 至此之極, 實出於予之誠意, 不能相信之致, 愧恨而已。更何多詰?” 時烈再疏, 申前說, 不報。先是, 時烈請立</p>
--	--	---

	<p>한 자를 묻어 주었다. 10월에, 서울과 지방에 마른 양식을 받아먹은 사람 중에 본인이 죽은 데다가 전지도 없는 경우에는 일체 탕감해 주고 이웃이나 일가붙이에게 징수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명하였다. 광주(廣州)의 조적을 절반만 거두어 들이고, 중외의 기유년(1138) 을 포함한 이전 신역포(身役布)를 모두 기일을 뒤로 물려 받아들이게 하였다. 징수할 곳이 없는 각사 노비의 신역포도 전부 감해주었다.</p> <p>천둥의 재변으로 인하여 대신·비국(備局)·삼사(三司)를 인견하고 재변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계책을 들었다. 죄수를 관대히 처결하고 동교(東郊)와 서교(西郊)에 여단(厲壇)을 설치한 다음 관원을 보내어 여역으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정월 초하루에 진상하는 방물을 명년(1139) 부터 계축년(1140) 까지 감하게 하였다. 평안도 강변 6개 고을의 전세(田稅) 중 3분의 2를 감하였다. 제주에 선혜청(宣惠廳)의 쌀 2천 석을 더 보냈다. 이 해에 팔도가 큰 풍년이 들어 김매지 않고도 수확한 자도 있었다.</p> <p>12월에 명하여 윤선도(尹善道)의 직첩을 도로 주게 하였다. 헌납 윤경교(尹敬教)가 소를 올려, 영의정 허적(許積)을 공격하되 ‘영합하여 총애를 굳히려 한다.’고 말하니, 왕이 엄한 분부를 내려 책하고 특별히 의령 현감(宜寧縣監)에 보임하였다. 대간(臺諫)이 그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택하지 않았다.</p> <p>임자 13년 1월에, 봄철에 징수하는 삼남(三南)의 대동미를 감하도록 명하였다. 우의정 송시열의 소에 따라 각읍에 도적을 다스리는 대책에 대해 신칙하였다. 또 대동미를 징수할 적에 기유년(1141) 의 전결(田結)을 적용하지 말고, 지난해(1142) 의 전결(田結)을 적용하여 백성의 재력이 꺾이게 하도록 명하였</p>	<p>先王陵上表石清風府院君金佑明，言其不可，司諫崔後尙，劾佑明。王批曰：“雖曰大臣建白，已有成命。若諉之於此，而人不敢言，則非國家之福。”又校理金萬重請對，斥領議政許積，不可置之百僚之上，王以妄論大臣，墜損國體，拿問之，故時烈之言如是。是歲九月，清風府院君金佑明，因引對言：“前教官閔樂之孫愼，因其祖死，以其父病廢，代爲之服。是則閔樂、世翼，俱無子，世翼及世翼之子，俱無父也。聖明之世，不可使如此之人，容息於都城之內。”王教曰：“父子之大倫，一有乖舛，人安得爲人乎？雖曰，迫於弔客之指揮，愼安得免其罪乎？”命查問處之。蓋閔愼之事，出於前進善朴世采，世采則祖述時烈之論也。議者以爲：“時烈此論，悖倫傷教，近於無父。”而王亦非之。時烈上疏，陳閔家代服，本先儒朱子說，辨論不置。又疏曰：</p> <p>臣每念勝國之事，有不勝寒心者，勝國之時，君弱臣強，至有行讒作勢於燕山者。此雖時君，前有讒而不知，後有</p>
--	---	---

	<p>다. 각도의 감사·수령에게 명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는 계책에 대해 조목 조목 아뢰어 채택에 대비하게 하였다.</p> <p>인견할 때에 대신이 청하기를 ‘진휼할 때에 반드시 죽을 썬어 먹일 것 없이 건량(乾糧)을 나누어 주자.’고 하자, 왕이 이르기를,</p> <p>“만일 장기간 백성을 편안히 하는 도리를 논한다면 물론 건량을 나누어 주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떠돌아 다니며 빌어먹는 저 백성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면서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p> <p>2월에 전 정(正) 조사기(趙嗣基)가 폐단을 진달하는 소를 올리면서 기년복의 제도를 사용하여 지체를 깎아내린 데 대한 잘못을 논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p> <p>“전하께서 대통(大統)을 이으셨으니 오직 어버이를 높이는 도리를 극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통과 서자(庶子)의 일설은 지체를 내리깎아 상복의 기한을 단축하게 하였으니, 후세에서 마침내 반드시 논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추후에라도 뉘우쳐 하늘에 계신 효고(孝考)1143)의 영혼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라는 말이 있었다. 도승지 장선징 등이 아뢰기를,</p> <p>“소의 사연이 괴상하기 이를 데 없어 금령을 범하였으니, 유사에게 회부하여 성상의 뜻을 여쭈어서 죄를 결정하게 하소서.”</p>	<p>賊而不見，以至於此，而其時臣子之罪，豈可擢髮而勝誅哉？日者臣強之說，忽出於萬里之外，而權不在上之語，繼發於相臣之疏，大小莫不懷懼。今臣所被之言，實與彼相同。雖稍換其名，豈料臣前所以爲人代怖者，乃在於臣也？且曰，竊聞筵臣於榻前，以爲閱家事，自朝廷不必查處，聖明以爲。事係人倫，不可置之。”是筵臣，若爲臣寢沮其事，以掩覆臣罪者，殿下又欲脫臣於罪，臣顧義畏法，有不敢承當也。</p> <p>蓋是時，燕中有以臣強之說，發問，使臣還奏之，且金佑明請對時，指論時烈，以人莫敢矯其非，故時烈以是自嫌，而有是言。其所謂筵臣者，金萬重也。王不答其說，以已悉予意，於前疏之批，批之，蓋不快之也。當時論者謂：“時烈已亥服制，則以士庶之禮，用之於帝王家，閱慎代服，則以帝王家禮，而行之於士庶也。推其說，則將至於無君、無父之域，而時烈不知悔焉。且不知庶之一字，非所加於己主宗社者也。”甲寅十五年二月，王大</p>
--	---	--

	<p>하였다. 조사기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고 편배(編配)1144) 되었다. 시간원 이합(李栻)·윤심(尹深), 민종도(閔宗道) 등이 먼 곳에다 유배하자고 청하였으나, 왕이 윤택하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 특별히 서용하라 명하였다.</p> <p>3월에 이조 참의 이단하(李端夏)의 상소로 인해 중종의 폐비(廢妃) 신씨(愼氏)의 신주(神主)를 신씨의 집안 직손 집에 옮겨 모시게 한 다음 관에서 제수(祭需)를 지급하고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 3호(戶)를 두었다. 신씨는 중종이 대군으로 있을 때의 정비(正妃)이다. 호남의 곡식 1천 석과 해서의 곡식 2천 석을 제주에 들여 보내 종자로 주었다. 또 벼 50동(同)을 주어 옷감으로 쓰게 하였다. 각도에 명하여 신해년(1145) 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신역(身役) 중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은, 받을 곳이 없는 자이건 기한을 뒤로 물려 아직 거두어 들이지 못한 자이건 간에 모두 탕감하게 하였다.</p> <p>명을 내려 2품 이상으로 동반(東班)의 실직을 지낸 자와 육조의 참의, 삼사(三司), 수령으로 하여금 인재를 천거하게 하였다. 그리고 죄수를 관대히 석방하게 하였는데 서울과 지방에 사죄(死罪) 이하로서 일시에 사면을 받은 자가 모두 8백여 인이었다. 명을 내려 병오년 이전까지 포획된 조적곡의 실제 수량을 조사해 내어 일체 탕감하게 하였다.</p> <p>조군(漕軍)도 수군(水軍)의 예에 의하여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다. 국가의 제도에, 조군(漕軍)·수군(水軍)의 군역(軍役)이 가장 고통스러우며 과거 응시를 자손 대대로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교서를 내려 자신에게 죄를 돌리고 포획된 무세(巫稅)·장세(匠稅)·관향세(管餉稅)와 각 아문의 파괴된 염분(鹽盆), 어선세(漁船稅)의 미수된 것을 모두 탕감하도록 명하였다.</p>	<p>妃薨。六月丁酉，葬仁宣王后于寧陵。是夏旱，以玉堂陳筮，答曰：“嗚呼！予以涼德忝位，獲戾于神明，水旱風霜之災，無歲無之。使我赤子，罹此罔極之災殃，恒念于茲，食息靡寧。逮于今夏，旱魃之酷，近古罕有。言念及此，中夜驚起，痛悼蒼穹之不降殃於寡躬，而使蒼生替受其禍。寧不如過死，小答民生之困瘁也。”七月，嶺南儒生都愼徵上疏，論仁宣王后之服，大王大妃當爲嫡婦暮年之服，而今日國制，反以衆庶婦之服，爲大功之服，瀆亂國經，顛倒人紀，莫甚於此。疏至政院，政院屢却之，久乃得入。後數日，王引見大臣，下教曰：“己亥服制，蓋用時王之制。今九月之制，與己亥同異與否，竝爲考出，原任大臣、六卿、政府東西壁、判尹、三司長官，會議以啓。”遂會議于賓廳，乃考出己亥收議事以入。王曰：“若考出膽錄而已，則何必使大臣、六曹、三司長官會議乎？更議以啓。”行判中樞府事金壽恒、領議政金壽興、戶曹判書閔維重、兵曹判書金萬基、吏曹判書洪處亮、大司憲姜栢年、刑曹判書李殷</p>
--	---	--

	<p>4월에 행 호군(行護軍) 송준길(宋浚吉)이 소를 올려 허적(許積)을 논하면서 노기(盧杞)1146) 에다 비하고, 또 윤경교(尹敬教)를 구원하였는데, 소가 들어가자 회보하지 않았다. 이에 허적이 정승의 자리를 떠나니, 왕이 누차 승지를 보내어 도타이 타일렀다. 판부사(判府事) 송시열도 소를 올려 허적을 매우 심하게 공격하였는데, 이는 대개 허적의 소 안에 ‘권세가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평 오정창(吳挺昌)이 소를 올려 ‘송시열·송준길 등이 허적을 견지하면서 비교해 의논한 것은 걸맞지 않다.’고 논하자, 양사(兩司)가 논핵하여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자고 청하였으나, 왕이 윤택하지 않았다.</p> <p>5월에 전 집의 이상(李翔)이 소를 올려 논핵하기를</p> <p>“허적이 사리 사욕을 추구하고 당류를 심는가 하면 위아래에 아첨하여 헛된 명예가 융성해져서 허충신(許忠臣)이란 말이 안팎에 가득합니다. 왕이 아첨하는 신하에게 빠진 바가 되었습니다.”</p> <p>하니, 왕이 하교하기를,</p> <p>“이상이 산림(山林)에 머물면서도 세상에 나가 벼슬하는 일에 바쁘는데, 그의 마음가짐과 일처리하는 것은 길가는 사람도 아는 바이다.”</p> <p>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의 관작을 삭탈하였다. 대간이 그 명을 거두어 들이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택하지 않았다.</p>	<p>相、漢城判尹金宇亨、禮曹參判李俊考、禮曹參議李奎齡、副應教崔後尙、獻納洪萬鍾，同辭以對曰：“向前己亥年諸臣，既以時王之制，定以碁服，更考《大典》服制，則只曰爲子碁年而已，無長子、衆子之別。今者服制議定之日，該曹之直請付標者，亦出於此也。”王復下教曰：“啓辭欠明。大王大妃殿之於今日，當服碁年與九月，何無歸宿處耶？”領議政金壽興對曰：“今日，只議己亥服制，而大王大妃殿之於大妃殿服制，未敢輕先議定。”王又招至榻前，詰問不對所問之意，壽興惶恐謝罪，又請以文字書啓。遂出，與賓廳諸臣，再啓曰：“考《大典》服制，長子妻碁年，衆子妻大功，承重與否，不爲舉論。以此觀之，大王大妃殿服制，似當爲大功。而事體重大，貞熹王后之於章順王后，昭惠王后之於恭惠王后之喪，必有已行之制，請令春秋館，考出實錄。”王以實錄在江都，未易考出，令更會獻議後，考出實錄。壽恒、壽興等，又以《大典》長、衆服，皆以碁年爲對，且曰：“若以倫序論之，則自有長、衆之別，至於衆子承</p>
--	--	--

	<p>12월에 헌부의 계사(啓辭)에 따라 대내의 전각(殿閣)을 수선하는 역사를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명을 내려, 대전(大殿)에 진상하는 세 명일의 방물(方物) 물선(物膳)을 감하게 하고, 제주에서 월령(月令)에 진상하는 물품을 감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군역(軍役)을 정하지 말라는 영을 거듭 밝혔다.</p> <p>계축 14년 정월에 경기 지방이 재해를 입었다 하여, 징수해야 하는 대동미(大同米)를 차등있게 감하라고 명하였다.</p> <p>2월에 명을 내려 경술년과 신해년 두 해에 거두어 들이지 못한 조적의 수를 뽑아내어 탕감해 주도록 하였다. 팔도의 감사와 강화부(江華府)와 개성부 등의 유수(留守)에게 유지하기를,</p> <p>“내 생각건대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먹는 것에 의지한다.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하는 도리는 진실로 농사에 힘쓰고 곡식을 중히 여기는 데에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옛날 제왕들은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알고 농사짓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시경(詩經)》의 빈풍(邠風)과 《서경(書經)》의 무일(無逸)이 어찌 후세의 귀감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조종(祖宗)에서는 백성을 잘살게 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하여 먼저 전제(田制)를 바르게 하였다. 또 백성들이 농사짓는 방법에 어둡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농서(農書)를 번역하고 풀이하여 가르치고, 토지를 이미 시험해 본 방법으로 《농사직설(農事直說)》을 지어서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였으며, 또 농사를 권장하는 글을 반포하는 등 무릇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모로 심력을 기울였었다. 그러므로 한(漢)나라 때에 쌀이 붉게 썩고 돈궤미가 썩어 썰 수 없는 것1147) 과 당(唐)나라 때에 쌀 한 말 값이 3전이었던 것1148) 도 그다지 훌륭하게 여길 것이 못 되었다.</p>	<p>統，則得爲長子之文。國典未有見出處，今日服制，國典之外，有難以臆見輕議。”王曰：“己亥服制議定之時，未聞有長、衆之說，而到今服制，敢發大功之說？《大典》《五服條》，無承統一款，雖曰時王制禮，乃未備之處。諉之時王制禮，不爲參考禮經，今日會議之意安在？”賓廳再啓，引禮疏四種中，體而不正，不爲三年之說，以國典不悖於禮經之意爲對。王命承旨金錫胄，取《儀禮》經傳，父爲長子條註疏，逐段分釋以入。明日，答再啓曰：“啓辭無狀，不覺驚駭。卿等皆蒙先王恩渥，到今敢以體而不正之說，爲今日之禮律。禮註中，庶子遠別之說，不得貫四重不得爲三年之文矣。賈疏既曰，第一子死，則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亦名長子，其可曰體而不正耶？卿等以此不近理之悖說，定爲禮律，指先王，以體而不正，可謂薄於君，而厚於何地乎？莫重之禮，不可以附托之論，斷爲定制，依當初磨鍊，國制定行。”又傳于政院，以基年改付標，禮官拿問定罪。禮曹判書趙珩、參判金益旻、參議洪柱國等，皆下獄，改大功</p>
--	--	---

그런데 과인에 이르러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 수재와 한재가 없는 해가 없었고, 기근의 참혹함이 지난해에 와서 극도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노약자들은 구렁텅이에 죽어 뒹굴고 백골이 서로 잇따르고 있으나 이주시킬 만한 곳이 없고 구제할 만한 곡식도 없다. 내 이 때문에 잠자리가 편치 아니하고 음식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먹는 것을 넉넉하게 하는 계책을 얻어 위급한 지경에 이른 백성을 구제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죽는 것을 서서 보고만 있게 되어 조종(祖宗)께서 3백 년 동안 길러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없어지고, 뽕나무와 삼이 있던 곳이 쭉대밭으로 변해 버렸으니, 아, 이를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연유를 구명해 보면 비록 연운(年運)이 좋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았으나 실로 사람이 한 일이 미진하여 그런 것이다. 만일 옛날처럼 3년을 농사지어 1년 먹을 것이 축적되고 9년을 농사지어 3년 먹을 것이 축적되었다면 떠돌거나 죽는 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대체로 농사에서 힘써야 할 일은 때에 맞추어 하는 것과 힘을 써서 하는 것이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제때에 씨를 뿌리지 못하였고 김매는 일에도 힘을 쓰지 않는가 하면, 제방을 쌓아 관개(灌溉)하는 이로움을 폐지한 채 수거(修學)하지 않고, 거름을 주고 김매는 일도 대부분 소홀히 하여 힘쓰지 않고 있다.

아, 사농공상 가운데 오직 농민이 가장 괴로움을 겪고 있다. 추울 때에 밭갈이 하고 더울 때에 김매는 등 해가 다 가도록 부지런히 일하여도 굶주림과 추위를 면하지 못하는데, 고을의 관리가 조세(租稅)의 상납을 독촉하는 정치가 소요를 일으키고, 장사꾼과 놀고 먹는 무리가 또 뒤따라 좀먹고 있으니,

服制以期年。又傳曰：“大臣職責，不在於奉行簿書之間而已，臨大事，不變志然後，可以補袞職做國事。領議政金壽興，當今日服制會議之時，敢啓滿紙胡亂之說，終無歸宿之處。或引不當引之古例，或以國典數語塞責，終以無倫不近理之說，倡言體而不正之語，其忘先王，附他論之罪，決不可不正。中道付處。”承旨李端錫、憲府李光迪·柳之發·宋昌·丁昌燾·金弼，諫院李嵒·宋昌，玉堂趙根·權愈等，請還收禮〔官〕拿鞫，金壽興付處之命。王責政院以煩瀆，斥臺官以不能糾劾，不舉職者，而循私減公，斥玉堂以無據，削黜光迪、之發等。政院。三司，又伸救之，王皆不聽。左參贊李尙眞，又疏救之，王斥以事君無義。左議政鄭知和，又筭論之，王批以非事君以實之道。大司諫南二星，又疏陳辨之，傳曰：“二星敢爲立幟之論，挺身發忿，阿附大臣，敢曰，必如今日賓廳議啓然後，國家典禮，無一毫未盡之譏云，又曰，各守所見，各伸其說而已，衆言淆亂，折之於聖人云。淆亂之說，未折之於聖時，爲其君從厚論可乎？必從四

어떻게 백성이 곤궁하지 않겠는가.

지금 봄날이 따뜻해져 토맥(土脈)이 처음으로 열리었으니, 보습을 손질하는 정월은 이미 멀어지고, 밭갈이하는 2월이 문득 박두하였으므로 농사를 권장하는 정사를 조금도 느슨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한번 우역(牛疫)이 치성해지면서부터 백성들은 어깨가 붉게 문들어진다고 탄식하고 있다. 날카로운 보습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므로 흙을 일구는 밭갈이를 장차 폐지하게 되었다. 옛날 왕공(王公)이 경작하는 예를 몸소 행하여 천하의 백성을 거느렸다. 내가 경사 대부(卿士大夫)와 함께 옛날의 제도를 본받아서 사방의 주창이 되려 하였으나, 이 일을 할 겨를이 없었으므로 실로 불만스럽게 여긴다. 아, 큰 흉년을 치른 전지가 황폐하여, 간신히 살아남은 백성이 살아갈 대책이 막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마하는 도리는 급히 해야지 느슨히 해서는 안 되며 권장하는 방법은 서서히 해야지 급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는 오직 방악(方岳)1149) 뿐이며, 백성과 가까운 직책은 수령만한 사람이 없다. 경들은 나의 명농(明農)1150)의 뜻을 체득하여 수령들에게 포고하여, 밭두둑을 출입하되 여리(閭里)를 소요스럽게 하지 말도록 하고, 전야(田野)를 살펴 보되 백성의 농사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저수지 중에 관개(灌溉)할 만한 것은 수리하고, 도랑 중에 소통할 만한 것은 소통시키도록 하라. 백성의 힘이 넉넉하지 못한 바가 있으면 도와줄 것을 생각하고 종자와 식량이 부족한 바가 있으면 도와줄 것을 생각하여, 갈고 씨앗 뿌리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고 김매고 북돋우는 시기를 어기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여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가 모두 일구어지도록 힘쓰고 놀고 먹는 백성이 다 농사에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백성이 본업을 즐거워하여 태만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위로는

種條中一款，從薄論爲人臣不易之義乎？又敢以從薄悖理之論，謂之以無一毫未盡之譏云者，抑何心腸耶？是乃無君者之言也。其阿附前後之言，忘君負國之罪，不可不懲，絕島遠竄。”承旨李柙、掌令安後泰，副校理趙根等，請還收，王不允。特補趙根江西縣令。八月，王有疾，馳遣承旨，召領議政許積于忠州。王疾大漸急，召積于臥內，謂之曰：“卿無可去之義，又曰，卿之心，予所知者，予之意，卿亦知之。予氣短矣，國家事，不能盡所欲言者。”又召左議政金壽恒，使至前勉諭之。是夕，王昇遐，十八日己酉也。蓋仁祖大王卽祚，冊昭顯爲世子，孝宗大王爲次嫡。及昭顯歿，而嬪姜罪廢，嗣子不肖，仁祖謂：“昭顯子，決非負荷之人。國有長君，社稷之福。”以孝宗代正儲位。及孝廟薨，宋時烈、宋浚吉、俞榮等，議定服制，以大王大妃，爲孝宗服，當爲庶子碁，外議頗喧，以爲：“大王大妃之於大行大王，當爲繼體至尊之服，不亶制衰而已。”及收議，時烈又借國制長子碁之說，以樹其說，碁制遂行。然長子碁之制，

	<p>경상(經常)의 부세(賦稅)를 바치고 아래로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기르는 소원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백성의 생업은 농사에서 안정되고 나라의 근본은 반석처럼 튼튼해질 것이다. 경들은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고 깊이 유념하여 거행하도록 하라.”</p> <p>하였다.</p> <p>작고한 참찬 송준길(宋浚吉)에게 의정(議政)의 직을 추증하라 명하고 문·무관 당상(堂上) 이상의 부모 중에 나이 70세 이상인 자에게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경평군(慶平君)·정명 공주(貞明公主) 및 종실 중에서 부모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명하였다. 고려 공양왕의 능을 수호하도록 명하고 대신의 아내 및 친공신(親功臣)의 아내 중에 생존하고 있으나 살림이 궁핍한 자에게 음식을 지급하게 하였다.</p> <p>3월에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정시(庭試)를 실시하여 문·무 인사를 뽑았다.</p> <p>4월에 가뭄이 갈수록 혹심하다 하여 교서를 내려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였다.</p> <p>5월에 또 교서를 내려 자신을 책하고 정전을 피해 거처하며 수라 가짓수를 줄이고 술을 금지하였다. 정원에서 단오첩(端午帖)을 제진(製進)할 것에 대해 계사를 올리자, 왕이 이르기를,</p> <p>“한재가 이처럼 혹심하니, 이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p>	<p>載於《大明律》、國朝《大典》，實令甲士庶之制，非王朝之典也。以是群議益不平。及孝廟甚至，前掌令許穆疏，言期服非制，引賈疏次長三年之文，以破時烈之說。時朝廷多有是穆說者。左議政元斗杓上劄，自列當初從碁制之非，請大臣、儒臣更議。適前參議尹善道疏論碁制之失，至以安宗社、定民志爲言，且斥時烈非賢。於是，廷議駭動，互相黨排。時承旨李惟泰，適承召入城，以善道欲假托論禮，嫁禍士林爲言，時烈亦於收議中，大斥穆說之非是，又引檀弓免子游衰之說，以申其意。於是，穆說遂不行，而善道竄。右尹權認，亦以疏救善道，得罪。既而元斗杓又劄，陳諸侯奪宗之義，又請更以服制，詢問于李惟泰、尹宣舉、沈光洙、許厚、尹鑄等。尹宣舉在外，許厚議無可否，李惟泰從碁議，沈光洙從宗統之議，尹鑄以惟其卽乎人心，關係大綱，無悖於先王之意爲言，領議政沈之源、領敦寧府事李景奭，以國典爲言。王令從多議施行，碁制遂不變。而判府事趙綱、修撰洪宇遠、前參判趙壽益，皆以疏救尹善</p>
--	--	--

	<p>하였다.</p> <p>신해년(1151) 이전의 군병과 노비(奴婢) 중에 도망했거나 죽은 사람 및 임자년(1152) 에 상납하지 아니한 신역(身役)과 계축년에 납입해야 할 군포(軍布)를 탕감해 주도록 명하고 신해년 기병(騎兵)과 보병 중에 도망한 사람은 연한에 구애하지 말고 그 대역(代役)할 사람을 정하도록 명하였다.</p> <p>8월에 효종의 능을 옮기는 일로, 경유하는 양주(楊州)·광주(廣州)·여주(驪州)·이천(利川)·양근(楊根) 등 5개 고을의 대동미 징수와, 경기 고을의 봄에 징수해야 하는 대동미를 차등있게 감해 주도록 명하였다. 경기·황해·전라·원양(原襄) 등 4도의 경술년(1153) 조 전세(田稅) 중 미수된 것을 탕감하도록 명하였다.</p> <p>9월 29일에 계구릉 망곡례(啓舊陵望哭禮)를 거행하였다. 면례(緘禮)에는, 삼년복을 입지 않는 사람일 경우 시복(總服)을 입는 예문(禮文)이 없는데, 왕이 예관(禮官)에게 특별히 명하기를,</p> <p>“기해년(1154) 대상(大喪) 때에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기년(基年)을 지난 뒤에 천담복(淺潭服) 차림으로 삼 년을 마쳤으니, 지금도 이 예에 의해 천담복 차림으로 3개월을 마치게 하라.”</p> <p>하였다. 이는 대개 기해년 대상(大喪) 때에 궁중에서 실지로 삼년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구영릉(舊寧陵)을 처음 모실 적에 능의 자리를 어디에다 잡을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빨리 정해지지 않아 기일이 촉박하였고 일을 감독하는 자가 다급하여 신중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봉축(封築)이 무너져서 빗물이 스</p>	<p>道、權認，且論服制之失，臺論大起，或請竄黜，或請罷，王不允。然是後，凡與於三年之說者，皆目之以黨邪醜正，朝命不及者，殆一紀餘矣。及仁宣王后之喪，禮官初以基年，定大王大妃之服，蓋用唐、宋嫡婦之制也。外議以爲：“孝宗大王，既爲庶子，則仁宣王后，無爲嫡婦之理。”多有譏議之者。黨時烈者，又以爲先後異制，屬禮官趙珩等，以大功改付標以入，蓋用庶婦之制也。王以前後顛倒，囚治禮官。然功制亦行。至是，有賓廳會議之舉，七月十三日也。王既發悟，聖意赫然，親考禮經，以禮疏，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亦名長子之文，爲主，而大王大妃，改服基制。於是，嫡統明，邦禮嚴，而人心亦翕然矣。以不稟旨擅改制，罪禮官，以不從禮經，附托他論，罪首相，諸附麗之人，皆次等得罪。且將大明黜陟，以正國是，以尊宗廟，而王不豫矣。八月初七日，復命召宰臣，會于賓廳，將欲引入議事，忽感疾未果。越十有二日，大棄臣民于昌德宮之齋廬，春秋僅三十四，而在位十五年矣。嗚呼痛哉！王</p>
--	--	--

	<p>며들었는데 누차 보수하였으나 완벽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봉심(奉審)한 신하들이 감히 사실대로 아뢰지 못하고 다만 그때마다 석회로 틈을 막았을 뿐이었다. 3월에 종실 영림령(靈林令) 이익수(李翼秀)란 이가 상소하여 그 사실을 말하니, 왕이 놀라고 슬퍼하면서 곧바로 익수를 불러 그 상황을 물어보았다. 익수가 능 위의 흙과 돌이 무너진 까닭을 낱낱이 말하고 또 아뢰기를,</p> <p>“옛날 주 성왕(周成王)이 주공(周公)의 충성과 성스러움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바람과 천둥의 재이(災異)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선릉(先陵)에 번고가 있음을 모르고 계셨으니, 근년에 일어난 재이가 반드시 이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못할 것입니다.”</p> <p>하니, 왕이 익수에게 이르기를,</p> <p>“네가 남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바를 말하였으므로 내 아름답게 여긴다. 또 그릇된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으니, 매우 감격하였다.”</p> <p>하고, 드디어 옮겨 모시기로 뜻을 결정하였다. 대신·육경(六卿)·양사(兩司)에 명하여 능의 자리를 살펴보게 하고 또 익수로 하여금 대신을 따라가 같이 살펴보게 하였다. 좌의정 김수항(金壽恒),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민유중(閔維重) 등이 익수와 말다툼을 하여 함께 복명하지 않았다. 익수가 소를 올려 주달하고 또 아뢰기를,</p> <p>“구릉(舊陵)의 연월과 길흉(吉凶)에 구애받지 말고 속히 옮겨 모셔야 합니다.”</p> <p>하니, 왕이 아름답게 받아들였다. 부수찬 조위봉(趙威鳳)이 상소하기를,</p>	<p>幼成自天，弱不好弄。 在春宮，克盡孝道，有曾、閔之行，及至履祚，勵精圖治存心繼述。 事大妃及大王大妃，誠孝無間，怡愉之色，定省之禮，罔或少懈，兩殿嘉悅，宮中和氣藹然。 大王大妃，遭母夫人喪，過哀疾急，王露坐庭中，招醫問藥，手持藥物入進之，聞者感動。 王大妃始御通明殿，與王御，所稍間闊。 王爲構集祥殿移奉之。 殿未成，請遷御于大造殿，身處傍近別室，以便奉養。 大妃有宿疾，王夙夜殫誠，慰安其心。 大妃嘗曰：“王每在傍，病若去體。” 嘗陪幸南郡，沐溫泉收效，王乃大施優老之典于道內。 還宮，又施恩朝廷、宗戚，以及諸道，一體行之。 蓋推老老之恩也。 歲時常存問父老，或給月廩，宰臣則月繼米肉。 判書朴長遠，孝於母而先沒，王特命廩其母，以終身。 近臣有以母老乞歸養，王不許，仍命優給米肉、衣資有爲養。 乞郡者輒許之，或惜其出，則特給米布，其孝理如此。 王有五姊妹，極親愛，均其待遇。 遇美味，必分，聞其有病，則驚憂問遺，交道有喪亡，悲慟不已。 臣下或於章奏間，有</p>
--	--	---

“신이 듣건대, 영릉(寧陵)을 봉심한 공경·대시(臺侍)가 돌아와서, 익수의 소가 헛말이 아니라고 아뢰고 주상은 ‘능 위 사면 팔방이 하나도 완전한 곳이 없다.’는 분부가 계셨다 합니다. 영릉을 봉안한 지 지금 15년이 되었는데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면 만세토록 전하는 교산(喬山)의 염려(1155)가 그 지없습니다. 옛날 송 인종(宋仁宗)을 영소릉(永昭陵)에 장사지낼 때에 황당(皇堂)의 기둥이 손상되었습니다. 여러 사자(使者)들이 그냥 덮어버리려 하자, 한기(韓琦)가 정색을 하며, ‘손상되었으면 바꾸어야 한다. 만일 장사의 날짜를 어겨 비용이 많이 날 경우 그래도 이 책임은 담당할 수 있지만 만일 구차히 이를 덮어버렸다가 뒤에 무너져서 임금의 의심을 초래할 경우 신하가 어떻게 그 책임을 담당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때 감독한 신하들이 무너지는 후환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일을 마치기에만 힘썼으니, 한기의 말과 비교해 볼 때 어떠합니까? 역사(役事)를 감독한 관원도 물론 죄가 있습니다만, 흙을 덮은 데와 배치한 석물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고한 뒤로부터 전후로 봉심한 신하가 다만 회로 틈을 바르기만 하고 사망·괘면이 우려된 형세에 대해선 왕에게 아뢰지 않았습니다. 살펴보고도 몰랐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만일 알고도 아뢰지 않았다면 그 죄가 실로 감독한 관원보다 더 큼니다.

능침(陵寢)을 봉심하는 것은 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눈치만 살피고 사실대로 아뢰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러한 습관이 그치지 않고 커진다면 비록 장릉(長陵)의 흙을 한 줌 가져가는 자가 있더라도(1156) 전하께서 듣지 못하게 될까 신은 염려됩니다. 전하의 효성을 몸만지 아니하고 감히 기망을 자행함이 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능의 일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나타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건만, 양사(兩司)에서는 침묵만 지킨 채 전후로 봉심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잘못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으니 이게 무슨

以無辜，搆捏福昌君楨兄弟者，必深惡而痛斥之。昭顯世子之女，適黃昌副尉邊光輔，聞其死，爲之慘然曰：“先朝恩眷，無下於諸駙馬。追念及此，當作何如懷耶？特令該曹庇恤，以存先王終始如一之意。”敦睦宗族，曲有恩意，量其親疎，眷顧無替。王於貴戚，待之雖隆，然未嘗以私撓公。諸宮家僕隸，一有犯科縱濫者，必付有司，痛繩以法。

[○] 留心學問，講究理義，非有疾病，必御經筵。又喜講前史，其於君德修否、政治得失、民生休戚，亶亶討論，以爲鑑戒。見解高明，常出講官意表。在東宮時，已留意心學，令書入先儒人心道心說，以備省玩。嘗講《大學》，王曰：“自脩身以至平治天下，無非敬字工夫也。”講《中庸》，王曰：“人以道爲遠者，不知其在於己也。”仍問何者爲卑近，何者爲高遠，講官對以人事爲卑近，佛、老乃高遠也，王曰：“不必佛、老，非切己之道者，乃高遠也。”講《大學衍義》，王曰：“格致之道，皆在此書。雖云格

	<p>의도란 말입니까. 어리석은 신은 근심과 개탄을 금치 못한 나머지 감히 어리석은 소견을 말씀드립니다.”</p> <p>하였다. 조위봉은 조경(趙綱)의 아들이다. 왕이 비답하기를,</p> <p>“네 소를 보니 개연(慨然)한 뜻과 충애(忠愛)의 정성이 말에 넘쳐흐르고 있으므로 매우 아름답게 여기고 감탄하였다. 지금 만세토록 계실 선왕 능침의 의물(儀物)에 완전한 곳이 없으므로 장차 부득이 옮겨 모셔야 하니, 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전후 봉심한 신하가 만일 있는 것을 없다고 하였거나 큰 것을 작다고 하였다면 그 죄는 참으로 면하기 어렵다. 내가 실상을 조사해 내어 처리해야겠다. 근일 대각(臺閣)의 신하 중에 눈치를 슬슬 보는 자가 많은데, 누가 국가를 위해 분연히 이러한 말을 하는 자가 있겠는가.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p> <p>하였다. 대간이 모두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였는데, 옥당이 출사하게 하자고 청하였으나 특별히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왕이 하교하기를,</p> <p>“전후 봉심하고 올린 문서를 상고해 보면 영릉의 석물에 틈이 생긴 뒤로 대신 이하가 봉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정미년(1157) 봄과 가을 두 번 봉심할 때에는 해조(該曹)가 별도의 의견을 내어, 다른 능의 예를 인용하여 본조의 당상이 나가 봉심하였을 뿐이었다. 이는 대신이 나가는 것은 중대한 일로 여기고 능의 사체는 도리어 가볍게 여긴 것이다. 또 영릉을 봉심하는 일이 어찌 다른 능과 비등할 수 있겠는가. 다른 능은 이와 같은 변고가 아직 없었다. 참으로 매우 놀랍다. 그때의 당상과 낭청(郎廳)을 아울러 잡아다가 엄히 국문하여 처리하라.”</p>	<p>致，而不爲誠意，則於何用功？且必有誠意之功然後，其所格致者，不爲背馳矣。”講《書》，至《益稷篇》，禹曰帝慎乃在位，王曰：“人君在位之道，莫大於慎之一字。惟幾惟康，蓋言其用功喫緊處。幾者，念慮之初，康者，愉逸之際，尤當致慎也。”講歷代事，講官曰：“漢文帝，資質非不高矣，所學只是黃、老，故躬修玄默，未遑復古聖王之治矣。”王曰：“古人云，舜何人也，予何人也？文王我師也，其可謂未遑乎？”王曰：“觀漢、武引齊、襄復讎之語，則規模甚大。所以初能成功而窮兵黷武，終不敗亡者，以有輪對之悔也。”又曰：“窮兵黷武者，無他，以高帝遺平城之憂，爲言矣。然而資質如此，故末年能知其非，卽下輪對之詔，而且罷求神仙矣。”至唐太宗起兵時事，令講官，讀范氏史斷。王曰：“脅父臣虜之說，尤爲峻截矣。”論建成事曰：“大明太宗朝，漢王高煦，爲人不良，而仁宗爲太子，以恩愛待之，終仁宗之世，不敢有異心。使建成待太宗如此，安有喋血之變乎？”講宋太祖杯酒釋兵權事，講官曰：“此則近於</p>
--	--	--

	<p>하였다. 이에 전 예조 판서 정지화(鄭知和), 참의 이준구(李俊耆), 정랑 이유원(李惟源), 좌랑 오시복(吳始復) 등이 모두 옥에 갇혔다. 또 하교하기를,</p> <p>“신해년(1158)에 봉심하고 올린 서계는 더욱 형편이 없다. 그때 봉심한 신하들을 아울러 잡아다 심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라.”</p> <p>하였다. 그때의 대신 판부사 정치화(鄭致和), 선공감 제조 좌의정 김수항은 먼저 직을 파면한 다음 죄명을 기다리게 하고, 전 관상감 제조 남용익(南龍翼), 예조 좌랑 안한규(安漢珪) 등은 모두 옥에 가두고 관직을 삭탈하였다. 얼마 뒤에 한재로 인하여 심리를 청해 모두 석방되었다. 이에 전 참의 장응일(張應一)이 상소하기를,</p> <p>“영릉 석물(石物)에 틈이 생긴 일은 국가의 큰 변고 중 이보다 더 큰 변고는 없습니다. 보충해 덮은 흠이 단단하지 않았거나 사람의 계획이 잘못되어 그러한 것입니까?택조(宅兆)가 이롭지 못하고 신도(神道)가 편치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까?</p> <p>우러러 생각하건대 성상께서는 놀라고 두려워하셨을텐데 어떻게 마음을 안정하셨습니까? 처분이 어떻게 내릴지 귀를 기울이느라 밤낮으로 우울해 하던 중 전후 비망기(備忘記)를 보고서야 비로소 능의 일을 감독하였던 신하들과 봉심한 대신이 모두 죄를 받았으며 성상께서 능을 옮겨야겠다고 결심하시어 분부를 내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불행 중 다행한 일로서 국가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자, 심리하라는 명이 계시고 봉심한 대신의 불경하고 불충한 죄까지 모두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p>	<p>權謀也。”王曰：“何傷乎？是乃悅服人心也？”至眞宗以天書告太廟曰：“自欺猶不可，其可欺祖宗在天之靈乎？眞宗初政，亦足可觀，而爲儉小所誤，不能善其終，甚可戒也。”王臨筵講說，嘉言甚多，而不能殫記。停講之日，又令儒臣，考閱史傳，書進故事之切於治體者。嘗曰：“其所書進，非徒故事可觀，且多諷曉之意，予當惕念焉。”數招近臣夜對，講劇經史，詢及民事，情義相孚，有若家人父子焉。王有眼患，而對燭看書。臣僚慄恟傷，王曰：“冬夜甚長，且予無寢，三更前，不能就寢，不得不看書矣。”後眼患甚，令玉堂，寫進四書、五經，大其字樣，以便覽閱。雖在疾疾之中，其孜孜典學如此。禮貌大臣有言，未嘗不屈意從之。有病則問以醫藥，既歿則限喪期仍給俸，或竝給祭需，或有特賜几杖者。王承先王重儒之志，待宋時烈、宋浚吉等，恩遇甚隆，至於李惟泰、李翔諸人，亦被招延，竝以殊禮遇之。時烈終膺大拜，浚吉位至三宰。及時烈、浚吉等誤禮事發，而有黨私排異己之心，時烈遷陵後，陳疏追咎，王惡其</p>
--	---	--

전하께서 대신을 극진히 대우한다고 할 만합니다만, 선왕을 섬기는 도리로 볼 때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심리한다는 것은, 죄가 크더라도 정상에 용서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만, 이번 봉심한 대신의 불경하고 불충한 죄에 대해 전하께서는 혹 용서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불경·불충은 신하의 큰 죄로서 왕법(王法)에 있어서 용서하지 못할 바인데도 전하께서 이처럼 법을 굽혀 죄를 사면해 주시니, 신은 아마도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능침(陵寢)을 봉심하는 일은 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두 대신이 성상의 뜻을 체득하지 아니하고 다만 인정에 얽매어, 명을 받들어 봉심하고는 사실대로 아뢰지 않아 전하로 하여금 지금에 와서야 변고를 아시게 하였습니다. 이는 성상의 마음에 있어서 참으로 원수로 여기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완전히 석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차라리 신하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말지 감히 대신을 상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비록 이러한 생각이 계신다 하더라도 신릉(新陵)의 역사를 끝마칠 때까지 꼭 참고 기다렸다가 꼭진히 그들의 입장을 돌봐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심리를 거행해서 마치 조위봉(趙威鳳)의 말에 색책(塞責)한 것처럼 하신단 말입니까.

아, 도로에서 전해 들은 바로는 탐전에서 다시 봉축(封築)하자는 말씀을 드린 자가 있다 하는데, 마음을 흉참(兪慘)하게 쓴 죄는 봉심한 신하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의 좌우에 모시는 대소의 신료가 이처럼 믿을 수 없으니 어찌 뒷날 능을 옮길 적에 영릉의 전일 근심이 없다고 보장하겠습니까. 재궁(梓宮)을 옮겨 모시는 일은 더욱 대신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는 신구(新舊)의 두 능에 직접 가시어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고 반드시 신실하게 하는 효도를

偏僻，恩遇乃衰。始王之遇時烈等，誠禮備至，復出前古，朝野想望其風采。而時烈等，不克欽承，無能裨補，以取顛隳，以至二三左右之臣，亦牽制浮沈，迄無擔當勳翼，以有成績，民皆有君無臣之嘆焉。王待群臣寬厚，常曰：“爲君之道，以猜疑臨下，下必有不安心，惟當推誠待之耳。”務開言路，雖磨戾訐直者，必開納而優容之，或加褒賜，以獎勵之。雖草野微賤之言，必令採錄，或除官，或施賞。近臣有燒燼家舍者，特令地部濟恤。其死也，有賢勞行誼，或以廉謹著稱者，例賻之外，別賜棺材，或助之喪、祭需及役丁，並濟其妻子飢寒，故勳臣妻子，亦如之。壬寅，清國遣查使，以義州府尹李時術，許本府人越江伐木，斷以極罪。王反覆爭辨，不得解，則特賜時術五百金，以爲賂遺紓禍之資。優接查官，繼遣使臣球解之，時術賴而全活。其體下類此，憫朝著乖離，每以同寅協恭之道，策勸之，方伯、守宰之辭朝也，非有疾，輒引見，問何以爲治，申之以撫字之方。又問前任時弊瘼，隨所陳啓，卽令變通。

	<p>다하소서.”</p> <p>하였다. 소가 들어가자, 왕이 비답하기를,</p> <p>“네 소의 사연을 보니 나의 성효(誠孝)가 형편없는 것이 한스럽기만 하다.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여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능의 일을 감독한 사람의 죄는 더없이 중대하다. 상소의 뜻도 또한 옳으나 그 밖의 일은 곡절이 각각 다르니, 뜬 소문은 사실과 틀리다.”</p> <p>라고 하였다. 장령 성호징(成虎徵)이 아뢰기를,</p> <p>“의도가 음험하고 말에 조리가 없으며 위아래를 이간하고 있으니 관작을 삭탈하고 내쫓으소서.”</p> <p>하고, 대사간 신정은 소를 올려 ‘장응일이 선왕의 능침에 일이 생긴 것을 빙자하여 간사한 계책을 부리려 한다.’고 배척하였다. 응교 이선(李選)이 또 소를 올려 논핵하였는데 그 내용에,</p> <p>“종통(宗統)·적통(嫡統)의 설은 당초에 화를 전가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윤선도(尹善道)가 앞장서서 주동하고 조경이 뒤에서 응하였는데 능침의 일에는 또 얼굴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바라는 바는 오로지 능의 구덩이에 물이 고이고 재궁(梓宮)에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의심적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이끌고 일어나서 조정을 어지럽히고야 말려고 할 것입니다. 조위봉의 소가 익수의 뒤에 잇따라 나왔는데, 기회를 타서 교묘하게 중상하는 말이 도리어 칭찬의 비답을 받았습니다.</p>	<p>收用人才，不遺遐僻。以西北兩路地遼遠，濟州海島，特遣重臣、近臣，取士賑民，遠人咸鼓舞焉。申明鄉薦之法，又令宰臣、三司，別薦人才，有才能特異者，不拘常格而擢用之。又常申飭吏曹，錄用戰亡及清白吏子孫，昏朝時冤死者，亦命贈職。竝錄其後，忠臣、賢士之卓異者，或建祠贈爵，或樹碑表墓，或官其裔，或復其戶，褒崇之典，殆無闕遺。孝子、烈女，行實之表著者，輒加旌褒，遍及氓隸。嘗與筵臣，論及世祖朝成三問事，王曰：“成三問等，皇明、方孝孺諸人者流也。”其褒忠尚義之意如此。憂勞民事，出於至誠。如遇象緯之變，水旱之災，輒避殿減膳，罪己求言，前後哀痛之教，有臣民不忍聞者。每當祈雨，雖非親祭，必宿齋於宮中，終夜露立默禱，到祭罷時分，始乃安歇。若遇災荒，引接臣僚，講究消弭之策，大舉賑救之政。爲之除租庸、蠲逋負，或移粟而濟之，或設粥而哺之。疫癘則分遣良醫，齋藥而救之。又遣近臣，行厲祭，祭國殤。節御廚朝夕之供，停外方朔節之獻，罷酒房，放廐馬，以至</p>
--	---	--

	<p>이번 장응일의 소가 또 천리에서 이르렀는데 10일 안에 이른 연왕(燕王)의 글과(1159) 같은 바가 있습니다. 장응일의 죄를 어서 다스리어 간혹한 무리를 단속하소서.”</p> <p>하고, 장령 김수오(金粹五), 헌납 김석주(金錫胄)는 장응일을 먼 곳으로 귀양 보내자고 청하였다. 왕이 경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p> <p>“이선(李選)의 소는 말 뜻이 조리가 없다. 그가 장응일이 한 일에 노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침에 저촉된 말을 하였다. 당초에는 처벌하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반드시 ‘장응일은 죄주지 않고 이선을 죄준다.’고 말할 것이므로 잠시 참고 있었다. 장응일이 올린 소의 사연도 올바르지 않으니 멀리 귀양보내고 이선은 관작을 삭탈하라.”</p> <p>하였다.</p> <p>9월에 구릉(舊陵)을 열어보니, 아무 탈이 없었다.</p> <p>10월 7일에 여주(驪州) 홍제동(弘濟洞)에 옮겨 모셨는데, 관과 구덩이에 부수되는 물품에서부터 의위(儀衛)와 상설(象設)에 이르기까지 신중히 하지 않은 것이 없다. 거기에 드는 비용은 모두 내탕(內帑)1160)에서 가져다 마련하였고 백성에게 징수하지 않았다.</p> <p>능을 파려 할 적에 왕이 친히 구덩이를 보려고 하자, 김수홍·장선징 등이 힘껏 말렸다. 처음 능을 팔 적에 봉축(封築)이 견고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옮겨 모신 뒤에 왕이 또 중신·근신·내신(內臣) 등을 보내어 살펴보게</p>	<p>日用供上之物，亦皆裁損。又屢發內藏各衙門宿儲，以助賑施，其所以惠解窮民者，不一其政，而久而愈篤焉。常曰：“每念民飢，食不下咽，寢不安席。苟有一事，可以活民者，有何可惜之物乎？”罷賑之後，又遣御史，廉問諸道守宰賑政能否，而陟罰之。至于庚、辛兩年，八路大飢，仍之以大疫。王日夜焦勞，悉誠拯救，尤無所不用其極。壬子春，又宣諭國內積年逋賦，悉行蕩滅，仍命罪囚及廢錮者，並決放收斂，民情大悅。以是，雖年歲大荒，道殣相望，而暴民不作，邦本不搖。中外以水火溺燒，猛獸所害，聞者，亦必令舉行卹典。冬月，慮衛卒寒苦，特命賜襦衣。嘗謁陵寢，當禾稼未穫之節。王下令曰：“扈駕諸臣、廂將所經處，如有一草損傷，難免犯令之責。”行過，又令檢視。其幸溫泉時，王曰：“道路修治，厪容駕馬毋或廣占，損害民田。”見溫泉近處，民有空家舍處，從官而自爲露居者，深加務愍，命給米豆，以爲糊口之資。還京，近侍有自溫泉還者。王問有禾稼傷處乎？對以鋪仗近處，有些損害，</p>
--	---	---

	<p>하였는데, 구릉(舊陵)의 구덩이에 물이 스며들고 벌레와 뱀의 자취가 있었으며, 또 더러 나무와 돌을 뒤섞어 쌓은 것도 있었다. 왕이 못 신하들이 큰 일을 신중히 하지 않은 데에 노하여 하교하기를,</p> <p>“구릉(舊陵)의 능 위의 석물을 이미 철거하여 헐어버렸으나 그때 간심(看審)한 도감의 당상과 낭청 등의 죄에 대해 형률을 상고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p> <p>하고, 모두 잡아다가 가두게 하였다. 도감 당상 정치화(鄭致和)는 신해년(1161)에 봉심한 대신으로 사실대로 아뢰지 않았다 하여 관작을 삭탈당했다. 왕이 또 명하여 잡아다가 신문한 다음 사형을 감면하고 유배하게 하였다. 그리고 낭관 신명규(申命圭)·이정기(李鼎基) 등은 일죄(一罪)1162)로 논하게 하자, 대간이 이를 여러 달 동안 논쟁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뒤에 대신의 말에 의해 사형을 감면하고 멀리 귀양보냈다.</p> <p>당초 구영릉의 자리를 잡을 적에 우의정 송시열이 실로 주장하였다. 이때에 와서 상소하여 ‘개축(改築)해야지 옮겨 모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였는데 그 내용에 이르기를,</p> <p>“구릉의 신혈(神穴)은 매우 편안합니다. 당초 땅을 한 자쯤 파본 뒤에 이미 구덩이에 탈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일을 맡은 신하들이 망극(罔極)한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개봉(改封)하자는 의논을 감히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신릉(新陵)이 길지임은 비록 옛날부터 일컬어오던 바입니다만, 어찌 지극히 편안한 땅에 그대로 봉안하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또 표석(表石)에 관한 일은 전하께서 이미 사간원의 비답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p>	<p>王命優給其直。其惻恒憂愛，有如此者，嘗查八道軍案，除兒弱及身故者，二萬名納布。特下內司綿布，又發常平銀布，監、兵水營所儲，以補內外之費，然我國素無戶口之賦，只以軍卒納布，以爲經用，民久病之。王知弊源有在，甲寅，用臺臣言，方欲大變通，以圖永遠，而事不及就焉。各司奴婢貢布偏重，久爲痼弊。王特令減捧內奴之貢，竝令均減。內司財用，因此益匱，而王不恤焉。先朝行兩湖大同法，以均賦便民，湖南山郡未及行。王就其功緒，益加區畫，而遍行之，民甚便之。王家法甚嚴，宮廡肅如，內外截然。宰臣、諫臣，嘗言戚屬宮禁事，有失實。王曰：“予苟無一毫私意，人言必不至此。”又曰：“有則改之，無則加勉。雖言或失實，畢陳所聞耳，有何所嫌乎？”嘗以長番內官，受由下鄉時，作弊外方，譴罷內官，以不啓知，特推其道監司。王性喜篤實，不喜近名。在宮中行事而善，或欲使人聞知，則心甚厭之，侍者知其意，亦不敢宣言于外。尤好儉約，非表衣，不服錦綺。嘗有疾，晉接臣僚于大內，</p>
--	---	--

	<p>국가의 복이 아니다.’ 하였고, 국구(國舅)의 말은 곧 신을 지척(指斥)한 말이었는데 정지하라는 명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의 마음에 실로 이것을 그르케 여기고도 강행을 하신 것이니 아마도 성신(誠信)으로 하여 뉘우침이 없게 하는 도리가 아닌 듯합니다. 성명(聖明)께서는 다시 조정의 신하에게 물으시어 옳고 그름을 자세히 살핀 다음에 시행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결정한 뒤에야 사리를 얻게 되고 명분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다시 어물어물 구차히 하여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p> <p>신이 또 들건대, 성명께서 김만중(金萬重)이 상신을 공박 배척한 것은 무슨 기대가 있어 한 것이라 하셨다는데 외간에 떠들썩하게 전파되어 ‘김만중이 기대한 바는 곧 송시열이다’고 합니다.</p> <p>아, 김만중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다 하더라도 어찌 신의 오늘날 처지가 스스로를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신에게 기대하였겠습니까. 성명께서는 신의 실정을 양찰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김만중의 위인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일전에 전하께서 매양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는 서로 마음을 아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하교하셨는데, 어찌 오늘날 이처럼 성명의 알아줌을 받지 못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p> <p>하니, 왕이 비답하기를,</p> <p>“경의 소를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고 의아해 하였다. 경이 선조(先朝)에 은혜를 받은 것이 특별하였으므로 내 생각으로는, 선릉(先陵)의 일을 위해 경이 반드시 물불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일은 경에게 바라던 바에 크게 어긋났을 뿐만 아니다. 능 안에 빗물이 스며들어 고여</p>	<p>房中所鋪茵席，敝甚不改。 臣僚退而感歎焉。 王存心正學，深惡異端。 既撤兩尼院，凡先王御板之在佛宇者，亦命禁之。 嘗曰：“淫祀之無益有害，不難知也。 閭巷夫婦之愚，固不足責，士夫家，亦有此事，予實未曉也。” 御板者，僧家供佛時，列書御坐，謂之侍食，目前代因循者也。 王敦尚學校。 嘗親釋菜于太學，印頒經書于中外，又設校正廳于泮宮，經書字畫音義之差謬者，一皆正之，以惠四方之學者。 戒存不虞，修飭軍政，引接將臣，論說忘倦。 或臨苑囿而閱武，或因行幸而觀兵，行陣之法，兵甲之制，靡所不講。 兵曹判書金佐明， 投進中朝《紀効新書》及《練兵實紀》等書， 王卽令頒布，使之習行。 新設訓練別隊，又設精抄軍，令本兵兼行大將事。 蓋欲團束精勇， 儲峙糧械， 以爲緩急之備。 而又欲發遣御史， 巡撫湖嶺三道及濟州， 審察海坊， 整理舟師， 而未及焉。 居常留意詰戎， 不忘武備， 蓋不惟以嚴宿衛、固邊封而已， 亦將默運神機， 靜觀天下之變， 而紹述先志焉爾。 臺臣嘗諫， 冗兵不罷， 王曰：“非予好兵而</p>
--	---	--

	<p>있는 상황과 석물이 탈난 일은 경이 익히 보고 들었으며, 현궁(玄宮)에 흠이 없음은 외면으로 알 수 있는 바가 아닌데 어찌 개봉(改封)하자는 의논을 한단 말인가. 이게 내가 의혹하는 바로서 경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p> <p>금일 능을 옮기는 일은 풍수(風水)의 설에 미혹된 것이 아닌데, 경의 소에는 마치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더욱 놀랍고 의혹되어 경의 뜻을 알지 못하겠다. 간원에 내린 비답에 있어서는, 최후상(崔後尙)을 체례(體例) 사이의 일로 책망한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경을 논하지 않은 것을 그르게 여기는 뜻이 조금이라도 있었겠는가. 하물며 김만중의 말은 매우 터무니없어서 내가 놀라고 분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경을 기대하였다.’는 말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경에게 전파한 것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경의 사양하는 소는 불평스런 말이 아닌 것이 없는데, 도리어 내 말을 이처럼 극심하게 의심하니 실로 나의 성의가 서로 믿게 하지 못한 소치이므로 부끄럽고 한스러울 뿐이다. 다시 무슨 말을 많이 하겠는가.”</p> <p>하였다.</p> <p>송시열이 재차 소를 올려 그전의 설을 거듭 아뢰었으나, 회보하지 않았다.</p> <p>이보다 앞서, 송시열이 선왕의 능에 표석(表石)을 세우자고 청하였는데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이 불가하다고 말하자, 사간 최후상(崔後尙)이 김우명을 탄핵하였다. 왕이 비답하기를,</p> <p>“비록 대신이 건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다. 만일 이를 핑계로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의 복이 아니다.”</p>	<p>然也。若或深思，可知予意，非出於置國家危亡之勢，徒以兵爲事者也。”</p> <p>又嘗與侍臣，論事大交隣事，有不曉上意而爲言者。王歎曰：“交隣事大，勢有不同爾。予雖年少否德，祖宗、父兄百世之讎，何敢忘也？”北鄙牧守武官貪縱。復設兵馬評事，必以銓郎及玉堂官差送，爲彈壓之地。故評事鄭文孚，當壬辰變亂，有功於北方，因道臣陳請，特命超贈貳公，同時南北道義士二十人，悉加追褒，一方聳動。倭使之來，亦必極選從臣，接慰于境上，俾不失其歡。倭〔使〕固請移館于熊川，而竟不許，蓋慮其移近內地，以貽日後之患也。王於刑獄，尤加詳慎。每於大寒暑，輒令承旨，馳往典獄署，放釋輕囚。嘗謂承旨曰：“宜令該曹，卽決繫囚，雖一日再覆，勿拘常規。”又嘗曰：“死囚三覆之意，豈偶然哉？罪當死者，必欲其殺，不當死者，必欲其不殺，乃其本意也。”又念久囚寒凍，命給口糧、襦衣。王素有宿恙，而勤於聽政，疾間，常令承旨持文書入侍。內、外官吏有缺，輒命銓官，隨卽填差，未嘗淹過數日，蓋慮職事之</p>
--	--	---

	<p>하였다. 또 교리 김만중이, 뵘기를 청하여 영의정 허적(許積)은 백관의 윗자리 【정승.】 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니, 왕이 ‘대신을 망령되이 논하여 국가의 체통을 떨어뜨렸다.’ 하여 잡아다가 국문하였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처럼 말한 것이다.</p> <p>이 해 9월에 청풍 부원군 김우명이 인대(引對)를 통하여 아뢰기를,</p> <p>“전 교관(敎官) 민업(閔業)의 손자인 민신(閔愼)의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몹쓸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대신 복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민업과 민세익(閔世翼)이 모두 자식이 없는 셈이고 민세익 및 민세익의 아들도 모두 아버지가 없는 셈입니다. 성명의 세상에 이런 사람을 도성 안에 살게 할 수 없습니다.”</p> <p>하니, 왕이 하교하기를,</p> <p>“부자 사이의 큰 윤기가 한 번 어긋나면 사람이 어찌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비록 위문하러 온 손님의 지시에 부딪겨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민신이 어떻게 그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p> <p>하고, 조사 신문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대개 민신의 일은 전 진선(進善) 박세채(朴世采)가 시킨 것이었는데, 박세채는 송시열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논평하는 사람들은 ‘송시열의 이 논의는 윤리에 어긋나고 교화를 손상하는 것으로서 아버지를 무시한 데에 가깝다.’ 하였고, 왕도 그를 그르게 여겼다. 송시열이 상소하여 ‘민씨(閔氏)의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복을 입은 것은</p>	<p>曠，而弊及於民也。 甲寅大妃昇遐。 王常痛早孤，又以不得久養母妃，爲至恨，疏食水飲，哀戚踰制。 群臣固爭，雖強副從權之請，而每臨餐，嗚咽不自勝。 凡葬祭之需，禮事之節，必誠必謹。 大妃嘗移御慶德宮，至是返虞於昌慶宮，王亦還舊御。 觸目追感，傷痛益切，終日默坐，不能頃刻忘哀也。 旁側左右，莫不感愴。 魂殿之奉，一象平昔節物，薦獻絡續，於山陵饋奠之奉，必親自檢飭監進。 奉諱前一日，不得親視，猶問其精否如何，翌朝又連問之。 王疾甚，聞窓外風聲曰：“此害穀之風耶？吾何以又聞此聲也？” 其孝親憂民之心，炳如於屬纊之前者如此。 襦匣、衣櫛，皆自內備，不令度支，徵尺寸於市民，蓋我中宮暨嗣王，克體王平日恤民、崇儉之至意也。 中宮金氏，本貫清風，領議政堉之孫，中廟朝賢臣大司成湜之六代孫也。 誕一男三女，男卽我嗣王殿下。 女長明善公主，次明惠公主，皆未家而夭，季明安公主，未笄。 嗣王妃金氏，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萬基之女。 辛亥春，受冊爲嬪，今進位中宮。 糞土愚臣，無所知識，</p>
--	--	--

	<p>본디 선유(先儒)인 주자(朱子)의 설이다.’라고 하면서 논변해 마지않았다. 또 소를 올려 아뢰기를,</p> <p>“신이 매양 고려의 일을 생각할 적마다 한심함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려 때에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심지어는 연산(燕山)1163) 에 참소하고 권세를 부린 자도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 임금이 앞에서 참소하여도 알지 못하고 뒤에 적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때 신하의 죄야말로 머리털을 뽑아가며 책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신하가 강하다.’는 설이 갑자기 만 리의 밖에서 나오고, ‘권세가 위에 있지 않다.’는 말이 상신의 소에서 잇따라 나오니, 대소 신료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신이 탄핵받은 말은 실로 저 정승과 같습니다. 비록 그 이름을 조금 바꾸었으나, 신이 전일에 남을 위해 위태롭게 여겼던 것이 신이 당할 줄을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p> <p>하고, 또 아뢰기를,</p> <p>“삼가 듣건대, 경연의 신하가 탑전(榻前)에서 ‘민씨의 집 일은 조정에서 조사해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성명께서 ‘인륜에 관계된 일이므로 그냥 둘 수 없다.’ 하셨다 합니다. 이는 경연의 신하가 마치 신을 위해 그 일을 저지시켜 신의 죄를 덮어주려는 것처럼 하였고 전하 역시 신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였는데 신은 의리로 보나 법으로 보나 두려워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p> <p>하였다. 대개 이때에 연경(燕京)에서 ‘신하가 강하다’는 설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신이 돌아와서 주달하였고, 또 김우명이 뱃기를 청할 때에 송시열을</p>	<p>既受嗣王命，略序次王言動紀年如右，輒拜手稽首而言曰：“於戲！王聰明徇知，淵毅沈潛，有寬裕溫恭之德，有博厚敦大之度。孝友出於天性，仁愛孚於下民。在位十六年間，敬天勤民之心，可質於神明。檢身若不足，求善若不及，兢兢業業，一日二日，雖運值屯否。時際艱虞，水旱、風霜之災，無歲無之，民人〔疵〕癘，禽獸逼人，而王乃憂勞惕勵，以格天心，惻怛忠愛，以保民生。內無聲色之娛，外無遊佃之樂。凡前代帝王所以縱欲行私，敗度亂德之事，舉不能入於心。而疑於行。陳、夏竝用，而不害慶曆之治，王、呂柄事，而寔發中朝之嘆，以成元祐之泰亨。典禮明而彝倫敍，邪說熄而人心正。使吾民口誦而心語者，未嘗不曰：“吾王之德，漢文帝、宋仁宗，不是過也。至於闕無君無父之說，俾一世著於君臣之義，父子之倫，又大有功於斯道焉。雖臣民無祿，天不享與遐齡，然其仁心、仁聞，入人之深者，實有沒世不忘之思，卓然爲東方盛德之主焉。嗚呼！休茲。昔周之王季，積善累仁，以啓文光武烈之業，漢之文、</p>
--	---	---

	<p>가리켜 논하면서 ‘사람들이 감히 그의 그림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송시열이 이것을 스스로 혐의스럽게 여겨 이 말을 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경연의 신하란 김만중이다. 왕은 그 말에 답하지 않고 ‘내 뜻은 전에 올린 소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다 말하였다.’라고 비답하였는데, 대개 불쾌하게 여긴 것이다. 당시 논평하는 자가 말하기를,</p> <p>“송시열이 주장한 기해년(1164) 상복 제도는 사인(士人)과 서인(庶人)의 예로써 제왕가(帝王家)에 썼고, 민신(閔愼)이 아버지를 대신해 복을 입은 것은 제왕가의 예로써 사인·서인에게 행한 것이다. 그 논설을 미루어 나가면 장차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인데 송시열이 뉘우칠 줄을 모른다. 또 ‘서(庶)’란 글자는 이미 종묘 사직을 주관한 이에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몰랐다.”</p> <p>하였다.</p> <p>갑인 15년 2월에 왕대비가 승하하였다.</p> <p>6월 4일에 인선 왕후(仁宣王后)(1165)를 영릉(寧陵)에 장사지냈다.</p> <p>이해 여름에 가뭄이 들자, 옥당(玉堂)이 차자를 올렸는데 비답하기를,</p> <p>“아, 부덕한 내가 왕위에 있었기에 신명(神明)에게 죄를 얻어 수재·한재·풍재(風災)·상재(霜災)가 거르는 해가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망극한 재앙을 당하게 하였으니, 항상 이를 생각하면 먹는 것과 쉬는 것이 편치 않다. 금년 여름에 이르러 한발의 흑심함은 근고(近古)에도 드문 일</p>	<p>景，躬行恭儉，以基建元濯征震〔伐〕之功，宋之仁宗，至誠深仁，終始一德，君子謂社稷靈長，終必賴之。若我顯考，勝殘去殺之德，誠小民疾敬德之道，誠無讓古之哲王諠辟。盍觀我紀年之牒乎。一則曰吾民，二則曰吾民，無一念不在乎民也，無一日不事乎民也。情深而化孚，民感而天應，固天之將大啓我文子文孫孺子王，新周邦，永殷命，續《春秋》尊攘之圖，以爲我國家萬億年無疆之休者。猗歟！休哉，嗚呼！盛矣。</p> <p>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成均館祭酒五衛都摠府都摠管臣尹鑄，撰進。</p>
--	---	--

	<p>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다 보면 한밤중에도 놀라 일어나 하늘이 과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창생으로 하여금 그 재앙을 대신 받게 함을 몹시 슬퍼하고 있다. 차라리 속히 죽어 민생의 곤궁함에 조금이라도 답하는 것이 더 낫겠다.”</p> <p>하였다.</p> <p>7월에 영남 유생 도신징(都愼徵)이 상소하여,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복제(服制)에 대해 논하기를,</p> <p>“대왕 대비(大王大妃)1166) 께서 마땅히 만며느리를 위하여 기년복(碁年服)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국가의 복제는 도리어 중서부(衆庶婦)1167) 의 복을 대공복(大功服)으로 정하였으니, 나라의 법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운기를 전도 시킴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p> <p>하였다. 소가 정원에 이르자, 정원이 여러 차례 기각하였는데 오래 있다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 뒤에 수일만에 왕이 대신을 불러 보고 하교하기를,</p> <p>“기해년1168) 의 복제는 대개 시왕(時王)의 제도를 사용하였다. 지금 9개월의 복제[大功服]가 기해년의 복제와 같은지의 여부를 아울러 상고해 내되 ‘원임 대신, 육경(六卿), 정부의 동·서벽(東西壁),1169) 판윤(判尹), 삼사의 장관이 모여 의논하여 아뢰어라.”</p> <p>하였다. 드디어 빈청(賓廳)에서 회의하여, 기해년에 수렴한 의논을 상고해 내어 들었다. 왕이 이르기를,</p>	
--	--	--

	<p>“만일 등록(騰錄)만 상고해 내고 말려고 하였다면 하필 대신·육조·삼사의 장관에게 회의하도록 하였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p> <p>하였다.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김수항(金壽恒), 영의정 김수흥(金壽興), 호조 판서 민유중(閔維重), 병조 판서 김만기(金萬基), 이조 판서 홍처량(洪處亮), 대사헌 강백년(姜栢年), 형조 판서 이은상(李殷相), 한성 판윤 김우형(金宇亨), 예조 참판 이준구(李俊耆), 예조 참의 이규령(李奎齡), 부응교 최후상(崔後尙), 헌납 홍만중(洪萬宗)이 같은 사연으로 대답하기를,</p> <p>“옛날 기해년에 신하들이 이미 시왕(時王)의 제도를 사용해 기년복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전(大典)》의 복제를 다시 상고해 보니, 다만 ‘아들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장자(長子)와 중자(衆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지금 복제를 의논해 정하는 날에 해조에서 바로 부표(付標)하기를 청한 것은 또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p> <p>하였다. 왕이 다시 하교하기를,</p> <p>“계사(啓辭)가 분명하지 못하다. 대왕 대비께서 오늘날 기년복과 9월복에 어느 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귀결처가 없단 말인가?”</p> <p>하자, 영의정 김수흥이 대답하기를,</p> <p>“오늘은 다만 기해년의 복제를 의논하였을 뿐이고, 대왕 대비께서 대비에게 어떤 복을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감히 가며이 먼저 의논해 정하지 못하였</p>	
--	---	--

	<p>습니다.”</p> <p>하였다. 왕이 또 탐전에 불러들여, 물음에 대답하지 않은 의도를 힐문하니, 김수홍이 황공하여 사죄하고 글로 써서 아뢰겠다고 청하였다. 드디어 나가 빈청(賓廳)의 신하들과 재차 계사를 올리기를,</p> <p>“《대전(大典)》에서 복제를 상고해 보니, 장자(長子)의 아내에게 기년복을 입어주고 중자(衆子)의 아내에게는 대공복을 입어준다고 하였을 뿐 승중(承重)의 여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시다. 이로써 살펴보면, 대왕 대비의 복제는 대공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므로 정희 왕후(貞熹王后)가 장순 왕후(章順王后)의 상에서와(1170) , 소혜 왕후(昭惠王后)가 공혜 왕후(恭惠王后)의 상에서(1171) 반드시 이미 행한 제도가 있을 것이니, 춘추관(春秋館)으로 하여금 《실록(實錄)》에서 상고해 내게 하소서.”</p> <p>하였다. 왕이 《실록》이 강도(江都)에 있어 상고해 내기 쉽지 않다 하여 다시 모여 의논을 드린 뒤에 《실록》을 상고해 내게 하였다. 김수항·김수홍 등이 또 ‘《대전(大典)》에 장자(長子)와 중자(衆子)의 복은 모두 기년으로 되어 있다.’라고 대답하면서 아뢰기를,</p> <p>“만일 차례로 논한다면 저절로 장자·중자의 구별이 있습니다만, 중자가 왕통을 계승할 경우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조문은 국가의 법전에 뚜렷이 나타난 곳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복제는 국가의 법전 이외에는 억견(臆見)으로 가벼이 의논하기 어렵습시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	---	--

“기해년 복제를 의논해 정할 때에 장자·중자에 대한 말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감히 대공의 설을 말한단 말인가? 《대전》의 오복조(五服條)에 왕통 계승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은, 비록 시왕(時王)이 제정한 예라 할지라도 이게 곧 미비한 점이다. 시왕이 제정한 예라고 핑계대고 《예경(禮經)》을 참고하지 않으니 오늘 회의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빈청(賓廳)에서 재차 계사를 올려, 《의례(儀禮)》 주소(註疏)의 4종 중에 ‘체(體)이기는 하나 정(正)이 아니면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體而不正不爲三年]’는 말을 인용하여, ‘국가의 법전이 《예경(禮經)》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승지 김석주(金錫胄)에게 명하여 《의례(儀禮)》 경전(經傳)의 ‘아버지가 장자를 위하여 입는다.[父爲長子]’는 조목의 주소(注疏)를 문단마다 해석하여 들이게 하였다. 이튿날 재차 올린 계사에 답하기를,

“계사가 터무니없어 나도 모르게 놀랐다. 경들은 모두 선왕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와서 감히 ‘체이기는 하나 정통이 아니다.[體而不正]’라는 설로 오늘날의 예율을 삼고 있다. 《예경(禮經)》 주석 중의 ‘서자(庶子)라고 한 것은 장자와 엄격히 구별한 것이다.’는 설은, ‘4 종(種)은 삼년복이 될 수가 없다.’는 문귀와 관통되지 않는다. 가공언(賈公彦)의 소에 이미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嫡妻)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우는데 이 역시 장자(長子)라고 부른다.’ 하였으니, ‘체이기는 하나 정통이 아니다.[體而不正]’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들이 이처럼 이치에 가깝지 않은 어긋난 말을 예율로 정하여 선왕을 ‘체이기는 하나 정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목하였으니 임금을 박하게 대우하였다고 하겠는데, 누구에게 후하게 하려고 한 것인가? 막중한 예를 의탁한 논의를 가지고 정제(定制)라고 결단할 수 없으니 당초에 마련한 국가의 제도

	<p>에 따라 정하여 거행하라.”</p> <p>하였다. 또 정원에 전교하여, 기년으로 고쳐 표지를 붙이게 하고, 예관을 잡아다가 신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였다. 예조 판서 조형(趙珩), 예조 참판 김익경(金益景), 예조 참의 홍주국(洪柱國) 등을 모두 하옥하고 대공(大功)의 복제를 고쳐 기년으로 정하였다. 또 전교하기를,</p> <p>“대신의 직책은 문서를 봉행하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일에 임하여 지조를 변하지 않아야만 곧 임금을 보좌하여 나랏일을 해 나갈 수 있다. 영의정 김수흥이 오늘날 복제에 관해 회의할 때 감히 수많은 어지러운 논설로 아뢰었으나 끝내 귀결처가 없었다. 혹은 인용해서는 안 될 고례(古例)를 인용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의 법전 몇 마디 말로 책임이나 때웠는가 하면 마침내 두서도 없고 이치에 가깝지도 않은 말로 ‘체이기는 하나 정이 아니다.[體而不正]’라는 말을 주창하였으니, 선왕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논의에 빌붙은 그의 죄를 결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 중도 부처(中途付處)하라.”</p> <p>하였다. 승지 이단석(李端錫), 사헌부의 이광적(李光迪)·유지발(柳之發)·송창(宋昌)·정창도(丁昌道)·김빈(金斌), 사간원의 이해(李穡)·송창(宋昌), 옥당의 조근(趙根)·권유(權愈) 등이, 예관을 나국하라는 것과 김수흥(金壽興)을 부처(付處)하라는 말을 도로 거두어 들이기를 청하였다. 왕이 승정원에게는 ‘번독(煩瀆)하게 한다.’고 꾸짖고, 대관(臺官)에게는 ‘규핵(糾劾)하지 못하고 직무를 거행하지 못한 데다 사정을 따르고 공론을 떨시한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옥당에게는 ‘터무니없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이광적·유지발 등은 관작을 삭탈하여 내쫓았다.</p>	
--	---	--

정원과 삼사가 또 그를 구원하였으나 왕은 모두 듣지 않았다. 좌참찬 이상진(李尙眞)이 또 소를 올려 구원하니, 왕이 ‘임금을 섬기는 데 의리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좌의정 정지화(鄭知和)가 또 차자를 올려 논하니, 왕은 ‘임금을 성실하게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답하였다. 대사간 남이성(南二星)이 또 소를 올려 논변하니, 전교하기를,

“남이성이 감히 이의를 제기하여 앞장서서 분노를 부리고 대신에게 아부하면서 감히 ‘반드시 오늘 빈청에서 의논해 올린 계사와 같이 해야만 국가의 전례(典禮)가 털끝만큼도 미진하다는 비평이 없을 것이다.’고 말하고 또 ‘각각 소견을 지키고 각각 그 논설을 펼 뿐이니, 여러 사람의 말이 어지러우므로 성인에게서 절충돼야 한다.’ 하였다. 어지러운 말이 성인에게서 절충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의 임금을 위해 후한 논의를 따르는 것이 옳은가, 반드시 4종의 조목 중 한 조항에 의거해 박한 논의를 따르는 것이 신하로서 바꿀 수 없는 의리인가? 또 감히 박한 쪽을 따라 도리에 어긋나는 논의를 따라야만 ‘털끝만큼도 미진한 비평이 없을 것이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의도인가? 이것은 임금을 무시하는 자의 말이다. 전후로 아부한 말과 임금을 잊어버리고 나라를 저버린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멀리 외딴 섬에다 귀양보내라.”

하였다. 승지 이합, 장령 안후태, 부교리 조근 등이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택하지 않고, 조근을 강서 현령(江西縣令)으로 특별히 보임하였다.

8월에 왕이 병이 들자, 승지를 급히 보내어 충주에 있는 영의정 허적(許積)을 불렀다. 왕의 병이 매우 위독하자, 허적을 침소로 불러들여 떠나갈 만한 의리가 없다고 하고, 또 이르기를, “경의 마음을 내가 아는 바이고, 나의 뜻을 경

	<p>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기(氣)가 부족하여 국가의 일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한다.”</p> <p>하였다. 또 좌의정 김수항을 불러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는 애써 유지하였다. 이날 저녁에 승하하니 18일 기유(己酉)였다. 대개 인조 대왕이 즉위하여 소현(昭顯)을 세자로 책봉하였으므로 효종 대왕은 차적(次嫡)이 되었다. 소현 세자가 죽자 세자빈(世子嬪) 강씨(姜氏)가 죄를 지어 폐위되고 그의 아들도 불초하였다. 인조가 이르기를,</p> <p>“소현의 자식은 결코 왕업(王業)을 짊어질 사람이 못 된다. 나라에 장성한 대군이 있으니 사직의 복이다.”</p> <p>하고, 효종을 대신 세자로 책봉하였다. 효종이 승하하자, 송시열·송준길·유계 등이 복제를 의논해 정하면서 ‘대왕 대비가 효종을 위해 입는 복은 서자(庶子)를 위해 입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 하니, 외부의 의논이 자못 시끄러웠는데 그 의논에,</p> <p>“대왕 대비가 대행 대왕(大行大王)1172) 에게는 왕통을 계승한 지존(至尊)의 복을 입어 주어야지 최복(衰服)으로만 제정할 일이 아니다.”</p> <p>하였다. 의논을 수렴하게 되자, 송시열이 또 ‘장자에게 기년복을 입는다.’는 국제(國制)의 설을 빌어다가 논설을 세웠으므로 기년의 복제가 드디어 행해졌다. 그러나 ‘장자에게 기년복을 입는다.’는 제도는 《대명률(大明律)》과 국조의 《대전(大典)》에 실려 있는 실로 사서인에 대한 제도의 법이고 왕조에 대한 전례(典禮)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못 의논이 더욱 불평하였다.</p>	
--	---	--

	<p>효종 상이 기년이 되자, 전 장령 허목(許穆)이 소를 올려 ‘기년복은 옳은 복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가공언(賈公彦)의 주소(注疏) 중 ‘둘째 아들을 장자로 세운 경우 삼년복을 입는다.’는 조문을 인용하여 송시열의 설을 깨뜨렸다. 이때 조정에서 허목의 말을 옳게 여긴 이가 많이 있었다.</p> <p>좌의정 원두표(元斗杓)가 차자를 올려, 당초 기년의 복제를 따른 것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나열하고, 대신·유신(儒臣)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자고 청하였다. 마침 전 참의 윤선도(尹善道)가 기년복제의 잘못에 대해 소를 올려 논하면서 심지어 ‘중사를 편히 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하라.’고 말하고 또 송시열이 어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조정 의논이 발각 뒤집혀 서로 편당을 지어 배척하였다.</p> <p>이때 승지 이유태(李惟泰)가 마침 부름을 받고 도성에 들어와서 ‘윤선도가 예를 논한다고 빙자하여 사림(士林)에게 화를 전가하려 한다.’고 말하고, 송시열도 의논 수렴에서 허목의 설이 옳지 아니함을 크게 지적하고, 또 단궁(檀弓)이 문복(免服)을 입고(1173) 자유(子游)가 최복(衰服)을 입었다(1174)는 말을 인용하여 그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허목의 설이 드디어 행해지지 못하고 윤선도는 귀양갔다. 우윤(右尹) 권시 또한 소를 올려 윤선도를 구원하다가 죄를 얻었다.</p> <p>얼마 뒤에 원두표가 또 차자를 올려 ‘제후(諸侯)가 중통을 빼앗는 의리’에 대해 진달하고 또 다시 복제에 대해 이유태·윤선거(尹宣擧)·심광수(沈光洙)·허후(許厚)·윤휴(尹鑄) 등에게 물어보자고 청하였다. 윤선거는 외방에 있었고, 허후의 의논은 가부가 없었고, 이유태는 기년복제의 의논을 따랐고, 심광수는</p>	
--	--	--

종통의 의논을 따랐으며, 윤희는 ‘오직 그 인심에 의거하면 대강(大綱)에 관계되고 선왕(先王)에게 어그러짐이 없다.’는 뜻으로 말하였으며, 영의정 심지원(沈之源), 영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은 국가의 전례로 말하였다. 왕이 다수의 의논에 따라 시행하게 하니 기년의 복제가 마침내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판부사 조정, 수찬 홍우원(洪宇遠), 전 참판 조수익(趙壽益)이 모두 소를 올려 윤선도와 권시를 구원하고 또 복제가 잘못되었음을 논하니, 대간의 논의가 크게 일어나, 혹은 귀양보내기를 청하고 혹은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뒤에 무릇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설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간사한 사람과 편당을 짓고 바른 사람을 미워하였다.’고 지목하였으므로 벼슬에 제수되지 않은 자가 거의 10여 년이나 되었다.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상을 당하게 되자, 예관이 처음에는 기년으로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복제를 정하였는데, 이는 대개 당(唐)·송(宋) 때 적부(嫡婦)에게 입어주는 상복의 제도를 사용한 것이다. 외부의 의논은 ‘효종 대왕이 이미 서자(庶子)가 되었으니 인선 왕후가 적부(嫡婦)가 될 수가 없다.’ 하면서 비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송시열에게 편당하는 자가 또 앞뒤(1175)의 복제가 다르다 하여, 예관 조형(趙珩) 등에게 부탁하여 대공(大功)으로 고쳐 표지를 붙여 들였는데, 대개 서부(庶婦)에게 입어주는 상복 제도를 사용한 것이다. 왕이 앞뒤가 진도되었다 하여 예관을 가두고 치죄하였다. 그러나 대공의 복제가 또한 시행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빈청(賓廳)에서 모여 의논하는 일이 있었는데, 7월 13일이었다. 왕이 깨닫고 뜻이 불끈 솟구쳐 친히 《예경(禮經)》을 고증하여, 《예경(禮經)》주소(注疏)의 ‘적처(嫡妻)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위도 또한 장자(長子)라고 부른다.’는 문구로 주장을 삼아, 대왕 대비의 복제를 대공에서 기

년으로 고쳐 입게 하였다. 이에 적통(嫡統)이 밝아지고 나라의 예가 엄해지는 동시에 인심도 흡족히 여기었다. 왕의 뜻을 여쭙어 보지 않고 마음대로 복제를 고쳤다 하여 예관을 죄주고, 《예경(禮經)》을 따르지 않고 다른 논의에 의탁하였다 하여 수상을 죄주었는데, 빌붙은 여러 사람은 모두 차례로 벌을 받았다. 또 장차 내치고 들어쓰는 일을 크게 밝혀 국시(國是)를 바르게 하고 종묘를 존중되게 하려 하였는데, 왕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

8월 7일에 다시 재신(宰臣)을 불러 빈청에 모이게 하고 불러들여 일을 의논 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12일이 지나 창덕궁(昌德宮)의 재려(齋廬)1176)에서 승하하니 춘추 겨우 34세였고 왕위에 있던 지 15년이였다. 아, 슬프도다!

왕이 어려서부터 숙성함을 타고나 어려서도 장난을 좋아하지 않았다. 춘궁(春宮)에 있을 적에 효도를 다하여 증자(曾子)·민자(閔子)의 덕행이 있었고 왕위에 오르게 되자 정신을 가다듬어 정치에 힘쓰고 조상의 사업과 뜻을 잇는 일에 마음을 두었다. 대비 및 대왕 대비에게 효성을 다해 섬겨 비평하는 말이 없었고, 기쁘고 화락한 얼굴빛과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는 예를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으니 양전(兩殿)이 기뻐하고 궁중에 화기가 넘쳐 흘렀다.

대왕 대비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과도하게 슬퍼하다가 병이 위급하자, 왕이 뜨락의 한데에 앉아서 의원을 불러 약을 묻고, 손수 약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올리니, 이 말을 듣는 이들이 감동하였다.

왕대비가 처음 통명전(通明殿)에서 거처하였는데, 왕의 거처와 조금 사이가 떨어졌었다. 왕이 왕대비를 위해 집상전(集祥殿)을 지어 옮겨 모시려 하였다.

	<p>집상전이 완성되기 전에 대조전(大造殿)으로 옮겨 거처하기를 청하고 자신은 부근의 별실(別室)에 거처하여 봉양하는 데 편리하게 하였다. 대비가 목은 병이 있었는데 왕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그 마음을 위로하였다. 대비가 일찍이 말하기를,</p> <p>“왕이 매양 곁에 있으니 병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 같다.”</p> <p>하였다.</p> <p>일찍이 대왕 대비를 모시고 남군(南郡)1177) 에 거둥하여 온천에 목욕하여 효과를 보았는데, 왕이 도내에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크게 베풀었다. 환궁하여 또 조정과 종친에게 은전을 베풀고 제도(諸道)에까지 일체로 행하였다. 이는 대개 내 노인을 노인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미루어 남의 노인을 존경하는 은혜[老老之恩]를 미루어 시행한 것이다.</p> <p>세시(歲時)에 항상 부로(父老)들을 위문하고 혹은 달마다 늬료(廩料)를 주기도 하였으며 재신에게는 달마다 쌀과 고기를 계속 보내 주었다. 판서 박장원(朴長遠)이 어머니에게 효도하였는데 그가 먼저 죽자, 왕이 특별히 명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종신토록 늬료를 주게 하였다.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 중에 어머니가 늙었다 하여 돌아가 봉양하기를 청하면 왕은 윤택하지 않고 쌀·고기·옷감들을 넉넉하게 주라고 명하였다. 부모의 봉양을 위해 주군(州郡)의 수령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곧 허락해 주고, 혹 그 사람이 지방관으로 나가는 것이 아까우면 특별히 쌀과 베를 주었는데, 그 효도로 다스림이 이와 같았다.</p> <p>왕에게 다섯 자매가 있었는데, 매우 사랑하였고 똑같이 대우해 주었다. 좋은</p>	
--	--	--

	<p>음식을 얻게 되면 반드시 나누어 먹고, 병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놀라고 근심하여 문병으로 보내는 사람과 약을 가지고 가게 한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며 죽었을 경우에는 비통해 마지않았다. 신하들의 상소에 죄없이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의 형제를 포함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몹시 미워하고 통렬히 배척하였다.</p> <p>소현 세자의 딸이 황창 부위(黃昌副尉) 변광보(邊光輔)에게 출가하였는데,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말하기를,</p> <p>“선조(先朝)의 사랑이 여러 부마(駙馬)보다 못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특별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보살피 주게 하여 선왕께서 시종 한결같이 하신 뜻을 보존하도록 하라.”</p> <p>하였다. 친족과 매우 화목하여 곡진한 은혜의 뜻이 있었고, 친분을 헤아려 돌보아 주어 끊임이 없었다. 왕이 귀척(貴戚)에게 대우를 융숭히 하였으나 사정에 흔들려 공사를 해친 적이 없었다. 여러 궁가(宮家)의 하인들이 한 번이라도 법을 범하여 방종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유사(有司)에게 회부하여 법으로 통렬히 다스렸다.</p> <p>학문에 마음을 두어 의리를 강구하고, 질병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경연에 나갔다. 또 전대의 역사를 강구하기를 좋아하여, 그 임금의 수덕(修德) 여부와 정치의 득실, 민생의 고락에 대해 부지런히 토론하여 거울로 삼았다. 견해가 고명하여 항상 강관(講官)의 견해보다 뛰어났다.</p> <p>동궁(東宮)에 있을 적에 이미 심리학에 뜻을 두어 선유(先儒)의 인심 도심설</p>	
--	---	--

	<p>(人心道心說)을 써서 들이게 하여 살피고 음미하는 자료에 대비하였다. 일찍이 《대학(大學)》을 강할 적에 왕이 이르기를,</p> <p>“몸을 닦는 데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이르기까지 경(敬) 자의 공부가 아닌 것이 없다.”</p> <p>하고, 《중용(中庸)》을 강할 적에 왕이 이르기를,</p> <p>“사람이 도(道)를 멀리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p> <p>하였다. 이어서 묻기를,</p> <p>“어떤 것이 비근(卑近)한 것이고 어떤 것이 고원(高遠)한 것인가?”</p> <p>하니, 강관이 아뢰기를,</p> <p>“사람의 일이 비근한 것이고 불씨(佛氏)와 노자(老子)의 교리(校理)가 곧 고원한 것입니다.”</p> <p>하자, 왕이 이르기를,</p> <p>“반드시 불씨와 노자(老子)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절실하지 않은 것이 곧 고원한 것이다.”</p>	
--	--	--

	<p>하였다.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할 적에 왕이 이르기를,</p> <p>“격물·치지(格物致知)하는 방법이 이 책에 모두 구비되어 있다. 비록 격물·치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의(誠意)를 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다 공력을 쓸 수 있겠는가. 또 반드시 성의의 공부가 있어야만 격물·치지한 바가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p> <p>하였다. 《서경(書經)》을 강할 적에 익직편(益稷篇)의 ‘제(帝)여, 제위(帝位)에 계심을 삼가소서.’라는 대목에 이르자, 왕이 이르기를,</p> <p>“임금이 임금의 자리에 있는 도리는 삼간다는 신(愼)의 한 글자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기미를 생각하여 편안함을 생각한다.[惟幾惟康]’는 것은 대개 공부하는 데 매우 요긴한 곳을 말한 것이다. 기미[幾]란 생각하는 시초이고 편안함[康]이란 안락한 즈음이니, 더욱 삼가해야 한다.”</p> <p>하였다. 역대의 일을 강할 적에 강관이 아뢰기를,</p> <p>“한 문제(漢文帝)는 자질이 높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배운 바가 다만 황제(黃帝)·노자(老子)의 도(道)였으므로 몸소 현묵(玄默)을 행하느라 옛날 성왕(聖王)의 정치를 회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옛 사람이 말하기를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문왕(文王)은 내 스승이다.’1178) 하였는데, ‘겨를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p>	
--	--	--

	<p>하였다. 왕이 이르기를,</p> <p>“한 무제가 제 양공(齊襄公)이 복수한 말을 인용한 것(1179) 을 살펴보면 규모가 매우 컸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력을 함부로 남용하였으나 마침내 패망하지 않은 것은 윤대(輪對)의 뉘우침(1180) 이 있었기 때문이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p>“무력을 함부로 남용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고제(漢高帝)가 평성(平城)의 근심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질이 이와 같았으므로 말년에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곧바로 윤대를 버리는 조칙(詔勅)을 내리고 또한 신선 구하는 일을 과할 수 있었던 것(1181) 이다.”</p> <p>하였다. 당 태종(唐太宗)이 군사를 일으킬 때의 일에 이르러서 장관으로 하여금 범엽(范曄)이 논단한 사평(史評)을 읽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p> <p>“아버지를 협제(脅制)하고, 오랑캐를 신하로 삼았다(1182) 는 설은 더욱 준절(峻截)하다.”</p> <p>하였다. 건성(建成)의 일(1183) 을 논하기를,</p> <p>“명나라 태종조(太宗朝)에 한왕(漢王) 고후(高煦)는 사람됨이 선량하지 못하였으나, 인종(仁宗)이 태자가 되어 은혜와 사랑으로 대우하니, 인종의 세대가</p>	
--	---	--

	<p>끝날 때까지 감히 다른 마음을 품지 못하였다. 가령, 건성이 태종을 이와 같이 대우하였더라면 어찌 피를 흘리는 변고가 있었겠는가.”</p> <p>하였다. 송 태조(宋太祖)가 한잔 술로 병권을 해제한 일(1184)을 강할 적에 강관이 아뢰기를,</p> <p>“이것은 권모 술수에 가깝습니다.”</p> <p>하니, 왕이 이르기를,</p> <p>“무슨 지장이 있겠는가. 이것은 인심을 열복(悅服)시킨 것이다.”</p> <p>하였다. 송 진종(宋眞宗)이 천서(天書)로써 태묘(太廟)에 고한 것(1185)에 이르러 이르기를,</p> <p>“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안 될 일인데, 하늘에 계신 조종(祖宗)의 영혼을 속일 수 있겠는가. 진종의 초기 정사는 또한 볼 만하였는데, 간사한 소인에게 그르친 바가 되어 그 마지막을 잘 끝내지 못하였으니 심히 경계할 만하다.”</p> <p>하였다. 왕이 경연에 임하여 강논한 말씀 중에 아름다운 말이 매우 많았으나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p> <p>강을 정지하던 날에는 또 유신(儒臣)으로 하여금 사기를 고열(考閱)하여 정치하는 데에 절실한 고사(故事)를 써서 올리게 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p>	
--	---	--

	<p>“써서 올린 바의 고사가 볼 만할 뿐만 아니라, 또 풍자하고 깨우치는 뜻이 많으니 내 유념하겠다.”</p> <p>하였다. 밤에 측근의 신하를 불러 보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마하고 백성의 일에까지 물으니, 정의가 서로 부합되어 마치 가정의 부자 사이와도 같았다. 왕이 눈병이 있었으나 촛불에 책을 보았다. 신료들이 더 덧칠까 두려워하자, 왕이 이르기를,</p> <p>“겨울밤이 매우 길고 또 내가 잠이 없어 삼경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니 책을 보지 않을 수 없다.”</p> <p>하였다. 뒤에 눈병이 심해지자, 옥당으로 하여금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써서 올리게 하되 그 글자를 크게 써서 열람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비록 병환 중에 있었으나 학문에 항상 이와 같이 힘썼다.</p> <p>대신을 예우하여, 말을 하면 의견을 굽혀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병이 들면 의원과 약을 보내 문병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상(喪)이 끝날 때까지 녹봉을 그대로 주고 혹은 제수(祭需)까지 주었으며, 혹은 안석[几]과 지팡이를 특별히 하사한 적도 있었다. 유학(儒學)을 중시하는 선왕의 뜻을 왕이 이어받아 송시열·송준길 등을 대접함에 있어 은우(恩遇)가 매우 융숭하였으며, 이유태·이상(李翔) 등 여러 사람도 초빙하여 아울러 특별한 예로 대우하였다. 그리하여 송시열은 마침내 의정(議政)에 제수되고, 송준길은 지위가 삼재(三宰)1186) 에 이르렀다. 송시열·송준길 등이 예를 그르친 일이 발각되게 되자, 사당(私黨)을 지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서 효종의 능을 옮긴 뒤에 소를 올려 뒤늦게 지난 일을 탓하니, 왕이 그의 편벽됨을 미워하여</p>	
--	---	--

	<p>대우가 약해졌다.</p> <p>처음 왕이 송시열 등을 대우할 적에 정성과 예의가 아주 지극하여 전고보다 특출하자 조정과 재야에서 그들의 풍채를 사모하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송시열 등이 잘 받들지 못하고 도와주는 바가 없어 실패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좌우의 두세 명 신하에 이르러서도 그들이 이끄는 대로 행동만 한 채 국사를 담당하고 보필하여 공적을 이룬 게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임금은 있으나 신하는 없다.’고 탄식하였다.</p> <p>왕은 여러 신하를 매우 너그럽고 후하게 대우하였는데, 항상 말하기를,</p> <p>“임금 노릇하는 도리는 아랫사람에게 시기와 의심으로 대하면 아랫사람이 반드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므로 오직 성의를 미루어 대해야 하는 것이다.”</p> <p>하였다. 언로(言路)를 열기에 힘써 비록 남을 공격하고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정직한 채하는 자일지라도 반드시 받아들여 너그러이 용납하고 혹은 포상하여 장려하기도 하였다. 비록 초야의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도 반드시 채택하여 기록하게 하고 혹은 벼슬을 제수하기도 하고 혹은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 화재로 집을 잃은 측근의 신하가 있었는데 특별히 호조에 명하여 구제하게 하였다. 그들이 죽었을 때 노고한 행의(行誼)가 있거나 혹은 청렴 근신(謹慎)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관례로 보내는 부의(賻儀) 이외에 별도로 관재(棺材)를 하사하고 혹은 상수(喪需)·제수(祭需) 및 일꾼을 보내 도와주고 아울러 그들의 아내와 자식의 굶주림과 추위를 구제해 주었으며, 작고한 훈신(勳臣)의 아내와 자식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다.</p>	
--	---	--

	<p>임인년(1187) 에 청나라에서 사사(查使)(1188) 를 보내어, 의주 부윤(義州府尹) 이시술(李時術)이 본부의 사람이 강을 건너가 나무를 베게 허락하였다 하여 사형으로 단안을 내렸다. 왕이 반복하여 굳이 변론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특별히 이시술에게 금 5백 근을 주어 그들에게 뇌물을 써서 화를 해결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사관(查官)을 특별하게 접대하고 이어서 사신을 보내어 구하였는데, 이시술이 이에 힘입어 완전히 모면하였다. 신하를 자신의 몸처럼 보살핌이 이와 같았다.</p> <p>조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을 고민하여 매양 서로 삼가고 협력하는 도리로 책려(策勵)하고, 방백과 수령이 조정을 하직하고 임지로 떠날 적에는 병이 있지 아니하면 곧 불러보고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물어본 다음 백성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는 방도를 거듭 일러주었다. 또 전임(前任) 때의 폐막을 묻고는 아뢴 바에 따라 곧 변통하게 하였다.</p> <p>인재를 수용(收用)하되 먼 지방의 사람도 빼놓지 않았다. 서북(西北) 양도(兩道) 지방은 길이 멀고 제주(濟州)는 바다 속에 있다 하여 특별히 중신과 근신(近臣)을 보내어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게 하고 백성을 구제하게 하니, 먼 지방 사람이 모두 고무되었다. 향천(鄉薦)(1189) 의 법을 거듭 밝히고 또 재신(宰臣)과 삼사(三司)로 하여금 인재를 별도로 천거하게 한 다음 재능이 특이한 자가 있으면 평상의 격례에 구애하지 않고 발탁해 썼다.</p> <p>또 항상 이조에 신칙하여 전사한 사람 및 청백리의 자손을 녹용(錄用)하게 하고, 혼조(昏朝) 때 원통하게 죽은 사람에 있어서도 증직하라고 하였다. 그 뒤에 충신·현사(賢士) 중에 특출한 자는 모두 기록하여 혹은 사당을 세우거나 관작을 추증하기도 하고 혹은 비를 세우거나 무덤을 표지(表識)하기도 하고</p>	
--	---	--

그 후예에게 벼슬을 주기도 하고 혹은 그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기도 하는 등 표창하는 은전이 거의 빠뜨림이 없었다. 효자나 열녀 중에 행실이 드러난 자에게는 곧바로 정문을 세워서 표창하였는데, 서민과 노비에게도 두루 미치었다. 한번은 경연의 신하와 세조 때 성삼문(成三問)의 일에 대해 의논하게 되었는데, 왕이 이르기를,

“성삼문 등은명나라 방효유(方孝孺)1190) 등과 같은 사람이다.”

하였으니, 충의(忠義)를 포상하고 높이는 뜻이 이와 같았다.

백성의 일은 지성으로 근심하고 노고하였다. 만일 상위(象緯)1191)의 변고나 수재·한재를 만나면 곧바로 정전(正殿)을 피해 거쳐하고, 수라의 가짓수를 줄이고, 자기 자신에게 죄를 돌리고, 도움되는 말을 구하였는데, 전후로 내린 애통한 교서가 신민으로서 차마 듣지 못할 정도였다. 비가 내리기를 빌 적마다 친히 제사지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궁중에서 재계한 다음 밤새도록 한테 서서 묵묵히 기도하고 기우제를 파할 때가 되어서야 편히 쉬었다.

만일 재난과 흉년을 만나면 신료들을 불러들여 재변을 사라지게 하는 계책을 강구하고 진구하는 정사를 크게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세와 공물을 면제하고 포흠진 것을 감면하며 혹은 곡식을 옮겨다가 구제하기도 하고 혹은 죽을 쑤어 그들을 먹였다. 돌림병이 나돌면 양의(良醫)를 나누어 파견하여 약을 가지고 가서 구제하게 하였다. 또 측근의 신하를 보내어 여제(厲祭)를 지내고 국상(國殤)에게 제사지냈다. 그리고 조석으로 공급하는 어주(御廚)의 물품을 절약하고 초하루와 명절에 올리는 외방의 공물 헌납을 정지하고, 주방(酒房)을 파하고, 어구(御廐)의 말을 방출하였으며, 공상(供上)하는 일용의 물품에

	<p>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재량하여 즐였다. 또 내장(內藏)1192) 과 각 아문에 저축된 것을 풀어서 진흙에 돕게 하였는데, 곤궁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정사가 하나뿐만이 아니었으나, 오래 갈수록 더욱 독실하였다. 항상 말하기를,</p> <p>“백성이 굶주리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먹는 것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잠자리가 편치 않았다. 만일 한 가지라도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까운 물건이 뭐가 있겠는가.”</p> <p>하였다. 진흙을 파한 뒤에 또 어사를 보내어 제도(諸道)의 수령이 진흙의 정사를 잘 거행했는지의 여부를 염탐하게 한 다음 승진시키거나 벌을 주었다. 경술·신해 두 해에 이르러서는 팔도가 크게 기근이 들고 이어서 큰 돌림병이 떠돌았다. 왕이 밤낮으로 애태우며 성의를 다해 구제하되 더욱 여러모로 힘을 기울였다.</p> <p>임자년1193) 봄에 국내에 선유(宣諭)하여 여러 해 동안 포탈된 부세(賦稅)를 모두 탕감하게 하고 이어서 죄수 및 폐고(廢錮)된 사람을 모두 처결하여 방면하고 서용(叙用)하게 하니, 백성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이 때문에 크게 흉년이 들어 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즐비하였으나 포악한 백성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다. 중외(中外)에서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맹수에 해독을 입은 자가 있다고 아뢰면 또한 반드시 돌보아주게 하였다. 겨울철에 호위하는 병사가 추위에 고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동옷을 하사하라고 명하였다.</p> <p>한번은 능침(陵寢)을 참배하는데 벼를 수확하기 전의 절기였다. 왕이 영을 내려 이르기를,</p>	
--	---	--

	<p>“나를 수행하는 신하들과 상장(廂將)1194) 이 경유하는 곳에 만일 풀 한 포기라도 손상하였을 경우 금령을 범한 견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p> <p>하고, 행차가 지날 적에 또 점검해 보게 하였다.</p> <p>온천에 거둥할 때에 왕이 이르기를,</p> <p>“도로를 정비하되 가마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정비하고 혹시라도 도로를 넓게 확장하여 백성의 전지에 손해를 끼치지 말도록 하라.”</p> <p>하였다. 온천 근처의 백성이 집을 비워 수행한 관원을 거처하게 하고 스스로는 한테에 거처한 것을 보고는 매우 불쌍히 여겨, 쌀과 콩을 주어 호구(糊口)의 밑천으로 삼게 하였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온천에서 돌아오는 측근의 신하가 있었다. 왕이 그에게 벼가 손상된 곳이 있던가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p> <p>“의장(儀仗)을 설치하였던 근처에 약간의 손상이 있었습니다.”</p> <p>하자, 왕이 댓가를 넉넉하게 보상하라고 명하였다. 그 불쌍하게 여기고 근심하고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p> <p>일찍이 팔도의 군안(軍案)을 조사하여 어린아이 및 죽은 사람 2만 명이 납부해야 할 군포(軍布)를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특별히 내수사(內需司)의 배를 내리고, 또 상평창(常平倉)의 은·배와 감영·병영에 저축된 것을 풀어서 내외</p>	
--	---	--

	<p>(内外)의 비용에 보충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본디 호구의 부세(賦稅)가 없고 다만 군졸이 납부한 배로 경상의 비용으로 써 왔는데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를 근심거리로 여겼다. 왕은 폐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갑인년(1195)에 대간의 말을 채용하여 바야흐로 크게 변통해 영원한 제도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미처 이 일을 시행하지 못하였다.</p> <p>각사(各司) 노비들의 공포(貢布)가 다른데 비해 너무나 많아 오랫동안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왔다. 왕이 특별히 내수사의 공부(貢賦)를 감하되 아울러 고루 감해주게 하였다. 내수사의 재물 용도가 이로 인하여 더욱 궁핍하게 되었으나 왕은 상관하지 않았다.</p> <p>선조(先朝)에서 호남·호서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 부세를 고르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였으나, 호남의 산간 고을에서는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왕은 그 공적의 뒤를 이어서 더욱 구별 확정(劃定)하여 두루 시행하게 하니, 백성이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p> <p>왕가(王家)의 법도가 매우 엄하여 궁중이 엄숙하였고 안팎의 구분이 엄격하였다. 재신(宰臣)과 간신(諫臣)이 일찍이 왕가의 일가불이와 궁중의 일을 말하였는데, 사실과 틀린 것이 있었다. 왕이 이르기를,</p> <p>“내가 진실로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뜻이 없다면 사람들의 말이 반드시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p> <p>하고, 또 이르기를,</p>	
--	--	--

	<p>“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고 그런 일이 없으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비록 한 말이 사실과 틀렸다 하더라도 들은 바를 다 아뢰었을 뿐이니, 혐의할 게 뭐가 있겠는가.”</p> <p>하였다. 한번은 장번 내관(長番內官)1196) 이 말미를 받아 고향에 내려갈 때에 외방에 폐해를 끼쳤는데, 내관을 꾸짖어 파면하고, 이를 알고서 아뢰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그 도의 감사를 추고하였다.</p> <p>왕의 성품이 독실함을 좋아하고 명예에 가까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궁중에서 좋은 일을 행하였을 때 혹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마음에 매우 싫어하므로 시종의 신하가 그 뜻을 알고 감히 외부에 퍼뜨리지 않았다. 검소하기를 더욱 좋아하여 겉옷을 제외하고는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한번은 병이 들어 신료를 대내(大內)에서 접견하였는데 방안에 깔아놓은 자리가 매우 넓었으나 바꾸지 않았다. 신료들이 물러나와서 감탄하였다.</p> <p>왕이 정대한 학문에 마음을 두고 이단(異端)을 매우 미워하였다. 이미 두 이원(尼院)1197) 을 철거하고 사찰에 있는 모든 선왕의 어판(御板)도 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일찍이 이르기를,</p> <p>“음사(淫祀)1198) 가 도움은 없고 해만 있다는 것은 알기 어렵지 않다. 어리석은 여염의 지아비와 아낙네는 본디 책망할 것조차 없지만 사대부의 집안도 이러한 일이 있으니 내 실로 이해가 안 간다.”</p> <p>하였다. 어판(御板)이란 승가(僧家)에서 부처에게 물건·음식 등을 공양할 때에 어좌(御坐)를 죽 써 놓은 것인데 이것은 부처를 모시고 같이 먹는다는 것으로</p>	
--	---	--

	<p>서 전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다.</p> <p>왕은 학교를 독실히 숭상하였다. 일찍이 대학(太學)에 나아가 친히 석전제(釋奠祭)를 지내고, 경서(經書)를 찍어 중외에 반포하였으며, 또 성균관(成均館)에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고 경서의 잘못된 자획(字劃)과 음의(音義)를 일체 모두 바로잡아 사방의 학자에게 혜택을 주었다.</p> <p>뜻하지 않은 일에 경계심을 가져 군정(軍政)을 닦게 하고 장신(將臣)을 접견하여 이야기할 적에 피곤함을 잊었다. 혹은 원유(苑囿)에 나아가 군대를 사열하기도 하고, 혹은 거둥을 인하여 군사를 사열하기도 하였는데, 행진(行陣)하는 법과 병갑(兵甲)의 제도를 강구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병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중국의 《기효신서(紀效新書)》 및 《연병실기(練兵實紀)》 등의 서적을 올리자. 왕은 즉시 반포하여 연습하게 하였다. 훈련 별대(訓練別隊)를 새로 설치하고 또 정초군(精抄軍)을 설치하여 병조 판서가 대장의 일을 겸임하게 하였다. 이것은 대개 정예롭고 용맹한 군사를 양성하고 양식과 기계를 비축하여 위급할 때에 대비토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어사를 파견하여 호남·호서·영남 3도 및 제주를 순무(巡撫)하고, 해안의 방비를 자세히 살피고 수군(水軍)을 정돈하려 하였으나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평상시에 군사(軍事)를 수치(修治)하는 데에 뜻을 두고 무비(武備)를 잊지 않았는데 이는 숙위(宿衛)를 엄히 하고 변경을 튼튼히 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신기(神機)1199) 를 묵묵히 운용하여 천하의 변천을 조용히 살펴보면서 선왕의 뜻을 소술(紹述)하려는 것1200) 이었다.</p> <p>대신(臺臣)이 일찍이 필요치 않은 군사를 혁파하지 않는다고 간하자, 왕이 이르기를,</p>	
--	--	--

	<p>“내가 군사를 좋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만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내 뜻이 국가를 위망(危亡)의 형세에 두고 다만 군사를 일삼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p> <p>하였다. 또 일찍이 측근의 신하들과 같이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를 사귀는 일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는데, 주상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왕이 탄식하며 이르기를,</p> <p>“이웃 나라와 사귀고 큰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사세가 같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이 어리고 덕은 없지만 조종(祖宗)과 부형의 백대 원수를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는가.”</p> <p>하였다. 북쪽 변방의 수령들은 무관이었으므로 탐욕하고 방종하였다. 다시 병마 평사(兵馬評事)의 제도를 설치하고 반드시 이조의 낭관(郎官)과 옥당의 관원을 임명해 보내어 그들을 견제하게 하였다.</p> <p>작고한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가 임진란을 당하여 북방에서 공로가 있었는데, 도신(道臣)의 청으로 인하여 특별히 품계를 올려 좌찬성을 추증하게 하고 같은 시대 남·북도(南北道)의 의사(義士) 20명에게 모두 포상하라고 명하니, 함경도 한 지방이 격려되었다.</p> <p>왜국 사신이 올 적에도 반드시 측근의 신하를 엄선하여 국경에서 맞아 위로하게 하되 그들의 환심을 잃지 않게 하였다. 왜국 사신이 웅천(熊川)에다 왜관(倭館)을 옮기겠다고 굳이 청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대개</p>	
--	--	--

	<p>내지(內地)에 옮김으로써 후일의 근심을 끼칠까 염려한 것이었다.</p> <p>왕은 옥사를 더욱 자세히 살피고 신중히 처결하였다. 매양 큰 추위와 심한 더위에는 곧 승지로 하여금 전옥서(典獄署)에 달려가서 죄질이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였다. 일찍이 승지에게 이르기를,</p> <p>“마땅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긴급한 죄수를 곧바로 처결하게 하되, 비록 하루에 재차 복심(覆審)하게 되더라도 상규(常規)에 구애하지 말도록 하라.”</p> <p>하고, 또 일찍이 이르기를,</p> <p>“사형수를 세 차례 복심하게 하는 뜻이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이려 하고 마땅히 죽지 않아야 할 자는 반드시 죽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곧 그 본의이다.”</p> <p>하였다. 또 추운 철에 오래 갇혀 있는 것을 염려하여 양식과 동옷을 주라고 명하였다.</p> <p>왕이 평소 병환이 있었으나 정사의 처리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병이 조금 나으면 항상 승지로 하여금 문서를 가지고 입시(入侍)하도록 하였다. 내직과 외직에 결원이 생기면 전관(銓官)으로 하여금 곧바로 차임하여 충원하게 하고 며칠을 지체한 적이 없었는데, 대개 직무가 폐지되어 백성에게 폐단이 미칠까 염려한 것이다.</p> <p>갑인년(1201)에 대비(大妃)가 승하하였다. 왕이 항상 부왕(父王)을 일</p>	
--	---	--

찍 여윈 것을 슬퍼하다가 또 모비(母妃)를 오래 봉양하지 못한 것을 지극한 한으로 여겨 거친 밥을 들고 맹물을 마시며 슬퍼함이 예절에 지나쳤다. 신하들의 굳이 간하며 권도를 따르시라는 청을 억지로 부응하기는 하였으나, 음식을 대할 적마다 울먹이며 스스로 감내하지 못하였다. 무릇 장사나 제사에 드는 물품과 예로 섬기는 절차를 반드시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하였다. 대비가 일찍이 경덕궁(慶德宮)으로 거처를 옮겼었는데, 이때 와서 창경궁(昌慶宮)에 반우(返虞)1203) 하고 왕도 옛 거처로 돌아갔다. 사물이 눈에 부딪힐 적마다 감회가 북받쳐 슬픔이 더욱 간절해 종일토록 묵묵히 앉아 있으면서 잠시도 슬픔을 잊지 못하였다. 옆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되어 슬퍼하였다.

혼전(魂殿)을 받들어 모시기를 일체 평소처럼 하였고 철따라 나는 음식물을 올리는 것이 산릉(山陵)에 잇따랐는데, 진(奠)을 드릴 적에는 반드시 친히 점검하고 감독하여 올렸다. 기일 하루 전에 친히 살펴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결 여부에 대해 물어보고 이튿날 아침에 또 언달아 물어 보았다. 왕의 병이 위독할 적에 창 밖의 바람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곡식을 해치는 바람이 아닌가. 내가 어찌 또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하였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마음이 임종 전까지 이처럼 열렬하였다. 염습(斂襲)에 필요한 유갑(襦匣)·의복 등을 모두 궁내에서 준비하고 호조로 하여금 시장 백성에게 한 자, 한 치도 거두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대개 우리 중궁(中宮)1204) 및 사왕(嗣王)1205) 이, 평일 백성을 걱정하고 검소를 숭상하는 왕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행한 것이었다.

	<p>중궁(中宮)은 김씨(金氏)로 본관은 청풍(淸風)이다. 영의정 김육(金瑬)의 손녀이고 중종조의 현신(賢臣) 대사성(大司成) 김식(金湜)의 6대손이다. 1남 3녀를 낳으셨는데, 아들은 우리 사왕(嗣王)1206) 전하이다. 큰 따님은 명선 공주(明善公主)이고, 다음 따님은 명혜 공주(明惠公主)인데, 모두 출가하기 전에 일찍 죽었고, 막내 따님은 명안 공주(明安公主)인데 출가하지 않았다.</p> <p>사왕(嗣王)의 비(妃)는 김씨(金氏)로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딸이다. 신해년1207) 봄에 책봉을 받아 빈(嬪)이 되었고, 지금 중궁의 자리에 올랐다.</p> <p>변변치 못한 신이 지식이 없는데, 이미 사왕(嗣王)의 명을 받아 왕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기년(紀年)을 위와 같이 대략 차례대로 서술한 다음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p> <p>“아,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굳세고 침착한 자질을 가진데다가 너그럽고 따스한 덕이 있고 넓고 큰 도량이 있었다. 효도와 우애는 천성으로 타고났고 자애로운 심성은 아래 백성들에게 믿음을 받았다. 재위한 지 16년 동안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애쓰는 마음은神明(神明)에게 질정(質正)할 수 있다. 몸을 검속(檢束)하되 부족한 것처럼 하고 선(善)을 구하되 미치지 못할 듯이 하였으며, 하루 이틀 사이 번거로운 정무에 경계를 다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졌다.</p> <p>비록 좋지 못한 운과 어려운 때를 만나, 수재·한재·풍재(風災)·상재(霜災)가 없는 해가 없었으며 백성들이 병들고 외세가 꺾박하였으나, 왕은 근심하고 노고</p>	
--	--	--

	<p>하며 가다듬음으로써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걱정하고 충애(忠愛)함으로써 백성의 생명을 보전하였다. 안으로는 음악이나 여색(女色)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고 밖으로는 놀이나 사냥의 즐거움을 추구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무릇 전대 제왕이 욕심껏 방종하고 사정(私情)을 행하며, 법도를 폐하고 덕을 어지럽게 했던 일들이 마음이나 행동에 파고들지 못하였다.</p> <p>진하(陳夏)를 아울러 썼으나 경력(慶曆)의 치세(治世)에 해가 되지 않았고 1208) , 왕려(王呂)가 권세를 부렸으나 실로 중조(中朝)의 탄식이 나오게 하여 원우(元祐)의 태평을 이루었다.1209) 전례(典禮)가 밝혀지자 인륜이 펴고 사설(邪說)이 사라짐에 인심이 바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입으로 외우고 마음 속으로 말할 적마다 ‘우리 왕의 덕은 한 문제(漢文帝)와 송 인종(宋仁宗)도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였다.</p> <p>임금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는[無君無父] 논설을 물리쳐서1210) 온 세상에 군신의 의리와 부자의 윤기가 나타나도록 함에 이르러서는 또 사도(斯道)1211) 에 큰 공로가 있었다. 비록 신민들이 복이 없어 하늘이 장수를 주지는 않았으나, 그 자애로운 마음과 자애롭다는 소문이 사람에게 깊이 감명되어 실로 영구히 잊지 못하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우뚝이 동방에 성덕(盛德)의 임금이 되었다. 아, 아름답도다.</p> <p>옛날 주(周)나라의 왕계(王季)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쌓아 문왕(文王)의 빛난 덕과 무왕(武王)의 큰 공렬(功烈)을 이룩하게 해 주었고1212) , 한(漢)나라의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는 몸소 공손과 검소를 행하여 건원(建元)의 성대한 정벌의 공을 이루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며1213) , 송(宋)나라 인종(仁宗)은 지극한 정성과 깊은 자애로 한결같은 덕을 지녔는데 군자(君子)</p>	
--	---	--

	<p>가 말하기를, ‘사직(社稷)이 오래 지속되어 마침내 반드시 힘입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p> <p>우리 현종 대왕(顯宗大王)으로 말하면, 잔포(殘暴)한 자를 교화시키고 사형을 없앨 수 있는 덕(1214) 과 백성을 화하게 하고 빨리 덕을 공경하는[誠小民疾敬德] 도(1215) 는 진실로 옛날 명철하고 올바른 임금과 비해 볼 때 손색이 없다. 내가 적은 기년(紀年)의 글을 한번 보았으면 한다. 첫째도 ‘우리 백성이다.’ 하고, 둘째도 우리 백성이다.’ 하여 하나의 생각도 백성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었다. 정이 깊어서 교화가 믿음을 받게 되고, 백성이 감화됨에 하늘이 감응하였으니 진실로 하늘이 장차 우리 문자 문손(文子文孫)이신 유자왕(孺子王)(1216) 을 크게 인도해 주어 옛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국운을 길이 누리게 하며, 주(周)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춘추(春秋)》의 의리를 이어 우리 국가의 억만년토록 끝없는 아름다움을 누리게 할 것이다. 아, 아름답고 성대하도다.</p> <p>자헌 대부(資憲大夫) 이조 판서(吏曹判書) 겸 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 성균관 채주(成均館祭酒) 오위 도총부 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 신(臣) 윤휴(尹鑄)는 지어 올림.</p>	
<p>현종대왕 애책문</p>	<p>유세차(維歲次) 갑인(1217) 8월 임진삭(壬辰朔) 18일 기유(己酉)에 현종 순문숙무 경인 창효 대왕께서 창덕궁(昌德宮)에서 승하하셨다. 이해 겨울 12월 11일 경오(庚午)에 승릉(崇陵)으로 자리를 옮기고 13일 임신(壬申)에 현궁(玄宮)(1218) 으로 영구히 옮겨 모시니 예에 따른 것이다.</p> <p>세악(終幄)(1219) 이 걷히자마자 찬궁(欝宮)(1220) 이 처음 열리고, 운삽(雲窰)은 채색의 술[彩蕤]을 드날리고 상여(喪輿)는 조각한 굴대[轄]를 갖추었도다.</p>	<p>○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哀冊文。</p> <p>維歲次甲寅八月壬辰朔， 十八日己酉， 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 薨于昌德宮之廬次。 是年冬十二月十一日， 庚午， 遷座于崇陵， 十三日壬申， 永遷于</p>

	<p>거처하던 엄숙한 궁전을 등지고 아득히 먼 현궁(玄宮)1221) 으로 향하시니, 새벽 바람은 처량하게 술술 불고 시름겨운 구름은 엉기어서 막막하도다.</p> <p>공손히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상을 당하여 슬픈 얼굴빛이 먹물처럼 검으시고 쇠질(衰絰)1222) 의 상복 차림 속에 아위어 있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피눈물을 흘립니다. 남긴 활과 칼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나 따라가지 못하였기에 앓을 때나 먹을 때나 왕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습니다. 이에 선첩(璇牒)1223) 에서 아름다운 덕을 징험하여 보책(寶冊)1224) 에 공열(功烈)을 드날리게 하였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p> <p>아름다운 황고(皇考)1225) 의 어짊과 지혜를 하늘이 내려 주었도다. 태어날 적부터 저절로 아시고 지혜롭고 명철(明哲)하시어 재주와 뜻이 특출하였도다. 성조(聖祖)1226) 께서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시어 유달리 보살피 주었도다. 어린 나이에 왕세손(王世孫)의 칭호를 받으시니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손자인 문손(文孫) 성왕(成王)과 같으셨도다. 세자(世子)의 자리에 오르시자 명성과 소문이 더욱 드러나셨도다.</p> <p>예는 삼조(三朝)1227) 를 구비하였고 칭송은 중광(重光)1228) 함에서 드날렸도다. 천제(天帝)로부터 수명을 받은 꿈[夢齡]1229) 도 징험이 없어서 문득 큰 슬픔(1230) 을 만나셨도다. 선왕이 주신 정일(精一)의 훈계를 이어받고 이에 크나큰 서업을 받으셨도다. 현인을 초빙하고 준걸들을 구하여 선왕의 뜻과 사업을 계술(繼述)하였도다. 몸을 훈도(薰陶)하고 심성(心性)을 함양(涵養)하며 의를 강마(講磨)하셨도다. 이에 온화한 말씀과 옥같은 안색이 서두르거나 갑작스럽지 않으셨도다.</p>	<p>玄宮，禮也。〔總〕幄纒撤，畫攢初啓，翬揚彩蕤，輦飭雕〔轄〕。背丹辰之肅穆，指玄扃之宵邈，曉風淒而浙淒，愁雲凝而漠漠。恭惟我主上殿下，戚容深墨，纍然衰〔絰〕，疚心孺慕，呼天泣血。攀弓劍兮莫逮，念羹墻之深篤。爰徵徵於璇牒，俾揚烈於寶冊。其詞曰：“猗歟！皇考，仁智天錫。生知睿哲，克岐克嶷。聖祖奇愛，眷撫之敦。沖年錫號，在周文孫。逮升貳極，聲聞益彰。禮備三朝，頌騰重光。夢齡莫驗，奄罹創鉅。訓承精一，誕膺丕緒。招賢籲俊，繼志述事。薰陶涵養，講劇義理。溫言玉色，不疾不遽。大本既立，庶務畢舉。孝思不匱，兩宮愉〔悅〕。奉先以誠，祀事咸秩。排黜異端，丕闡儒化，毀撤尼宇，葺成鬻舍。推不忍心，行政以仁，如天覆燾，與物爲春。躬率以儉，惡食非衣。常供亦減，國以之肥。念軫稼穡，蠲免田租。視民疾苦，若恫在膚。政先振貸，惠均流殍。發棠移粟，粒我億兆。惟刑欽恤，明慎〔讞〕議。無冤不伸，得情勿喜。優老之典，遍及臣</p>
--	---	---

큰 근본이 이미 확립됨에 모든 일이 다 거행되었도다. 효성이 지극하니 양궁(兩宮)1231) 이 기뻐하셨으며, 성의로 선조(先祖)를 받드니 제사의 일들이 정연하였도다.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유화(儒化)1232) 를 크게 천명하셨으며, 불사(佛事)를 헐어버리고 학교를 지으셨도다.

차마 못하는 어진 마음을 미루어 인정(仁政)을 시행하시니, 하늘이 덮어주는 것과 같아 사물과 더불어 봄처럼 온화하였다. 몸소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니 거친 음식과 허름한 옷도 가리지 않으셨다. 평상의 어공(御供)도 줄이니 나라의 살림이 윤택해졌도다. 농사짓는 일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근심하여 전세(田稅)를 감면하셨도다. 백성의 고통을 보기를 마치 자신의 몸이 아픈 것처럼 여기셨도다. 진휼하고 대여하는 정치를 우선으로 행하고 떠돌아다니며 굶주린 자에게 은혜를 고루 베푸셨도다. 창고를 열고 곡식을 읊기어 우리 억조의 백성을 먹여주셨도다. 형벌을 신중히 행하고 옥사를 의논해 밝히니, 원통한 일이 모두 신설(伸雪)되었지만 죄상이 드러나도 기뻐하지 않으셨도다.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신민에게 두루 미치게 하였고, 세시에 생선과 술을 보내주셨다.

육경(六經)을 나타내어 밝히니, 사문(斯文)1233) 이 여기에 있게 되었고, 퇴폐한 풍교(風敎)를 진작시킬수 있게 되어 사기가 시들어지지 않았도다. 정릉(貞陵)1234) 을 다시 단장하고 예에 따라 신주(神主)를 태묘(太廟)에 합제(合祭)하니, 빠뜨렸던 전례(典禮)가 거행되어, 선조에게 빛이 났도다. 선릉(先陵)1235) 을 길지(吉地)에 옮겨 모시니 실로 신의 도움을 얻었고, 지성에 감동되어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갔도다. 기년복(基年服)과 대공복(大功服)으로 복제를 정한 것1236) 은 대왕의 판단으로 결정하셨는데, 시종 유감이 없으니

庶。歲時之饋，乃魚乃醢。表章六經，斯文在茲，頽風可振，士氣不衰。增飭貞陵，禮祔太廟，闕典斯舉，于先有耀。移灤叶吉，實獲神佑，誠之所感，德歸於厚。基、功定制，宸斷決疑，始終無憾，儀文得宜。器使群工，嘉納忠言。敦紱九族，而絕私恩。淵沖海涵，寬裕容物。顯忠遂良，砥行礪節。師湯不邇，同禹惡旨，務從省約，屏斥華美。綱繆備豫，志未嘗忘，憂勤旰宵，提挈維綱，咨諏是急，不遑將攝。弛張合則，事益明習。當春秋之鼎盛，大有爲於陶甄，何皇穹之不弔，而降割之斯偏？嗚呼哀哉！今歲之春，聖母先陟，憂居諒陰，痛切荼毒。疾寔由於哀毀，醫莫效於神技。靈著罔吉於納滕，末音忍聞於憑几？嗚呼哀哉！苟席重敷，綴衣斯陳。黼座如昨，威顏隔晨。瞻象魏兮依宛，望龍樓〔兮復〕闕。鑄丹鼎兮已成，乘白雲兮安適？嗚呼哀哉！宮車兮晏駕，靈辰兮不留。森彤庭兮羽衛，緬碧落兮仙遊。銅壺咽兮漏水催，寶紉飄兮霜霰集。擁百靈兮風號。紛萬姓之雨泣。嗚呼哀哉！鬱彼崇岡，龍盤鳳舞，

	<p>의식과 예문(禮文)이 마땅하게 되었도다.</p> <p>능에 따라 신하들을 부리시고 충직한 말을 받아들이셨도다. 종친들에게 화목을 주로 하되 사적인 은정을 끊으셨도다. 마음은 연못처럼 깊고 도량은 바다처럼 넓으시어 너그럽게 사람을 포용하셨도다. 충직한 사람을 나타내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여, 행실과 절조를 같고 닦게 하셨도다.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은 탕(湯)임금을 본받았고(1237) 우(禹)임금처럼 맛진 술을 싫어하셨으며(1238) , 검소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고 화려한 물건을 물리치셨도다.</p> <p>환난을 미리 대비하여 일찍이 잊은 적이 없으셨고 밤낮으로 정사에 힘쓰시어 나라의 기강을 게시하셨으며, 자문을 구하는 데 급하여 휴식할 겨를이 없으셨도다. 법칙에 맞게 조종하니 일이 더욱더 잘 처리되었다.</p> <p>대왕의 춘추가 한창 젊으시므로 천하를 잘 다스려 큰 일을 하실 때인데 어찌 하여 하늘이 돌보지 않고 우리 대왕에게만 재앙을 내린단 말인가. 아, 슬프도다.</p> <p>금년 봄에 성모(聖母)1239) 께서 먼저 승하하시자, 대왕은 상중에 몹시 슬퍼하셨도다. 병환이 나신 것은 실로 성모의 상에 너무 애통해 하신 데에서 말미암았는데, 신묘한 의원의 기술로도 효험이 없었도다. 신령한 시초점을 치고 금등(金籐)의 궤 안에 책을 넣었지만 길함이 없으니(1240) 안석에 기대어 하시는 마지막 유명(遺命)을 어찌 차마 들을 수 있단 말인가.</p> <p>아, 슬프도다. 대자리를 깔고 휘장을 쳤도다. 어좌(御座)는 어제와 다름없는데, 용안은 내일 새벽이면 이별하게 되었도다. 궁궐을 바라보니 전처럼 완연</p>	<p>衣冠攸藏，密邇皇祖，理幽明之無間， 悅陟降之如在。寔天慳而地獻，信效 靈之有待。嗚呼哀哉！彭殤不齊，仁 壽奚徵？玄理〔葬〕茫，此痛難勝。 惟積慶之無疆，綿本支於百世。顧聖 德之輝光，窮宇宙而不替。嗚呼哀哉！</p> <p>資憲大夫知中樞府事臣李殷相，撰進。</p>
--	---	--

	<p>(宛然)한데 용루(龍樓)를 바라보니 적적하기만 하도다. 단정(丹鼎)1241) 을 주조하여 완성이 되었는데, 백운(白雲)을 타고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p> <p>아, 슬프도다. 궁내의 수레가 늦게 거둥하시니1242) 영신(靈辰)은 머물러 있지 않도다. 궁전(宮殿)에는 우위(羽衛)가 벌여서니 아득히 푸른 하늘에 신선처럼 떠나도다. 동호(銅壺)1243) 가 목메이듯 치고 누수(漏水)가 재촉하고, 보불(寶紉)1244) 이 흘날리니 서리와 싸락눈이 내리도다.</p> <p>온갖 신령이 옹위(擁衛)하니 바람이 울부짖고 오만 백성이 분분하게 모이니 비가 오듯 슬피 울도다.</p> <p>아, 슬프도다. 울창한 저 높은 언덕에 용이 서려있고 봉황이 춤을 추는데, 왕의 의관(衣冠)을 그곳에 간직하니 황조(皇祖)가 묻힌 곳과 매우 가깝도다.1245) 저승과 이승의 이치가 차이가 없으니 오르내리시어 좌우에 계신 듯하다. 이는 실로 하늘이 아끼던 곳이었는데 땅이 받치었으니, 진실로 기다렸다가 영험이 나타났도다.</p> <p>아, 슬프도다. 장수하거나 요사(夭死)함이 같지 아니하니, 어진 사람은 장수한다는 말을 어디서 징험할 수 있단 말인가. 현묘(玄妙)한 이치가 아득하기만 하니 이 슬픔을 견디기 어렵도다. 경사가 끝없이 쌓이여 자손이 백대토록 이어질 것이며, 성덕(盛德)이 빛나서 우주가 다하도록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p> <p>아, 슬프도다.</p> <p>자헌 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신(臣) 이은상(李殷相)은 지어 올림.</p>	
--	--	--

<p>현종대왕 시책문</p>	<p>유세차(維歲次) 경인(庚寅)1246) 12월 경인삭(庚寅朔) 초9일 무술(戊戌)에 고</p>	

	<p>자(孤子) 사왕(嗣王) 신 돈(焯)1247) 은 삼가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올립니다.</p> <p>삼가 생각건대, 어린 나이로 상(喪)을 당하고 나니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빛나는 업적을 크게 드러내기 위해 시호 올리는 성대한 의례(儀禮)를 베풀었습니다. 대왕의 업적에 대해 저희 정성을 펴려는 것뿐이지 감히 거짓말로 찬술하는 것이 아닙니다.</p> <p>삼가 생각하건대,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는 효도와 우애를 하늘에서 타고났고 정밀하고 전일한 것을 마음으로 전수받으셨습니다. 우뚝 뛰어난 자질로 성조(聖祖)1248)의 사랑을 받으셨고, 착하고 지혜로운 성품으로 어진 스승에게서 지도를 받으셨습니다.</p> <p>세자로부터 왕위에 오르기까지 큰 근본을 세워 모든 혈구(絜矩)1249)의 정치를 행하셨기 때문에 일용의 사이에서 시설(施設)하는 것이 모두 천리(天理)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일념(一念)으로 성의를 간직하시니 신화(神化)1250)가 팔도에 미쳤고, 하루에 세 번 문안드리는 예(禮)를 다하니 화기가 양궁(兩宮)1251)에 가득하였습니다. 사시(四時)의 제사를 경건히 지내니 종묘(宗廟)의 제사가 정결하였고, 학교와 서원을 중히 여기자 유교(儒教)가 나타났습니다. 어진 보필을 불러들인 다음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진지하게 정사를 토론하였으며, 성인의 경서(經書)를 토론하여 심성을 간직하고 살피는 공부에 힘쓰셨습니다. 친족을 친애(親愛)하는 것은 몸을 닦은 효과이고 노인을 존경하는 것은 효도를 미루어 행한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술선 수범하되 먼저 검소함을 숭상하셨고, 사사로운 길을 막아 끊어버리되 권세에 빌붙은 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p>	<p>○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諡冊文。</p> <p>維歲次甲寅十二月庚寅朔初九日戊戌，孤子嗣王臣焯，謹再拜稽首上言。竊以少遭閔凶，孺慕徒切。丕揚徽邵，縟儀斯陳。祗欲伸乎忱悰，匪敢誣於論譔。恭惟大行大王，孝友天得，精一心傳。以岐嶷之姿，受眷愛於聖祖，以睿智之性，資輔導於賢師。自儲位至于御邦，立大本措諸絜矩，所以日用間施設，皆從天理中出來。一念存誠，神化馳於八域，三朝盡禮，和氣藹於兩宮。虔禴祠烝嘗，而宗禋克精，重學校、庠序，而儒教大闡。招延良弼，虛己乎都兪，討論聖經，用功於存省。親親乃修身之效，老老惟錫類之推。表率群工，先尚儉約，杜絕私逕，最戒扳援。對越神明，處幽獨而益惕，憂虞夙夜，在靜攝而猶勤。折獄哀憐，所急者王政，勞農勸稼，不違乎民時。恤費則減常賦，以至於御供，振饑則傾內倉，并及於外廩。謨訓摠宜於詒後，繼述〔深〕謹於奉先。行太廟追祔之儀，聿修闕典，有寧陵改葬之舉，式爲</p>
--	---	---

	<p>신명(神明)을 대하듯이 하여 혼자 있는 곳에서도 더욱 조심하셨으며, 밤낮으로 국사를 걱정하여 요양할 때에도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옥사를 바르게 판결하고 외로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니 급급해 하는 바는 왕도 정치였고, 농민을 위로하고 농사를 권장하니 백성이 농사의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경상의 부세로부터 어공(御供)까지 줄이셨으며, 기근(饑饉)을 구제할 적에는 내창(內倉)1252)의 것을 모두 풀어 쓰고 외방의 창고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교훈은 모두 후손에게 전할 만하고, 계술(繼述)은 선왕을 받드는 데에 더욱 신중히 하셨습니다. 태묘(太廟)에 모시는 의례(儀禮)를 소급해 거행하니1253) 마침내 빠뜨린 전례(典禮)가 닦아졌고, 영릉(寧陵)을 이장(移葬)하는 일을 거행하니 영구한 계책을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예제(禮制)에 의문이 있을 적에는 참고하고 연구하기를 더욱 자세히 하였는데, 마음에 결단을 내리면 인정과 예문(禮文)에 결함이 없으셨습니다.</p> <p>그런데 옥좌(玉几)에 의지하여 내리는 유명(遺命)이 갑자기 감람(感齎)1254)의 때에 선포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병환이 겨우 나아졌으나 진실로 지나치게 상하신 것을 이미 근심하였습니다. 하늘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지만 어인 일로 조금도 연장시켜 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중제(中制)1255)를 끝마치지 못하셨는데 차마 끝없는 슬픔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 나이에 부왕(父王)을 여의었으니 실로 불초(不肖)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p> <p>불잡고 울부짖는 속에서 크나큰 서업(緒業)을 계승하니, 피눈물만 흐를 뿐이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드리던 빈 궁전을 바라보니 용안을 뵈을 길이 영원히 막혔습니다.</p>	<p>永圖。疑於禮制，則參究尤詳，斷自震〔表〕，而情文無缺。不料憑几之命，遽揚感齎之辰。玉候纔廖，固已憂其過毀。天心難度，胡不獲乎少延？中制未終，忍說無涯之痛？沖年失怙，實繇不肖之辜。纘丕緒於攀擗之中，只有泣血，瞻虛殿於定省之所，永隔承顏。唯幸宅兆之新營，適近祖宗之舊寢，求諸神道，豈遠於常情？省得民功，亦體乎素志。霜露既降，悲隙駟之如流，弓劍空留，望僊馭而靡及。茲將歸美之悃福，庸循易名之彝章。百辟其刑，行己著於中外，壹惠爲諡，休有光於古今。於乎！之德之純，其永以享以祀。謹遣臣議政府領議政許積，奉玉冊上尊諡曰，純文肅武敬仁彰孝，廟號曰，顯宗。仰冀沖鑑，俯垂明歆。申景鑠於无疆，雲仍衍慶，揭鴻號於不朽，日星并輝。嗚呼哀哉！謹言。</p> <p>正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藝文館提學臣姜栢年，撰進。</p>
--	---	---

	<p>다행히도 새로 지은 유택(幽宅)이 마침 조종(祖宗)의 능침(陵寢)과 가까우니 신도(神道)로 볼 때 어찌 인정과 크게 다르겠습니까. 백성의 노역을 줄이게 된 것도 대왕의 평소 뜻을 몸받은 것입니다.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리니 달리는 사마(駟馬)보다 빠른 세월을 슬피하고, 쓰시던 활과 칼만 부질없이 남아있으니 선어(仙馭)1256) 를 바라보아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에 아름다움을 왕에게 돌리는 정성을 가지고 시호 올리는 뗏뗏한 전장(典章)을 따라 행합니다. 모든 임금의 모범을 삼으니 행적이 이미 중외(中外)에 드러났고, 한 은혜로 시호를 올리니 아름다움이 고금(古今)에 더 빛났습니다. 아, 왕의 순수하신 덕이여 길이 제향을 받으실 것입니다.</p> <p>삼가 신(臣) 의정부 영의정 허적(許積)을 보내어 옥책(玉冊)을 올리고, 존시(尊諡)를 ‘순문 숙무 경인 창효(純文肅武敬仁彰孝)’로, 묘호(廟號)를 현종(顯宗)으로 올립니다. 대왕께서 굽어 살피시어 흠향하시기 바랍니다. 큰 미덕(美德)을 끝없이 펴서 자손이 번창하게 하고 큰 명호(名號)를 영구히 드날려 해와 별처럼 아울러 빛나소서.</p> <p>아, 슬프도다. 삼가 말씀올립니다.</p> <p>정헌 대부(正憲大夫)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겸 예문관 제학(兼藝文館提學) 신(臣) 강백년(姜栢年)은 지어 올림.</p>	
<p>현종대왕 승릉지</p>	<p>아, 우리 현종 순문 숙무 경인 창효 대왕의 성은 이씨(李氏)이고 휘(諱)는 연(淵)이며 자(字)는 효직(孝直)으로 효종 현인 대왕(孝宗顯仁大王)의 적자이고 인조 명숙 대왕(仁祖明肅大王)의 손자입니다. 모비(母妃)는 효숙 경렬 명헌 인선 왕후(孝肅敬烈明獻仁宣王后) 장씨(張氏)로 우의정 신평 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의 따님입니다.</p>	<p>○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崇陵誌。</p> <p>於戲! 洪惟我顯宗純文肅武敬仁彰孝大王, 姓李氏, 諱淵, 字景直, 孝宗顯仁</p>

	<p>전에 효종이 왕자로 계실 적에 청나라에 볼모로 갔었는데, 명나라 승정(崇禎) 14년 신사(1257) 2월 4일에 심양(瀋陽)의 관저(館邸)에서 왕을 낳았다. 왕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질이 특이하였고 용모가 장대하였다.</p> <p>갑신년(1258) 에 효종이 심양에서 연경(燕京)으로 들어갈 적에 왕을 보내 먼저 귀국하게 하였다. 왕의 이때 나이 4세로 인조께 뵈었는데, 묻는 바가 있으면 대답하기를 어른처럼 하였다. 요순과 곁 주에 대해 묻자. 왕이 이미 성군(聖君)과 폭군을 구별하여 말마다 고사(古史)를 증거대었다.</p> <p>한번은, 변방에서 표피(豹皮)를 진사한 자가 있었는데, 털이 성글고 나빠서 되돌려 보내려고 하였다. 왕이 곧 인조께 아뢰기를,</p> <p>“표범 한 마리를 잡자면 백성을 반드시 많이 다칠 것입니다.”</p> <p>하니, 인조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특하게 여겨 되돌려 보내지 말라고 명하였다.</p> <p>한번은 우연히 함문(閤門)을 나오다가 얼굴이 야위고 시커먼 한 군사를 보고 내수(內豎)(1259) 에게 물으니, 내수가 대답하기를,</p> <p>“이는 열고 굶주려서 그런 것입니다.”</p> <p>하였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옷을 주게 하고, 또 음식도 계속 먹여주게 하였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지혜가 넓고 인애(仁愛)가 천성으로 타고났었다.</p>	<p>大王之適嗣，仁祖明肅大王之孫。母妃孝肅敬烈明獻仁宣王后張氏，右議政新豐府院君維之女也。始孝廟在藩邸，爲質北隣，以皇明崇禎十四年辛巳二月己酉，誕王于瀋館。王生有異質，覃訏魁碩。甲申，孝廟將由瀋入燕，乃遣王先還。王方四歲，上謁于仁祖，有所問，應對如成人。問堯·舜、桀·紂，王已能別其聖暴，言皆證古史。嘗有外藩進豹皮者，毛疎惡，將却，王卽白于仁祖曰：“捉一豹，傷民猶必多矣。”仁祖聞而大奇之，命勿却。嘗偶出閣門，見一卒形羸墨，問內豎，對曰：“此病凍餒者也。”王爲惻然，輒命賜之衣，且續食。其自幼少，饒神智仁愛之出天性如此。昭顯既卒。孝廟以次嫡陟儲副，王亦進號元孫。己丑，冊王爲王世孫，設講書院。是夏，孝廟嗣寶位，王亦進號王世子。辛卯，行冠禮，仍行冊王世子禮，冬，行嘉禮。壬辰，行入學禮，益廣置春坊僚屬，詳延宿儒，以盡其輔導。孝廟嘗再祀文廟，輒命王從，教右文也，大闕于南津，復命王從，教不忘武事也，時觀稼弄田，教重民食也。己亥</p>
--	---	--

	<p>소현 세자(昭顯世子)가 죽자, 효종이 둘째 아들로 세자의 자리에 올랐고, 왕 역시 원손(元孫)으로 진호(進號)되었다. 기축년(1260)에 왕을 책봉하여 왕세손(王世孫)으로 삼고 강서원(講書院)이 설치되었다. 이 해 여름에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도 왕세자(王世子)로 진호(進號)되었다.</p> <p>신묘년(1261)에 관례(冠禮)를 행하고 이어서 왕세자의 책봉례(冊封禮)를 거행하였으며, 겨울에 가례(嘉禮)를 행하였다.</p> <p>임진년(1262)에 입학례(入學禮)를 거행한 다음 춘방(春坊)(1263)의 요속(僚屬)을 더 증원시키고 노숙(老宿)한 유신(儒臣)을 모두 맞이하여 보필과 지도를 다하게 하였다. 효종이 일찍이 문묘(文廟)에 재차 제사지내면서 왕에게 수행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문사(文事)를 숭상하라고 가르친 것이고, 남쪽 강나루에서 군대를 대대적으로 사열할 적에 다시 왕에게 수행하도록 명하였는데, 이는 무사(武事)를 잊지 말 것을 가르친 것이며 때로 농전(弄田)(1264)에서 농사짓는 것을 관람시켰는데, 이는 백성의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었다.</p> <p>기해년(1265) 5월에 효종이 승하하자, 왕이 세보(璽寶)를 받고 왕위에 올랐다. 이미 돌아와서는 여차(廬次)(1266)에서 수질과 요질을 띠고 애곡(哀哭)을 그치지 않았으며 죽도 듣지 않고 전율리는 일도 대신시키지 않았다. 이때에 매우 더웠었는데, 비좁은 데에 거처하면서 자리를 옮기지 않으니, 좌우의 신하와 원근에서 이 소문을 들은 자들이 모두 왕의 독실한 효성에 감탄하였다.</p> <p>왕이 처음 정치를 할 적에 오직 효종이 가르쳐준 바를 먼저 시행하여 남긴</p>	<p>五月，孝廟賓天，王受寶踐阼。既反直經于廬次，哀哭不節，飲斂不饋，饋奠不攝。時盛熱，處偏隘不遷，左右臣庶及遠邇聞者，皆莫不感王之篤孝。王初賦政，惟先孝廟之所教詔，遺志、遺事之是遵。謙己而尚學，儉上而裕下，務敦大周慎，以歸于中正。首用大司憲臣浚吉，言加禮髦士，勉留己至，諭召未徠。時若左贊成宋時烈，已自孝廟朝，受眷遇最深，而尹宣舉、李惟泰諸人，亦咸至京。及時烈等救退甚懇，王頻賜手批，慰挽備至。命諸道供獻，係祀享外，悉省除之，民已鼓舞新化矣。庚子，關東、北菑，命盡蠲端川逋銀，減三、甲貢貂，嶺以東減布，以西減米。辛丑，三南又旱，命復減諸道供獻，減酒房，減廐馬。舊有兩尼院，名仁壽、慈壽者，在王城北內，王命撤之，構覺舍，遣院尼悉歸俗。秋，王親舍〔菜〕于〔頓〕宮。壬寅春，命禮部修麗朝諸陵，且著令三歲一審。特遣御史南九萬、李翻等，蠲湖、嶺雜賦，且行賑貸。又遣近臣，祭厲于壬、丙古戰地。秋，王親幸露梁，講武事。癸卯，命均田使閔鼎</p>
--	---	--

	<p>뜻과 사업을 따라 할 뿐이었다. 자신을 낮추고 학문을 숭상하였으며, 위에서 검소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였으며, 두둑고 신중히 하기에 힘써 적당한 데로 돌아가게 하였다.</p> <p>맨 먼저 대사헌 송준길(宋浚吉)의 말을 채용하여, 고명한 선비에게 예를 다해 대우하되 이미 서울에 도착한 사람은 머물러 있도록 권하고 오지 않은 사람은 유시(諭示)하여 불렀다. 이때 좌찬성 송시열 같은 사람은 이미 효종 때부터 총애를 가장 깊이 받았고 윤선거(尹宣擧)·이유태(李惟泰) 등도 모두 서울에 와 있었다. 송시열 등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원하자 왕은 손수 쓴 비답을 자주 내려 위로하고 만류하기를 지극히 하였다.</p> <p>명을 내려 제도(諸道)의 공물 중에서 향사(享祀)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줄이고 면제하도록 하니, 백성들이 이미 새로운 교화에 고무되었다. 경자년(1267)에 관동·관북 지방에 재난이 들자, 단천(端川)에서 포흠진 은(銀)을 모두 면해주고, 삼수(三水)·갑산(甲山)에서 공물로 바치는 표피(豹皮)를 감해주고, 영동(嶺東)은 포세(布稅)를, 영서(嶺西)는 미세(米稅)를 감해 주라고 명하였다.</p> <p>신축년(1268)에 삼남(三南) 지방에 또 한재가 들자, 다시 제도(諸道)의 공물을 감해주고 궁중의 주방(酒房)과 어구의 말[馬]을 줄이라고 명하였다. 옛날부터 인수사(仁壽寺)·자수사(慈壽寺)라고 하는 두 이원(尼院)이 도성 북쪽에 있었는데, 왕이 명하여 이를 철거해 학교를 짓고 절에 있던 여승들을 보내서 모두 환속(還俗)시켰다. 가을에 왕이 친히 성채례(釋菜禮)를 행하였다.</p>	<p>重、金始振，改量畿田，命減諸宮家海稅及柴場之廣占撓民者。甲辰，畿內比歲旱，秋，湖南又水，發江都、南漢穀以哺之。命宰臣、三司，竝登薦才雋。遣左參贊金壽恒，往咸鏡道，御史尹深，往耽羅，問邊氓及海外人疾苦，又俱試文、武士。王常患眼痾，久不瘳。至乙巳，乃南幸湖西，試沐于溫泉，始有效。至行宮之日，卽罷鄉兵之扈於道者，歸鎮。命兵部，飭將士，毋擾民，毋得損禾稼。命禮部，分祀故勳德之在旁郡者，設文、武科，以慰士。命戶部，減徭賦有差，以慰民。丙午春，王奉仁宣太妃，復幸溫泉，遍賜一道耆老暨以孝行聞者米肉。命吏部，凡年八十以上者，毋論士庶，并加資級。既還，大赦。命申明戶口帳籍法漏者罪，徙邊。丁未春，王親御法殿，冊元子諱焯爲王世子。夏，復幸溫泉，益命道臣，寬民決冤滯。先是，孝廟嘗命行兩湖大同，以紓民困，唯湖南山郡，未及行。王既述事，朝臣有胥言不便者，且行且寢。後又皆言便，乃決意行之，湖民以蘇。戊申，關東又饑，命蠲民如庚子。設賑</p>
--	--	--

	<p>임인년(1269) 봄에 예조에 명하여, 고려조의 모든 능을 수리하게 하고 또 3년에 한 번씩 봉심(奉審)하도록 영을 만들었다. 특별히 어사 남구만(南九萬)·이숙(李翹) 등을 보내어 호남과 영남의 잡부(雜賦)를 감면해 주었으며 또 진휼하고 곡물을 대여해 주게 하였다. 또 측근의 신하를 보내어 임진 왜란과 병자호란의 옛날 전쟁터에 여제(1270) 를 지내게 하였다. 가을에 친히 노량(露梁)에 거둥하여 무사(武事)를 강습하였다.</p> <p>계묘년(1271) 에 균전사(均田使) 민정중(閔鼎重)·김시진(金始振)에게 명하여 경기의 전지를 다시 측량하게 하였고 여러 궁가(宮家)의 해세(海稅) 및 시장(柴場)을 널리 점유하여 백성을 침해하는 것을 줄이게 하였다.</p> <p>갑진년(1272) 에 경기 지방이 해마다 가뭄이 들고, 가을에 또 호남에 수재가 있었으므로 강도(江都)·삼사(三司)로 하여금 모두 인재를 천거하여 등용하게 하였다. 좌참찬 김수항(金壽恒)을 함경도로, 어사 윤심(尹沈)을 제주(濟州)로 보내어 변방의 백성과 해외 사람들의 고통을 탐문하게 하고, 또 문사(文士)와 무사를 다같이 시험을 보여 뽑게 하였다.</p> <p>왕이 항상 눈병을 앓았는데 오랫동안 낫지 않았다. 을사년(1273) 에 이르러 남쪽으로 호서(湖西) (1274) 에 거둥하여 온천에 목욕하자 비로소 효험이 있었다. 행궁(行宮) (1275) 에 도착한 날 곧바로 도로에서 호위하며 수행했던 향병(鄉兵)을 파하여 각각 본진(本鎭)으로 돌려보내었다. 병조에 명하여 장사(將士)들을 단속하여 백성을 괴롭히거나 곡식을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예조에 명하여 작고한 훈신(勳臣) 및 덕망이 있는 사람이 이웃 고을에 있을 경우 제사를 지내주도록 하고, 문·무과의 시험을 시행하여 선비들을 위로하게 하였</p>	<p>恤聽，命重臣有才誠者幹理之。減各司奴婢貢布。己酉春，復幸溫泉。冬始以神德王后康氏，躋祔于太廟。復貞陵寢園，舉曠典以章大倫。庚戌，春夏大旱，秋大水，諸路皆告菑。王又命發江都、南漢米三萬，運關西米二萬，分賑內外。辛亥春，又無麥，民大饑，疫癘滋熾，死亡相藉，王日夜焦憂。設京賑三所，勅諸路諸邑，盡誠賑救，生者饋糜，死者[槨]積，壬子，下罪己教，辭旨惻怛。布諭國內，悉蕩除逋賦，決罪囚，開廢錮，惠澤霈然，民遂忘其菑矣。又命宰臣、三司，薦有學行、文武才能者。又遣御史李夏，往耽羅，載種食及布以餽，復試士，如甲辰。癸丑，宗人靈林副令翼秀上疏言，寧陵封石有變，王大驚憂，決改兆之議。用是冬十月，遂遷孝廟衣冠于驪陵，禮也。時，王上奉慈懿、仁宣二太妃，極志盡物，以致隆養。孝廟時所建萬壽殿者，慈懿太妃之所御也，在西，王又別構一殿，名曰，集祥，仁宣太妃之所御也，在東。蓋猶漢長樂、長信之制焉。母妃素有疾，王恒左右侍護，以愉婉順適，且頻召諸姊</p>
--	--	---

	<p>다. 호조에 명하여, 요역과 부세(賦稅)를 차등있게 감하여 백성을 위로하게 하였다.</p> <p>병오년(1276) 봄에 왕이 인선 태비(仁宣太妃)를 모시고 다시 온천에 거둥하여, 도내의 나이 많은 노인 및 효행으로 소문난 사람에게 쌀과 고기를 두루 주었다. 이조에 명하여, 나이 80 이상인 자에게는 사족이나 서민을 논하지 말고 모두 자급(資級)을 주게 하였다. 온천에서 돌아와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명을 내려 호구 장적법(戶口帳籍法)을 자세히 밝히고 누락된 자는 별로 변방에 이주하게 하였다.</p> <p>정미년(1277) 봄에 왕이 친히 법전(法殿)에 나아가 원자 휘 돈(焯)을 책봉하여 왕세자로 삼았다. 여름에 다시 온천에 거둥하여, 거듭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원통하게 정제된 백성들의 옥사를 너그럽게 처결하도록 하였다.</p> <p>이보다 앞서, 효종이 일찍이 명하여 호남과 호서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곤궁함을 풀어주도록 하였는데, 오직 호남의 산간 고을에만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왕이 선왕의 일을 계승하여 시행하였는데, 조정의 신하 중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시행하기도 하고 중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뒤에 또 모두 편리하다고 말해서 단행하니 호남 백성들이 소생되었다.</p> <p>무신년(1278) 에 관동에 또 기근이 들자, 명하여 경자년(1279) 처림 백성들의 부세를 감면해 주게 하였다. 진휼청을 설치하고 중신 중에 재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을 가려 관장하게 하였다. 각사(各司) 노비들의 공포(貢布)를 감해 주었다.</p>	<p>妹，歡然展親，和樂無間。母妃亦嘗曰：“王每在旁，病若去體。”至甲寅春，母妃疾寢，王亟命遍舉珪璧，且議釋冤囚。迨遭大戚，王摧毀踰制，而益致潔祀享，自饁爨濯，概靡所不飭。始孝廟之喪，大臣與諸儒臣等，議慈懿太妃所宜服，以爲：“本朝五服之制，唯爲子碁而已。”遂定爲碁。其後有言，碁非禮，禮當三年者，王乃命詢諸大臣、儒臣。諸儒等因訟言古禮疑亦爲碁，大臣又持前見，以國制唯碁爲對，王乃從大臣言，仍碁不改。至是，禮官復遽殺慈懿太妃〔服〕爲大功，王既更詢于公卿、三司，且親考禮經，盡別其違非曰：“夫嫡胡庶也，長胡衆也？先王之於太妃，唯賈疏所稱，取嫡第二長子，亦名長子者，乃是也。”亟罪禮官。命改功爲碁，又〔謫〕責首相，不從禮明文而從人說者。制既定，名既正，而邦禮益無憾矣。王既行純茂，性又聰睿特達。聽斷之餘，唯常耽經史，沈潛理道，而其發而措諸事者，要必參伍反覆，得其當而後乃行。晚益明習政法，挈綱總紀，方欲大究，輒近軍民之弊，以盡其通</p>
--	---	--

	<p>기유년(1280) 봄에 다시 온천에 거둥하였다. 겨울에 처음으로 신덕 왕후(神德王后) 강씨(康氏)를 태묘(太廟)에 올려 합사(合祀)하였다. 정릉(貞陵)을 침원(寢園)에서 능으로 복원하고 성대한 전례(典禮)를 거행하여 대륜(大倫)을 밝혔다.</p> <p>경술년(1281)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고 가을에 홍수가 잦았다. 제도(諸道)에서 모두 재난을 보고해 왔다. 왕이 또 명하여, 강도·남한 산성의 쌀 3만 석을 방출하고 관서의 쌀 2만 석을 옮겨다가 도성과 외방에 나누어 주어 진휼하게 하였다.</p> <p>신해년(1282) 봄에 또 보리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큰 기근을 치르고 있었는데 돌림병마저 극성을 부려 죽는 자가 잇따르니 왕이 밤낮으로 근심하고 애태웠다. 서울에는 세 곳에다 진휼청을 설치하고, 제도의 각 고을에 신칙하여 성의를 다해 구제케 하되, 산 사람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고 죽은 사람에게는 널을 주어 묻게 하였다.</p> <p>임자년(1283) 왕이 자신을 책하는 교서를 내렸는데, 말 뜻이 애담았다. 국내에 유시하여 포함된 부세를 모두 면제하고, 죄수들을 너그럽게 처결하고, 폐고(廢錮)된 자들을 풀어주는 등 은택이 성대히 내려지니 백성들이 마침내 재난을 당한 줄을 몰랐다. 또 재신(宰臣)과 삼사(三司)에 명하여 학행과 문무(文武)의 재능이 있는 자를 천거하게 하였다. 또 어사 이하(李夏)를 제주에 보내어 곡식 종자와 식량 및 포목을 실어다가 구제하도록 하고, 갑진년(1284)의 예처럼 또 선비를 시험보이게 하였다.</p>	<p>變。而王已積瘁過毀，病以日臻，八月初七日朝，命大僚會賓廳，將召與議事，忽感疾益苦，不果。亟馳遣承旨，召領議政許積於忠州，又召左議政金壽恒，使至前勉諭。大漸之夕，猶頻問敬思殿膳羞潔否。又聞戶外有風聲，問此何自。曰東風，王驚曰：“損稼酷矣。民將殄矣。予何爲又聞此聲乎？”猶嗟嘆未已。王世子令諸大臣，齋禱于廟社、山川，王竟以是月十八日己酉，大棄群臣于昌德宮之廬次。王在位十有五年，春秋止三十有四。德壽無徵，神理繆錯。嗚呼痛哉！領議政臣積、左議政臣壽恒、右議政臣知和等，議王功德，上諡曰，純文肅武敬仁彰孝，廟號曰，顯宗。臣壽恒，摠陵工，卜兆于健元陵之西南別岡負兌之原，以是年十二月十三日壬寅，葬王于崇陵。當始斂也，凡絞〔紵〕、複褶之屬，皆出諸宮中，毋煩有司。及殯而葬也，事皆從儉約，毋傷民。蓋惟我王妃暨惟我嗣王，克體王平日尚樸敦素之遺旨云。王妃金氏，領敦寧府事清風府院君佑明女也，誕一男三女。男卽我嗣王殿下，女長明善公主，次明</p>
--	---	--

	<p>계축년(1285)에 종친 영림 부령(靈林副令) 이익수(李翼秀)가 상소하여 ‘영릉(寧陵)의 봉분(封墳) 석물(石物)에 틈이 생겼다.’고 말하자, 왕이 크게 놀라고 근심하여 능을 옮기기로 의논을 결정하였다. 이 해 겨울 10월에 마침내 효종의 능을 여릉(驪陵)으로 옮겼는데 예에 따른 것이었다. 이때 왕이 위로 자의 대비(慈懿大妃)와 인선 대비(仁宣大妃)를 받들어 모시되 마음을 다하고 음식물을 두루 구비하여 융숭히 봉양하였다. 효종 때에 건립된 만수전(萬壽殿)은 자의 대비가 거처하던 곳으로 서쪽에 있고 왕이 또 특별히 전(殿) 한 채를 지어 집상전(集祥殿)이라 이름하였는데 이는 인선 대비가 거처하던 곳으로 동쪽에 있었다. 이는 한(漢)나라 장락궁(長樂宮)·장신궁(長信宮)의 제도와 같았다. 모비(母妃)에게 평소 질병이 있었는데, 왕이 항상 곁에서 모시고 간호하면서, 화하고 부드럽게 하여 뜻에 맞게 하였다. 또 여러 자매(姊妹)들을 자주 불러 즐겁게 친애의 정을 펴면서 틈이 없이 화락하게 지냈다. 모비도 일찍이 말하기를,</p> <p>“왕이 옆에 있으면 병이 몸에서 나가는 것 같다.”</p> <p>하였다.</p> <p>갑인년(1286) 봄에 이르러 모비(母妃)의 병환이 점차 위독해지자, 왕이 급히 명하여 기제(祈祭)를 두루 거행하게 하고 또 원통한 죄수들을 평의하여 석방하게 하였다. 모비의 상을 당하자, 왕은 예제(禮制)에 지나칠 정도로 너무 슬퍼하였고, 제사를 더욱 정결히 하여 제수(祭需)를 익히고 씻는 일에서부터 신칙하고 간검하지 않음이 없었다.</p> <p>처음, 효종의 상이 났을 적에 대신이 여러 유신(儒臣)들과 자의 대비(慈懿大</p>	<p>惠公主，皆未字而夭，季明安公主，幼。中宮金氏，領敦寧府事光城府院君萬基之女。辛亥春，受冊爲嬪，今進位坤極。嗚呼！夫觀天者，識巍然，觀日月者，識輝光。雖以臣甚矇陋，猶事我大行大王，得奉教承命者，亦已久矣，竊伏有以識我先王之純行懿德卓然，匹諸古昔明聖而無愧。王素恭儉寅畏，無聲色嗜好，無盤遊逸豫，常兢兢懷懷而有淵谷之戒，蓋十五年如一日。每當禱雨，或致齋宮中，露立達曉，或避正殿損法廚。雖疾疾在躬，曾無時月康豫，而亦弗敢自恤。尤嚴宮禁，以杜絕蹊徑，戒朝著以破除朋黨。亦屢賞諫者以廓言路。昔在丙午冬間，臣嘗從諸講官後，入侍王于宣政殿時。妖彗纔息，又有雷異，王益惕然警懼，詢災乞言，一出於至誠。臣每頌此事，不敢忘。臣又嘗與儒臣宋浚吉，俱進對內閣，仍論及本朝臣成三問事。王許三問以爲皇明、方孝孺諸人者流也，此皆可以見王褒忠尚義之盛意矣。且往歲海西，嘗有上變者，王一問知其誣，放七十餘人，同日賜糧歸鄉，此又足以知王之世，無一枉死於</p>
--	--	---

	<p>妃)가 입어야 할 복제(服制)에 대해 의논하면서 말하기를,</p> <p>“본조(本朝) 오복(五服)의 제도에는 오직 자식에게 기년복을 입게 되었을 따름이다.”</p> <p>하고, 드디어 기년복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기년복은 예가 아니고 예로 볼때 삼년복을 입어야 합당하다.’고 말한 자가 있었으므로 왕이 이에 여러 대신과 유신(儒臣) 등에게 묻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러 유신(儒臣)들이 ‘고례(古禮)로 볼때 역시 기년복을 입어야 할 듯하다.’ 하였고, 대신이 또 전의 의견을 주장하여 ‘국제(國制)에는 오직 기년복으로 되어 있다.’고 대답하였으므로 왕이 대신의 말을 따라 그대로 기년복으로 결정하고 고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예관(禮官)이 다시 자의 대비의 복을 줄여 대공복(大功服)으로 정하자 왕이 다시 공경(公卿)·삼사(三司)에게 묻고 또 《예경(禮經)》을 친히 고증하여 그 잘못된 점을 다 분별하여 말하기를,</p> <p>“대체로 적자(嫡子)가 어찌 서자(庶子)가 되겠으며 장자(長子)가 어찌 중자(衆子)가 된단 말인가. 선왕(先王)1287) 이 대비(大妃)에게는 오직 가공언(賈公彦)의 주소(注疏)에 말한 ‘적처에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위도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取嫡第二長子亦名長子]’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p> <p>하고, 예관을 중죄로 다스렸다. 그리고 대공(大功)을 고쳐 기년으로 정하게 하고 또 수상이 예(禮)의 분명한 조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른 것을 꾸짖었다. 그리하여 복제가 정해지고 명분이 바르게 되니 국가의 예가 더욱 유감이 없게 되었다.</p>	<p>桁楊之下者矣。嗚呼! 豈不盛哉? 然臣又嘗敢論之, 玆數事者, 在凡主, 固爲盛, 於先王則尙其細者耳。唯其以千乘至貴, 君主至尊, 而躬曾、閔之行, 執布素之節。且使我環東土數千里之間, 雖滌旱罔災, 溝壑復廬, 盡囿於鴻仁厯澤之中者, 實庶幾茅茨桑林之盛焉。此尤王之所以爲盛德至善, 沒世而不可忘者也。嗚呼! 其至矣, 嗚呼! 其至矣。</p> <p>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臣金錫胄, 撰進。</p>
--	--	---

	<p>왕은 행실이 순수하고 천성 또한 총명하여 특별히 뛰어났다. 정사를 처결하고 난 여가에 항상 경사(經史)를 탐독하고 도리(道理)를 깊이 사색하였으나, 발로 되어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되풀이 해서 참작한 다음 타당성이 있어야만 시행하였다. 만년에는 더욱 정사의 법을 잘 익히고 기강을 총괄하여, 바야흐로 근래 군민(軍民)의 폐단을 크게 구명해서 모두 변통해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왕이 이미 피로가 쌓이고 모비의 상에 과도하게 슬퍼하여 병이 날로 심해져 갔다. 8월 7일 아침에 대신을 빈청(賓廳)에 모이게 한 다음 불러서 일을 의논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병환이 더욱 위독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 급히 승지를 충주에 보내어 영의정 허적을 불러오게 하고, 또 좌의정 김수항을 불러 침전(寢殿) 앞에 오게 하여 도타이 일렀다. 병환이 깊어 승하하던 날 밤에도 경사전(敬思殿)의 선수(膳羞)가 정결한지 자주 물었다. 또 문 밖의 바람소리를 듣고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가를 물었다. 동풍이라고 대답하자. 왕이 놀라며 이르기를,</p> <p>“곡식을 몹시 손상하겠구나. 백성이 장차 죽어가겠구나. 내가 어찌하여 또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p> <p>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탄식해 마지않았다. 왕세자가 여러 대신들로 하여금 종묘 사직과 산천에 왕의 회복을 빌도록 하였으나, 왕은 마침내 이달 18일에 창덕궁(昌德宮)의 여차에서 승하하였다. 왕은 재위한 지 15년이었고 춘추는 34세였다. 덕이 있으면 장수한다는 말이 징험이 없고 말았으니 신도(神道)의 이치가 어그러졌다. 아, 슬프도다. 영의정 허적, 좌의정 김수항, 우의정 정지화(鄭知和) 등이 왕의 공덕(功德)을 의논하여 ‘순문 숙무 경인 창효’란 시호를 올리고, 묘호(廟號)를 현종(顯宗)으로 정하였다. 김수항이 능에 관한 일을 총괄하여, 건원릉(健元陵)의 서남쪽 다른 산줄기인 태좌 묘향(兌坐卯向)1288)</p>	
--	---	--

의 자리에 묘지를 정하고 이해 12월 13일 임인(壬寅)에 승릉(崇陵)에 장시지냈다. 처음 염(斂)을 할 적에, 모든 교금(絞紵)1289)·복습(複褶)1290) 등의 물품을 모두 궁중에서 마련하였고, 유사(有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다. 빈소(殯所)를 차리고 장사를 지낼 때에도 모든 일을 검소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였다. 이는 대개 우리 왕비와 우리 사왕(嗣王)이, 평일 소박한 것을 숭상한 대왕의 유지를 몸받아 행한 것이라고 한다.

왕비 김씨(金氏)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청풍 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의 따님인데, 1남 3녀를 낳았다. 아들은 곧 우리 사왕(嗣王) 전하이교 큰 딸은 명선 공주(明善公主), 다음은 명혜 공주(明惠公主)인데 모두 출가하기 전에 일찍 죽었고 막내는 명안 공주(明安公主)인데 아직 어리다. 중궁(中宮) 김씨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광성 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따님이다. 신해년(1291) 봄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지금 중전의 자리에 올랐다.

아, 무릇 하늘을 본 사람은 높은 것을 알고 해와 달을 본 사람은 밝게 빛나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비록 신(臣)이 매우 어둡고 비루하지만 우리 대행 대왕(大行大王)을 섬겨 교명(敎命)을 받든 지가 또한 오래되었기에 우리 선왕의 순수한 행의(行誼)와 아름다운 덕망이 탁월하여 옛날 성군에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왕이 본디 공손하고 검소하며 공경하고 조심하여, 노래나 여색을 좋아하지 않았고 놀이나 안일에 젖은 적도 없으며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시면서 깊은 못이나 골짜기에 임하는 듯한 경계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15년 동안은 하루와 같이 하셨다. 매양 비오기를 빌 때를 당하면 혹 궁중에서 재계하고 한 데 서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혹은 정전(正殿)을 피해 거쳐하기도 하고 법주(法廚)1292) 를 줄이기도 하였다. 비록 몸에 질병이

	<p>있어서 한때나마 편안한 적이 없었으나 또한 감히 자신의 몸만을 돌보지 않았다.</p> <p>특히 궁금(宮禁)을 엄히 단속하여 청탁하는 길을 끊어버리고 조정을 경계하여 당파를 제거하게 하였다. 또 간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자주 상을 주어 언로(言路)를 넓혔다.</p> <p>지난 병오년(1293) 겨울 무렵에 신이 여러 강관(講官)의 뒤를 따라 선정전(宣政殿)에 들어가 왕을 모시었다. 이때 요망한 혜성(慧星)이 겨우 사라지자마자 또 천둥의 이변이 있었으므로 왕이 더욱 척연히 놀라고 두려워하여 재변의 구제책을 묻고 직언을 구하였는데, 일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다. 신이 매양 이 일을 칭송하며 감히 잊지 못하고 있다.</p> <p>신이 또 일찍이 유신(儒臣) 송준길과 내함(內閣)에서 함께 진대(進對)하였다가 이어서 본조의 신하 성삼문(成三問)의 일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왕은 성삼문을 허여하며 ‘명나라 방효유(方孝儒) 등과 같은 사람이다.’ 하였으니, 여기에서 충의를 포상하는 왕의 성대한 뜻을 볼 수 있다. 또 지난해 해서(海西) 지방에서 일찍이 변란을 고한 자가 있었는데, 왕이 한 번 물어보고 그것이 무고(誣告)임을 알고 70여 인을 석방하면서 같은 날에 양식을 주어 고향으로 돌려보내었으니, 여기에서 또한 왕이 재위하던 세상에서는 형벌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아, 어찌 훌륭하지 아니한가.</p> <p>그러나 신이 또 일찍이 감히 논하였거니와, 이 몇 가지 일은 범상한 군주에 있어서는 진실로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선왕에게는 조그마한 일일 뿐이다. 오직 천승(千乘)의 지귀(至貴)함과 군주의 지존(至尊)함으로서 증자(曾子)와</p>	
--	---	--

민자(閔子)의 덕행(1294) 을 실천하고 검소한 절조(節操)를 지켰다. 그리고 또 우리 온 동방 수천 리 사이가 비록 홍수와 가뭄이 들어도 재난의 걱정이 없게 하고 도랑과 골짜기에 뒹굴던 사람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넓은 인애(仁愛)와 큰 은택의 안에서 삶을 누리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질박을 숭상한 요(堯) 순(舜)(1295) 과 자책하면서 큰 가뭄에 비를 빈 탕왕(湯王)(1296) 의 성세(盛世)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게 특히 왕의 성덕(盛德)과 지선(至善)으로서 영구히 잊지 못하는 것이다. 아, 지극하고 지극하도다

가선 대부 이조 참판 겸 동지경연성균관사(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 신 김석주(金錫胄)는 지어 올림.